민원편람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민원편람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tents

해양정책 01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 6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10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신고 13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15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 18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사용) 21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승인) 23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27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30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33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36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 39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 42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 45
공유수면매립보상 재결신청 48
해양시설 (변경)신고 50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변경) 53
퇴적오염물질 수거업 57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 등록) 60
수로사업등록신청 63
수로사업변경등록신청 66
수로사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 69
측량기준점표지 이전신청 72
수로조사성과 사본발급 75
수로기준점 이전신청 77
수로조사 신고 80
수로조사성과 심사 신청 83

항행통보 신청 87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89
수로도서지 복제·유사제작물 발행 승인 92
원양어업(해외합작원양어업) 폐업 등 신고 95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 97
원양어업허가 99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02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04
원양어업허가유예 신청 107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110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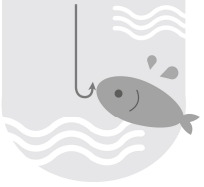

수산정책 113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 115
염전개발·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 118
염전개발·소금제조업 변경 허가 119
소금제조업 허가 123
염전개발 허가 126
낚시어선업 폐업신고 129
유어장(변경)지정 131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34
낚시어선업 신고 137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140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 146
한시어업허가 신청 150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 154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156
어업허가증(신고증명) 재발급 신청 158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160

민원편람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tents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설치통지 162
어업폐업 신고 164
어업신고 166
어업개시 신고 169
어업휴업연장 신고 171
시험어업 신청 173
어업 변경허가신청 177
어업허가 유예신청 179
어업허가 신청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181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85
어업휴업 신고 187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 189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 191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94
어획물운반업 폐지신고 196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 198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 200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 중의 재개신고 202
어선원부의 열람 및 발급 204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 205
어선등록사항 변경등록 207
어선등록 210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 214
어선 총톤수(측정, 개측) 신청 217
어선 증서 등의 재발급 220
어선등록 말소 223
어선 건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226
어선 개조(발주) 허가 229
어선 건조(발주) 허가 232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235
어장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연장)승인 238

어업휴업(휴업연장) 신고 240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변경신청 242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244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교부 246
어장구역 등 재결 247
어업권 등 보상청구 250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253
어업재개신고 255
어업면허 휴업신고 257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259
어업권 변경인가 263
어업권 분할인가 266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269
어업권 포기신고 27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274
어업면허 276
어업면허 신청기간 연장 278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280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변경)신고 283
어장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286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288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 291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 사용허가 293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 사용신고 296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 299
수입(재)검역 신청 302
수출(재)검역 신청 305
파견검역 요청 308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 311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 신청 314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 317

민원편람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tents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 신청 320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 발급 신청 323
검사증명서 (분할·합병·정정) 신청 326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신청 329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 332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신청 335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 338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서 재교부 34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교부 344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346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연장) 신청 348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351
어구자재의 성능 측정 354
수산제품의 이화학적 분석 358
수산제품 및 용수의 세균분석 359
해저 퇴적물 분석 363
수산용수 분석 365
수산자원 이식승인 367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신청 371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 375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 379
동물용의약품외품 제조업신고 382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385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 388
동물용의약품등의 조건부 제조업 및 제조품목 조건이행신고 391
동물용의약품 재심사 394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관리자승인 397
동물용의약품(자가치료,시험,견본,무환)수입 400
제조·수입 관리자·관리약사 변경 403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변경허가 407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허가사항 변경 410

동물용의약품등 허가 (등록·신고·품목허가)증 재교부 413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재)신청 416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420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수산용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423
자가백신제조신고 426
수산용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수입자 확인 429
수출 수산용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 43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435

PART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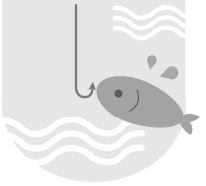

해운물류 439

해운중개업등 등록신청 441
해운중개업등 등록사항 변경신청 444
국제선박등록신청 446
국제선박 변경등록 변경신청 449
국가필수국제선박지정신청 451
손실보상지급신청 453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 455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 신고 457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459
(운항계획, 협약)신고 (변경신고) 462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464
외항 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 466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468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 470
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 473
내항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475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477

민원편람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tents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 479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허가 신청 481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신청 483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485
선원취업규칙(변경)신고 487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 489
승선선원 변경공인 491
외국인선원 고용 신고 493
의료관리자시험 응시 495
당직부원 자격 증명 497
의료관리자 자격증 교부 500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교부 503
국외 개별 취업 출국 확인 및 선원수첩공인 506
선원(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507
해기사국가시험 합격증명 교부 509
해기사면허증 갱신 511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 허가 514
해기사교육기관 지정(변경) 517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정정) 신청 520
자동화선박의 종류별(변경) 인정 522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524
승무경력증명 529
승무정원 완화허가 530
승무원명부 훼손·멸실에 따른 공인(확인) 532
선원수첩 기재사항 정정 535
재해보상심사(조정) 청구 537
선원 수첩교부(재교부) 538
하선·승선 취소공인 542
승선공인 544
내항선 입출항신고 546

외항선 입출항 신고	548
선박수리의 허가 등	553
항계내 위험물반입신고	555
선박의 계선신고 등	557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559
공사 등의 허가	561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563
부유물에 대한 허가	565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567
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	570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572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	575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578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581
선용품공급업 신고	584
검수사 등 등록	587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	590
타항만 일시적 영업행위신고	592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594
항만운송사업 등록	597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600
도선수습생 실무수습완료증명	603
도선사 정년연장	605
강제도선 면제	607
도선사면허증 재발급	609
도선사 면허	612
예선업등록사항변경	615
예선업 등록	617
항만시설사용허가	620
항만시설사용신고	622

민원편람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tents

PART 04

해사안전 625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 627
선박멸실 등 신고 629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631
재화중량톤수측정 633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변경발급) 신청 636
선박원부 등·초본발급(열람) 639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교부 640
선박말소등록 642
선박원부변경등록 645
선박등록 647
선박총톤수측정 649
불개항장 등 기항허가 신청 653
안전관리대행업 휴(폐업) 신고 655
안전관리대행업 합병신고 657
안전관리대행업 양수신고 659
안전관리대행업(신규·변경) 등록신청 661
선박·사업장인증심사 이의신청 664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 666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669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672
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675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사항 변경 677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 679
지정제조(정비)사업장 지정사항 변경 68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시험품목 추가지정 등) 685
선박재검사 688
컨테이너 정기(계속)점검방법 승인 691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694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697

컨테이너 검정	700
컨테이너 형식승인	703
선박구조 등 변경 허가	708
협약증서 유효기간 연장 등	711
협약증서 교부 등	714
선박검사증 등 재교부	717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720
선박용물건 예비검사	723
선박건조검사	726
선박검사 신청	729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	732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	735
지정사업장 지정(변경)	738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재교부)	741
위험물적재 검사	744
위험물컨테이너수납 검사	747
위험물용기 검사	750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	753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교부	755
선박 곡류적재자료 승인	757
선박 곡류적재도 승인	759
현존선 곡류적재도 승인	762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765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768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	771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교부	774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	776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779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	781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	784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786
임시항해검사	789

민원편람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tents

방오시스템검사	79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검사	794
에너지효율검사	797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	800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 형식승인 면제	802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	805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정	807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인증	810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	813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816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818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821
도면승인(변경승인)	823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	826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829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83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835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837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	839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갱신	84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844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	847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850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853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855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대행기관 협정	858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	86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864
선박보안심사	867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	871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874
선박이력기록부 교부(재교부)	878

선박보안심사 재심사 881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884
보안교육기관 지정 887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890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 893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896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899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대행기관지정 (재지정) 901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904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907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910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상속인 사업승계 신고 912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양수신고 914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 합병신고 917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 폐지 신고 919
해양사고 서류 및 증거물 열람 등 신청 921
해양안전심판 재결서 등본 발급신청 924
심판변론인 등록신청 926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929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931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934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937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940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943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946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 949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재발급 951
해상특수경비업 영업개시(폐업) 신고 953
해상특수경비업 휴업 · 재개업 · 휴업기간 연장 신고 955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고 957
적경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959
무기 구입 · 교체 신고 961

민원편람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ontents

무기 도난 · 분실 신고 963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965
국내 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967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 969
기록 보고(무기 반 · 출입 또는 사용) 971

PART 05

항 만 973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 975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 977
항만시설관리권 등본(초본) 발급 980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982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985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 988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 991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995
항만시설 장비 설치(철거)신고 999
항만시설 장비 검사 신청 1003
항만시설 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 신청 1007
항만공사 준공 전 사용 신고 1010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012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1016
항만공사 준공 보고 1020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시행 허가 1024
항만공사 시행허가 1026
권리·의무 이전인가 1029
시설장비 설치(철거) 신고 1031
시설장비 설치 변경 신고 1036
시설장비 검사 신청 1039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 1042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 신청 1045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 1048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 신청 1051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1055
(항만재개발사업)공사 등의 착수신고 1059

PART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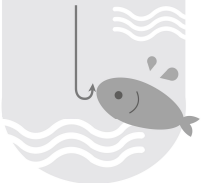

기 타 106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1065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1068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1071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 107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1077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1080
국유재산사용분할납부 1082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 1086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단체 신고 1089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신청 1092
유류오염사고 손해 지원 신청 1095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 보상금 신청 1098
인적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 1101
유류오염손해 배상금 지급신청 1104
화물손해 배상금 지급신청 1106
위로지원금 지급신청 1108
손실보상금 지급신청 1110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 1112
배상금 임시지급 신청 1114

민원편람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ART

01

해양정책

해양수산부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담당부서 : 해양정책과(연락처 : 044-200-5227)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처리기간 6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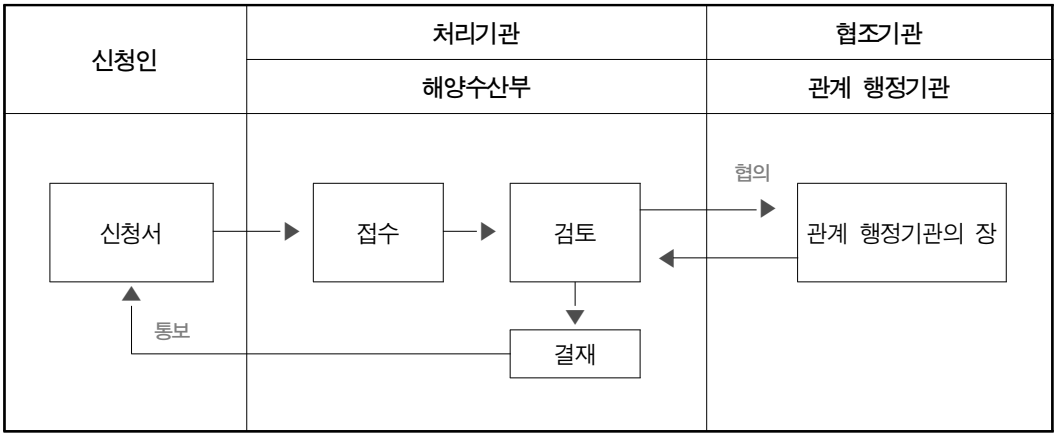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
3.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 영향조사서(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
10.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실시계획의 내용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지 여부
-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별지 서식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명(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 명칭								
사업 위치				사업 면적		㎡		
사업 목적								
시행 방법				사업 기간		. . . ~ . . .		
사업 내용	시설별							
	규모							
재원 조달계획 (천원)	국내자본	자기자금	융자금	소계	외국자본	차관	기타	소계
주요 변경 사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0조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9조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7)
- 접수 및 처리기관

1. 배타적경제수역, 항만법에 의한 국가관리무역항 : 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법에 의한 지방관리무역항 : 시.도지사
3.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 중 부산남항 : 부산광역시장
4.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
5. 배타적경제수역과 항만구역 외 공유수면 : 특별자치도지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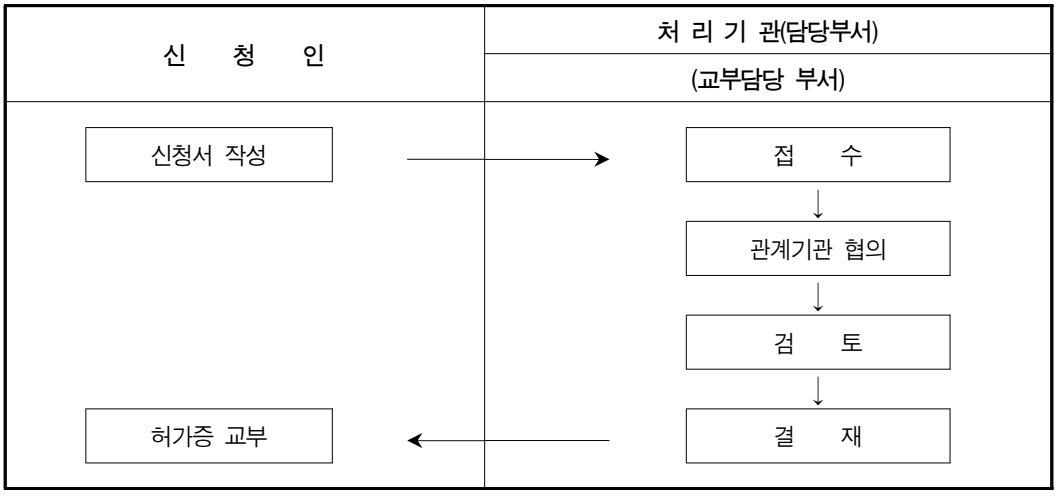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해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 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6)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만 해당)

(10)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12)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함)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 수수료 : 없음(허가 시 점용료·사용료 징수)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유수면 관리 및 운영의 적합 여부, 관련 권리자 여부 및 동의 여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

::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또는 ㎥)
목적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허가기간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 협의 [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의 장) 귀하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7)
- 접수 및 처리기관

1. 배타적경제수역, 항만법에 의한 국가관리무역항 : 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법에 의한 지방관리무역항 : 시·도지사
3.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 중 부산남항 : 부산광역시장
4.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
5. 배타적경제수역과 항만구역 외 공유수면 : 특별자치도지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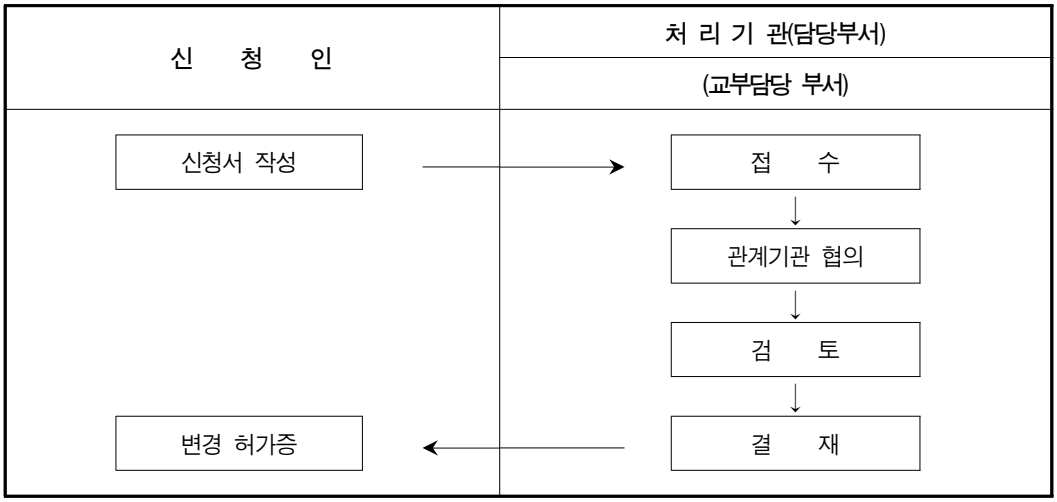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서>

1.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권리자의 동의서(해당하는 경우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유수면 관리 및 운영의 적합 여부, 관련 권리자 여부 및 동의 여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

:: 별지 제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면적	㎡	㎡
	목적		
	기간	. . . ~ . . .	. . . ~ . . .
	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 허가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처리기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 14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 기관 협의결과 및 타당성 등)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신청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7)
- 접수 및 처리기관

1. 배타적경제수역, 항만법에 의한 국가관리무역항 : 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법에 의한 지방관리무역항 : 시·도지사
3.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 중 부산남항 : 부산광역시장
4.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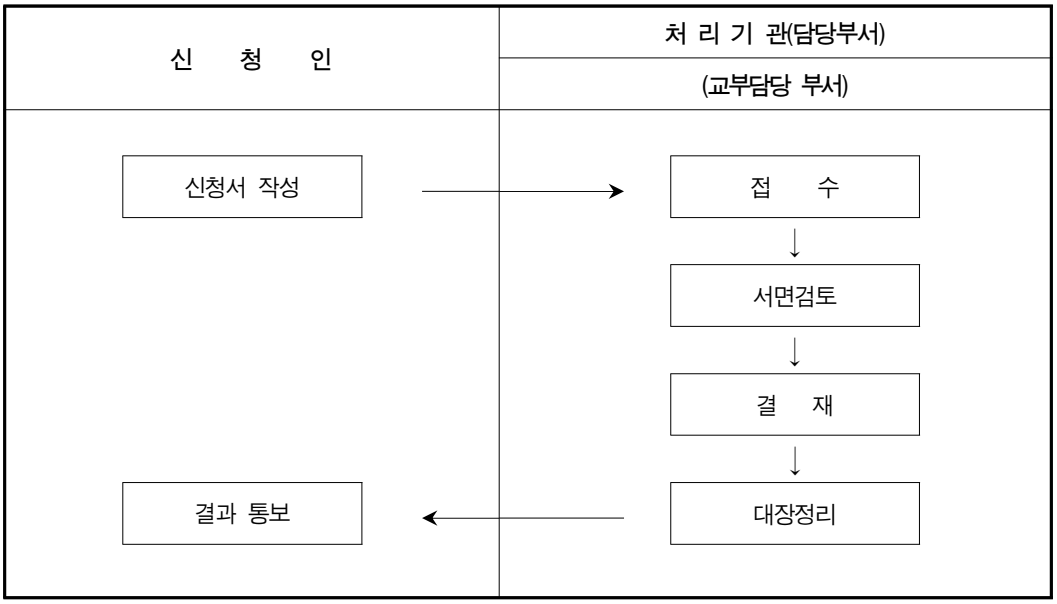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서>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유수면 관리 및 운영의 적합 여부, 관련 권리자 여부 및 동의 여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7)
- 접수 및 처리기관

1. 배타적경제수역, 항만법에 의한 국가관리무역항 : 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법에 의한 지방관리무역항 : 시·도지사
3.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 중 부산남항 : 부산광역시장
4.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
5. 배타적경제수역과 항만구역 외 공유수면 : 특별자치도지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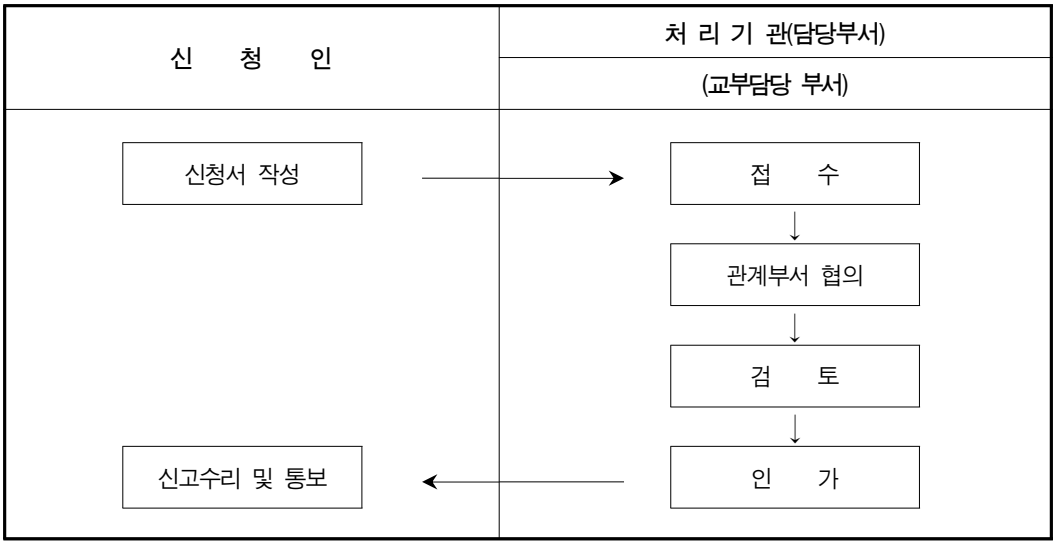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서>

1.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
2. 허가 구역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제출)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4.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계획도서는 다음 각목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7.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8. 예정공정표
9. 점용 사용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내용(목적, 면적, 허가조건)과 일치여부 확인

::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점용·사용허가 (협의·승인)	연월일	허가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실시계획 승인(신고)	공사 내용	
	공사기간 . . . ~ . . .	총공사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점용·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20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 10일
2. 검토 시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 토	→	인가(신고수리 및 통보)
신청인(신고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7)
- 접수 및 처리기관

1. 배타적경제수역, 항만법에 의한 국가관리무역항 : 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법에 의한 지방관리무역항 : 시.도지사
3.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 중 부산남항 : 부산광역시장
4.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
5. 배타적경제수역과 항만구역 외 공유수면 : 특별자치도지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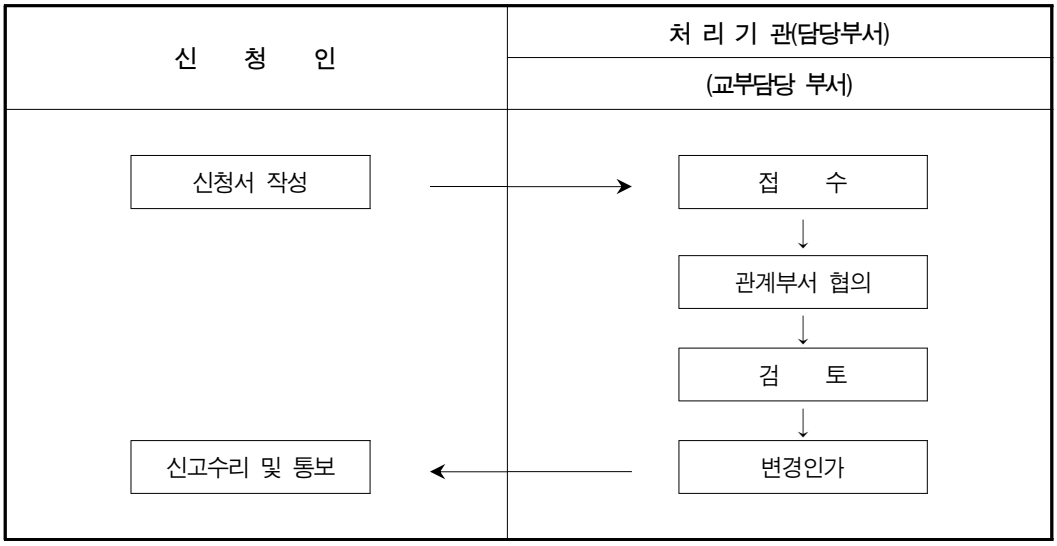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서>

  1. 점용사용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신고) 내용(목적, 면적, 허가조건)과 일치여부 확인

:: 별지 제14호서식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유의사항 참조

신청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점용·사용허가 (협의·승인)	연월일	허가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사내용		
	공사기간	. . . ~ . . .	. . . ~ . . .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을 변경승인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 수리: 7일
2. 검토 시 변경사항의 타당성,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처리절차

신청(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심의	→	검 토	→	변경인가 (신고수리 및 통보)
신청고(고)인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공유수면관리청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사용)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7)
- 접수 및 처리기관

1. 배타적경제수역, 항만법에 의한 국가관리무역항 : 지방해양수산청
2. 항만법에 의한 지방관리무역항 : 시.도지사
3.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 중 부산남항 : 부산광역시장
4.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부산남항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
5. 배타적경제수역과 항만구역 외 공유수면 : 특별자치도지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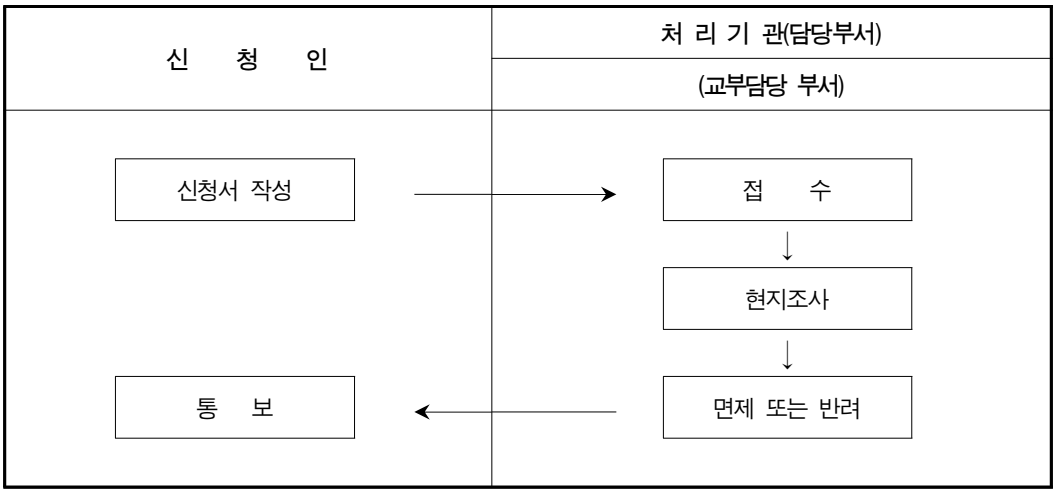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서>

1.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2.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사유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검토와 귀속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3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4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9)
- 접수 및 처리기관

1. 국가관리항이거나 매립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68일)
2.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 시·도(68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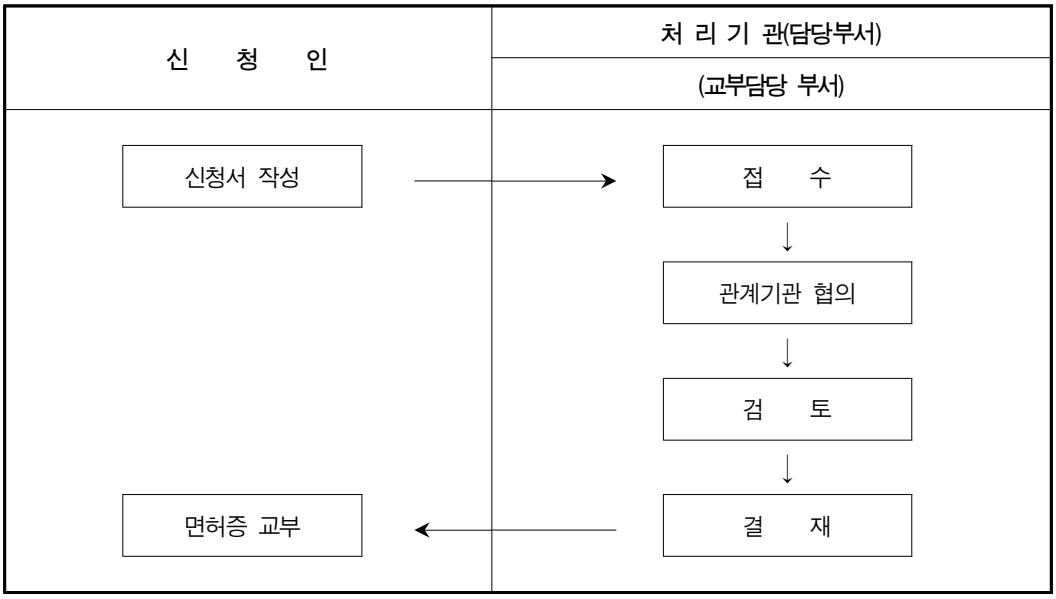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서>

1.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2.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겨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8.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 수수료 : 없음(면허 시 별도의 면허수수료 징수)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적합 여부, 매립 관련 권리자 여부 및 동의 여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 등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3.24.〉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 ·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성명	1.	전화번호	1.	
		2.		2.	

매립장소		매립면적	㎡
매립목적		총공사비	천원
착공예정일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개월 이내	
준공기간	착공일부터	개월 이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 법 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원
매립면허관청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 검토	→	관계 기관 협의 및 시 · 도 의견 수렴	→	검토 (협의 결과, 시 · 도 의견 등)	→	면허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4항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9)
- 접수 및 처리기관

1. 국가관리항이거나 매립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21일)
2.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 시·도(2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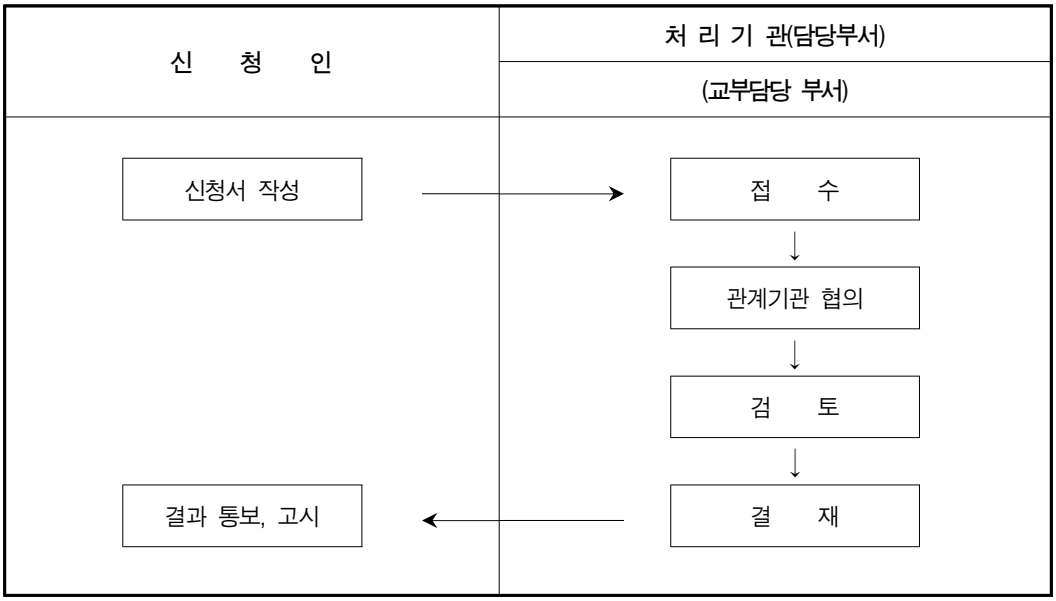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서>

1.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 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매립면허 적합 여부,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란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면적의 적정성, 매립공사계획·구조물의 안정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적의 적정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반영여부 등

::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3.24〉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성명	1. 2.	전화번호	1. 2.

면허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		매립면적	㎡
매립목적		총공사비	천원
착공예정일	년 월 일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검토 (협의 결과 및 타당성)	→	승인 또는 반려 처분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4항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9)
- 접수 및 처리기관

1. 국가관리항이거나 매립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10일)
2.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 시·도(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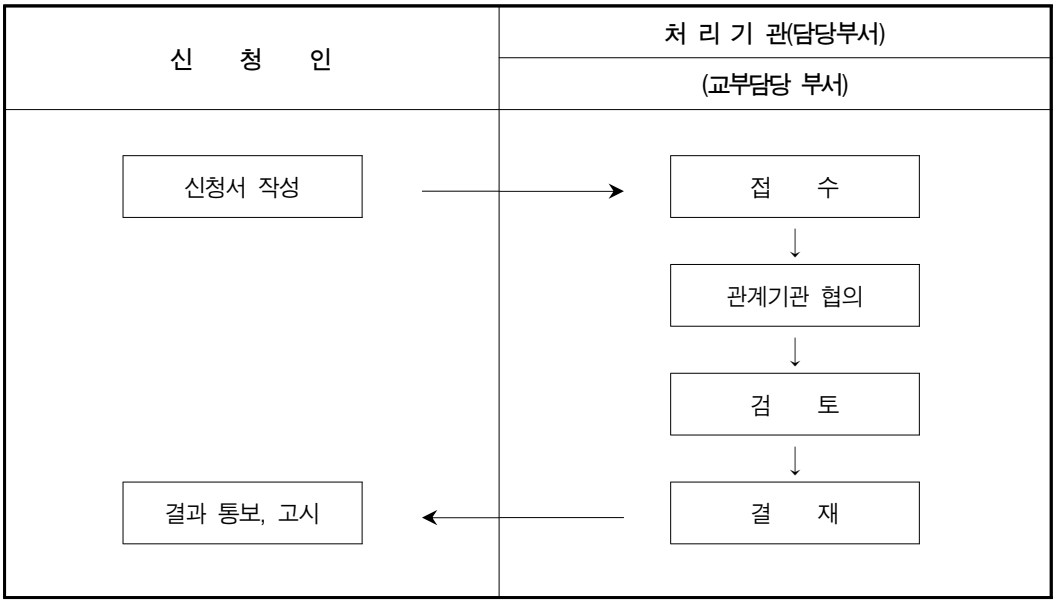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서>

1.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공정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매립면허 적합여부, 매립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의 연장의 적정성, 준공기간 연장에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 여부, 변경된 순공사비의 적정성

::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3.24〉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성명	1.	전화번호	1.
		2.		2.

면허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			
매립면적	㎡	매립목적	
총공사비	천원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시계획 변경 개요			
변경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된 예정 공정표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검토	→	관계 기관 협의	→	검토 (협의 결과 및 타당성)	→	승인 또는 반려 처분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9)
- 접수 및 처리기관

1. 국가관리항이거나 매립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20일)
2.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 시·도(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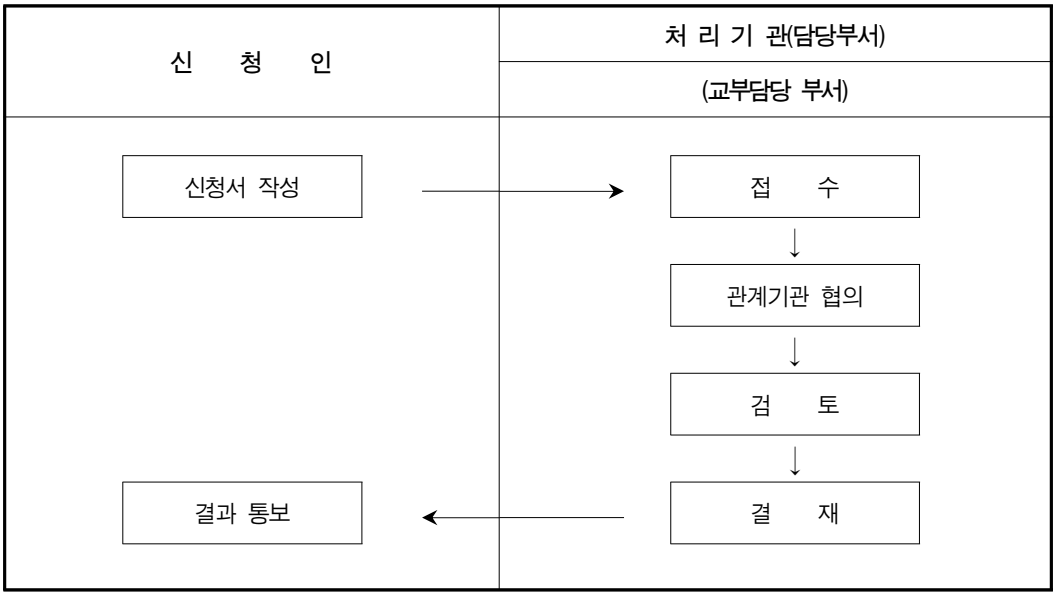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서>

1.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3.24〉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 승인일	
위치		준공예정일	
사용시설 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사용목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의 장) 귀하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및 협의	결 재	허 가	통 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9)
- 접수 및 처리기관

1. 국가관리항이거나 매립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30일)
2.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 시·도(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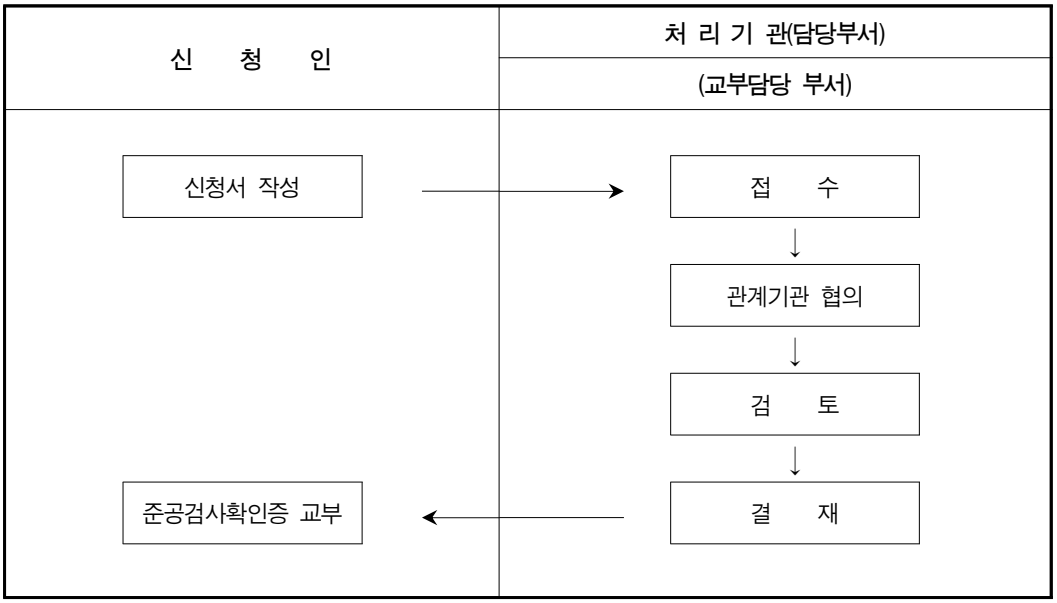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

1.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준공검사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고자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사항의 이행여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 시설물의 안전도·매립표고 및 시공상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 명세의 적정성, 총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토지등록사항의 적정성, 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보증의 적정성 등

::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3.24〉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협의·승인) 연월일 및 번호			
매립장소			
매립목적			매립면적(㎡)
준공면적 (㎡)	전체	공공용지	
	사유지	국가귀속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 희망용지:)	
총공사비	당초 천원	정산	천원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5항·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인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준공검사 실시	준공검사 또는 반려 처분	통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9)
- 접수 및 처리기관

1. 국가관리항이거나 매립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68일)
2.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 시·도(68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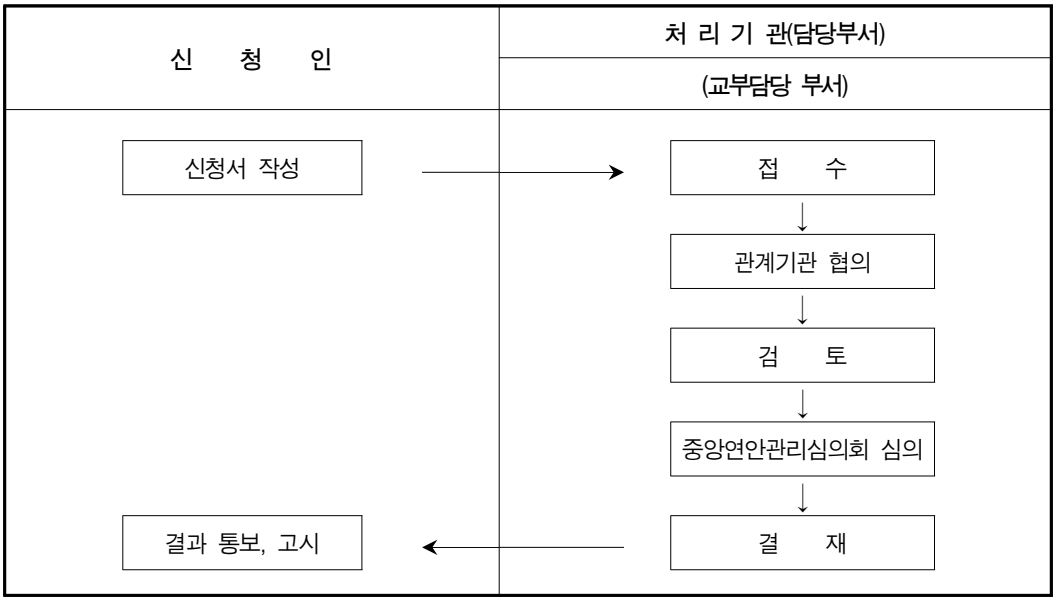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서>

1.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매립목적 변경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변경 후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 매립지 재평가의 적정성, 재평가매립지의 국가 귀속 여부 등

::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3.24〉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성명	1. 2.	전화번호	1. 2.
신청 구분	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			
매립(예정)지 위치				
매립(예정)지 면적	면 허	㎡	실시계획 승인 ㎡	준 공 ㎡
매립목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검토	→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시·도)	→	중앙연안관리 심의회	→	승인 또는 반려 처분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9)
- 접수 및 처리기관

1. 국가관리항이거나 매립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14일)
2.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 시·도(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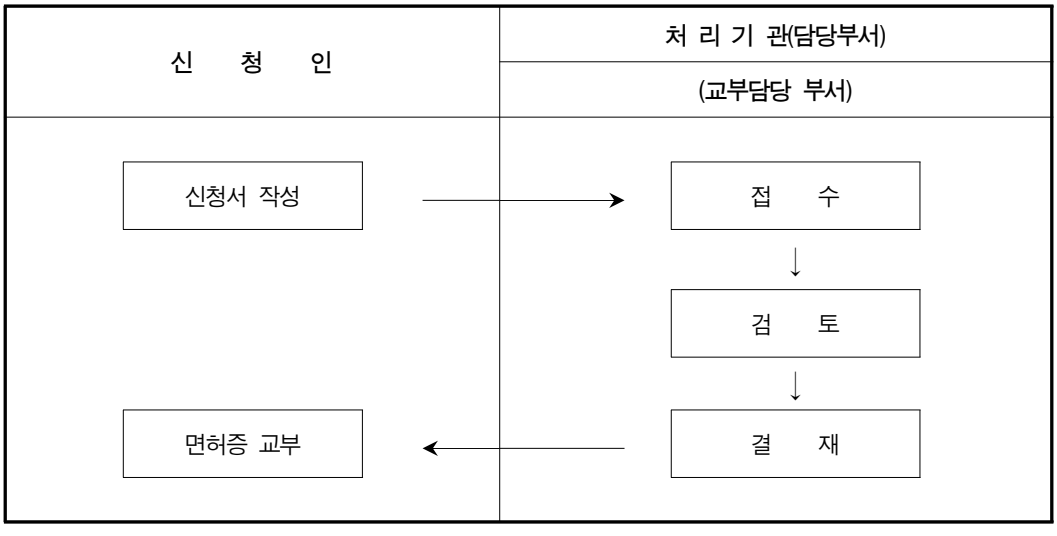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서>

1.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공정표
3.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매립면혀 효력 상실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지 여부, 100분의 30 이상 공정 진행여부, 효력회복 신청 기간 해당 여부 등

::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3.24〉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6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연락 가능인	성명	1. 2.	전화번호	1. 2.	
신청 구분	1. 준공검사 전의 매립목적 변경 2. 준공검사 후의 매립목적 변경				
매립(예정)지 위치					
매립(예정)지 면적	면 허	㎡	실시계획 승인	㎡	준 공 ㎡
매립목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검토	→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시·도)	→	중앙연안관리 심의회	→	승인 또는 반려 처분	→	고시 및 관계 기관 통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9)
- 접수 및 처리기관

1. 국가관리항이거나 매립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 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자치도 (20일)
2.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 시·도(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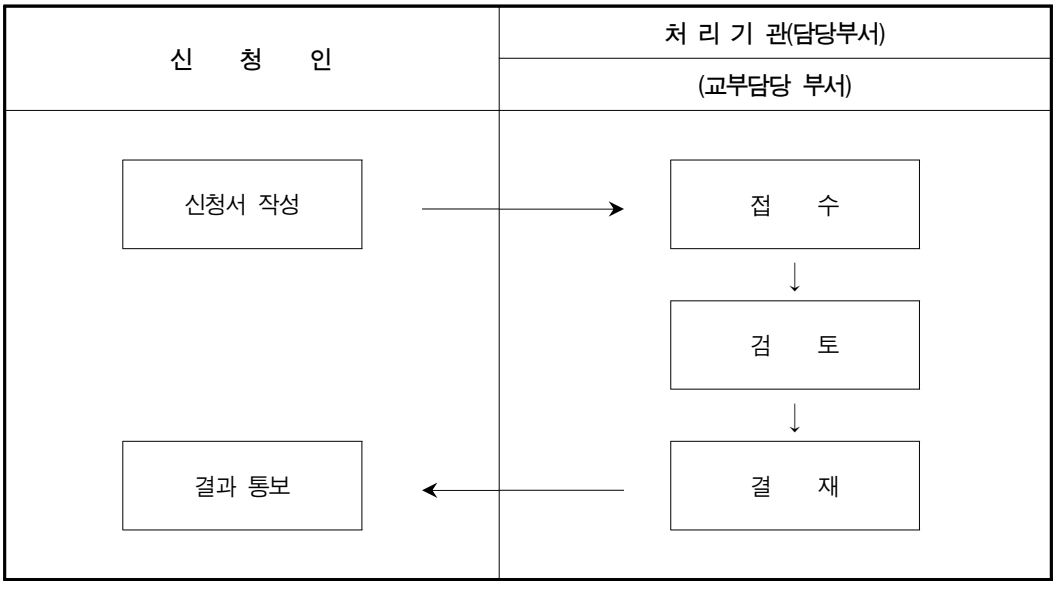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서>

1.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요건 충족 여부

::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3.3.24〉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면허(협의·승인) 연월일 및 면허번호	
매립장소	
매립면적	㎡
매립목적	
공사 기성 공정(율)	%
효력소멸 연월일	년 월 일
효력소멸 원인	
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의 종류 및 개요	
신청 사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립면허관청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이 별지에서 "매립면허관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지 조사	→	의무 면제 또는 반려 처분	→	통 보
신청인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매립면허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유수면매립보상 재결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연락처 : 044-200-5269)
- 접수 및 처리기관

1. 토지수용위원회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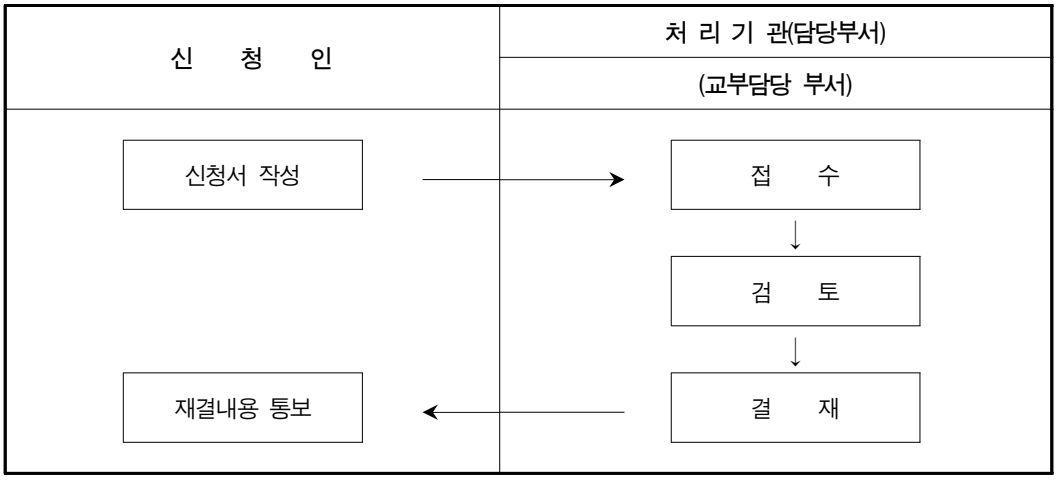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청서>

1. 별도 양식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주소
2. 손실발생의 내용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4. 협의의 경위

- 수수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해양시설 (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 담당부서 : 해양환경정책과(연락처 : 044-200-5283)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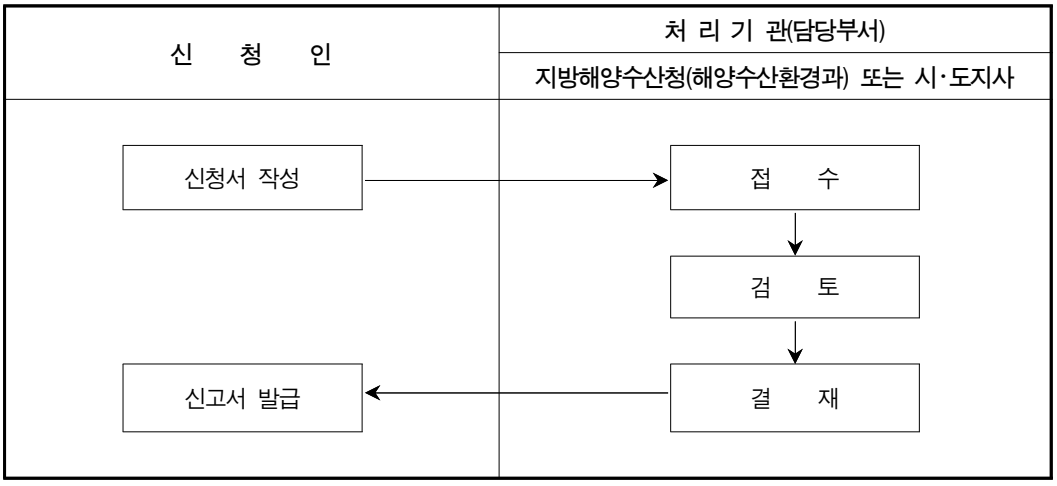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신청서 : 해양시설 신고서)

1. 최초신고시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1부

(2)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사본 1부(별표1 제1호로 한정)

(3)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 사본 1부(별표1 제1호가목으로 한정)

2. 변경신고시

(1) 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양시설의 용도, 종류, 용량 등의 기재 여부
-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지정·임명 여부
-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작성 여부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8.〉

(앞쪽)

해양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④ 해양시설의 명칭			
⑤ 해양시설의 설치장소			
⑥ 해양시설의 용도			
⑦ (변경)신고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최초 신고 시 가.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1부 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 사본 1부(별표 1 제1호로 한정합니다) 다.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사본 1부(별표 1 제1호가목으로 한정합니다) 2. 변경 신고 시 가. 신고증명서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변경)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양보전과(연락처 : 044-200-5301)
- 접수 및 처리기관 : 각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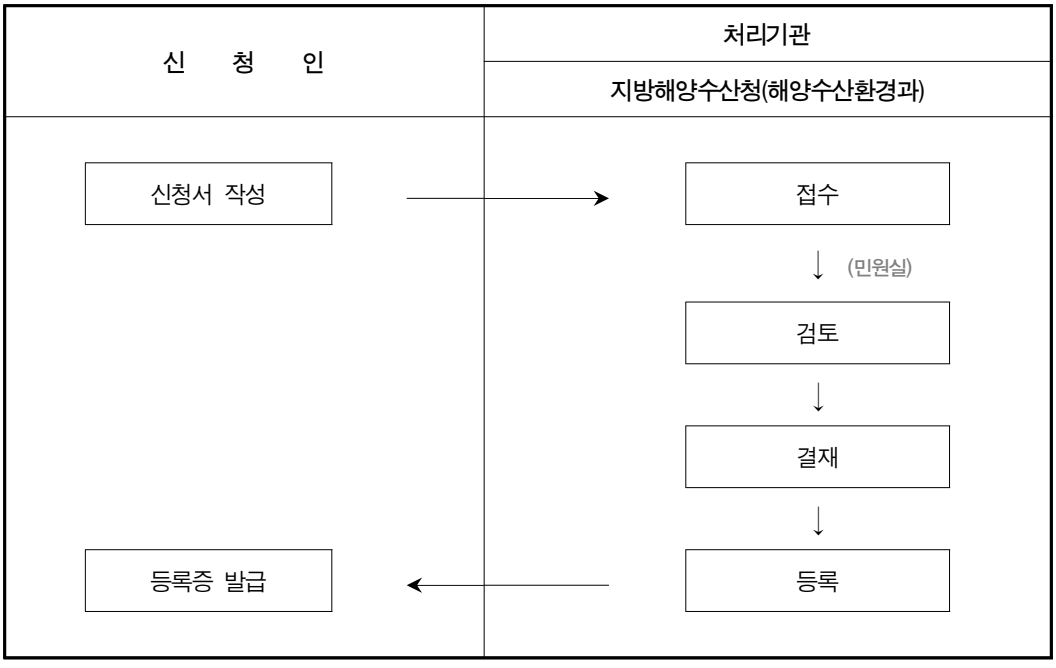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신규 등록시>

1. 정관 1부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변경 등록시>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등을 갖추었는지 심사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56조 기술능력 기준(별표 11) 적합여부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등록기준(별표 14) 적합여부
-「해양환경관리법」 제71조 결격사유 해당여부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대표자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④ 명칭(상호)				전화	
⑤ 자본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정관 1부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 폐기물해양배출업 □ 폐기물해양수거업 □ 퇴적오염물질수거업 □ 해양오염방제업 □ 유창청소업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④ 명칭(상호)			(전화:)	
⑤ 변경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퇴적오염물질 수거업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양보전과(연락처 : 044-200-5307)
- 접수 및 처리기관 : 각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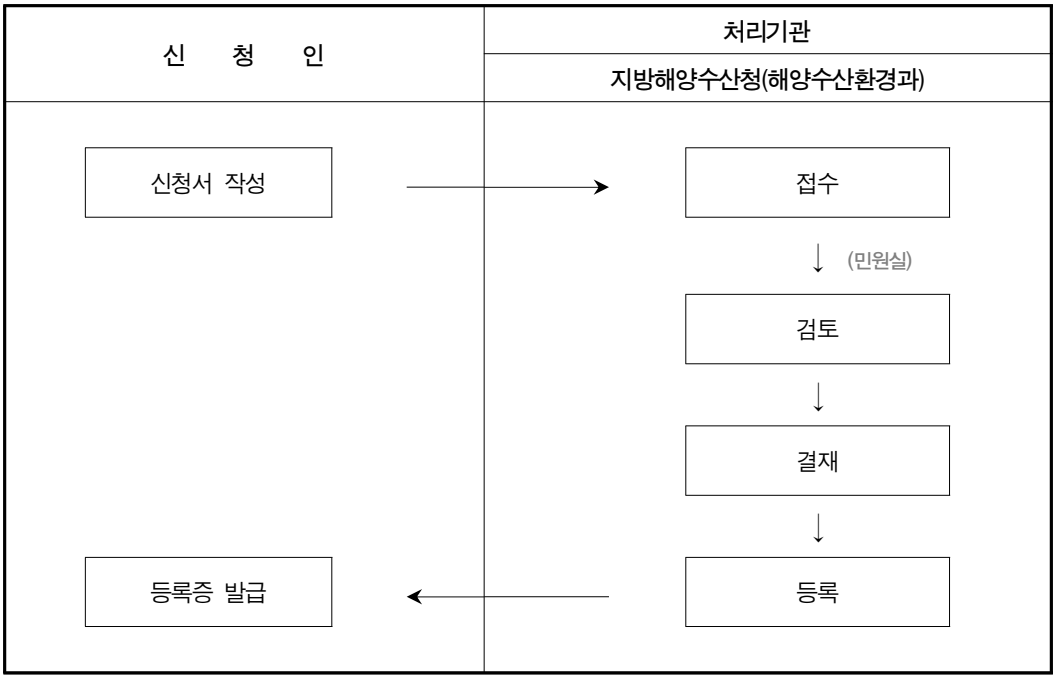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장비 및 설비등을 갖추었는지 심사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3.24〉

(앞쪽)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④ 명칭(상호)				전화	
⑤ 자본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정관 1부 2.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 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양보전과(연락처 : 044-200-5306)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 최초21일, 변경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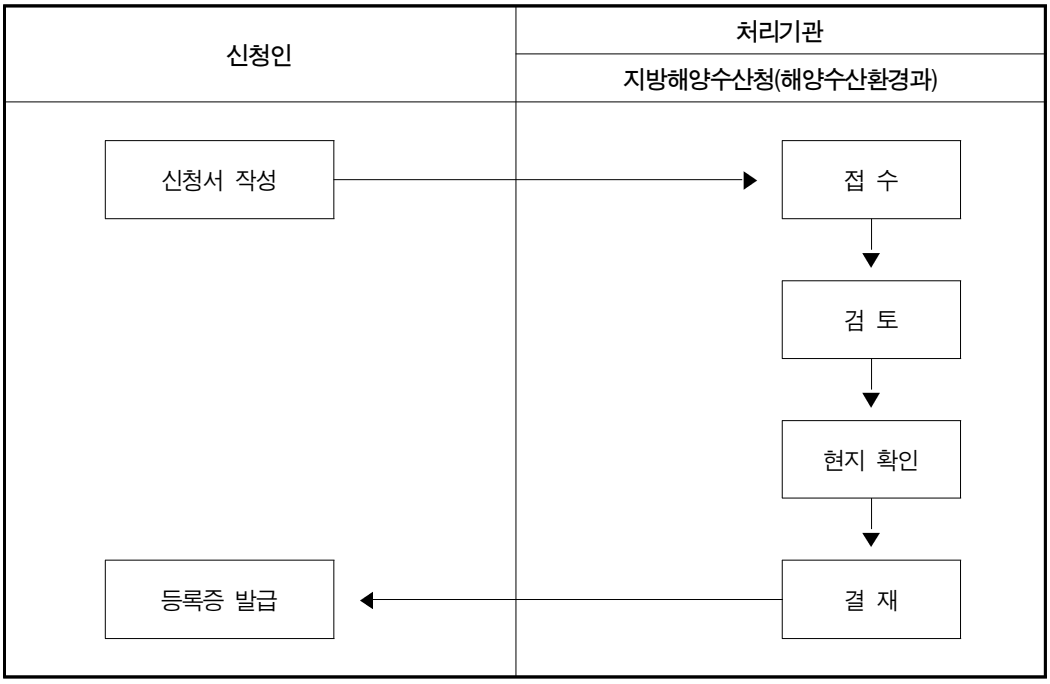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1. 최초 등록시

(1)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재. 약제의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인정서 및 그 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1부

2. 변경 등록시

(1) 1.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증

(2)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공무원 확인사항

1. 최초 등록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 등록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2.6.27〉

(앞쪽)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등록 신청: 14일 변경등록 신청: 10일
신청인	① 기관(업체)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⑤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⑥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전화:)			
⑦ 실험실 소재지		(전화:)			
⑧ 변경내용 및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 × 297㎜(신문용지 54g/㎡)

수로사업등록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연락처 : 051-400-4124)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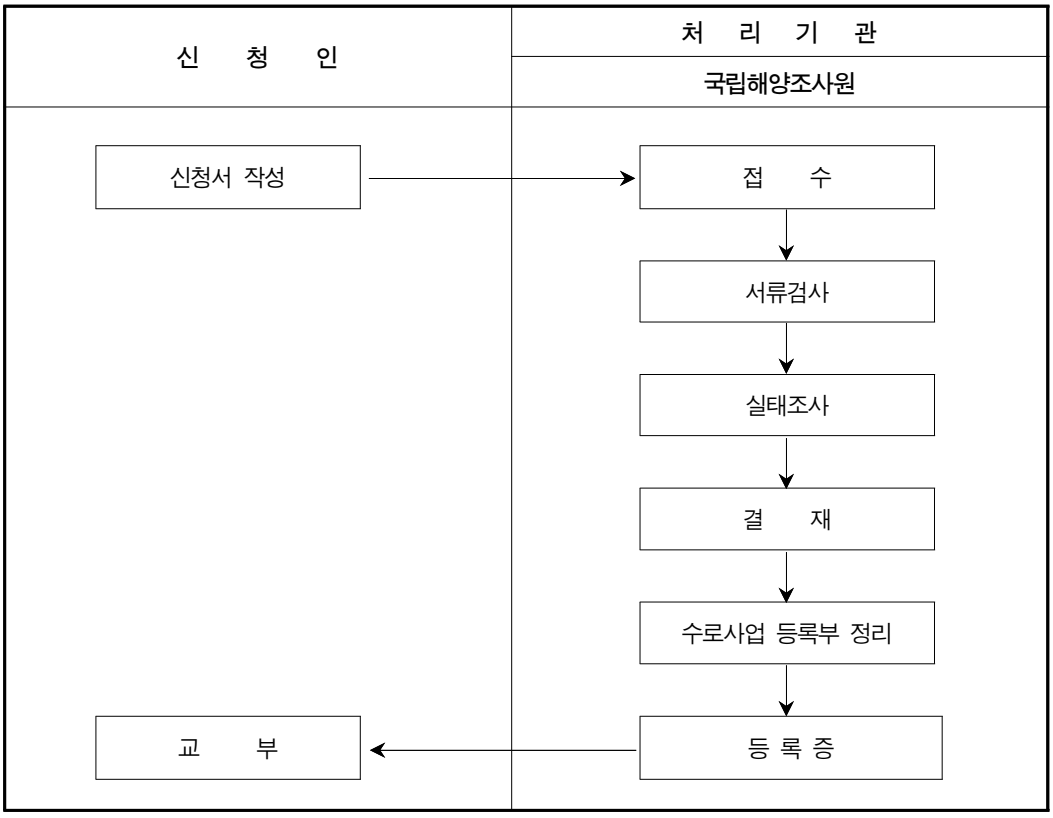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보유한 장비명세서 및 관련사진, 해당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경력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2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별표10(수로조사업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5.6.4〉

수로사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
사업내용	상호	
	영업소 소재지	
업무형태	[ ]수로조사업무 [ ]수로측량업무 [ ]해양관측업무 [ ]해도제작업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규정된 업무구분에 따라 ✓ 표 하십시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수로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로사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수수료 20,000원
국립해양조사원장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실태조사	→	결 재	→	수로사업 등록부 정리	→	등록증 작성	→	통 지
신청인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210㎜ × 297㎜(일반용지60g/㎡)

수로사업변경등록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 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연락처 : 051-400-4124)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처리기간 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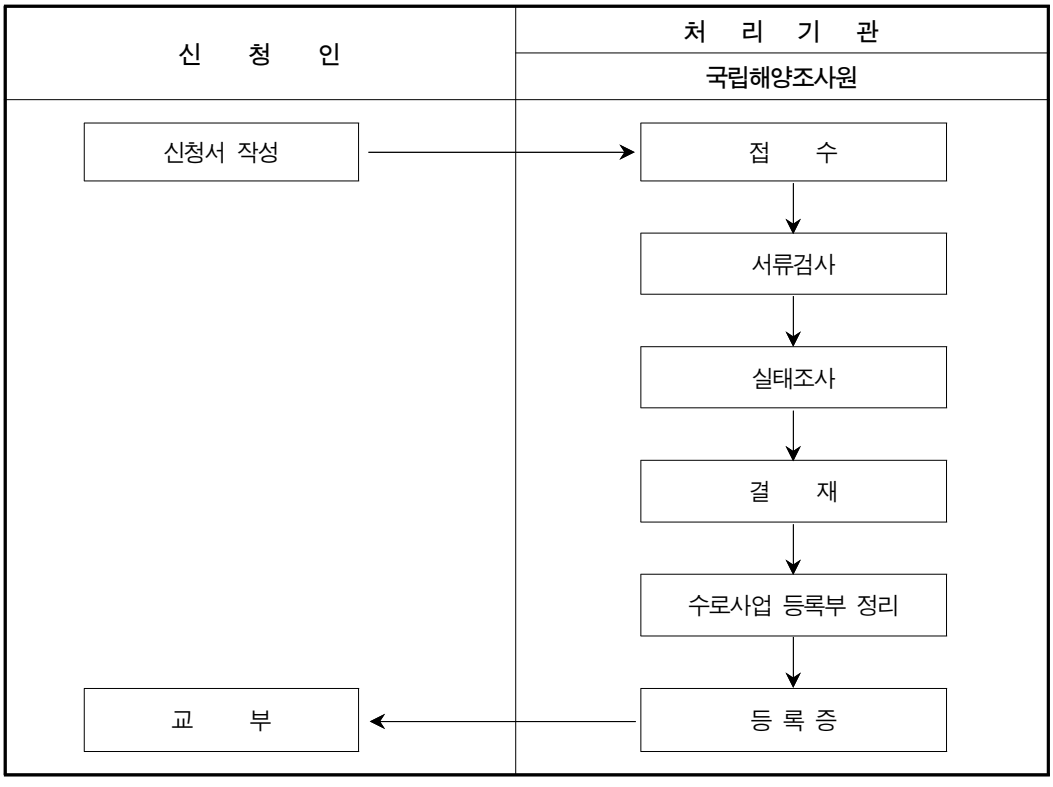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장비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관련사진
   - 소유권 또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한 기술자 변경의 경우
   - 입사 또는 퇴사한 기술자의 명단
   - 입사한 기술인력의 수로기술 경력증명서
3. 영업장소, 상호, 성명, 대표자 변경의 경우(법인인 경우에 한함)
   -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별표10(수로조사업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5.6.4〉

수로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내용	상호	등록번호
		등록일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로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국립해양조사원장 확인사항	
영업장소 변경의 경우	없음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상호 변경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법인)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장비 변경의 경우	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관련 사진 2. 소유권 또는 임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보유 기술자 변경의 경우	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자의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수로기술 경력증명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서류검토	→	실태조사	→	결 재	→	수로사업등록부 정리	→	등록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210㎜ × 297㎜(일반용지60g/㎡)

수로사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 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연락처 : 051-400-4124)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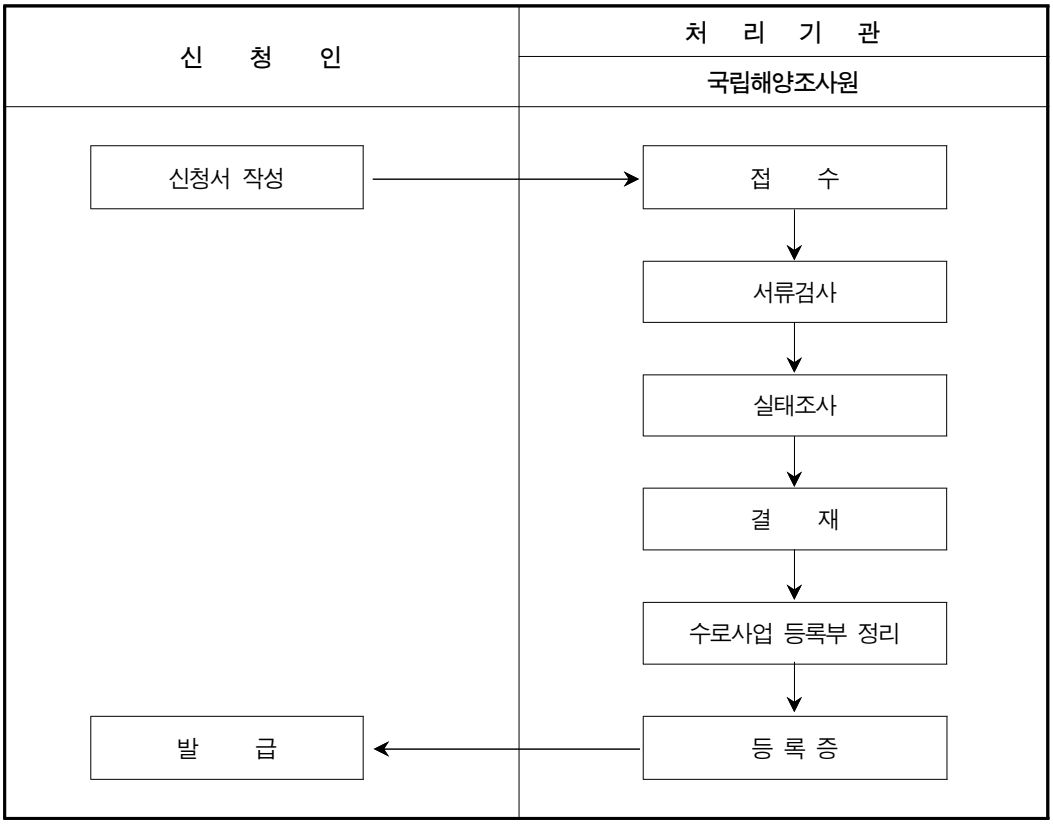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잃어버린 경우 : 경위서 1부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1부
- 수수료 : 2,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서류 적정여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5.6.4〉

수로사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내용	상호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사업종류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따라 수로사업(등록증,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서류검토	→	실태조사	→	결 재	→	수로사업등록부 정리	→	등록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원		

210㎜×297㎜(일반용지60g/㎡)

측량기준점표지 이전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051-400-4222)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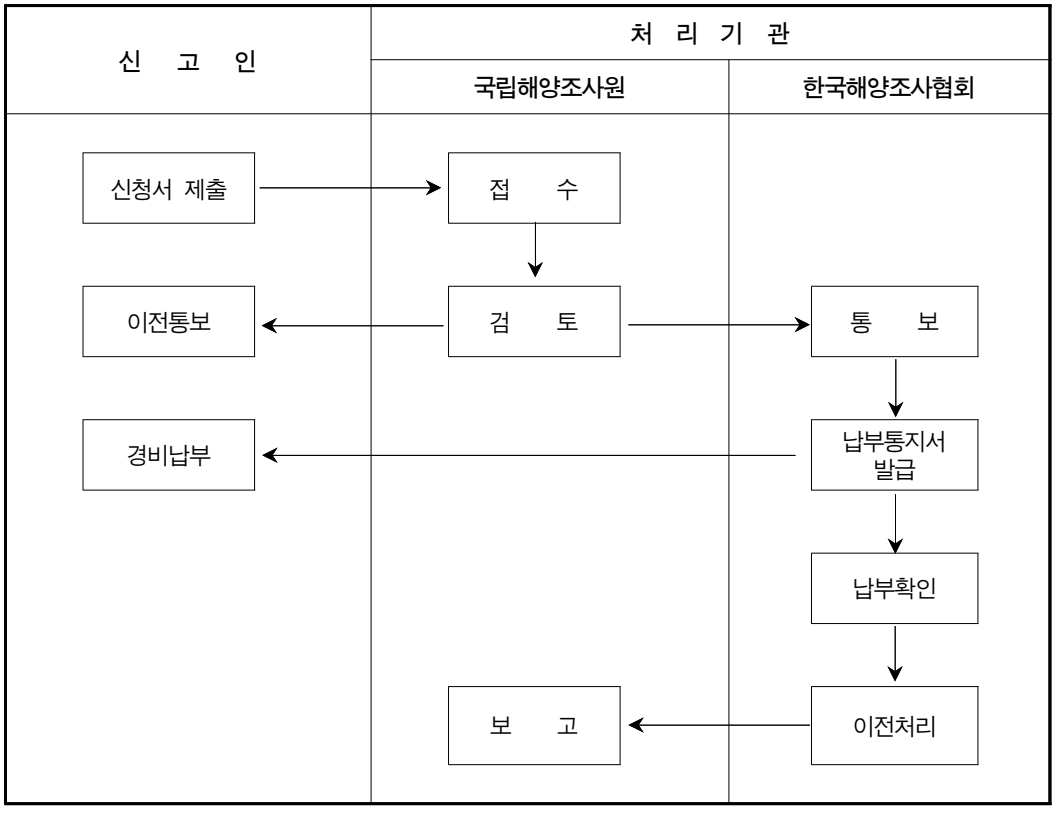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2. 현장사진
- 수수료 : 없음(단,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이전에 필요한 소요경비 별도 납부)

※ 수로조사표 이전경비의 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의함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로조사표 이전신청의 절차 및 방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31.〉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대표자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	
	설치 장소	
	이전 사유	
	이전 희망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이전 위탁	→	이 전	→	이전결과 보고	→	확 인	→	통 보
신청인		관련기관		관련기관		업무위탁기관		업무위탁기관		관련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로조사성과 사본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7조 제2항
- 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051-400-4223, 4233)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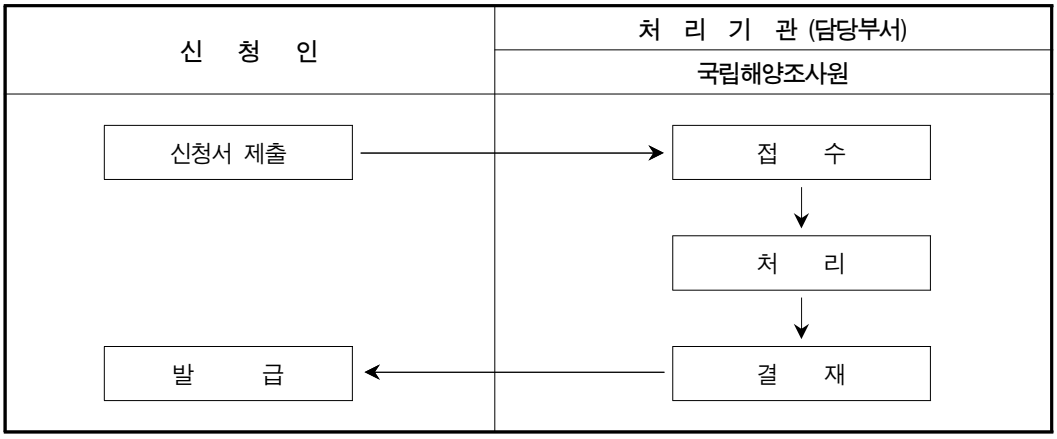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수로조사성과 사본발급 신청서
- 수 수 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 작성내용의 적정성 여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5.6.4.〉

수로조사성과 사본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또는 기관명(대표자)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목적	
	생산연도 및 기간	
	신청자료종류	
	구역	
	수량	
	단위	비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수로조사성과의 사본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처 리	결 재	사본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해양조사원)	처 리 기 관 (국립해양조사원)	처 리 기 관 (국립해양조사원)	

210㎜x297㎜(일반용지60g/㎡)

수로기준점 이전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051-400-428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조사협회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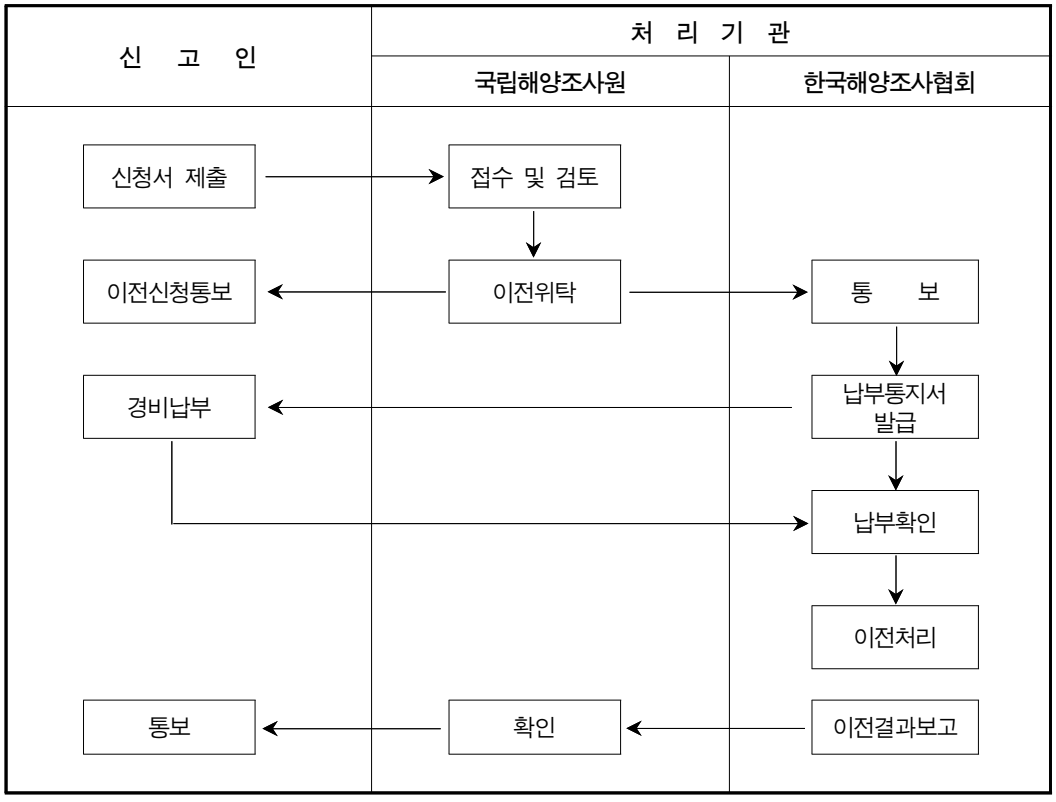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2. 현장사진

- 수 수 료 : 없음(단,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이전에 필요한 소요경비 별도 납부)

※ 수로기준점 이전경비의 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는 고시(수로기준점 및 영해기준점 이전 소요경비 산출기준)에 의함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 절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6.4.〉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대표자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
	설치장소
	이전사유
	이전희망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이전 위탁	→	이 전	→	이전결과 보고	→	확 인	→	통 보
신청인		관련기관		관련기관		업무위탁기관		업무위탁기관		관련기관		

210㎜×297㎜(일반용지60g/㎡)

수로조사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 남해·동해·서해 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연락처 : 남해소 051-638-9815 동해소 033-535-1712 서해소 041-950-5722)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남해·동해·서해 해양조사사무소,
  한국해양조사협회 (처리기간 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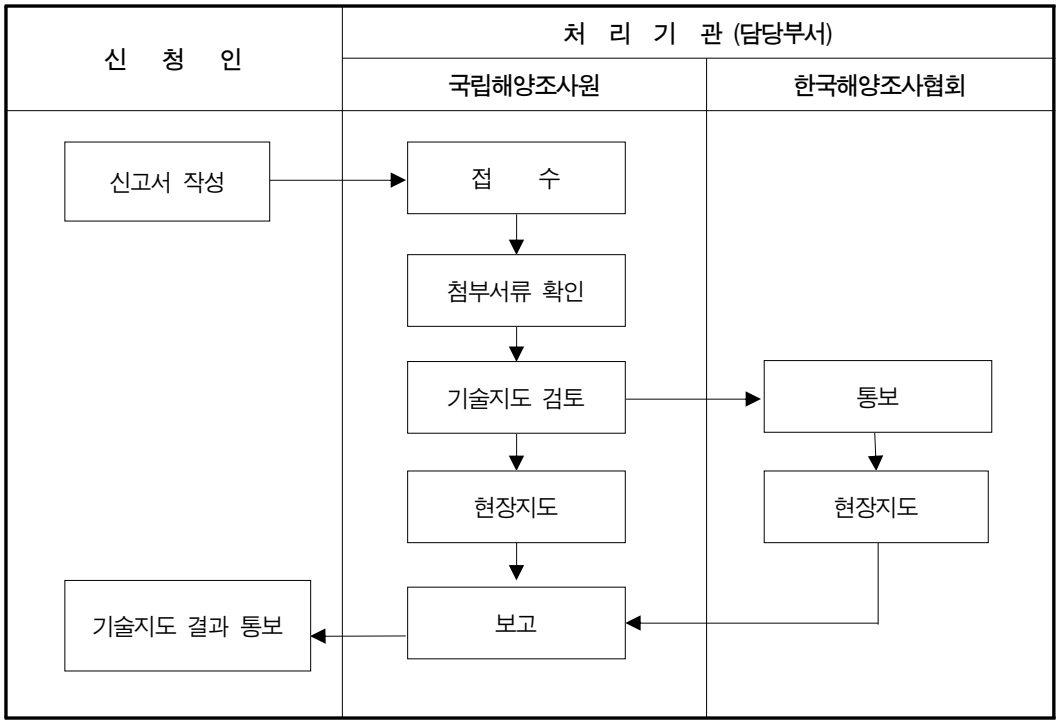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로조사 신고서
  2. 수로조사 계획서 및 관련 도면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조 관련 수로조사계획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수로조사 시행 10일 전 신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6.4〉

수로조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계획기관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시행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조사내용	목적	
	구역	
	기간	
	기준점	
	방법	
	성과종류 및 내용	
	조사요원의 현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수로조사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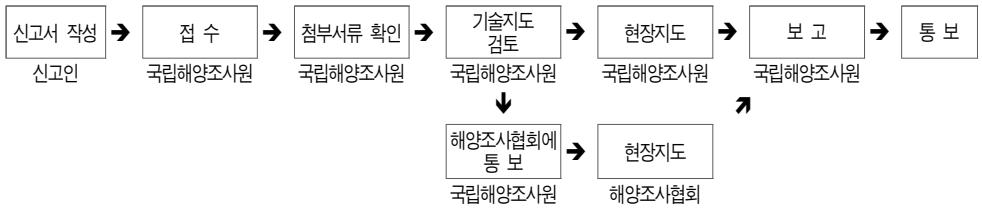

210㎜x297㎜(일반용지60g/㎡)

수로조사성과 심사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 남해·동해·서해 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연락처 : 남해소 051-638-9815 동해소 033-535-1712 서해소 041-950-5722)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남해·동해·서해 해양조사사무소,
  한국해양조사협회 (처리기간 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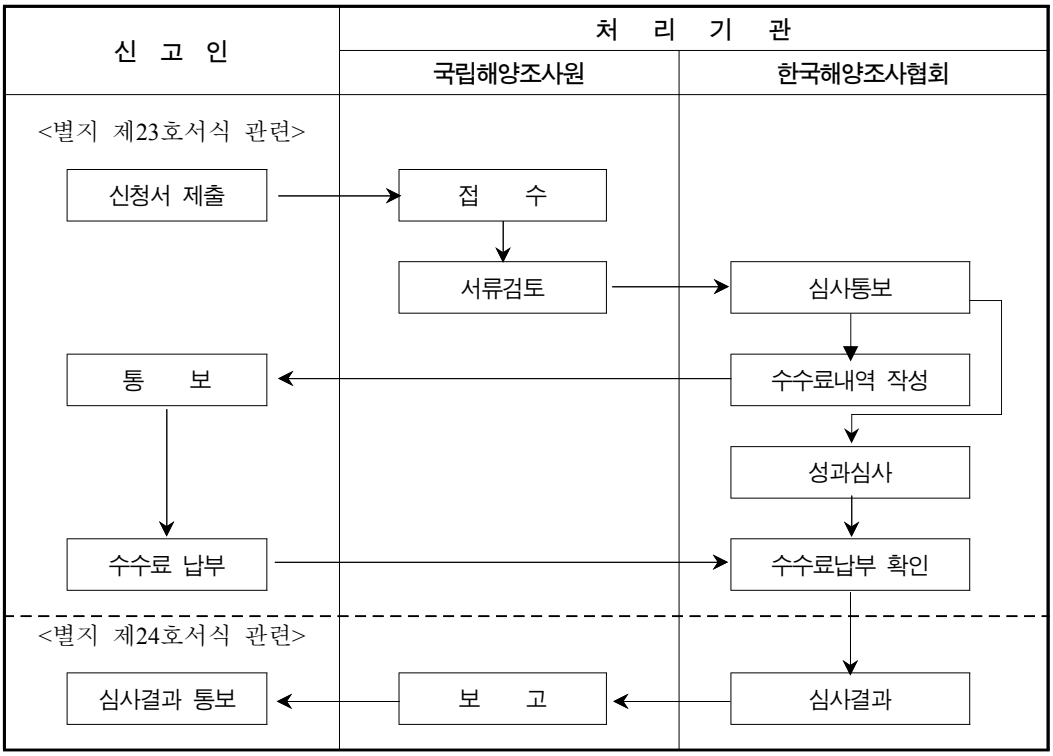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로조사성과 심사신청서
  2. 수로조사 성과자료
- 수 수 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로조사성과의 심사를 통지받은 때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신청인은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조사협회에 해당 수수료 납부

※ 수수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제3항 [별표14]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수로조사 성과자료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부기준(수로측량 업무규정 등)에 의해 적합성 여부판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성과심사 업무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1.4.11〉

수로조사성과 심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심사대상	수로조사의 종류
	수로조사의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로조사성과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로조사성과 자료	수수료 없음

210㎜x297㎜(일반용지60g/㎡)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수로조사 성과 심사 결과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 관 명			
	② 대 표 자 (성 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사 업 명				
⑥심사승인번호	제 - 호(년 월 일)			
⑦수로조사지역				
⑧수로조사계획기관				
⑨수로조사작업기관				
⑩수로조사기간				
⑪심사내용				
⑫심사종합판정내용				
⑬심사기간				
⑭심사자				
⑮심사종합평가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로조사성과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직인

※ 구비서류: 없음

210㎜×297㎜(일반용지60g/㎡)

항행통보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항
- 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연락처 : 051-400-433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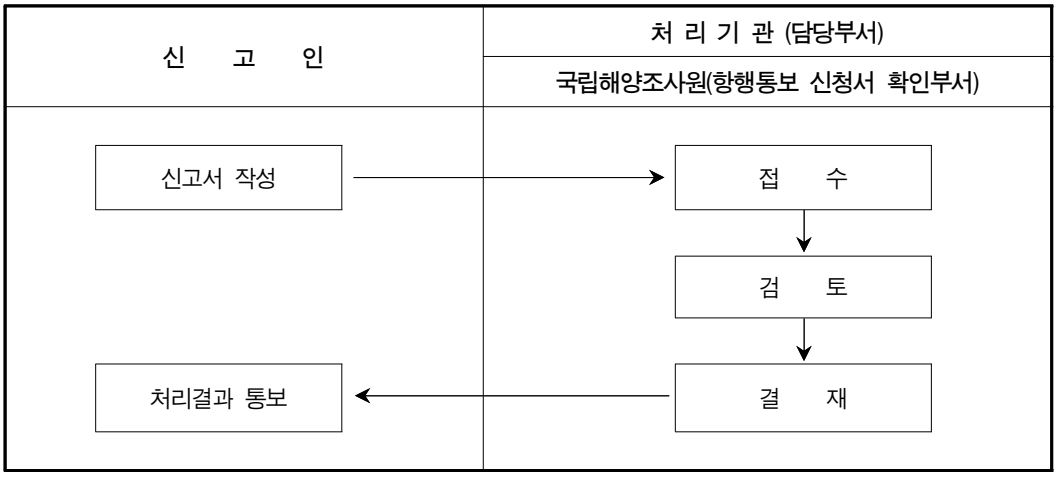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신청서
- 수 수 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내용의 적정성 여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6.4.〉

항행통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수령지 주소	
항행통보 신청부수	국문	
	영문	
신청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항행통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 ×297㎜(일반용지60g/㎡)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8조 제1항
- 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연락처 : 051-400-4312)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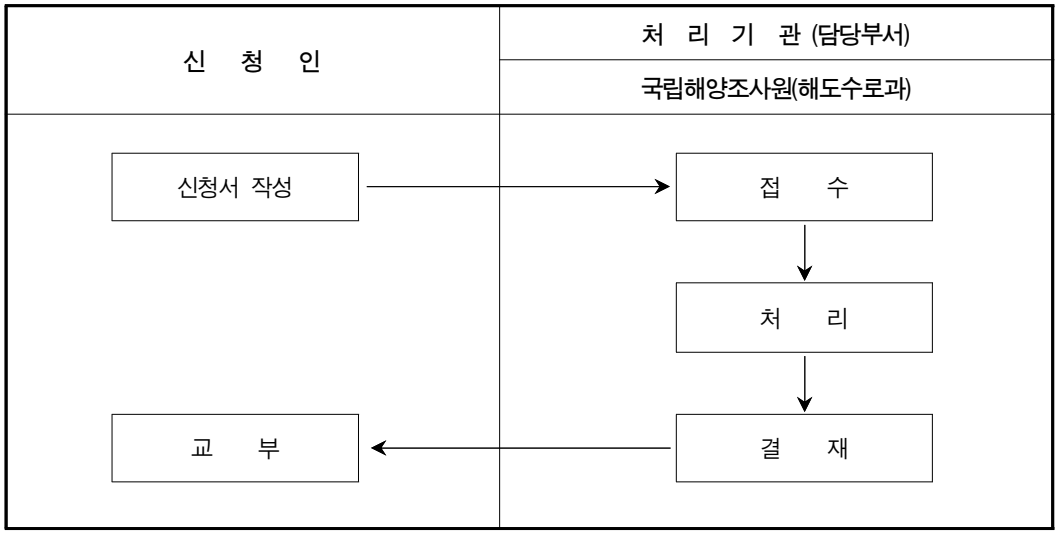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수로도서지 판매망 설치현황이 포함된 것)
2. 임원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설비구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수치제작물의 대행업자에 한정)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수로도서지를 판매하는 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6.4.〉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지정종류 해도 및 서지류 대행( ), 수치제작물 대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수로도서지 판매망 설치 현황) 2.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설비 구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수치제작물의 대행업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국립해양조사원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297㎜(일반용지60g/㎡)

수로도서지 복제·유사제작물 발행 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 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연락처 : 051-400-4313)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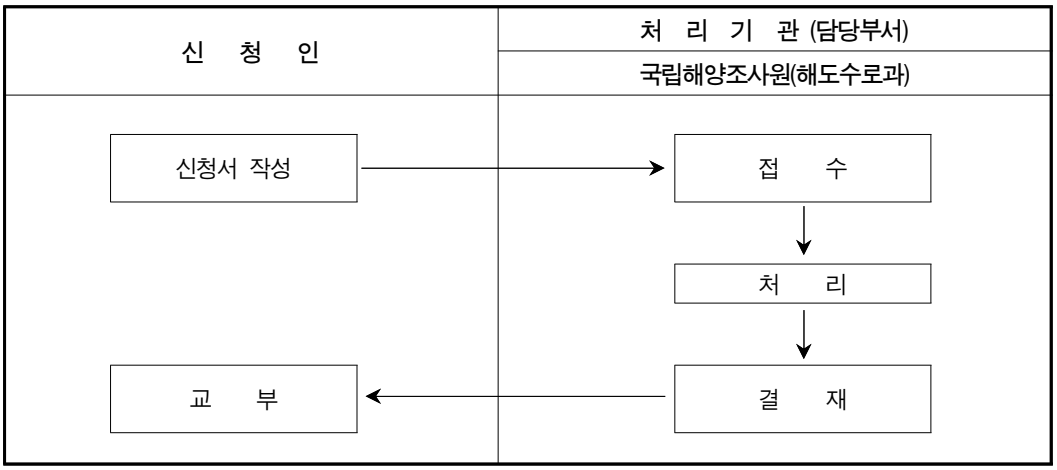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복제 또는 유사제작물 발행에 관한 계획서
  2. 유사제작물의 견본과 그 인쇄예본(印刷例本) 또는 설명서(유사제작물 발행의 경우에 한함)
  3. 원본자료의 사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유사제작물 발행의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에 의한 원판 사용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서류완비 여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6.4.〉

수로도서지 복제 · 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e-mail
	전화번호	FAX
	주소	

신청내용	용도	① 갱신 정보 필요 유무
	사용할 수로도서지명	② 수치제작물 유형
	③ 복제범위 [ ]전부 [ ]일부( )	
	제작시기 [ ]1회 [ ]연속	제작수량
	제작방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로도서지(복제 · 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복제 또는 유사제작물 발행에 관한 계획서 2. 유사제작물의 견본과 그 인쇄예본(印刷例本) 또는 설명서(유사제작물을 발행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3. 원본자료의 사용량을 증명할 자료(유사제작물을 발행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별표 15의 수로도서지 복제 등의 승인신청 수수료 산정기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① 에는 사용할 원본이 수치제작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나.② 에는 사용할 원본이 수치제작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형: 전자해도 · 벡터형 수치해도 중 선택)
다.③ 에는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

원양어업(해외합작원양어업) 폐업 등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1조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연락처 : 044-200-5367)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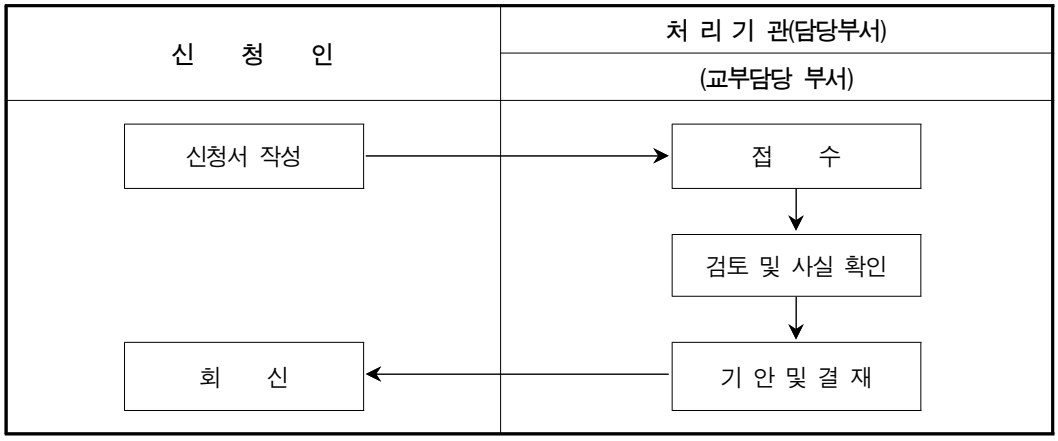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폐업, 휴업)
  1.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 1부(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휴업연장, 개시(첨부서류 없음)
- 수수료 : 없음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29〉

[ ] 원양어업
[ ] 해외합작원양어업

[ ] 폐업 등
[ ] 휴업
[ ] 휴업기간 연장
[ ] 개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원양어업 허가번호	허가기간
폐업 등	폐업(예정)일	
	사유	
휴업	기간	
	사유	
휴업연장	휴업신고 수리기간	연장기간
	사유	
개시	휴업신고 수리기간	재개(예정)일
	사유	

「원양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폐업 등, 휴업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 1부(원양어업 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휴업연장, 개시	첨부서류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연락처 : 044-200-53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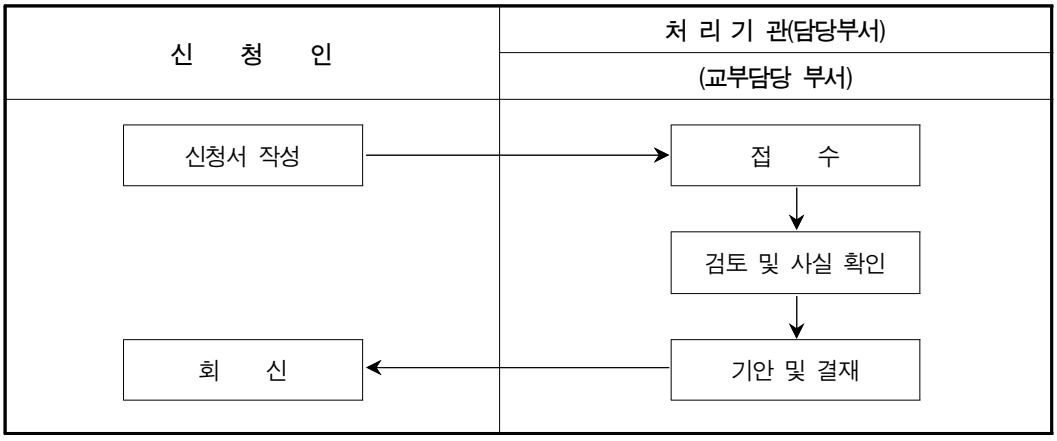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3.24〉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서(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업자	주소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사업 규모		
합작내용	합작대상자	국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성명	
	합작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투자 규모	투자 비율	

「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양어업관련사업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검토 또는 사실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고인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원양어업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연락처 : 044-200-5367)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처리기간 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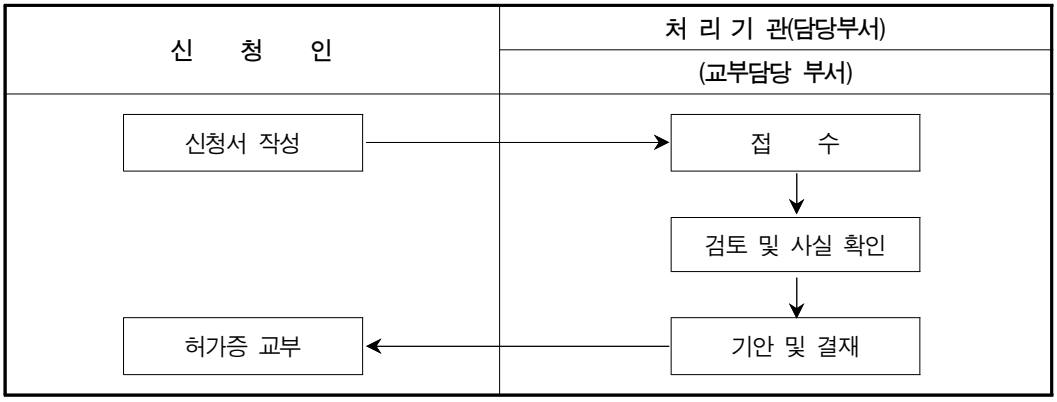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3. 선박검사증서 사본(원본대조확인)
  4.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
  5.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허가어선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수수료 : 없음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7.〉

원양어업 [ ] 허가 [ ] 허가유예 [ ]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신청 : 4일 유예, 변경 : 2일

신청인	업체명(국문/영문)	
	주 소(국문/영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국문/영문)	생년월일

사용어선	어선종류(국문/영문)	선명(국문/영문)
	어선번호(국문/영문)	톤수(톤)
	승선원(명)	기관 종류(국문/영문)
	마력(HP)	선질(국문/영문)

주 어업	어업의 종류(국문/영문)	어업의 명칭(국문/영문)
	조업수역(국문/영문)	어업의 시기
	포획물·채취물의 종류(국문/영문)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그 외의 어업	어업의 종류(국문/영문)	어업의 명칭(국문/영문)
	조업수역(국문/영문)	어업의 시기
	포획물·채취물의 종류(국문/영문)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유예 사유 또는 허가변경 사유	원양어업 허가번호
	유예(변경) 사유

유예(변경) 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유예신청기간 또는 변경사항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2조·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 부 서 류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 신청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 1부 5.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허가어선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허가의 유예 신청 시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 신청시	1. 원양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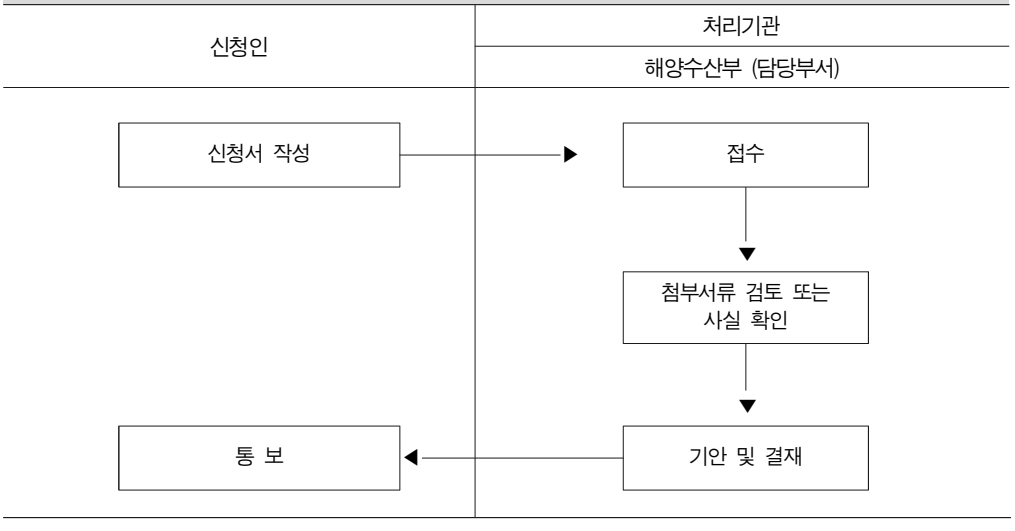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연락처 : 044-200-5367)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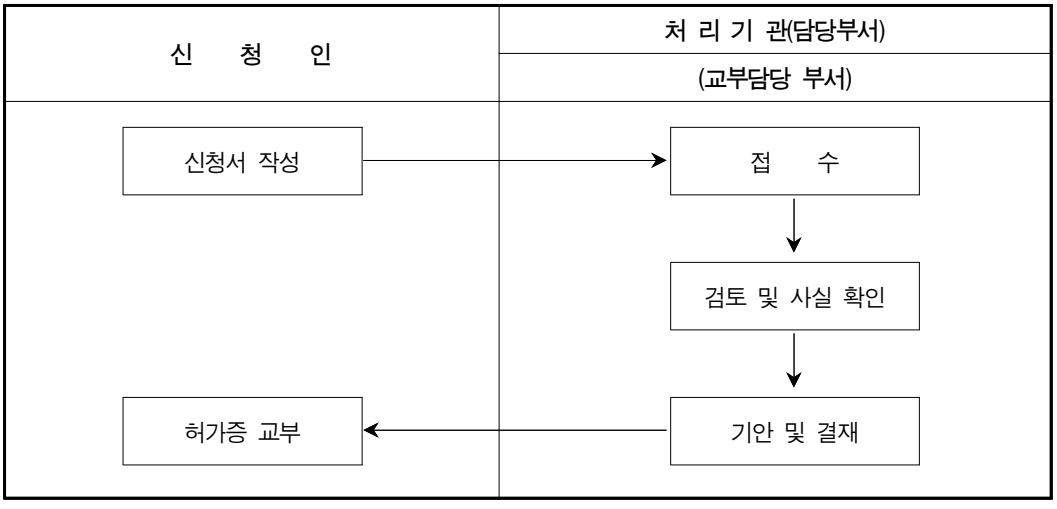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원양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4〉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허가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신청사항)	
변경사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원양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검토 또는 사실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허가증 재발급)
신고인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연락처 : 044-200-5367)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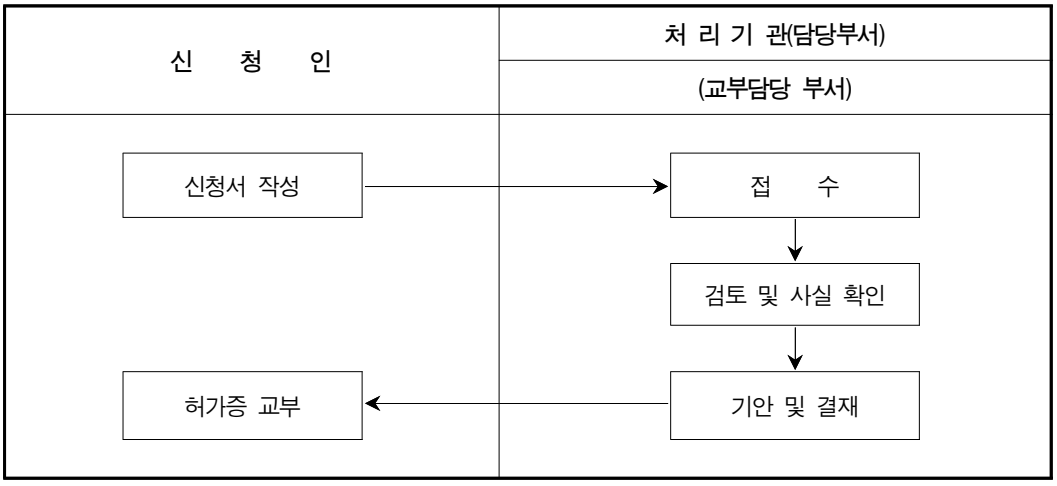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원양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7.〉

원양어업 [ ] 허가 [ ] 허가유예 [ ]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신청 : 4일 유예, 변경 : 2일

신청인	업체명(국문/영문)	
	주 소(국문/영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국문/영문)	생년월일

사용어선	어선종류(국문/영문)	선명(국문/영문)
	어선번호(국문/영문)	톤수(톤)
	승선원(명)	기관 종류(국문/영문)
	마력(HP)	선질(국문/영문)

주 어업	어업의 종류(국문/영문)	어업의 명칭(국문/영문)
	조업수역(국문/영문)	어업의 시기
	포획물·채취물의 종류(국문/영문)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그 외의 어업	어업의 종류(국문/영문)	어업의 명칭(국문/영문)
	조업수역(국문/영문)	어업의 시기
	포획물·채취물의 종류(국문/영문)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유예 사유 또는 허가변경 사유	원양어업 허가번호
	유예(변경) 사유

유예(변경) 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유예신청기간 또는 변경사항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2조·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 부 서 류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 신청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 1부 5.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허가어선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허가의 유예 신청 시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 신청시	1. 원양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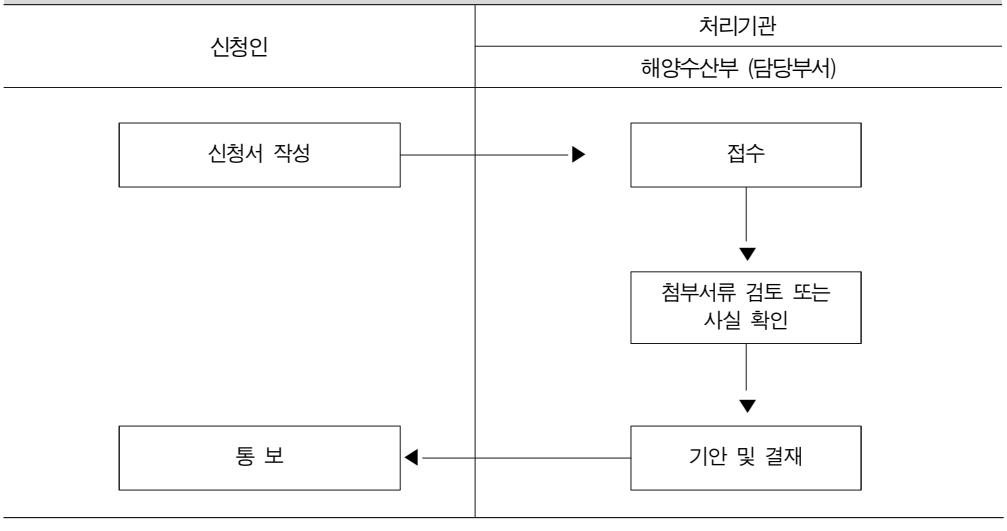

원양어업허가유예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연락처 : 044-200-5367)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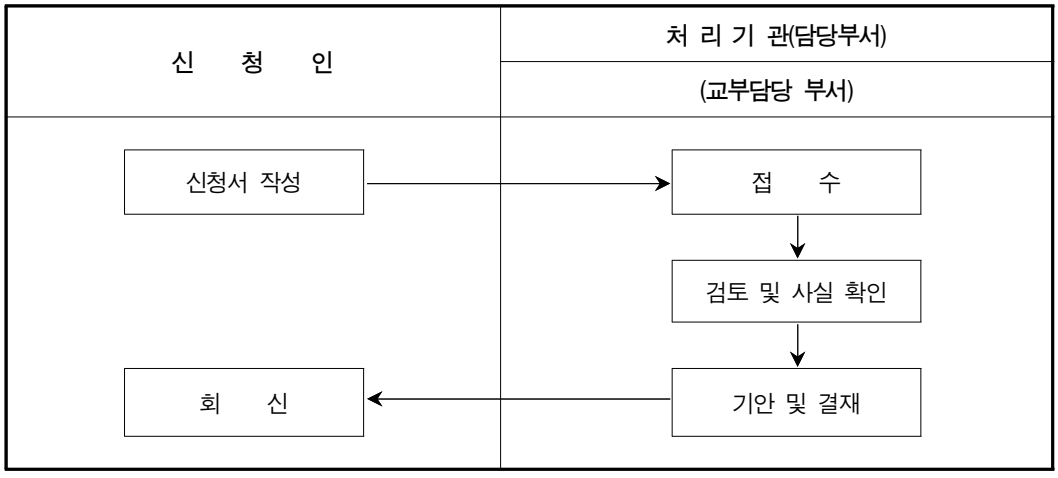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7.〉

원양어업 [ ] 허가 / [ ] 허가유예 / [ ]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신청 : 4일 유예, 변경 : 2일

신청인	업체명(국문/영문)	
	주 소(국문/영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국문/영문)	생년월일

사용어선	어선종류(국문/영문)	선명(국문/영문)
	어선번호(국문/영문)	톤수(톤)
	승선원(명)	기관 종류(국문/영문)
	마력(HP)	선질(국문/영문)

주 어업	어업의 종류(국문/영문)	어업의 명칭(국문/영문)
	조업수역(국문/영문)	어업의 시기
	포획물·채취물의 종류(국문/영문)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그 외의 어업	어업의 종류(국문/영문)	어업의 명칭(국문/영문)
	조업수역(국문/영문)	어업의 시기
	포획물·채취물의 종류(국문/영문)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유예 사유 또는 허가변경 사유	원양어업 허가번호
	유예(변경) 사유

유예(변경) 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유예신청기간 또는 변경사항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2조·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 부 서 류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 신청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 1부 5. 기존 어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면(허가어선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허가의 유예 신청 시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 신청시	1. 원양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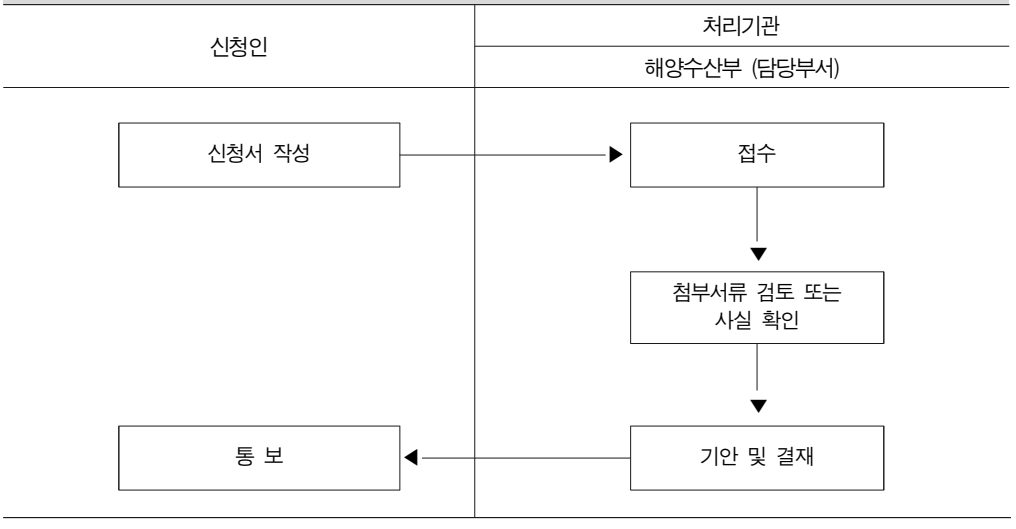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담당부서 : 원양산업과(연락처 : 044-200-5367)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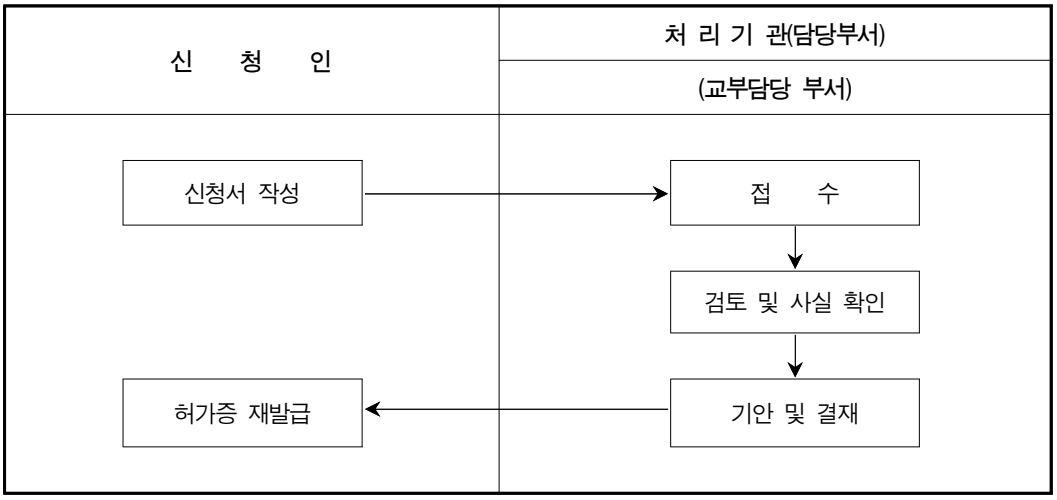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원양어업허가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4〉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허가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사유		
재발급 사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원양어업허가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검토 또는 사실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허가증 재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민원편람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ART

02

수산정책

해양수산부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연락처 : 044-200-5450)
- 접수 및 처리기관 : 유통정책과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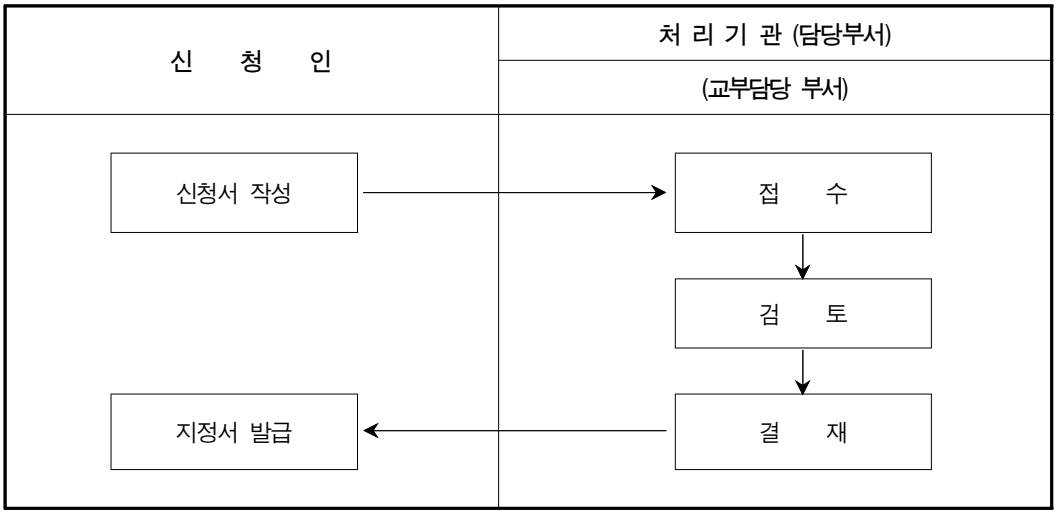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정관(법인만 해당)
3.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확보 현황
5. 품질검사에 관한 자체 규정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소금제조업자가 아닐 것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	본 사 (전화번호:)	
	사 업 장 (전화번호:)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확보 현황 1부 4. 품질검사에 관한 자체규정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현장조사)	→ 결 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소금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염전개발·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연락처 : 044-200-5450)
- 접수 및 처리기관 : 기초지자체 (처리기간 없음)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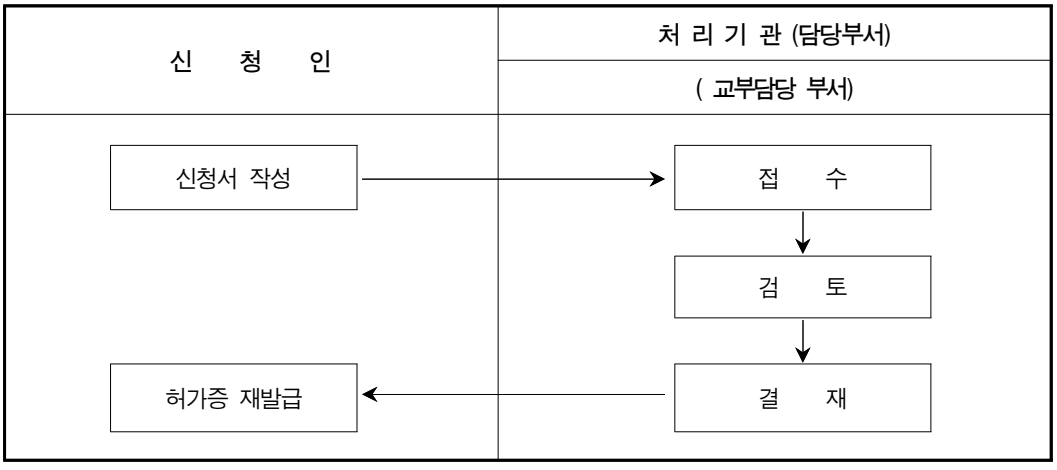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재발급 신청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재발급의 필요성, 재발급 사유의 진실성

염전개발·소금제조업 변경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연락처 : 044-200-5450)
- 접수 및 처리기관 : 기초지자체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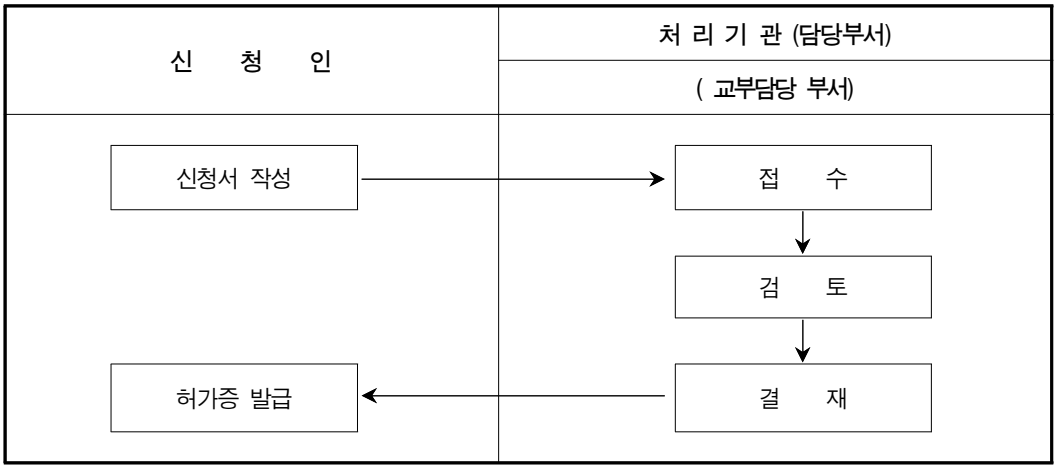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변경 신청서
  2. 기 발급된 허가증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 내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의 정합성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염전 소재지			
	염전 면적	총면적		㎡
		결정지 면적		㎡
		증발지 면적		㎡
		그 밖의 면적		㎡
	연간 생산능력			
	염전개발 예정일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그 밖의 사항			

변경신청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허가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염전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도면) 1부 라. 해수 취수구의 해수 성분표 1부 2. 변경허가 신청 시 가. 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염전 소재지						
	제조장의 설비와 면적	시설명	단 위	수 량	시설명	단 위	수 량
	염전 면적	총면적	㎡				
		결정지 면적	㎡				
		증발지 면적	㎡				
		그 밖의 면적	㎡				
	생산할 소금의 종류	[ ]천일염, [ ]천일식제조소금					
	연간 생산능력						
	그 밖의 사항						

변경신청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허가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조 · 가공 공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천일식제조소금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도면) 1부 마. 공장 설계도 및 기기 설치도(천일식제조소금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바. 해수 취수구의 해수 성분표 1부 2. 변경허가 신청 시 가. 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소금제조업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연락처 : 044-200-5450)
- 접수 및 처리기관 : 기초지자체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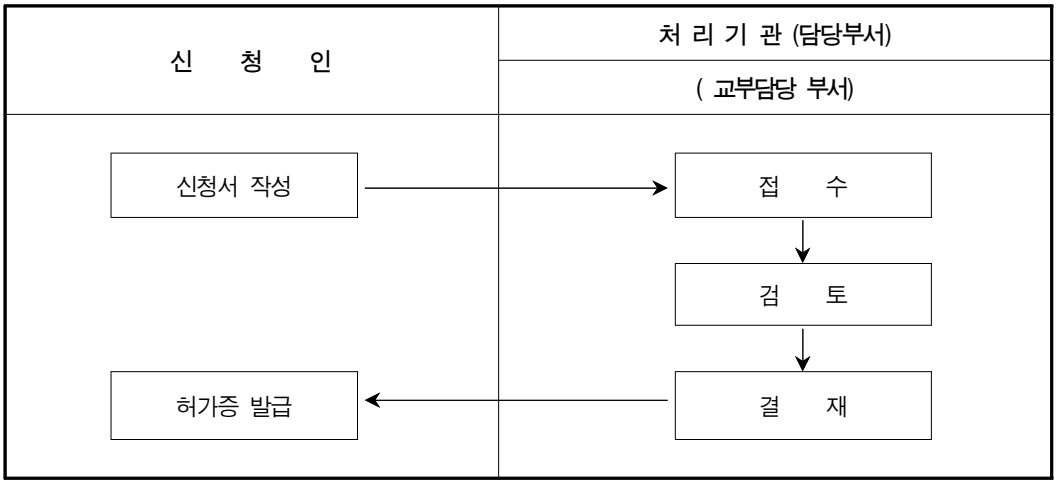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위치도(축적 25,000분의 1 도면)

5. 해수 취수구의 해수 성분표 1부

* 천일식제조소금제조업의 경우 제조·가공 공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 설계도 및 기기 설치도 추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필요 서류의 구비 여부와 진실성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염전 소재지						
	제조장의 설비와 면적	시설명	단 위	수 량	시설명	단 위	수 량
	염전 면적	총면적	㎡				
		결정지 면적	㎡				
		증발지 면적	㎡				
		그 밖의 면적	㎡				
	생산할 소금의 종류	[ ]천일염, [ ]천일식제조소금					
	연간 생산능력						
	그 밖의 사항						

변경신청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금제조업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허가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조 · 가공 공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천일식제조소금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도면) 1부 마. 공장 설계도 및 기기 설치도(천일식제조소금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바. 해수 취수구의 해수 성분표 1부 2. 변경허가 신청 시 가. 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염전개발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담당부서 : 유통정책과 (연락처 : 044-200-5450)
- 접수 및 처리기관 : 기초지자체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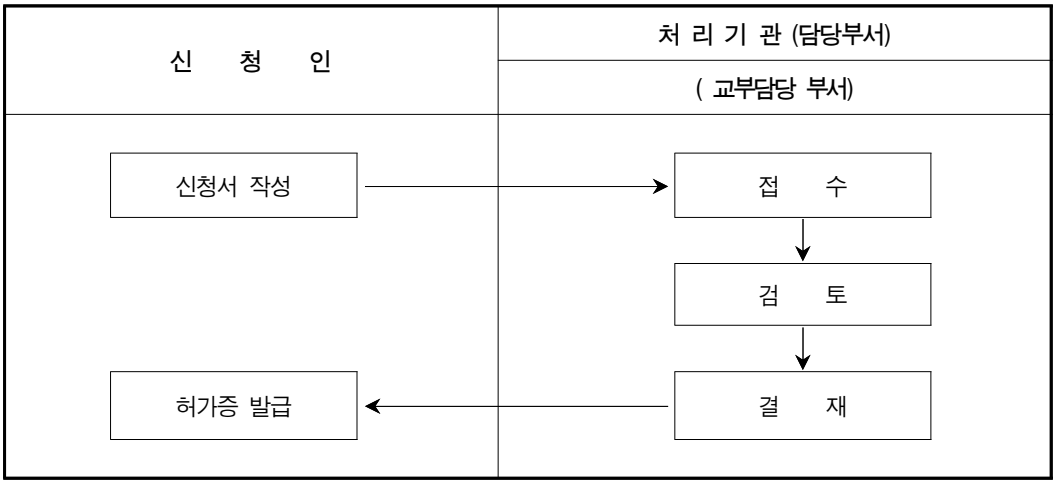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염전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위치도(축적 25,000분의 1 도면), 5. 해수 취수구의 해수 성분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필요 서류의 구비 여부와 진실성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염전 소재지			
	염전 면적	총면적		㎡
		결정지 면적		㎡
		증발지 면적		㎡
		그 밖의 면적		㎡
	연간 생산능력			
	염전개발 예정일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그 밖의 사항			

변경신청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염전개발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허가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염전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위치도(축척 25,000분의 1 도면) 1부 라. 해수 취수구의 해수 성분표 1부 2. 변경허가 신청 시 가. 허가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시 · 군 · 구 (소금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률 제25조
- 담당부서 : 수산자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538)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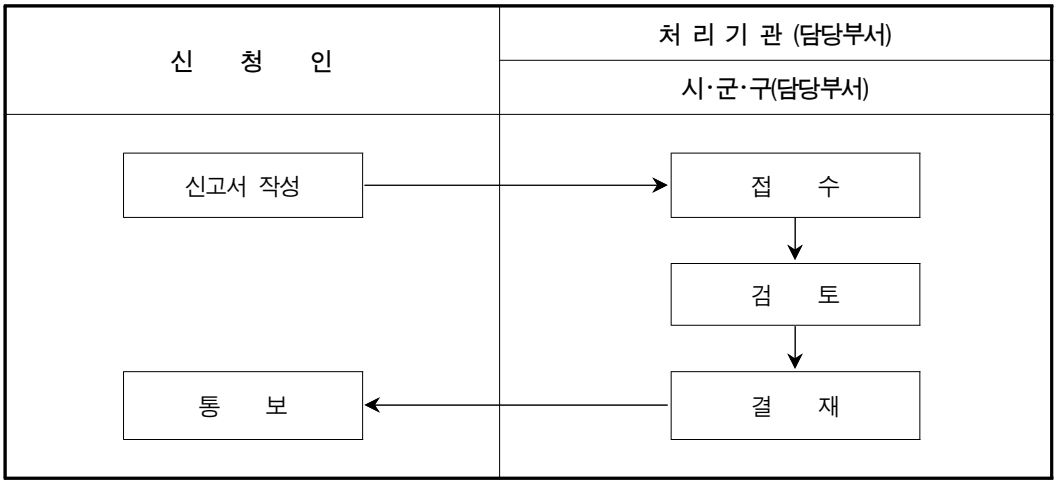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에 기재된 폐업 사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 번호	
	폐업일	
	폐업 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유어장(변경)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 담당부서 : 수산자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538)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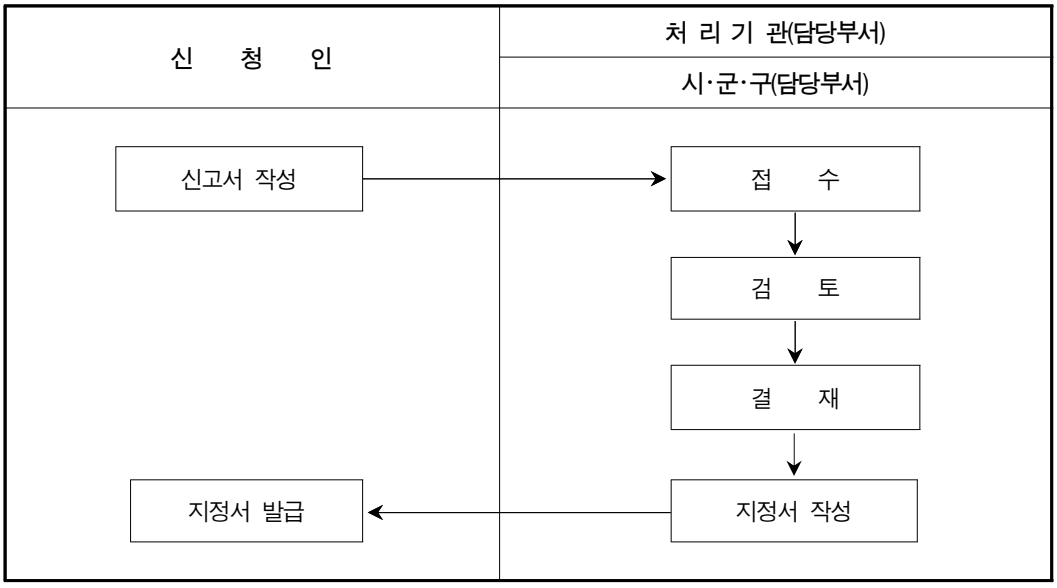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구역도

3.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 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증서 사본
7. 유어장(「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만 해당합니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증서 사본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및 첨부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2.8〉

유어장 [ ] 지정 [ ] 변경지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① 신 청 인	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허가사항	위치	인접						
	면허·허가번호	제 호	업종		면적	ha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m
	평균수심	m	포획·채취물의 종류					
	면허·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유어장의 위치·명칭 등	위치							
	유어장의 명칭			면적 ha				
④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방법								

⑤ 유어장의 시설계획	간이화장실	오물처리장	입간판	표지시설	기타편의시설
	개소	개소	개	개	개

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	관리선			안전장비						
	업종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	규모	구명 동의	구명 부환	구명줄	통신 기기	소화기	구급 약품	기타
			톤							
			톤							

⑦ 가두리 등 낚시터 시설계획 등	안전시설							기타				
	계류 로프	닻	부력	보행 통로	난간	구명 동의	구명줄	구명 부환	화장실	차양 시설	접안 시설	수용 인원

⑧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	
⑩ 기타 참고사항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률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담당부서 : 수산자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538)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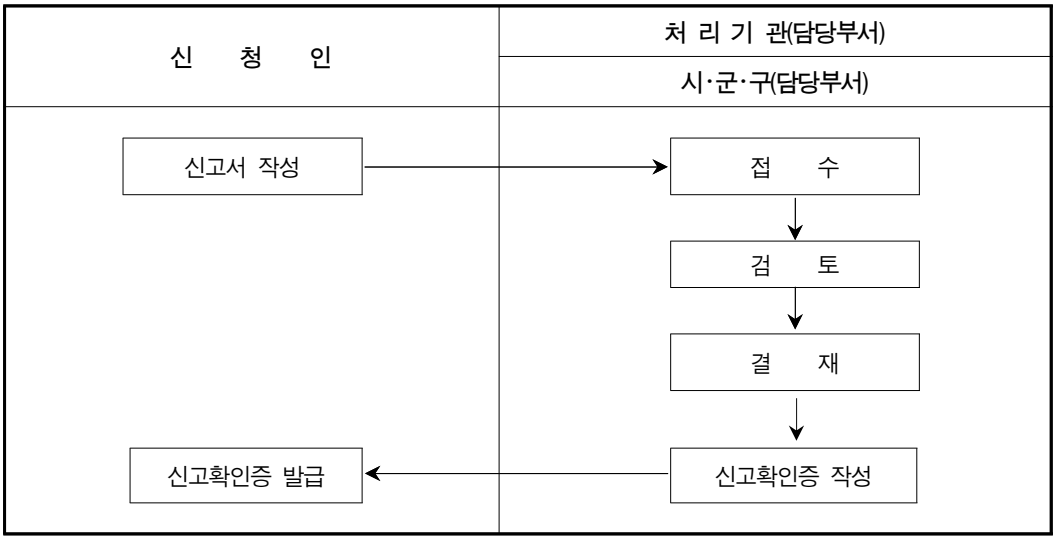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에 기재된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낚시어선업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률 제25조 제1항
- 담당부서 : 수산자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538)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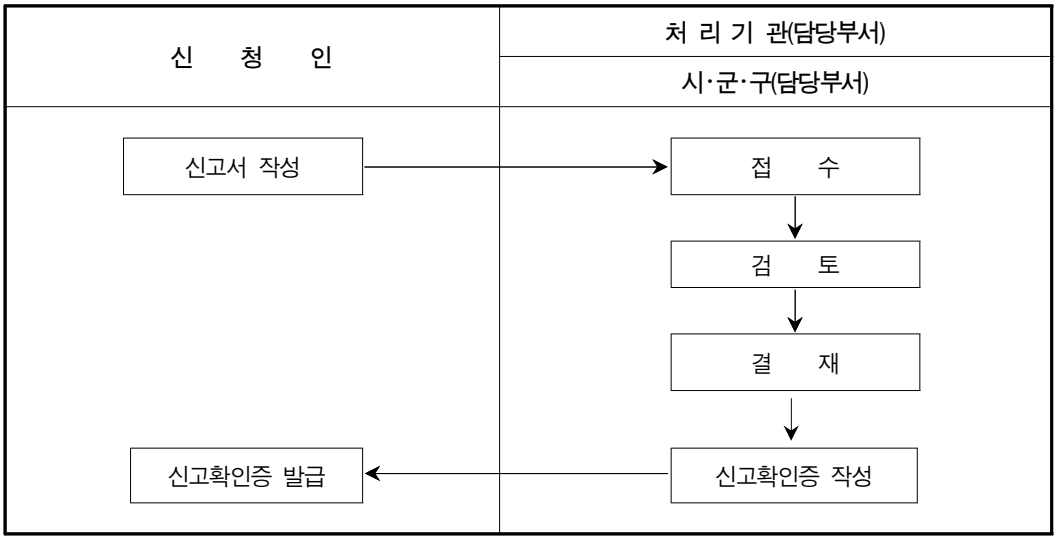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낚시어선업 신고 제출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24〉

낚시어선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선원 중 해기사면허 소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어선 명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톤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선적항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 수 명

주 영업장소	
영업시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수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포구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신고서 검토·확인	→	기안·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발 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4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1항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처리기간 3일), 시·군·구(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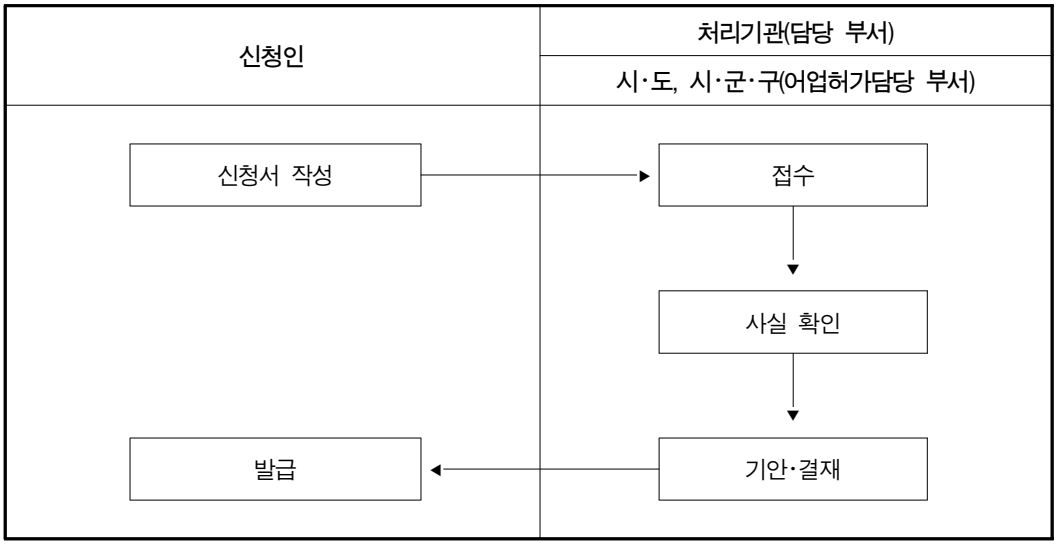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업허가지위 승계 요건 등

:: 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10.11.3〉

(제1쪽)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어선 또는 시설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마력			
	시설의 종류 및 규모·장비			

	주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한시어업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또는 시설(수면)의 위치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양식물 또는 생산종묘의 종류				
허가기간				
양륙항				
승계사유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상속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매입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임차	

「수산업법」 제44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부서류	1.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자는(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확인서"에서 같다)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행정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위반일	위반내용	진행상황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는 경우에는 위줄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한다.
2) 어업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 및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 및 승계를 하는 자는 위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제3쪽)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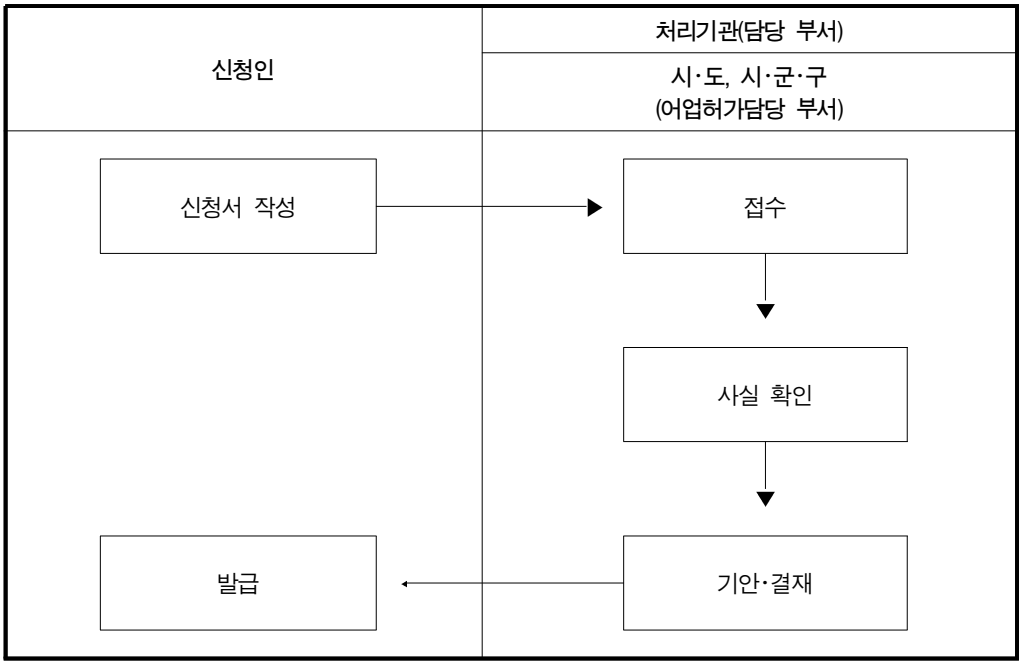

(뒤쪽)

첨부서류	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구역도 3.「수산업법」제65조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수산업법」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7. 유어장(「수산업법」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만 해당합니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②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허가어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⑦ 중 "로프"는 지름을 적고, "닻"은 ㎏, "부력"은 평방미터당 ㎏, "보행통로"는 폭, "난간"은 로프의 지름, "구명동의"는 개수, "구명줄"은 길이, "구명부환"은 개수, "화장실"은 좌변기 개수, "차양시설" 및 "접안시설"은 개수를 각각 적습니다.
유어장의 위치·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부터 2만 5천분의 1까지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유어장의 구역을 표시하여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를 준용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 검토 확인	→	기안 결재	→	지정서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2조(「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 허가를 포함합니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제5항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처리기간 5일), 시·군·구(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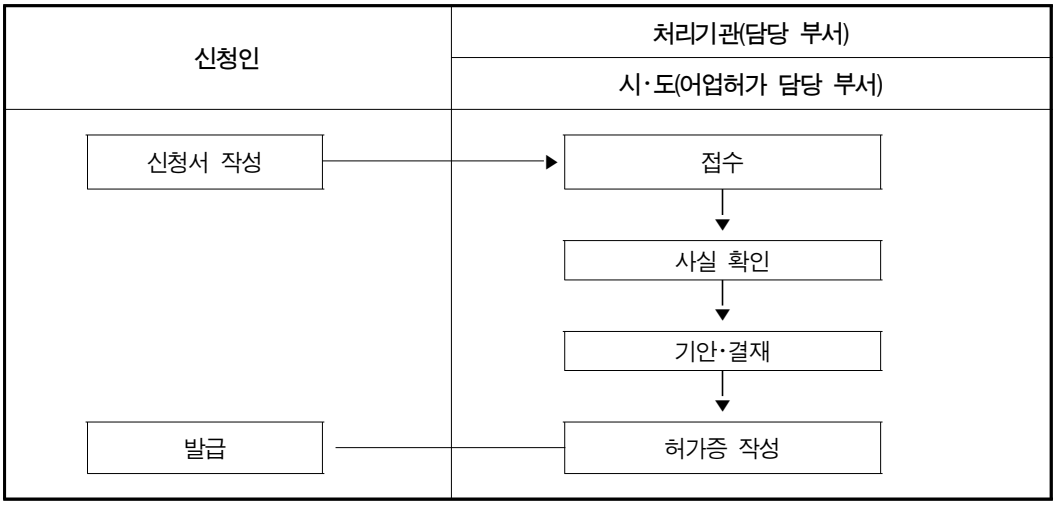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한시어업으로 인한 어획실적 및 연장기간 동안의 예상어획량 1부
2. 한시어업 허가증 1부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한시어업 허가연장 요건 등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도: 5일 시·군·구: 3일

신청인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속 단체명	직위

한시어업의 내용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의 종류	어획 할당량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내용	연장사유	연장기간

사용어선	어선번호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총톤수(톤)	마력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의 내용	구분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기간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수산업법」 제42조(「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합니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한시어업 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제출서류	1. 한시어업으로 인한 어획실적 및 연장기간 동안의 예상어획량 1부 2. 한시어업 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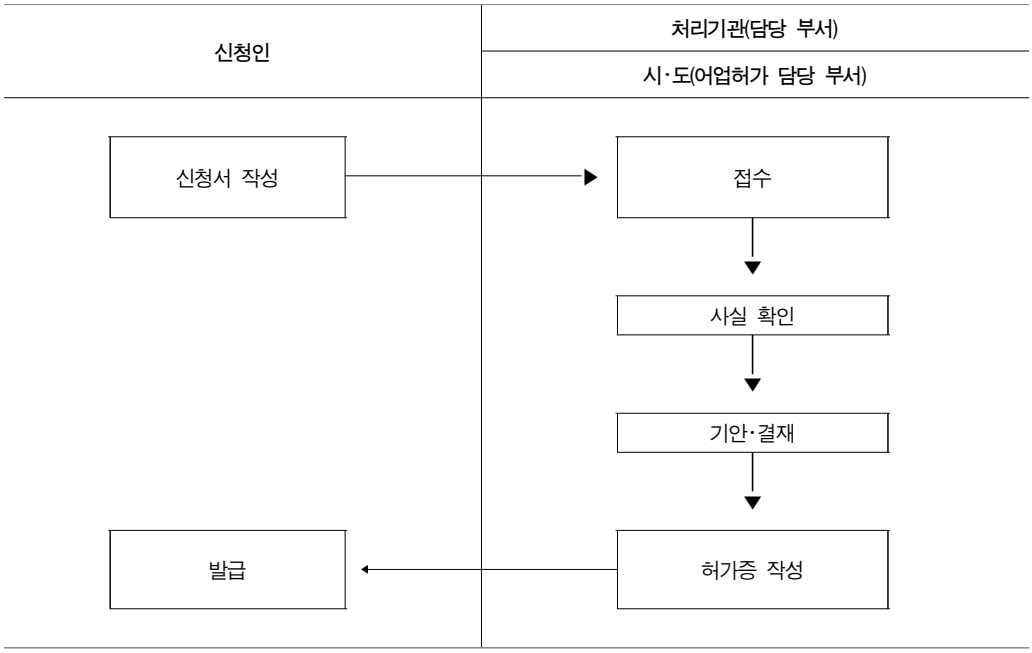

한시어업허가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2조(「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합니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제1항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처리기간 5일), 시·군·구(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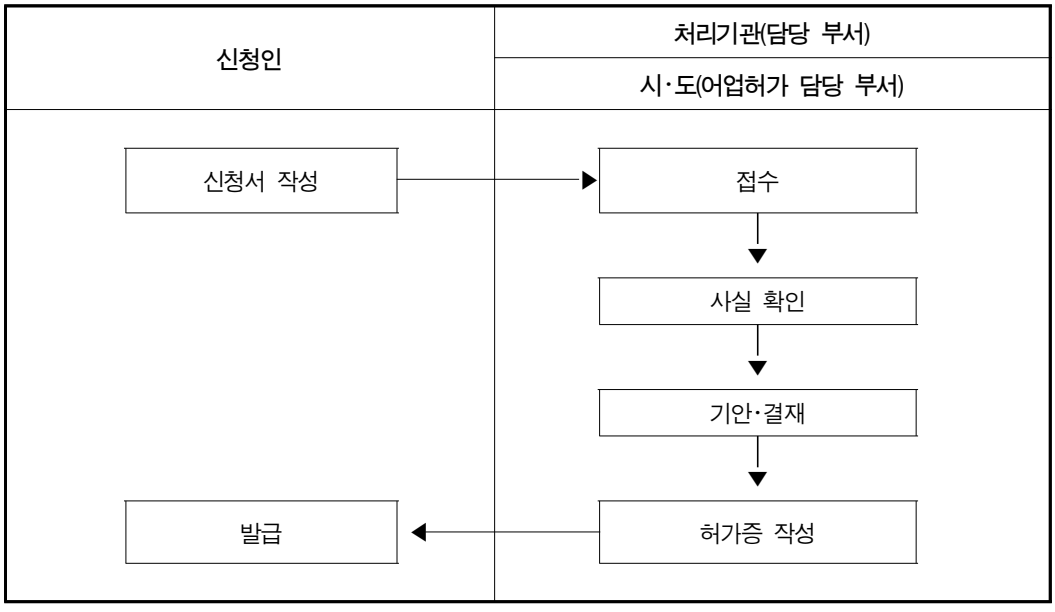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산자원조사·평가 결과 등 한시어업허가 요건 등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한시어업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도: 5일 시·군·구: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단체명	직위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톤)	마력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의 내용	종류	어업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기간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한시어업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의 종류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

「수산업법」 제42조(「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합니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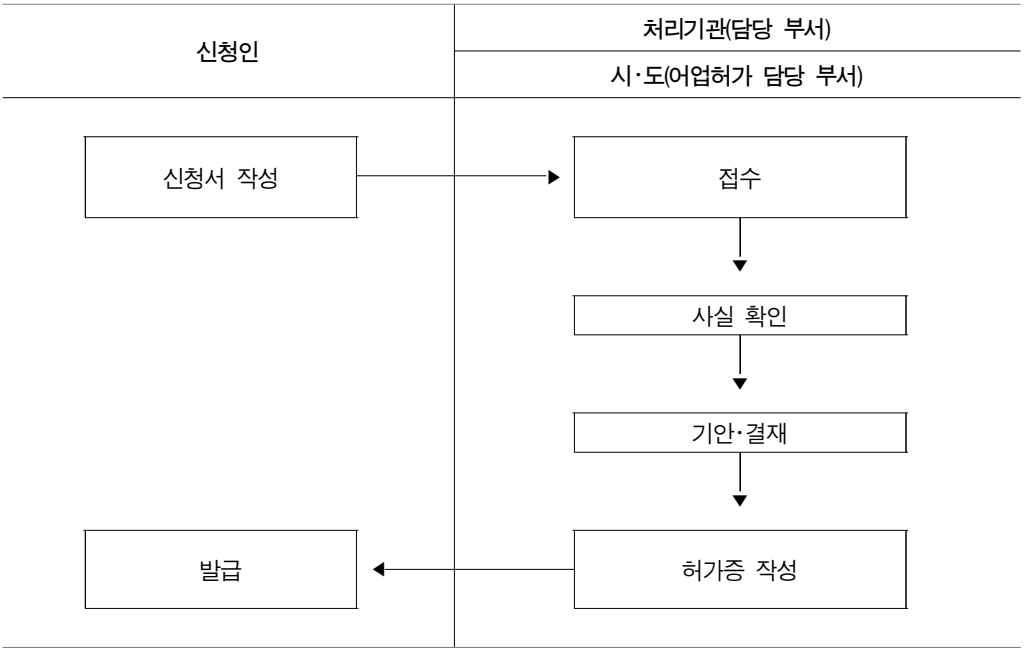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담당부서 : 수산자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534)
- 접수 및 처리기관 :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 시·군·구(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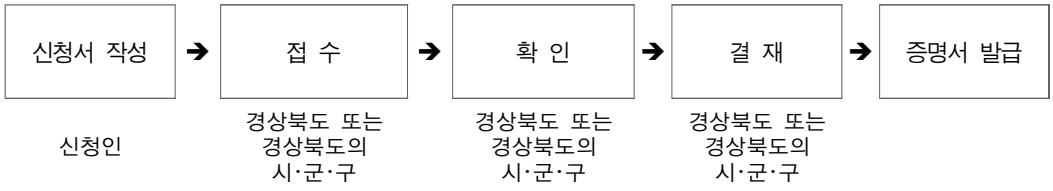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만 제출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 결과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별지 서식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용 해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영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		
	사용기간			
	사용시기			
	포획대상물의 종류			
	사용어구의 규모	폭(1폭: 깊이 m, 길이 m)		
	그물코의 규격	내망 mm 이상, 외망 mm 이상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근해자망어업·연안자망 어업의 허가내용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기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만 제출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의 시·군·구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의 시·군·구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의 시·군·구		

210㎜ × 297㎜[백상지 80g/㎡]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제8항
- 담당부서 : 수산자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534)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승인증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서해어업 관리단), 시·도		해양수산부(서해어업 관리단), 시·도		해양수산부(서해어업 관리단), 시·도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2. 근해자망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 결과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별지 서식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용승인 신청내용	사용해역			
	사용기간			
	사용시기			
	포획대상물의 종류			
	사용어구의 규모	폭(1폭: 깊이 m, 길이 m)		
	그물코의 규격	내망 mm 이상, 외망 mm 이상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선 명	
	어선번호		톤 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근해자망어업·연안자망 어업의 허가내용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기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8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2. 근해자망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승인증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서해 어업관리단), 시·도		해양수산부(서해 어업관리단), 시·도		해양수산부(서해 어업관리단), 시·도		

210㎜×297㎜[백상지 80g/㎡]

어업허가증(신고증명) 재발급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및 제27조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처리기간 2일), 시·군·구(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요건 등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신고) 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을 재발급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담당부서 : 수산자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534)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관계부처 협의	→	결 재	→	해제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승인신청서
2. 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
3. 근해·연안 자망어업의 어업허가 증 등
1.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해제 허가신청서
2.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등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포획·채취 금지의 해제 허가 시 포획·채취가 가능한 수면 위치, 구역, 시기, 기간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

:: 별지 서식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어업 면허내용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의 종류		면허면적	
	어장의 위치			
해제허가 신청내용	목적 및 사유			
	위치와 면적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와 명칭	총 톤수(톤)	척수
	어구 및 방법	사용어구	포획·채취 방법	

포획·채취 수산자원의 종류와 수량

수산자원의 종류				기 타	계
마릿수					
중량(kg)					

포획·채취 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관계부처 협의	→	결 재	→	해제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 × 297㎜[백상지 80g/㎡]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설치통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 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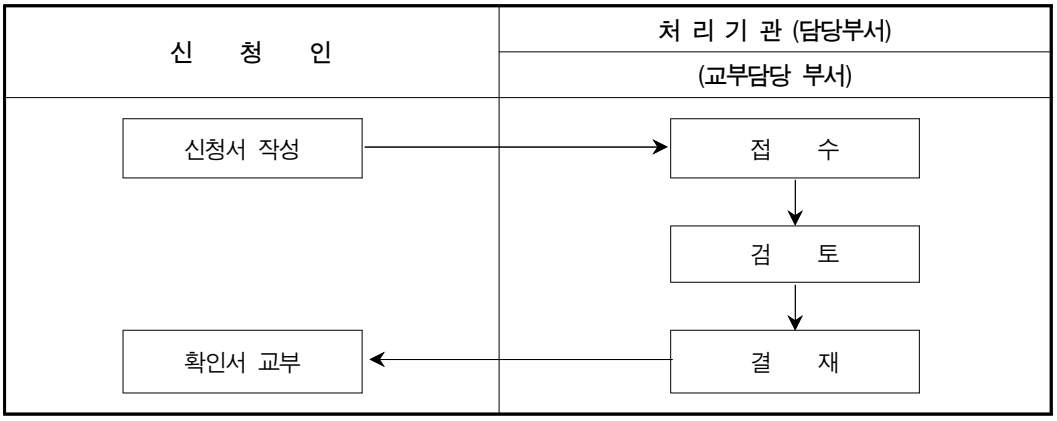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정치망어업권의 어장구역도상에 도면으로 표시한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가두리시설의 세부설계도 1부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설치 요건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설치통지서

어업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 번호	( )제 호		
면허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어장의 면적	ha	가두리시설면적	㎡
어장의 위치 및 구역도와 승인을 받으려는 수면의 수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정치망어업권의 어장구역도상에 도면으로 표시한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가두리시설의 세부설계도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어업폐업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8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업폐업신고 요건 등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어업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허가번호(신고필증)
	폐업일자
	폐업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7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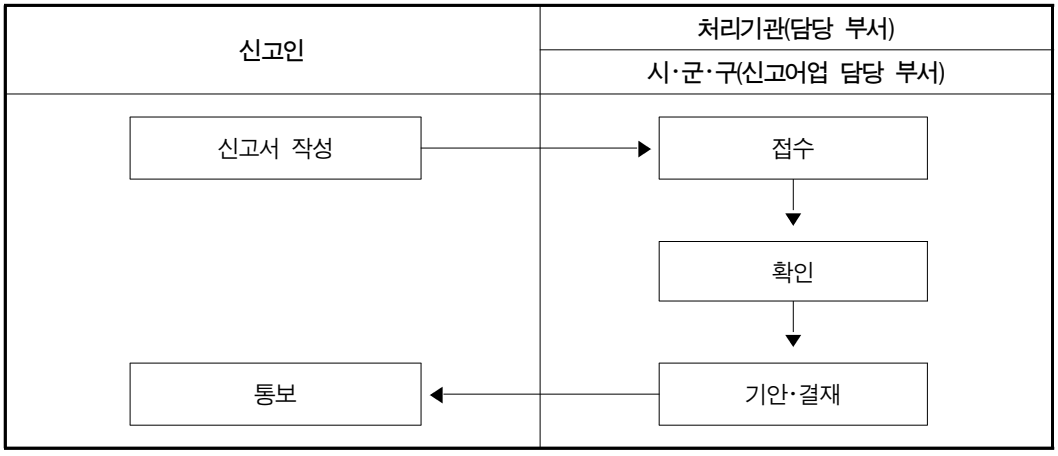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업신고 수리 요건 등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4.28〉

(앞쪽)

어업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포획·채취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어업을 하려는 기간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조례에 따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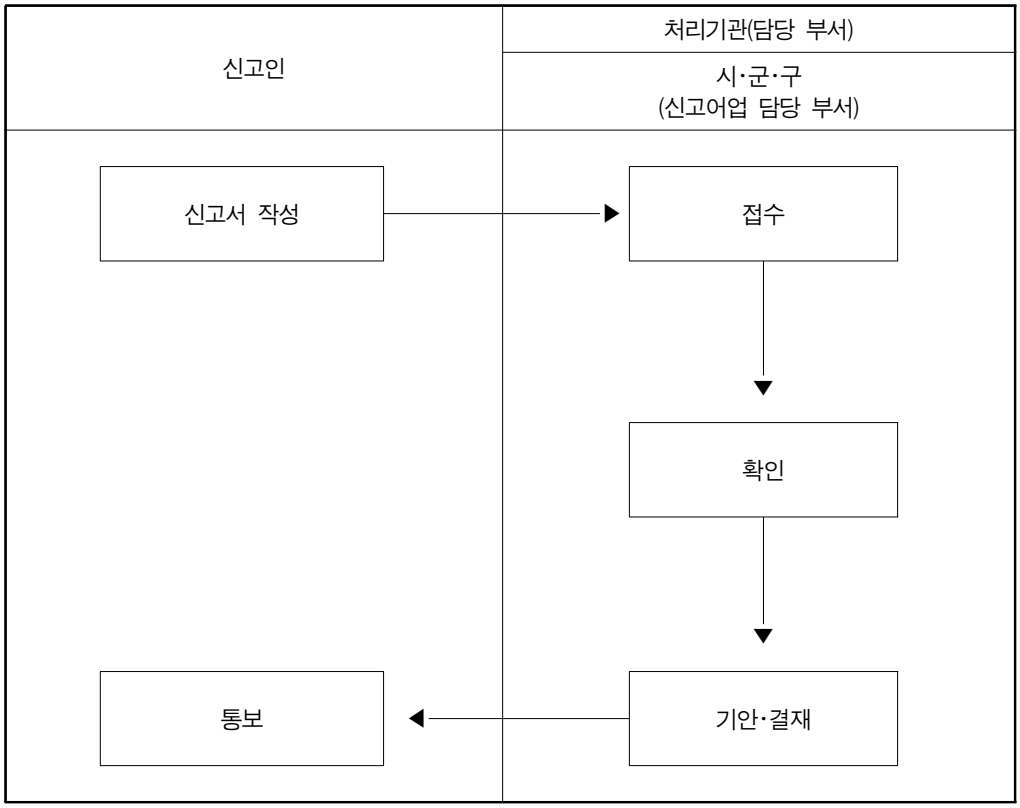

어업개시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처리기간 즉시), 시·군·구(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통보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어업개시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허가번호	
	허가기간	
	휴업신고 수리기간	
	어업개시 예정일자	
	개시사유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어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통보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휴업연장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처리기간 즉시), 시·군·구(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통보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업휴업연장 신고 요건 등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어업휴업연장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허가번호
	휴업의 기간
	허가 기간
	휴업을 연장하려는 기간
	휴업을 연장하려는 사유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어업의 휴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통보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시험어업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처리기간 즉시), 시·군·구(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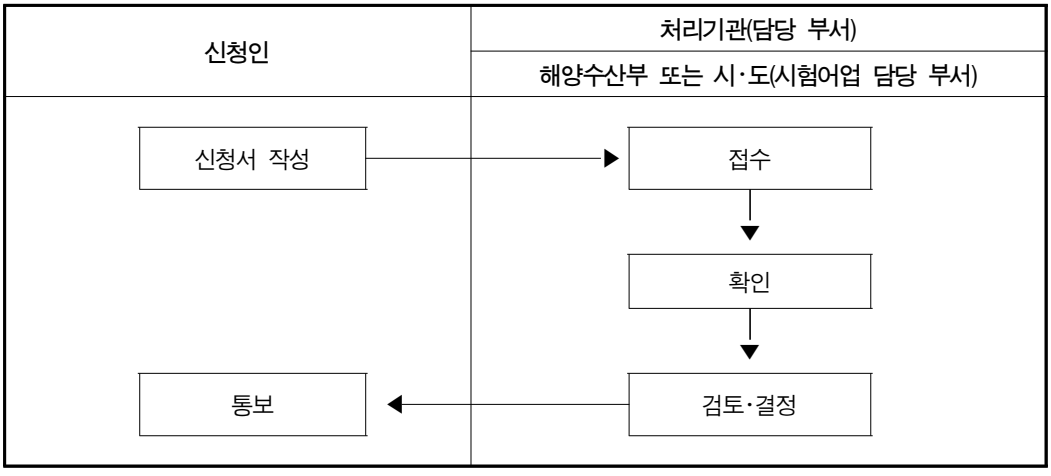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새로운 어구·어로장비와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 설계도 및 세부 소요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6.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4.의 서류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시험어업 신청 요건 등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시험어업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험조사의 목적과 사유							
시험조사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시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시험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등	어선의 명칭	총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시험어업의 시기							
시험어업을 하려는 기간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부 서류	1. 새로운 어구·어로장비와 조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 설계도 및 세부 소요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어구·어법 중 가장 유사한 어구·어법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판매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 1부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6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1부 6.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제4호의 서류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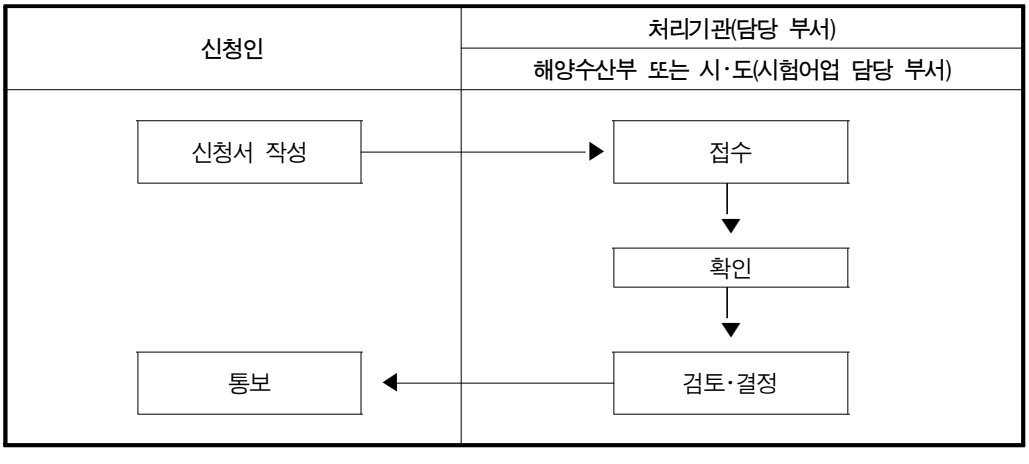

어업 변경허가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처리기간 5일), 시·군·구(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업변경허가 요건 등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허가 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의 사유	가. 나. 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 유예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처리기간 2일), 시·군·구(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서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업허가 유예 요건 등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어업허가 번호	
	어업허가 기간	
	유예신청 기간	
신청사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 신청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처리기간 5일), 시·군·구(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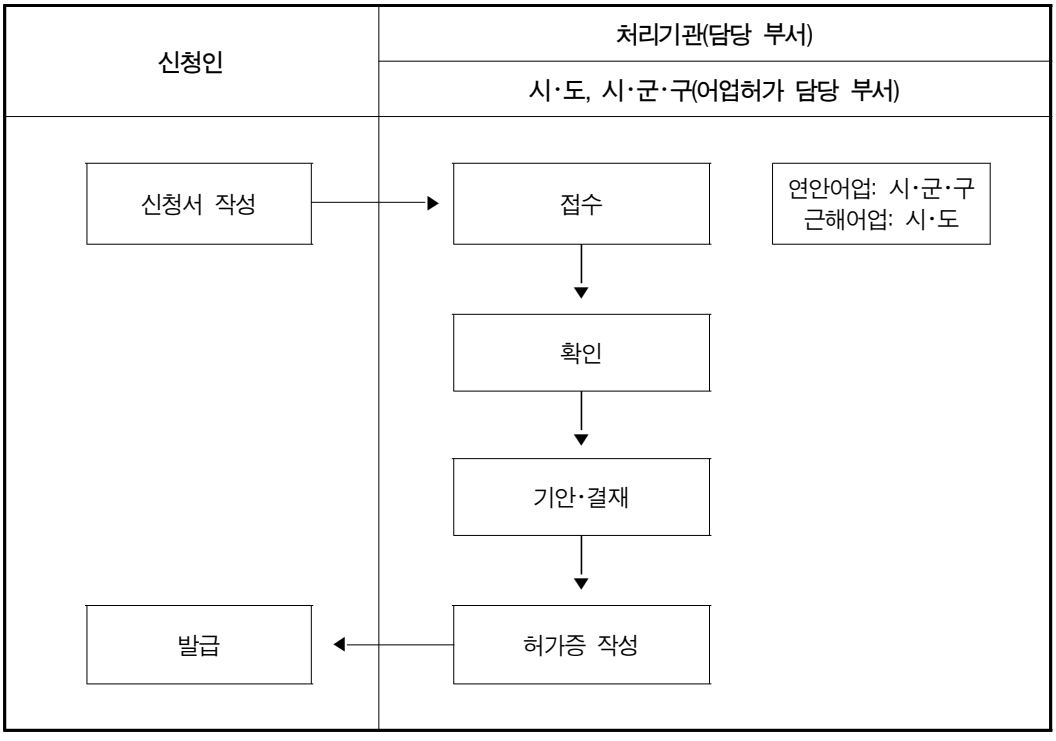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업허가의 제한사항 및 어업허가 요건 등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어업허가 신청서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도: 5일 시·군·구: 3일

신청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속 단체명	직위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명)	기관종류	총톤수(톤)	마력	선질
사용어선								

	종류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물·채취물의 종류
허가어업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해당함)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비고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처리기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기간,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제2호 후단에 따른 경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출합니다)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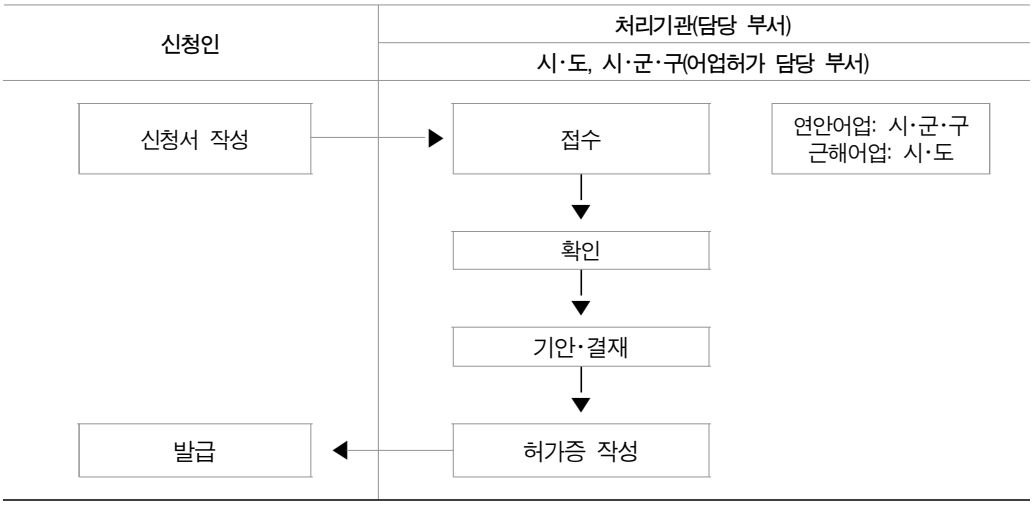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8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처리기간 즉시), 시·군·구(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요건 등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 또는 신청일자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휴업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도(처리기간 즉시), 시·군·구(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업휴업 신고 요건 등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어업휴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허가번호
	허가기간
	휴업의 기간
	휴업의 사유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어업을 휴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확인을 요청한 어구의 규모등의 사진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 요건 등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 번호	
확인 신청 어구	가. 어구의 종류
	나. 어구의 수량
	다. 어구의 보관위치
신청 사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확인을 요청한 어구의 규모등의 사진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57조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확인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운반업등록 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인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2,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획물운반업의 시설 기준 등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어선	선박명	진수연월일
	톤수 G/T	마력수 HP
	선적지 및 어선번호	
	주요기기 및 시설	

신청 내용	운반 수역
	운반 대상 어획물·양식물 또는 제품의 종류

「수산업법」 제57조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확인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운반업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인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
  2.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획물운반업의 변경내용 등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11〉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변경등록 신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 2.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어획물운반업 폐지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폐지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11〉

어획물운반업 폐지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폐업일		
폐업 사유		

「수산업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폐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폐지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9조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획물운반업등록증 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11〉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의 사유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10조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신고인		특별자치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2.11〉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사유		

「수산업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휴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 중의 재개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10조
- 담당부서 : 어업정책과(연락처 : 044-200-55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군·구(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신고인		특별자치도,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2.11〉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 중의 재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일시	년 월 일	
재개사유		

「수산업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어선원부의 열람 및 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 담당부서 : 어선정책팀 (연락처 : 044-200-5524)
- 접수 및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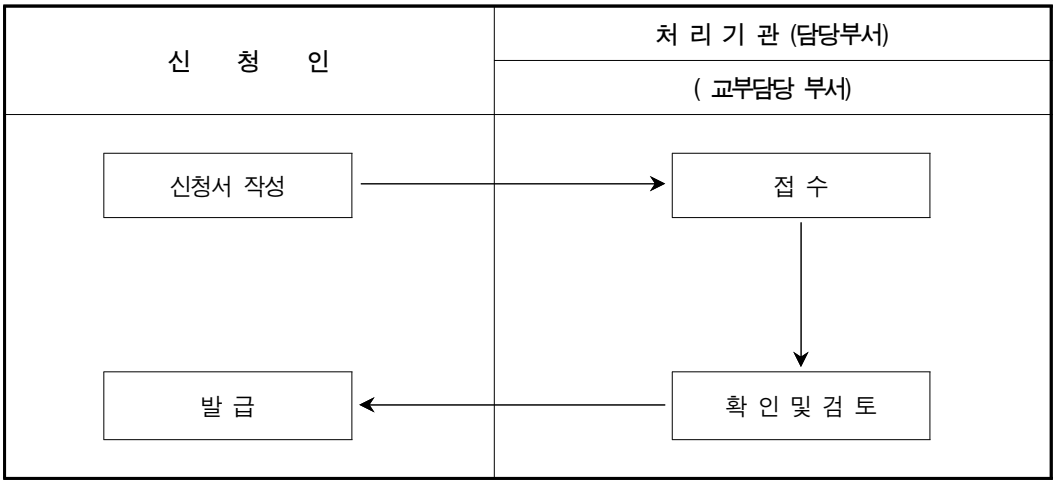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수수료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선법 제13조제3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선정책팀 (연락처 : 044-200-5524)
- 접수 및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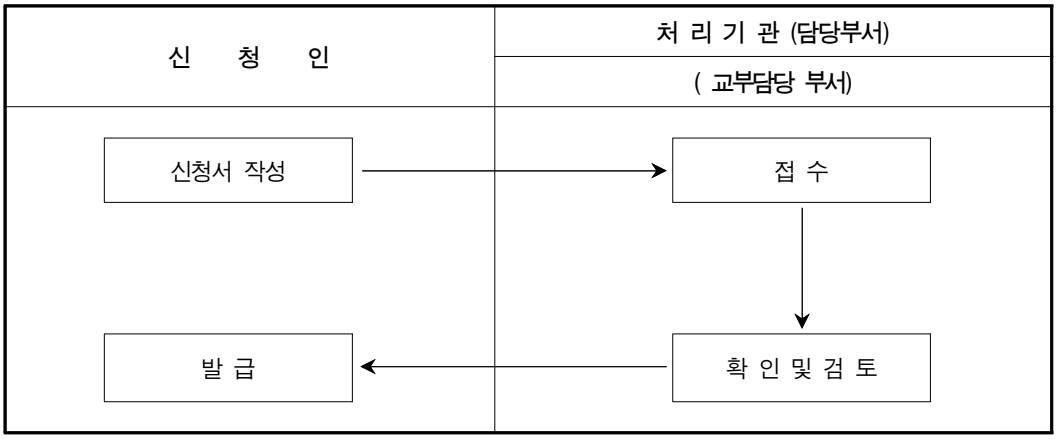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 2. 여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3.10.30.〉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원증서명	원증서번호 제 호
	원증서발급관청	원증서발급일자 년 월 일

「어선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선박국적증서 2. 여권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어선의 국제항해 등으로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선이 외국에 있는 동안 선박국적증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재 대한민국 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납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신청인		시 · 군 · 구		시 · 군 · 구

210mm×297mm[백상지 80g/㎡]

어선등록사항 변경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선법 제17조,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선정책팀 (연락처 : 044-200-5524)
- 접수 및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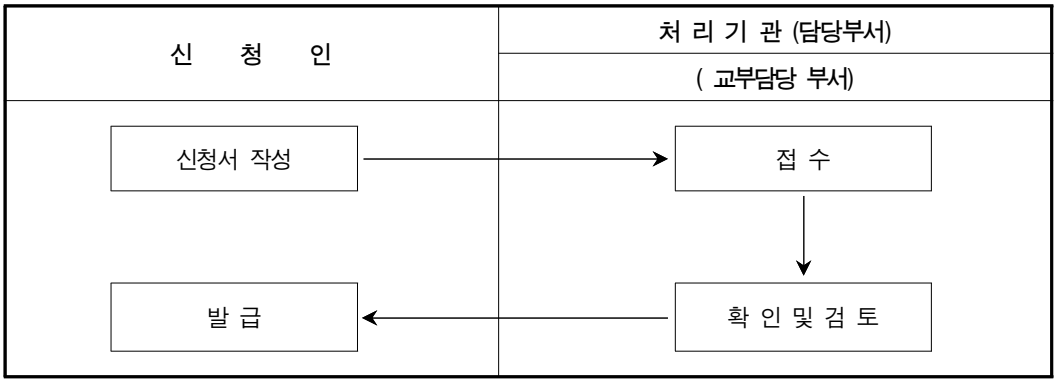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선의 변경 등록에 따른 요건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0.30.〉

어선 [ ]등록 [ ]변경등록
어업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어선등록 · 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종류 [ ]동력 [ ]무동력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총 톤 수 톤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 적 항	어업허가번호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어선등록 신청사유	[ ] 건조 [ ] 수입 [ ] 기타(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 ]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 · 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소유자 변경) [ ]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 ]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 ] 기타(선명, 톤수개측, 기관의 종류·마력 변경 등)	

「어선법」제13조제1항 ·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제26조제1항 · 제28조제1항,「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 청 인 제출서류	**1. 어선등록신청의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 · 조사 · 지도 · 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 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변경등록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나. 선박국적증서 · 선박국적증서영역서 ·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 어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유의사항

1. 벌칙규정

가. 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나.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대상 어선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마.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 · 조사 · 지도 · 단속 ·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

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선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증서 및 허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어선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선법 제13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선정책팀 (연락처 : 044-200-5524)
- 접수 및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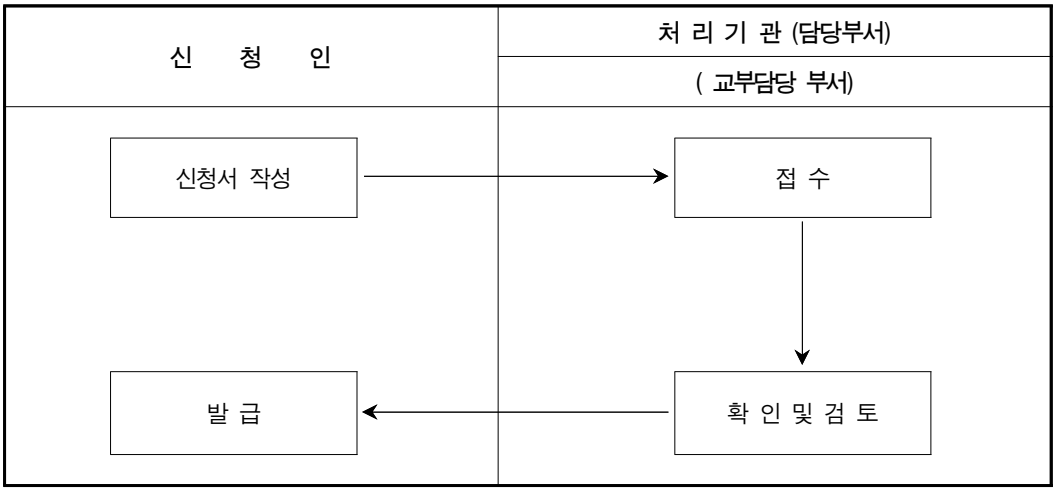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 등

- 수수료 : 수수료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선의 등록에 따른 요건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0.30.〉

어선 [ ]등록 [ ]변경등록
어업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어선등록 · 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종류 [ ]동력 [ ]무동력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총 톤 수 톤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 적 항	어업허가번호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어선등록 신청사유	[ ] 건조 [ ] 수입 [ ] 기타(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 ]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 · 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소유자 변경) [ ]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 ]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 ] 기타(선명, 톤수개측, 기관의 종류·마력 변경 등)	

「어선법」제13조제1항 ·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제26조제1항 · 제28조제1항,「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 청 인 제출서류	**1. 어선등록신청의 경우** 가.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다.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라.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 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어선변경등록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나.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 어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유의사항

1. 벌칙규정
가. 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나.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대상 어선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가.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다.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라.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마.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
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어선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증서 및 허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선법 제37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선정책팀 (연락처 : 044-200-5524)
- 접수 및 처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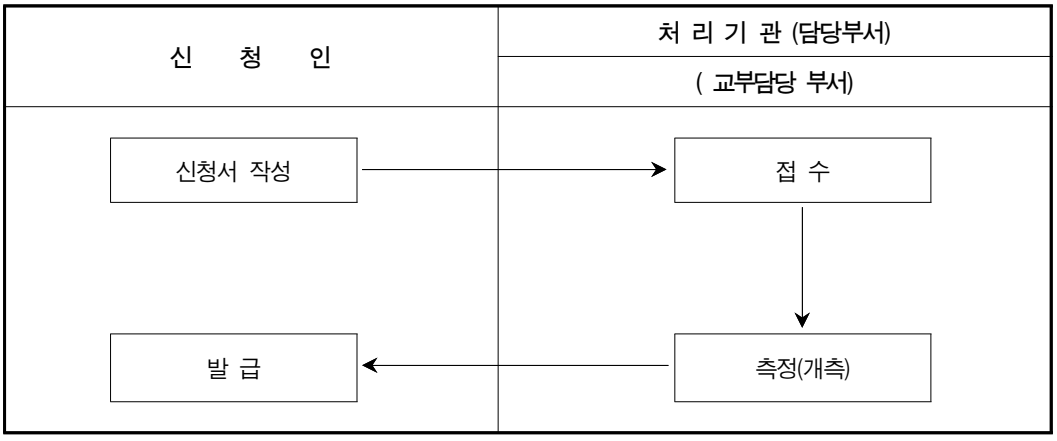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일반배치도 등 도면, 2. 총톤수계산서

- 수수료 :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제총톤수 발급에 따른 기준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국제톤수 [ ]증서 [ ]확인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측정요청일자 +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총 톤 수 톤	국제총톤수 톤

측정(개측)을 받으려 하는 일자	년 월 일
측정(개측)을 받으려 하는 장소	

「어선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대 한 민 국 영 사

첨부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총톤수계산서(「어선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어선으로 한정합니다)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 벌칙규정
-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서 국제톤수증서를 선내에 갖추지 않고 국제항해에 종사하거나 국제톤수증서를 반납(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배안에 갖추어야 합니다.
-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은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국제총톤수 등 측정(개측)	→	국제총톤수증서 (확인서)발급
신청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영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영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영사

어선 총톤수(측정, 개측)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선법 제14조, 어선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선정책팀 (연락처 : 044-200-5524)
- 접수 및 처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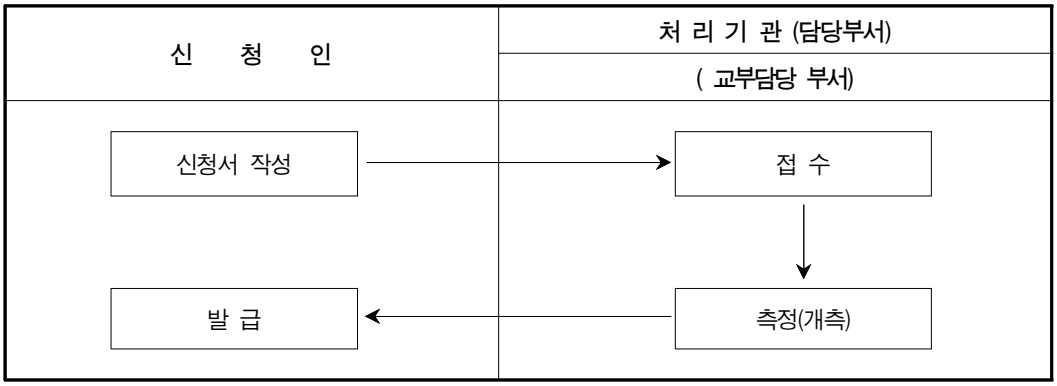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일반배치도 등 도면
  2.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선 총톤수 측정에 따른 기준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어선 총톤수 [ ]측정 [ ]개측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측정요청일자 +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측정(개측)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종류 [ ] 동력 [ ] 무동력	어선의 명칭	(원명:)
	선 적 항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선체재질	[ ]강 [ ]목 [ ]FRP [ ]그 밖의 재질( )
	선 적 항	조 선 자	

측정(개측)을 받으려는 일자	년 월 일
측정(개측)을 받으려 하는 장소	
신청사유	

「어선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
대 한 민 국 영 사

첨부서류	1. 도면(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한정합니다) 가. 일반배치도 나. 선체선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마. 상부구조도 바. 총톤수계산서(「어선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어선으로 한정합니다) 사.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측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조선지 · 조선자 · 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하는 서류(필요 시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 시기

- 어선의 건조·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한 때
-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에 변경이 생긴 때
- 외국적 어선을 수입하여 우리나라 어선으로 등록하려 하는 때
-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그 밖의 유의사항

- 건조 중인 어선은 준공 전에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총톤수 측정(개측)	→	어선총톤수증명서 발급
신청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영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영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영사

어선 증서 등의 재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선법 제18조, 제37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 담당부서 : 어선정책팀 (연락처 : 044-200-552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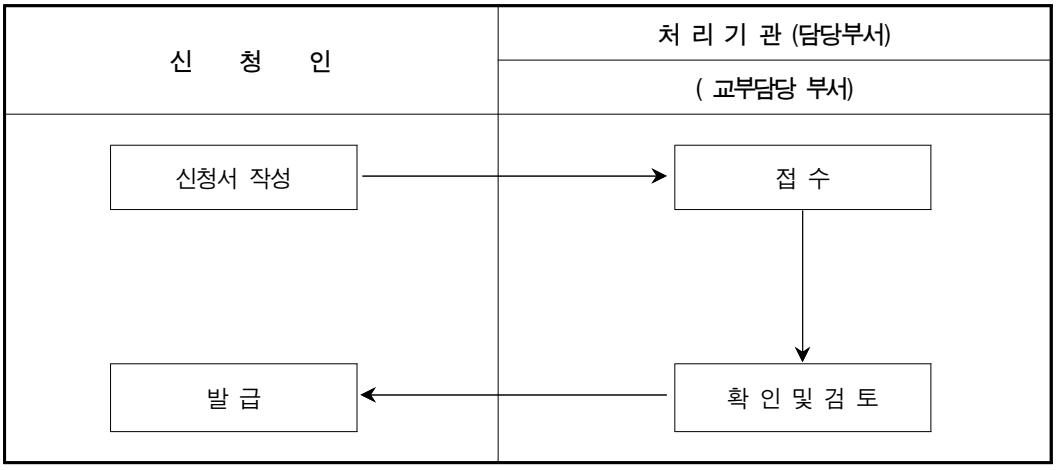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증서 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수수료 조례 또는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증서 재발급에 따른 요건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3.10.30.〉

증서 등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어선 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 톤 수	톤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선체재질	[ ]강 [ ]목 [ ]FRP [ ]그 밖의 재질( )
	선 적 항			
신청 내용	증 서 명			
	증서번호	제 호	교부일자	년 월 일
	신청사유			
	잃어버린경위			

「어선법」제18조,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구비서류	수수료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조례 또는 대행검사기관 수수료 기준에 따름

유의사항

1. 제 출 처: 해양수산부, 시 · 군 · 구, 영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2. 재발급하는 증서의 종류

- 어선(건조 · 건조발주)허가서 · 어선(개조 · 개조발주)허가서 · 어선건조(건조발주 · 개조 ·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 · 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 · 선적증서 ·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 · 정비)확인증, 별도건조검사증서,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형식승인증서,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우수사업장지정서,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출항정지명령서

3. 재발급 받으려는 해당 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어선등록 말소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선법 제19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선정책팀 (연락처 : 044-200-5524)
- 접수 및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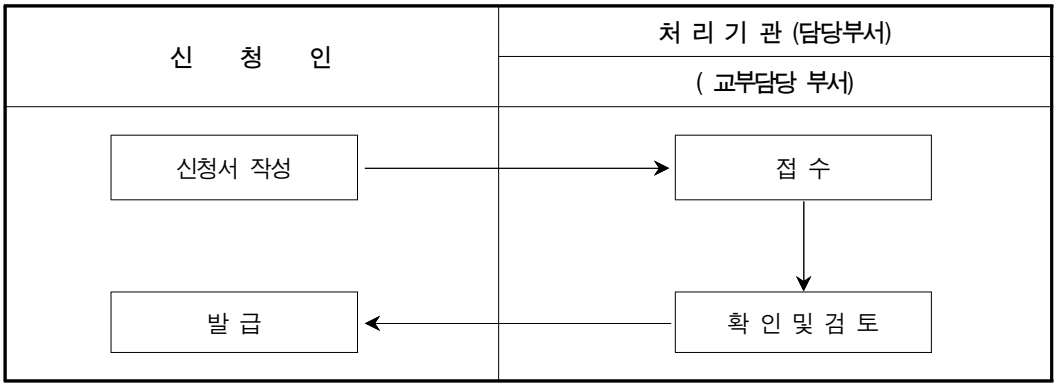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2. 어선번호판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선등록 말소에 따른 요건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10.30.〉

어선등록 말소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 ] 동력 [ ] 무동력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어업의 종류 어업

등록 말소 사유	

「어선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 ·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2. 어선번호판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벌칙규정

-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어선의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멸실 · 침몰 · 해체 또는 노후 · 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선적항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 · 신고 ·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수산업법」 · 「원양산업발전법」및「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어선법」제19조제2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 · 신고 · 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된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어선 건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선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선정책팀 (연락처 : 044-200-552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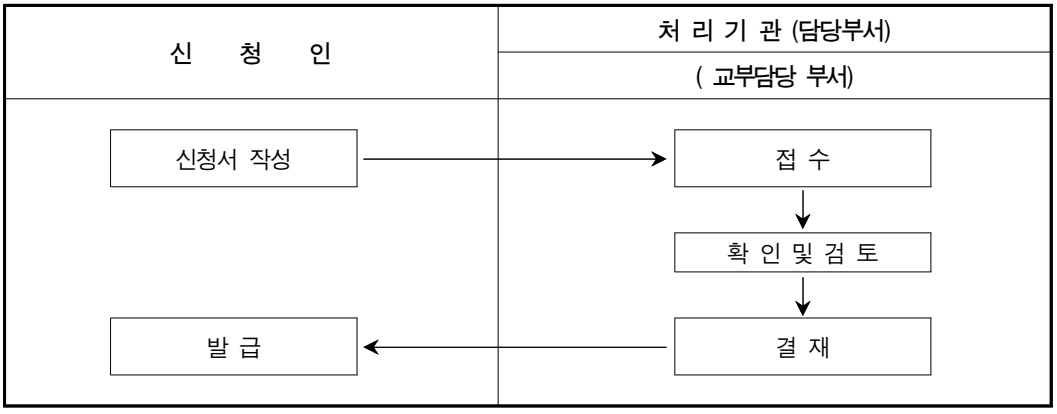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 등

- 수수료 : 수수료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선 건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따른 요건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4, 2013.10.30.〉

어선 [ ]건조 [ ]건조발주 [ ]개조 [ ]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 4일 시·군·구 : 3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당초허가사항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자 년 월 일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어선소유자		
	선 적 항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그 밖의 설비		

변경사유	

「어선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건조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허가사항 변경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 · 시험 · 조사 또는 지도 · 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어선 개조(발주)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선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선정책팀 (연락처 : 044-200-552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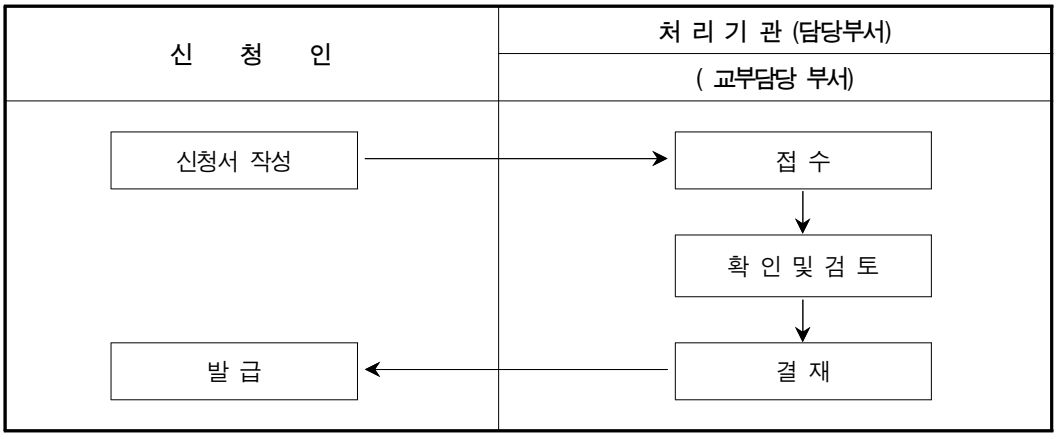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 등

- 수수료 : 수수료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선 개조(발주) 허가에 따른 요건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2013.10.30.〉

어선 [ ]개조 / [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개조어선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구 분	개조 전	개조 후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대	기관 마력 대
	구조·설비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개조장소		조선소명

개조사유	

「어선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개조·개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개조발주허가가 면제됩니다.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어선 건조(발주)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선법 제8조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선정책팀 (연락처 : 044-200-552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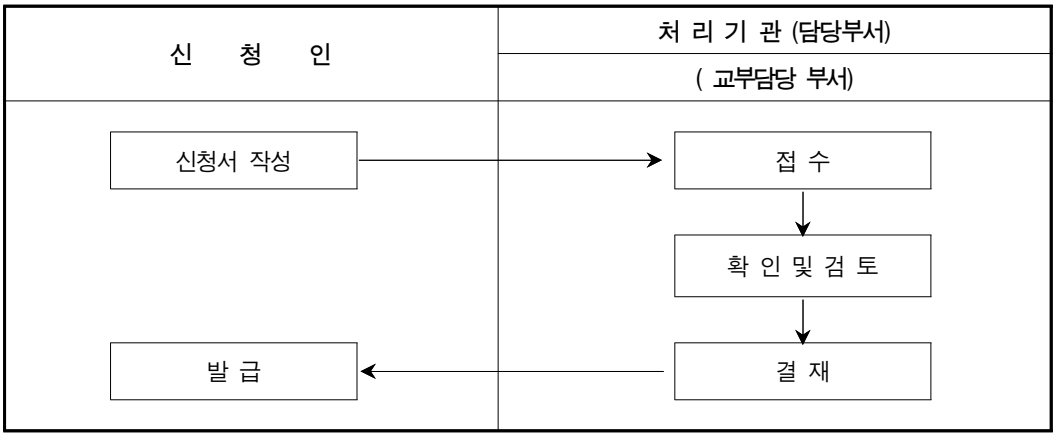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 등

- 수수료 : 수수료 조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선 건조(발주) 허가에 따른 요건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2013.10.30.〉

어선 [ ]건조 / [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조어선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체재질 [ ]강 [ ]목 [ ]FRP [ ]그 밖의 재질( )
	총톤수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선적항		어업의 종류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재원구분	[ ] 자기부담 만원	[ ] 정부지원 만원
	건조장소		조선소명
건조사유			

「어선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벌칙규정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건조·건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3
- 담당부서 : 어촌양식정책과 (연락처 : 044-200-5623)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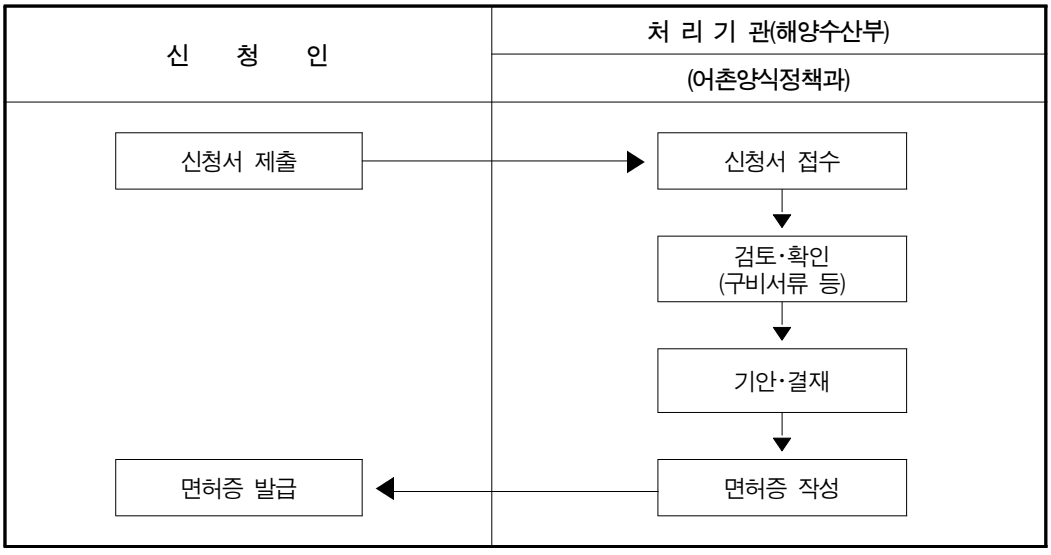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2. 사진 1매(가로 3㎝, 세로 4㎝) :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수수료 : 2천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당없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문		
	주소			
	자격	제 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합격		
	출신학교		졸업 일자 년 월 일	
사유	[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됨에 따른 재발급 [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재발급 [ ] 취소된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재부여에 따른 재발급			
잃어버린 경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 세로 4㎝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면허증과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 세로 4㎝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해당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 및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 세로 4㎝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4.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은 경우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 세로 4㎝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2천원

어장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연장)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 제3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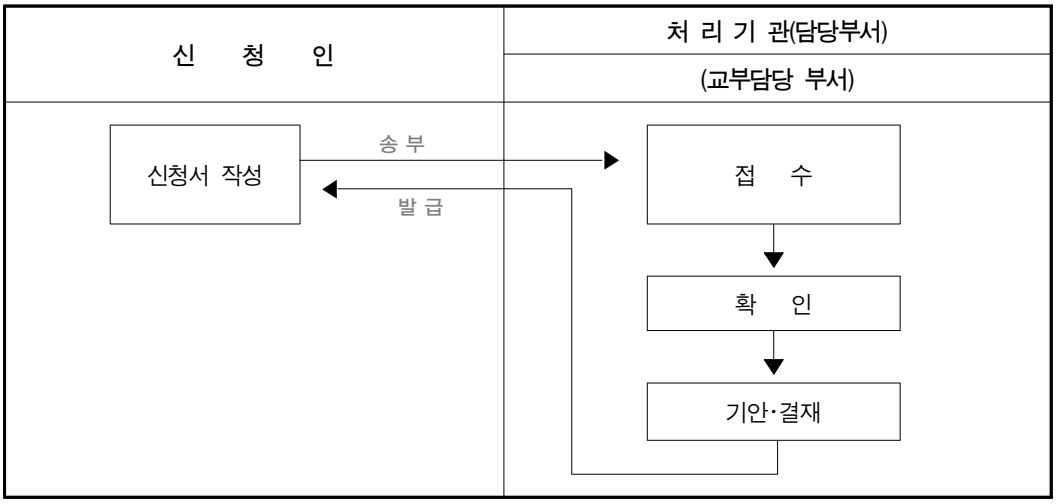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6.23〉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 내용	어업의 종류		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면적 ha	품종
	수면의 위치와 구역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어장시설물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규모(㎡)	수량(개)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연장)를 받으려는 사유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휴업(휴업연장)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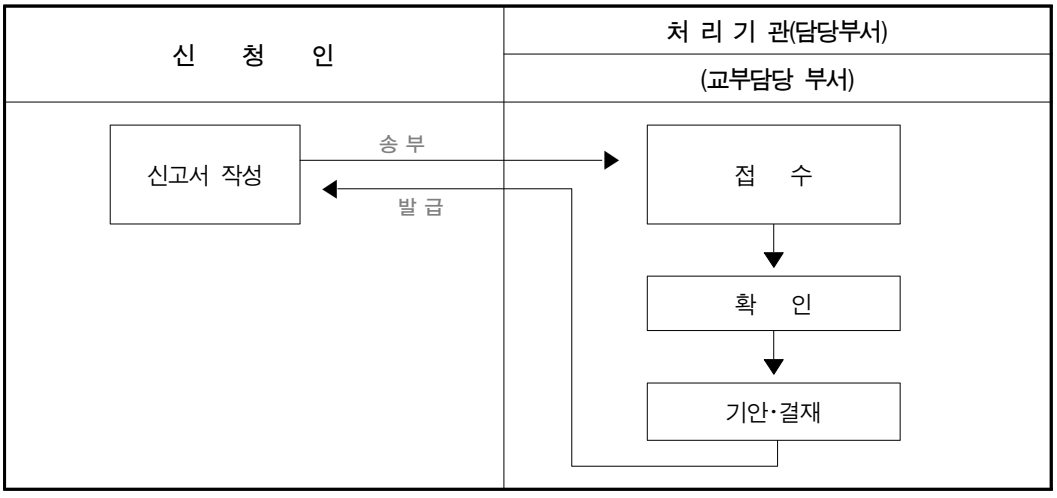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내용	어 업 의 종 류	면허 번호 어업면허 제 호
	면 허 기 간 . . . 부터 . . . 까지	
	휴업 또는 연장 기간 . . 부터 . . 까지 (년 개월)	
	휴업 또는 연장 사유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휴업(휴업연장)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변경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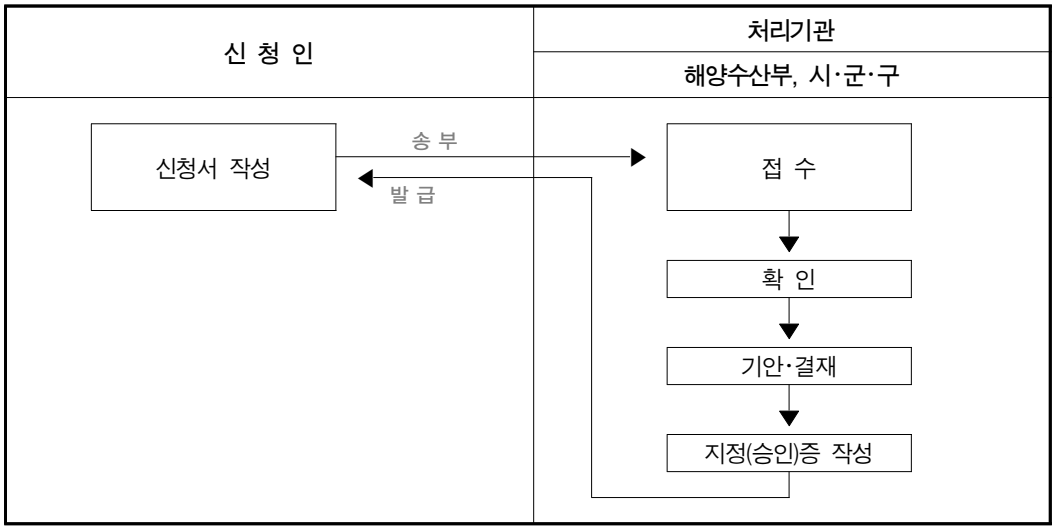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4.6.23〉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 내용	지정(승인)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지정(승인)사항	
		변 경 사 항	
	변경의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제9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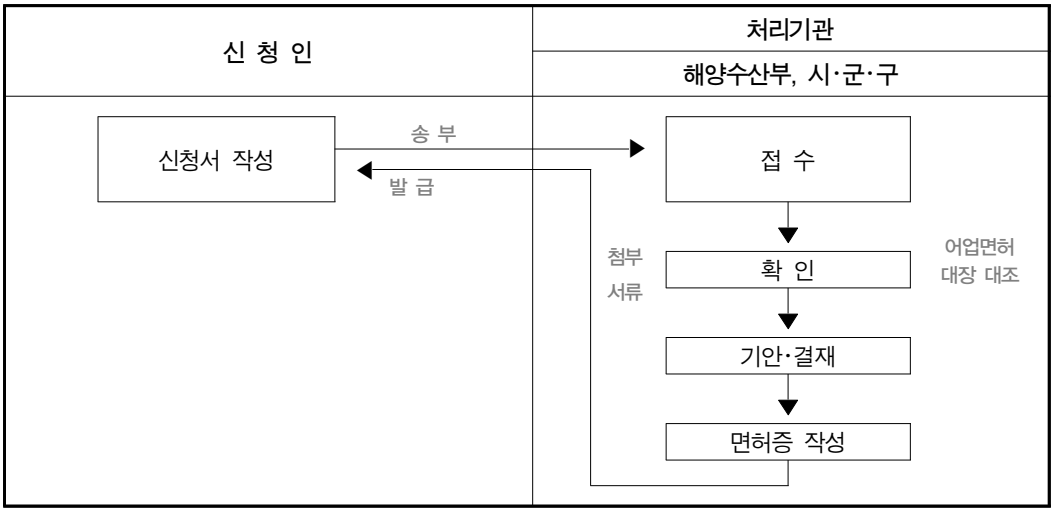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4.6.23〉

[ ] 어업면허증
[ ]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 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분실(훼손)연, 월, 일 및 장소	년 월 일 (장소 :)
	분실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17조, 어업등록령 제17조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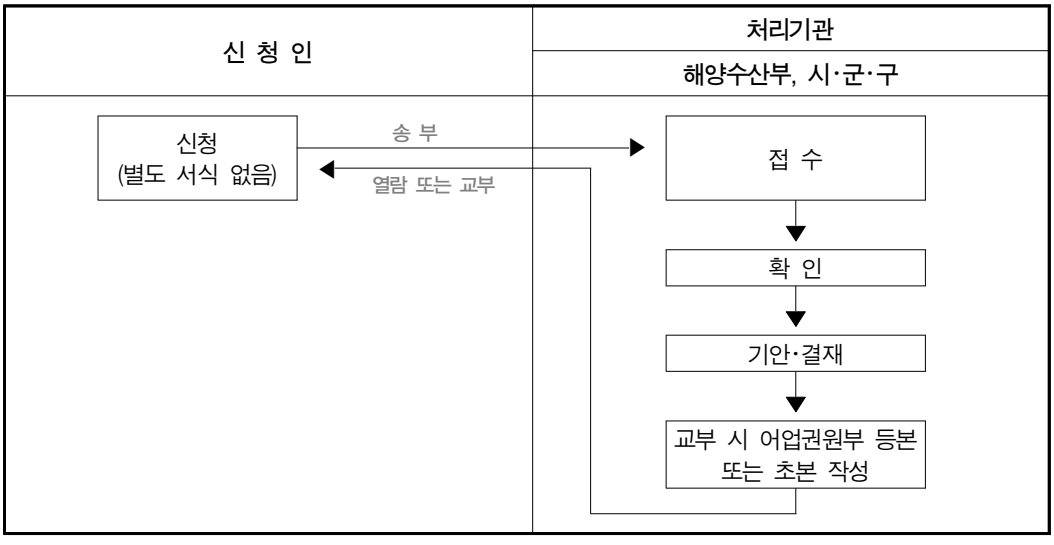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

어장구역 등 재결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5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70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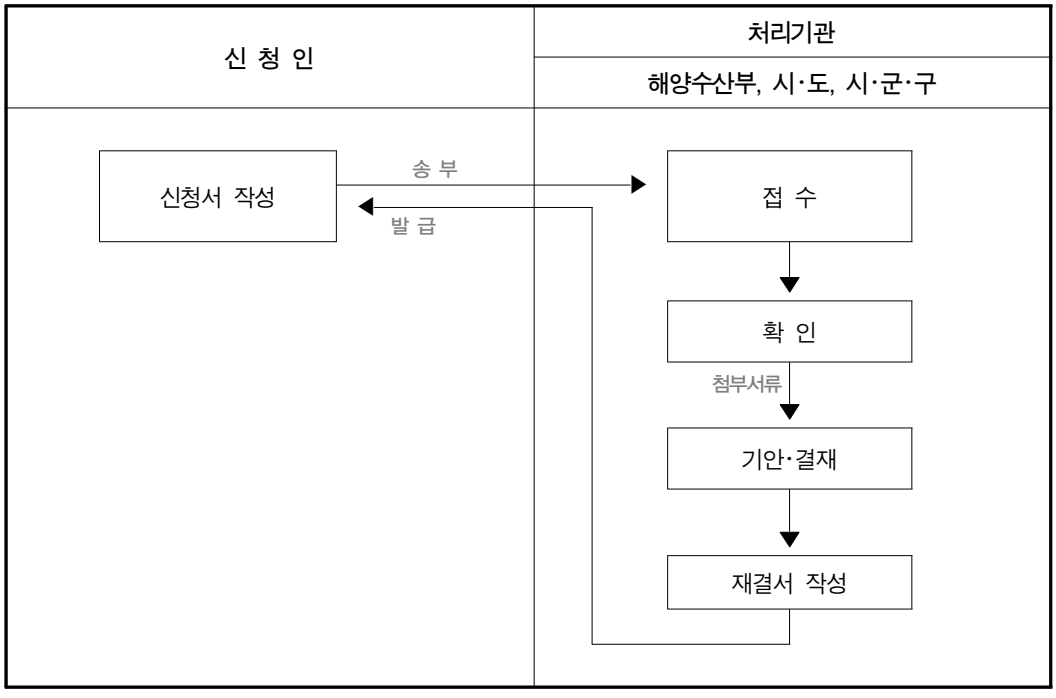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3.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4.6.23〉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도 14일 시·군·구 1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어장의 표시 (별지 도면과 같음)		
	분쟁의 내용		
	재결신청의 목적과 내용	목 적	
		내 용	
	그 밖의 사항		

「수산업법」 제85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받으려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 1부(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3.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권 등 보상청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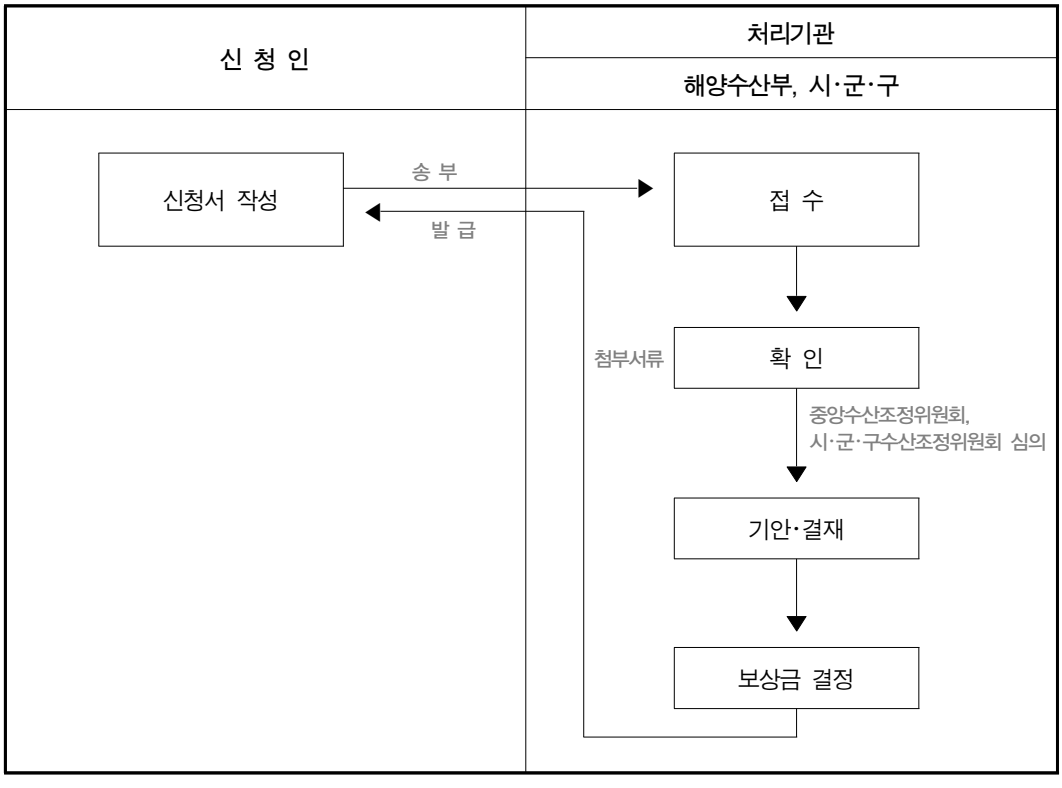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청구내용	어업권 또는 공작물의 표시	④어업의 종류 어업	⑤면 허 번 호 제 호
		⑥공작물의 종류	⑦공작물의 규모 ㎡
	⑧처 분 사 항		⑨처분일자 년 월 일
	손실의 내용	⑩손 해 액	
		⑪명 세	
		⑫산출근거	
	⑬손실액과 명세 및 산출방법		
	⑭청구보상금액 일금 원정		

「수산업법」 제81조제1항과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작 성 방 법

① ~ ③란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20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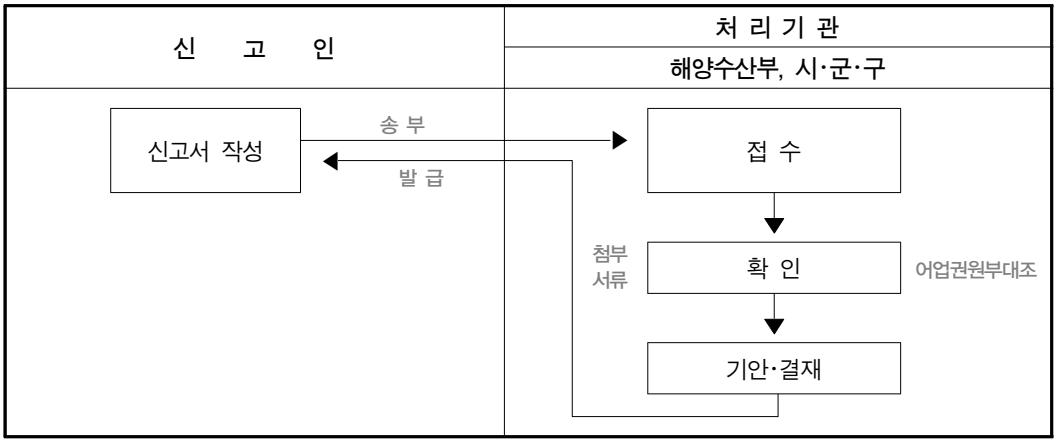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6.23〉

변경사항신고서
([ ]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어업의 종류		수면번호 또는 면허번호
변 경 사 항		
어업면허신청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 소	
어업권자 (법인, 어촌계 포함)	성 명	
	주소 또는 주사무소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관리선의 어선명		
변 경 사 유		

「수산업법」 제10조·제2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재개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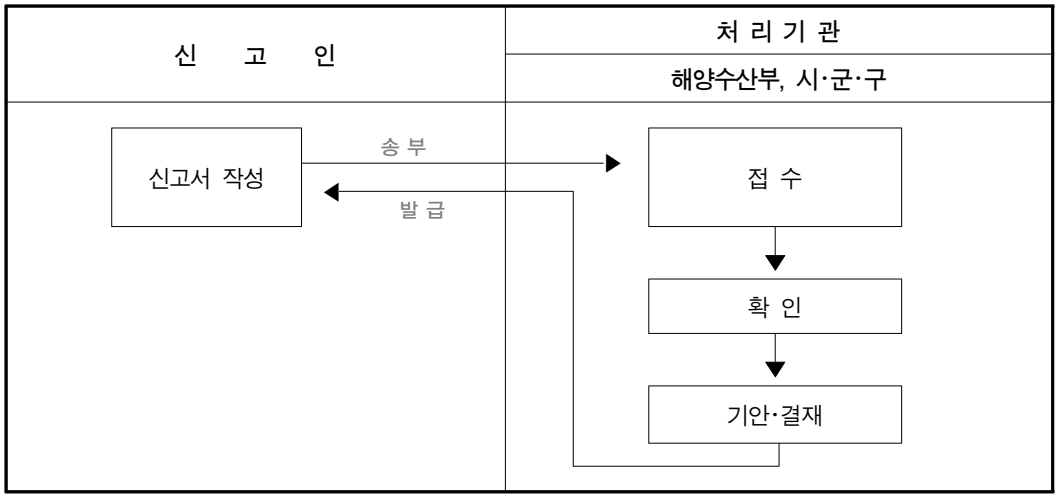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재개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내용	어업의 종류	면허 번호 어업면허 제 호
	휴업의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개월)	
	재개하려는 일자 년 월 일	

「수산업법」 제30조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업의 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면허 휴업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제2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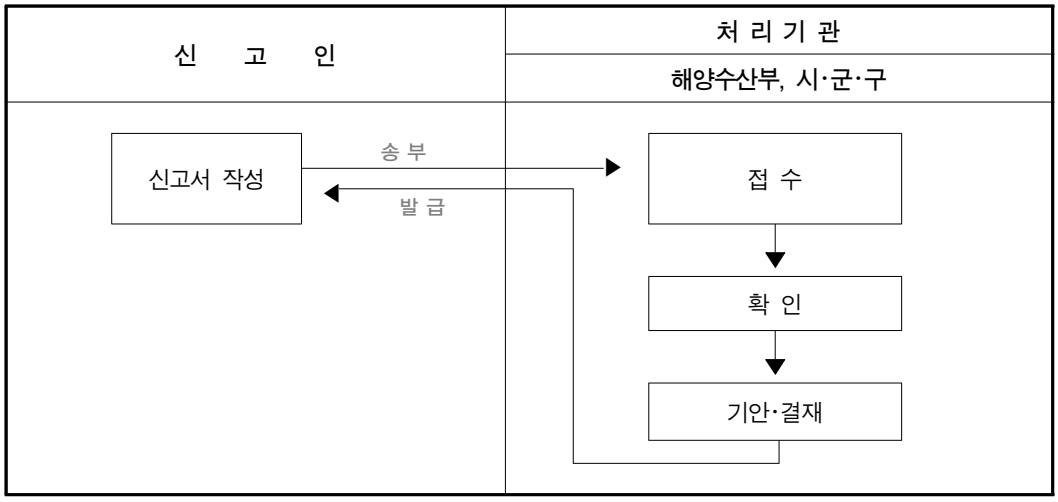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제출서류 확인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내용	어 업 의 종 류	면허 번호 어업면허 제 호
	면 허 기 간 . . . 부터 . . 까지	
	휴업 또는 연장 기간 . . 부터 . . 까지 (년 개월)	
	휴업 또는 연장 사유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휴업(휴업연장)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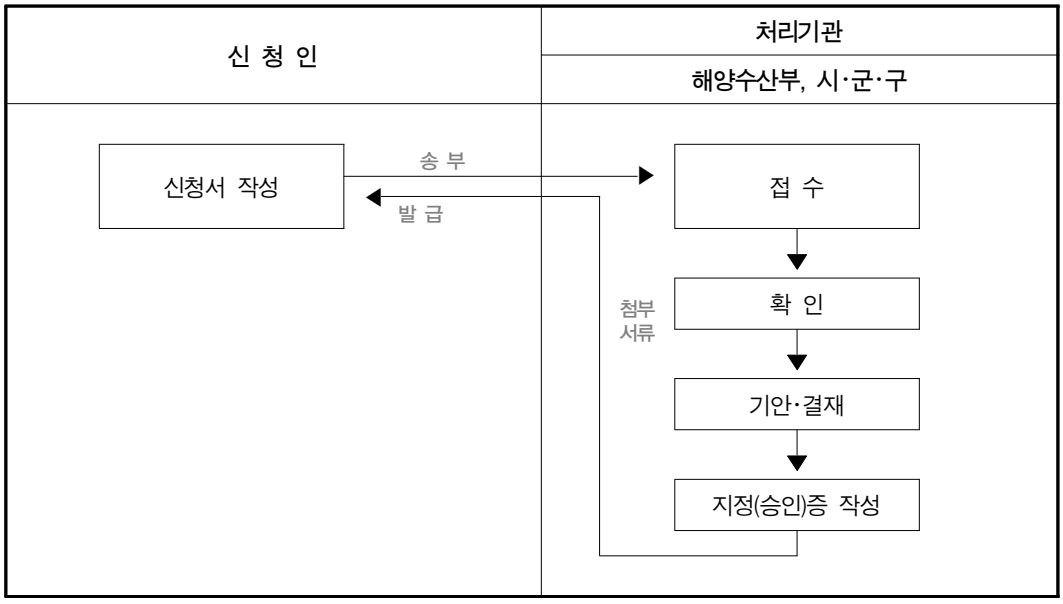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6.23〉

[ ] 관리선사용의 지정
[ ] 어 선 사 용 승 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사용인 (행사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어업권자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허번호	어장면적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어업권자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허가의 종류	어업허가번호	톤 수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승인) 받으려는 어선					
	기관의 마력	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어선건조연월일		선 적 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어업권 변경인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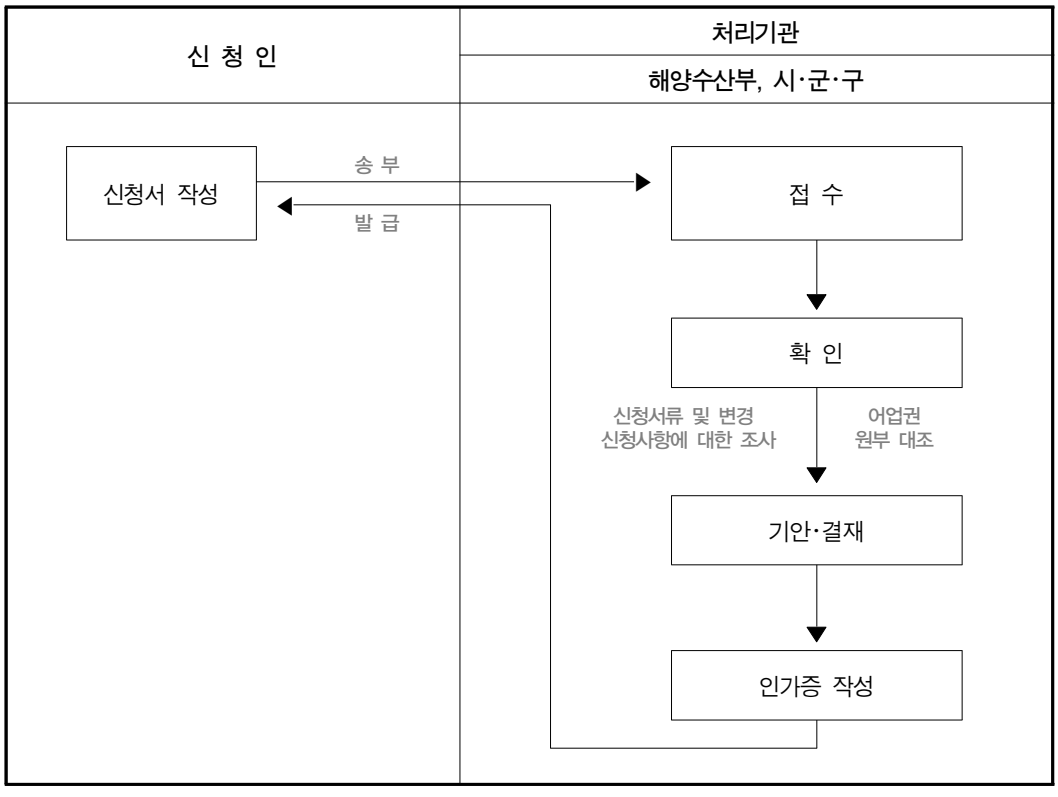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제출서류 검토 및 확인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 변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면허번호	포획물, 양식물	

변경내용	양식방법	변경 전	
		변경 후	
	포획물 (양식어업 제외)	변경 전	
		변경 후	
	어 업 의 시 기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권 분할인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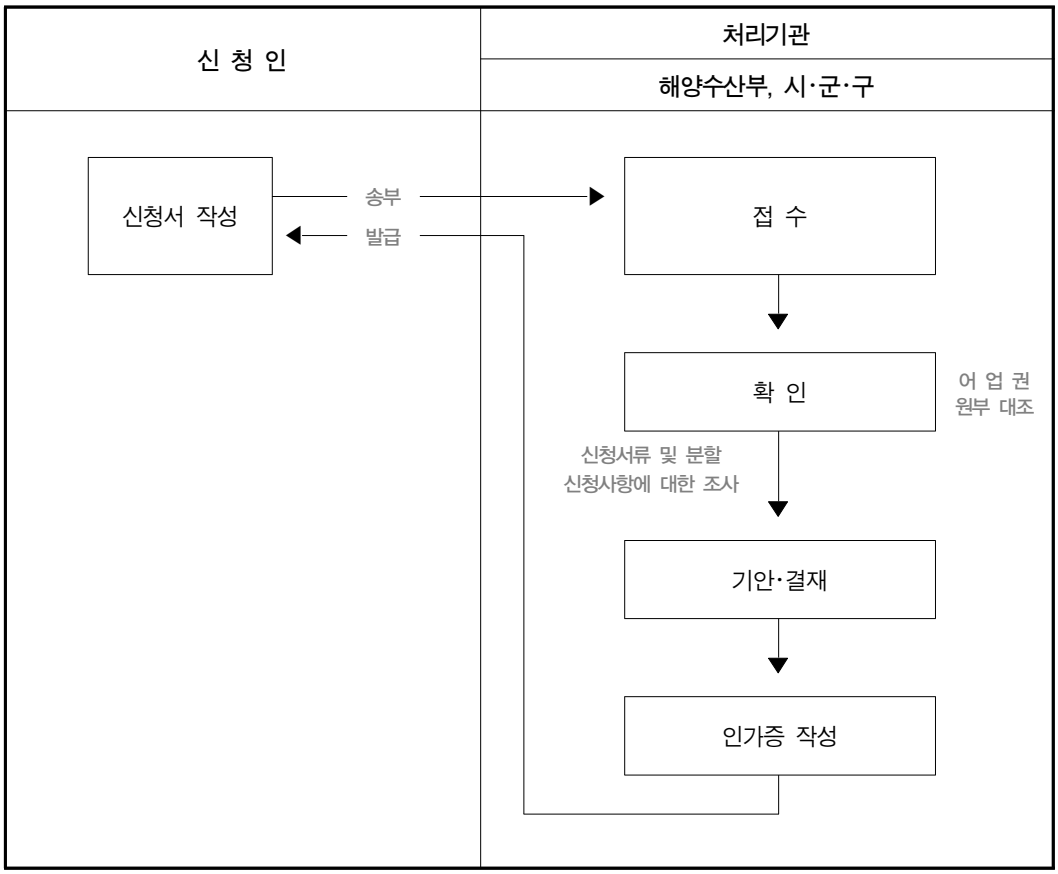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제출서류 검토 및 확인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 분할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어업권을 분할하기 전의 어업권의 어장면적 ha		
어업권을 분할받을 자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ha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ha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어장면적 ha
	주 소		
분할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분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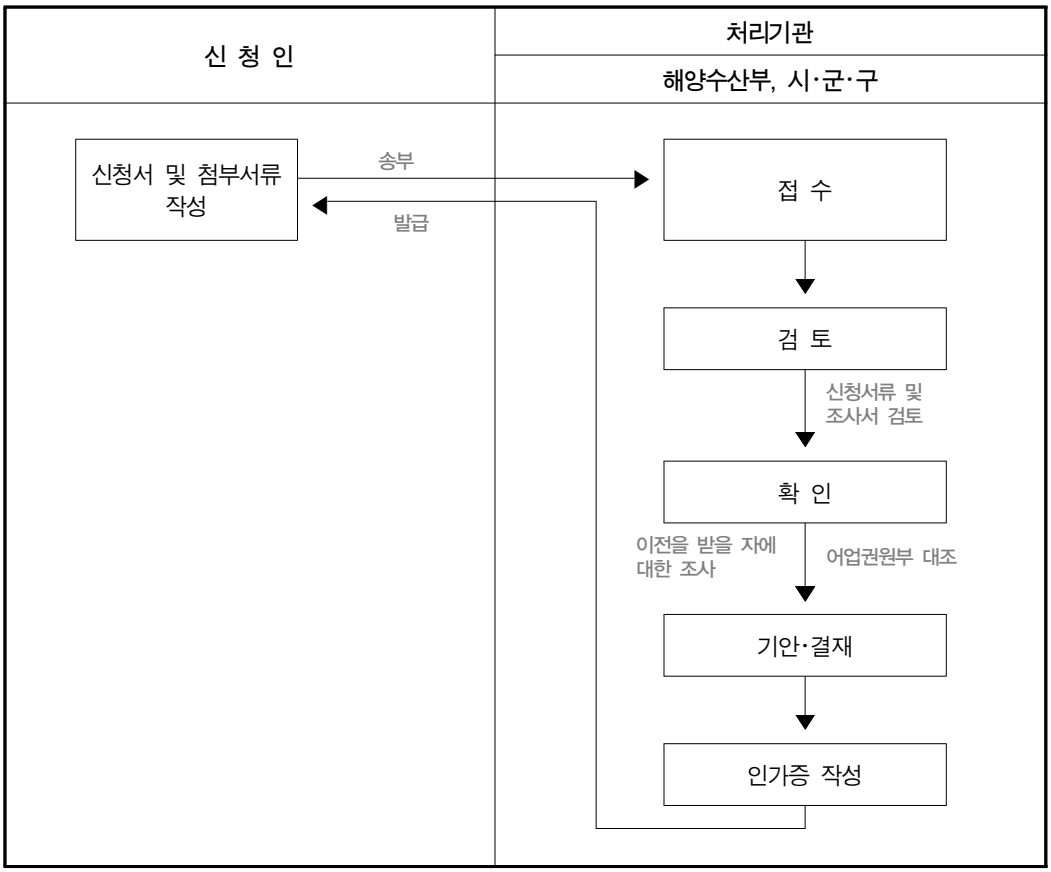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제출서류 검토 및 확인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6.23〉

이전인가 신청서
([ ] 어업권 [ ] 지 분)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이전하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전받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전하려는 지분		이전의 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어업권을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권 포기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 제35조제1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즉시)

2 업무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발 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첨부서류/어업권 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제출서류 검토 및 확인)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포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어업의 종 류		면 허 번 호	어업면허 제 호
포기일자	년 월 일		
포기사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포기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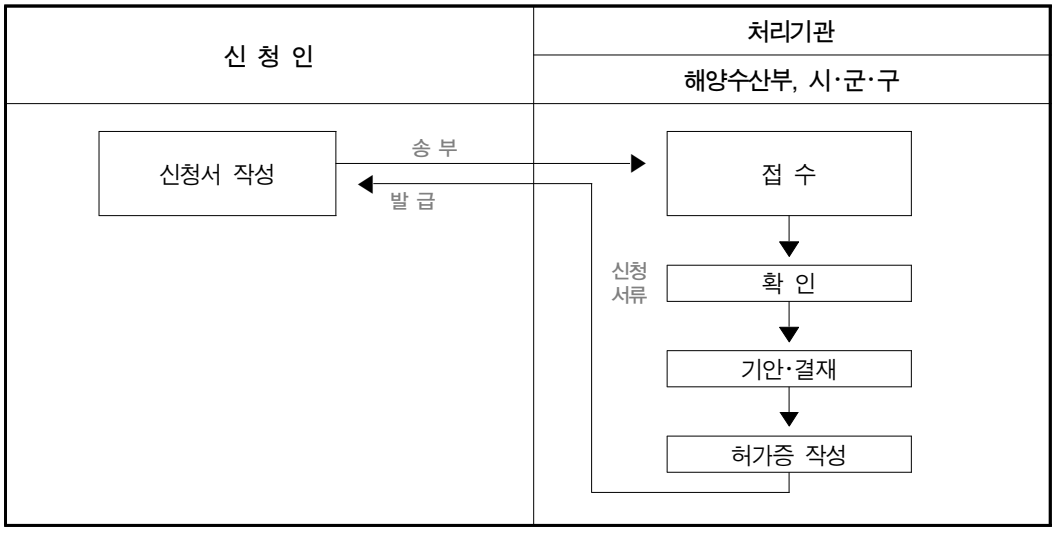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 허 번 호	제 호	포획물·채취물(양식어업 제외)	
면 허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면허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제4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7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기안·결재	→	발급
신청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첨부서류)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유 신청인의 지분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어업의 종류		수면의 번호		신청면적	면적 : ha
양식방법·양식시설량		포획물·채취물 (양식어업 제외)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지정을 받으려거나 승인을 얻으려는 어선	어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개월)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면허 신청기간 연장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4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1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발 급
신청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첨부서류)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6.23〉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개발 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포획물·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수면의 번호	수면의 면적 ha
	수면의 위치	

면허의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하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2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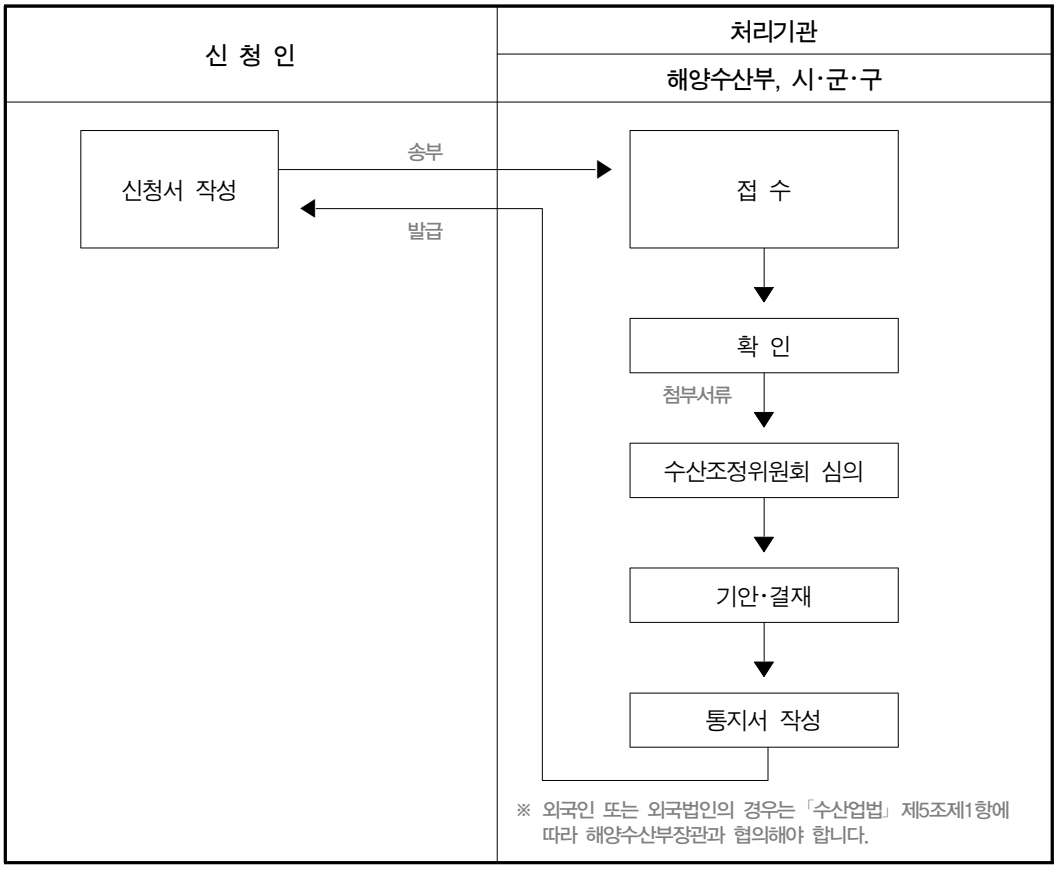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1.「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가.「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다.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라.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8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가.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내용 및 결과(「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1년 6개월 이상 경영한 자만 해당합니다)
  - 나. 내만(외해양식어장을 시설할 수 있는 수면기준에 미치지 못한 해역을 말합니다) 양식어장의 외해 이설 계획(「수산업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합니다)
  -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23〉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 적	
	주 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개발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 ha 수심 : m
	수면의 위치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수산업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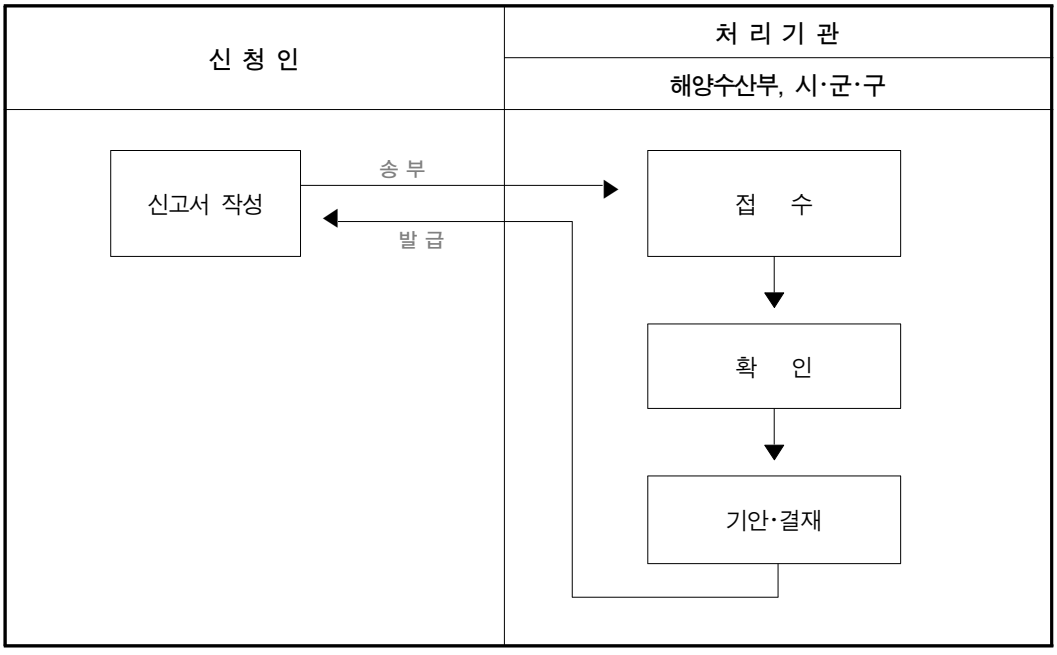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23〉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 ] 선정 · [ ] 변경, [ ] 지분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고 내용	어업의 종류		신청면적 ha
	양식방법·양식시설량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
	면허신청연월일	년 월 일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 또는 변경사항	변경 전 대표자	선정 또는 변경 후 대표자
	공동신청자의 공유자 지분 변경사항	성명	변경 전 지분 / 변경 후 지분

「수산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어업면허 공동신청자의 대표자의 선정·변경 또는 지분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지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장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 제3항
- 담당부서 : 양식산업과(외해양식만 해당)(연락처 : 044-200-563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양식산업과(처리기간 :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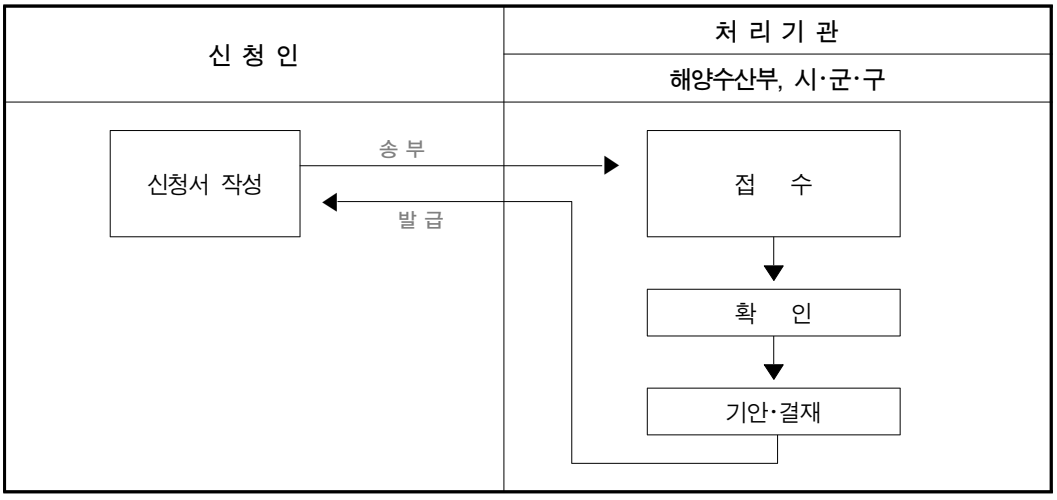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
- 수수료 : -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6.23〉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면적 ha	품 종
	수면의 위치와 구역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받으려는 어장시설물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규모(㎡)	수 량(개)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연장)를 받으려는 사유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 담당부서 : 어촌어항과(연락처 : 044-200-565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처리기간 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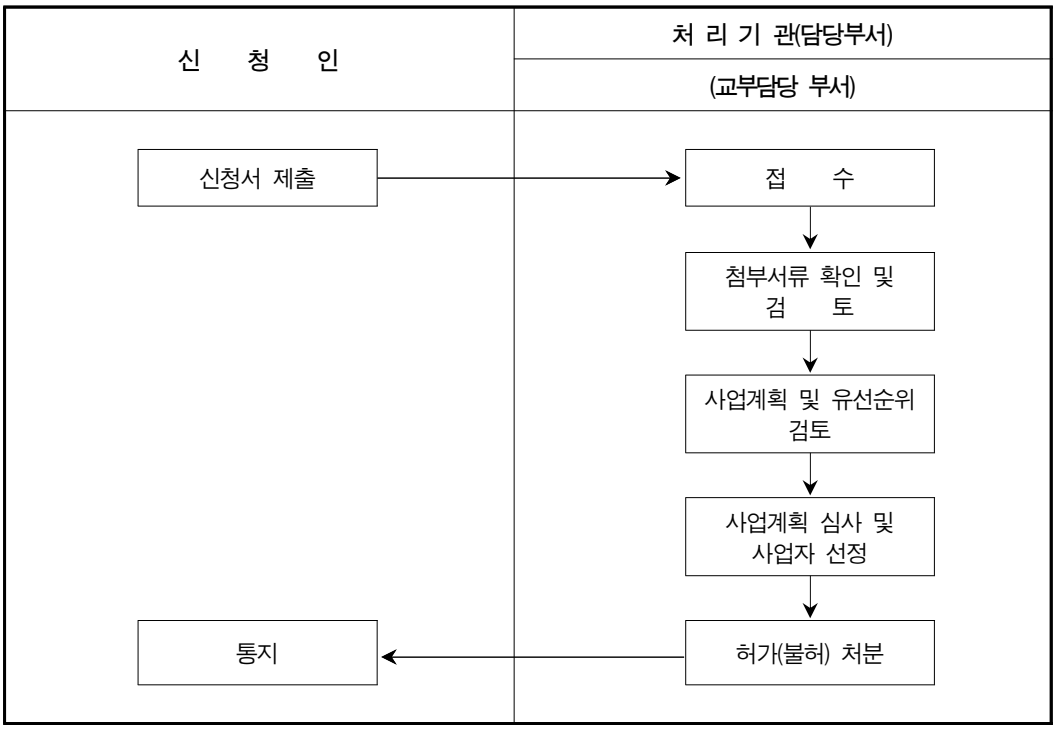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3.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4.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평면도·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7.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어항개발계획(부지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 검토
- 사업수행능력 적정 여부 검토
- 공공단체의 투자계획과 중복여부 검토 등

:: 별지 서식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어항의 명칭	소재지	
	공사의 종류		
	공사의 목적		
	시설이용계획		
	공사장소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방법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3.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4.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평면도·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7.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	→	사업계획심사 및 사업자 선정	→	허가(불허) 처분	→	통지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 시·군·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 시·군·구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 9조
- 담당부서 : 어촌어항과(연락처 : 044-200-5657)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또는 시·군·구(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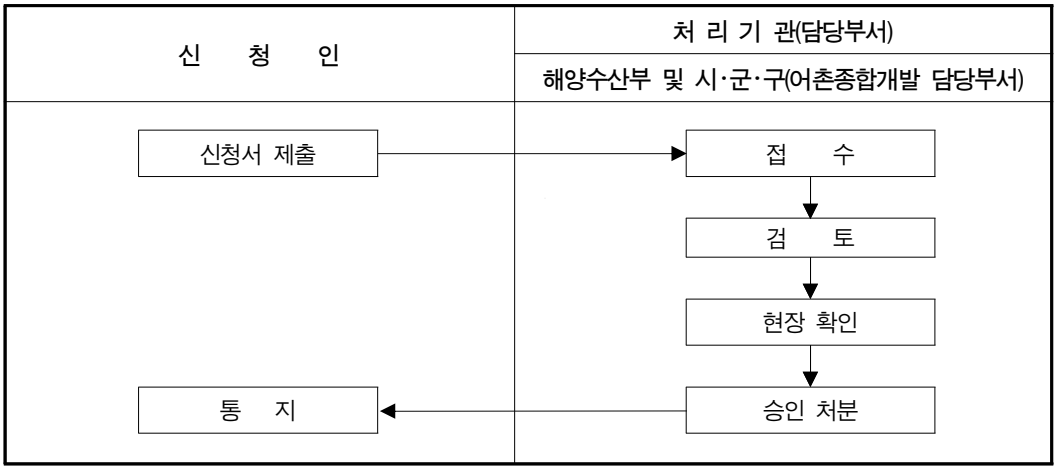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폐지사유 및 폐지하는 어촌종합개발시설처리계획, 시설 및 재산의 매각대금사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최종 심사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폐지시설 내역	시설명	
	시설위치	

폐지사유
폐지하는 어촌종합개발시설처리계획
시설 및 재산의 매각대금사용계획

「어촌·어항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단체)의 장 (인)

귀하

첨부서류	폐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 확인	→	승인 처분	→	통 지
신청인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군·구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 사용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10조제3항, 제34조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호. 제34조, 시행규칙 제5조, 17조
- 담당부서 : 어촌어항과(연락처 : 044-200-5657)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또는 시·군·구(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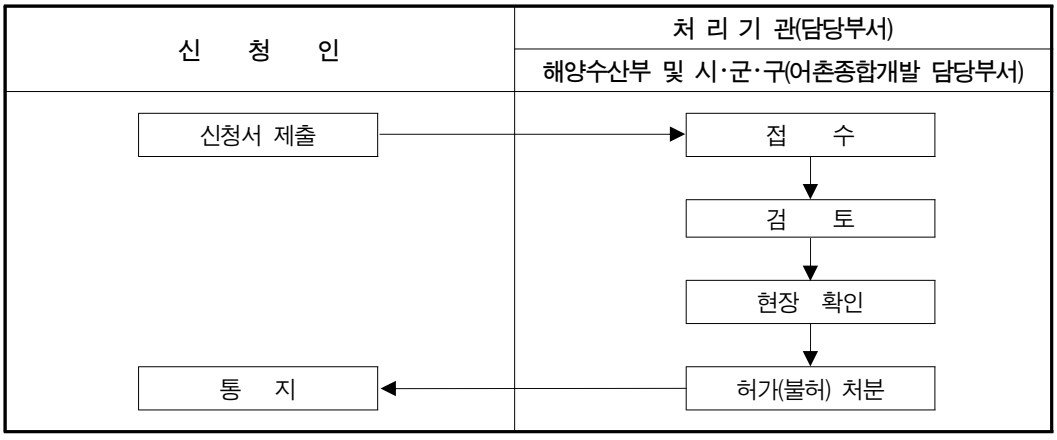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도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준공 전 사용으로 인하여 향후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검토
- 준공 전 사용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 검토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개요	사업명	허가연월일
	소재지	
	사업내용	
	전체공사 준공예정일	

준공전 사용 (신청내용)	대상시설	사용기간
	사유	

「어촌·어항법」 제10조제3항 단서·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7조에 따라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1부 3.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타당성 검토 및 현장 확인	→	허가(불허) 처분	→	통 지
신청인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시·군·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시·군·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시·군·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시·군·구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 사용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10조제3항 단서, 제34조,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제17조
- 담당부서 : 어촌어항과(연락처 : 044-200-5658)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시·군·구(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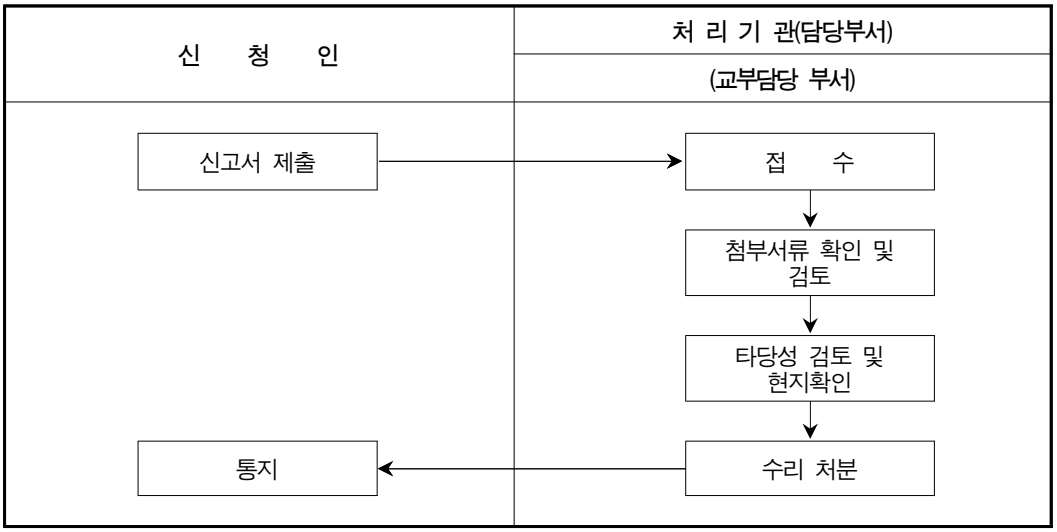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준공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2. 준공전 사용계획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준공전 사용목적에 적정한 공정율 진척되었는지 여부 등
- 준공전 사용으로 인하여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에 지장 여부 등

:: 별지 서식

준공전 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개요	사업명	허가연월일
	소재지	
	사업내용	
	전체공사 준공예정일	

준공전 사용 (신고내용)	대상시설	사용기간
	사유	

「어촌·어항법」 제10조제3항 단서·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7조에 따라 준공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전 사용대상시설의 사진 2. 준공전 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타당성 검토 및 현장 확인	→ 수리처분	→ 통 지
신고인	해양수산부/지방 해양수산청장 시·도/시·군·구	해양수산부/지방 해양수산청장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지방 해양수산청장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지방 해양수산청장 시·도/ 시·군·구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10조제1항, 제34조, 시행규칙 제4조
- 담당부서 : 어촌어항과(연락처 : 044-200-5658)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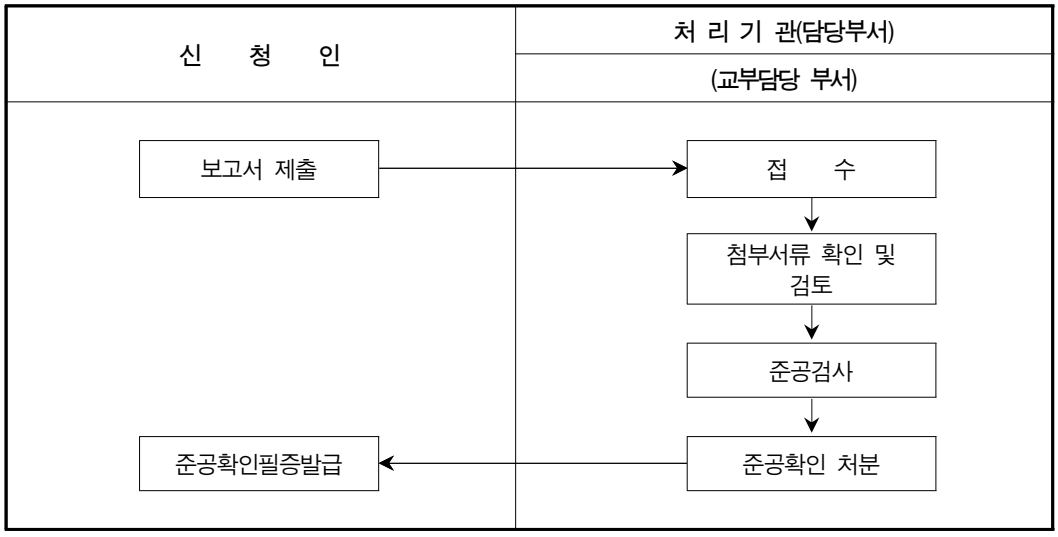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준공검사조서(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승인 또는 허가된 내용대로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하였는지 여부(승인 또는 허가사항 준수여부, 시설기능 이상여부, 총사업비 명세서 검토 등)

:: 별지 서식

준공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보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소 재 지
사업의 내용
사업기간
준 공 일

「어촌·어항법」 제10조제1항·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7조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준공검사조서(「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보고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준공검사	→	준공확인처분	→	준공확인필증 발급
보고인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수입(재)검역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연락처 : 051-400-5716)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처리기한 : 서류 2일, 임상 3일, 정밀 : 1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역 실시	→	검역 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각 지원 민원실)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입(재)검역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3)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4)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5) 이식승인서 사본(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7)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물의 경우)

(8)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 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 수수료 : 신청 수수료 없음(정밀검사 항목별 수수료 적용)
- 정밀검사 수수료
  - 세균성·곰팡이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5,000원
  - 기생충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0,000원
  - 바이러스 질병 : 검사항목 당 5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8-1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26.〉

수입(재)검역 신청서
(APPLICATION FOR IMPORT AQUATIC CREATURE QUARANTINE)

(앞쪽)(Front)

접수번호	처리기간	1. 서류검사 : 2일, 2. 임상검사 : 3일, 3. 정밀검사 : 15일, ※ 검역물의 반입 전에 미리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반입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신청번호 (Application No.)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화물관리번호 (Cargo Management No.)	
입항일 (Date of Arrival)			선(기)명 (Name of Ship or Flight)		
신청인 (Applicant)	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		
품명 (Common name/ Scientific name)					
규격(Size)			자연/양식산 (Wild/Cultured stocks)	자연산(Wild stocks) [ ] 양식산(Cultured stocks) [ ]	
개수(Quantity, C/T)			중량 (Total weight or number)		
금액[Value(US$)]			용도(Use)		
수출국 (Country of Export)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hment)	업체명 (Company name)		등록시설번호 (Registered serial No.)		
	주소(Adress)				
수출자 (Exporter)	업체명 (Company name)				
	주소(Adress)				
선적항 (Port of Shipping)			선적일 (Date of Shipping)		
도착항 (Port of Arrival)					
검역시행장 (Quarantine facility)	시행장명(Facility name)		지정번호(Registration No.)		
	수용일(Date of reception)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재)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creatures in accordance with Item 1 of Article 27 or Item 1 of Article 35 of the Aquatic Creature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1 of Article 30 or Item 1 of 2 of Article 36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To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 Regional Office

210mm×297mm[백상지 80g/㎡]

수출(재)검역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2조, 제23조 및 제31조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연락처 : 051-400-5717)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처리기한 : 서류 2일, 임상 3일, 정밀 : 1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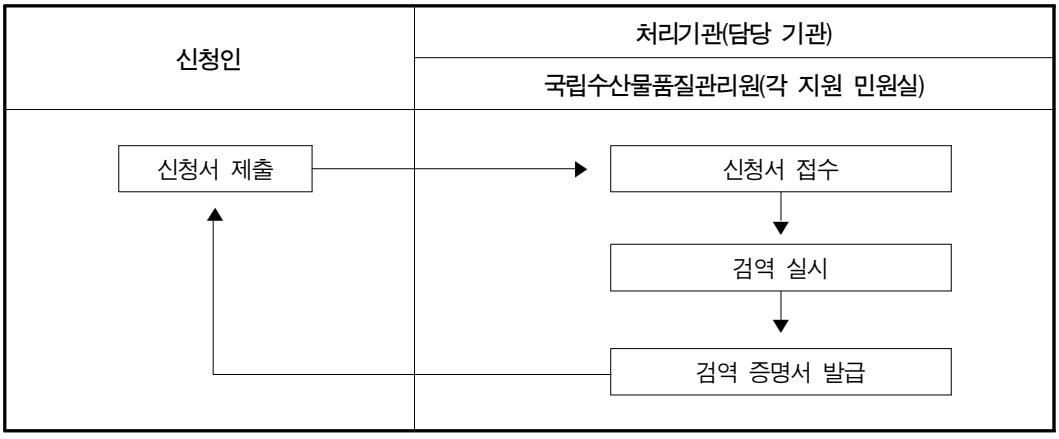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출(재)검역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이식승인서 사본(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

(3)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 수수료 : 신청 수수료 없음(정밀검사 항목별 수수료 적용)
- 정밀검사 수수료
  - 세균성·곰팡이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5,000원
  - 기생충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0,000원
  - 바이러스 질병 : 검사항목 당 5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8-1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2.26〉

수출(재)검역 신청서
(APPLICATION FOR EXPORT AQUATIC CREATURE QUARANTINE)

(앞쪽)(Front)

처리기간 1. 서류검사 : 2일 2. 임상검사 : 3일
3. 정밀검사 : 15일
※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검역희망일부터 산정합니다.

신청번호(Application No.)		신청일(Date of application)	

수출자 (Exporter)	성명(Name)	업체명(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	
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hment)	성명(Name)	업체명(Company 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	

품명 (Common name/Scientific name)		규격(Size)	
개수(Quantity, C/T)		중량 (Total weight or number)	
금액[Value(US$)]		용도(Use)	

수입자 (Importer)	회사명 (Company name)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 :)

선적항 (Port of shipping)		선적일 (Date of shipping)	
목적지 (Place of destination)		운송수단 (Mean of conveyance)	

검역시행장 (Quarantine facility)	시행장명(Facility name)	지정번호(Registration No.)
	수용일자(Date of reception)	검역희망일(Expected date of quarantine)

수입국 요구질병 항목 (List of disease requested by import country)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 또는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재)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creat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r Item 1 of Article 35 of the Aquatic Creature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1 of Article 34 or Item 1 of 2 of Article 36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To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 Regional Office

210mm×297mm[백상지 80g/㎡]

파견검역 요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8조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연락처 : 051-400-5716)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원(처리기간 9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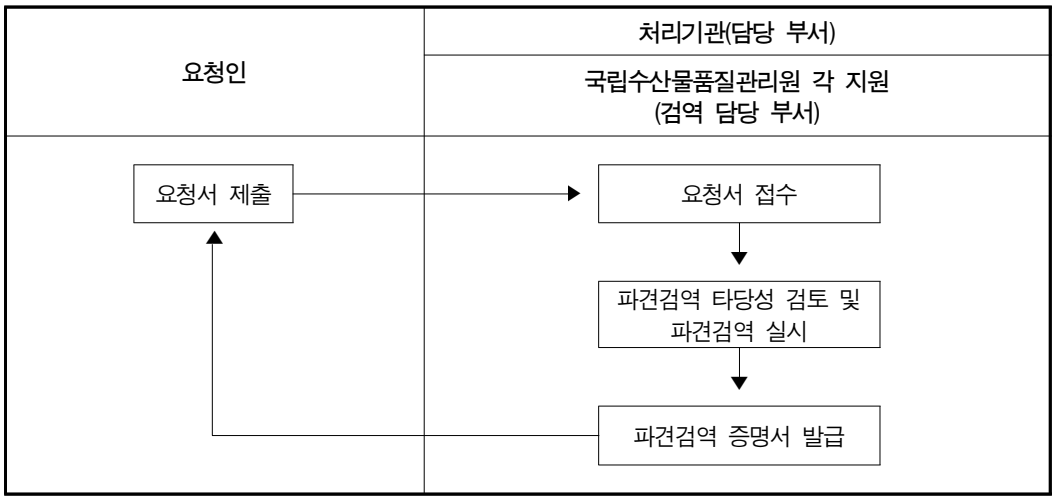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파견검역 요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2) 이식승인서 사본(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

(3) 수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제공 확인서(국내 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

(4) 지정검역물 보관 장소 시설현황 및 위치도

(5)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체계 유지 등 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5-34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12.26〉

파견검역 요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요청인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파견국가 및 지역		파견기간	
검역기관명 및 주소			
파견검역 요청사유			
정밀검사 방법	[ ] 현지 검역기관에서 정밀검사 희망 [ ] 국내반입 후 정밀검사 희망		

	품명	학명	규격	중량(kg)	금액(US$)
지정검역 대상 수산생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견검역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파견검역 요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2.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양식시설을 포함합니다)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5.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계 유지 등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연락처 : 051-400-5717)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CIQ)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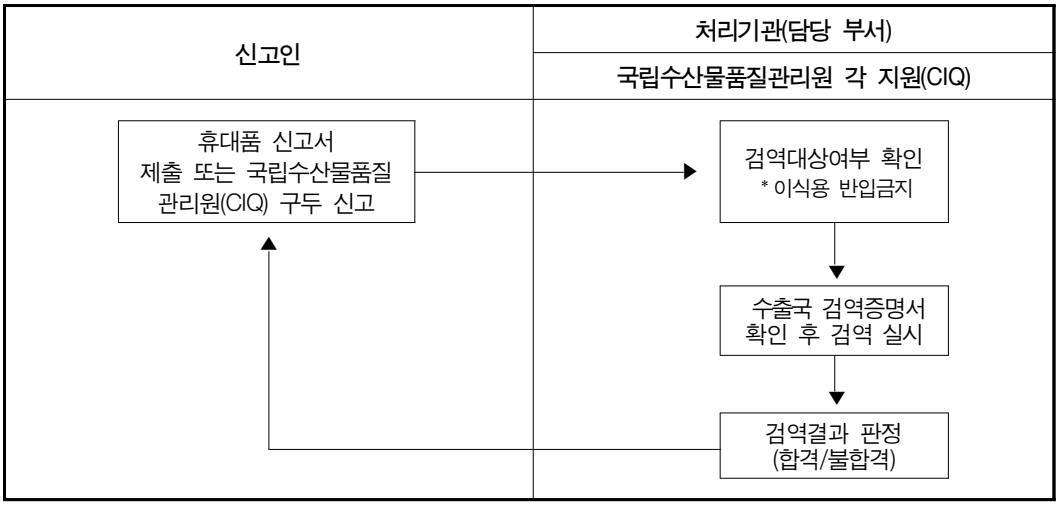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검역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 수수료 : 없음

4 기관의 심사기준

-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8-1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2.26〉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DECLARATION FOR IMPORT AQUATIC CREATURE QUARANTINE FOR HAND-CARRIED BAGGAGES)

(앞쪽)(Front)

신고번호(Declaration No.)		신고일(Date)	

신고인 (Declarer)	성명(Name)	여권번호(Passport No.)	
	국적(Country)	성별(Sex)	[ ] 남성(Male) [ ] 여성(Female)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		

검역대상품 (Quarantine objective)	품명 (Common name /Scientific name)	개수 (Quantity, C/T)	중량 (Total weight or number)	금액 [Value (US$)]	수입국 (Country of import)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용도(Use)			
선명 또는 항공기명 (Name of Ship or Flight)		그 밖의 사항 (Etc.)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을 신고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creatur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Article 27 of the Aquatic Creature Disease Control Act and Article 31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To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 Regional Office

210mm×297mm[백상지 80g/㎡]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2조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연락처 : 051-400-5717)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처리기간 1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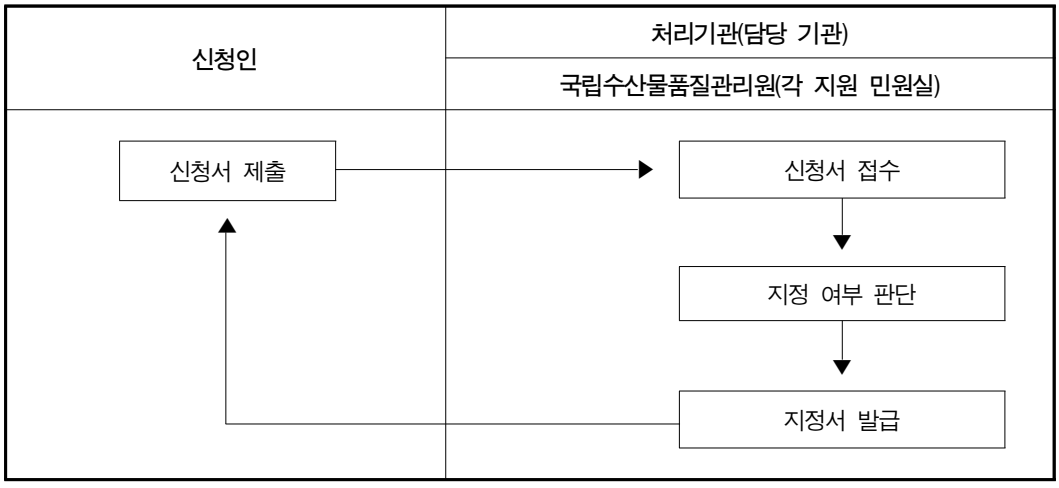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실평면도(설계도면 사본 첨부)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 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5)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원본(변경신청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14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2.26〉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구분	[ ] 육상수조 [ ] 그 밖의 시설			
검역대상물				
검역관리인	성명		자격	
신청면적 (수조 수)	㎡(조)			
용수관리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	유입수	환수량 톤/일 소독방법	배출수	환수량 톤/일 소독방법
변경내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1)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시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 2)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변경신청의 경우 :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 및 제96조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연락처 : 051-400-573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서류, 관능 : 3일, 정밀 :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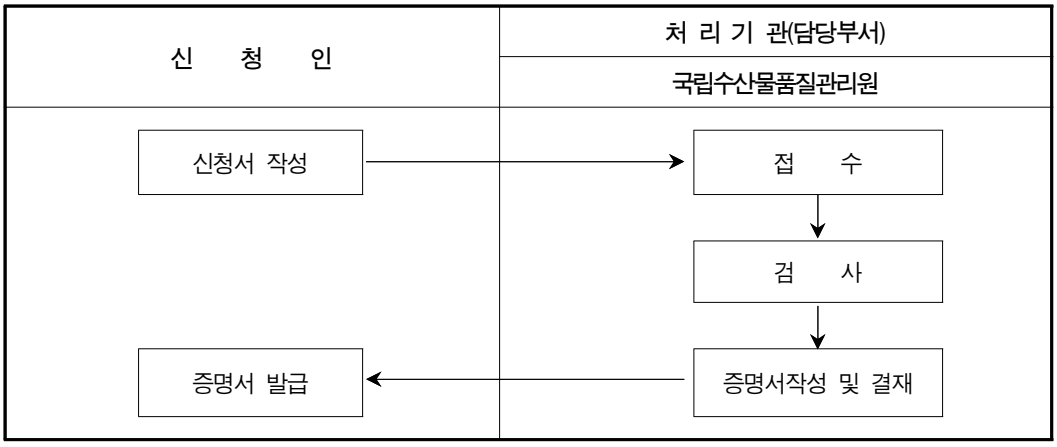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규격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그 기준·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 1부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 일지 1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장의 확인서 1부

(4) 재검사인 경우 : 재검사 사유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3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3.3.24〉

수산물 · 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정밀검사시 : 7일)

신청인	업체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검사대상 수산물	품명	개수	중량	포장의 종류	1개의 내용량	생산자	생산지	목적지	가격

검사(생략) 받으려는 항목		검사 희망일 (장소)		발급 받으려는 증명서 종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제1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검사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수수료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규격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그 기준·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 1부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 일지 1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장의 확인서 1부 4. 재검사인 경우 : 재검사 사유서 1부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사	→	증명서작성	→	결 재	→	증명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검사기관)		처리기관 (검사기관)		처리기관 (검사기관)		처리기관 (검사기관)		처리기관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4조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연락처 : 051-400-573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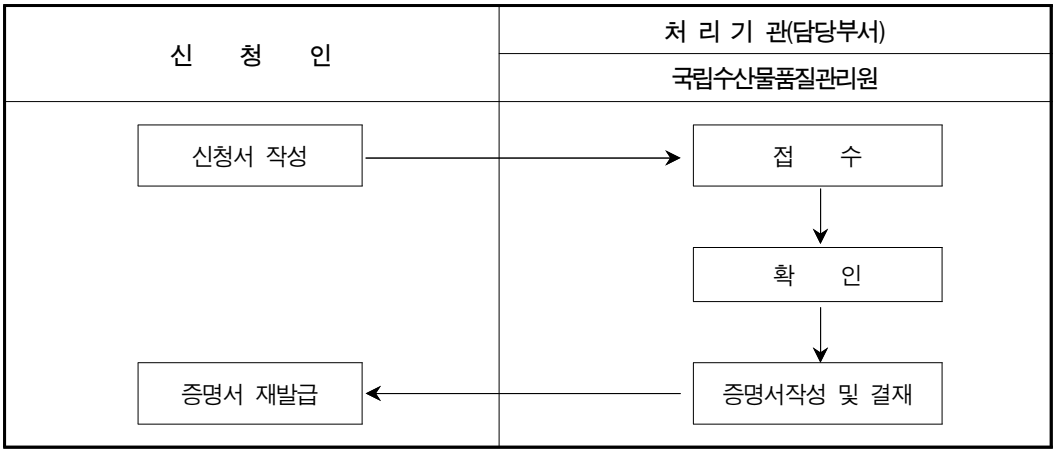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실 사유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3.3.24〉

수산물 · 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사증명서의 종류		
검사증명서 번호		발급 연월일
검사증명서 발급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분실일		
분실 장소		
분실 사유	※ 분실사유서 별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분실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증명서작성	→	결 재	→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검사기관)		처리기관 (검사기관)		처리기관 (검사기관)		처리기관 (검사기관)		처리기관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 발급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4조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연락처 : 051-400-573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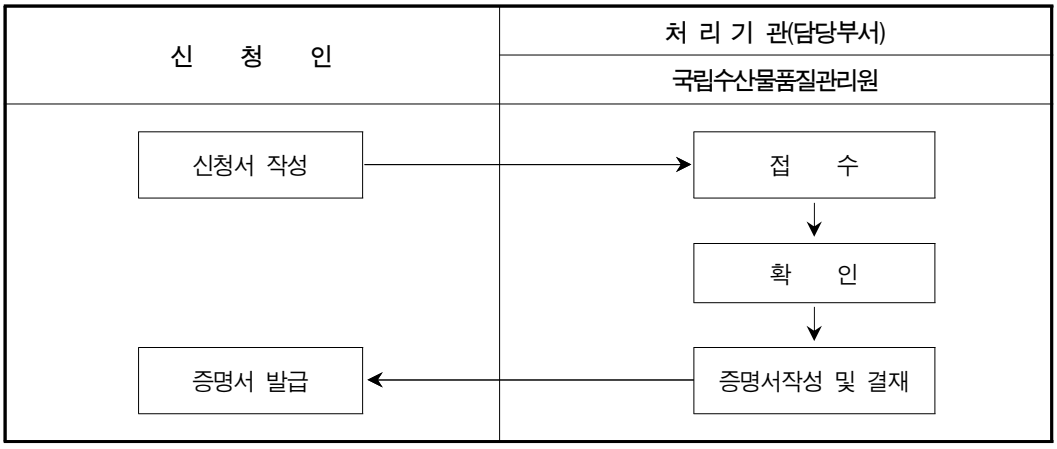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3.3.24〉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증명받으려는 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증명서작성	→	결 재	→	증명서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검사기관)		처리기관 (검사기관)		처리기관 (검사기관)		처리기관 (검사기관)		처리기관 (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검사증명서 (분할·합병·정정)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물검사예규 제14조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연락처 : 051-400-573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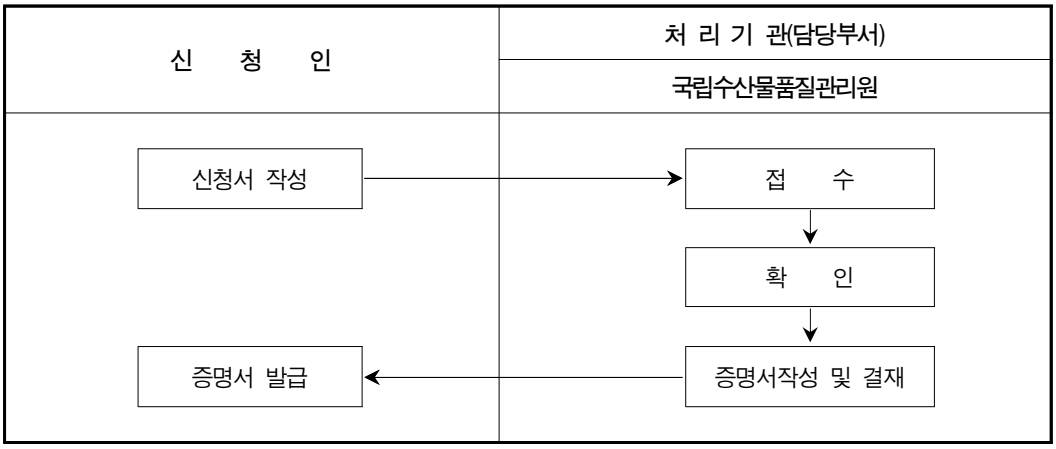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검사증명서 (분할·합병·정정) 신청서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할·합병·정정) 하고자 하는 검사증명서 원본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검사증명서(분할·합병·정정)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원검사증명서의 발행번호				
원 검 사 증 명 서	등 급			
	수 량			
(분할, 합병,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				
사 유				
기 타				

위와 같이 (분할·합병·정정) 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구비서류 : 원검사증명서 부	수 수 료
	없 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연락처 : 051-400-573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1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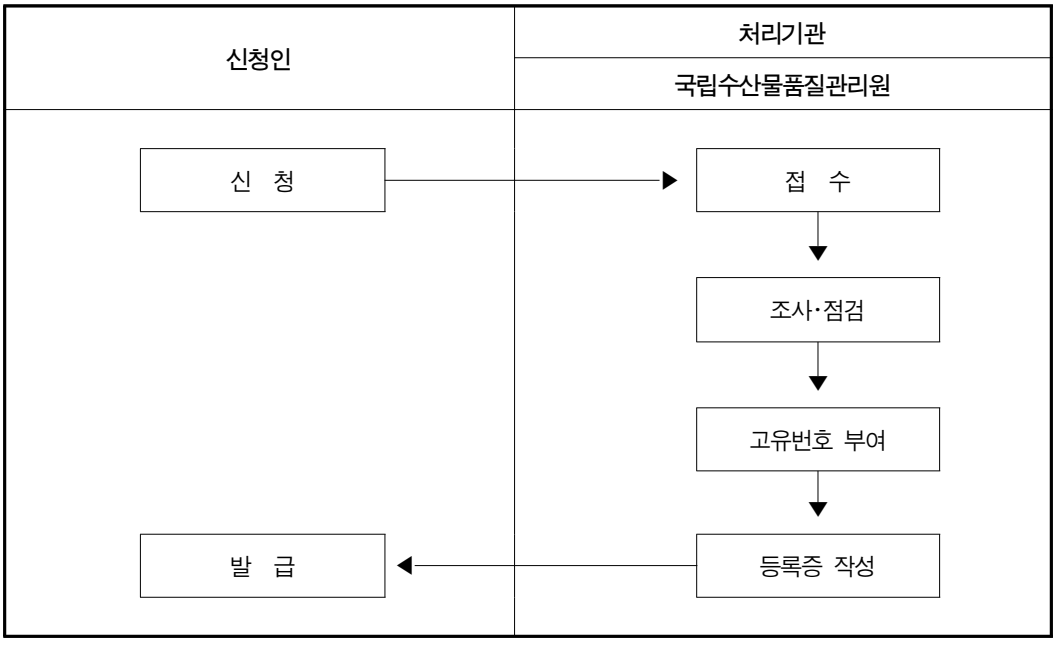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 공정도 1부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계획서 1부

(4) 어업의 면허·허가 및 신고,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 등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증명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49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3.3.2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양식장명·선박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가공시설	생산·가공시설의 종류	생산·가공시설의 명칭
	생산·가공시설의 소재지	가공선박의 총톤수
	제조공장(처리장 또는 양식장) 면적(㎡)	
	생산·가공품의 종류	냉장 및 동결 능력(M/T)
	1일 또는 연간 생산능력	용수의 종류
	어업·수산물가공업의 면허 등의 번호	주요 기기 및 시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 공정도 1부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계획서 1부 4. 어업의 면허·허가 및 신고,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 등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연락처 : 051-400-573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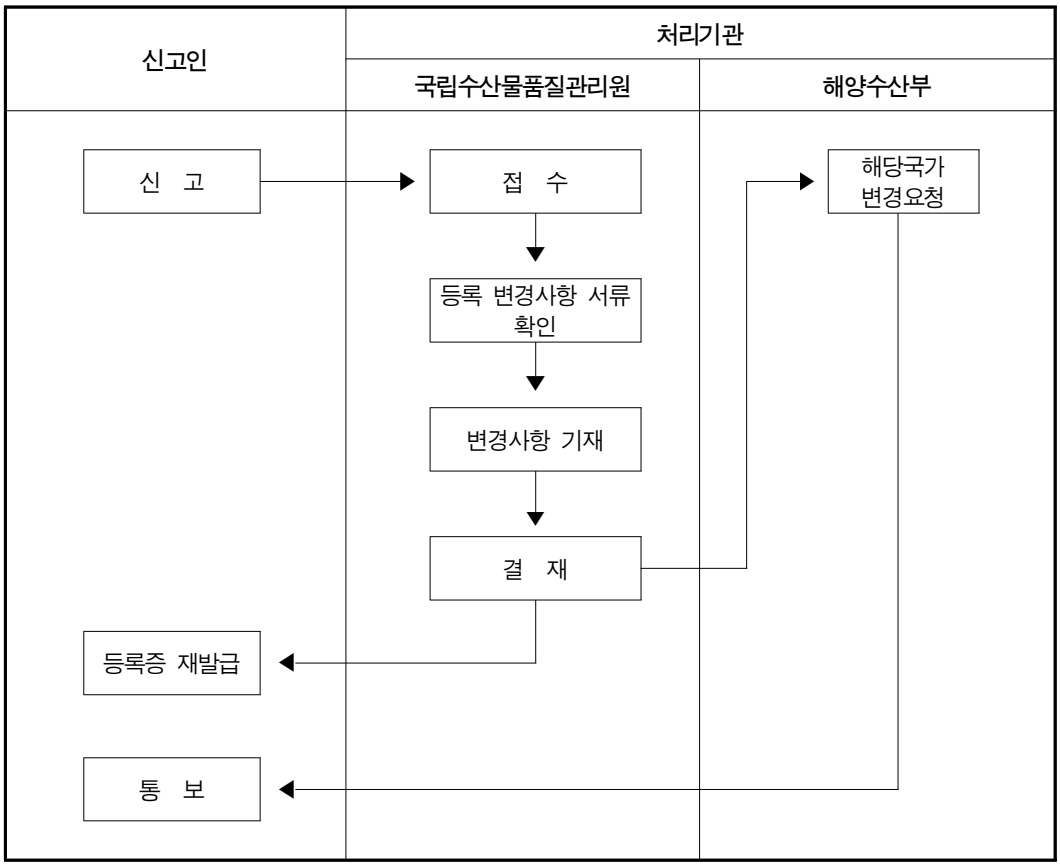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 신고서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3.3.2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업체명(양식장명·선박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가공 시설	생산·가공시설의 종류	생산·가공시설의 명칭
	생산·가공시설의 소재지	가공선박의 총톤수
	제조공장(처리장 또는 양식장) 면적(㎡)	건물의 종류 및 연면적의 합계(㎡)
	생산·가공품의 종류	냉장 및 동결 능력(M/T)
	1일 또는 연간 생산능력	용수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5항에 따른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연락처 : 051-400-573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가공시설 15일, 양식시설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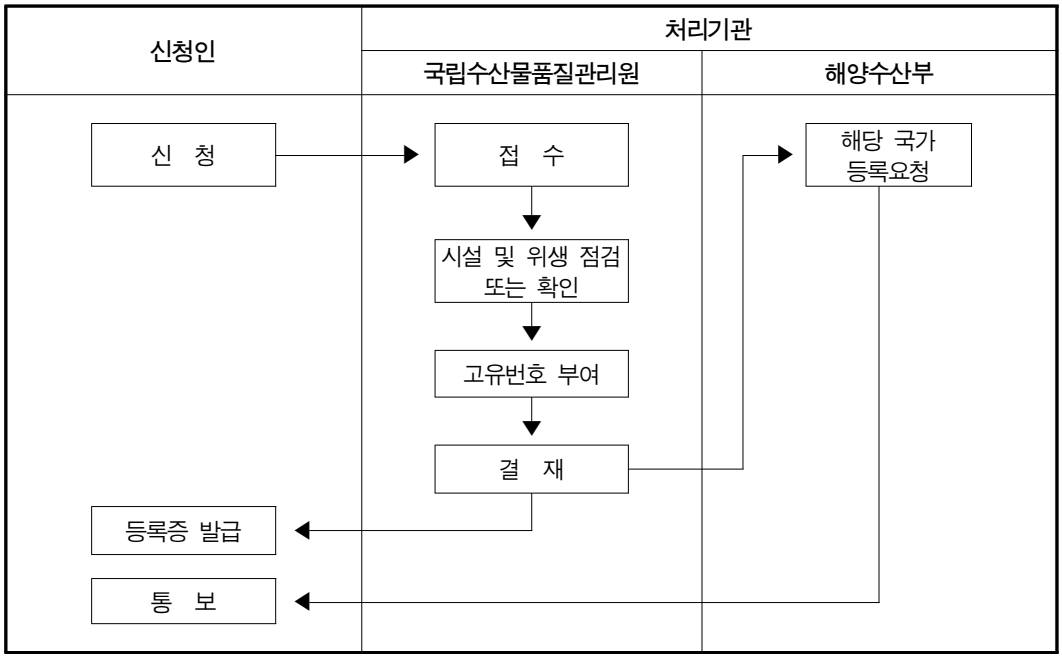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생산·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1부

(3) 생산·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1부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이행계획서(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생산·가공시설 중 선박 또는 보관시설을 제외합니다) 1부

가. 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가공시설 : 법 제69조의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나. 그 밖의 생산·가공시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6) 선박의 시설배치도(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가공시설 중 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7)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신고, 공판장·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면허·허가·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가공시설은 제외합니다)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47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3.3.24.〉

생산 · 가공시설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양식시설 : 7일)

신청인	업체명(양식장명·선박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가공 시설	생산·가공시설의 종류	생산·가공시설의 명칭
	생산·가공시설의 소재지	가공선박의총 톤수
	제조공장(처리장 또는 양식장) 면적(㎡)	건물의 종류 및 연면적의 합계(㎡)
	생산·가공품의 종류	냉장 및 동결 능력(M/T)
	1일 또는 연간 생산능력	용수의 종류
	어업·수산물가공업의 면허 등의 번호	주요 기기 및 시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
-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연락처 : 051-400-573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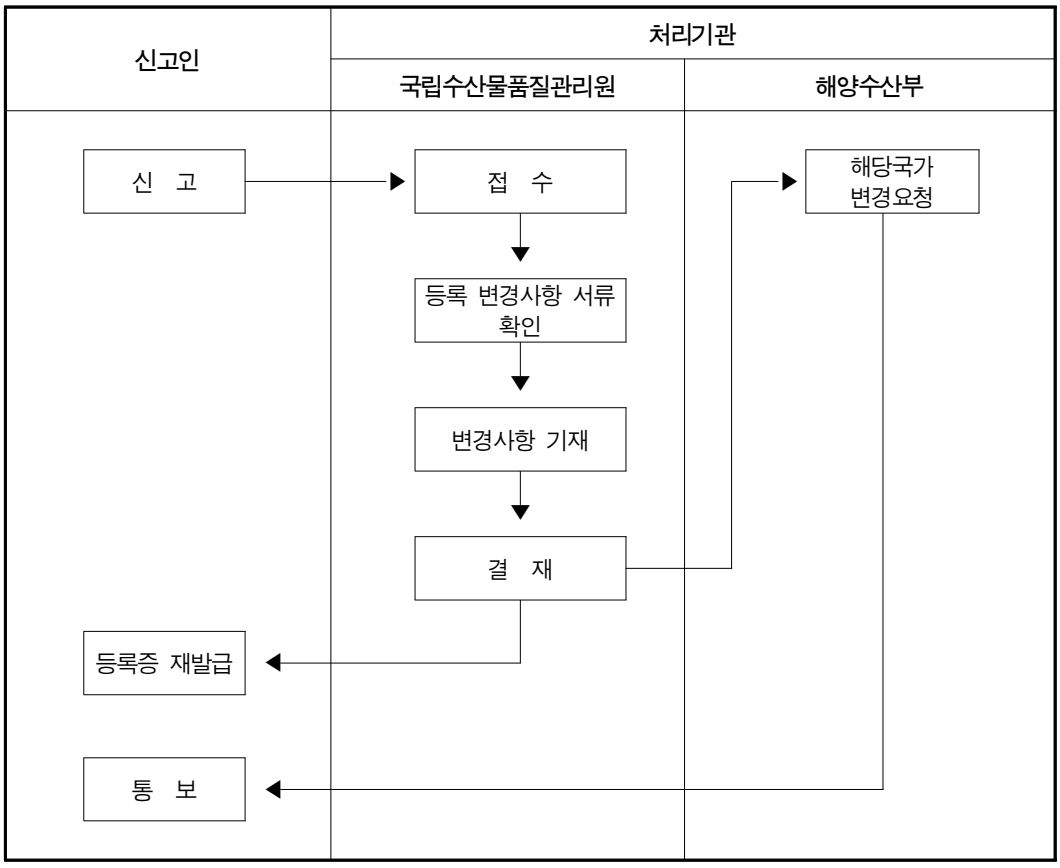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변경 신고서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3.3.24〉

생산 · 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업체명(양식장명·선박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가공시설	생산·가공시설의 종류	생산·가공시설의 명칭
	생산·가공시설의 소재지	가공선박의 총톤수
	제조공장(처리장 또는 양식장) 면적(㎡)	건물의 종류 및 연면적의 합계(㎡)
	생산·가공품의 종류	냉장 및 동결 능력(M/T)
	1일 또는 연간 생산능력	용수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5항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생산·가공시설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서 재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연락처 : 051-400-576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처리기간 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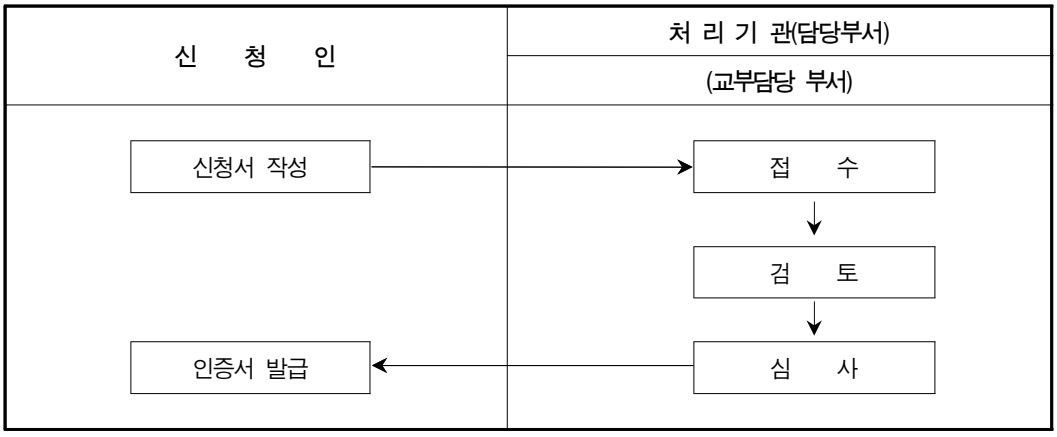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2.13〉

수산물 ·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인증번호	
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손상된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서 (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사	→	인증서 발급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기관)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기관)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기관)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6조
-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연락처 : 051-400-576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우수식품인증기관
  (처리기간 : 정기심사 30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시 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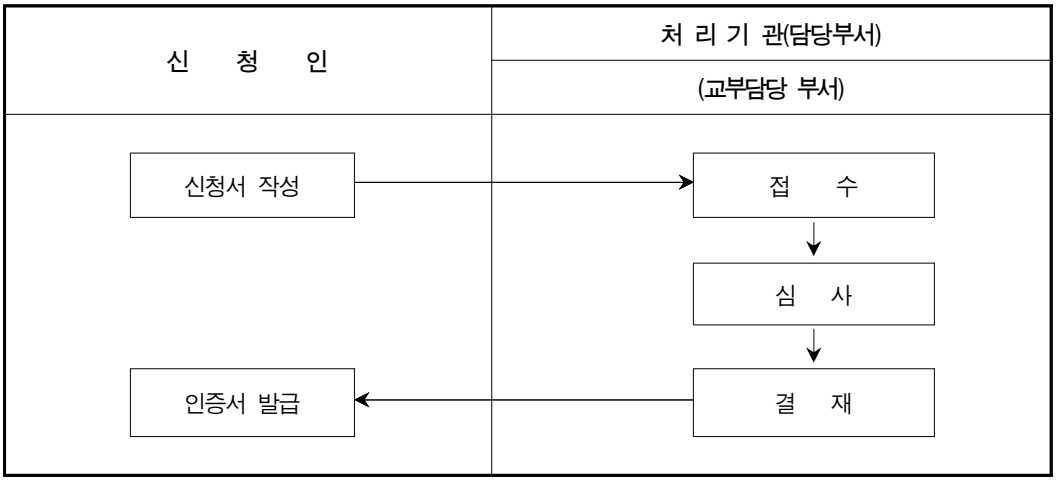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재발급 요청 공문(품질인증서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시)
   - 수산전통식품의 정기심사 신청서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 6개월간의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 수수료 : 품질인증서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시(없음)
  정기심사 : 30,000원(추가 1건당 15,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연락처 : 051-400-576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원(처리기간 60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심 사	→	지정여부결정	→	지정서 작성	→	발 급
신청인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공무원확인사항)

- 수수료 : 200,000만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3.24〉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첨부서류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심 사	→	지정여부결정	→	지정서 작성	→	발 급
신청인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연장)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
-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연락처 : 051-400-576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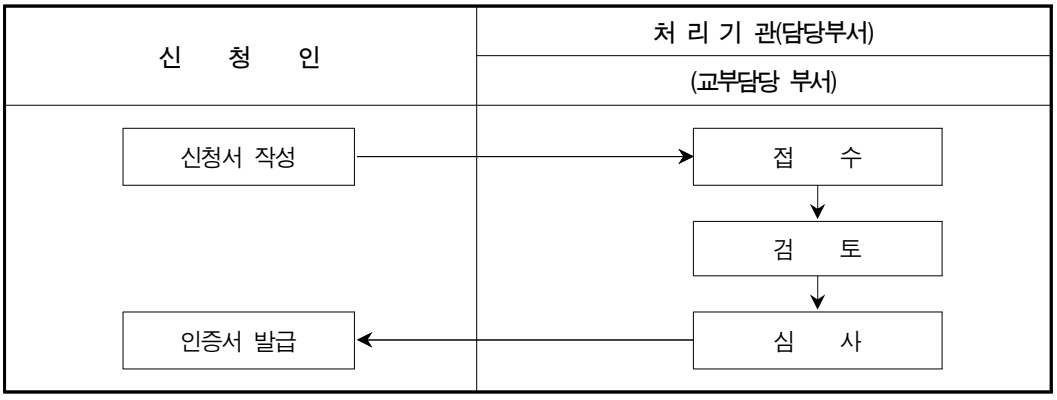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수수료 : 20,000원(추가 1건당 1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9조(품질인증기준)
-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9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2.13〉

수산물 ·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 [ ]란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양식기간)	출하기간
	생산해역		생산계획량 톤
	포장(공장·양식장) 소재지		
인증신청 내 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수산물, [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2.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수수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연락처 : 051-400-576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우수식품인증기관(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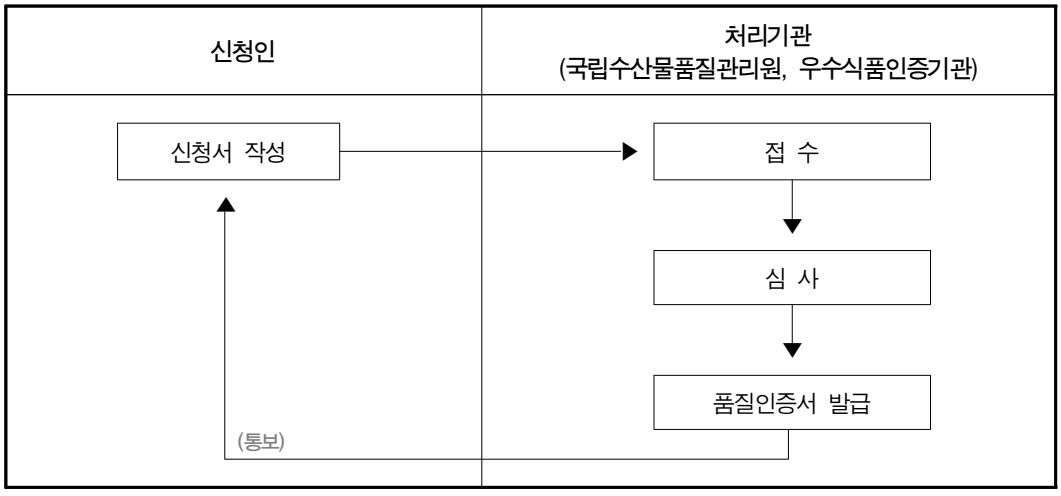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서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 수수료 : 30,000원(추가 1건당 15,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 수산전통식품 표준규격(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6-5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제품생산개시연도		
	연간생산능력		
	원료사용	주원료	부원료
	제품특성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수수료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정보 이용 동의서

1. 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우수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식품 유통 활성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어구자재의 성능 측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3, 5, 8조 및 [별지 제1, 4, 5호 서식])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연락처 : 051-720-2584)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7일,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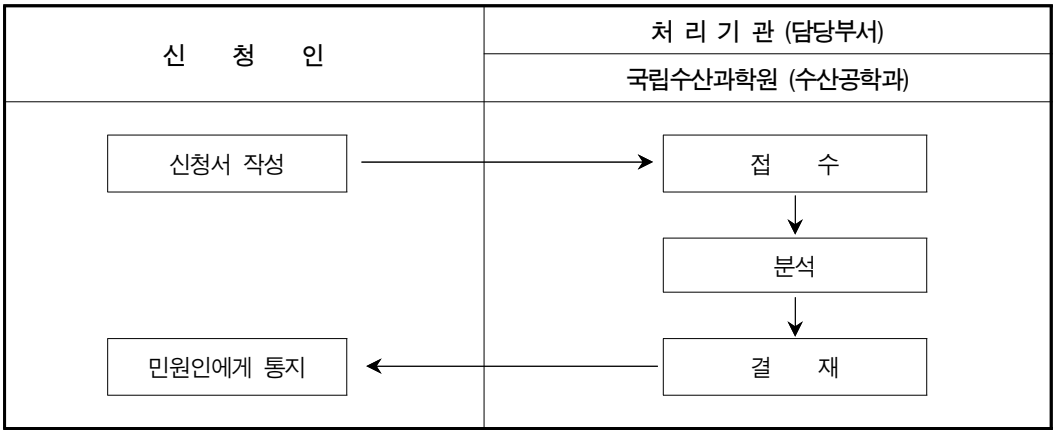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
2. 우체국 전자수입인지(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수수료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시 험
□ 조 사 의뢰서
□ 분 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의뢰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의뢰내용	⑤의뢰목적 :			
	⑥구 분 :			
	⑦종 목 :			
	⑧세부종목 :			
	⑨시료명 및 설명 :			
	⑩현지조사내역 :			
	⑪현지조사일정 . . 부터 . . 까지 (일간)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물	항목별 시료	수수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작성방법

⑥부터 ⑧까지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 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시 험
[ ] 조 사 결과서
[ ] 분 석

국립수산과학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번지 수산공학과 담당자: , Tel: 051-720-	결과서 번호: 페이지( )/(총)

1. 의뢰인
   - ○ 성 명:
   - ○ 주 소:
   - ○ 의뢰일자: 년 월 일

2. 결과서 용도:
3. 시험 · 조사 · 분석 대상 시료명(품목 또는 물질):
4. 시험 · 조사 · 분석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특이사항:
6. 결과

이 결과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시료에 대한 시험 · 조사 · 분석 결과이며, 상업적인 선전 · 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별지 제5호서식]

Certificate of Test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216, Giganhaean-ro, Gijang-up, Gijang-gun, Busan 46083, Korea Fisheries Engineeing Research Division Analyst : Hong, Gill-Dong (Tel:+82-51-720-)	Certificate No.: Page( )/( )Page

1. Client
   - ○ Name :
   - ○ Address :
   - ○ Date of Receipt : Month day, 2016

2. Use of Report: For reference

3. Test Sample:

4. Date of Test:

5. Test Results:

The result shown in this test report refers only to the sample(s) tested unless otherwise stated. This test report cannot be reproduced, except in full.

Month day, Year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signature)

(NOTE) If any significant instability or other adverse factor(overload, temperature, humidity etc.) manifests itself before, during or after calibration, and is likely to affect the validity of the calibration.

190mm×268mm[백상지 80g/㎡]

수산제품의 이화학적 분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3, 5, 8조 및 [별지 제1, 4, 5호 서식])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연락처 : 051-720-2643)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1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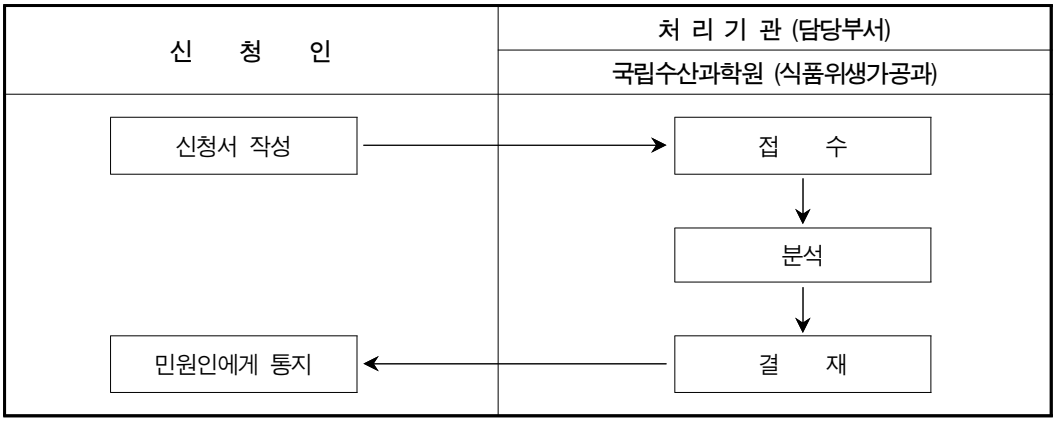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
  2. 우체국 전자수입인지(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수수료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해야 할 시료의 종류, 상태 및 분석적합 여부

수산제품 및 용수의 세균분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3, 5, 8조 및 [별지 제1, 4, 5호 서식])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 (연락처 : 051-720-2630~2)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1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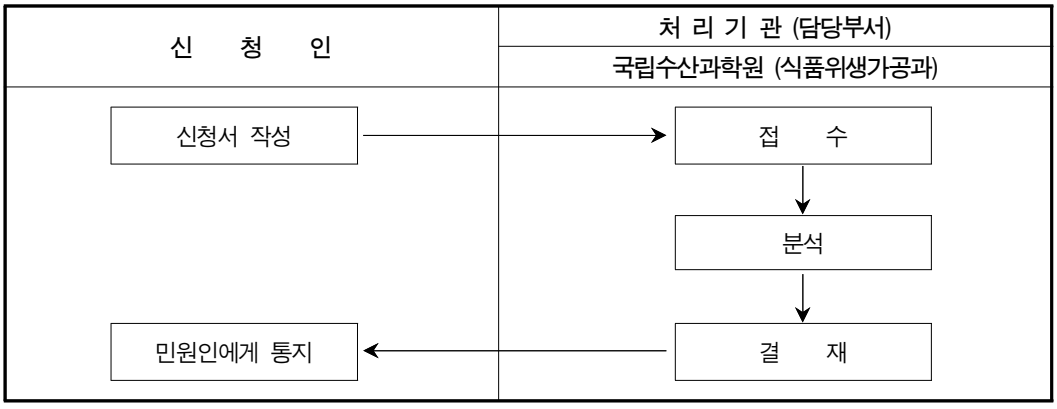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
  2. 우체국 전자수입인지(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수수료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해야 할 시료의 종류, 상태 및 분석적합 여부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시 험
□ 조 사 의뢰서
□ 분 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의뢰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의뢰내용	⑤의뢰목적 :			
	⑥구 분 :			
	⑦종 목 :			
	⑧세부종목 :			
	⑨시료명 및 설명 :			
	⑩현지조사내역 :			
	⑪현지조사일정 . . 부터 . . 까지 (일간)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조사 및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물	항목별 시료	수수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작성방법

⑥부터 ⑧까지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 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시 험
[ ] 조 사 결과서
[ ] 분 석

국립수산과학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번지 식품위생가공과 담당자: , Tel: 051-720-	결과서 번호: 페이지( )/(총)

1. 의뢰인

- ○ 성 명:
- ○ 주 소:
- ○ 의뢰일자: 년 월 일

2. 결과서 용도:

3. 시험 · 조사 · 분석 대상 시료명(품목 또는 물질):

4. 시험 · 조사 · 분석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특이사항:

6. 결과

이 결과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시료에 대한 시험 · 조사 · 분석 결과이며, 상업적인 선전 · 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별지 제5호서식]

Certificate of Test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216, Giganhaean-ro, Gijang-up, Gijang-gun, Busan 46083, Korea Food Safety and Processing Research Division Analyst : Hong, Gill-Dong (Tel:+82-51-720-)	Certificate No.: Page( )/( )Page

1. Client
   - ○ Name :
   - ○ Address :
   - ○ Date of Receipt : Month day, 2016

2. Use of Report: For reference

3. Test Sample:

4. Date of Test:

5. Test Results:

The result shown in this test report refers only to the sample(s) tested unless otherwise stated.
This test report cannot be reproduced, except in full.

Month day, Year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signature)

(NOTE) If any significant instability or other adverse factor(overload, temperature, humidity etc.) manifests itself before, during or after calibration, and is likely to affect the validity of the calibration.

190mm×268mm[백상지 80g/㎡]

해저 퇴적물 분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제3조 및 [별지1호])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연락처 : 051-720-2545)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1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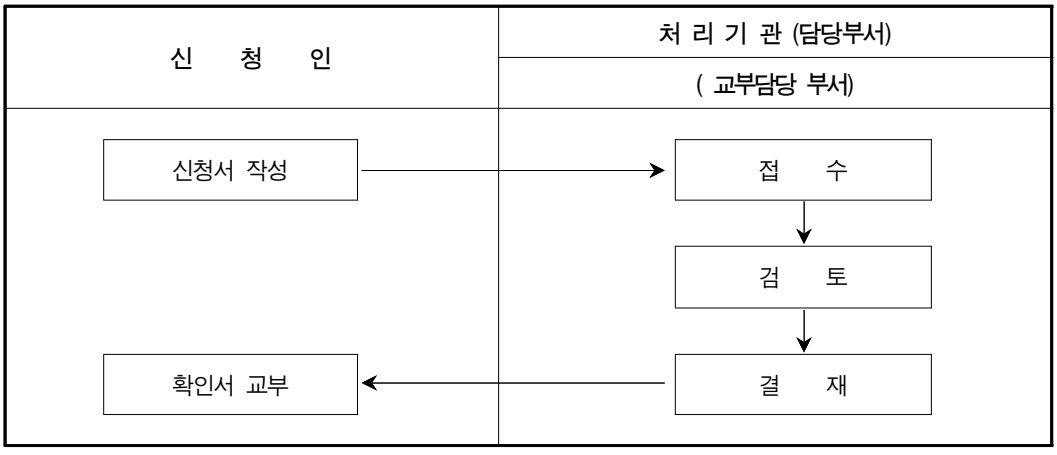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분석의뢰 시료

- 수수료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 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시 험
[ ] 조 사 의뢰서
[ ] 분 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의 뢰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의뢰내용	⑤목 적	
	⑥구 분	
	⑦종 목	
	⑧세부종목	
	⑨시료명 및 설명	
	⑩현지조사명세	
	⑪현지조사 일정 . . 부터. . 까지 (일간)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 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 · 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물	항목별 시료	수수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작 성 방 법

⑥부터 ⑧까지는 국립수산과학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190mm×268mm[백상지 80g/㎡]

수산용수 분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제3조 및 [별지1호])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연락처 : 051-720-2545)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1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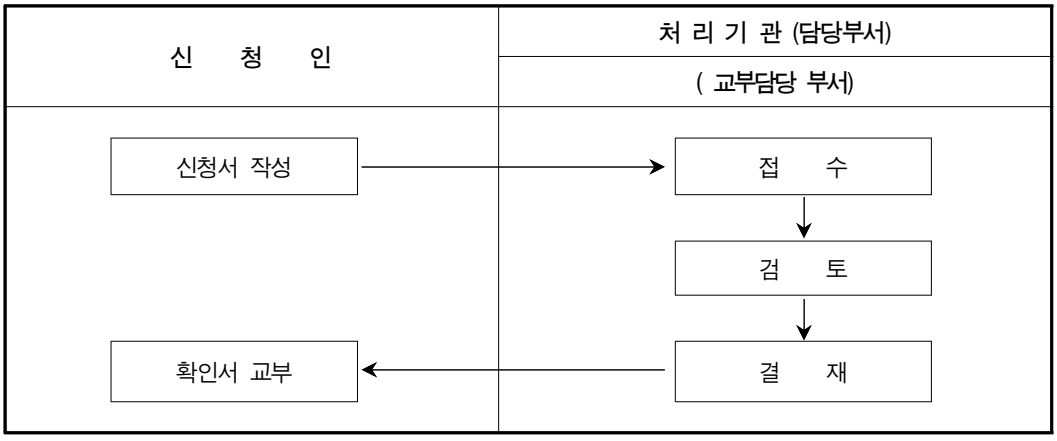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분석의뢰 시료

- 수수료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 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시 험
[ ] 조 사 의뢰서
[ ] 분 석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의 뢰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의뢰내용	⑤목 적	
	⑥구 분	
	⑦종 목	
	⑧세부종목	
	⑨시료명 및 설명	
	⑩현지조사명세	
	⑪현지조사 일정 . . 부터. . 까지 (일간)	

「국립수산과학원 시험 · 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 · 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물	항목별 시료	수수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작 성 방 법

⑥부터 ⑧까지는 국립수산과학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190mm×268mm[백상지 80g/㎡]

수산자원 이식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35호 제1항제5호,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7조~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5조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연락처 : 051-720-2416)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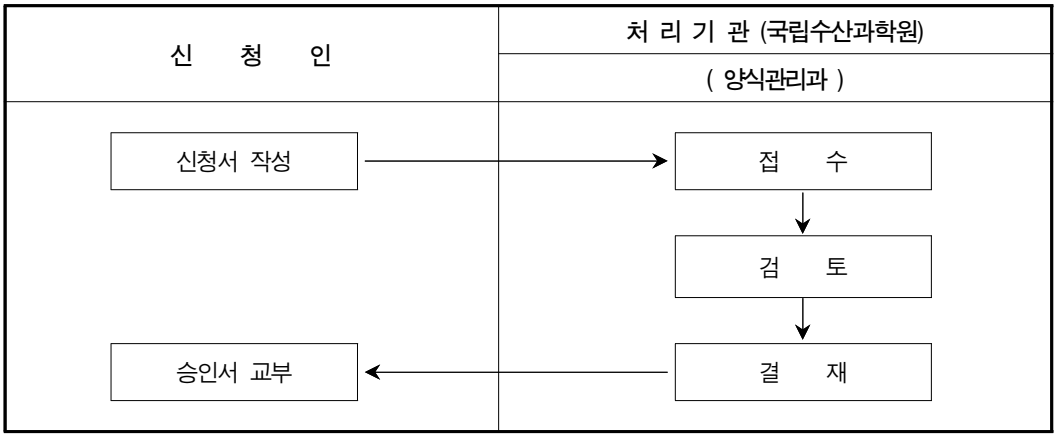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신청: 수산자원 이식승인 신청서 1부, 수면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신청: 수산자원이식 변경승인 신청서 1부, 이식승인서 1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수산자원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적합 여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3호서식] 〈개정 2012.12.11.〉

(앞쪽)

수산자원 [ ] 국내반입 [ ] 국외반출 이식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인신청 내 용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수산자원	품 명				학 명		
		규 격				수 량		
		금 액				원산지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의 목 적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송수단 및 통관예정세관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장소							
어업현황	면허(허가 또는 신고)번호			면허면적 및 수면면적				
	양식현황	양식방법	수면면적	현재 양식상황				
				품종	크기	사육량	사용면적	출하시기
			ha 조 ㎡		㎝ (g)	천마리	ha 조 ㎡	
낚시터 현황	수면의 종류	수면면적	방류 현황					
			일 시	품종별	크 기		수 량	
	[ ] 공공용 수면 [ ] 사유수면	ha ㎡			㎝ (g)		마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국내반입(국외반출) 이식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면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승인서 발급
신청인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210㎜×297㎜[백상지 80g/㎡]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15호서식] 〈개정 2012.12.11.〉

수산자원 [ ] 국내반입 [ ] 국외반출 이식 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인받은 사 항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수산자원	품 명	학 명	
		규 격	수 량	
		금 액	원산지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의 목 적			
	반입 또는 반출 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송수단 및 통관예정세관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장소			
변경승인 신청내용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수산자원	품 명	학 명	
		규 격	수 량	
		금 액	원산지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의 목 적			
	반입 또는 반출 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송수단 및 통관예정세관			
	국내반입 또는 국외반출 장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식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수산자원 이식승인서 1부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승인서 발급
신청인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210㎜×297㎜[백상지 80g/㎡]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5-4호)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34)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및 방류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처리기간 13일)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및 완도지원,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 충청남도수산관리소서산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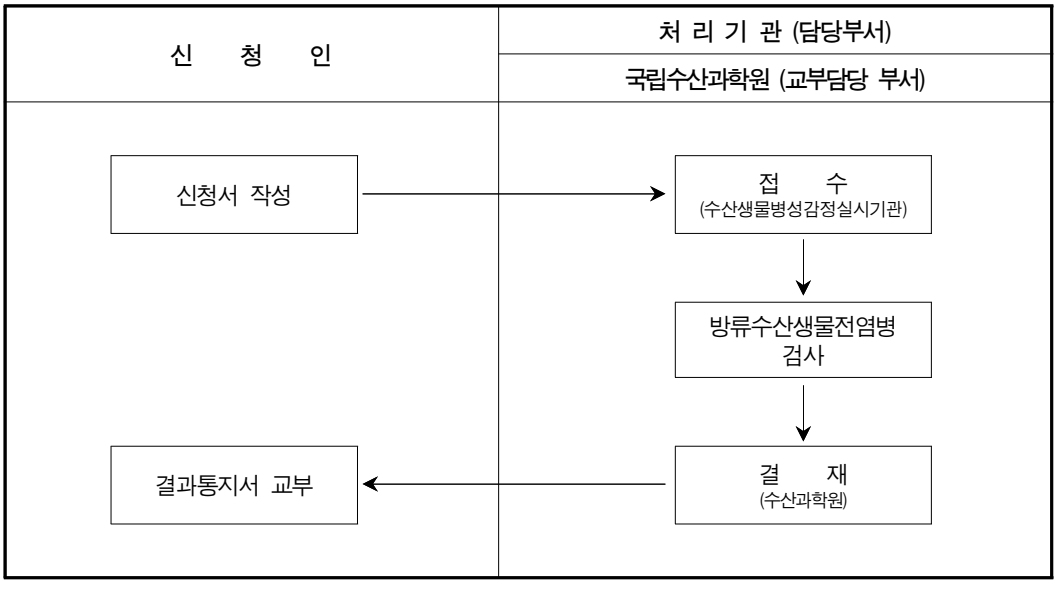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신청서
  2. 시료채취 도면
  3. 검사의뢰용 시료 : 살아있는 수산생물(10cm 이하 50마리, 10cm 이상 30마리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방류하고자 하는 수산생물의 법정전염병 감염 여부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4〉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3일(갑각류는 10일)

신청인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종묘 또는 치어 관련 사항	품종	개체수, 크기(cm)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방류 관련 사항		
	방류품종지정	[ ] 해양수산부, [ ] 지방자치단체, [ ] 그 밖의 자
	수송방법	
	방류수량 [사업금액(천원)]	
	방류(예정)장소	
	방류(예정)일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물	검사시료

210mm×297mm[백상지 80g/㎡]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9.27〉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신청인				접수일	
검사시료	품종			크기(cm)	
임상검사 결과	육안 관찰				
	그 밖의 검사 결과				
정밀검사 결과	검사항목	합격기준	검사결과	판정	비고
종합의견					
검사기간					

※ 이 질병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입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 결과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4-10호)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3)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자체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 (처리기간 18일)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 및 완도지원,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 충청남도수산관리소서산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대학교 수산백신연구센터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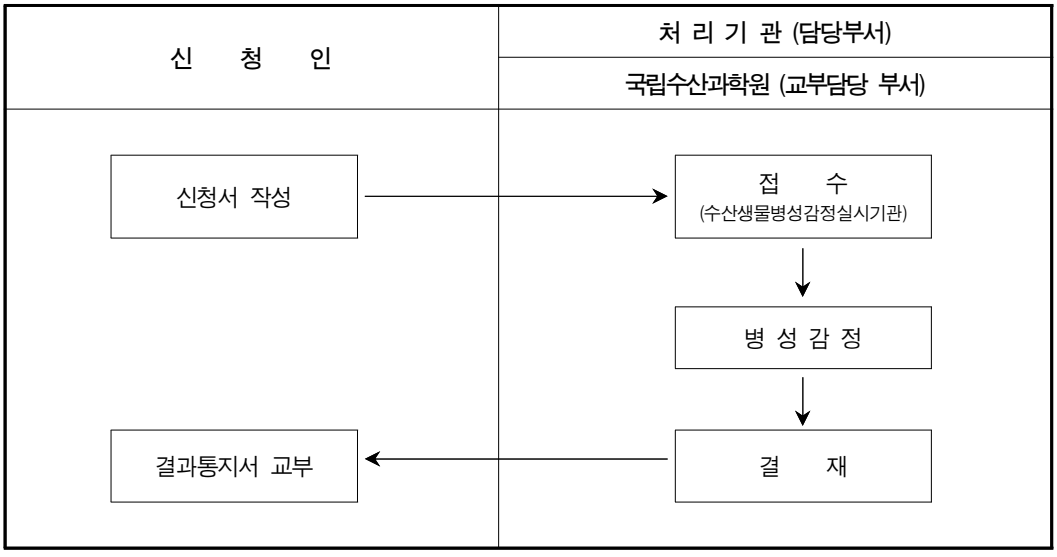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병성감정의뢰서
  2. 검사의뢰용 시료 : 살아있는 수산생물

- 수수료 : 건당 20,000원, 세균성 및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산생물의 질병 감염 여부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병성감정의뢰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8일

신청인	성 명(명 칭)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검사의뢰 시료	품 종	양식장명(대표자명)
	주 소	
	양식량	
	주요 임상증상	
	발병량(기간)	
	폐사량(기간)	

검사의뢰 항목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2. 기생충성 질병( ) 3. 바이러스성 질병( ) 4. 기타(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과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의뢰 내역	품 종		
	양식장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검사의뢰항목	1. 세균성, 곰팡이성질병( ) 2. 기생충성 질병( ) 3. 바이러스성 질병( ) 4. 기타( )	

검사 결과	
진단명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임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 직인

년 월 일

210㎜ × 297㎜[일반용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3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제4조1항 및 제9조제1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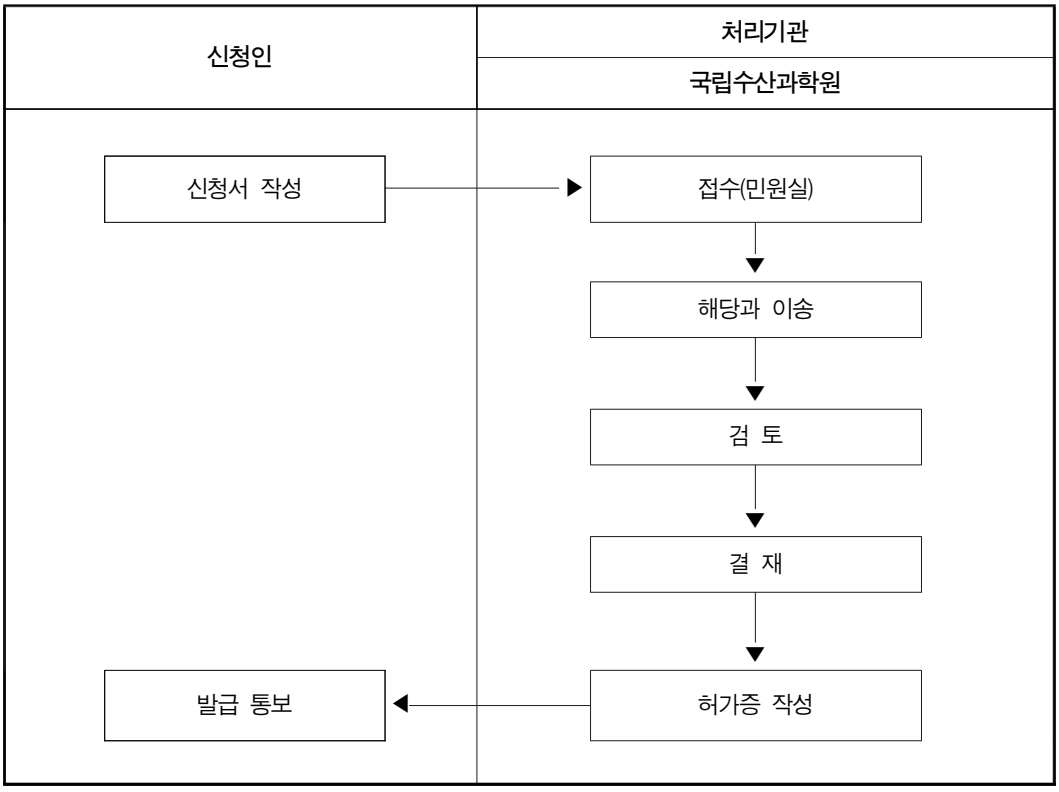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제조업허가)
  1. 제조관리자에 관한 서류1부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3.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구비서류 (조건부허가)
  1. 제조관리자에 관한 서류1부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3.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건물신축의 경우 다른사람 소유의 대지인 경우 이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5. 기존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사람 소유의 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기타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본
- 수수료 : 3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조업허가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 취득여부 또는 제조자 관리 승인서 사본,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의 일치여부 심사
- 조건부허가의 경우
  - 대지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 취득여부 또는 제조자 관리 승인서 사본,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의 일치여부 심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앞쪽)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 ] 허 가 신청서
[ ]동물용의료기기 [ ] 조건부허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제조업소명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제조소 (전화번호 :)	
제조관리자	성 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제조하려는 품목명		
제조 대상 의약품의 용도	동물용 □농림축산용 □양봉용·양잠용·애완용(관상어 제외) □농수산 겸용 □수산(관상어 포함) 전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구 분	제조업허가의 경우	조건부허가의 경우	
첨부서류	○ 동물용의약품제조업 1.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 제조관리자에 관한 제1호의 서류 1부 3.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구조개요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시설내역을 포함합니다) 각 1부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구조개요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시설내역을 포함합니다) 각 1부	제조업허가의 경우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합니다. 1.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인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기존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수료 3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 취득 여부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사본)	1. 대지의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용의약품외품 제조업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1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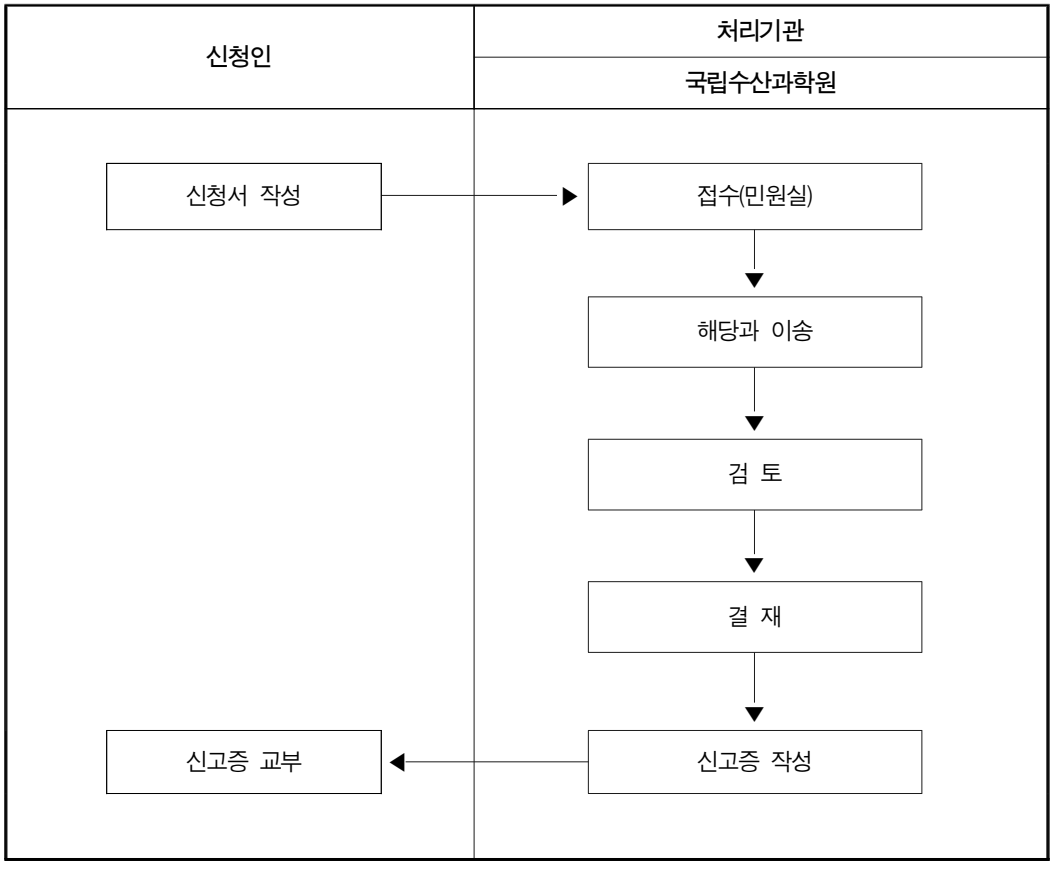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제조관리자에 관한 서류1부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3.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목신청서 또는 신고서
  4.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수수료 : 1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증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의 일치여부 심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3.24〉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제조업소명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제조소 (전화번호 :)	
제조관리자	성 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제조하려는 품목명		
제조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용도	□농림축산용 □양봉용·양잠용·애완용(관상어 제외)	
	□농수산 겸용 □수산(관상어 포함) 전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구비 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제조관리자에 관한 제1호의 서류 3.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구조개요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지시설내역을 포함합니다) 4.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목신청서 또는 신고서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증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수산과학원 (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수산과학원 (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4항 또는 제16조제1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심사불필요 품목 10일/자료 제출용 품목 60일/ 신물질 또는 신약제 품목 9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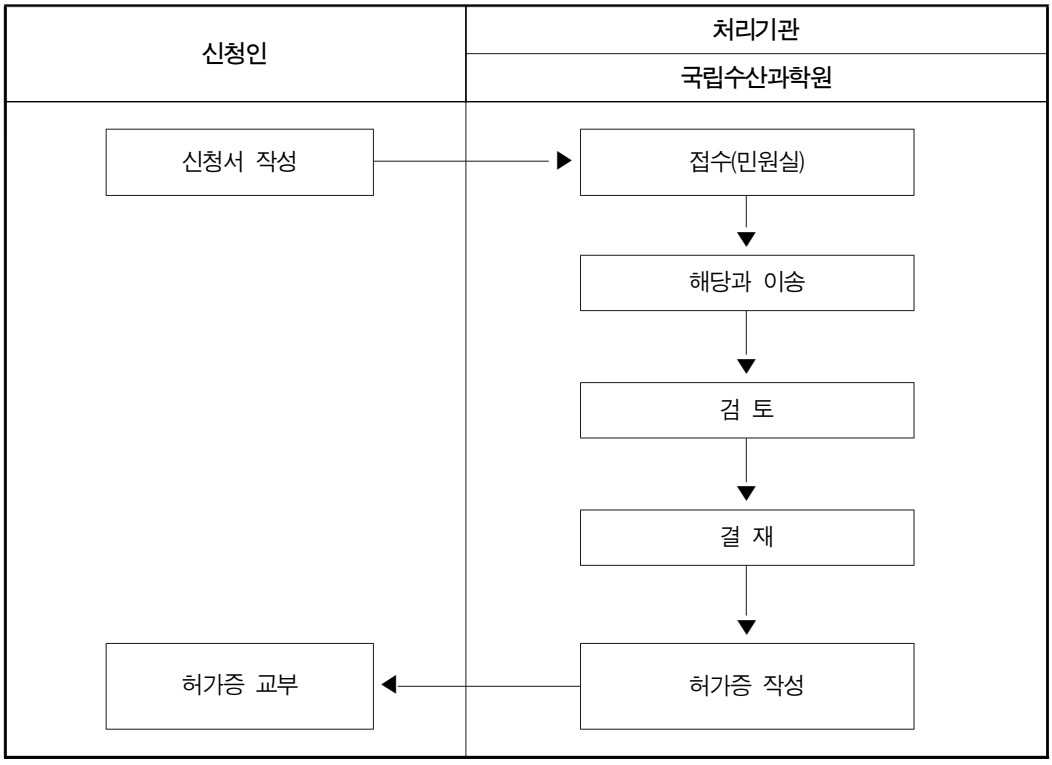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제조품목에 한함)
4. 이미 허가받은 품목과 제형이 다르거나 제조시설·실험시설 또는 시험기구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내역 및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제조품목에 한함)
5.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생산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이 확인한 제조·판매증명서
6. 최초로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갖추어야할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내역서 및 수입관리자에 관한 서류
   (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입관리자 승인서 사본)
7. 생물학적제제등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 수수료 : 1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9조제4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맞는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적합여부 심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0.5.〉

[ ]동물용의약품 [ ] 제조품목 [ ] 허 가
[ ]동물용의약외품 [ ] 수입품목 [ ] 조건부허가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10일 나. 자료 제출 동물용의약품 60일 다. 신물질 또는 신약제 품목 90일

신청인	업 소 명	제조업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제조소 (전화번호 :)	
제조(수입) 관리자	성 명	면허 또는 승인번호
신청품목	제품명	
	업종구분	품목구분 (처방대상여부)
제조(수입) 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용도	□농림축산용 □양봉용·양잠용·애완용(관상어 제외) □농수산 겸용 □수산(관상어 포함) 전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9조제4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조건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제조원,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제조품목에 한합니다) 4.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제형이 다르거나 제조시설·실험시설 또는 시험기구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내역 및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제조품목에 한합니다) 5.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서 및 해당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한다(수입품목에 한합니다). 6. 최초로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시설기준령 제15조에 따라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내역서 및 수입관리자에 관한 서류(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입관리자 승인서 사본) 7. 생물학적제제등의 경우에는 별표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표6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다만, 이미 수입허가된 품목이 있는 제조소(품목허가 후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설비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동 기준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8.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적어 넣은 위탁·수탁 제조계약서(위탁제조판매하는 동물용의약품에 한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2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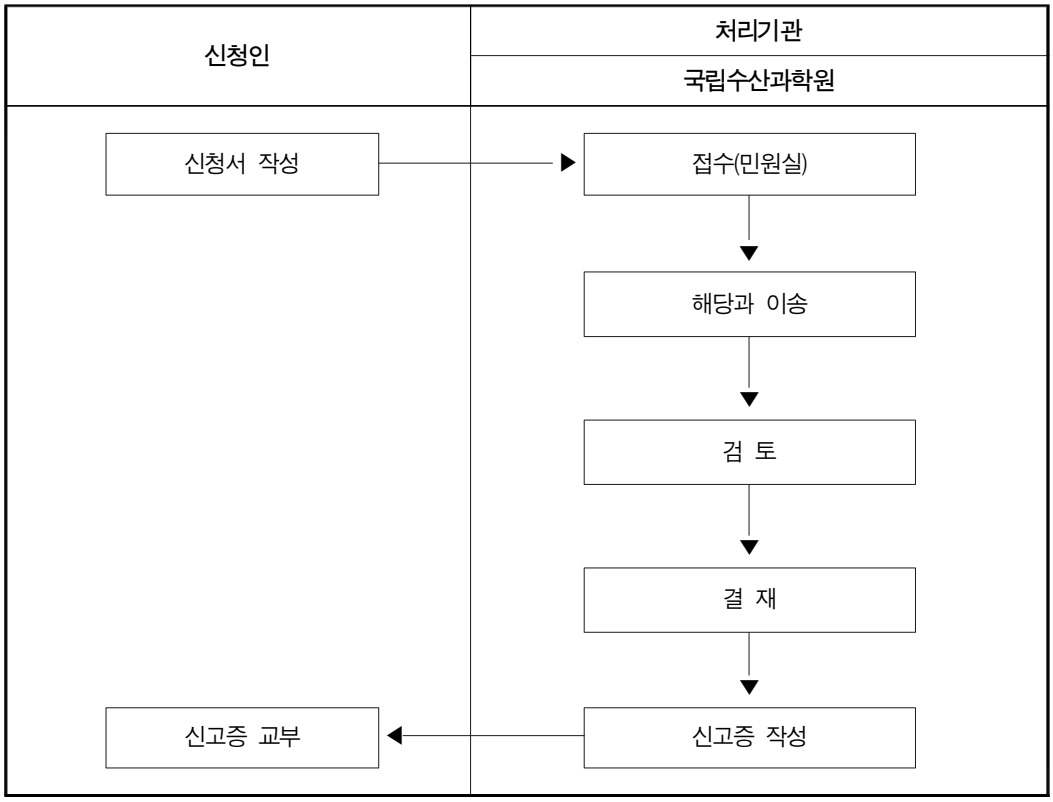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제조품목)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제조품목에 한함)
  4. 이미 허가를 받은 품묵과 제형이 다르거나 제조시설·실험시설 또는 시험기구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내역 및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
- 구비서류 (수입품목)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생산국의 정부가 해당품목이 생산국 내에서 적법하게 제조·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판매증명서
  4. 최초로 동물용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시설기준령에 따라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내역서 및 수입관리자에 관한 서류
     (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입관리자 승인서 사본)
- 수수료 : 1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2항 등의 적합 여부와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심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5.10.5.〉

[ ]동물용의약품 [ ] 제조품목
[ ]동물용의약외품 [ ] 수입품목 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업 소 명	제조업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제조소	(전화번호 :)
제조(수입) 관리자	성 명	면허 또는 승인번호
신고품목	제품명	
	업종구분	품목구분
제조(수입) 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용도	□농림축산용 □양봉용·양잠용·애완용(관상어 제외) □농수산 겸용 □수산(관상어 포함) 전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한국동물약품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제조품목 >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제조원,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은 제외됩니다) 3.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4.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제형이 다르거나 제조시설·실험시설 또는 시험기구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내역 및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	수수료 10,000원
	< 수입품목 >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해당 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서 및 해당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그 정부가 위임·위탁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이 경우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한다(수입품목에 한합니다). 4. 최초로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는 경우 시설기준령 제15조에 따라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내역서 및 수입관리자에 관한 서류(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입관리자 승인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최초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용의약품등의 조건부 제조업 및 제조품목 조건이행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3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0조제3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1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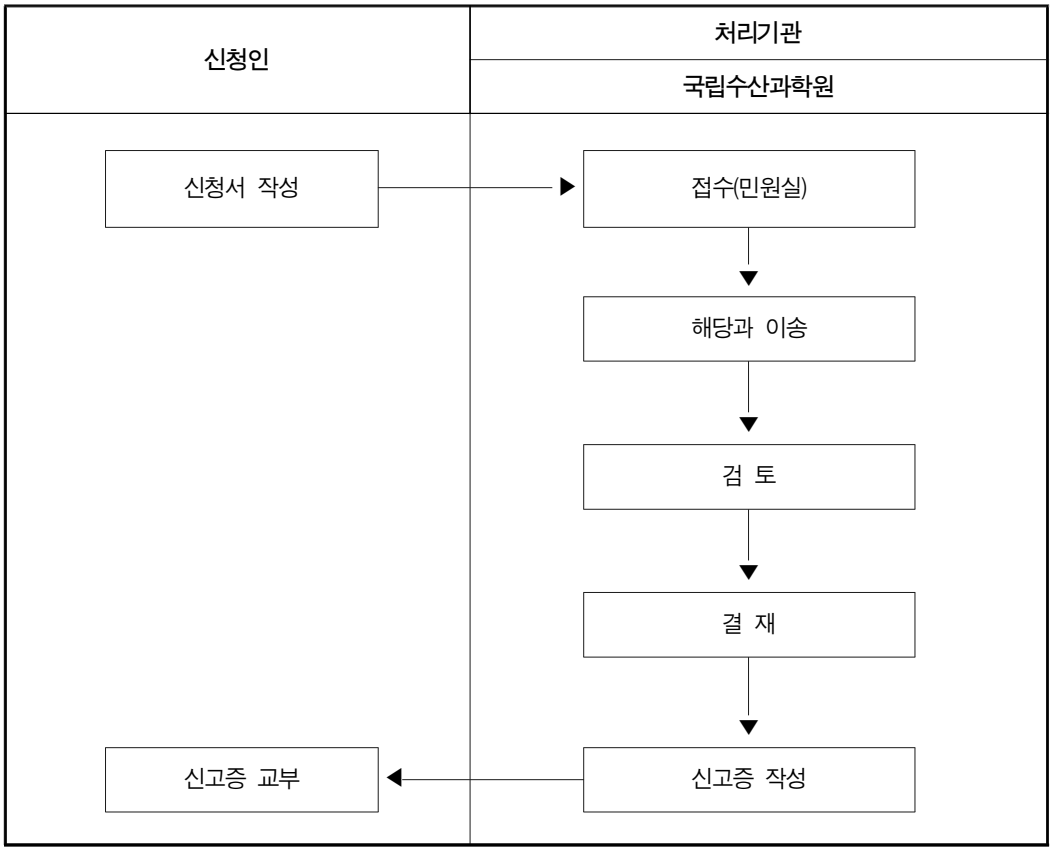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조건부 제조업 및 제조품목 허가증 1부
  2. 허가조건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조건부 제조업 및 제조품목 허가증과 허가조건에 명시된 조건 이행 가능 여부 심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4〉

동물용의약품등의 조건부제조업 및 제조품목조건이행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제조소	명 칭 (전화번호 :)	
	소재지	
조 건 부 허가사항	허가번호	허가일자
	허가조건	
조건부허가 품목명		
제조 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용도	□농림축산용 □양봉용·양잠용·애완용(관상어 제외) □농수산 겸용 □수산(관상어 포함) 전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료기기·동물용의약외품)의 조건부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조건부 제조업 및 제조품목 허가증 1부 2. 허가조건에 명시된 조건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용의약품 재심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32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의2제5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18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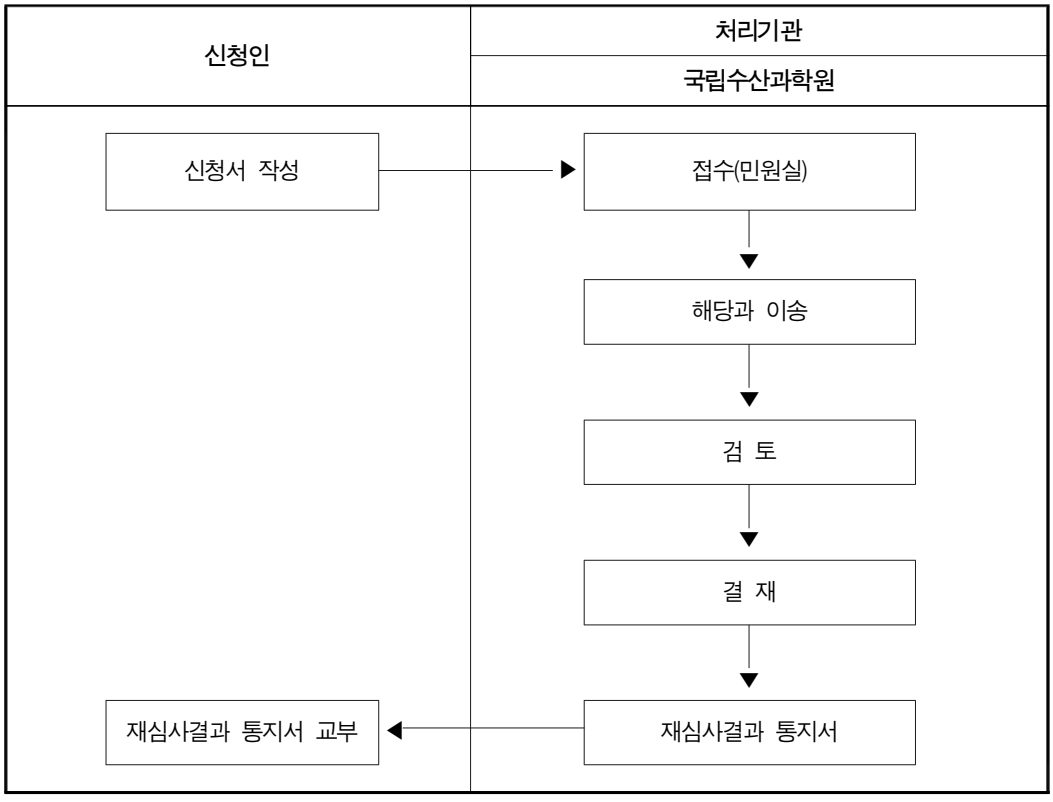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국내 시판후의 조사결과에 의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각 1부
  2. 국내·외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보고자료 각 1부
  3. 국내·외의 문헌 및 학회정보 등 안전성에 관한 보고자료 각 1부
  4.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각 1부

- 수수료 : 2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의제5항에서 정한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국내·외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및 판매현황과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안전성 여부에 대한 심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3.3.24〉

[ ]동물용의약품
[ ]동물용의료기기 재심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업소명	제조(수입)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제조(수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제조원	제조업소명	제조국
	소재지	
재심사 제품명		재심사 기간
허 가 번 호		허가 연월일
조사결과	조사기간 및 조사 증례수	
	조사결과의 개요 및 해석결과	
생산(수입)실적(출하실적)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료기기)의 재심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국내 시판 후의 조사결과에 의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각 1부 2. 제1호 외에 국내·외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보고자료 각 1부 3. 국내·외의 문헌 및 학회정보 등 안전성에 관한 보고자료 각 1부 4.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각 1부	수수료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재심사결과 통지서 교부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관리자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 제3항 또는 15조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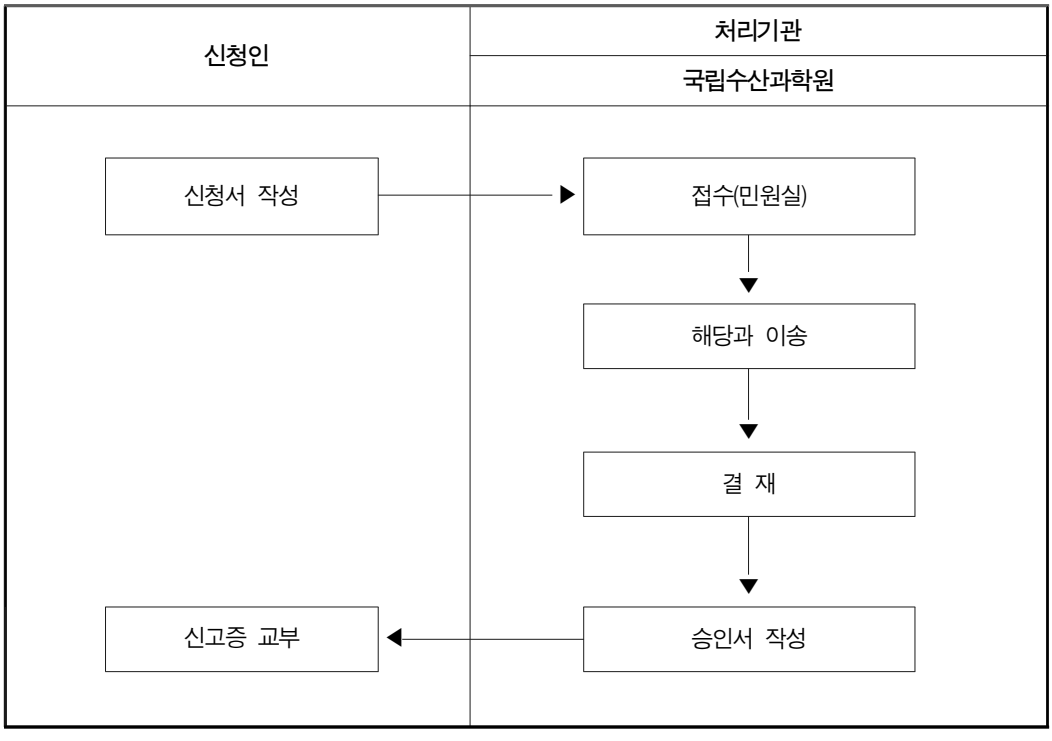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수수료 : 1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조관리자로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4〉

동물용의약품등 [ ]제조 [ ]수입 관리자승인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업종		
신청인 [제조(수입) 관리자]	성 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주 소	전화번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결 재	→	승인서 작성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용의약품(자가치료, 시험, 견본, 무환)수입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7조의제1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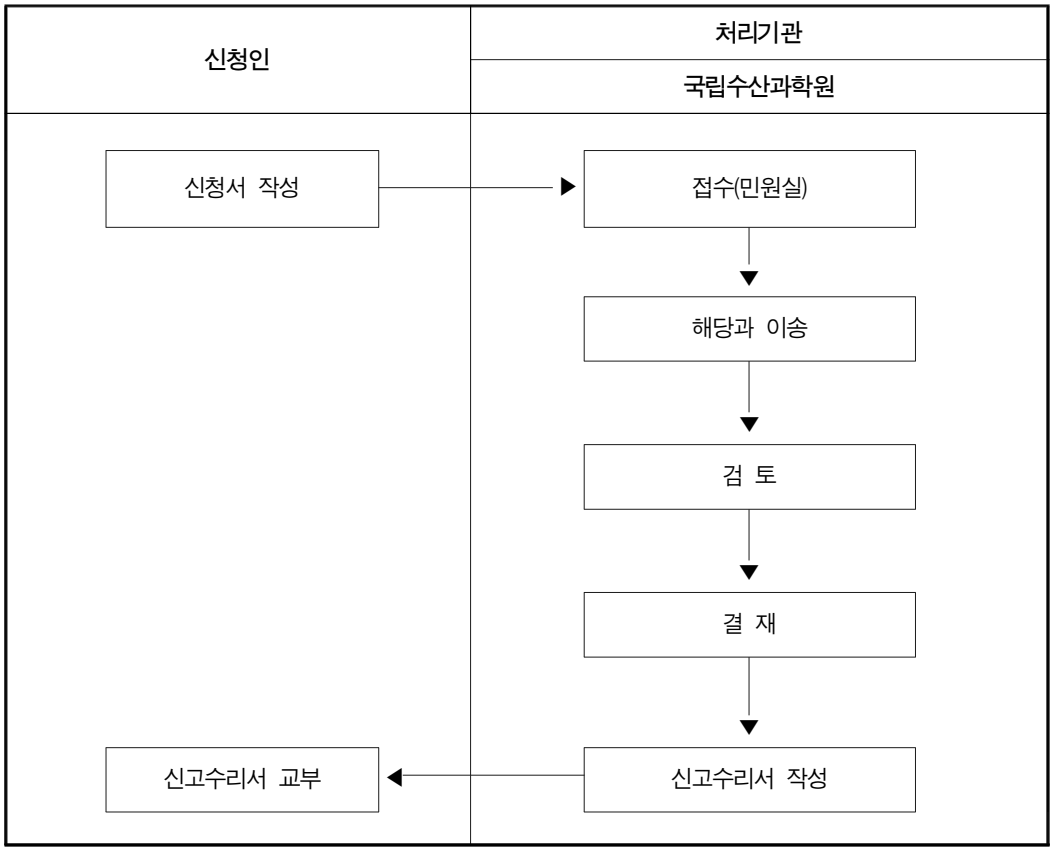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송장 또는 보류통지서 사본 1부
  2. 한글표시사항 1부
  3. 사용계획서·시험계획서 또는 배부계획서 1부
  4. 제품설명서 1부
  5. 보상용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보상용인 경우)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입목적의 타당성과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심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3.24〉

동물용의약품등 [ ] 자가치료용 [ ] 임상·제조·연구시험용 [ ] 견본용 [ ] 보상용(무환) 수입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수입명세	품 명	규 격	수 량
	원료명	효 능	비 고

하송인 주소

사용목적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등을 무환으로 수입(자가치료용·연구시험용·견본용·보상용)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송장 또는 보류통지서 사본 1부 2. 한글표시사항 1부 3. 사용계획서·시험계획서 또는 배부계획서 1부 4. 제품설명서 1부 5. 보상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상용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위의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수리서 작성
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제조·수입 관리자·관리약사 변경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44조제2항 및 제4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4항 및 제24조제4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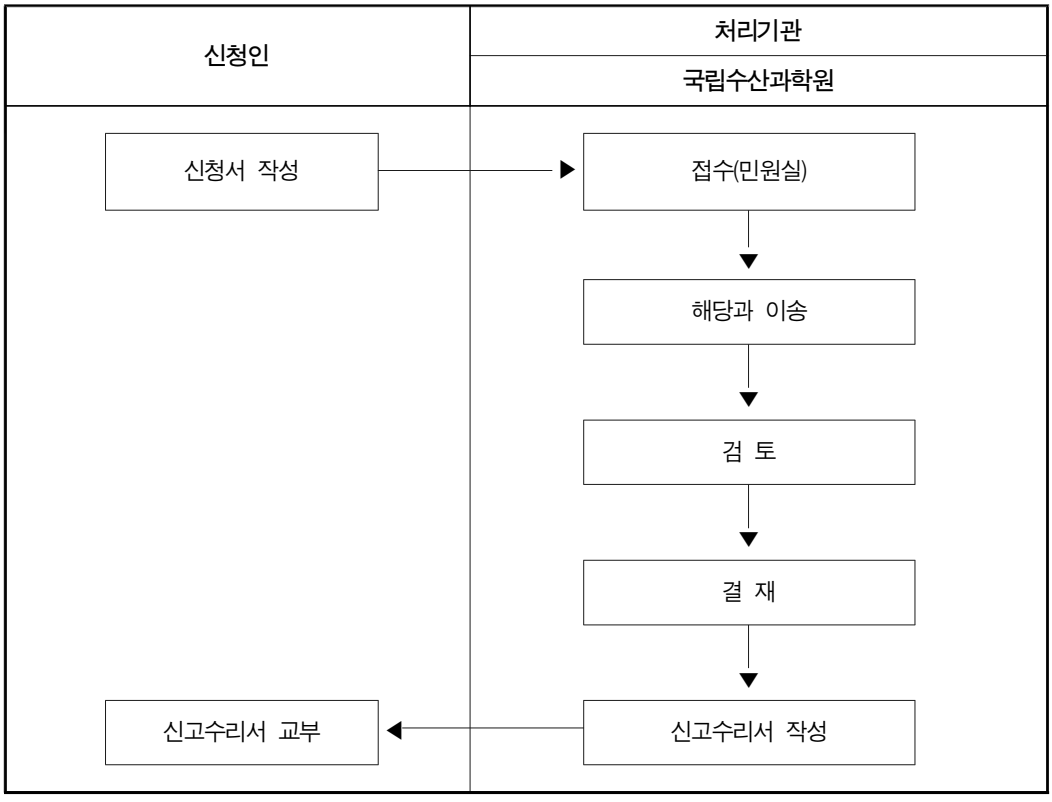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관리약사 변경)

1. 변경된 관리약사가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 구비서류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 변경)

1.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승인서 사본
2. 변경된 관리약사가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 수수료 : 1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리약사의 변경은 변경된 관리약사가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
-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의 변경은 변경된 관리약사가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0.5.〉

(앞쪽)

[ ] 제조관리자
[ ] 수입관리자
[ ] 안전관리책임자
[ ] 관리약사 변경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대표자)	업소명	허가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번호 또는 승인번호		
변경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제4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구분	관리약사 변경의 경우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경의 경우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변경된 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수수료 1,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허가증 2.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	허가증 또는 수입자 확인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신고수리
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시·군·구 (교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변경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20조제2항, 제31조제9항, 제42조, 제45조제1항 및 제85조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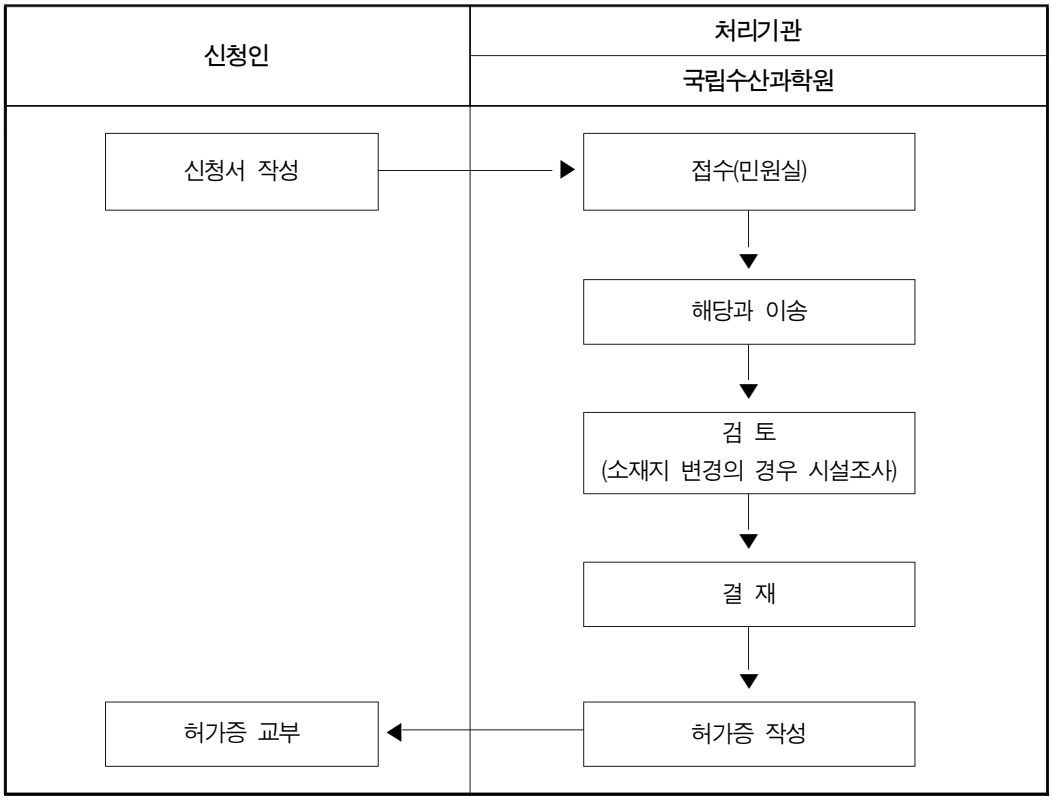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변경되는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 수수료 : 2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서 제출여부와 변경된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의 적합여부를 심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8.29.〉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의 [ ]변경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업소명	허가번호
소재지	본 사	전화번호
	제조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조 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용도	[ ] 농림축산용 [ ] 양봉용·양잠용·애완용(관상어 제외) [ ] 농수산 겸용 [ ] 수산(관상어 포함) 전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제조시설)의 변경의 허가를 신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되는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수수료 2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	→ 결 재	→ 허가(신고)증 작성
신청(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허가사항 변경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20조제2항, 제31조제9항, 제42조, 제45조제1항 및 제85조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심사불필요 품목 10일/ 심사필요 품목 4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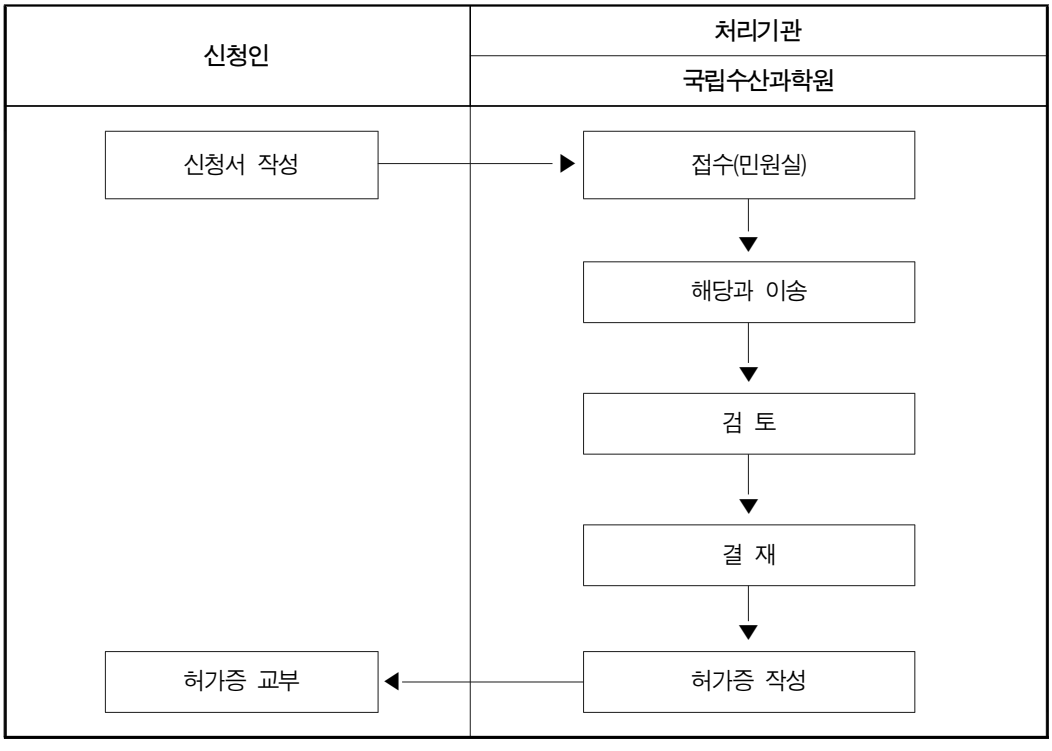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변경심사에 필요한 서류(허가사항변경의 경우에 한함)
  2. 변경사유서 각 1부
- 수수료 : 5,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심사(허가사항변경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변경사유서 심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3.24〉

동물용의약품등 [ ] 제조 [ ] 수입 품목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가. 안전성·유효성 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10일 나. 안전성·유효성 등 심사가 필요한 품목: 40일

제조·수입업체	업체명	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제조소 또는 창고 (전화번호 :)

변경사항

품명	허가(신고)번호	구분	허가(신고)내용	변경내용	사유

제조(수입) 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용도	□농림축산용 □양봉용·양잠용·애완용(관상어 제외) □농수산 겸용 □수산(관상어 포함) 전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사항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한국동물약품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허가사항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와 변경사유서 각 1부	수수료 5,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허가(신고)증 작성
신청(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한국동물약품협회(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동물용의약품등 허가 (등록·신고·품목허가)증 재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제1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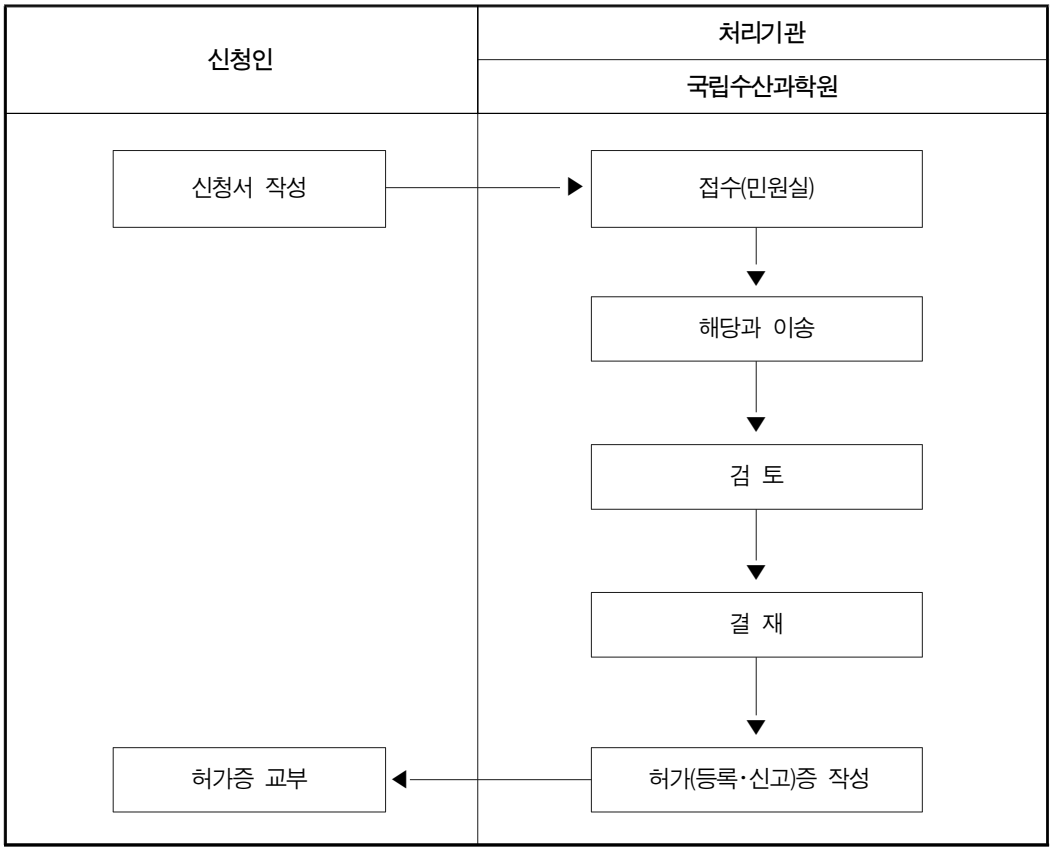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없음

- 수수료 : 1000원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3.24〉

동물용의약품등 [ ] 허가증 [ ] 등록증 [ ] 신고증 [ ] 품목허가증·신고증 재교부(갱신)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업소명	업 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허가(등록 · 신고)번호	최초허가(등록 · 신고)일
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재발급 받으려는 사항		
신청 사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록 · 신고)증의 재교부(갱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국립수산과학원장 ·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한국동물약품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토	→ 결 재	→ 허가(등록·신고)증 작성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수산과학원 · 한국동물약품협회 · 시 · 군 · 구 (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수산과학원 · 한국동물약품협회 · 시 · 군 ·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수산과학원 · 한국동물약품협회 · 시 · 군 ·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수산과학원 · 한국동물약품협회 · 시 · 군 ·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수산과학원 · 한국동물약품협회 · 시 · 군 · 구 (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재)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53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9조 및 제36조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품 목	처리기간
넙치 연쇄구균증 불활화백신	62일
넙치 에드와드 불활화백신	73일
넙치 2종 연쇄구균증 불활화백신	75일
넙치 2종 연쇄구균증 에드와드 불활화 혼합백신	75일
넙치 비브리오병, 2종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혼합백신	75일
넙치 비브리오병, 3종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혼합백신	80일
이리도바이러스 불활화백신	7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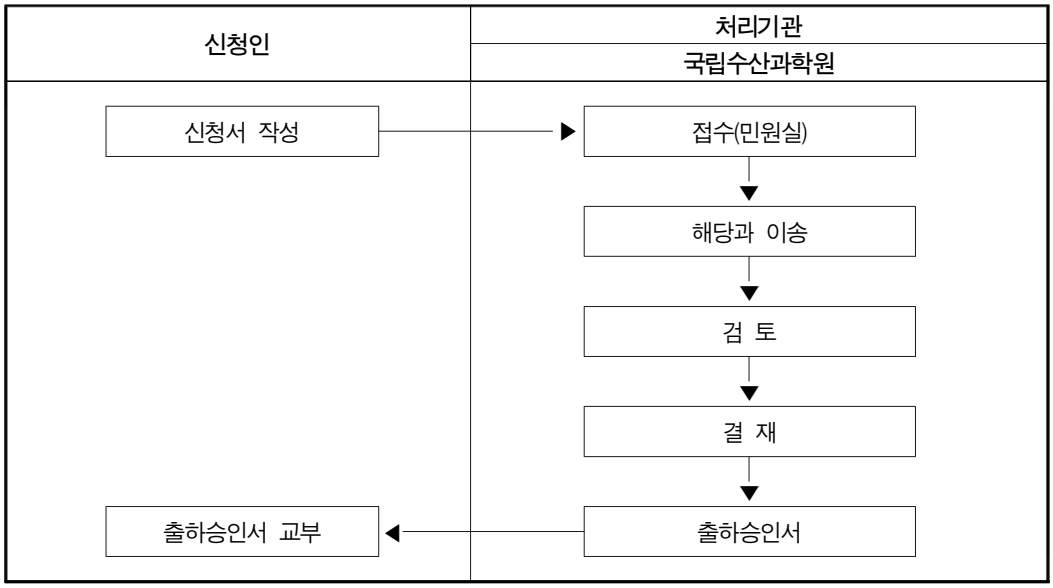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자가시험성적서 (재신청은 제외) 1부
  2. 자가시험기록서 (재신청은 제외) 1부
  3. 선하증권, 송장 사본 (수입에 한함) 각 1부

- 수수료 :

품 목	수수료 (원)
넙치 연쇄구균증 불활화백신	175,000
넙치 에드와드 불활화백신	172,000
넙치 2종 연쇄구균증 불활화백신	307,000
넙치 2종 연쇄구균증 에드와드 불활화 혼합백신	368,000
넙치 비브리오병, 2종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혼합백신	401,000
넙치 비브리오병, 3종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혼합백신	460,000
이리도바이러스 불활화백신	368,000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제별 국가 검정기준명, 자가시험성적서와 기록서의 적합성, 국가검정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 재검정은 14일이내 출하승인 재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가검정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3.24〉

(앞쪽)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 (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정함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소명	

출하승인 대상	제 품 명	출하승인기준
	포장단위(두·수분/병)	출하승인 신청수량
	제조 연월일	제조번호
	유효기한	수입 연월일
	생 산 국	

검정 시행장	명칭 및 소재지
	관리수의사 성명 (전화번호 :)
	시험동물 종류별 두수 및 입식 연월일 :

사 유 (재신청하는 경우)	

「약사법」 제53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9조 및 제36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가시험성적서(재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자가시험기록서(재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선하증권(B/L), 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수입에 한합니다) 각 1부	수수료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한 금액(재신청 시에는 면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해당과 이송	→ 검 정	→ 결 재	→ 출하승인서
신청인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 (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재)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출하승인기관	처리기관	출하승인기관

근거법령

○ 「약사법」 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다음의 의약품은 제조·품질 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검정 등을 거쳐 출하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 생물학적 제제
- 변질되거나 변질되어 썩기 쉬운 의약품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9조(출하승인신청)
별지 제24호서식의 출하승인신청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자가시험성적서와 그 자가시험 등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출하승인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3조(생물학적 제제의 출하승인)
생물학적제제의 출하승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출하승인기관의 시설 외에 검정 실시에 적합한 동물사육시설을 국가검정시행장소로 지정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6조(출하승인 재신청 등)
출하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출하승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출하승인 재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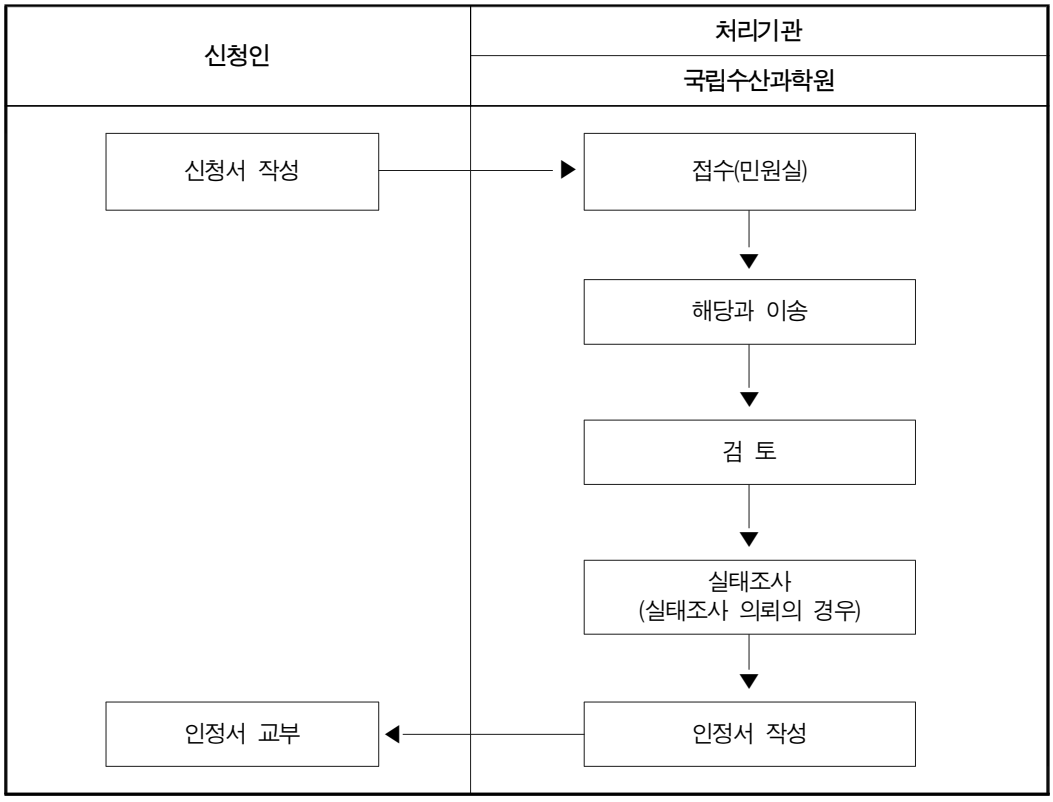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국가검정 성적이 3년(제조번호가 3개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10개 이상 연속(제조번호별)으로 합격공문 사본
  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와 실태조사 의뢰서(수입업체에 한함)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조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로 국가검정 성적이 3년이상 또는 10개이상 연속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품목여부를 심사
- 수입품목의 경우 검정면제품목의 제조시설이 취급규칙 별표5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제조(수입) 업소명	
제조(수입)업소 소재지	
대 표 자	
제 품 명	
제조(수입)품목 허가번호	
비 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신청대상임을 알 수 있는 국가출하승인 공문 사본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와 실태조사 의뢰서(수입업체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의 뢰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국립수산과학원
신청서 →		→ 접 수
	인정서교부 ←	1.검 토 2.실태조사 의뢰의 경우 : 실태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수산용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규정 제4조제3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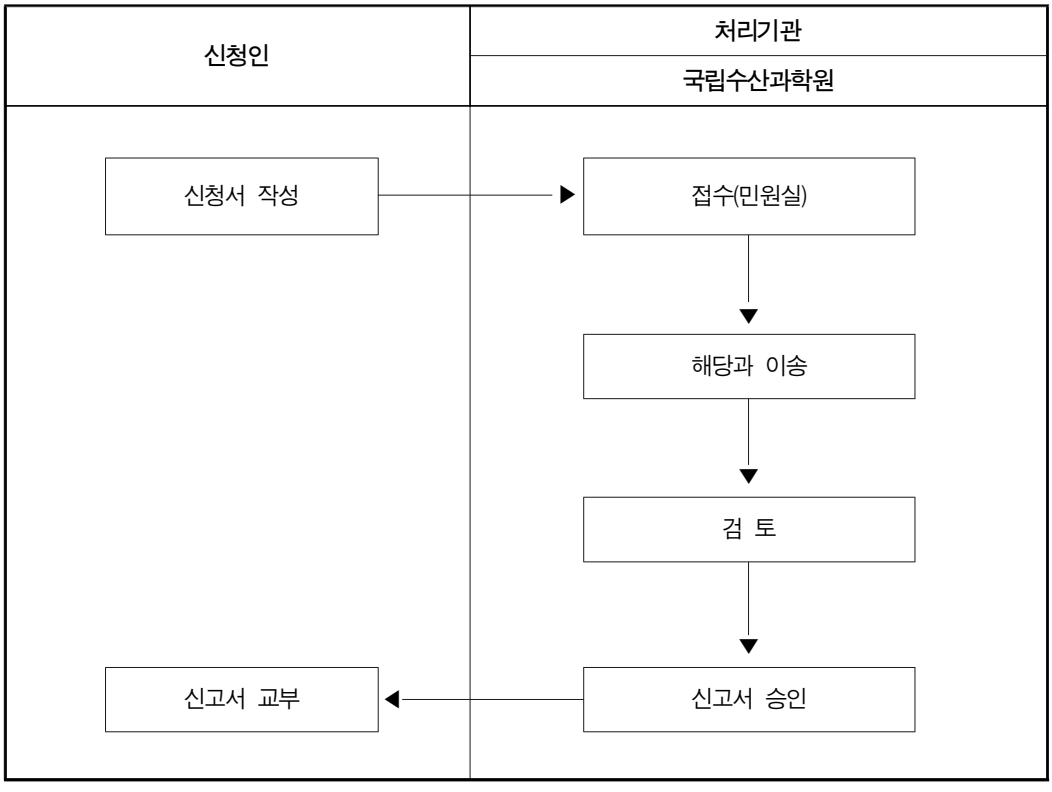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자가시험성적서 1부
  2.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사본1부
  3. 시험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자가시험성적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사본 서류 심사 및 필요시 시험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 수행하여 합격여부 심사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검정면제대상	제품명		제조(수입)품목 허가번호	
	제조(수입)품목 면제번호		제조번호	
	규격		포장단위	
	제조연월일		제품유효기간	
	생산(수입)총수량		시험수량/보관품수량	
	검정면제신청수량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및 제출물 : 1. 자가시험성적서 1부 2.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사본 1부 3. 시험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수료 없 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의뢰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신고서작성 →	신고 →	접수 →
		검토
←	← 교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가백신제조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등 지침 제4조제7항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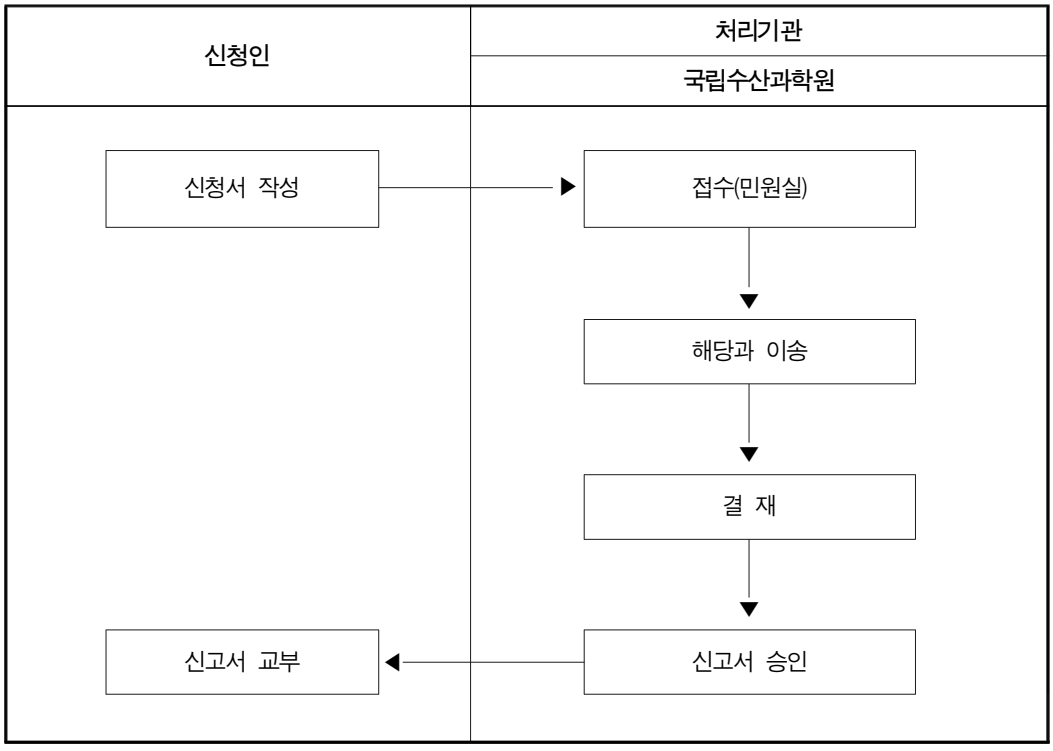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제조방법
  2. 자가시험성적서
  3. 자가백신 사용농장의 가축사육현황 및 수의사의 병성감정 결과 등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조방법, 자가시험성적서, 자가백신 사용농장의 가축사육현황 및 수의사의 병성감정 결과 등을 심사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자가백신제조신고서

신고번호 : 제 호

제조업소	업 소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제품명(성분명)				유 효 기 간	
함유하는 미생물명				불활화 방법	
농장요청 두수분				제조년월일	
포장단위(두수/병)		생 산 량	병	공 급 일 자	년 월 일
견 본 품			병	보 관 품	병
자가백신	농장주 인적사항	성명 :	주소 :		전화 :
	가축사육 현황	축종(품종)		사 육 두 수	
	미생물 분리	분 리 자		일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미생물 동정	동 정 자		일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등 지침 제4조제7항에 따라 자가백신 제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제출인) 서명(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제조방법 2. 자가시험성적서 3. 자가백신 사용농장의 가축사육현황 및 수의사의 병성감정 결과 등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용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수입자 확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 42조제4항,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15조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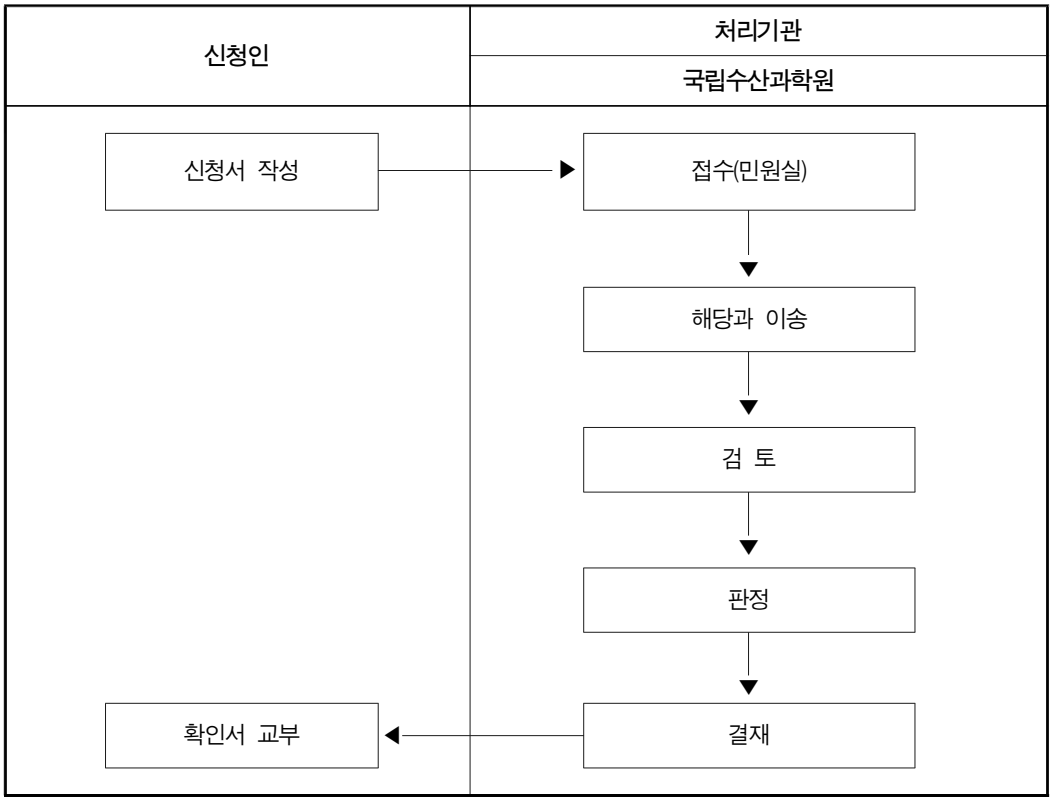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입관리자에 관한 제1호의 서류
  2.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창고, 시험시설·설비내역서
  3. 약사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입관리자에 관한 제1호의 서류,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창고, 시험시설·설비내역서, 제조업·수입자의 적합성 여부 심사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자 확인 신청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수 업 업 소 명				
	소재지	영업소(본사)	(전화번호)		
		창 고	(전화번호)		
수입관리자		성 명		면허 또는 승인번호	
수입품목	제 품 명				
	업 종 구 분			품 목 구 분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15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자 시설 등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약사법」 제5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5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수입관리자에 관한 제1호의 서류 3.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창고, 시험시설·설비내역서	1.법인등기부등본 2.수입관리자의 약사면허 취득 여부 또는 수입관리자 승인서(사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수출 수산용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제19조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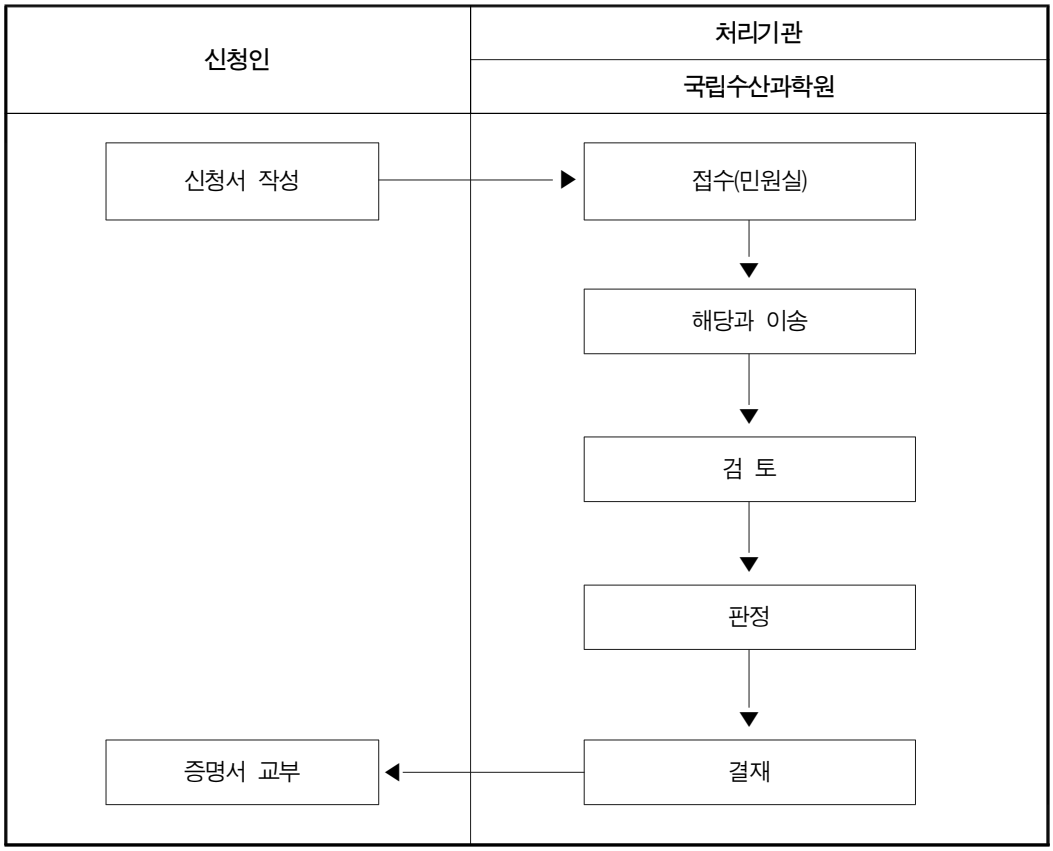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품목제조 관련서류 사본
  2. 수출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또는 상대국가 수입요청 전문 사본 1부
  3. 증명받고자 할 사항(영문) 1부

- 수수료 : 5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제조 관련 서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또는 상대국가 수입요청 전문 사본, 증명받고자 할 사항에 관한 심사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수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영문증명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제 조 업 소 명				
	소 재 지	본사	(전화번호)		
		제조소	(전화번호)		
신 청 구 분			□ Certificate of Free Sale (자유판매증명서) □ 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eing Practice(GMP 증명서) □ Certificate of Manufacture(제조업 허가증명서) □ BSE Free Certificate(BSE 미발생증명서) □ Health Certificate(위생증명서) □ Other(기타)		
수출품목	제품명			허가번호	
	업종구분			품목구분	
수출(예정)국가					
수출(예정)일자					
비 고					

수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5,000원

1. 삭제
2. 삭제
3.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품목제조 관련서류 사본 (BSE 미발생증명서에 한함)
4. 삭제
5. 수출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또는 상대국가 수입요청 전문 사본 1부.
6 증명받고자 할 사항(영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85조제1항,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기준 제5조
- 담당부서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연락처 : 051-720-3041)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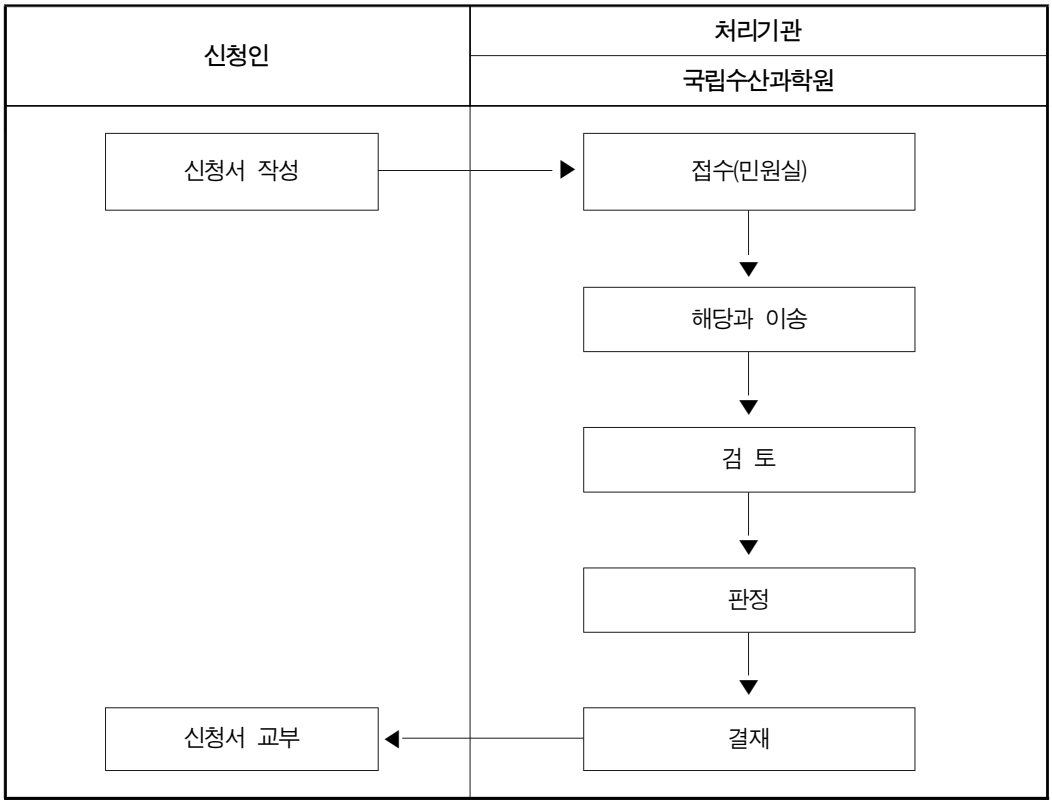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효성, 안전성, 배합의의(복합제의 경우), 종합평가를 통한 심사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신청서

의뢰인	제조(수입)업소의 명칭			
	제조(수입)업소의소재지			
	성 명		생년월일	
제조원	제조(수입)업소명		제 조 국	
	소 재 지			
재 평 가 의 뢰 품 목				
제 품 명		허가번호 및 허가일자		
기 준 및 시 험 방 법		구 분		
재 평 가 실 시 년 도		비 고		

「약사법」 제33조·제42조제4항·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인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자
전화번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1. 재평가 제출자료의 종류 및 첨부자료

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자료번호	I (복합제에 한함)	II	III										*
			1	2	3	4	5	6	7	8	9	10	
첨부여부													

(자료번호 I·II는 각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서류, 자료번호 III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하는 자료이며,*은 기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임.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자료제출을 제외하거나 면제한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재평가 신청사항

구 분	품 목 허 가(신고) 내 용				재평가요청사항
원료약품 및 분량	배합목적	성분명	규격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 참고 : 기재상의 주의사항

1. 매 품목마다 별도로 작성할 것. (단, 공동자료 작성 제출품목은 신청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할 것)
2. 별지 제1호 서식중
   - "제품명" 란에는 단일제의 경우 원료약품의 일반명을 동시에 기재할 것.
   - "구분" 란에는 "주의동물용의약품" 해당여부를 기재할 것.
   - "재평가실시년도" 란에는 종전 재평가 실시년도를 기입할 것.
   - "비고" 란에는 생산중, 생산예정, 자진취하예정등을 명시하며, 완제수입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완제수입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이라고 기재할 것.
3. 첨부자료는 별지제1호서식 "1.재평가 제출자료의 종류 및 첨부자료" 의 순서에 따라 제출자료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약문, 번역문 및 원문을 각각 첨부할 것.
5. 각 양식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할 것

PART

03

해운물류

해양수산부

해운중개업등 등록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33조 제1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1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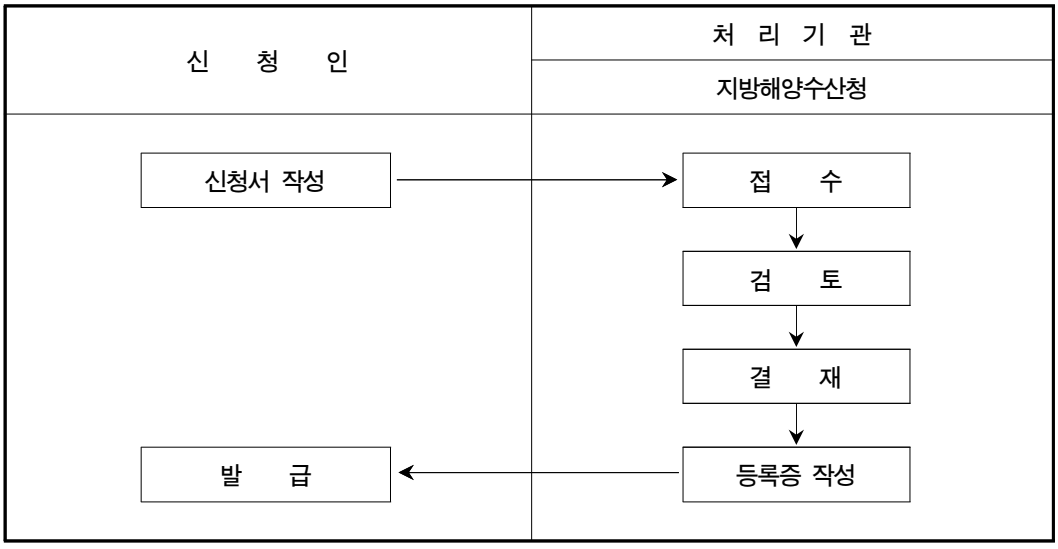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다만, 해운중개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 3,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사업의 종류	시설 및 경영형태
해운중개업	「상법」상의 회사일 것
해운대리점업	1. 「상법」상의 회사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다.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선박대여업	총톤수 20톤(부선은 100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 해운중개업 [ ] 선박대여업 [ ] 해운대리점업 [ ] 선박관리업 등록(갱신)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기준지(대표자)	
계약상대방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국적선박현황	선명	선박번호
사업개시예정일		
등록갱신 기간		

「해운법」 제3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해운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7. 등록증 원본(등록갱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등록갱신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3천원 (갱신 :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해운중개업등 등록사항 변경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33조 제1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1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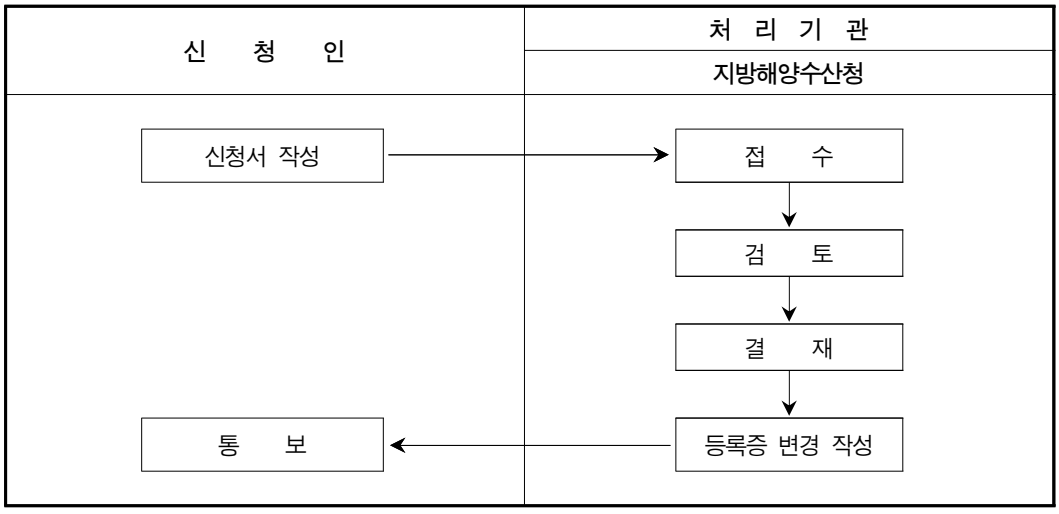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해운중개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2. 해운업등록증 원본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별지 제19호서식

☐ 해운중개업 ☐ 선박대여업 ☐ 해운대리점업 ☐ 선박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번호 :)		
⑤ 등록번호				
⑥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⑦ 사유				

「해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국제선박등록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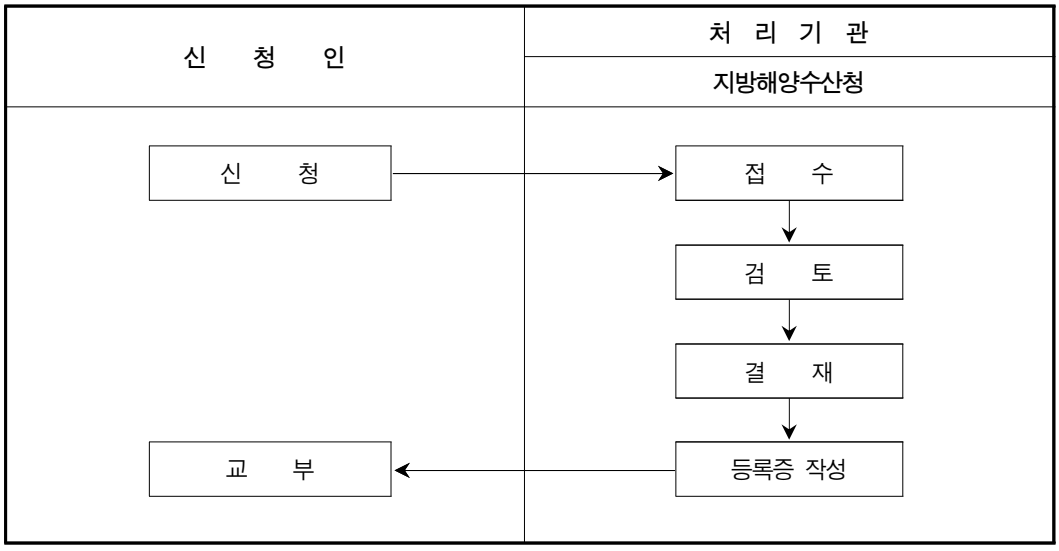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국제톤수증서 사본
2.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5.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 등록대상 선박에 해당여부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제선박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선박명	선적항(국적)
	국제총톤수	진수일
	등록선급명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국제톤수증서 사본 2.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제협약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선급이 발행한 선급증서 사본(선령이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등록신청 선박의 국제항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5.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제선박 변경등록 변경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3항,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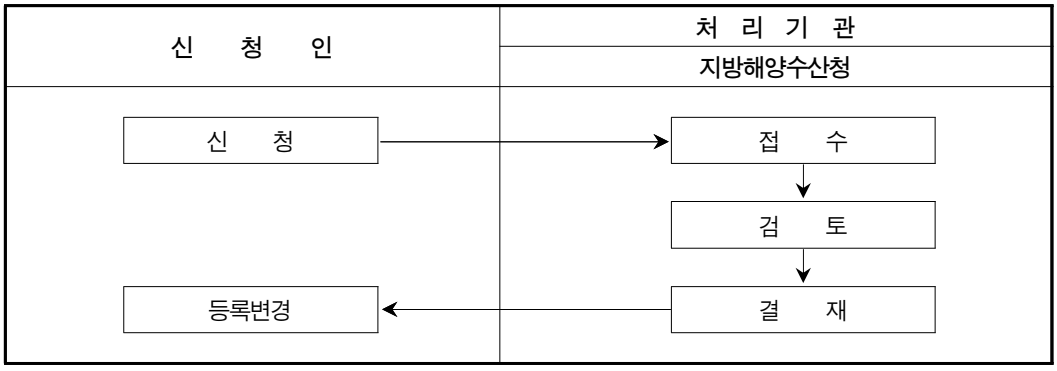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및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3. 등록선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하는 선박의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 등록대상 해당여부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제선박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국제선박 등록번호		선박명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명세서 사본 및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2. 국제총톤수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국제톤수증서 사본 3. 등록 선급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선급증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가필수국제선박지정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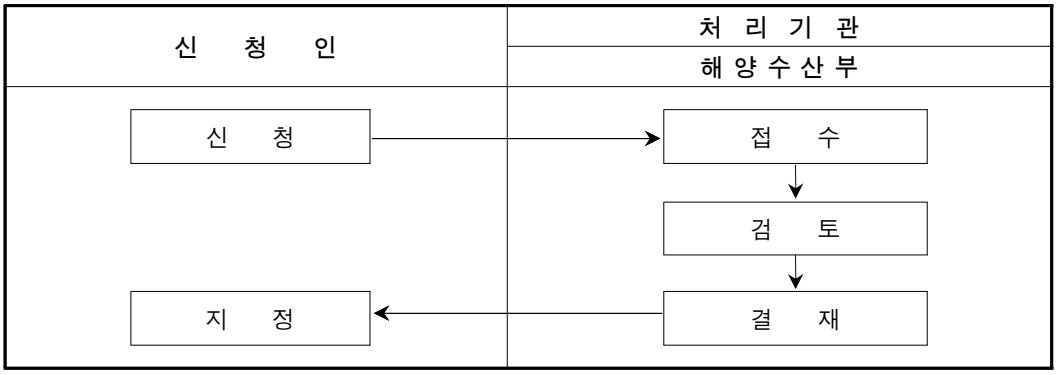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
  2. 신청일 현재의 승무원명부
  3. 선박의 운항계획을 기재한 서류(국제선박등록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선박의 국제선박등록법시행령 제3조 지정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필수국제선박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 호(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⑤선 박 명		⑥선 박 의 종 류		
⑦국 제 총 톤 수		⑧진 수 일		
⑨선 적 항(국적)				
⑩지 정 기 간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 2. 신청일 현재의 승무원명부 3. 선박의 운항계획을 기재한 서류(국제선박등록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없음

53337-44911민
98.2.27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손실보상지급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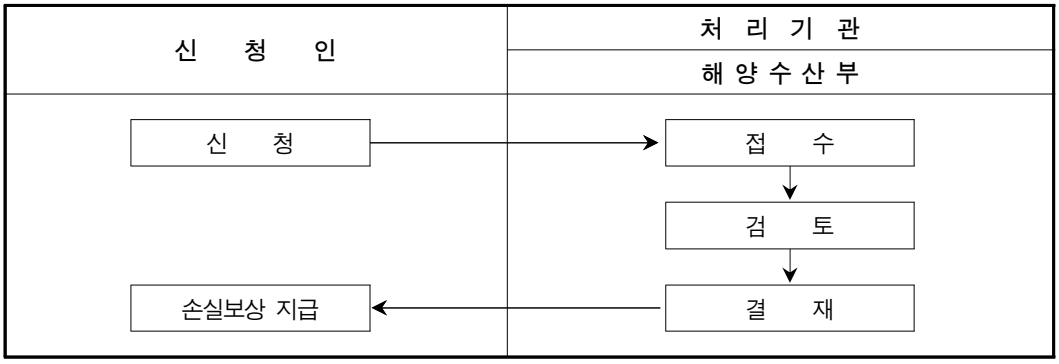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운항내역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2. 손실보상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승무원명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선박의 국제선박등록법시행령 제3조 지정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2.31〉

(앞쪽)

손실보상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 호(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⑤선 박 명				
⑥손 실 보 상 일 수				
⑦손실보상신청금액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선박운항내역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2. 손실보상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승무원 명보	없음

53337-45011민
98.2.27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제6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7)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9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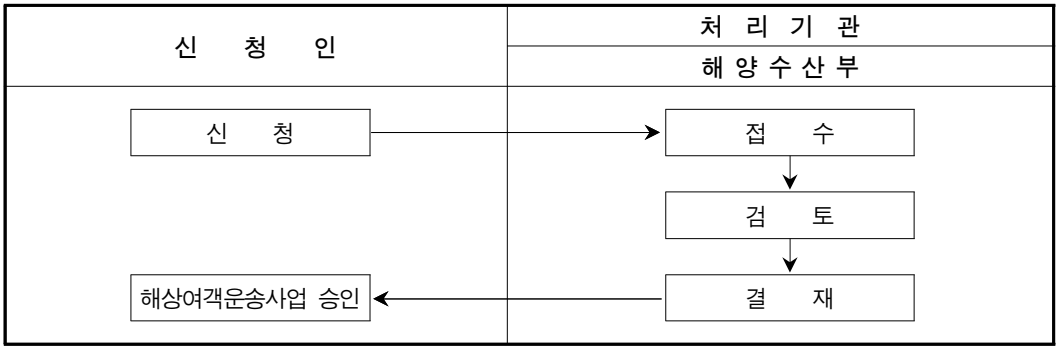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 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각 1부(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 2만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 적합여부 심사

:: 별지 제3호서식

<table>
<tr><td colspan="5">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서</td><td>처리기간
9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① 상호(명칭)</td><td></td><td>② 국적</td><td colspan="2"></td></tr>
<tr><td>② 성명(대표자)</td><td></td><td>④ 설립연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⑤ 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2">⑥ 사업의 종류</td><td></td><td>⑦ 운항개시예정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⑧ 항로구간</td><td></td><td>⑨ 운항횟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⑩ 사업개요</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해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td></tr>
<tr><td colspan="6">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td></tr>
<tr><td>구비서류</td><td colspan="2">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td><td colspan="2">담당 공무원 확인사항</td><td>수수료</td></tr>
<tr><td></td><td colspan="2">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각 1부(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계획서 1부</td><td colspan="2">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td><td>2만원</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제7조제1항·제26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7)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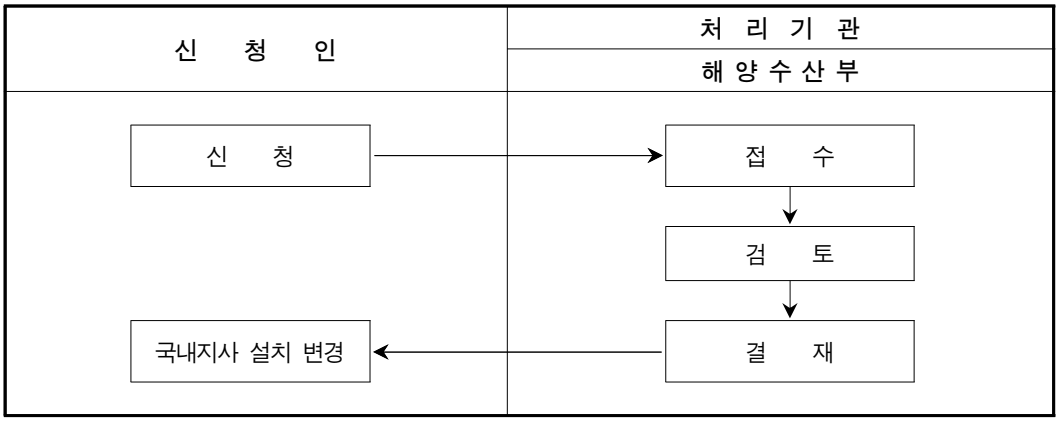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설치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 적합여부 심사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사업자	① 상호(명칭)		② 국적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자본금		⑤ 성명(대표자)	
국내지사 설치내용	⑥ 상호(명칭)			
	⑦ 주소	(전화번호 :)		
	⑧ 지사의 대표자			
	⑨ 업무의 범위			
	⑩ 영업소			
변경의 경우	⑪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⑫ 사유			

「해운법」 제7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설치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24조제1항·제2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7)
  연안해운과(연락처 : 044-200-5736)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9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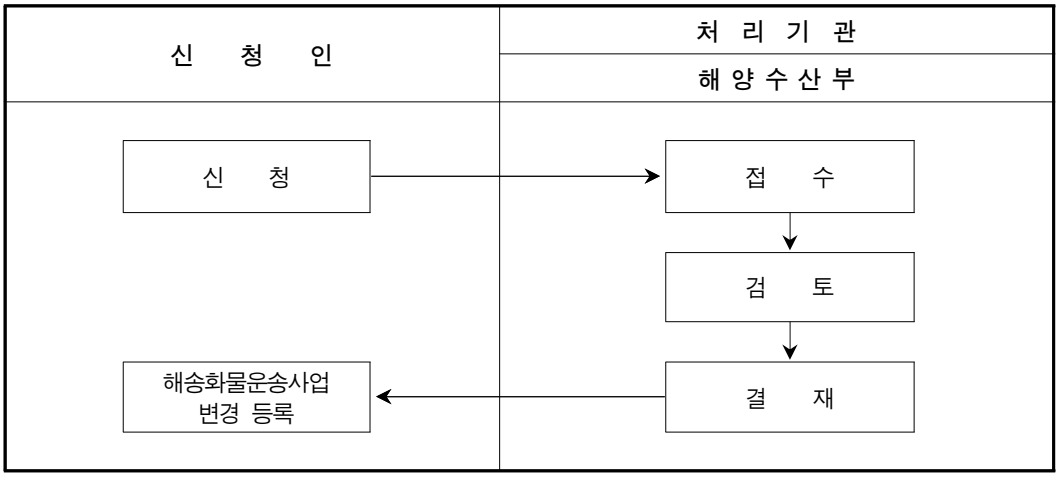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사업계획서(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3.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 수수료 : 내항(1만원), 외항(2만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2"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11호서식

<table>
<tr><td colspan="4">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td><td>처리기간
9일</td></tr>
<tr><td rowspan="5">신청인</td><td colspan="2">① 상호(명칭)</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② 성명(대표자)</td><td>③ 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④ 주소</td><td colspan="2">(전화번호 :)</td></tr>
<tr><td colspan="2">⑤ 등록기준지(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⑥ 사업의 종류</td><td>⑦ 운항개시예정일</td><td></td></tr>
<tr><td colspan="2">⑧ 항로</td><td>⑨ 운항횟수</td><td></td></tr>
<tr><td colspan="2">⑩ 사업의 개요</td><td colspan="3">별첨 사업계획서 참조</td></tr>
<tr><td colspan="5">「해운법」 제2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5">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td></tr>
<tr><td rowspan="2">구비서류</td><td colspan="2">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td><td>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td><td>수수료</td></tr>
<tr><td colspan="2">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사업계획서(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3.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td><td>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td><td>내항 : 1만원
외항 : 2만원</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운항계획, 협약)신고 (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7)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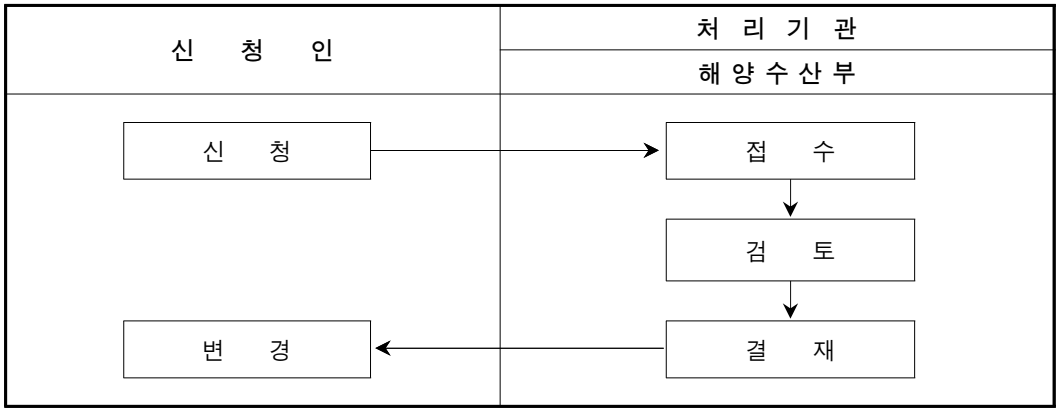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운항계획서(운항계획 신고 시에만 제출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2. 협약서 사본 및 협약 개요서(협약 신고 시에만 제출하며, 번역문을 포함합니다) 각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운행계획서 또는 협약서 사본 및 협약개요서 적합여부 심사

:: 별지 제15호서식

<table>
<tr><td colspan="4">□ 운항계획
□ 협약 신고서(□ 변경신고서)</td><td>처리기간
즉시</td></tr>
<tr><td rowspan="4">사업자</td><td>① 상호(명칭)</td><td></td><td>② 국적</td><td></td></tr>
<tr><td>③ 자본금</td><td></td><td>④ 설립연월일</td><td></td></tr>
<tr><td>⑤ 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⑥ 대표자</td><td></td><td>⑦ 등록일</td><td></td></tr>
<tr><td rowspan="3">대리점</td><td>⑧ 상호(명칭)</td><td></td><td>⑨ 자본금</td><td></td></tr>
<tr><td>⑩ 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⑪ 대표자</td><td></td><td>⑫ 등록일</td><td>(호)</td></tr>
<tr><td colspan="2">⑬ 협의여부(협약신고의 경우만 해당됩니다)</td><td colspan="3"></td></tr>
</table>

「해운법」 제28조제2항·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선박운항계획서(운항계획 신고 시에만 제출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1부 2. 협약서 사본 및 협약 개요서(협약 신고 시에만 제출하며, 번역문을 포함합니다) 각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4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7)
  연안해운과(연락처 : 044-200-573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13일(외항 여객운송사업은 9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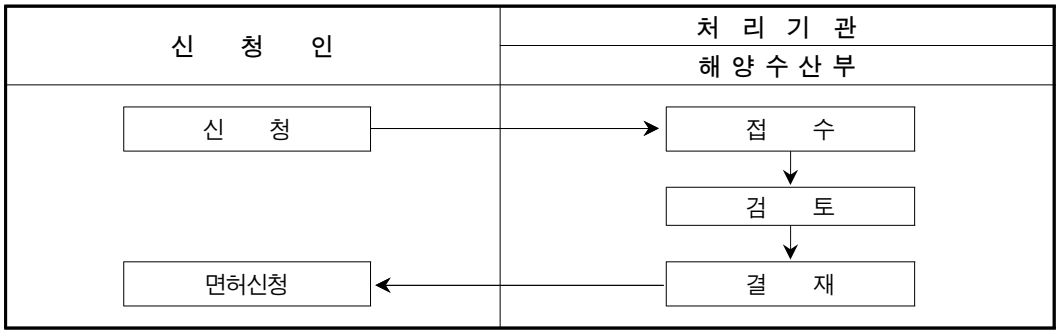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각 1부(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 내항 1만원, 외항 : 2만원, 순항 : 2만원, 복합 : 2만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3일(외항 여객운송사업은 9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⑤ 등록기준지(대표자)			
⑥ 사업의 종류			⑦ 운항개시예정일	
⑧ 항로구간			⑨ 운항횟수	
⑩ 사업개요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해운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각 1부(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대한민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내항 : 1만원 외항 : 2만원 순항 : 2만원 복합 : 2만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항 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11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7)
  연안해운과(연락처 : 044-200-573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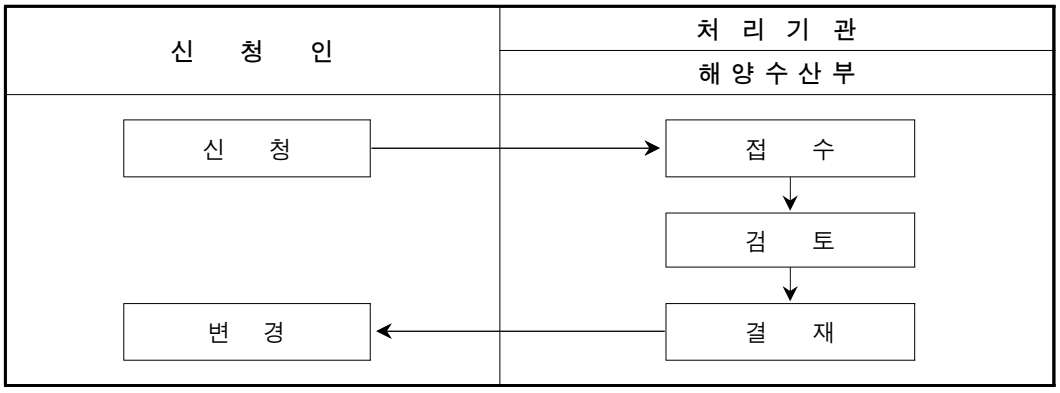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운임과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운임과 요금의 산출 적합여부

:: 별지 제7호서식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운임·요금	⑤ 운항구간				
	⑥ 운임				
	⑦ 요금				
⑧ 시행일자					
⑨ 변경사유					

「해운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1부 2. 운임과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 비고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12조·제32조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7)
  연안해운과(연락처 : 044-200-573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신고 2일, 인가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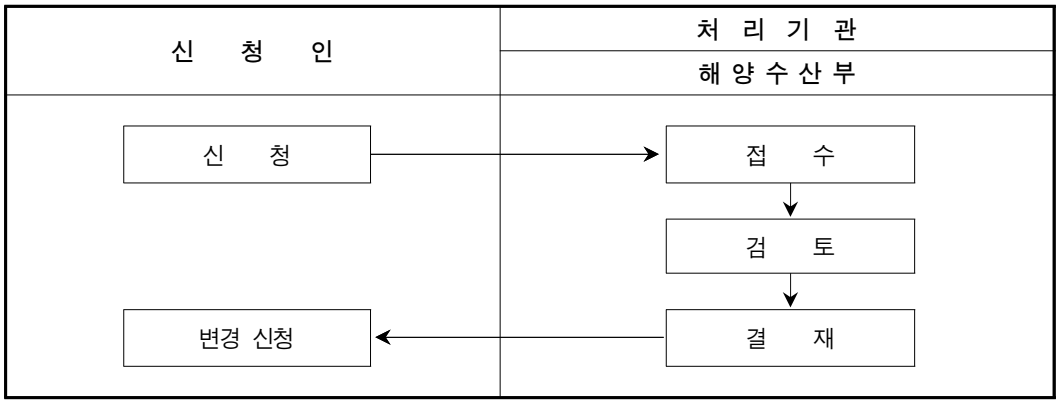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 적합여부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8.〉

<table>
<tr><td colspan="4">☐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td><td>처리기간
신고 : 2일
인가 : 7일</td></tr>
<tr><td rowspan="4">신
고
인</td><td>① 상호(명칭)</td><td></td><td>② 설립연월일</td><td></td></tr>
<tr><td>③ 성명(대표자)</td><td></td><td>④ 생년월일</td><td></td></tr>
<tr><td>⑤ 주소</td><td colspan="3"></td></tr>
<tr><td>⑥ 사업의 종류</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2">⑦ 변경하려는 사항 및 기간</td><td>변경 전</td><td colspan="2">변경 후</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⑧ 변경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해운법」 제12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신고(변경인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4">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17조제4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7)
  연안해운과(연락처 : 044-200-573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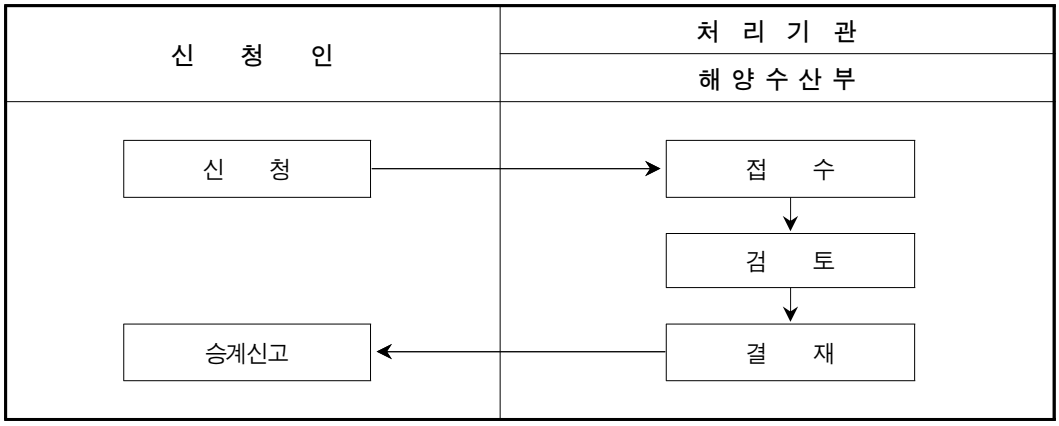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 양도·양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의 경우

-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계약서, 의결서 적합 여부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피승계인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인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내용	사업의 종류	
	항로 또는 사업내용	
승계가격		
승계의 시기		
승계의 사유		

「해운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승계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1.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양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의 경우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18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7)
  연안해운과(연락처 : 044-200-573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신고 2일, 허가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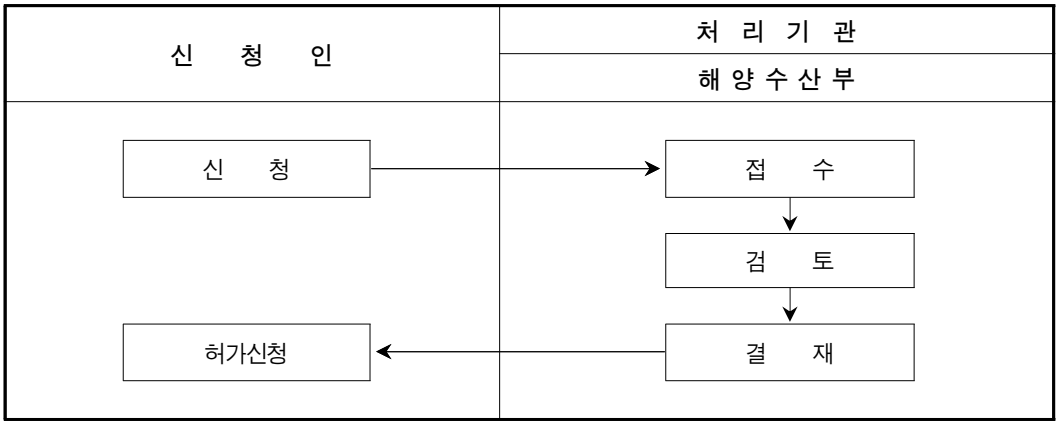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사항 적합여부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5.1.8.〉

해상여객운송사업 [ ] 휴업 [ ] 폐업 신고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 ] 휴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 : 2일 허가 : 7일

신고인 (신청인)	상호(명칭)	설립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및 내용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해운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허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내항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12조
- 담당부서 : 연안해운과(연락처 : 044-200-573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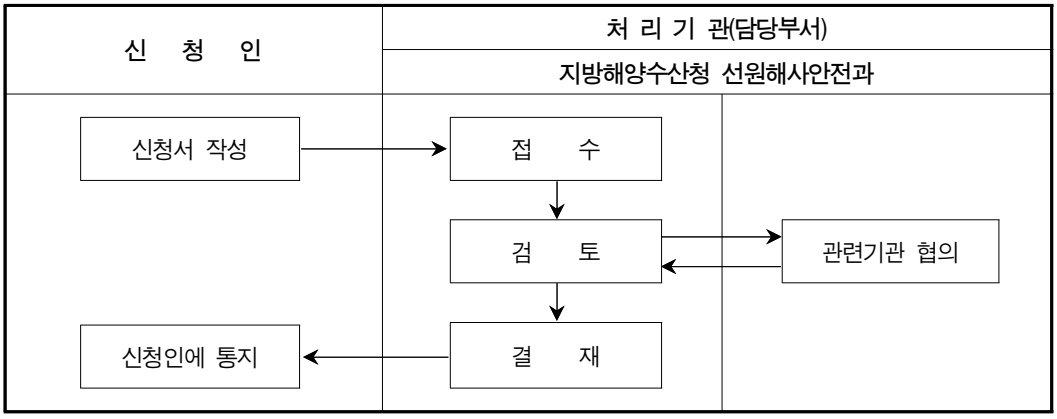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운법 제5조(면허기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성
-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8.3.14.〉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신고 : 2일 인가 : 7일
신고인	① 상호(명 칭)		② 설립연월일	
	③ 성명(대표자)		④ 생 년 월 일	
	⑤ 주 소			
	⑥ 사업의 종류			
⑦ 변경하려는 사항 및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⑧ 변 경 사 유				

「해운법」 제12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신고(변경인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16조제3항
- 담당부서 : 연안해운과(연락처 : 044-200-573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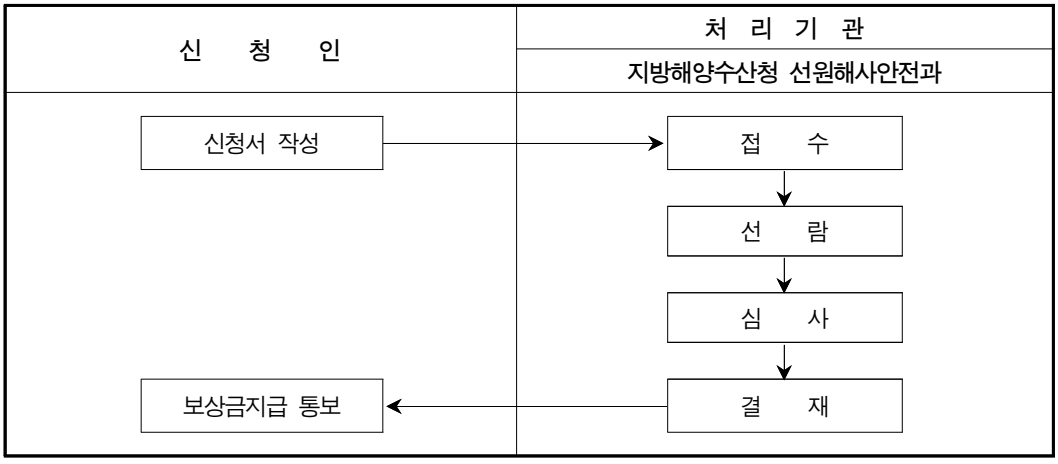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별지 제9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수입 및 지출명세서 및 수입 및 지출 증거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여객선 운항에 따른 수입과 지출명세서 검토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8.3.14.〉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				처리기간 10일
청구인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운 항 항 로				
⑥ 운 항 선 박				
⑦ 운 항 기 간				
⑧ 수 입 액				원
⑨ 지 출 액				원
⑩ 보 상 금 청 구 액				원

「해운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입 및 지출 명세서 2. 수입 및 지출 증거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11조
- 담당부서 : 연안해운과(연락처 : 044-200-573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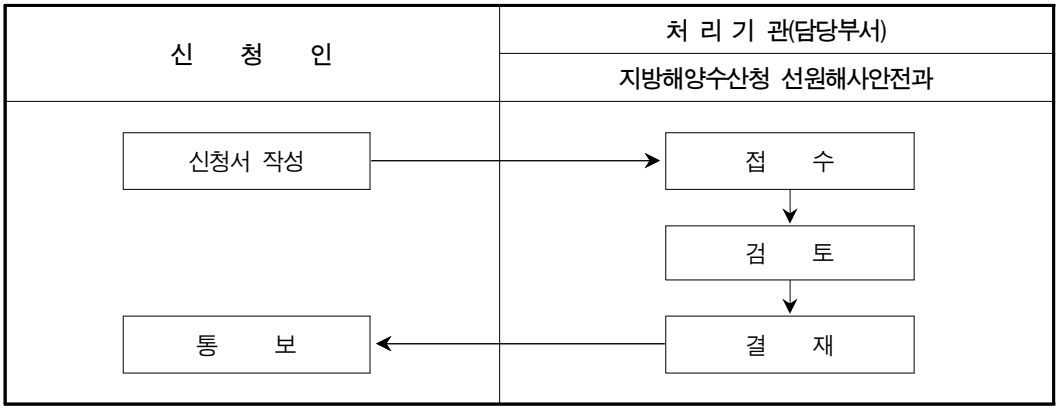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에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 기재서류, 구간제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 표시서류, 운임과 요금의 신·구대조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 적정성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상호(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선 박 명				
⑥ 항 로				
운임·요금	⑦ 운항구간			
	⑧ 운 임			
	⑨ 요 금			
⑩ 변 경 사 유				

「해운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1부
2. 구간제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3. 운임과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허가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49조제3항,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 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 담당부서 : 연안해운과(연락처 : 044-200-5736)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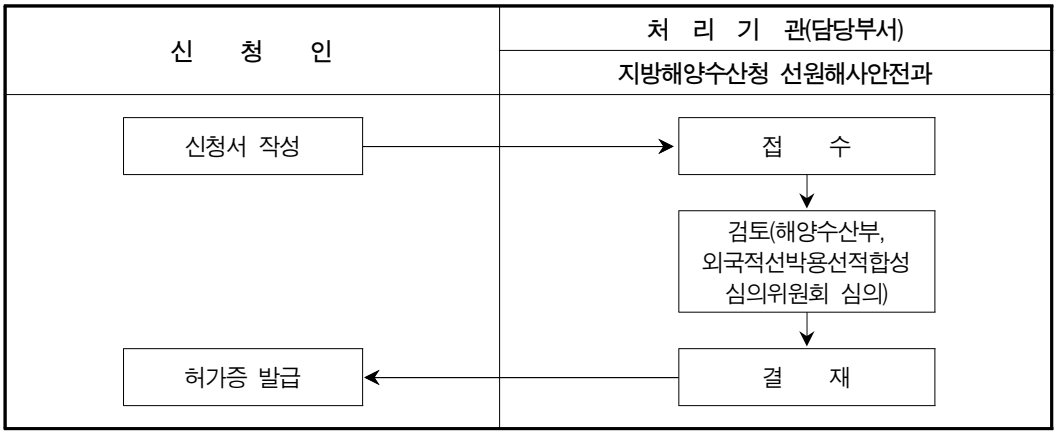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4조제6항에 따른 용선적합성

::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의 종류	

선박명(국적, 총톤수)※	운송화물	운송구간	운송기간

※ 신청시 용선선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명(국적, 총톤수)란에 선박규모만 명시하고, 선박명은 "추후지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선박투입 예정일 3일전까지 선박명을 확정하고, 선박국적증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해운법」 제49조제3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용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사업계획서 1부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49조제3항,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고시 제3조, 제4조
- 담당부서 : 연안해운과(연락처 : 044-200-5736)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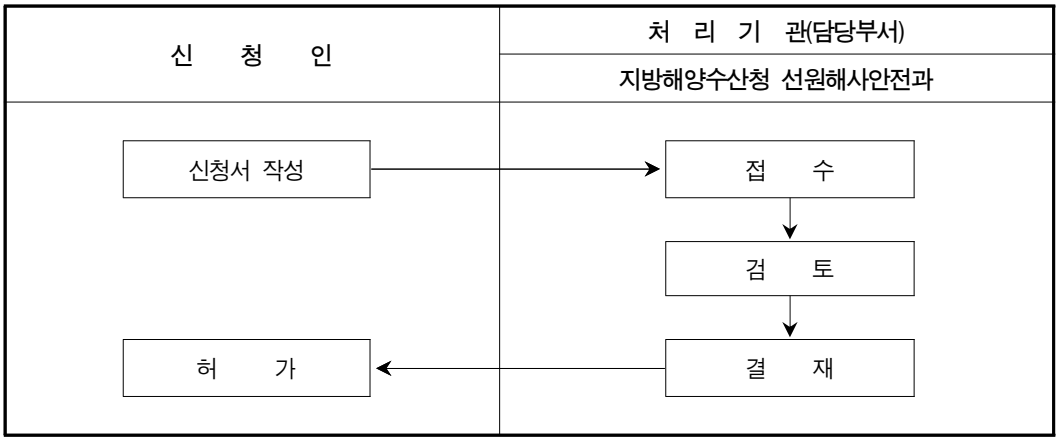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및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사본, 여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공제) 사본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따른 적합여부 심사

:: 별지 서식 〈제정 2007.12.〉

<table>
<tr><td colspan="5">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td><td>처리기간
7일</td></tr>
<tr><td rowspan="4">신청인</td><td colspan="2">① 상 호 (명 칭)</td><td></td><td>②설 립 연 월 일</td><td></td></tr>
<tr><td colspan="2">③성 명 (대 표 자)</td><td></td><td>④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⑤ 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⑥사 업 의 종 류</td><td colspan="2">□ 정 기</td><td>□ 부 정 기</td></tr>
<tr><td colspan="3">⑦선 박 명
(국적, 총톤수)</td><td>⑧운 송 화 물
종 류 및 중 량</td><td>⑨운 송 구 간</td><td>⑩운 송 기 간</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⑪사 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해운법」 제49조제3항, 「해운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3조제2항(제4조제2항)에 따라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및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3. 여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공제)증서 사본</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운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담당부서 : 연안해운과(연락처 : 044-200-5736)
  해운정책과(연락처 : 044-200-5727)
- 접수 및 처리기관(처리기간 2일)
  -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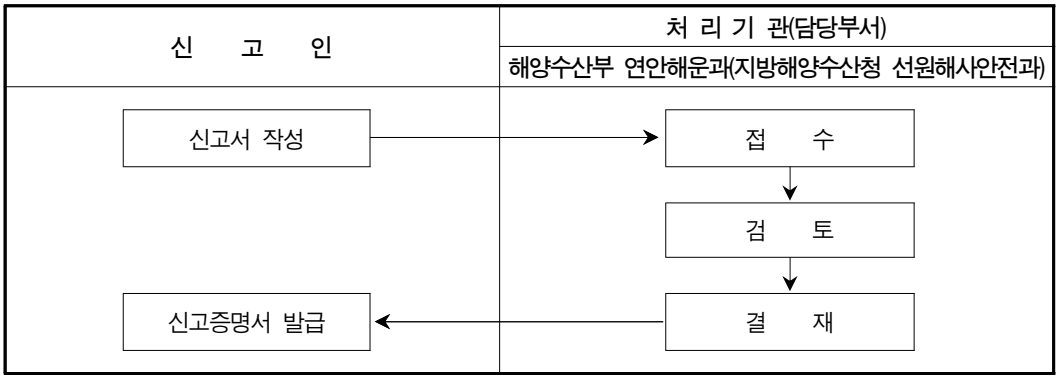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심사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3.14.〉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 상호(명 칭)		② 설립연월일	
	③ 성명(대표자)		④ 생 년 월 일	
	⑤ 주 소			
	⑥ 사업의 종류			
⑦ 대 상 선 박		⑧ 운 송 구 간	⑨ 운 송 기 간	
⑩ 사 유				

「해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적인 운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원취업규칙(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 제119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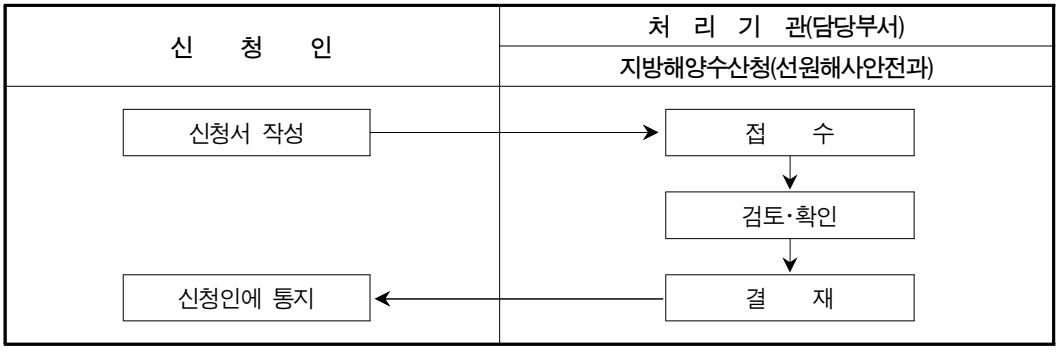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취업규칙 2부(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2.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
  3.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선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 제119조에 의한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24호서식

취업규칙 □신 고 □변경신고 서			처리기간 10일
사 업 장 명		사업의 종류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선 원 수	계 명(노동조합원수 : 명)		여 명
소 재 지	(전화 :)		
의 견 청 취 일 또 는 동 의 일	년 월 일		

「선원법」 제10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신 고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취업규칙 2부(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없음
2.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선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관리업등록요령 제16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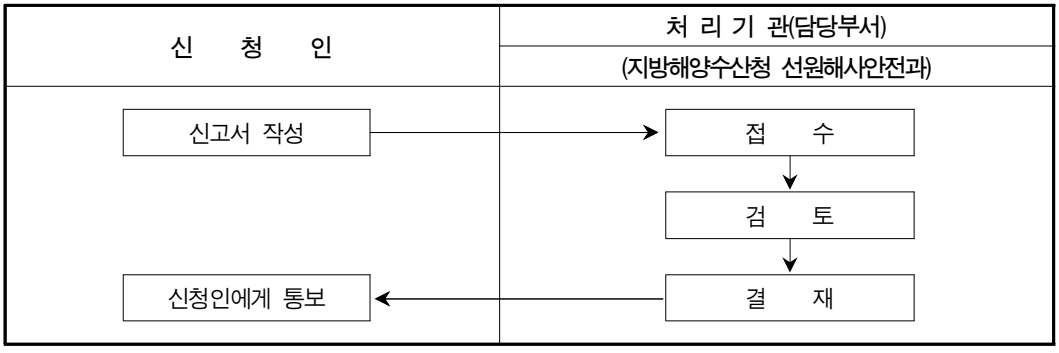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관리계약서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사본(신규계약체결에 한함)
  2. 계약변경의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변경된 선박관리계약서, 선원근로계약서 등)
     * 선박관리업등록요령 제16조 기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관리업등록요령 제16조의 의한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6호 서식

<table>
<tr><td colspan="8">계약변경신고서
(신규계약체결, 근로계약변경, 관리선박감소·증가)</td><td>처리기간
2일</td></tr>
<tr><td>상 호</td><td colspan="3"></td><td>대 표 자</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관 련
선 주</td><td>국 적</td><td colspan="2">선 주 명</td><td rowspan="2">관리선박</td><td colspan="3">관 리 선 원 (명)</td></tr>
<tr><td>계</td><td>해기사</td><td>부 원</td></tr>
<tr><td></td><td colspan="2"></td><td>척</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변경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3">변 경 전</td><td colspan="4">변 경 후</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4"></td></tr>
<tr><td>변경사유</td><td colspan="7"></td></tr>
<tr><td>특기사항</td><td colspan="7">※ 계약변경 등으로 인한 선원관리와 관련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등 기재</td></tr>
<tr><td colspan="8">선박관리업의등록관리요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변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7">첨부서류
○ 선박관리계약서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사본(신규계약체결에 한함)
○ 계약변경의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변경된 선박관리계약서, 선원근로계약서 등)</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54337-10411민
1998.12.18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승선선원 변경공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 제44조 및 제45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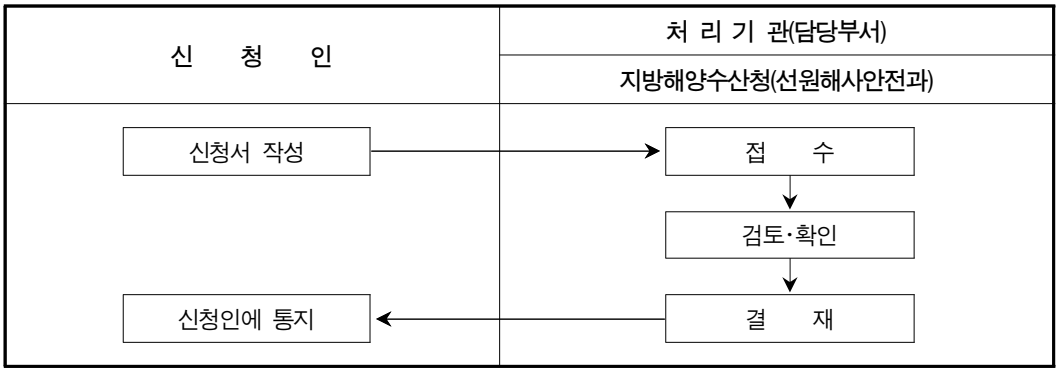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승무원명부
  3.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7. 7. 19.〉

승선변경공인신청서

(계 □명)

처리기간
즉시

현재 승선 사항	①업체명				②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③선명		④총톤수	( )G/T	⑤기관출력	( )KW
⑥ 변경일	년 월 일		⑦공인일	년 월 일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현재승선사항			변경사항					
		⑩최종 승선일	⑪최종 공인일	⑫ 직무	⑬ 총톤수 (G/T)	⑭기관 출력 (KW)	⑮ 직무	⑯기간 연장일	⑰선박 소유자	⑱ 선박명

「선원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변경공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전화 : (-)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승무원명부
3.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수수료

1인당 1천원

53337-41111민
95.8.24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외국인선원 고용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제5조제1항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3)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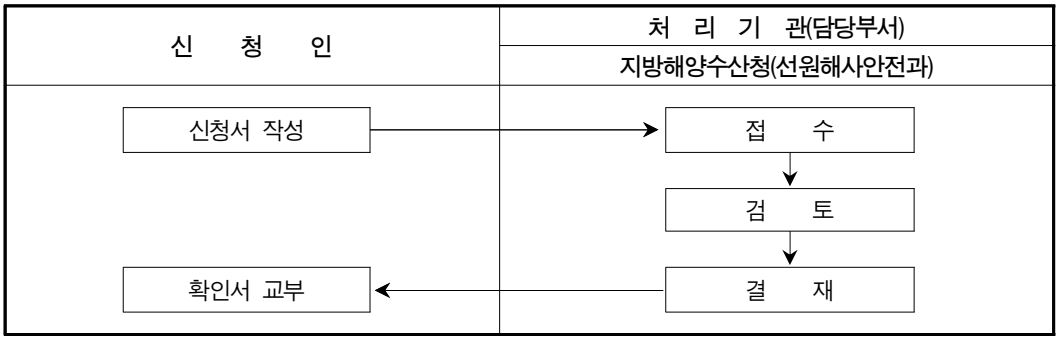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 선원명단 1부
  2. 근로계약서 1부
  3.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나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선박운항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및 검사증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제5조제1항에 의한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7">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
수리번호 : 제20 - 호(20 . .)</td><td>처리기간
1일</td></tr>
<tr><td rowspan="2">선박소유자</td><td>회 사 명</td><td colspan="2"></td><td>주 소</td><td colspan="2"></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송입업체</td><td>회 사 명</td><td colspan="2"></td><td>주 소</td><td colspan="2"></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고용계획</td><td>승선예정
선 박 명</td><td colspan="2"></td><td>선 종</td><td>선 원 수
(정원)</td><td></td></tr>
<tr><td rowspan="3">현재승선
선 원(명)</td><td colspan="2">· 합 계 : 명</td><td rowspan="3">부족선원
(명)</td><td rowspan="3"></td><td rowspan="3">고용신청
인원(명)</td><td rowspan="3"></td></tr>
<tr><td colspan="2">· 한국인 : 명</td></tr>
<tr><td colspan="2">· 외국인 : 명</td></tr>
<tr><td colspan="8">「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7">※ 첨부서류
1.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 선원명단 1부
2. 근로계약서 1부
3.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나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선박운항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및 검사증서 사본 1부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등 대체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의료관리자시험 응시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시행규칙 제50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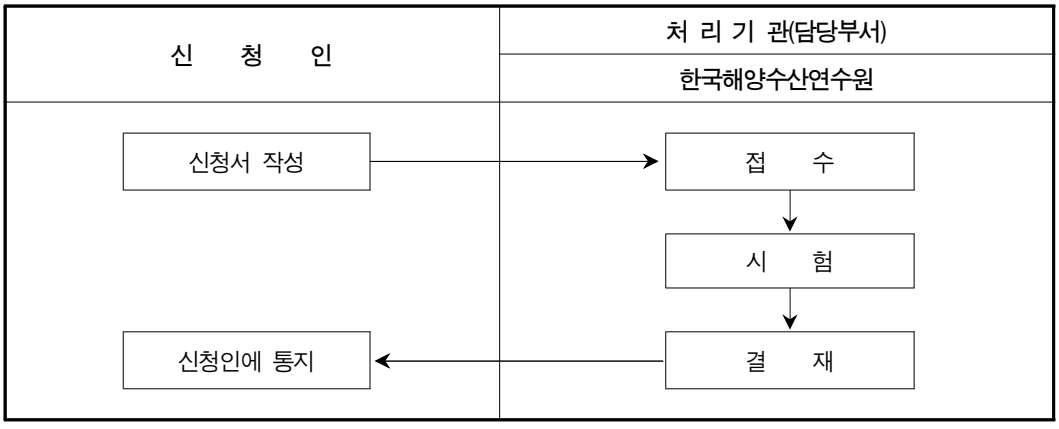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1인당 5,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시행규칙제50조에 의한 적합여부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개정 2014.9.19.〉

응 시 원 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시험구분 (년도 회)	정기·임시 / 필기··실기

응시자격	[ ] 선박조리사 [ ] 의료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사진 (3.5cm×4.5cm)
주소					
학력	20 . . .부터 20 . . .까지(월)				
	실습기간 : 해상 월, 육상 월				
	학교 과(졸업, 졸업예정, 수료)				
소지면허증	해기사	명 칭		교부일	
		한정면허			
	기 타	명 칭		교부일	

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번호	응시자 ㊞
	(전화번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의료관리자 자격시험 : 5천원
기재요령	"※" 표시한 곳은 적지 마십시오.

자르는 선 (간인)

※응시번호	응 시 표 (년도 [ ]선박조리사/[ ]의료관리자)			사진 (3.5cm×4.5cm)
성 명		생년월일		
소지면허		시험구분	[ ]필기 [ ]면접	

20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당직부원 자격 증명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 제63조 및 제64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연수원, 처리기간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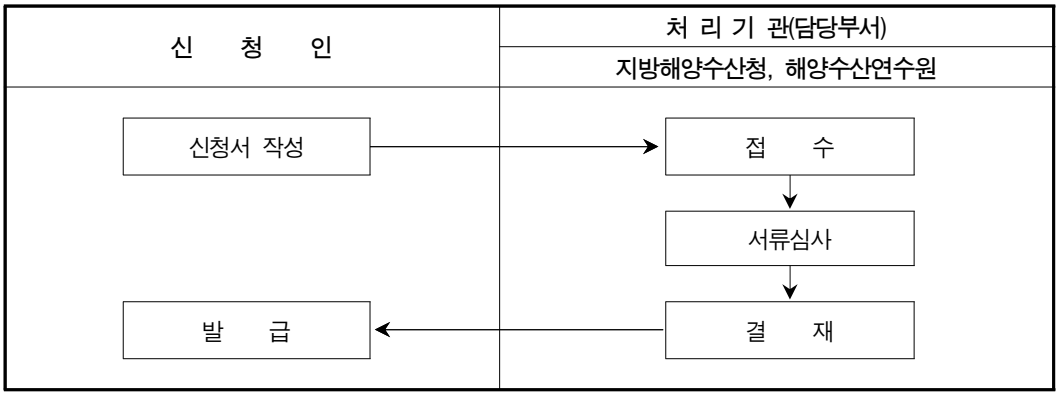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증명서류
  2. 당직부원교육이수증서
- 수수료 : 1인당 2,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 제63조제1항에 의한 적합여부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7. 7.19.〉

[ ] ① (갑판 · 기관 · 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 ] ② (갑판 · 기관 · 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 ] ③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 · 상급 유조선 · 상급 케미컬탱커 · 기초 액화가스탱커 · 상급 액화가스탱커)
[ ] ④ 구명정 조종사 ·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 ] ⑤ 선박조리사 자격증
[ ] ⑥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②,③ 1일
			④,⑤,⑥ 2일

신청인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선원수첩 번호		※ ⑤의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자격요건 구비내용	①당직부원	승무경력	[ ]갑판부 [ ]기관부	년 월	
		당직부원교육 이수일 및 과정			
	②유능부원	당직부원 승무경력	[ ]갑판부 [ ]기관부		
		당직부원 자격취득 연월일	[ ]갑판당직부원 [ ]기관당직부원 [ ]운항당직부원		
		유능부원 교육이수 연월일	[ ]갑판유능부원교육 [ ]기관유능부원교육 [ ]운항유능부원교육		
	③위험물적재선박 승무	승무경력	[ ]갑판부 [ ]기관부	(선종) (경력) 년 월	
		이수교육 연월일	[ ]탱커기초교육 [ ]탱커보수교육		
		승무하려는 선박			
	④구명정 조종사 · 고속구조정 조종사	해기사 면허			
		자격요건 구비내용 (교육이수, 승무경력 등)			
	⑤선박조리사	교육이수 연월일		교육실시기관	
		시험합격 연월일		시험실시기관	
	⑥의료관리자	교육이수 연월일		교육실시기관	
		시험합격 연월일		시험실시기관	

위와 같이 [ ] 갑판( ) · 기관( ) · 운항( ) 당직부원, [ ] 갑판( ) · 기관( ) · 운항( ) 유능부원, [ ] 위험물적재선박 승무, [ ] 구명정 조종사, [ ] 고속구조정 조종사, [ ] 선박조리사 자격증, [ ]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첨부 서류	①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1.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 증명서류 2. 당직부원교육 이수증명서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②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1. 승무경력 증명서류 2. 당직부원 자격증 3. 유능부원교육 이수증명서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③ 위험물적재 선박 승무	1.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 증명서류 2. 탱커기초교육 이수증서 또는 탱커보수교육 이수증서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④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1.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구명정 조정사 교육 이수증서 또는 고속구조정 조정사 교육 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 합니다)	1인당 2천원
	⑤ 선박조리사	선박조리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의료관리자	의료관리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사진 또는 정보통신망에 이용되는 사진 이미지 파일). 다만, ①, ②, ③ 신청의 경우에는 선원수첩 미소지자만 해당합니다. ※ 정보통신망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첨부서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고	①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 ②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③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 ④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3조의2 ⑤ 선박조리사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⑥ 의료관리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51조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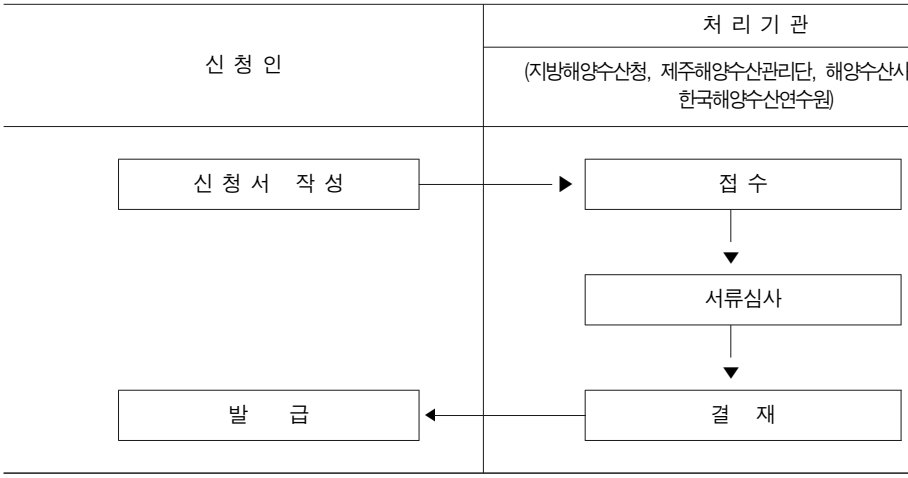

의료관리자 자격증 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 제85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처리기간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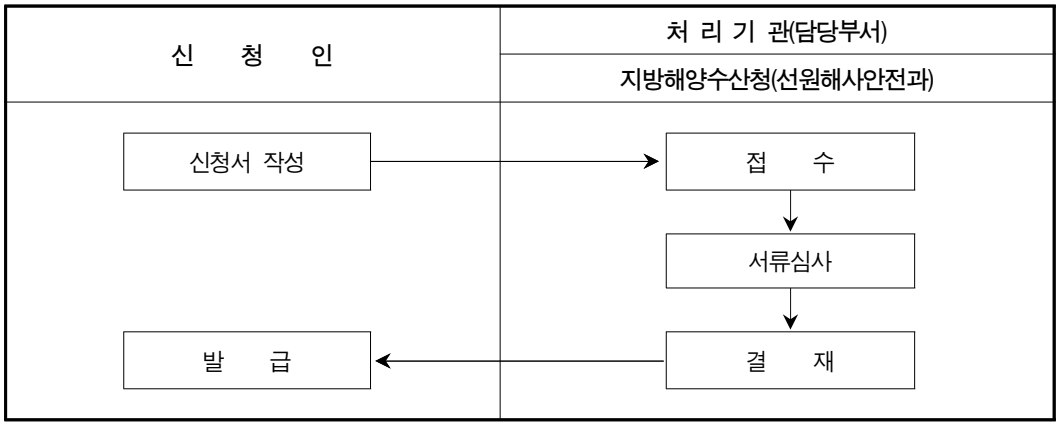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 제85조제3항에 의한 적합여부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7.7.19.〉

[ ] ① (갑판 · 기관 · 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 ] ② (갑판 · 기관 · 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 ] ③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 · 상급 유조선 · 상급 케미컬탱커 · 기초 액화가스탱커 · 상급 액화가스탱커)
[ ] ④ 구명정 조종사 ·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 ] ⑤ 선박조리사 자격증
[ ] ⑥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②,③ 1일
			④,⑤,⑥ 2일

신청인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선원수첩 번호		※ ⑤의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자격요건 구비내용	①당직부원	승무경력	[ ]갑판부 [ ]기관부	년 월	
		당직부원교육 이수일 및 과정			
	②유능부원	당직부원 승무경력	[ ]갑판부 [ ]기관부		
		당직부원 자격취득 연월일	[ ]갑판당직부원 [ ]기관당직부원 [ ]운항당직부원		
		유능부원 교육이수 연월일	[ ]갑판유능부원교육 [ ]기관유능부원교육 [ ]운항유능부원교육		
	③위험물적재선박 승무	승무경력	[ ]갑판부 [ ]기관부	(선종) (경력) 년 월	
		이수교육 연월일	[ ]탱커기초교육 [ ]탱커보수교육		
		승무하려는 선박			
	④구명정 조종사 · 고속구조정 조종사	해기사 면허			
		자격요건 구비내용 (교육이수, 승무경력 등)			
	⑤선박조리사	교육이수 연월일		교육실시기관	
		시험합격 연월일		시험실시기관	
	⑥의료관리자	교육이수 연월일		교육실시기관	
		시험합격 연월일		시험실시기관	

위와 같이 [ ] 갑판( ) · 기관( ) · 운항( ) 당직부원, [ ] 갑판( ) · 기관( ) · 운항( ) 유능부원, [ ] 위험물적재선박 승무, [ ] 구명정 조종사, [ ] 고속구조정 조종사, [ ] 선박조리사 자격증, [ ]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첨부 서류	①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1.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 증명서류 2. 당직부원교육 이수증명서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②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1. 승무경력 증명서류 2. 당직부원 자격증 3. 유능부원교육 이수증명서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③ 위험물적재 선박 승무	1.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 증명서류 2. 탱커기초교육 이수증서 또는 탱커보수교육 이수증서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④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1.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구명정 조정사 교육 이수증서 또는 고속구조정 조정사 교육 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 합니다)	1인당 2천원
	⑤ 선박조리사	선박조리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의료관리자	의료관리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사진 또는 정보통신망에 이용되는 사진 이미지 파일). 다만, ①, ②, ③ 신청의 경우에는 선원수첩 미소지자만 해당합니다. ※ 정보통신망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첨부서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고	①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 ②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③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 ④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3조의2 ⑤ 선박조리사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⑥ 의료관리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51조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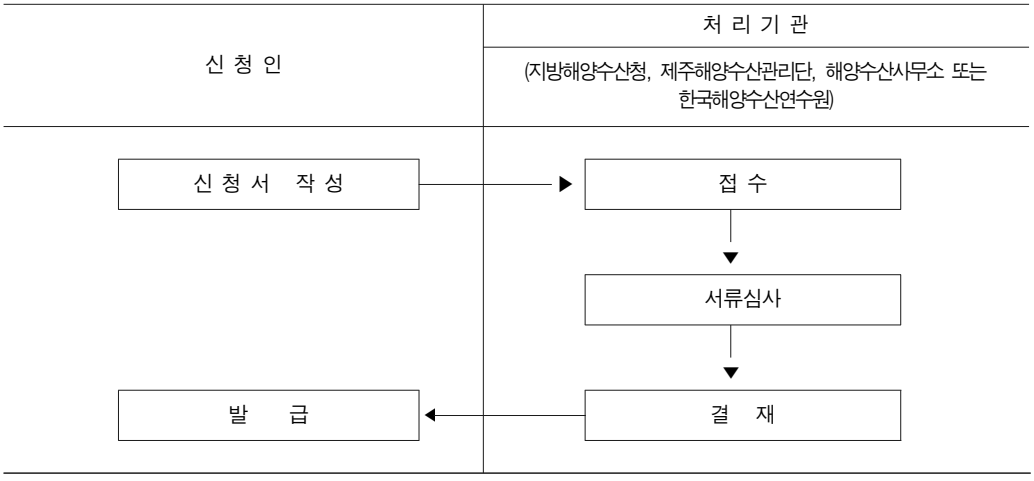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 제64조제3항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처리기간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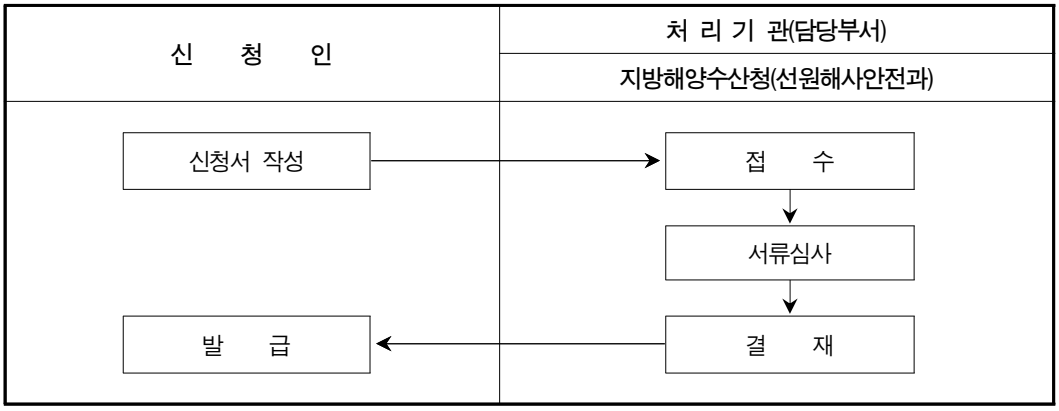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증명서류
  2. 탱커교육 이수증서 또는 보수교육 이수증서
- 수수료 : 1인당 2,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 제64조제3항에 의한 적합여부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7. 7.19.〉

[ ] ① (갑판 · 기관 · 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 ] ② (갑판 · 기관 · 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 ] ③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기초 유조선 및 케미컬탱커 · 상급 유조선 · 상급 케미컬탱커 · 기초 액화가스탱커 · 상급 액화가스탱커)
[ ] ④ 구명정 조종사 ·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 ] ⑤ 선박조리사 자격증
[ ] ⑥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②,③ 1일
			④,⑤,⑥ 2일

신청인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선원수첩 번호		※ ⑤의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자격요건 구비내용	①당직부원	승무경력	[ ]갑판부 [ ]기관부	년 월	
		당직부원교육 이수일 및 과정			
	②유능부원	당직부원 승무경력	[ ]갑판부 [ ]기관부		
		당직부원 자격취득 연월일	[ ]갑판당직부원 [ ]기관당직부원 [ ]운항당직부원		
		유능부원 교육이수 연월일	[ ]갑판유능부원교육 [ ]기관유능부원교육 [ ]운항유능부원교육		
	③위험물적재선박 승무	승무경력	[ ]갑판부 [ ]기관부	(선종) (경력) 년 월	
		이수교육 연월일	[ ]탱커기초교육 [ ]탱커보수교육		
		승무하려는 선박			
	④구명정 조종사 · 고속구조정 조종사	해기사 면허			
		자격요건 구비내용 (교육이수, 승무경력 등)			
	⑤선박조리사	교육이수 연월일		교육실시기관	
		시험합격 연월일		시험실시기관	
	⑥의료관리자	교육이수 연월일		교육실시기관	
		시험합격 연월일		시험실시기관	

위와 같이 [ ] 갑판( ) · 기관( ) · 운항( ) 당직부원, [ ] 갑판( ) · 기관( ) · 운항( ) 유능부원, [ ] 위험물적재선박 승무, [ ] 구명정 조종사, [ ] 고속구조정 조종사, [ ] 선박조리사 자격증, [ ]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①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1.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 증명서류 2. 당직부원교육 이수증명서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②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1. 승무경력 증명서류 2. 당직부원 자격증 3. 유능부원교육 이수증명서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③ 위험물적재 선박 승무	1. 선원수첩 또는 승무경력 증명서류 2. 탱커기초교육 이수증서 또는 탱커보수교육 이수증서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④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1.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구명정 조정사 교육 이수증서 또는 고속구조정 조정사 교육 이수증서(해당자만 제출 합니다)	1인당 2천원
	⑤ 선박조리사	선박조리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의료관리자	의료관리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사진 또는 정보통신망에 이용되는 사진 이미지 파일). 다만, ①, ②, ③ 신청의 경우에는 선원수첩 미소지자만 해당합니다. ※ 정보통신망으로 ①, ②, ③, ④, ⑤, ⑥첨부서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고	① (갑판·기관·운항) 당직부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 ② (갑판·기관·운항) 유능부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③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 ④ 구명정 조종사·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3조의2 ⑤ 선박조리사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⑥ 의료관리자 자격증: 「선원법 시행규칙」 제51조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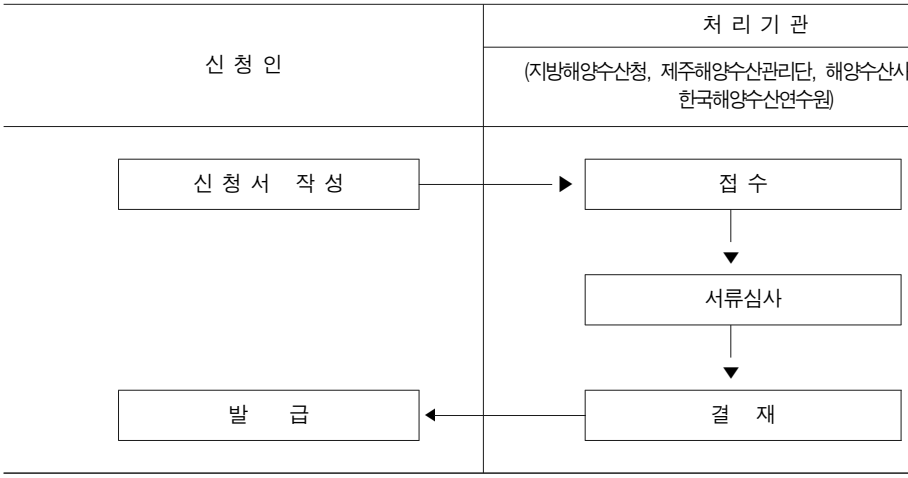

국외 개별 취업 출국 확인 및 선원수첩공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시행규칙 제61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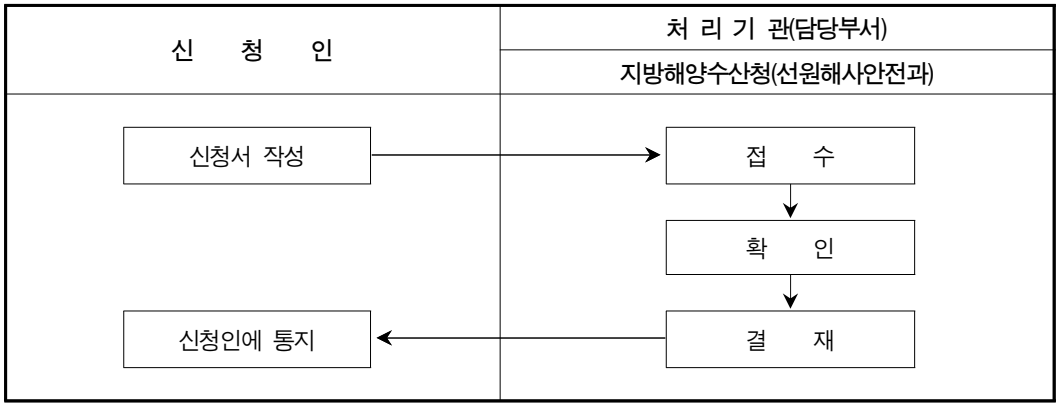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선원수첩
  2. 승선취업계약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한 적합여부

선원(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관리업의등록관리 요령 제7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처리기한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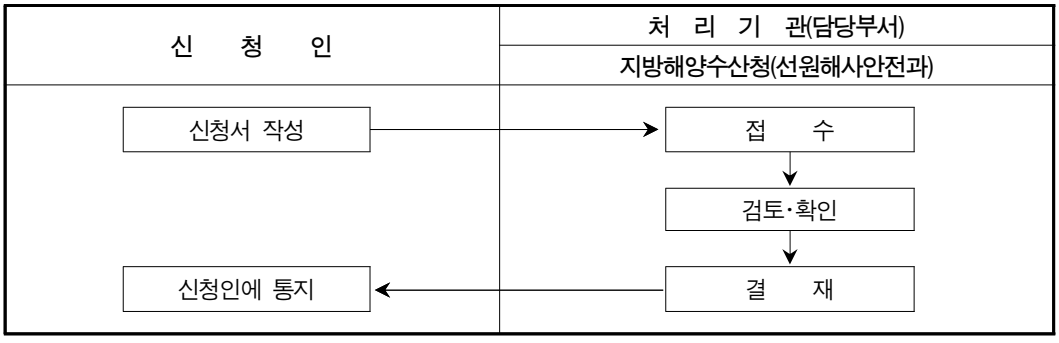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선박관리계약서 사본 및 그 번역문
  4. 선박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3,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관리업의등록요령 제7조에 의한 적합여부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 3.10.〉

선박관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 인	상 호 (명 칭)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본 적 (대표자)			
소 재 지				
자 본 금		원		
계 약 상대방	상 호 (명 칭)			
	성 명 (대표자)			
업 무 범 위				
사업개시예정일				

해운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선박관리업의등록관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수수료
수입인지 3천원

※ 첨부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선박관리계약서 사본 및 그 번역문. 각 1부(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
5. 선박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업체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4337-07711민
95.4.6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해기사국가시험 합격증명 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3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1)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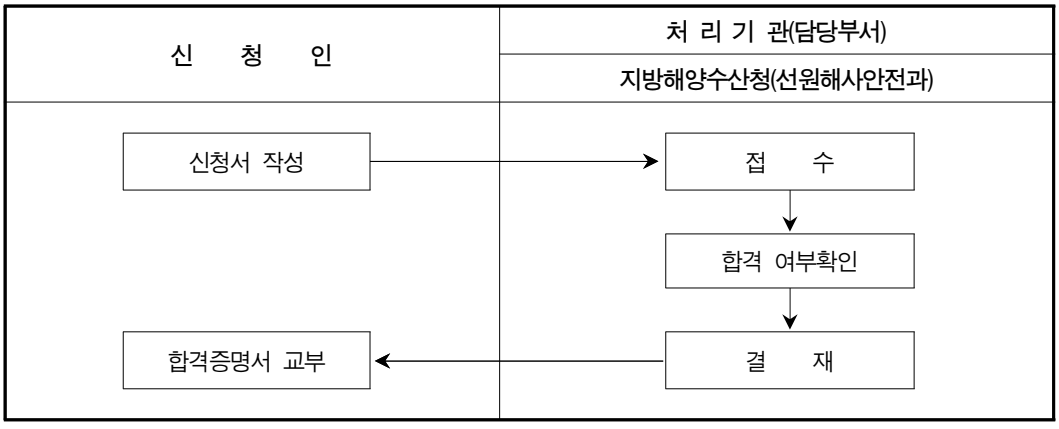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합격여부 확인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0.31〉

제 호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직종별등급		합격연월일	. . .
응 시 면 허	□상선 □어선		
시 험 결 과	필기시험(□면제·□합격), 면접시험(□면제·□합격)		
필 기 시 험 실 시 기 관 명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년도 회 해기사시험)		
용 도	□면접시험용 □면허신청용 □기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해기사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해기사면허증 갱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1)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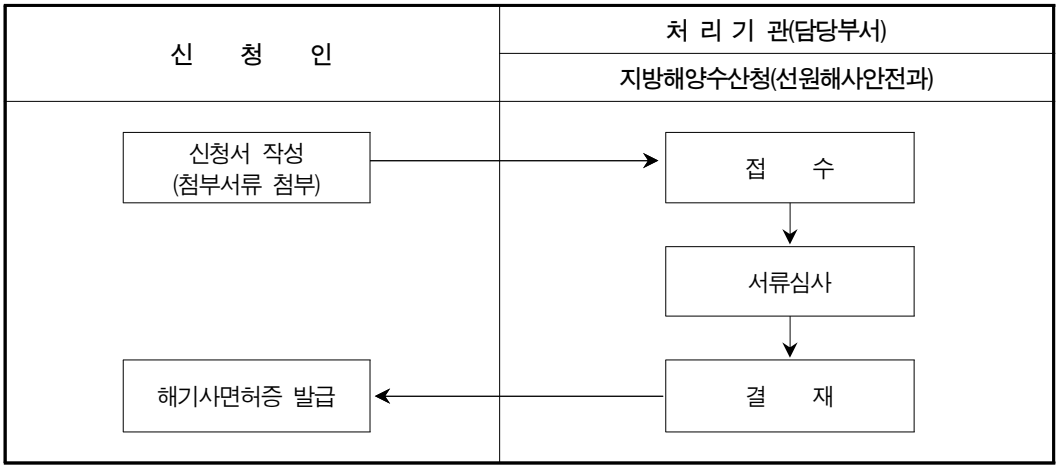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면허증(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승선경력증명서(전산상 조회 가능시 생략 가능합니다)
   -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4. 선원법 87조에 다른 건강진단서 1통(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것)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직원법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보유여부 또는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여부 확인
-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선원건강진단서 유효기간 및 시력, 색각 등 건강상태 적합여부 확인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5.16.〉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원수첩번호	□□□□□-□□□□□	국적	※ ( )
소지면허	번호	□□-□□-□□-□□□□	
	종류	※	
	한정선박	1. 한정 없음[ ] 2. 상선[ ] 3.어선[ ] 4. 특수용도 선박[ ] 5. 수상레저면허(요트[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 ]) 6. 수상레저면허(총톤수 55톤 미만 모터보트[ ],동력요트[ ]) 7. 항해선이 아닌 상선[ ] 8. 항해선이 아닌 어선[ ] 9. 수면비행선박면허(표면효과전용선[ ], 비사업용조종사[ ])	
	한정수역	1. 한정없음[ ] 2. 국내항[ ] 3. 기타[ ]	
※ 갱신면허	번호	□□-□□-□□-□□□□	
	발급일	년 월 일	
갱신요건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기간	( )년 ( )월	
	갱신교육일시	년 월 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면허증(선박에 승무 중인 자는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2.「선박직원법」 제7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4.「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1부. 다만,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5.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것)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 제13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3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1)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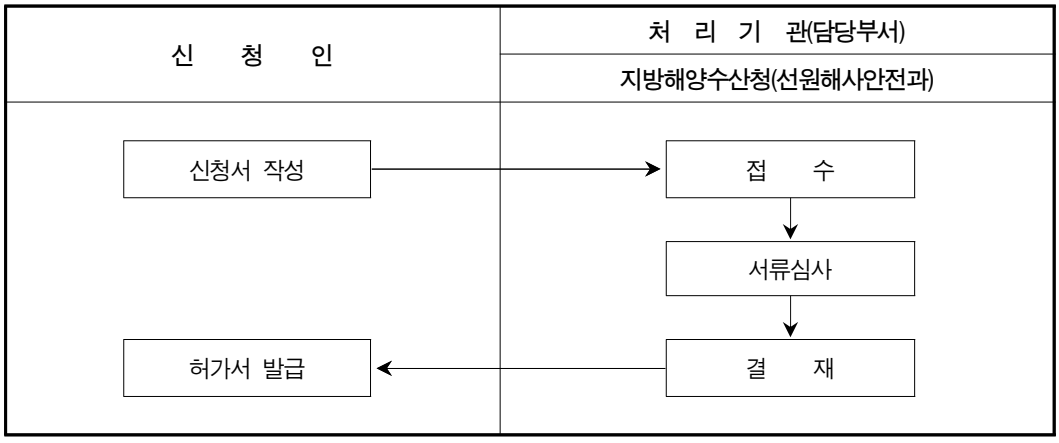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승무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증
  2. 승무경력증명서
  3. 완화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지 여부
-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지 여부
- 그 밖에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다고 판단 되는지 여부 확인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 1. 8.〉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선명	선박의 크기 (총톤수·주기관추진력)	항행구역	무선설비종류
	: G/T : KW		

외국선박	국적 : 선박소유자 :

완화신청 내용	해당직종의 직무별 법정자격(을)	허가받고자 하는 직무별자격(으로)

신청사유	

「선박직원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 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해기사교육기관 지정(변경)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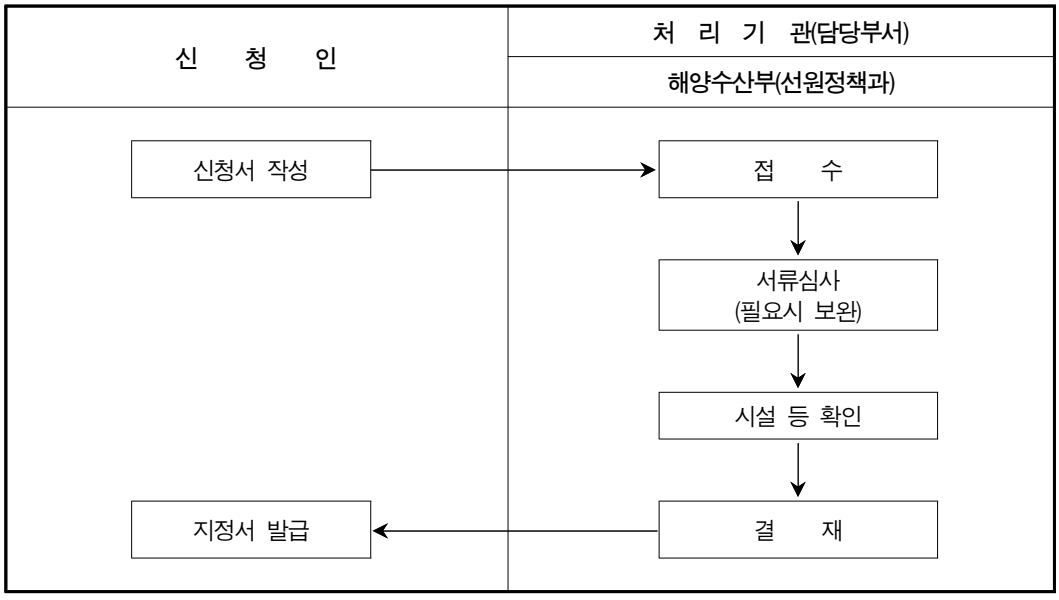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나. 교육시설, 실습선의 현황, 실습장비, 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다. 교직원의 인적 사항·자격·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라. 교육과정별 정원·입학자격·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마.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바.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가. 지정교육기관지정서
나.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당해 교육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
- 교육시설·실습선의 현황·실습장비·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 교직원의 인적사항·자격, 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 교육과정별 정원·입학자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 당해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 정관 등 검토 확인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3.24〉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교육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교육기관의 장	

교육과정	직 종	정 원	교육기간
			년 월(실습 월)
			년 월(실습 월)
			년 월(실습 월)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정정)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7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1)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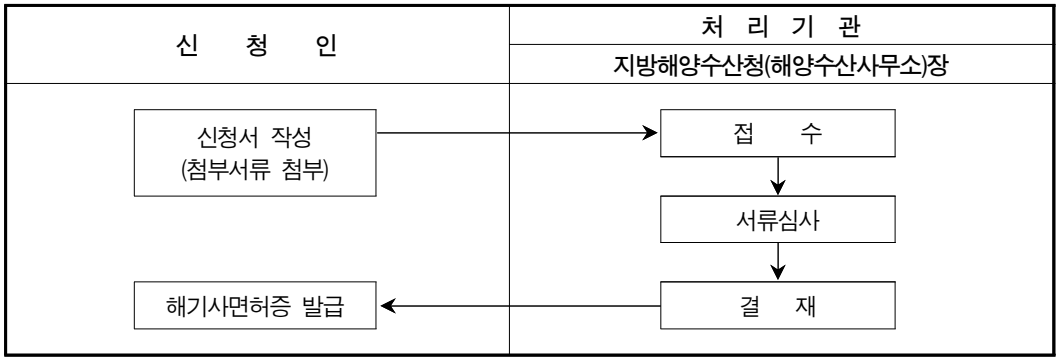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면허증
  2. 변경(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변경시는 주민등록등본, 영문변경시는 여권 등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자료 검토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 1. 8.〉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국적	※ ( )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선원수첩번호	□□□□□-□□□□□

변경(정정)항목		변경(정정)내용		※ 코드
		을(를)	(으)로	
인적사항	생년월일			
	성 명			
면허사항	종 류			
	번 호			
	발급기관			
	발 급 일			
	면 허 일			
기타사항				

「선박직원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증 2. 변경(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1.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을 영문으로 기재하시고, 내국인은 여권번호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 표시한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자동화선박의 종류별(변경) 인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시행규칙 제7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1)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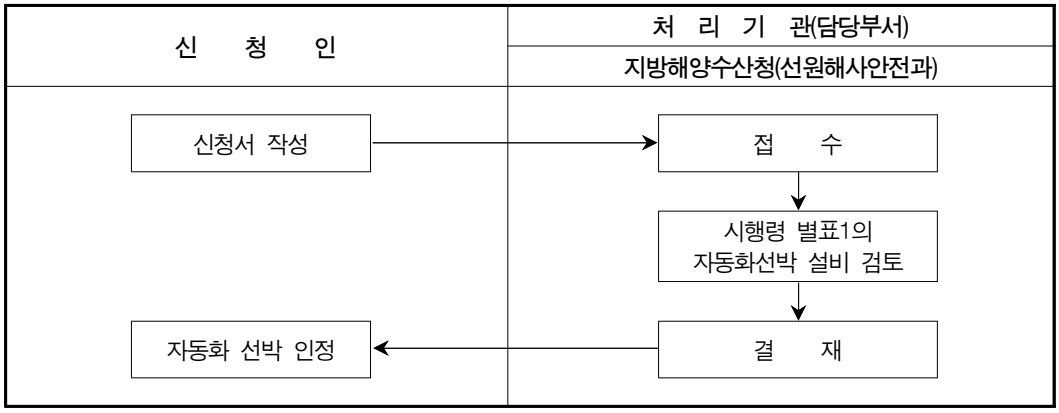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5천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자동화선박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선박의 설비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1의 자동화선박의 설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확인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 8〉

<table>
<tr><td colspan="4">자동화선박의 종류별인정(변경인정)신청서</td><td>처리기간
10 일</td></tr>
<tr><td rowspan="2">①신 청 인</td><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성명</td><td colspan="3"></td></tr>
<tr><td>②선 박 명</td><td colspan="2"></td><td>③선박번호</td><td></td></tr>
<tr><td>④선 적 항</td><td colspan="2"></td><td>⑤선 종</td><td></td></tr>
<tr><td>⑥항 행 구 역</td><td colspan="4"></td></tr>
<tr><td>⑦총 톤 수</td><td colspan="2"></td><td>⑧주기관출력
(KW)</td><td></td></tr>
<tr><td>⑨ 자 동 화 선 박 의 종 류</td><td colspan="4">제( )종 자동화선박</td></tr>
<tr><td>⑩자동운항설비내역
(세 부 내 역 별 첨)</td><td colspan="4"></td></tr>
</table>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동화선박으로 인정(변경인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table>
<tr><td>첨부서류</td><td>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td><td>수수료
5천원</td></tr>
</table>

53337-35411민
91.1.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1)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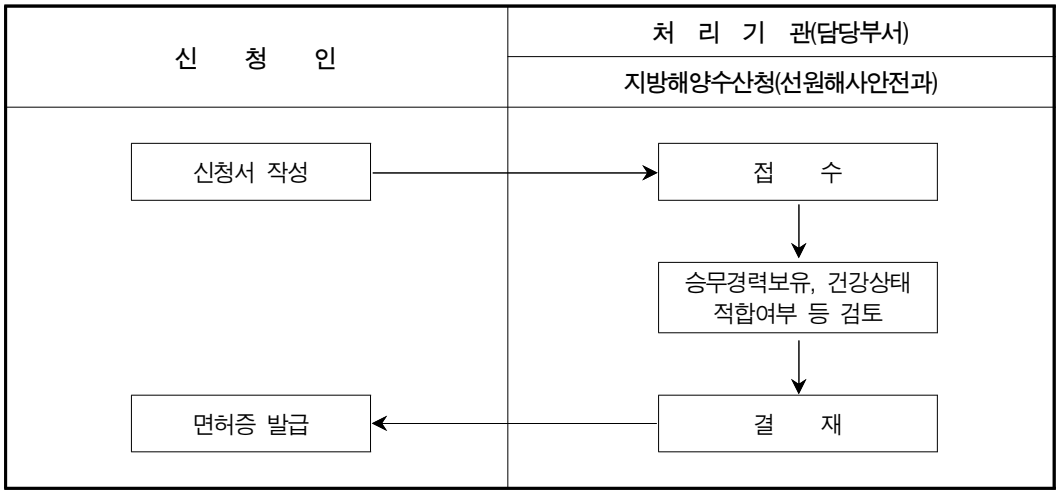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발급신청)

1.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1통(선박에 승무 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통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4. 영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지방해양수산청장이 그 승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것)
6.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증
7.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減隻)되거나 폐선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 응시하려는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 비고 및 제6호 비고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선원수첩으로 그 승무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구비서류(재교부)

1.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통(면허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것)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직원법시행령 제5조의2관련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승선한 선박, 직무, 기간) 적합여부 확인
-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선원건강진단서 유효기간 및 시력, 색각 등 건강상태 적합여부 확인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1. 8.〉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재발급은 1일)

신청인	성명(한글)		(영문)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선원수첩번호	□□□□□-□□□□□		국적	□ ( )	
최종학력	1.대졸 이상 2.전문대졸 3.고졸 4.중졸 5.기타		해기사 시험	직종별 등급	
지정교육기관 출신별	□□ 학교(원) 과(과정) ([ ]졸업 [ ]재학 [ ]수료)			구 분	( )년도( )회 [ ]정기 [ ]임시

소지면허	번 호	□□-□□-□□-□□□□ ( )
	한정선박	1. 한정 없음 2. 상선 3. 어선 4. 특수용도 선박 5. 수상레저면허([ ]요트,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
	한정수역	1. 한정 없음 2. 국내항 3. 기타

신청면허	시험기관	□□ ( )	합격일	년 월 일
	종 류	□□ ( )	응시번호	
	한정선박	1. 한정 없음 2. 상선 3. 어선 4. 특수용도 선박 5. [ ]요트,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		
	한정수역	1. 한정 없음 2. 국내항 3. 기타		

※발급면허	종 류	□□ ( )	발급일	년 월 일
	번 호			

발급사유	1. 신규 2. 갱신 3. 멸실 4. 훼손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 발급신청 〉** 1.「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1통(선박에 승무 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통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4. 영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지방해양수산청장이 그 승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것) 6.「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증 7.「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減隻)되거나 폐선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8.「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 응시하려는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 비고 및 제6호 비고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는 선원수첩으로 그 승무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없음
	〈 재발급신청 〉 1.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통(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것)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안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선박원부(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상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의 ( )에 여권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에는 영문으로 기재하십시오.
2. 재발급신청의 경우에는 소지면허, 신청면허, 발급면허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3.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가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명, 주소, 소지면허(번호, 한정선박), 신청면허(한정선박), 발급사유란만 기재하십시오.
4. "※" 표시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승무경력증명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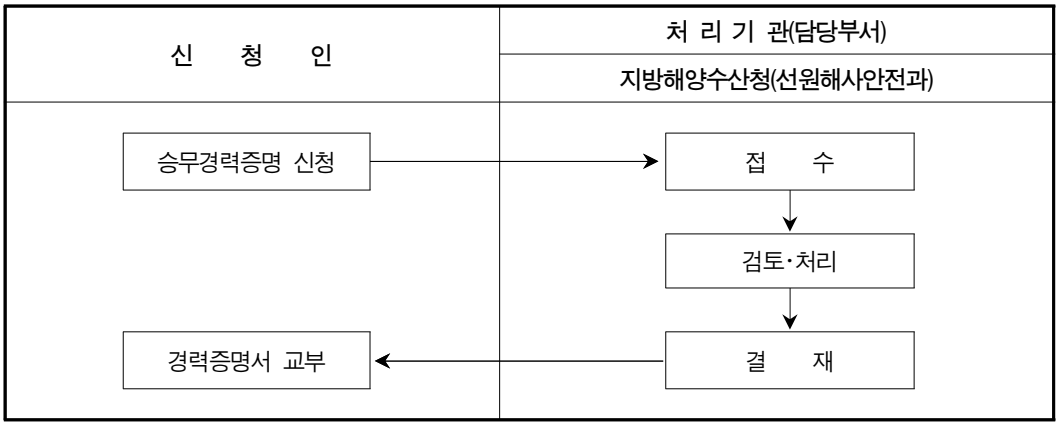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수수료 : 1,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을 통해 당사자 확인 후 승무경력증명서 교부

승무정원 완화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 제65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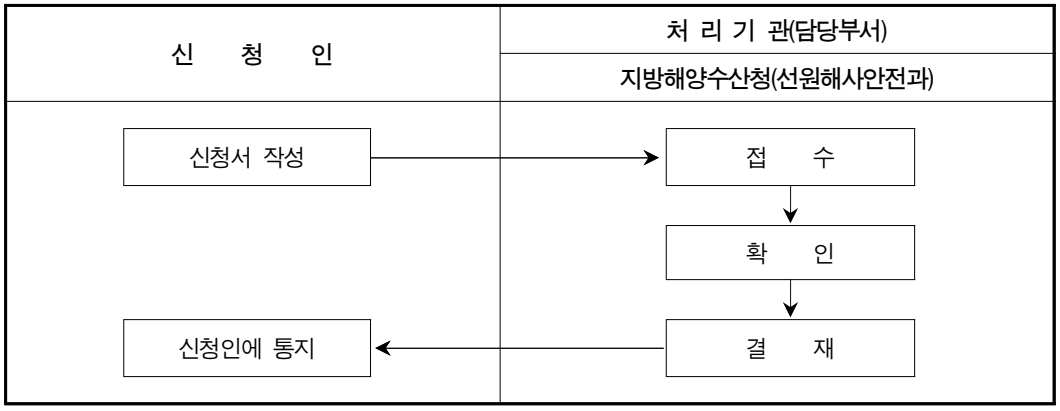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승무원명부
  2. 취업규칙 등 증빙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 제65조에 의한 적합여부

::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7. 7.19.〉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 일

신청인	①상호또는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성별)	
	④주소			

⑤선명	⑥선종	⑦선박의크기 (총톤수및KW)	⑧항행구역	⑨무선설비

⑩완화신청내용	자격별최소승무인원	허가받고자 하는 자격별승무인원
⑪신청사유		

「선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승무정원완화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선원명부 2. 취업규칙 등 증빙서류	없음

53337-35211민
91.1.31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승무원명부 훼손·멸실에 따른 공인(확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7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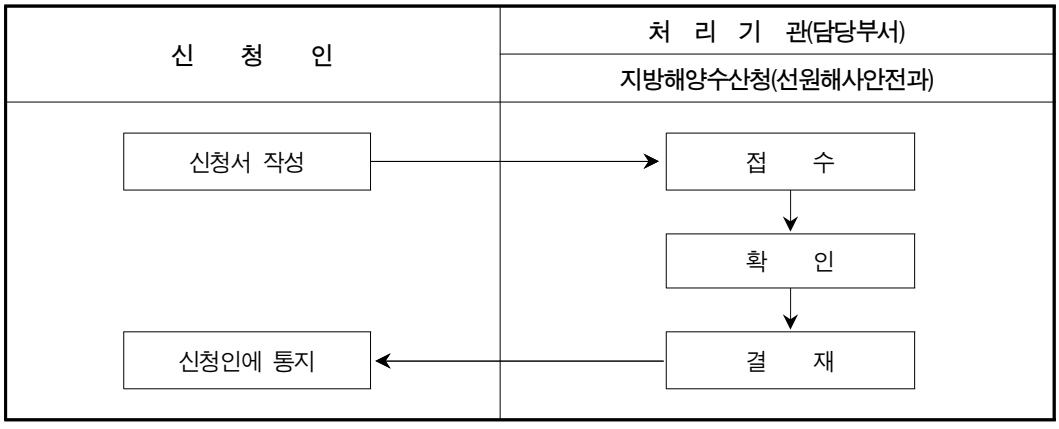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공인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나. 사유서
2. 공인확인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새로이 작성한 선원명부

나. 현재 승선사항이 기록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다. 사유서

- 수수료 : 1인당 1,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적합여부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19.〉

선원명부 □훼손 □멸실 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선주명칭		②대 표 자 성 명	
	③주 소			
④선 박 명			⑤선 박 번 호	
⑥선 종			⑦항 행 구 역	
⑧총 톤 수			⑨주기관출력(KW)	
⑩사 유				

승무원	⑪직책	⑫성명	⑬선원수첩 번호	⑭승선계약공인 일시 및 관청명	⑮승선기간
					-
					-
					-
					-
					-
					-
					-

「선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인(공인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또는 서명

(전화번호)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 첨부서류
1. 공인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나. 사유서
2. 공인확인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새로이 작성한 선원명부
 나. 현재 승선사항이 기록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다. 사유서

수수료
1인당 1천원

5305-97민(1)
85.9.17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선원수첩 기재사항 정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시행규칙 제38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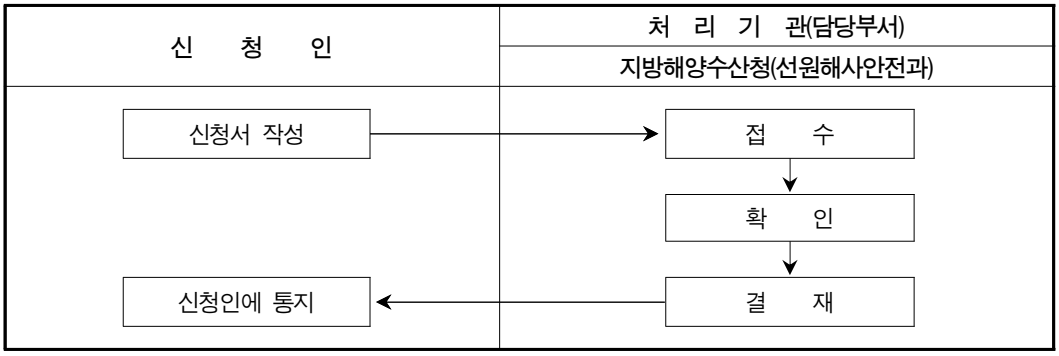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3. 증빙서류 1부
- 수수료 : 1인당 1,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적합여부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7.19.〉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			②정정구분 □ 1.신청 2.직권
③ 성 명	(한글) (영문)			
④ 해당승선일	년 월 일	⑤공인일	년 월 일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인적사항	⑥ 주민등록번호		
	⑦ 선원수첩번호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번호		
	⑧ 성명		
	⑨ 출생지		
	⑩ 기타		
승선사항	⑪ 승선일		
	⑫ 하선일		
	⑬ 공인일		
	⑭ 회사명		
	⑮ 선박명		
	⑯ 기타		
⑰ 기타사항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의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 또는 서명

전화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3. 증빙서류 1부

수수료
1인당 1천원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재해보상심사(조정) 청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 제104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3)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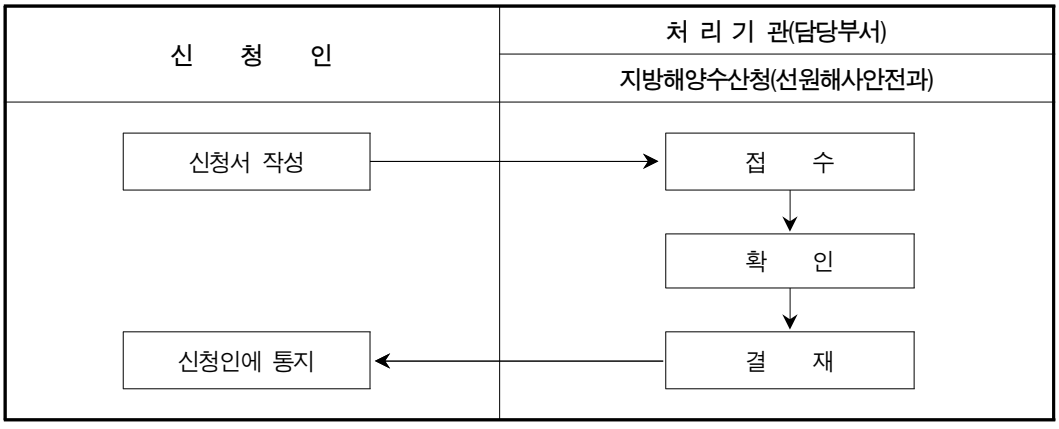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 제104조에 의한 적합여부

선원 수첩교부(재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시행령 제8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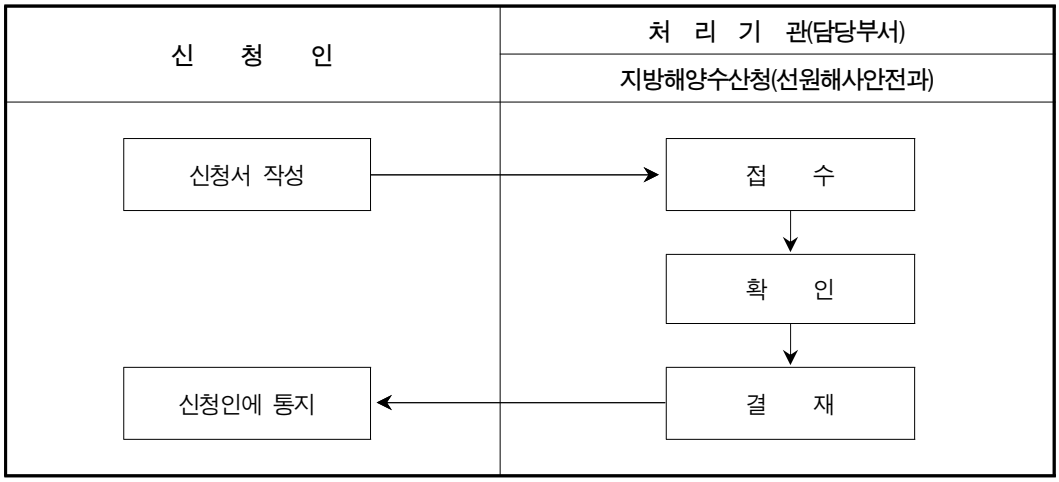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병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진 1매
3.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나. 자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은 서류

- 수수료 : 1인당 1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 제77조에 의한 적합여부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7.19.〉

선원수첩 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주의사항: 뒤쪽의 신청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선원수첩 명의인	성명	한글			
		한문			
		영문 (대문자)	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 )	국적	

선원수첩번호		선원수첩 발급일	
신원조사 회보일		신원조사 접수번호	
신원조사기관 통보일			

「선원법 시행령」 제8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 ) 해양수산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첨부 서류	1.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것으로 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권 사본 1통 나. 본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국정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본국영사를 포함합니다)로부터 승선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	1. 내국인(선원수첩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만 해당합니다)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인당 10,0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재		
담당	계장	과장

절취선

접수번호 | | 신원조사기관 통보서

천연색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정면 사진 · 모자와 색안경 착용 금지 · 가로 35㎜, 세로 45㎜ [얼굴길이 : 25㎜~35㎜]	성 명(한 글)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
	주 소		

210mm×297mm[백상지 150g/㎡(재활용품)]

(뒤쪽)

영수필증 붙이는 란	주민등록증 사본 붙이는 란
(정부수입인지 10,000원)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선원수첩 명의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착합니다)

위 임 장

본인은「선원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선원수첩 발급 및 선원수첩 수령 등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자택/휴대):)		

※ 본인 여부 대조를 위하여 선원수첩 발급 신청 및 선원수첩 수령 시 본인과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1. 굵은 선 안에만 흑색으로 쓰시되,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한자 및 영문 기재란 외의 모든 기재사항은 한글로 바르게 쓰시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성명의 영문란은 여권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인쇄체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4. 국적란은 선원수첩 명의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적과 영주권 부여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5. 선원수첩에 붙일 사진은 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번지, 통, 반(아파트 등의 경우 동, 호수)까지 자세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7. 신원조사기관 통보서와 선원수첩에 붙일 천연색 사진은 반드시 같아야 하고, 신원조사기관 통보서에 사진을 붙인 다음에는 그 통보서와 사진에 걸쳐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8. 주민등록증 사본 붙이는 란에는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붙이시기 바랍니다.
9. 신청서를 모두 쓰신 후 영수필증 붙이는 란에 정부수입인지를 떨어지지 않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서 하단의 신원조사기관 통보서를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선원수첩발급 서류의 보관 · 관리상 필요하니 이 신청서를 훼손하거나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원수첩 발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2.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징집 ·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4.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5.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람으로 통보된 사람

거짓 등에 의한 선원수첩 발급신청 금지

이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에 거짓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선원법」제174조제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선·승선 취소공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 제44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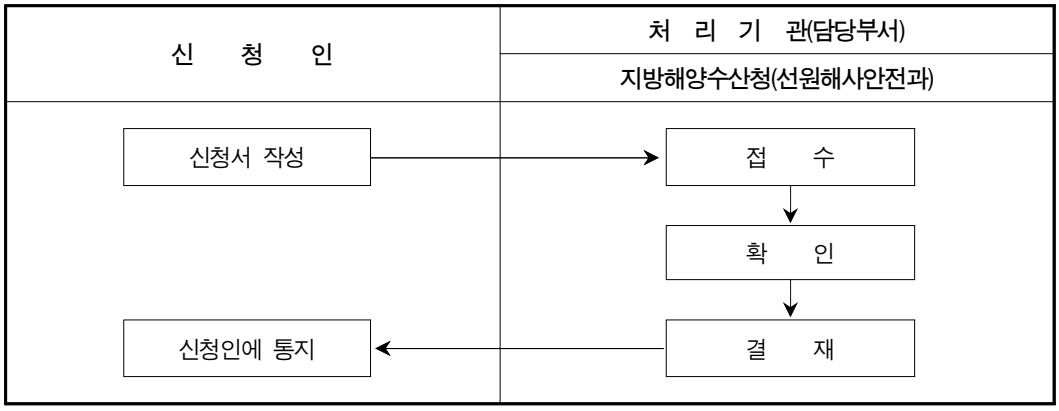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승무원명부 1부
  2.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적합여부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19.〉

□승선 □하선 □승선취소 **공인신청서** (계 □명)	처리기간 즉 시

①업체명		②선주국적	□□	
③선명		④선박국적	□□	
⑤운항형태	□ 1. 외항상선 2. 내항상선 3. 연근해어선 4. 원양어선 5. 해외취업상선 6. 해외취업어선			
⑥선박용도	□□□	⑦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⑧총톤수	G/T	⑨기관출력		kW
⑩항행구역	□ 1. 평수 2. 연해 3. 근해 4. 원양			
⑪승선일 또는 종료(취소)일		⑫공인일		

공통기재사항			승선공인				하선 또는 승선취소 공인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직무	⑯해기사 면허의 종류	⑰급여	⑱승선 기간	⑲구직등록 번호	⑳최종 승선일	㉑최종 공인일	㉒하선/승선 취소 사유	㉓하선/승선 취소 이후 고용계약	㉔ 비고

「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승선·하선·승선취소 공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지방해양수산청장
( )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 ) 대사(영사)관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승무원명부
3.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수수료
1인당 1천원

주의 사항

1. ⑥ "선박용도" 란은 다음에서 택하여 관련 코드를 명기하십시오.
○상선 110. 여객선 120. 화객선 210. 산물선 220. 양곡운반선 230. 원목운반선 240. 광석운반선 250. 석탄운반선 260. 시멘트운반선 270. 자동차운반선 280. 핫코일운반선 290. 철강재운반선 310. 모래운반선 320. 냉동·냉장선 330. 폐기물운반선 390. 일반화물선 410. 풀컨테이너선 420. 세미컨테이너선 510. 원유운반선 520. 석유제품운반선 530. 케미칼운반선 540. 케미칼가스운반선 550. LPG운반선 560. LNG운반선 590. 기타유조선 610. 견인용예선 620. 이접안용예선 630. 압항예선 690. 기타 예선 810. 관공선 820. 경찰정 830. 군함 930. 급유선 940. 급수선 950. 통선(용달선) 960. 준설선 970. 유람선 980. 도선 990. 기타상선
○어선 031. 선망 032. 저인망 033. 트롤 034. 연승 035. 유자망 036. 채낚기 037. 봉수망 038. 안강망 039. 통발 040. 기타어선
2. ㉔ "비고" 란은 하선공인신청시 "예비원" 인 경우에만 "예비원" 으로 명기하십시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승선공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원법 제44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연락처 : 044-200-574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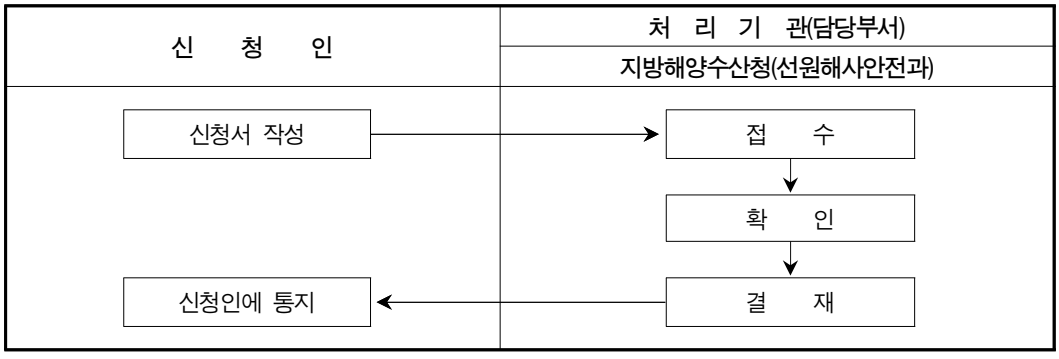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승무원명부
3.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1부

- 수수료 : 1인당 1,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원법 제44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적합여부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19.〉

□승선 □하선 공인신청서 (계 □명) □승선취소	처리기간 즉 시

①업체명		②선주국적	□□	
③선명		④선박국적	□□	
⑤운항형태	□ 1. 외항상선 2. 내항상선 3. 연근해어선 4. 원양어선 5. 해외취업상선 6. 해외취업어선			
⑥선박용도	□ □ □	⑦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⑧총톤수	G/T	⑨기관출력		kW
⑩항행구역	□ 1. 평수 2. 연해 3. 근해 4. 원양			
⑪승선일 또는 종료(취소)일		⑫공인일		

공통기재사항			승선공인				하선 또는 승선취소 공인				
⑬성명	⑭주민등록 번호	⑮직무	⑯해기사 면허의 종류	⑰급여	⑱승선 기간	⑲구직등록 번호	⑳최종 승선일	㉑최종 공인일	㉒하선/ 승선 취소 사유	㉓하선/ 승선 취소 이후 고용 계약	㉔ 비고

「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승선·하선·승선취소 공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지방해양수산청장

(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귀하

해양수산사무소장

( )대사(영사)관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서 1통
2. 승무원명부
3.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수수료
1인당 1천원

주의 사항

1. ⑥ "선박용도" 란은 다음에서 택하여 관련 코드를 명기하십시오.
○상선 110, 여객선 120, 화객선 210, 산물선 220, 양곡운반선 230, 원목운반선 240, 광석운반선 250, 석탄운반선 260, 시멘트운반선 270, 자동차운반선 280, 핫코일운반선 290, 철강재운반선 310, 모래운반선 320, 냉동·냉장선 330, 폐기물운반선 390, 일반화물선 410, 풀컨테이너선 420, 세미컨테이너선 510, 원유운반선 520, 석유제품운반선 530, 케미칼운반선 540, 케미칼가스운반선 550, LPG운반선 560, LNG운반선 590, 기타유조선 610, 견인용예선 620, 이접안용예선 630, 압항예선 690, 기타 예선 810, 관공선 820, 경찰정 830, 군함 930, 급유선 940, 급수선 950, 통선(용달선) 960, 준설선 970, 유람선 980, 도선 990, 기타상선
○어선 031, 선망 032, 저인망 033, 트롤 034, 연승 035, 유자망 036, 채낚기 037, 봉수망 038, 안강망 039, 통발 040, 기타어선
2. ㉔ "비고" 란은 하선공인신청시 "예비원" 인 경우에만 "예비원" 으로 명기하십시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내항선 입출항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입출항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3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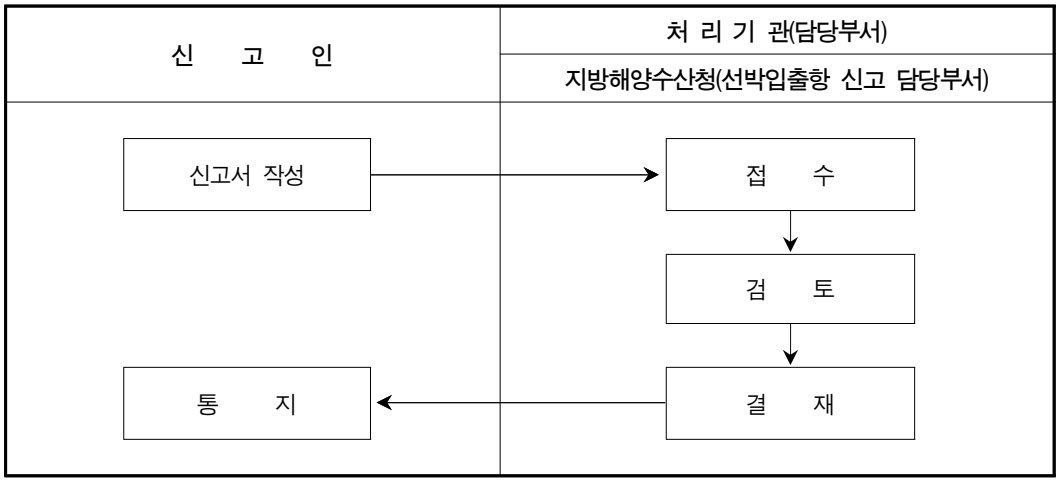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입출항 신고서 작성내용의 적정성 여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항만운영정보시스템(www.port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항선 출입 신고서

[ ]입항 [ ]출항 / [ ]최초 [ ]변경 [ ]최종 [ ]취소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1. 선박 제원 - 선박명: - 선박국적: - 호출부호: - 총톤수: - 선박의 용도:	2. 입항 - 입항일시: 년 월 일 시 분 - 최초출항지: - 전 출항지: - 입항목적: - 차항지: - 출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 전 출항지 출항일시: 년 월 일 시 분 - 해당연도 입항횟수: -
3. 출항 - 출항일시: 년 월 일 시 분 - 차항지: - - 최종목적지: - - 목적지 입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4. 선장성명 (수첩번호:) 5. 선사/대리점 업체명 6. 선박계선장소 7. 항해구분
8. 화물명세 - 적재화물의 종류: - 적재화물 톤수: - 양하 · 적하 톤수: - 위험물 톤수:	
9. 승무원 수 - 해기사 - 보통선원	10. 승객 수 - 한국인: - 국내항 간 편승 승객 수: - 외국인: - 국내항 간 상륙 승객 수:
11. 승무원 / 승객 변동유무 [ ]있음 [ ]없음 - 한국승무원: 승선 명 / 하선 명 전선(轉船) 명 / 낙오 명 - 이 항구에서 승선하여 출국한 승무원의 수: 명 - 이 항구에서 하선하여 입국한 승무원의 수: 명 - 이 항구에서 전입한 승무원의 수: 명 - 이 항구에서 전선한 승무원의 수: 명 - 이 항구에서 승선한 승객의 수: 명 - 이 항구에서 하선한 승객의 수: 명	1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13. 수속장소 [ ]항구명 [ ]내항 [ ]외항 14. C.I.Q. 수속일시 15. 항만시설 사용료 할인율 및 사유 - 할인율 코드[ ] · 할인 사유[ ] 16. 예선 사용 및 도선 신청 유무 (있음 Y, 없음 N) - [ ] 예선 - [ ] 도선
17. 기타 - 부선 호출부호 1: - 부선 호출부호 2: - 모래 채취 장소: - 국적취득나용선 여부 [ ]그렇다 [ ]아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또는 항만공사 사장 귀하

작성방법

1.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입항 · 출항 24시간 전에는 "최초"란에, 입항 · 출항 확정 시에는 "최종"란에, 변경 시에는 "변경" 란에, 취소 시에는 "취소"란에 각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시 · 도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시 · 도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시 · 도 또는 항만공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외항선 입출항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입출항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3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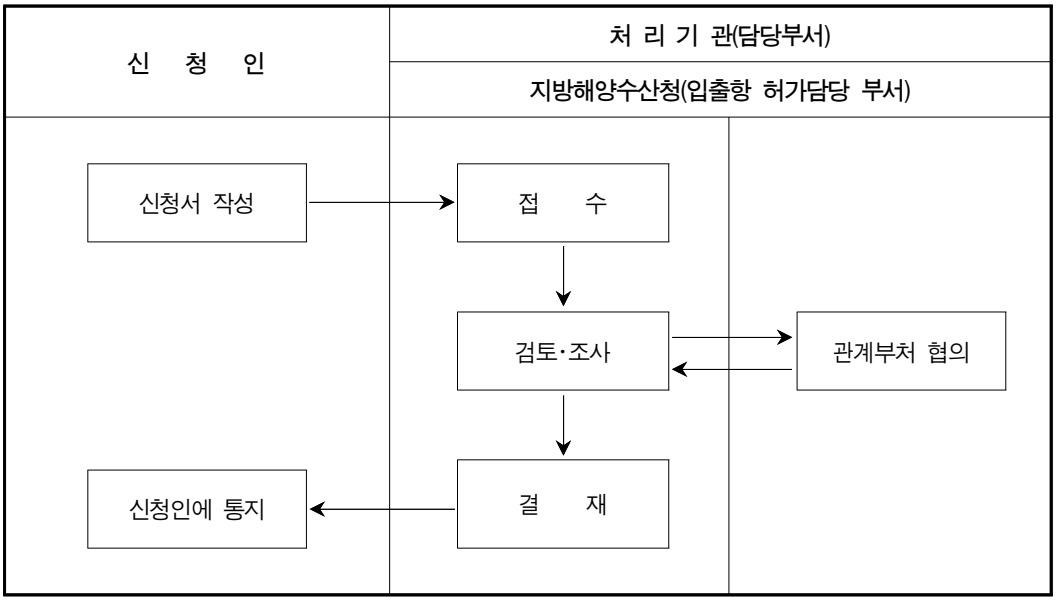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서면 제출시 입·출항시마다 다음 표에 의한 부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지방해양수산청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입·출항신고(허가신청)서	1	1	1	1
승무원명부	1	1	1	1
승객명부	1	1	1	1
선용품목록		1		
승무원휴대품목록		1		

※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는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는 입·출항 허가신청시에만 제출합니다.

2. 「선용품목록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 확인하여 받습니다.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가안전에 위해가 없는 지 보안성 검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9.21.〉

항만운영정보시스템(www.port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항선 출입 신고서

[ ]신고 Declaration [ ]허가 Permission / [ ]입항 Arrival [ ]출항 Departure

[ ]최초 Notic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출번호(적하목록 No.: MRN)

1.선박 제원 name and description of ship
- 선박명 Name of Ship:
- 선박국적 Nationality of Ship:
- 호출부호 Call sign:
- 선박번호 Official No.:
- IMO번호 IMO No.:
- 국제총톤수 International Gross Tonnage:
- 선박 종류 Kind of Ship:

2. 입항/출항 일시(Date-time of arrival/departure)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

3. 최초출항지/ 최종목적지
Port of Provenance / Final Port of Destination

4. 선사 또는 대리점의 이름, 부호, 주소
Name, Code and Address of Owner (Operator) or Agent of Ship

5. 선박계선장소[선석, 장소] Position of the ship (Berth or Station)

6. 항해기록 Brief Particulars of Voyage
- 전 출항지 및 출항일시 Time, Date of Departure from last Port: /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
- 경유지 Stopovers: / / / /
- 경유지 출항일 Date of Departure of Stopovers: - - / - - / - - / - - / - - / yyyy/mm/dd
- 출항예정일시 Estimated Date and Time of Departure: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
- 차항지 Next port of Cal:

7. 화물명세 Brief Description of Cargo
- 화물명 Name of Cargo(Unit: ton):
- 적재 톤수 Total Cargo:
- 양하 · 적하 톤수 Load/Unload Cargo:
- 위험물 톤수 Dangerous Cargo:
- 환적(換積) 톤수 Transshipment Cargo:

8. 승무원 수 Number of Crew
- 전체 Total: 명
- 한국인 Korean: 명
- 외국인 Foreigner: 명

9. 승객 수 Number of Passenger
- 전체 Total: 명 (6세 이상: 명)
- 한국인 Korean: 명 (6세 이상: 명)
- 외국인 Foreigner: 명 (6세 이상: 명)

※ 국내항 간 편승/상륙
Coastal Travellers / Alien permitted landing while the ship is In Korea: / 명

10. 입항목적 Purpose of Arrival

11. 항해 구분 Classification of Voyage

12. 검역 구분 Type of Quarantine

13. 해당 연도 입항횟수 Number of arrival this year

14. 항만시설 사용료 할인율 및 할인 사유 Rate & Basis for Port Charge
할인율 Rate: [ ] 할인 사유 Basis: [ ]

15. 예선 사용 및 도선 신청 여부 Any Request of Tug Boat & Pilot [ ]예선 Tug Boat
[ ]도선 Pilot

16. C.I.Q. 수속 장소 및 일시 Date/Place of C.I.Q. Processing

17. 승무원 및 승객의 변동 유무 Any Change in Passenger or Crew? [ ] (Yes/ No)
○ 외지에서의 한국승무원 변동사항 Change of Korean crew in foreign ports
- 승선 Embarked: 명 전선 Transference: 명
- 하선 Disembarked: 명 낙오 Quit or missed ship: 명

○ 이 항구에서 승선 · 하선한 승무원 / 승객 Number of Crew or Passenger Embarked / Disembarked at this port
- 승무원 Crew
  · 승선 출국 Embarked: 명 · 하선 입국 Disembarked: 명
  · 전입 Embarkation for ship to ship movement: 명
  · 전선 Disembarkation for ship to ship movement: 명
- 승객 Passenger
  · 승선 Embarked: 명 · 하선 Disembarked: 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18. 비고 Remarks

○ 사회안전위해물품 소지 여부 (Yes/No)
Are there any articles on board deemed hazardous to public safety?
- 마약류 Illicit drugs [ ] · 총기 및 도검류 Arms [ ]

○ 승무원의 면세품 소지 여부 [ ] (Yes/No)
Any crew having duty free items?

○ 면세 선용품 적재 여부 [ ] (Yes/No)
Any duty free supplies for ship?

○ 외지 선용품 구입/외지 수리 여부 [ ] (Yes/No)
Any ship's supplies purchased or repair from outside of Korea?

○ 승무원 복수항 상륙 허가자 또는 복수 승무원 상륙 허가자 승선 여부 [ ] (Yes/No)
Any crew members with landing permission during ship's staying in Korea or with multiple landing permit?

○ 검역전염병 등 환자/사망자 발생 여부 [ ] (Yes/No)
Any infectious diseases or deaths on board?

○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여부 [ ] (Yes/No)
Is this ship a type of a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위한 보장계약 체결 여부 [ ] (Yes/No)
Any insurance of other financial security to cover the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 유효한 보장계약증명서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 여부 [ ] (Yes/No)
CLC Certificate or Bunker Convention Certificate on board?

○ 유조선의 이중선체 여부 [ ] (Yes/No)
Is tanker a double hull type?

○ 북한으로 반입되는 화물 또는 북한으로부터 반출되는 화물 적재 여부 [ ] (Yes/No)
Loading of cargoes originating from or destined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최근 1년 이내에 북한기항 여부 [ ] (Yes/No), 기항한 경우 기항한 북한 항만명 [ ]
Is this ship called a 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in 1 year from now? In case what name of the port is?

○ 부선 호출부호 [ ]
Call sign of Ship towed or Barge with no power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yyyy) 월(mm) 일(dd)

신고자[선장(기장) 또는 해운대리점]
the Master or authorized age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또는 항만공사 사장 귀하

TO. **Administrator of _____ Regional Oceans & Fisheries Office**

(The Provincial Governor or Mayor, President of Port Authority)

첨부서류 Supplementary Documents	1. 승무원 명부 Crew List [ ] 2. 승객 명부 Passenger List [ ] 3. 선용품 목록 Ship's Stores List [ ] 4. 승무원 휴대품 목록 Crew's Effects List [ ]	수수료 없음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입항 · 출항 24시간 전에는 "최초"란에, 입항 · 출항을 확정할 때에는 "최종"란에, 변경할 때에는 "변경"란에, 취소할 때에는 "취소"란에 각각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박계선장소(선석, 장소)"란에는 선박의 접안 또는 계선 장소를 적습니다.

○ "경유지" 및 "경유지 출항일"에는 모든 경유지를 대상으로 최초 출항지로부터 경유한 역순으로 적습니다.

○ "화물명"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에 따른 통일체계품목분류표(HS 코드) 중 대표화물 두 자리 코드를 적고, 총 적재화물 중 양하 · 적하/위험물/환적에 해당하는 톤수를 적습니다.

○ "※ 국내항 간 편승/상륙"에는 국내항 간의 승선 허가자와 입국허가를 받은 동승 출항 예정 외국인의 수를 적습니다.

○ "입항목적"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1. 양하 · 적하 2. 양하 3. 적하 4. 선박수리 5. 해양사고 6. 승무원 교대 7. 여객 상륙 8. 급유 9. 선용품 적재 99. 기타

○ "항해구분"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선박만 코드를 적습니다.

1. 외국 국적 내항선 2. 일시 외항 3. 내항 · 외항 자격 변경 4. 나포선박 5. 개인항해 6. 신조선(新造船)
7. 수출선박 8. 선박명 변경 9. 폐선 예정 10. 남북한 출입 11. 실습선 또는 관공선(官公船) 12. 원양조업선

○ "검역구분"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1. 승선검역 2. 무전검역 3. 특별검역 4. 검역면제 5. 검역완료

○ "항만시설사용료 할인율 및 사유"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할인: 1. 10% 2. 15% 3. 50% 4. 80% 5. 100%
- 사유: 1. 군함 2. 관공선(官公船) 3. 수리 4. 해양사고 5. 투자비 보전 6. 기타

○ "수속 장소 및 일시"란에는 입항 · 출항하기 전에 세관 · 출입국관리 · 검역(C.I.Q.) 기관의 수속을 받으려는 예정 장소 및 일시를 적습니다.

1. 항구명 2. 내항 3. 외항

○ "이 항구에서 승선 · 하선한 승무원/승객"란에는 입항의 경우에는 승선 · 하선 예정 인원수를, 출항의 경우에는 승선 · 하선 인원수를 각각 적습니다.

○ 첨부서류 중 "선용품 목록" 및 "승무원 휴대품 목록"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확인하여 받습니다.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항 · 출항할 때마다 다음 표에 따른 부수의 서면을 제출합니다.

Copies of submit (every time of arrival or departure respectively)

※ 원양어선인 경우에는 승무원 명부 및 승객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시 · 도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시 · 도 또는 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시 · 도 또는 항만공사

선박수리의 허가 등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입출항법 제37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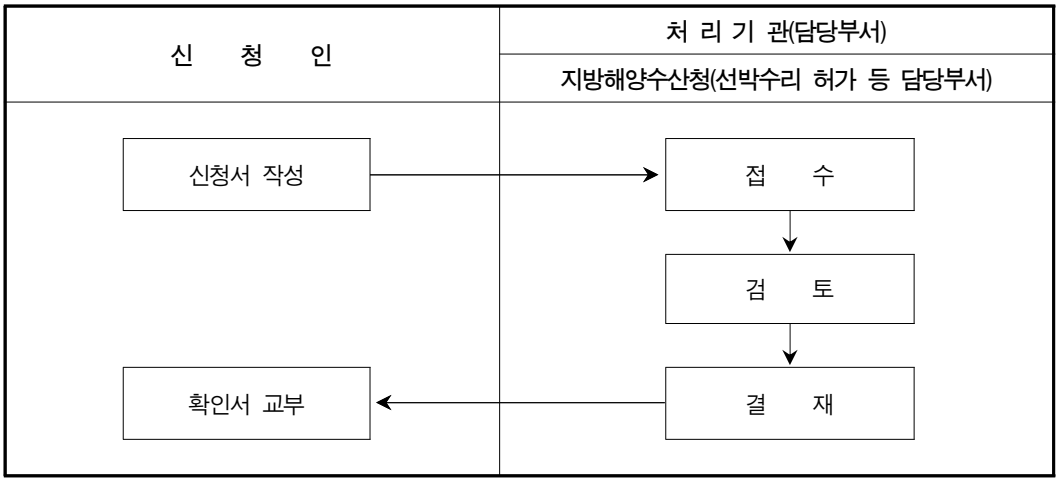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작성된 선박수리신고 내용의 안전성 및 필요성 여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www.port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수리 [ ] 허가신청서 · [ ]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번호	처리기간	허가는 1일 신고는 즉시

신청인	업체명(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신청내용	선박의 소유자(용선주)	
	선박 종류 · 선명 · 톤수 및 호출부호	
	수리 범위	
	수리 방법	
	수리 기간	
	수리 장소	
	화물 적재 여부	
	허가(신고) 조건	
	비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신청합니다(선박수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합니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수리 대상 선박의 선원이 작업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 · 허가 확인 날인	→ 발 급
신고인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제 호

선박수리 [ ] 허가 [ ] 신고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신고를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계내 위험물반입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입출항법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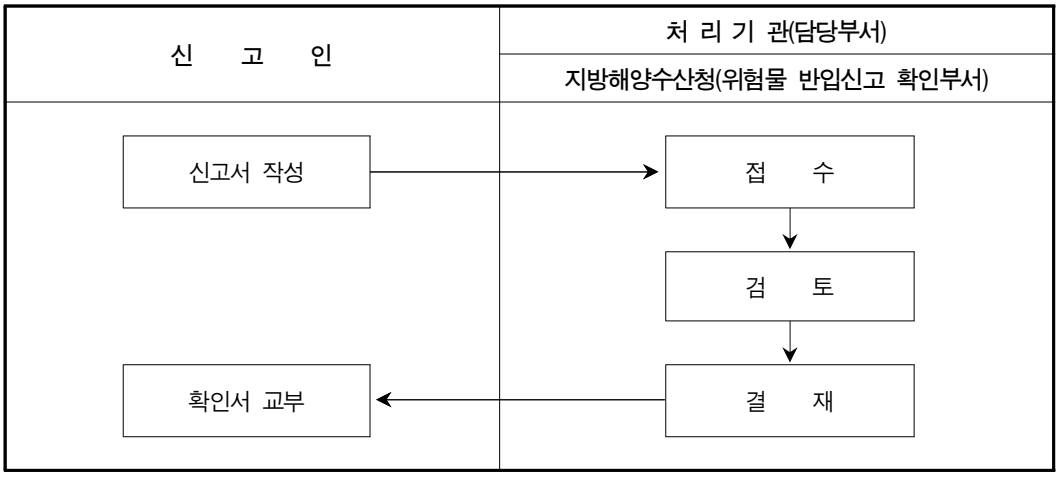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위험물 일람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내용의 적정성 여부
- 선박입출항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반입제한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4.1〉

위험물 반입신고(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 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자		발급 일자		처리 기간	즉시

반입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업체코드
	업체주소	전화번호

선박	선명	호출부호
	선박 종류	총톤수(G/T)
	해당연도-입항횟수 _____-_____	전 출항지 코드

반입 사항	품명 외	총중량(M/T)	컨테이너수량(TEU)
	구분	[ ]해상 반입 [ ]육상 반입	작업횟수[ ]
	운송형태	[ ]컨테이너위험물 [ ]산적액체위험물 [ ]벌크 포장위험물	[ ]기타
	목적	[ ]양하 [ ]적하 [ ]환적	[ ]기타

하역 사항	업체명	업체코드
	하역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하역장소 코드
	하역방법 및 특이사항	

「선박입출항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 일람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제 호

위험물 반입신고 확인증

「선박입출항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의 계선신고 등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입출항법 제7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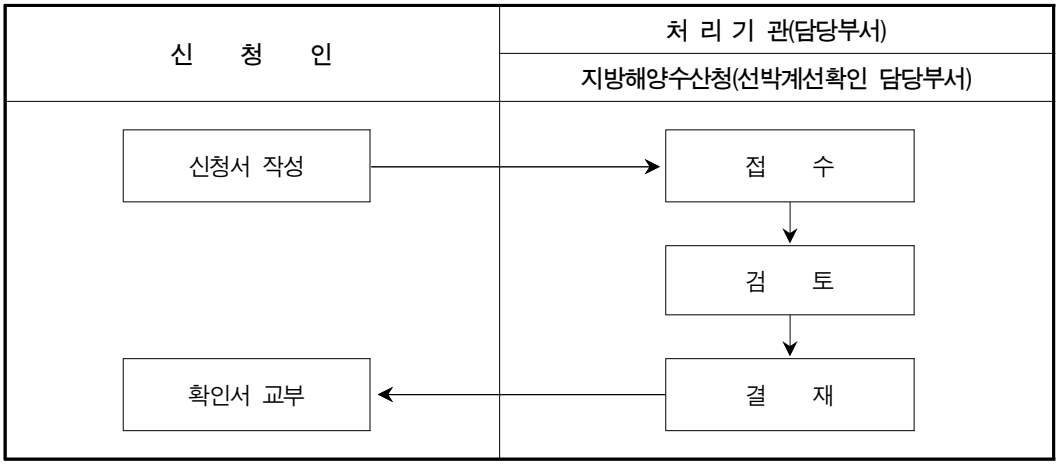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계선목적의 타당성 여부
- 계선장소 안전성 여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선박계선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선박	IMO번호(또는 호출부호)	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 -
	선명	총톤수 G/T
선주 또는 해운 대리점	업체명	업체코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체 주소	전화번호
입항 · 출항	입항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	장소 코드	장소명
	기간	년 월 일 시 분
	사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선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 확인 날인	발 급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제 호

선박계선 신고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선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입출항법 제42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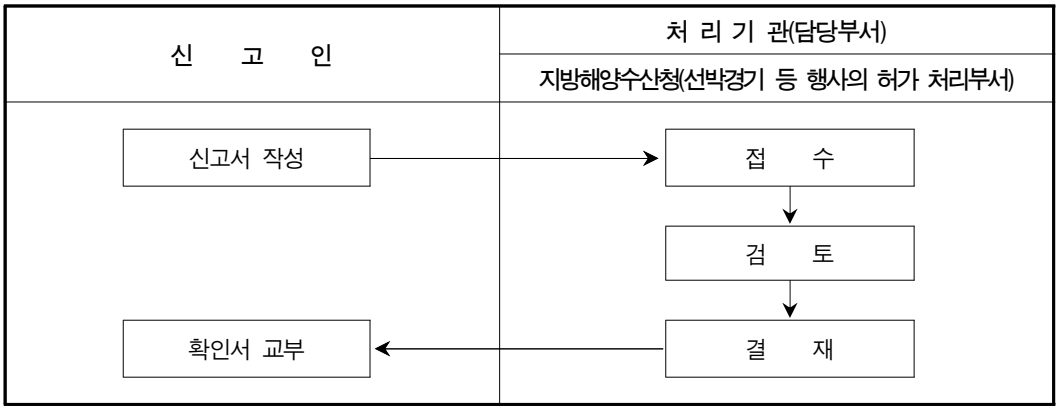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행사 목적의 타당성 여부
- 행사장소 및 행사내용으로 인한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
- 행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행사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행사의 종류		
	목적		
	방법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구역		
	장소		
	비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의 행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행사계획서(위치도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허가 확인 날인	발 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제 호

행사 허가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사 등의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입출항법 제41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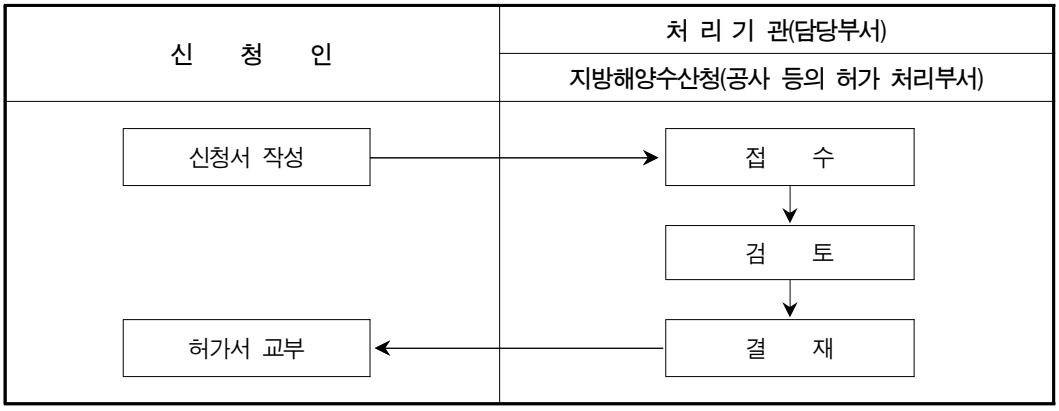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사 또는 작업 목적의 타당성 여부
- 공사(작업) 장소 및 공사(작업)로 인한 선박통항의 안전성 여부
- 공사(작업)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 작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허가번호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업체명(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업체코드
	주소	

선박	IMO번호(또는 호출부호)	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선명	총톤수(G/T)

공사 · 작업	종류
	내용
	방법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장소

허가조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를 포함합니다) 2.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1천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 확인 날인	→ 발 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제 호

공사 · 작업 허가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입출항법 제39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6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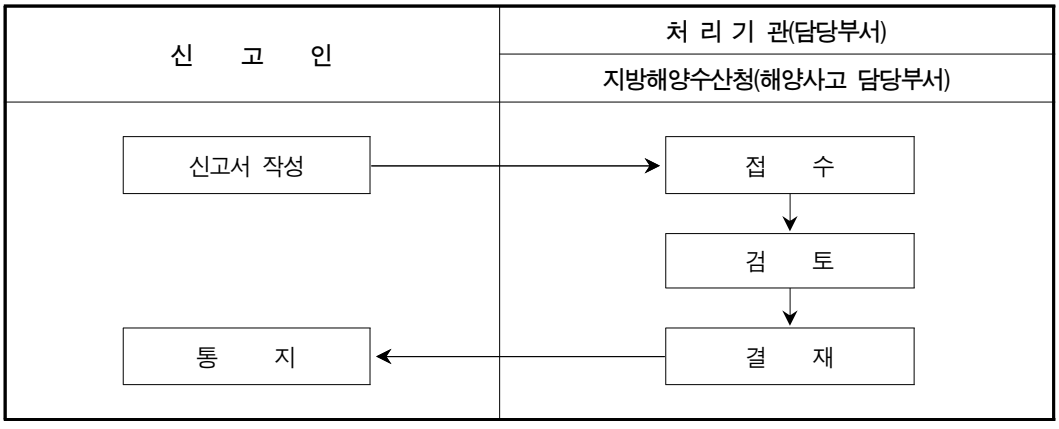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표지설치 등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의 긴급성 여부
- 조난선의 위험예방조치 불가사유 적정성 여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 예방조치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일

요청인	성명(또는 업체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요청내용	선명	
	해양사고 종류	
	위치	
	설치 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설치내용	실제 설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설치금액(사용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등의 설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회신문	통 지
요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유물에 대한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입출항법 제43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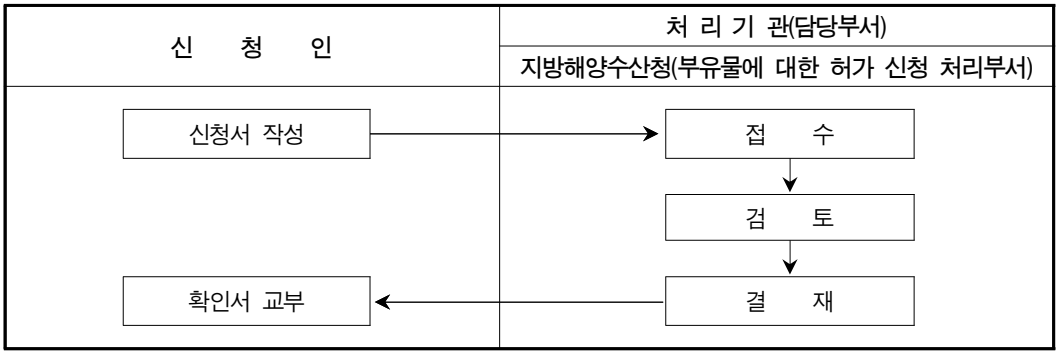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죽재·목재·원목 등 부유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타당성 여부
- 부유시키고자 하는 장소의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
- 부유물체로 인한 해양환경 유해성 및 검역 안전성 여부
- 부유물체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여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www.port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유 등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화물의 종류	
	수량	
	목적	
	방법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장소 및 구간	
	허가조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유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허가 확인 날인	발 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제 호

부유 등 허가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80)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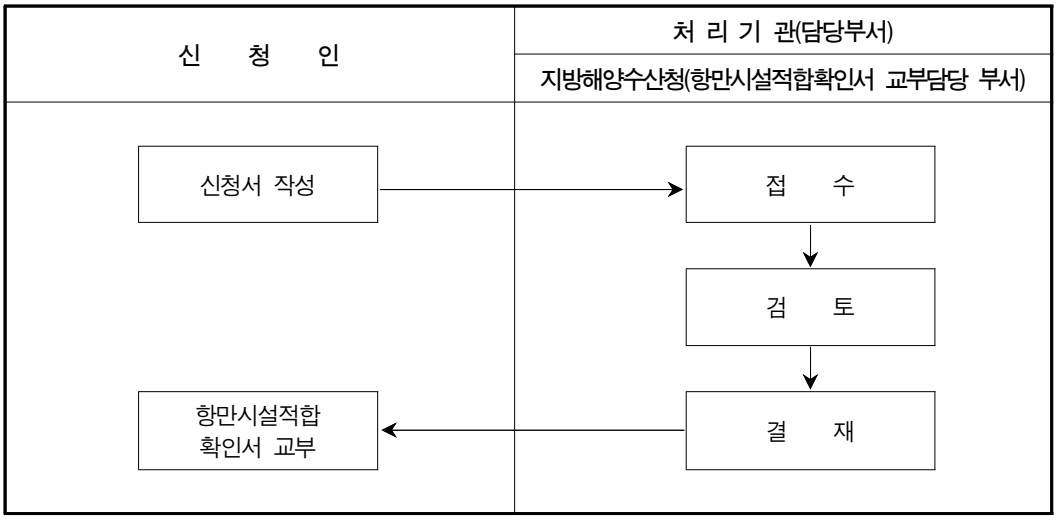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
  2.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천재지변 또는 보안사건 발생 등 중요한 보안 상황의 변경으로 갱신보안심사 기간 중에 갱신보안심사를 받을 수 없는 지 사실 여부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table>
<tr><td colspan="5">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td><td>처리기간
2일</td></tr>
<tr><td rowspan="3">항만
시설
소유자</td><td>① 사업장명</td><td></td><td>② 대표자 성명</td><td colspan="2"></td></tr>
<tr><td>③ 주 소</td><td colspan="4"></td></tr>
<tr><td>④ 전화번호</td><td></td><td>⑤ 팩 스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3">⑥ 연 장 받 으 려 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td><td>확 인 서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확인서 발행일자</td><td colspan="3"></td></tr>
<tr><td>유 효 기 간</td><td colspan="3">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2">⑦ 연 장 신 청 기 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2">⑧ 연 장 사 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80)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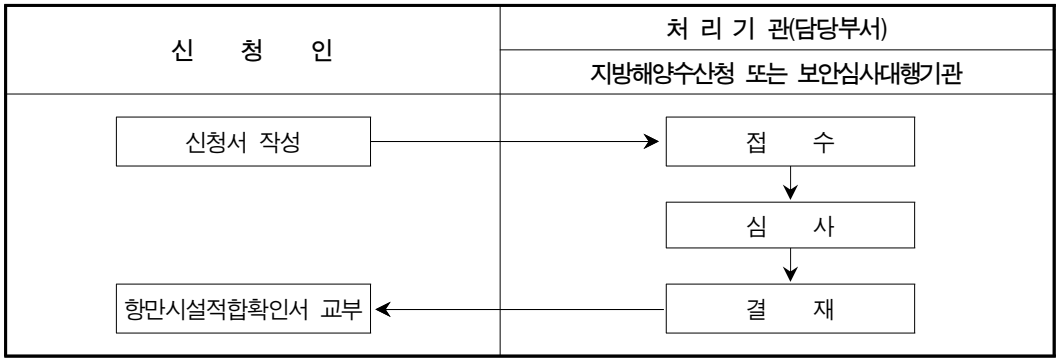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수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여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활동의 기록 여부 및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계와 보안시설·장비의 정상운영 여부 등 심사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항만시설 □ 최초 □ 중간 보안심사 신청서 □ 갱신					처리기간 14일
항만시설 소유자	① 사업장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팩 스 번 호		

항 만 시 설

⑥항만시설의 명칭	⑦주소지	⑧항만시설의 종류, 규모 및 수량	⑨항만시설이 용선박의 용도	⑩항만시설적 합확인서 유효기간	⑪보안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일 및 장소

위 항만시설에 대하여 최초·갱신·중간보안심사를 받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귀하
대 행 기 관 의 장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별표7에 따름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80)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14일/변경은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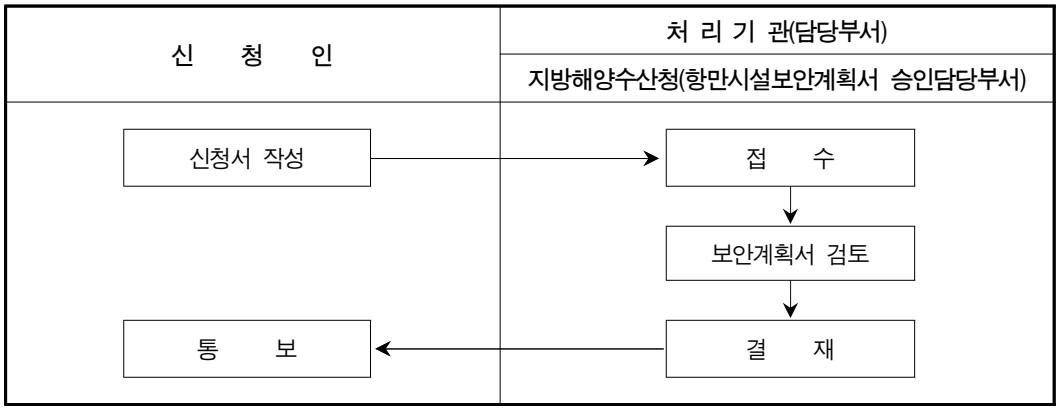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2. 변경사유서 2부(변경승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1. 승 인 : 항만시설 1건당 55,700원
2. 변경승인 : 항만시설 1건당 27,85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포함 여부
- 변경승인의 경우,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대상 항만시설 규모의 변경이 있는 지 또는 해당 항만시설에서 중대한 보안사건이 발생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변경하려는 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를 심사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항만시설보안계획서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변경의 경우 7일)
항만시설 소유자	① 항만시설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팩 스 번 호	

대상 항 만 시 설

⑥ 항만시설 명	⑦ 주 소 지	⑧ 항만시설의 종류	⑨ 항만시설의 규모 및 수량
⑩ 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사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 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 1. 항만시설보안계획서 2부 2.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별표7에 따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80)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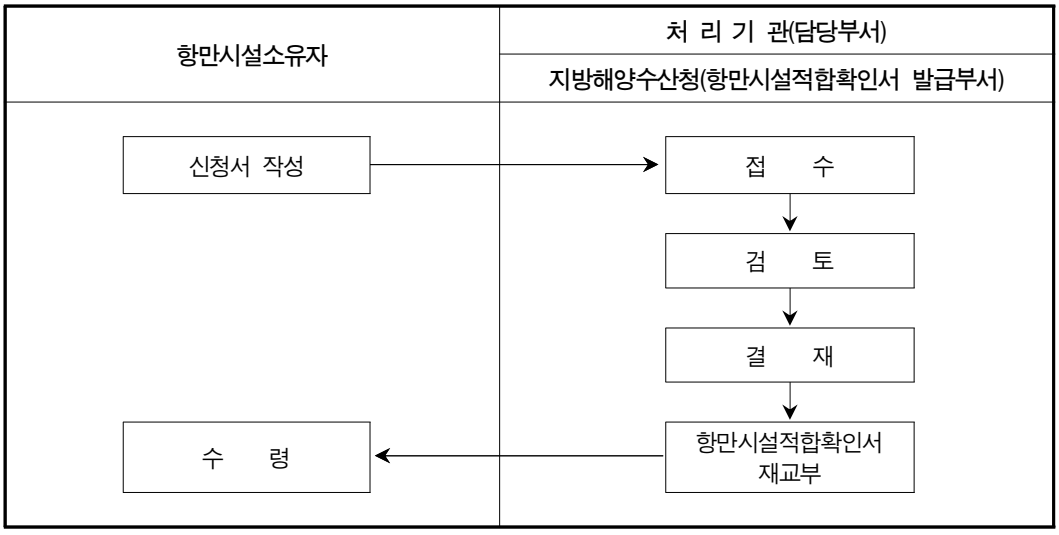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확인서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및 훼손 사실의 확인 및 훼손된 항만시설확인서의 원본 회수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지 여부를 심사

::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쪽)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즉시
항만시설소유자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재교부 받으려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확인서 번호		
	확인서 발행일자		
	유효기간		
재교부 사유	(필요시 사유서 별첨 가능)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비 · 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80)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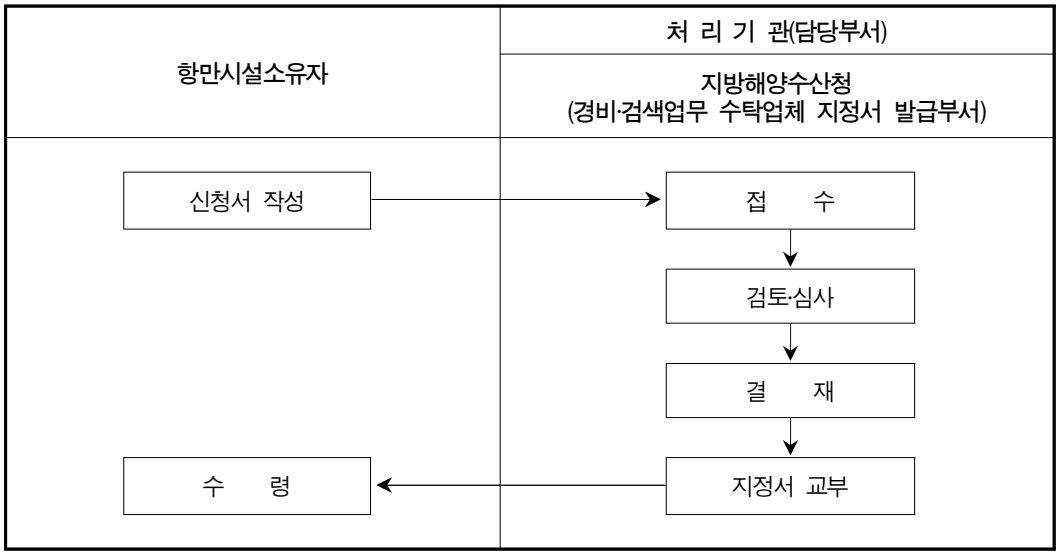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 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진 자본금 및 인력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경비 · 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30일

항만시설소유자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 탁 업 체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탁업무의 범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경비 · 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 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 경비 · 검색업무 추탁업체 추천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경비 · 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경비 · 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80)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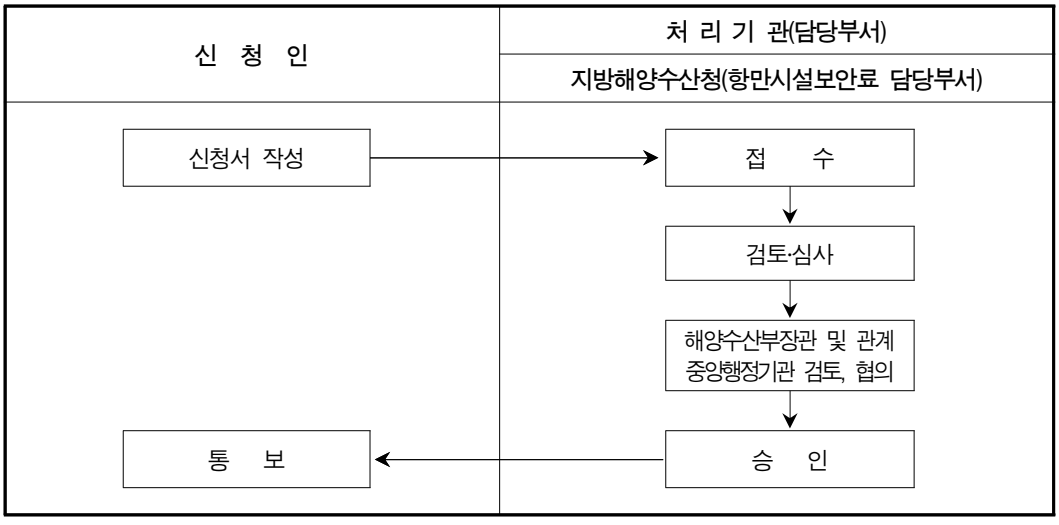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 사본 1부(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 해당)
2. 계약서 사본 1부(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경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3. 보수명세서 사본 1부(경비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해당)
4. 항만시설보안료의 수지계산서
5.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변경 전·후 대비료(징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6. 항만시설보안료 사용계획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보안시설·장비 설치의 적정성 여부, 실제 투입한 비용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적정성 여부, 항만시설보안료 향후 사용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별지 제28호서식

<table>
<tr><td colspan="6">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td><td>처리기간
30일</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 colspan="2">① 명 칭 (상호)</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② 대표자의 성명</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③ 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④ 대상 항만시설</td><td>항만명</td><td>항만시설
(부두)명</td><td>선석(船席)
규모</td><td>항만시설
(부두) 면적(㎡)</td><td colspan="2">주요 취급
화물명</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⑤ 항만보안 인력·시설·장비 확보에 투입된 비용(원)</td><td colspan="6">(필요시 상세내역 첨부)</td></tr>
<tr><td>⑥ 징수방법</td><td colspan="6"></td></tr>
<tr><td>⑦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td><td colspan="6">(필요시 상세내역 첨부)</td></tr>
<tr><td colspan="7">「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귀 하</td></tr>
<tr><td colspan="6">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 사본 1부(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계약서 사본 1부(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경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수명세서 사본 1부(경비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항만시설보안료의 수지계산서
5.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변경 전·후 대비표(징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항만시설보안료 사용계획</td><td>수수료

없 음</td></tr>
</ta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용품공급업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처리기간 6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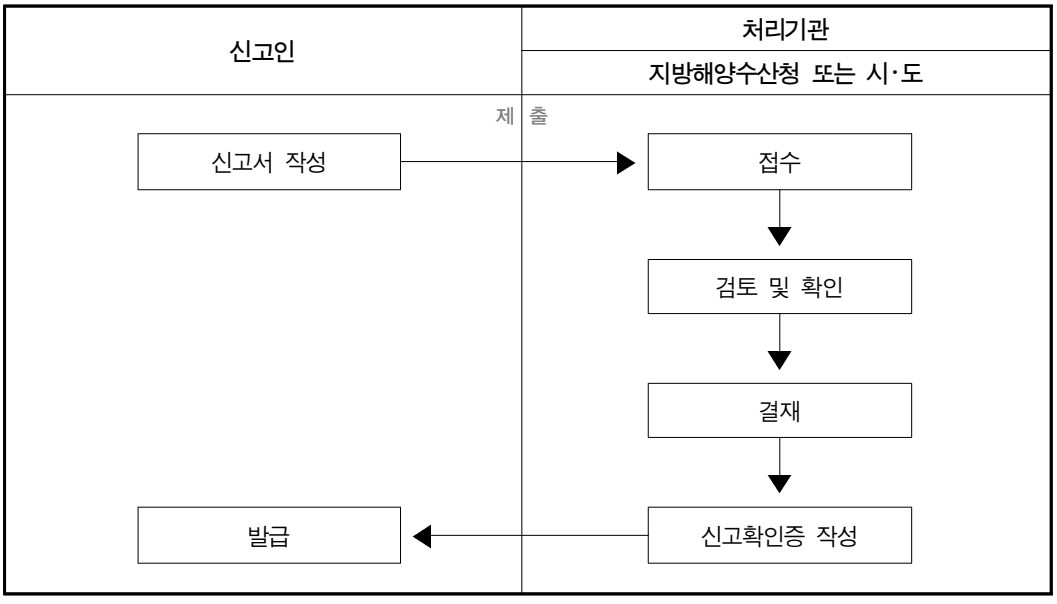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신고인(개인인 경우에 한함)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부동의 경우)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 수수료 : 수입인지 1만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 적합여부

:: **별지 서식** (앞쪽)

선용품공급업신고서				처리기간 6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자본금				
⑥항만명(사업구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품공급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1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검수사 등 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제1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한국검수검정협회(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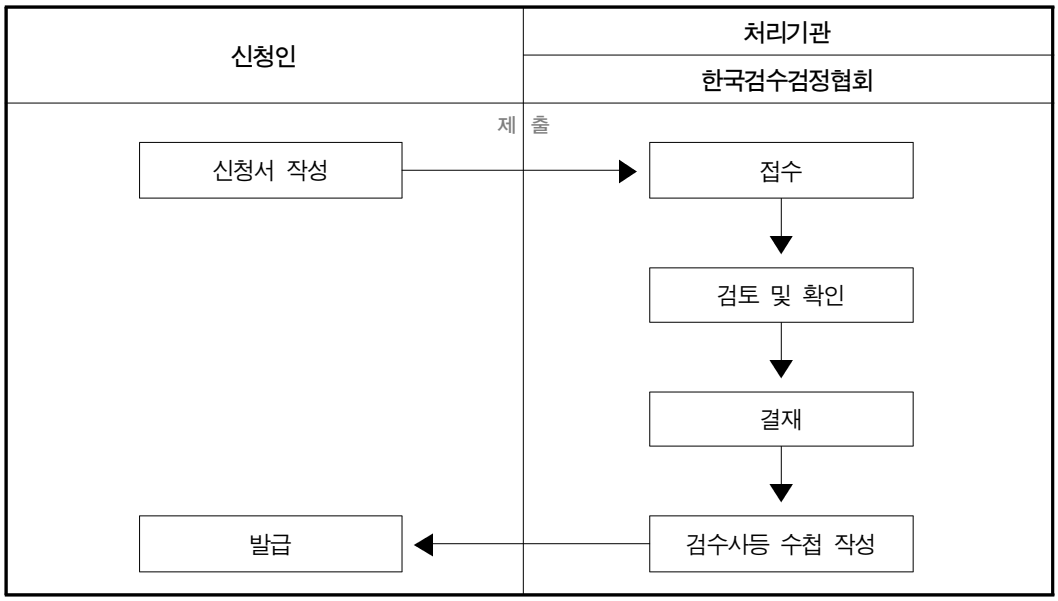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검수사 등 자격증 사본 1부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수수료 : 수입인지 5천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한 구비서류 적합여부

:: **별지 서식** (앞쪽)

검수사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종류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		
⑤취업하려는 항만운송사업자의 명칭			⑥항만명 (사업구역)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수사·감정사·검량사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검수검정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1부 3.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5천원

53337-07311민
97.6.27.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처리기간 6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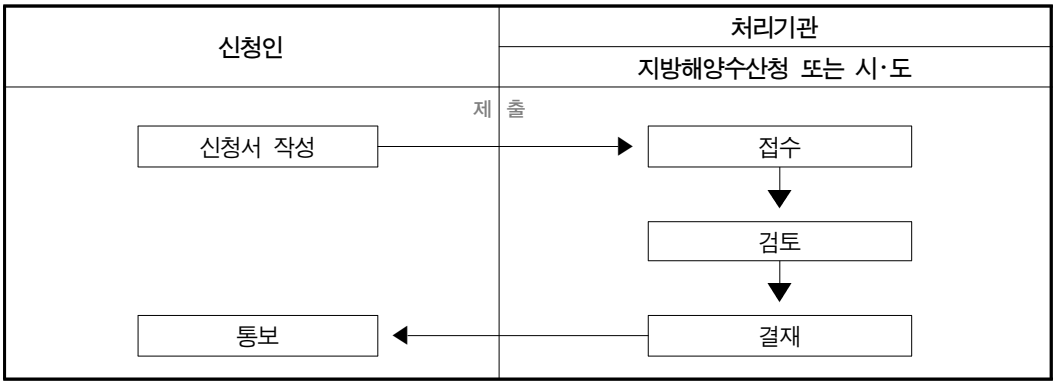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의 적정성 검토 및 관련부처 협의 결과

:: 별지 서식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 호(명칭)	하역업 등록일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인가신청 내 용	항만명 : 시설명(한정하역에 한함) :	인가 신청의 종류 [ ] 신규인가 [ ] 변경인가
	화물명 :	운임 및 요금 [ ] 정부 인가요율표를 따름 [ ]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

변경사유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 하역 운임 및 요금의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와 화물별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1부 2. 사업의 수입·지출 예산서 1부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 대조표(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화물명란의 작성은 취급화물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된 화물(물량기준)만 작성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2. 운임 및 요금란에서 별도의 운임 및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별도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나 변경인가신청 경우를 의미함)에는 운임 및 요금의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1로 갈음합니다.
3. 변경사유란은 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타항만 일시적 영업행위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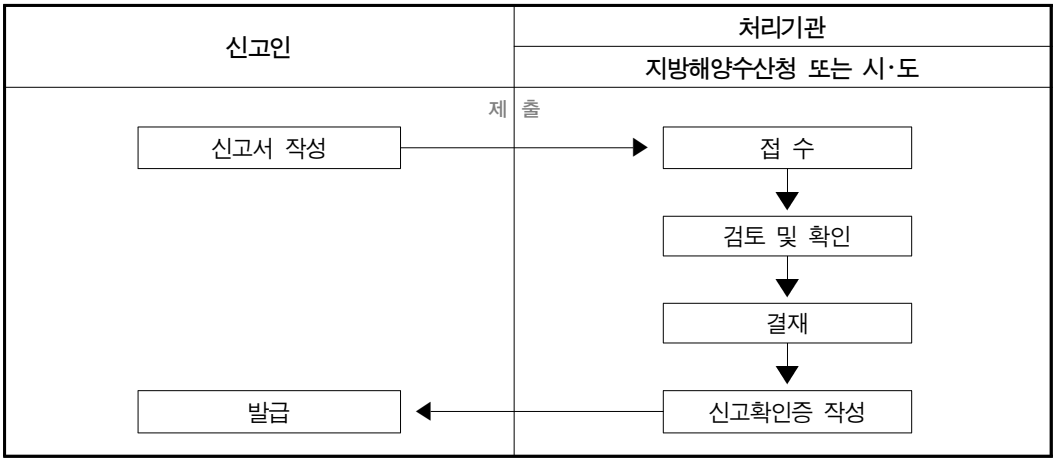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 별지 서식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 신고번호 : 호					
신고인	② 상호(명칭)		③ 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 생년월일		
	⑥ 주소				
	⑦ 등록 항만명				
신고내용	⑧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항만		⑨ 일시적 영업기간		
	⑩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려는 사유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절취선)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

신고번호 : 신고인 :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미등록 항만(항)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시·도지사 인

53337-43111민
97.6.27.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54g/㎡(재활용품))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처리기간 6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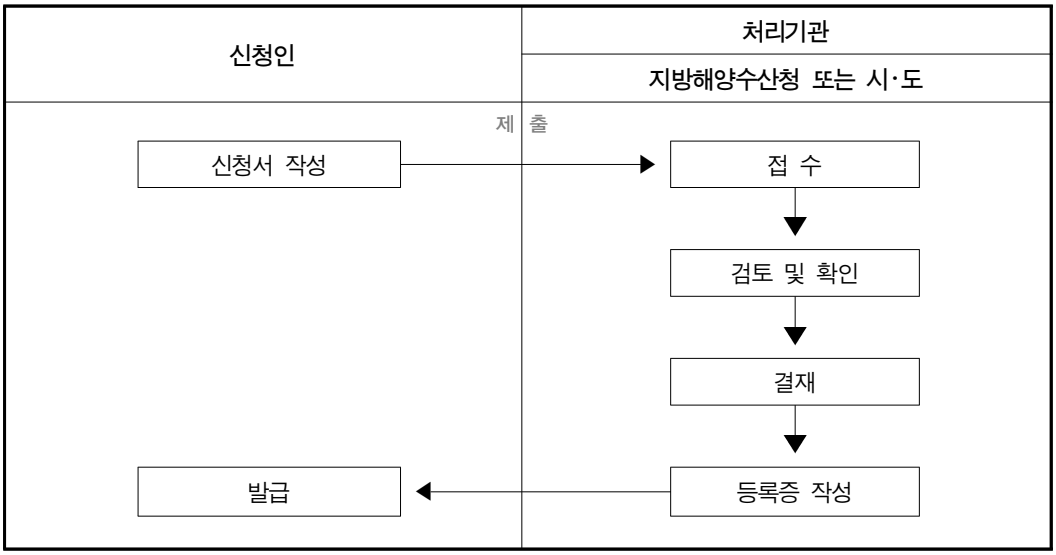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신청인(개인인 경우에 한함)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5.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컨테이너 수리업, 선박수리업에 한함) 1부

- 수수료 : 수입인지 1만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등록기준 적합여부

:: 별지 서식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6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의 종류					
⑥자본금					
⑦항만명(사업구역)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컨테이너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4.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선박수리업·컨테이너수리업만 해당합니다)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1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항만운송사업 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 제1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처리기간 6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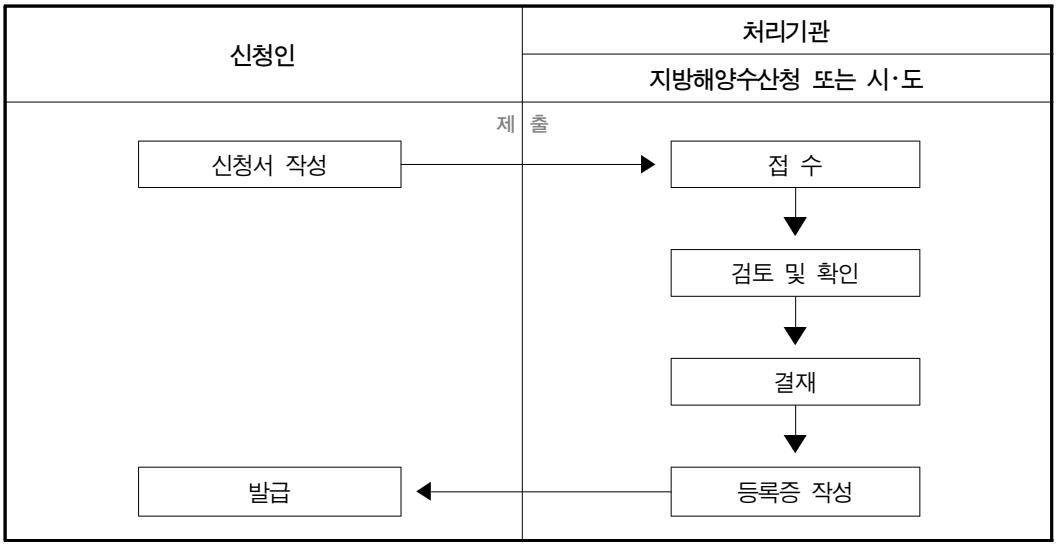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에 한함) 1부

< 개인인 경우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 수수료 : 수입인지 1만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 별지 서식

항만운송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6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의 종류				
⑥자본금				
⑦항만명(사업구역)				
⑧이용자의 범위, 취급화물의 종류 또는 이용항만시설(한정하역사업에 한함)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시·도지사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
구비서류	법인인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의 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입인지 1만원
	개인인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선법 제21조 및 제27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2)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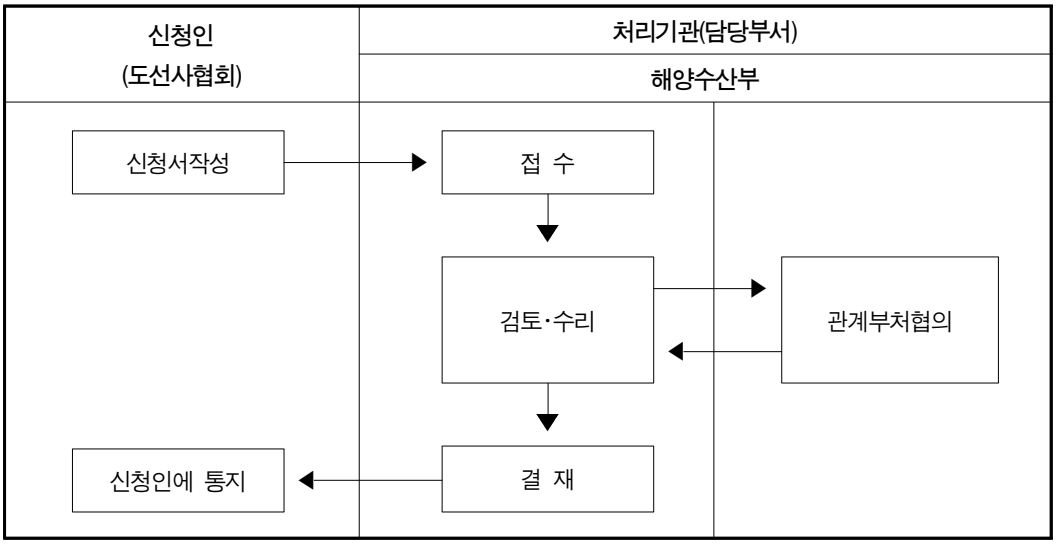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 요율 및 적용방법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도선이용자와 계약에 의하여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3. 변경사항대비표(변경신고에 한함)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선법 제21조 및 제27조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협의 준수여부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 2.〉

도선료(도선선료)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신고인	도선사회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적용 도선구의 명칭	
	적용 예정일	
	변경 사유	

「도선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선료(도선선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1부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이용자가 계약으로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계약서로 이를 갈음함) 1부 3. 변경사항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수리	→	통보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도선수습생 실무수습완료증명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선법 제5조제2호,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지사(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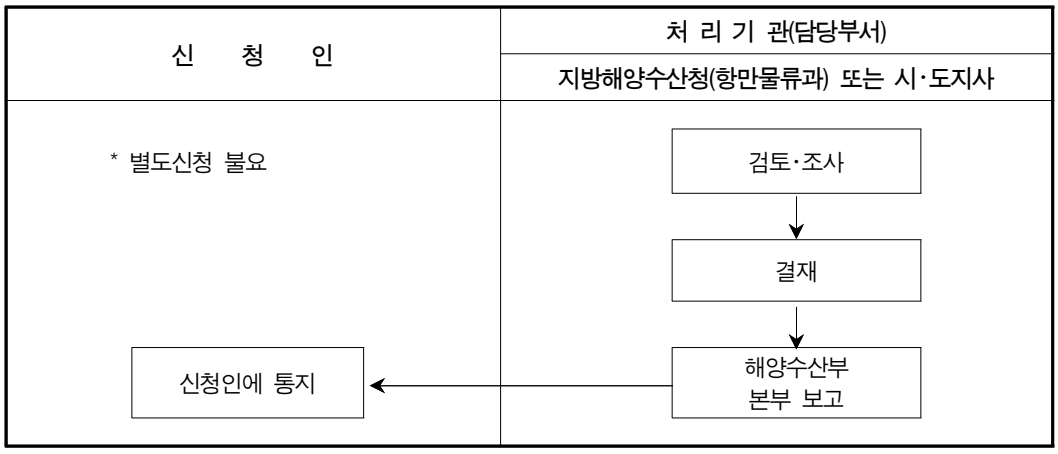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기간(6개월) 기간내 각 도선구간에서 4회 이상을 포함하여 총200회 이상 실무수습 이행여부 확인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5〉

실무수습 완료 증명서

도선 수습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도선수습 기간	. . . ~ . . .
수습 도선구	

도선수습 실적

(단위 : 척)

구분 / 도선구간	합계	월	월	월	월	월	월	비고
합계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도선사 정년연장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선법 부칙(2005.12.29) 제2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지사(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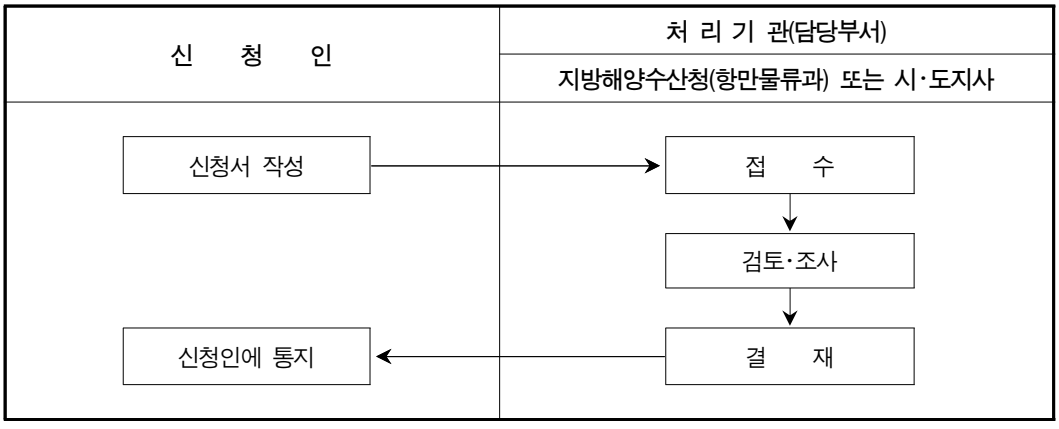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신체검사 증명서
- 수수료 : 1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정년연장 신청시 정기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항만의 적정 도선사 수의 검토 및 적용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5〉

도선사 정년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도선구의 명칭
	면허일자
	정년퇴임일자
	정년연장 기간 부터 까지 (년간)
	정년연장 사유

「도선법」(법률 제7788호, 2005. 12. 29) 제7조,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체검사서 1부	수수료 10,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면허증 교부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강제도선 면제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선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도선법시행규칙 제18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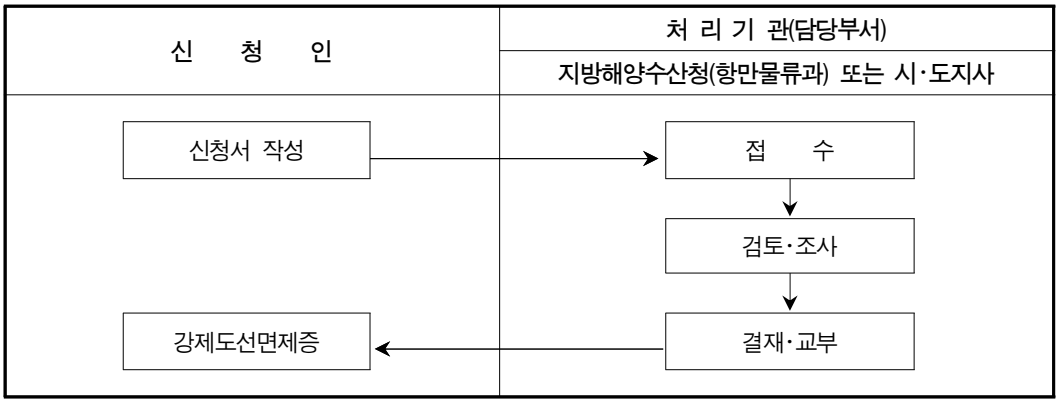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선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도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도선사를 승선시킨 상태에서 해당 항만에 입출항한 실적 등을 확인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5〉

강제 도선 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면제 번호		제 호		
선장	성명		생년월일	
	선원수첩 번호		해기사면허 번호	
선박 제원 (諸元)	선명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총톤수		국적	
	소유자		용도	

입항·출항 사실						
	선명					
	총톤수					
	입항일	. . .	. . .	. . .	. . .	. . .
	출항일	. . .	. . .	. . .	. . .	. . .
	입항·출항 횟수	회	담당공무원 확인	(서명 또는 인)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제 도선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강제 도선을 면제합니다.

※ 유효기간 :

※ 면제조건 :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경력증명서(조선소에 상시 근무하는 시운전 운항관리자만 해당) 1부	수수료
기 타	입항·출항 사실이 6회 이상인 경우는 입출·출항 사실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면제증 교부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도선사면허증 재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선법 시행규칙 제5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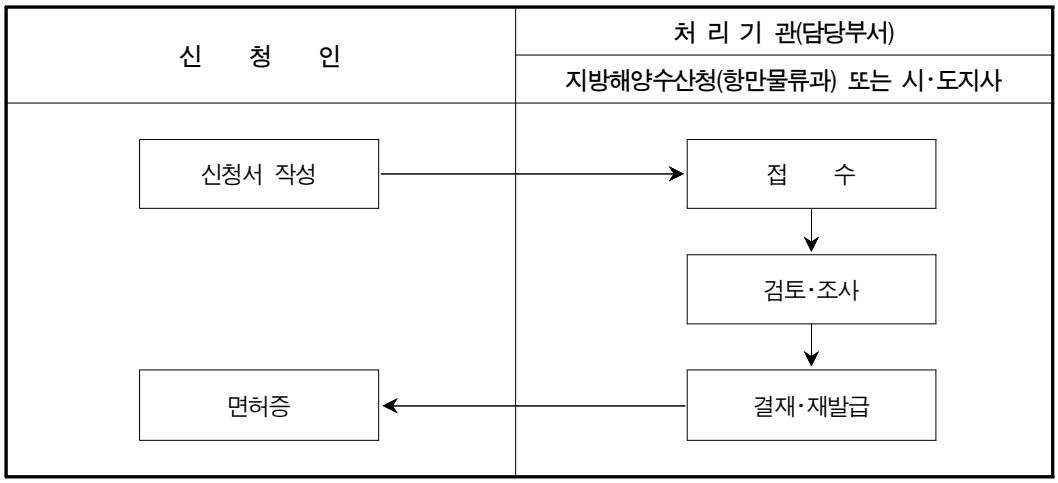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개서하는 경우)
2. 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3.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서의 경우)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재발급의 경우) 2매

- 수수료 : 2천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선사면허증의 재발급 사유 및 개서(갱신)의 필요사항 확인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9.21〉

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진 (3cm x 4cm)	면허증 번호	
	면허증 발급일	
	도선구의 명칭	
	재발급(개서)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재발급(개서) 사유	

「도선법」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의 재발급(개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증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개서하는 경우만 해당) 2. 도선사면허증 분실 경위서(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 1부 3.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서의 경우만 해당) 1부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재발급의 경우만 해당) 2장	수수료 2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면허증 교부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도선사 면허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도선법 제4조제1항, 도선법시행령 제1조의2, 도선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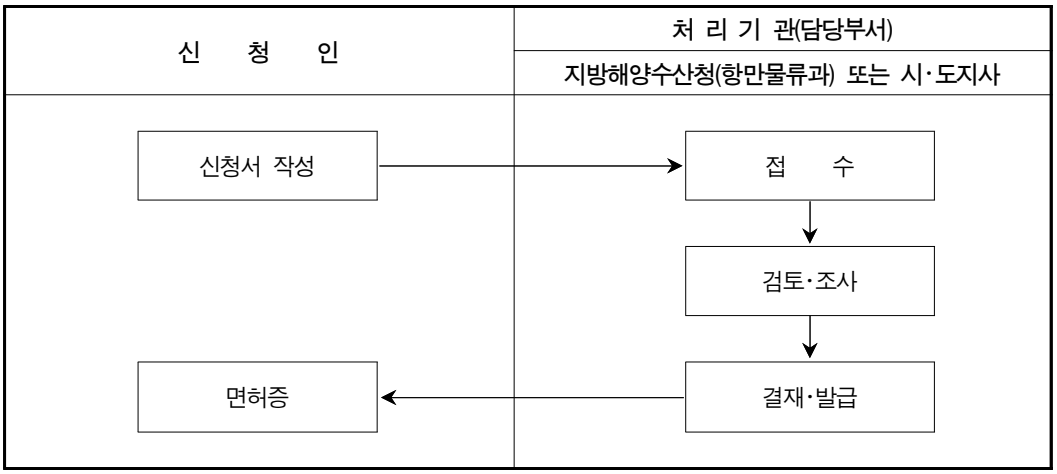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이력서
  2. 신체검사서
  3. 사진3장(최근 6개월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수수료 : 2천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대한민국국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여부, 파산선고 여부 등) 해당유무 확인
- 도선법 제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면접) 및 도선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실무수습 완료 여부 및 실기·면접) 합격 해당자 여부
-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최초 신체검사 합격 여부 등 확인

::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21.〉

[ ] 1급 [ ] 2급 [ ] 3급 [ ] 4급 도선사면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사진 (3cm x 4cm)	도선구의 명칭
	도선사 시험 합격일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 취득일

「도선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선사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을 말합니다] 3장 3.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예선업등록사항변경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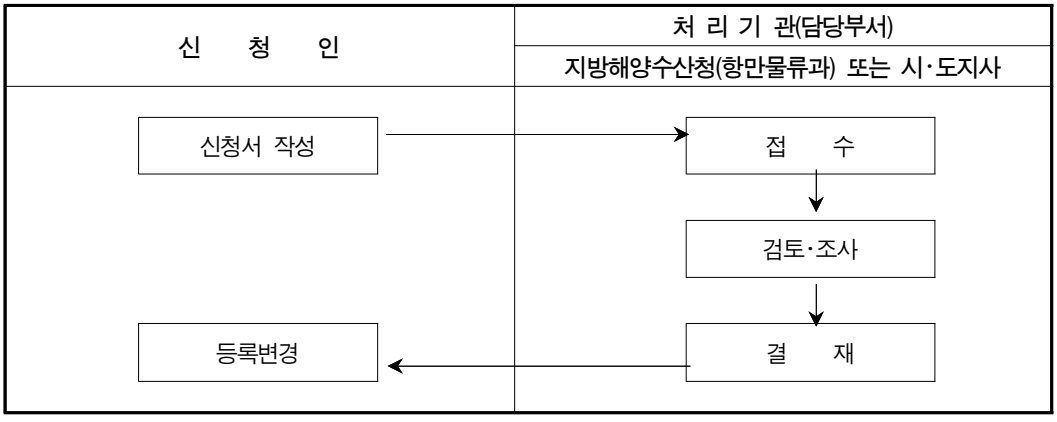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변경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변동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업체상호, 대표자, 주소지, 예선현황·척수 등)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 사항		
변경 사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등록증 작성	발 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예선업 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32조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16조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처리기간 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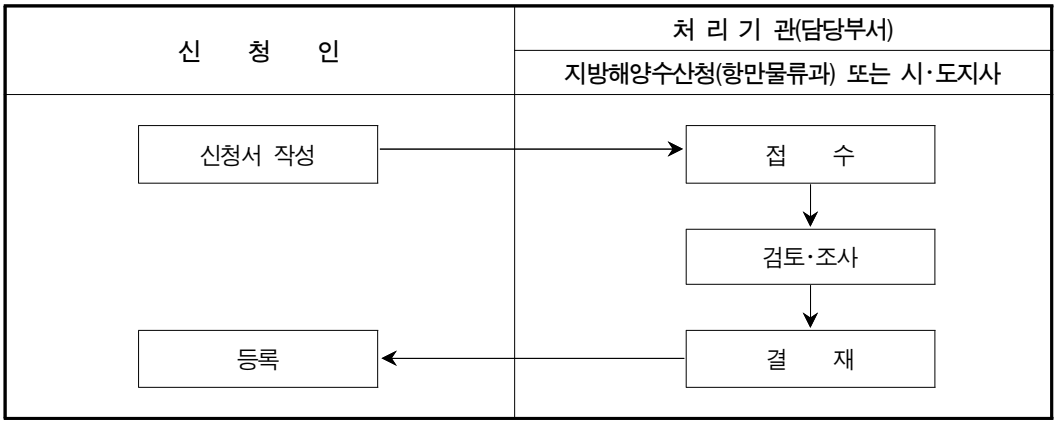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예선의 척수·제원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3. 사업계획서
  4. 예항력 증명서(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서 발행)
- 수수료 : 5,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법 제32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항만별 예선보유기준”, 항만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른 “예선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예선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소	소재지	
	사업구역(항만명)	
	사업개시 예정일	

예선별 선박제원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주기관		비고
				마력	추진기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선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3. 예선의 척수 · 제원 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4.「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하는 예항력 증명서	수수료 5천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등록증 작성	발 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만시설사용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30조제1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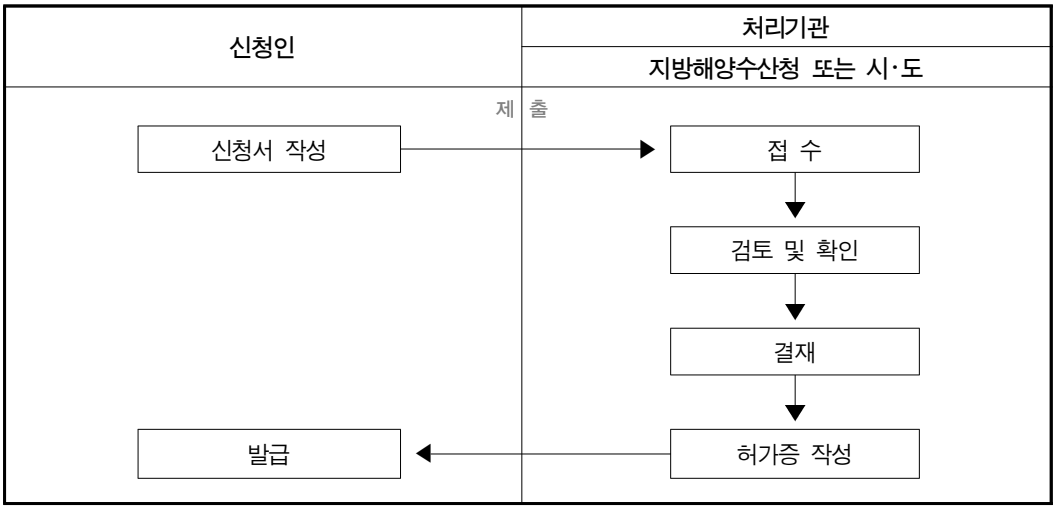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 별지 서식

항만시설 [ ]일반·[ ]전용 사용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확인 번호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업체코드	[ ][ ]-[ ]-[ ][ ][ ][ ] 업체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선박	호출부호			입항일시	
	선명			총톤수	
	총길이	m	너비 m	예상흘수	[ ][ ].[ ]m
항만시설	사용구분	[ ] 1.최초 2.연장 3.변경 4.취소		작업구분	[ ] 1.입항 2.이선
	시설코드(계류·사용장소)	[ ][ ][ ]]-[ ][ ] 시설명			
	면적	㎡	위치		
	사용목적	[ ][ ] 01.양적하 02.양하 03.적하 04.수리 05.해난 06.급유 07.접안대기 08.화물대기 09.상가대기 10.출항대기 11.해상하역 12.계선 13.수입화물장치 14.수출화물장치 15.통과선박 98.갑문통과 99.기타			
	사용내역				
	양하화물 종류·톤	1.[ ][ ] m/t	2.[ ][ ] m/t	3.[ ][ ] m/t	
	적하화물 종류·톤	1.[ ][ ] m/t	2.[ ][ ] m/t	3.[ ][ ] m/t	
	장치화물	1.[ ][ ] m/t, 개	2.[ ][ ] m/t, 개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조건				
사용료	면제 사유	[ ][ ] 01.군함 02.관공선 03.조선소 입거수리 04.항내준설선 05.해난 06.검역선박 07.낙도보조항로 08.수협소유선박 09.접안시설 부족 10.조수관계 11.갑문사정 12.입거대기 13.국고귀속·압수·폐기화물 15.월정료 타항 납부 21.통과선박 22.연안어선 25.기상악화 77.투자비보전 86.연안컨테이너선 99.기타			
	면제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산출내역				
	일부면제	[ ][ ] 1.유 2.무	면제사유		
	사용료		징수의뢰일	년 월 일	납부기일 년 월 일
비고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 )시·도지사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자	허가번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 )시·도지사 (직인)

구비서류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 기입	수수료
없 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항만시설사용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30조 제1항
-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연락처 : 044-200-5774)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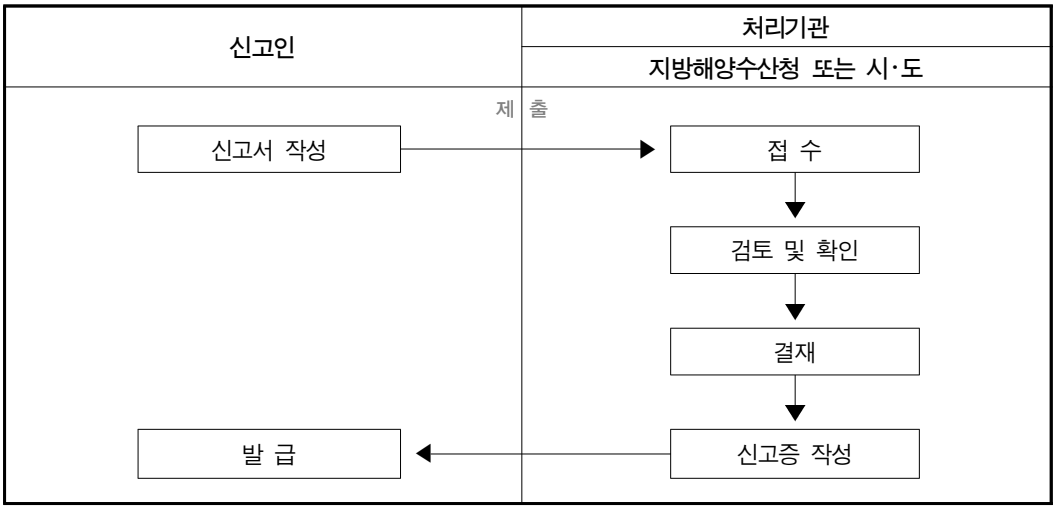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신고내용의 적합여부

:: 별지 서식

항만시설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확인 번호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업 체 코 드	[ ][ ]-[ ]-[ ][ ][ ][ ] 업체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주 소		생 년 월 일	

선박	호 출 부 호			
	선 명			
	국 적		총 톤 수	
	입 출 항 일	입항일	출항일	

시설사용료 < 화물 >	반출입현황	별첨양식 (화물반출입현황)					
	구 분	[ ] 1.외항입항 2.외항출항 3.내항입항 4.내항출항			납 기 일		
	시 설 종 류				사 용 장 소		
	하 역 구 분	운임톤/갯수	기본료	할인율	사용료	할인코드	비 고
	1						(하역구분) 1.일반하역 2기계하역 3.송유관하역 4.무연탄 5.컨테이너20FT미만 6.컨테이너20FT 7.컨테이너35FT 8.컨테이너40FT 9.컨테이너40FT초과 (할인코드) 1.30% 2.50% 3.75% 4.100%
	2						
	3						
	4						
	5						
	6						
	7						
	계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 )시·도지사 귀하

항 만 시 설 사 용 신 고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번호

구비서류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 기입	수수료
없 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민원편람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ART

04

해사안전

해양수산부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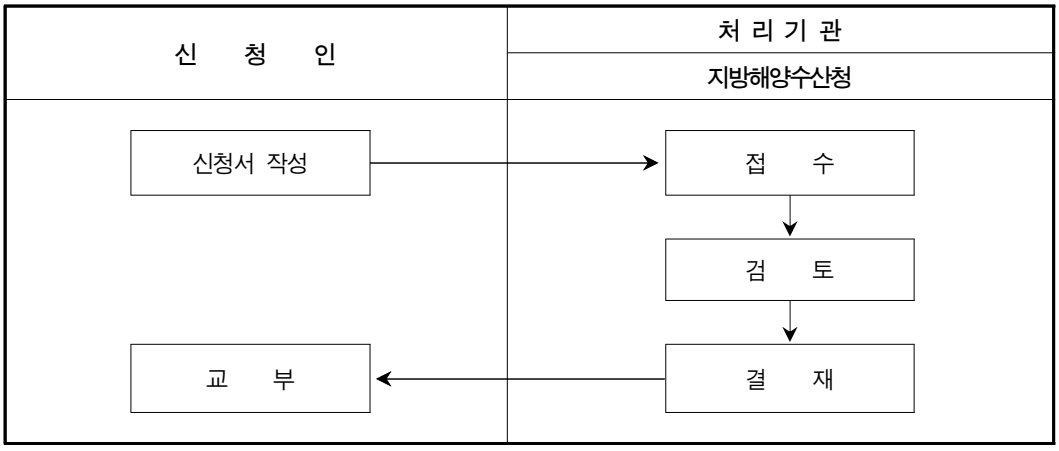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국통제 처분 이의신청 사유의 적합성 여부 등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회사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팩스번호		
선박	⑥ 선 명		⑦ 총톤수		
	⑧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⑨ 용 도		
	⑩ 회사식별번호 (있는 경우만 해당)		⑪ 선적항		
⑫ 항만당국의 처분내용					
⑬ 이의신청 사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제9항 및 제1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선박멸실 등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법 제13조제4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결재	→	대장 정리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무소)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멸실 신고 사유 등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선박 멸실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신청내용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선적항		국제톤수증서 등의 번호
	신고 사유	[ ]멸실·침몰 또는 해체 [ ]국적상실 [ ]선박의 존재 여부 불분명 [ ]국제항해를 아니 함 [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이 됨	
	비고		

「선박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선박멸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법 제9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대한민국 영사(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재	→	임시선박국적증서 작성 및 발급	→	수 령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무소) 대한민국영사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무소) 대한민국영사		신청인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 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의 소유권 취득 증명 서류 등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신청내용	선박의 종류		선박의 명칭	
	선적항		선질	
	범선의 범장		기관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길이	미터	너비	미터
	깊이	미터	총톤수	톤
	신청 사유			
	비고			

「선박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장 귀하
대한민국 영사

구비서류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500원

재화중량톤수측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법 제7조제4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대한민국영사 또는 대행기관(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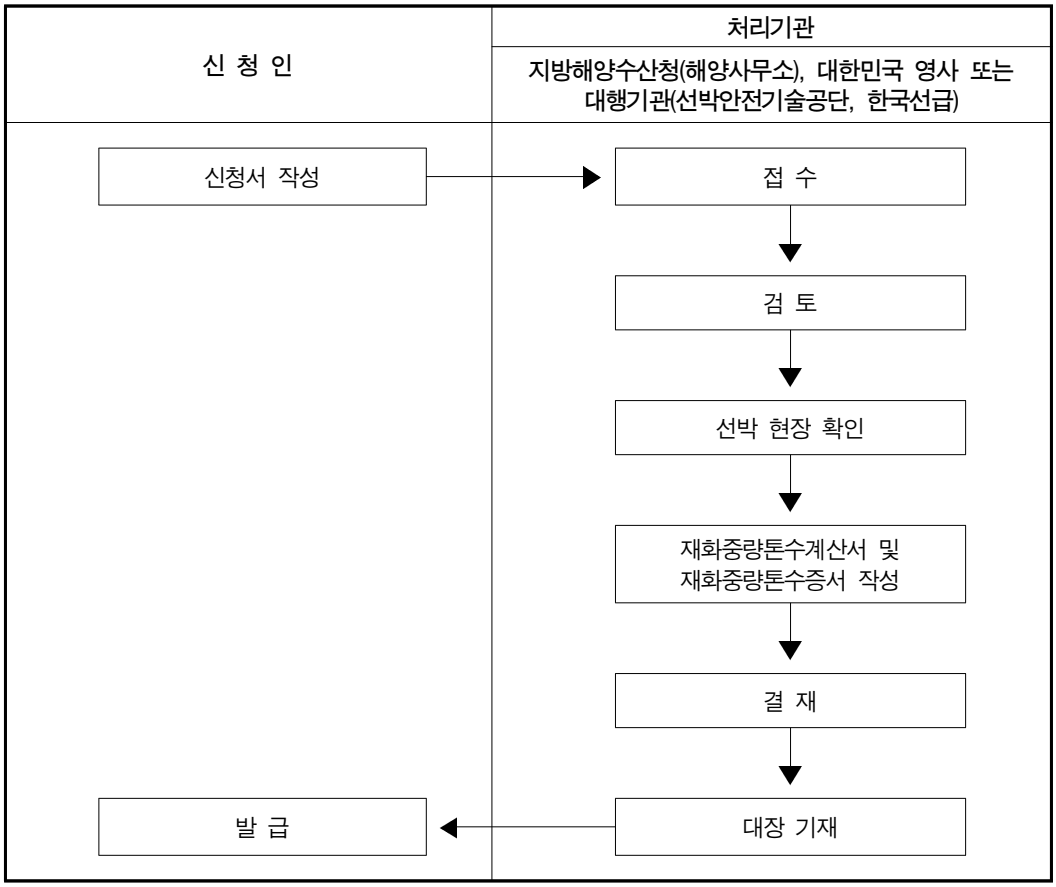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만 해당)
6. 그 밖에 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 비고 :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

- 수수료 :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규칙」에 따라 톤수측정 기준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소유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 :)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선적항				
신청구분		□신규측정 □개정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선박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장
대한민국영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한국선급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비고 :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변경발급)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법 제13조 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대행기관(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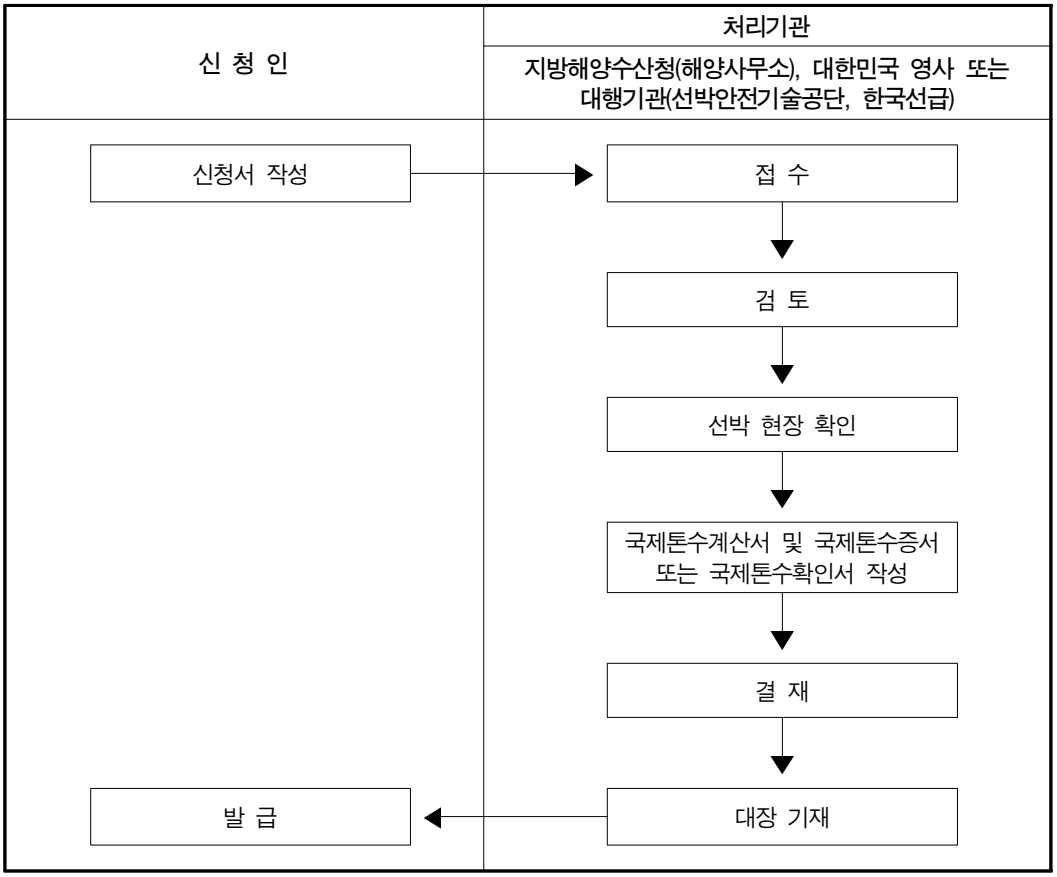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선박의 구조변경 등에 따라 국제톤수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3. 선박국적증서 사본(「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선박의 명칭·선박번호·호출부호 및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수수료 :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규칙」에 따라 국제톤수 측정 기준

::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 :)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신청구분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신청사유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선박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귀하
한국선급회장

※ 구비서류	수수료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선박의 구조변경 등에 따라 국제톤수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선박국적증서 사본(「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선박의 명칭·선박번호·호출부호 및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 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선박원부 등·초본발급(열람)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즉시 처리)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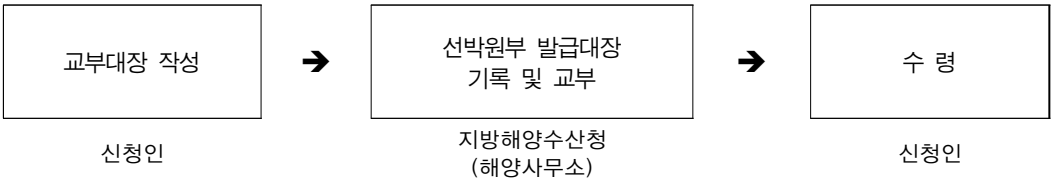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인의 신분 확인 및 선박원부 발급대장에 신청인의 성명 등 기재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대한민국 영사(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재	→	영역서 작성 및 발급	→	수 령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무소) 대한민국영사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무소) 대한민국영사		신청인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임시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신청에만 해당)
- 수수료 : 1,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국적증서 발급 여부 및 영역서 발급 사유 등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영역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소유자	영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영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신청내용	선박번호	
	선박의 명칭(영문)	
	신청 구분 [ ]선박국적증서 [ ]임시선박국적증서	
	신청 사유	
	비고	

「선박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장
대한민국 영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임시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신청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영사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신청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영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영사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선박말소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법 제22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대한민국 영사(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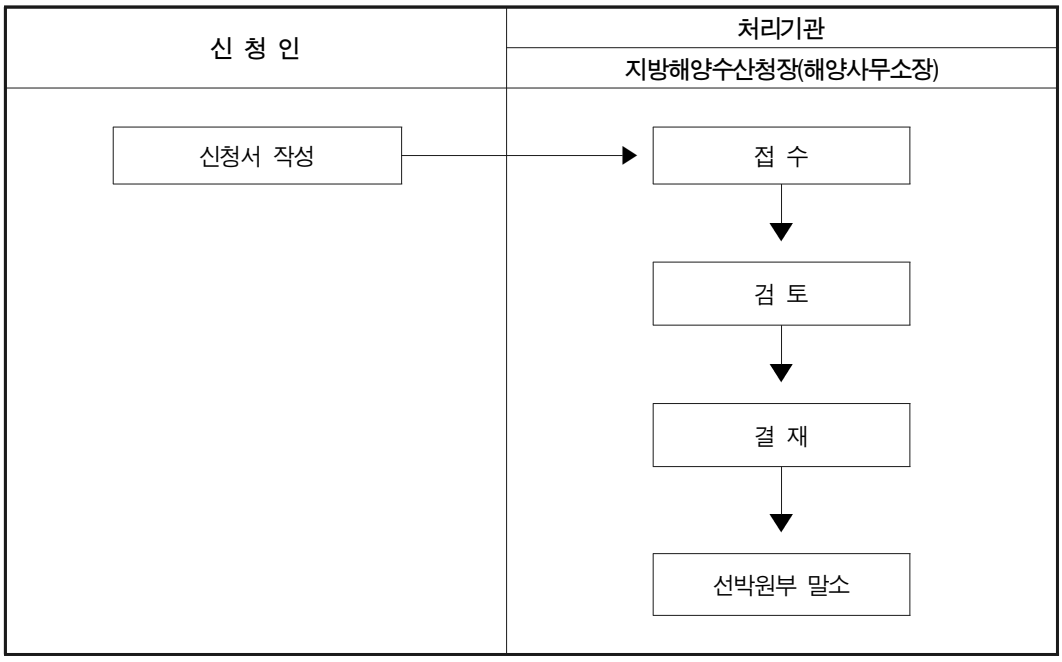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

나. 압류권자·저당권자·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수수료 : 2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선 박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IMO번호
	선박의 용도	호출부호
	선적항	총톤수 톤

말소의 사유	[ ]침몰 [ ]해체 [ ]수출 [ ]그 밖의 사유
말소의 구분	[ ]선주 말소 [ ]직권 말소
비고(말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선박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나. 압류권자·저당권자·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원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사무소장) 확인사항	수출신고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사무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사무소장)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선박원부변경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법 제18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즉시 처리)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재	→	대장 정리, 선박국적 증서 작성 및 발급	→	수 령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무소)		신청인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만 제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

- 수수료

1.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 : 500원, 선적항 변경의 경우 : 1,000원
2. 증서발급 수수료 : 5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적합한지 여부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신청내용	선박의 명칭		
	선박의 용도		선박번호
	IMO번호		호출부호
	선적항		총톤수 톤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선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 : 500원 선적항 변경의 경우 : 1,000원 2. 증서발급 수수료 : 500원

선박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법 제8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한 7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재	→	대장 정리, 선박국적증서 작성 및 발급	→	수 령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무소)		신청인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측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
  2. 선박등기부 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만 해당)
- 수수료 :
  1. 선박등록 신청 : 1,500원
  2.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 : 500원
  3. 증서발급 수수료 : 5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 총톤수측정 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 및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선박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소형선박의 총톤수측정을 포함하는 경우 7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상호				
신청내용	선박의 명칭				
	선박의 용도□□			(* 선박용도 코드 참고)	
	선적항		총톤수	톤	
	길이	m 너비	m	깊이	m
	공유자 유무□	[1]있음 [2]없음	호출부호		
	신청의 사유	[1]신조 [2]수입 [3]부활 [4]개조 [5]기타			
	선박번호	□□□-□□□□□□	IMO 번호	□□□□□□□	

「선박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등기부 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선박등록 신청 : 1,500원 2. 증서발급 수수료 : 500원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선박총톤수측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법 제7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대행기관(처리기한 5일,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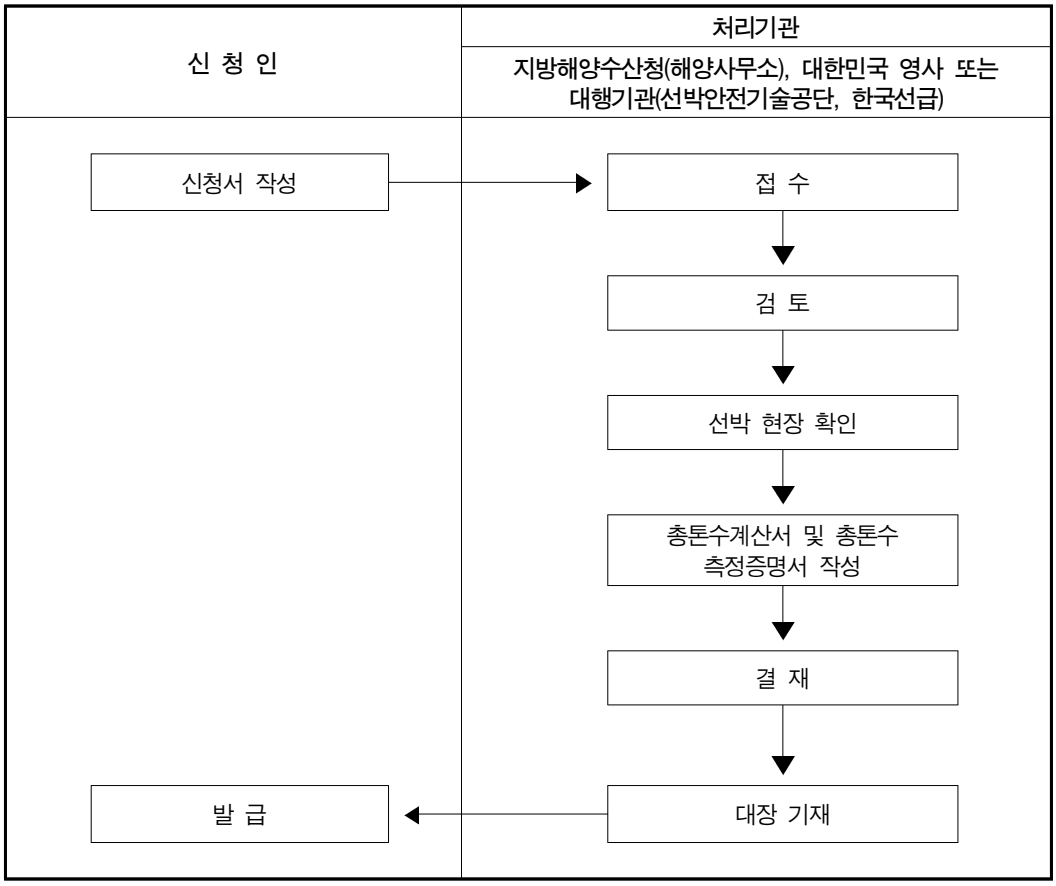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1.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 및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가. 측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船體線圖)(「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합니다)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총톤수계산서(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만 해당합니다)

(7)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1)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 없음

(2)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1)의 선박은 제외합니다]과 범선 : 일반배치도

(3) (1) 및 (2)의 선박 외의 선박 :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다. 수면비행선박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

비고 :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사무소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선박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총톤수의 개측 신청 :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 수수료 :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등 확인, 선박 제원에 대한 조사, 수입선박은 수입 신고필증 및 임시선박국적증서 등 확인, 선박소유자 주소, 성명 등 확인, 「선박톤수의측정에 관한규칙」에 따라 총톤수 측정 기준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소형선박 : 5일)
소유자	① 성명(대표자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상호		(전화번호 :)	
⑤ 선박의 종류			⑥ 선박의 명칭(원명)	
⑦ 선적항			⑧ 총톤수	
⑨ 착공일			⑩ 진수일	
⑪ 조선지			⑫ 조선자	
⑬ 신청 사유	□신조 □수입 □개측 □부분측정 □그 밖의 사유			
⑭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⑮ 비고				

「선박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장
대한민국영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한국선급회장 귀하

※ 구비서류

1.「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 및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가. 측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船體線圖)(「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합니다)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총톤수계산서(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만 해당합니다)
  (7)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1)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 없음
  (2)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1)의 선박은 제외합니다]과 범선 : 일반배치도
  (3) (1) 및 (2)의 선박 외의 선박 :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다. 수면비행선박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

비고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사무소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선박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총톤수의 개측 신청 :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수수료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불개항장 등 기항허가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법 제6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결재	→	허가 및 발급	→	수령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인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 음
- 수수료 : 없 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불개항장 기항허가 신청 사유의 적절성 및 안전대책 마련 여부 등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신청내용	선박의 명칭	
	국적	선박의 종류
	선적항	총톤수 톤
	선박의 용도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기항하려는 항명	기항하려는 일시
	기항하려는 이유(여객이나 운송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나 수량 등을 적을 것)	
	최근 1년간 기항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선박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안전관리대행업 휴(폐업)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사안전법 제22조 또는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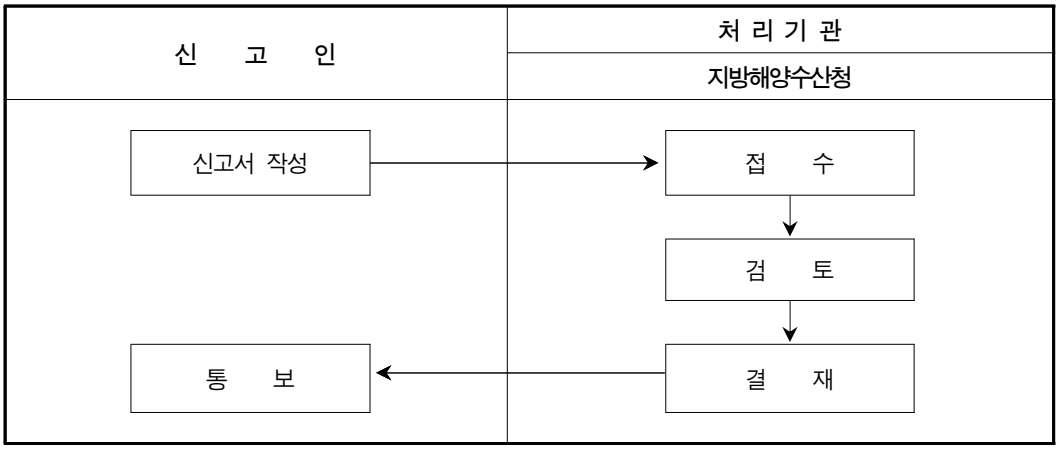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에 기재된 휴·폐업 사유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 · 안전관리대행업 휴업(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휴업 또는 폐업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휴업 또는 폐업할 사업의 종류 및 내용	
휴업의 경우 그 기간	
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해사안전법」 제22조 또는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 ·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관리대행업 합병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사안전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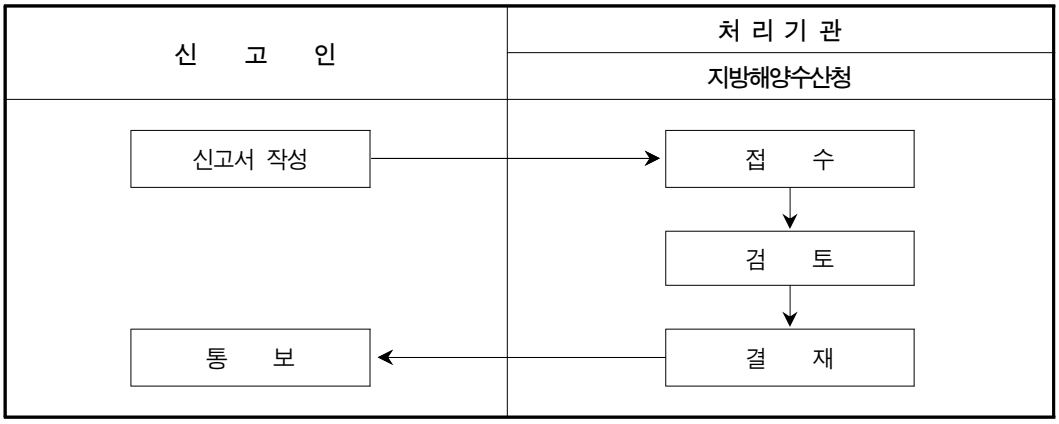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해야할 서류의 적정 구비여부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 ·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합병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합병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 연월일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해사안전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 · 안전관리대행업의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합병계약서 사본 중 합병에 따른 권리 · 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안전관리대행업 양수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사안전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1호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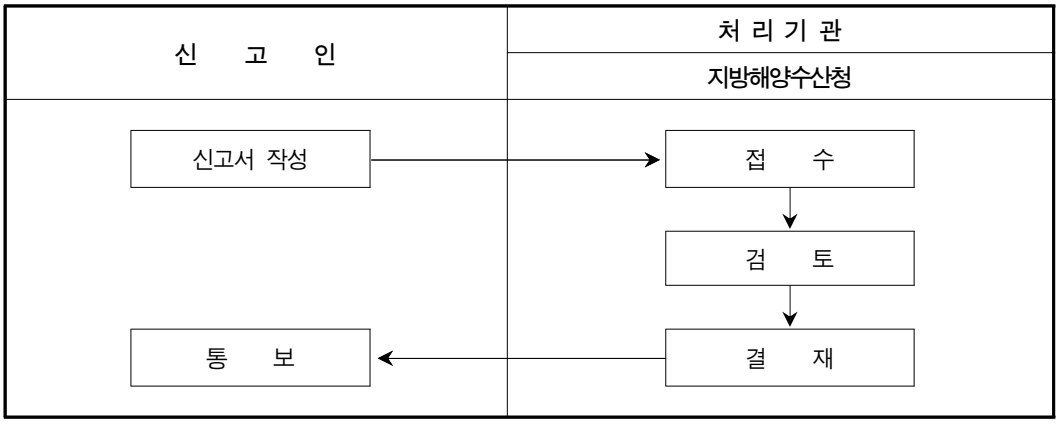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해야 할 서류의 적정 구비여부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안전진단대행업 · 안전관리대행업 양도 · 양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양도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내용의 표시	사업의 종류		등록번호	
	양도 · 양수 가격			
	양도 · 양수 사유			

「해사안전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 · 안전관리대행업의 양도 · 양수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 · 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안전진단 대행업의 경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안전관리 대행업의 경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안전관리대행업(신규·변경) 등록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사안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 신규등록 14일, 변경등록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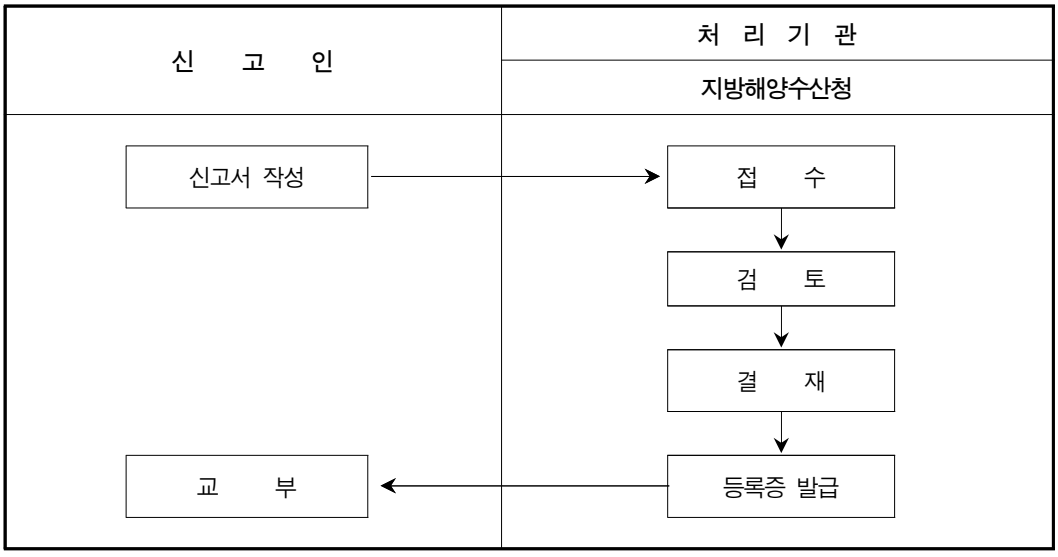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4.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 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5.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및 제5호의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해야 할 서류의 적정 구비 및 등록(변경)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안전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규등록 14일 변경등록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사유 (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사안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 가. 정관 1부 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다.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라.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 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등록 가. 변경사유서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지방해양항만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	발 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선박·사업장인증심사 이의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사안전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9)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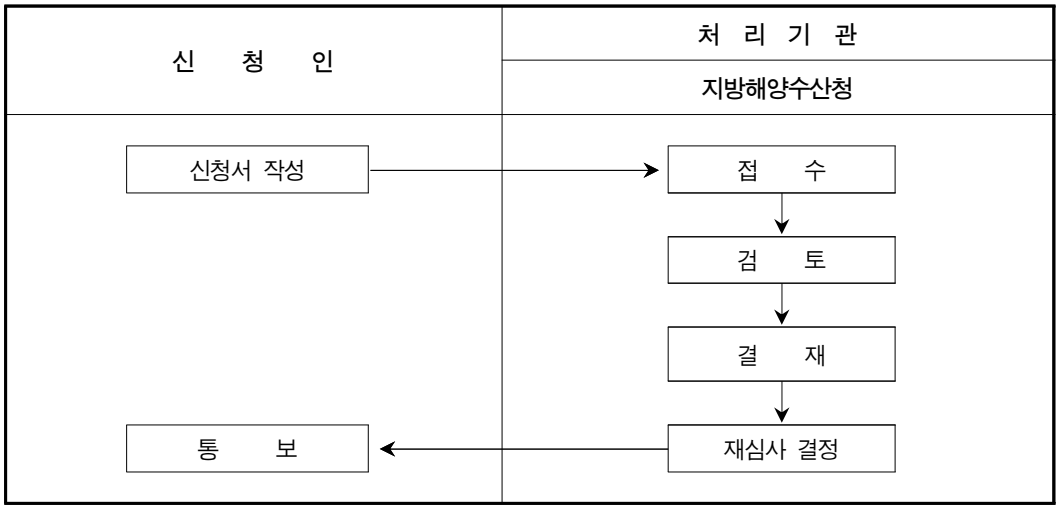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사유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주소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인증심사기관명			인증심사일	
해당 사업장	사업장명칭		인증심사종류	
	신청사유			
해당선박	선명		총톤수	
	선박의 종류		인증심사종류	
	신청사유			
비고				

「해사안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재심사 결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사안전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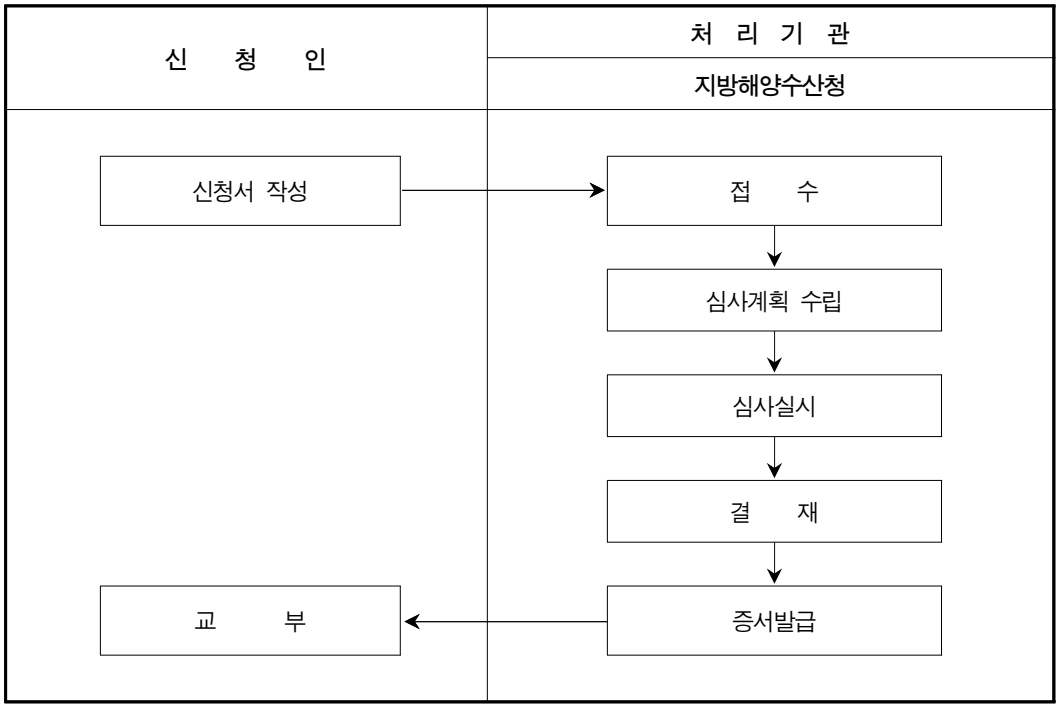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1.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3. 조직 및 업무처리규정
  4.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해야 할 서류의 적정 구비 및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정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대행업무의 범위		

「해사안전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 1부 3. 조직 및 업무처리규정 1부 4.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	발 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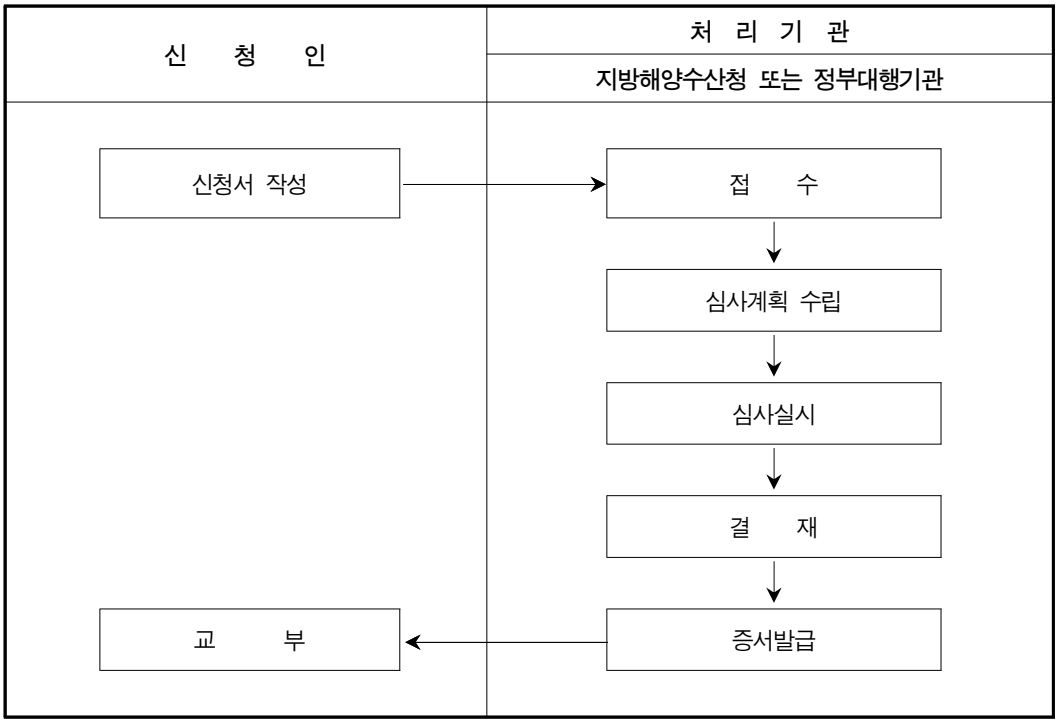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 수수료 : 요율별 수수료(50,520원부터~)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해야 할 서류의 적정 구비 및 지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팩스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심사종류	최초인증심사 □	갱신인증심사 □	중간인증심사 □	임시인증심사 □	
심사사유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선박상세	선명		선종		항행구역
	선박번호 (선급번호)		IMO 번호		총톤수
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일			심사 희망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대리점 연락처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 정부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계획 수립	→ 심사실시	→ 결 재	→ 증서발급	→ 교 부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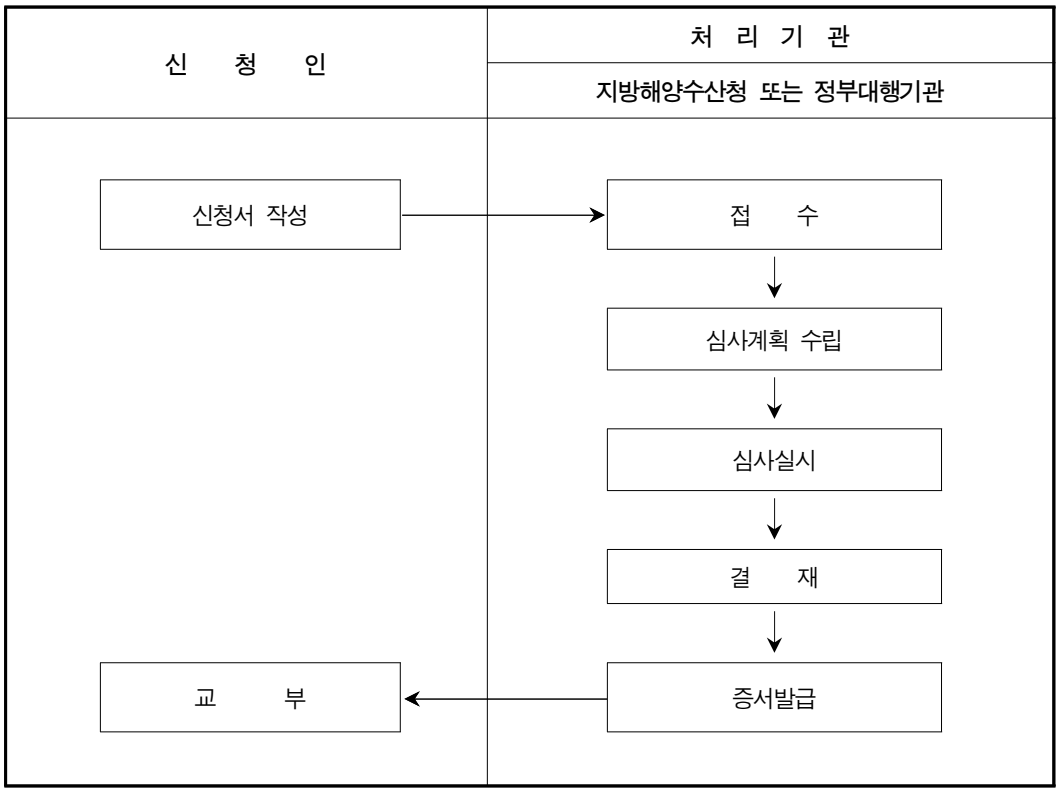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2)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1부

   2)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요율별 수수료(50,520원부터~)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해야 할 서류의 적정 구비 여부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팩스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심사종류	최초인증심사 □ 갱신인증심사 □ 중간인증심사 □ 임시인증심사 □
심사사유	※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사무소	총인원	명	분사무소	사무소명:	명
				사무소명:	명
	부서	개		사무소명:	명
				사무소명:	명

운항선박의 종류	여객선	척	고속여객선	척	고속화물선	척
	산적화물선	척	유조선	척	화학제품운반선	척
	가스운반선	척	이동식해양구조물	척	그 밖의 화물선	척

안전관리적합증서 유효일		심사희망일 및 장소	
선종별 선적국	※선박의 기국과 선박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통 제출서류: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49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2)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1부 2)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 정부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계획 수립	→ 심사실시	→ 결 재	→ 증서발급	→ 교 부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사안전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연락처 : 044-200-5819)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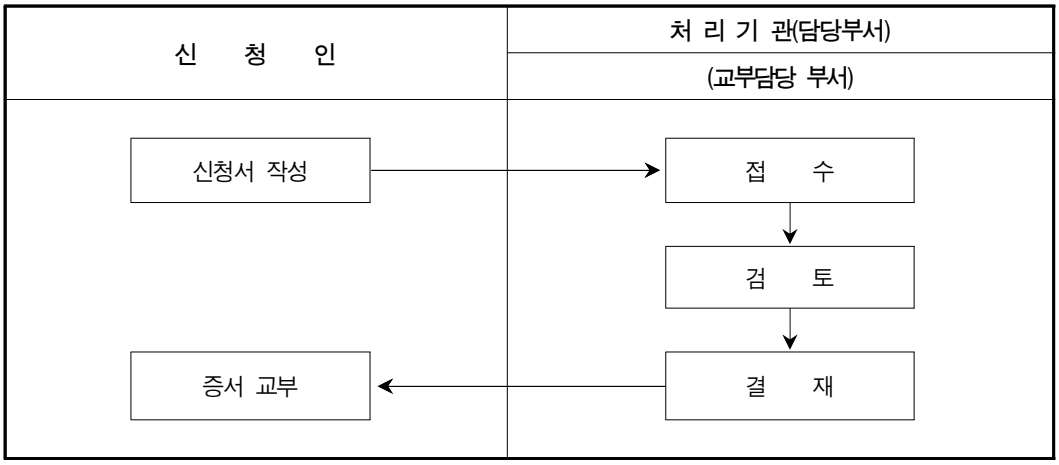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연장신청 사유 및 기간의 적정성 검토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박 [선박 식별번호(IMO No.):]

선명	총톤수	선박의 용도 (항행구역)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	사유

「해사안전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교 부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사항 변경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8)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처리기간 2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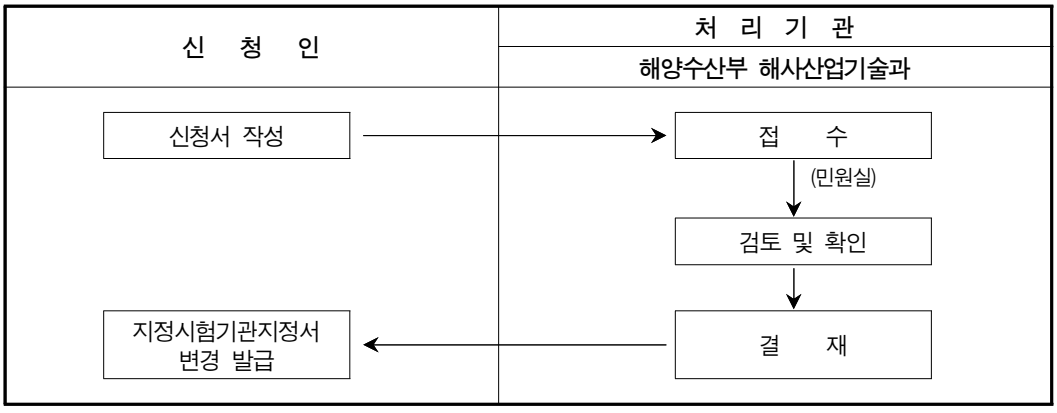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신청서
  2. 변경된 사항을 적은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확인

  ※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보완 요청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5.7.1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 ]지정시험 품목 변경 [ ]시험내용 변경 [ ]지정 받은 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명 칭	국문			
		영문			
	대표자의 성명	국문			
		영문			
	주 소	국문			
		영문			
시험을 하려는 품목, 시험내용 또는 지정 받은 사항 변경 내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 변경)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신고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규지정, 시험품목 또는 시험방법 변경 시〉 1. 지정시험기관의 연혁 · 설립목적 · 주 기능 ·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추가지정 시는 제외합니다) 2.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 등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 · 교정 관리 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명칭, 소재지, 주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나. 임차설비 이용 또는 의뢰하려는 시험의 종류 다.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5.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적은 서류 6. 해당 시험에 대한 국제공인시험 · 검사기관 인증서(추가지정 시 제외합니다)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시〉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규지정, 시험품목 또는 시험내용 변경 시〉 1. 국가기술자격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8)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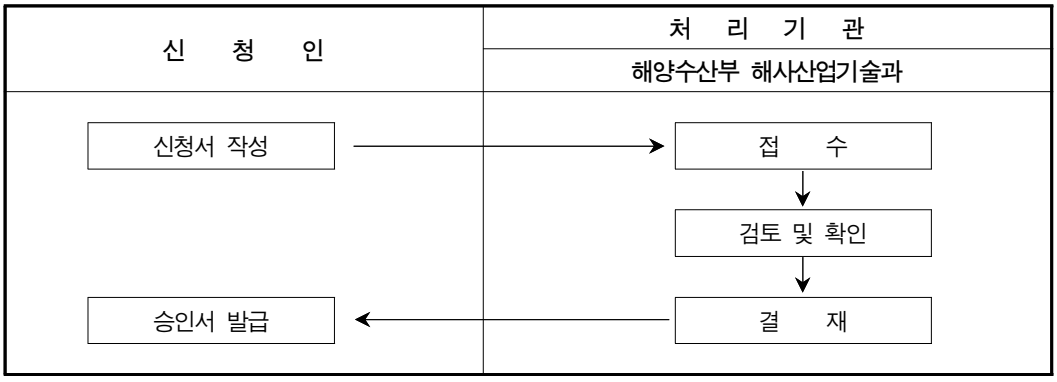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외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기관이 해당 시험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가 해당 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당 시험설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험의 외부의뢰 타당여부 확인

::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3.24〉

(앞 쪽)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

신청인	①명 칭		
	②대표자의성명		
	③주 소		
신 청 내 용 (다른 설비 이용 또는 의뢰시험 내용)		④ 시험항목	
		⑤ 시험설비	
⑥ 신 청 사 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일부시험을 타 시험기관에 의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외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기관이 해당 시험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가 해당 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지정제조(정비)사업장 지정사항 변경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20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25일, 변경의 경우 1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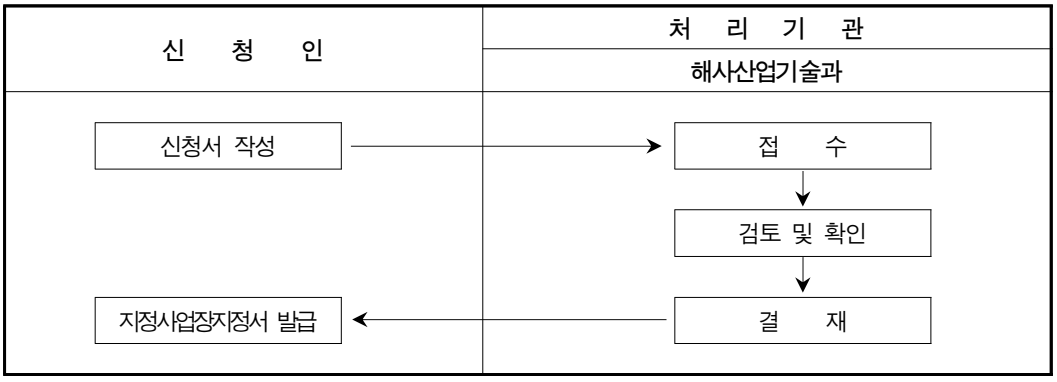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
  2.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 수수료 : 변경 지정품목 당 3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시설·설비, 제조·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별표 20])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5.7.1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사업장지정(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정사업장의 지정 21일 지정사업장의 지정 변경 14일

신청인	상 호	국문		전화	
		영문		팩스	
	대 표 자	국문		홈페이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국문			
		영문			
사업장 주소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증서 번호	품 명	규 격	형 식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 ]제조, [ ]정비)사업장의 지정(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사업장의 연혁 · 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지정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라.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마.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 지정사업장의 최초 지정 시 : 100,000원, 1품목 추가 시 30,000원 · 지정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당 3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기안 및 결재	→	지정사업장지정서 교부 또는 적합통보 (변경의 경우)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시험품목 추가지정 등)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8)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처리기간 2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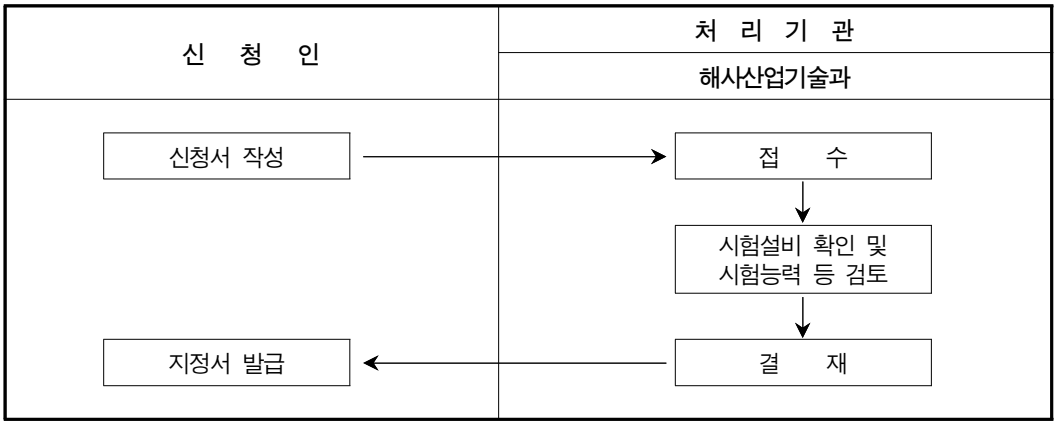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2.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국가기술자격증이나 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교정 관리계획서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 계획서(다른 시험기관이나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다른 시험기관이나 제조자의 명칭, 소제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임차설비를 이용 또는 의뢰하려는 시험의 종류
   다.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6.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적은 서류
7.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서(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수 수 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시험설비 확인 및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품목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적합여부 확인
-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품목 중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5.7.15.〉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 ]지정시험 품목 변경 [ ]시험내용 변경 [ ]지정 받은 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명 칭	국문		
		영문		
	대표자의 성명	국문		
		영문		
	주 소	국문		
		영문		
시험을 하려는 품목, 시험내용 또는 지정받은 사항 변경 내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 변경)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신고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규지정, 시험품목 또는 시험방법 변경 시〉 1. 지정시험기관의 연혁 · 설립목적 · 주 기능 ·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추가지정 시는 제외합니다) 2.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 등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 · 교정 관리 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 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명칭, 소재지, 주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나. 임차설비 이용 또는 의뢰하려는 시험의 종류 다.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5.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적은 서류 6. 해당 시험에 대한 국제공인시험 · 검사기관 인증서(추가지정 시 제외합니다)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시〉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규지정, 시험품목 또는 시험내용 변경 시〉 1. 국가기술자격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선박재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72조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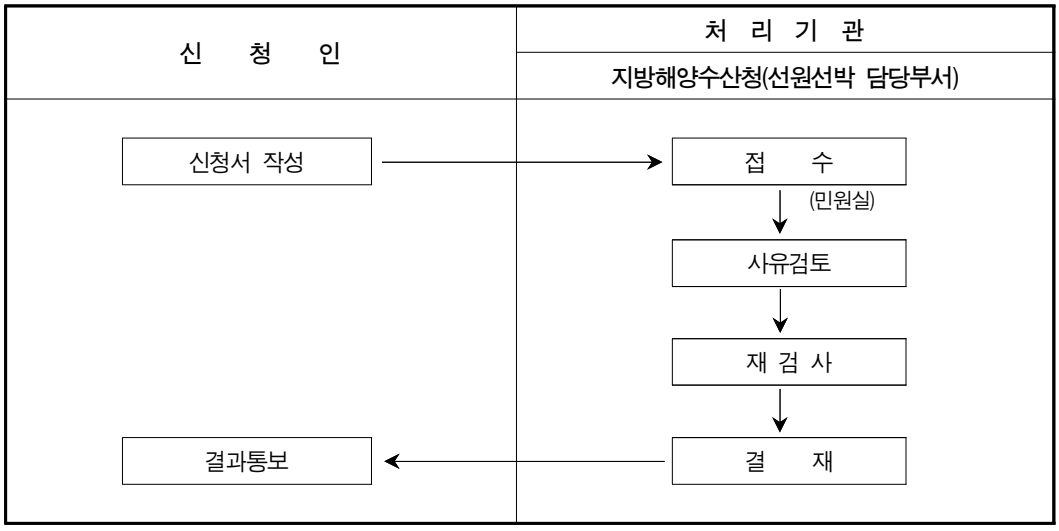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재검사(재검정, 재확인)신청서
  2. 사유서
- 수 수 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안전법 72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

::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0.11.28〉

(앞 쪽)

재검사(재검정, 재확인)신청서

※ □는 해당 란에 ✔표시하며, 뒷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 명 (대표자명)			
	② 주 소			
	③ 상 호	(전화:)		
④ 재검사등의 종류		□건조(별도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도면승인 □선체두께측정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및 확인 □예비검사 □복원성자료승인 □제한하중등확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 □컨테이너의 검정 □위험물의 적재 · 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		
⑤ 전회 검사기관			⑥ 검사완료일자	
선박	⑦ 선 명		⑧ 선박번호 또는 제조번호	
	⑨ 선 적 항		⑩ 총 톤 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⑪ 품 명		⑫ 규격 · 형식	
	⑬ 제조번호		⑭ 검 사 번 호	
⑮ 신 청 사 유				
⑯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재검정, 재확인)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컨테이너 정기(계속)점검방법 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24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2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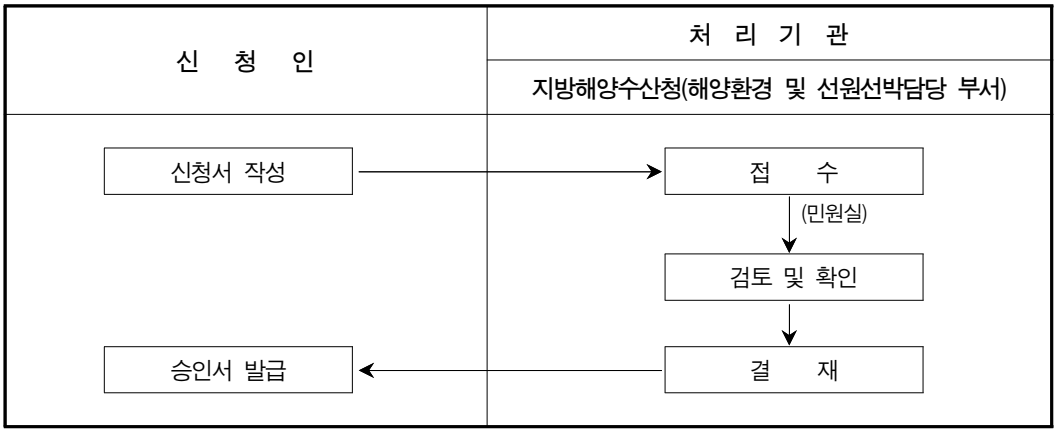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신청서
2. 회사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3.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컨테이너의 종류별·규격별 보유현황

나. 정기(계속)점검계획(조직 및 실시요령을 포함한다)

다. 정기(계속)점검기준(점검항목 및 판정기준)

라. 정기(계속)점검기록, 정기(계속)점검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구조·강도 등에 관한 서류의 관리방법

4.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08.3.14〉

(앞 쪽)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신청서

신청인	①명칭 또는 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장	④명 칭			
	⑤소재지			
⑥승인을 받기 위하여 하는 컨테이너의 종류·규격				
⑦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정기(계속)점검방법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회사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컨테이너의 종류별·규격별 보유현황 나. 정기(계속)점검계획(조직 및 실시요령을 포함한다) 다. 정기(계속)점검기준(점검항목 및 판정기준을 포함한다) 라. 정기(계속)점검기록, 정기(계속)점검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구조·강도 등에 관한 서류의 관리방법 3.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8)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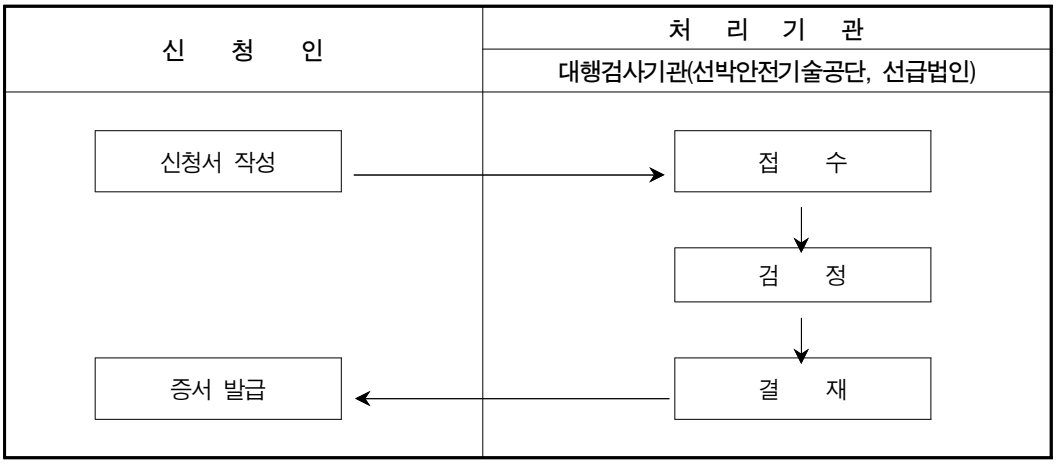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검정신청서
  2. 형식승인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4. 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

- 수수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안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 여부 확인

::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검 정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제조자	⑤ 상 호			
	⑥ 주 소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⑤ 형식승인 증서번호	⑥품 명	⑦ 규 격	⑧ 형 식	⑨ 수량	⑩ 제조번호	⑪ 제조일자

⑫ 검정요청일		⑬ 검정 장소	
⑭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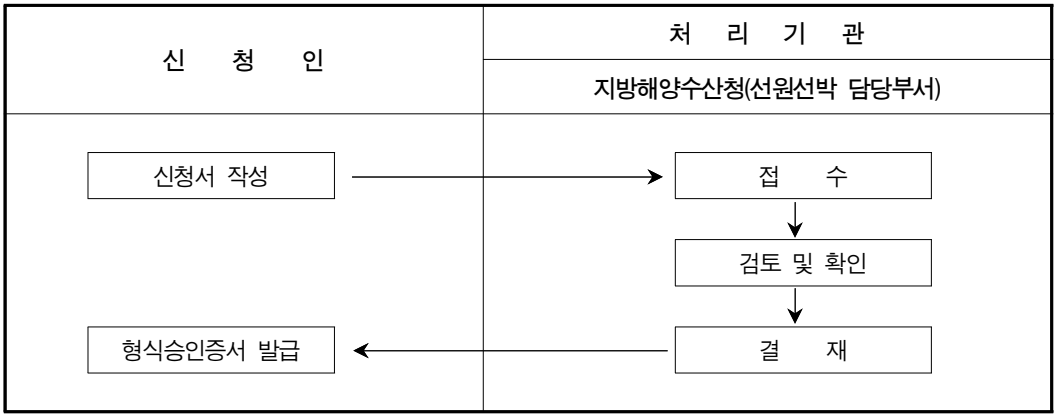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형식승인신청서
  2.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
  5.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6. 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7.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8. 제3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품목당 3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 관련서류 및 형식승인신청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

::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형 식 승 인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상 호	국문		② 전 화	) -	
		영문		③ 팩 스	) -	
	④ 대표자	국문		⑤ 홈 페 이 지		
		영문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주 소	국문				
		영문				
제조자 (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에 기재)	⑧ 상 호 대표자	국문				
		영문				
	⑨ 주 소	국문				
		영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⑩ 품 명					
	⑪ 규 격					
	⑫ 형 식					
⑬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형식승인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컨테이너 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23조제4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2)
- 접수 및 처리기관 :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처리기한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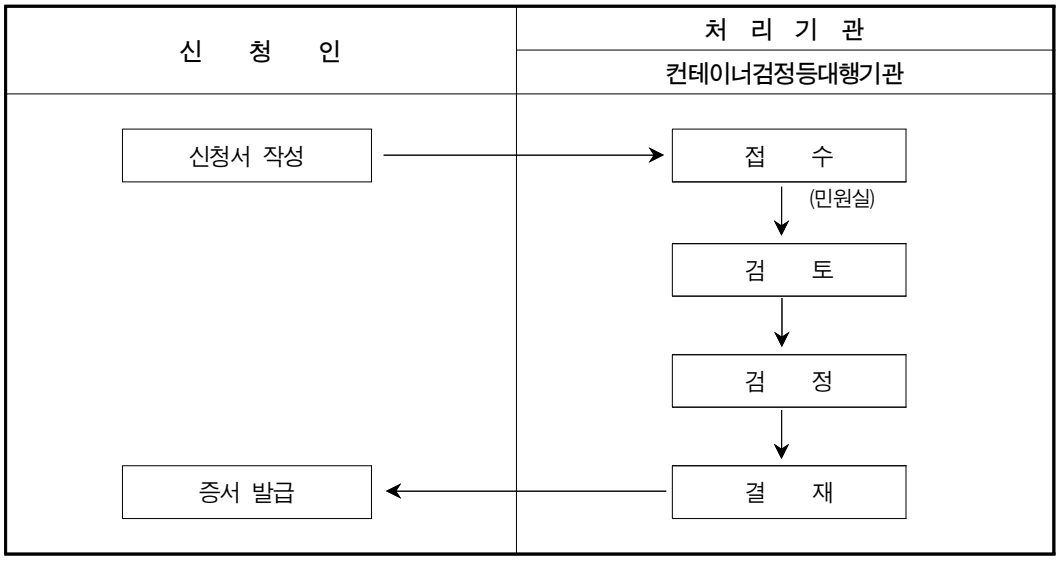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컨테이너검정신청서

- 수수료 : 사례별로 2000원 또는 3000원(지정검정기관에 신청 시 지정검정기관의 수수료기준에 의함)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컨 테 이 너 검 정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성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형 식				
⑤ 컨 테 이 너 형 식 승 인 증 서 번 호			⑥ 컨테이너형식 승인일자	
검정을 받으려는 사업장	⑦ 명 칭			
	⑧ 소재지			
⑨ 검정을 받으려는 일자		년 월 일		
⑩ 제 조 번 호				
⑪ 수 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컨테이너 형식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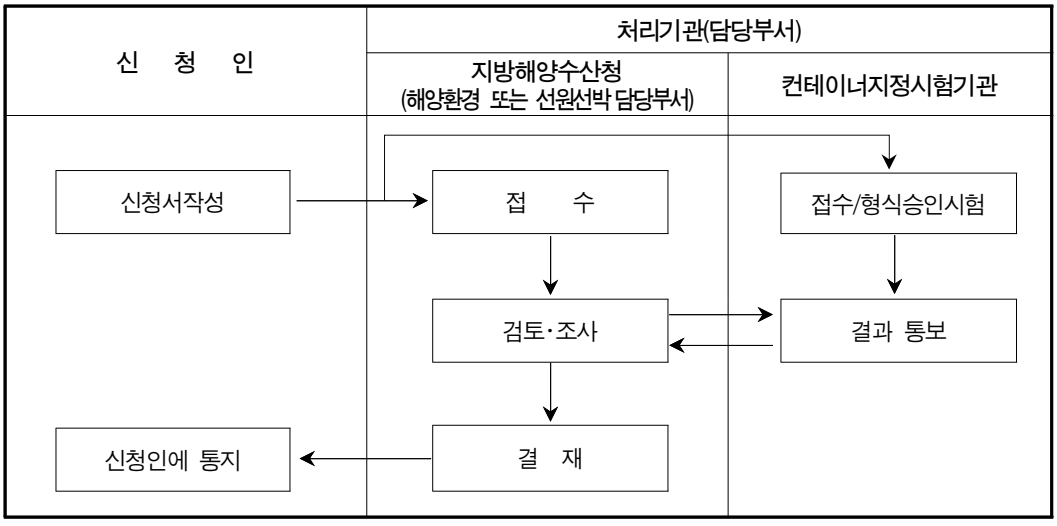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컨테이너형식승인신청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2.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시에 한함)
  3.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제출)

4. 컨테이너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제출)
5.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제출)

※ 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 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제출

- 수수료
  - 컨테이너형식승인 : 3000원
  -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별표27)에서 정한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서 컨테이너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컨테이너형식승인신청서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성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형 식				
⑤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② 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⑤ 형 식				
⑥ 형식증서번호				
변 경 사 항		⑦ 변 경 전	⑧ 변 경 후	
⑨ 변 경 사 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국문		전 화	) -	
		영문		팩 스	) -	
	② 대표자	국문		홈 페 이 지		
		영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국문				
		영문				
컨테이너	⑤ 품 명					
	⑥ 규 격					
	⑦ 형 식			⑧ 제 조 번 호		
⑨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						
⑩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컨테이너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형식승인사항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 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 2.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형식승인사항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 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구조 등 변경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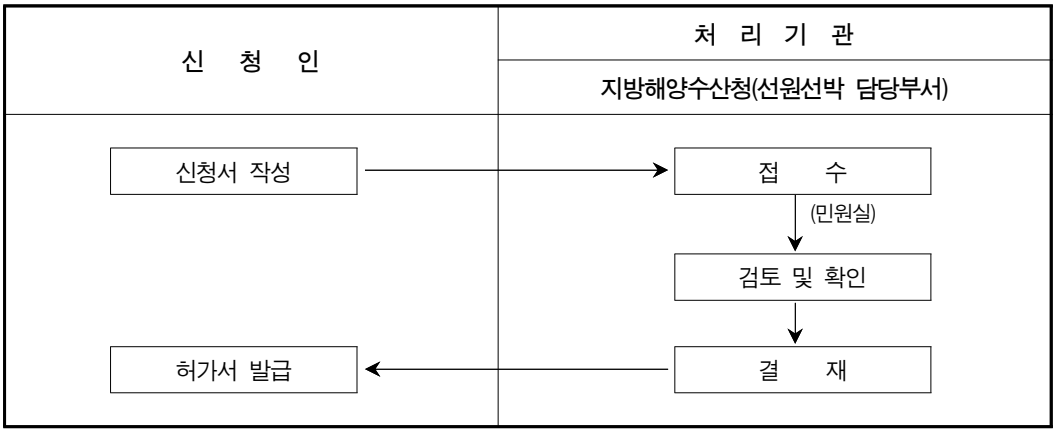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구조등변경허가신청서
2.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하는 도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가.「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산출한 계산서 및 복원성자료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 : 복원성자료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

::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선박구조 등 변경 허가 신청서

소 유 자	① 성 명 (대표자명)			
	② 주 소			
	③ 상 호	(전화 :)		
④ 선 명			⑤ 선박번호	
⑥ 선 적 항			⑦ 선 질	
⑧ 총 톤 수	톤		⑨ 용 도	
⑩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⑪변경하려는 사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구조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 2.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가.「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산출한 계산서 및 복원성자료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 복원성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협약증서 유효기간 연장 등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2)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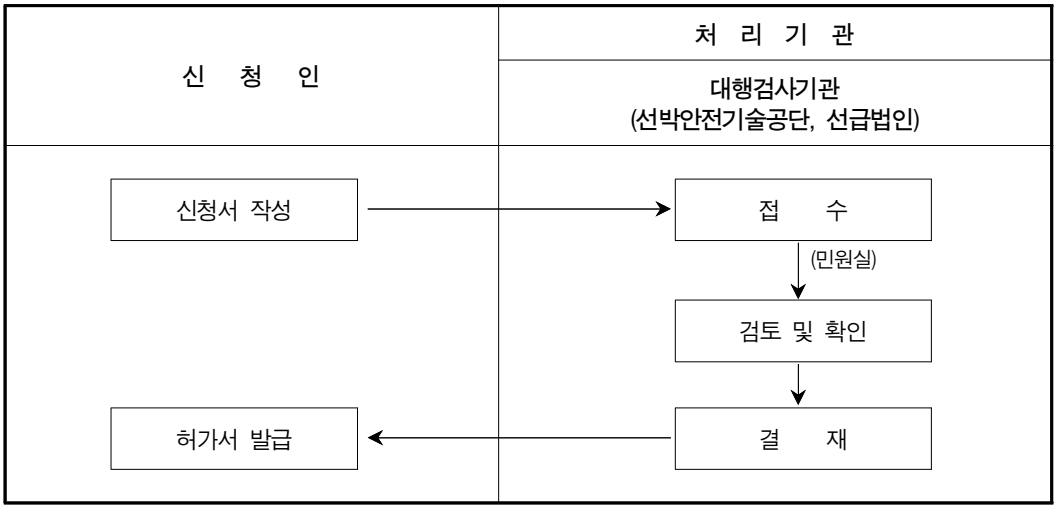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
  2. 해당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현재 비치하고 있는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또는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경우에 한함)

- 수 수 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기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효기간연장횟수는 1회로 한정
-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검사 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처음으로 도착하는 항구까지의 항해거리가 1천 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항해)에 사용되는 경우(국제협약검사증서로 한정) : 1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

소유자	①성명(대표자명)			
	②주 소			
	③상 호	(전화:)		
④ 선 명			⑤ 선 박 번 호	
⑥ 증 서 유 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 연 장 사 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해당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현재 비치하고 있는 국제협약검사증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협약증서 교부 등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2)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2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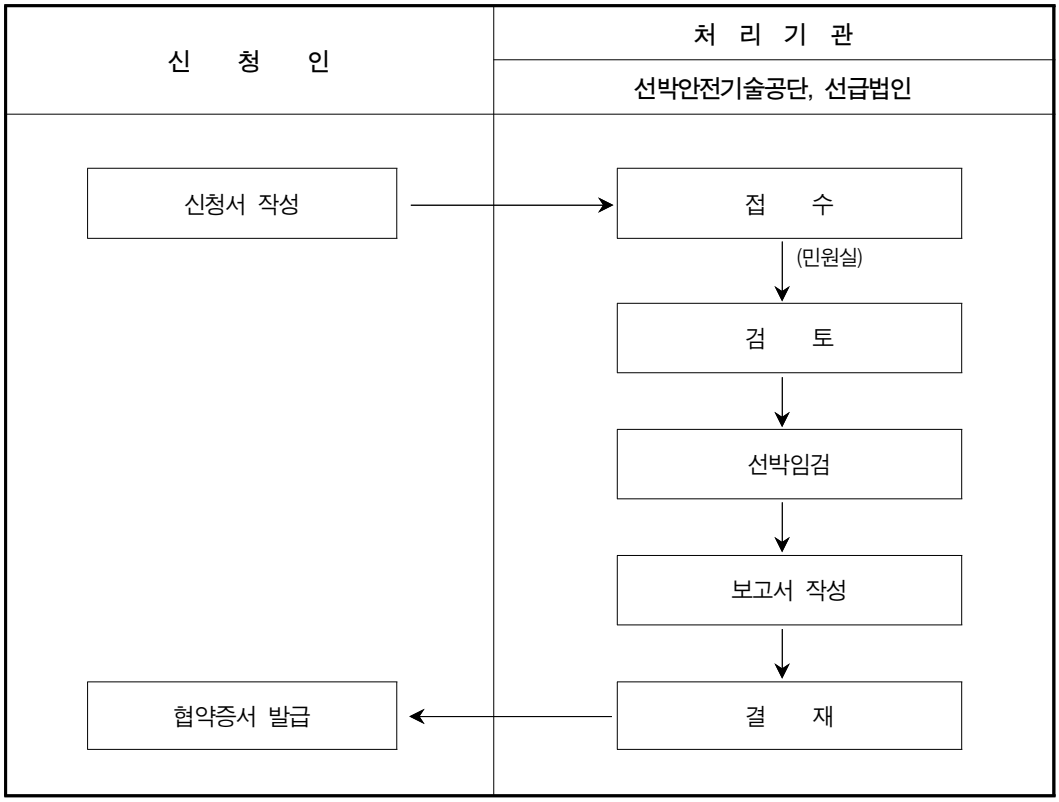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국제협약검사신청서
  2. 국제협약검사증서(증서를 최초로 발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3.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4.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
  5.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
- 수수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안전법 및 선박안전법 관련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적합 여부 확인
- 협약검사의 경우,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SOLAS, MARPOL, LL 등)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

::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국제협약검사신청서

※ □는 해당 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검사종류	□ 여객선안전검사(PS) □ 화물선안전무선검사(SR) □ 화물선안전구조검사(SC) □ 화물선안전설비검사(SE) □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검사(IGC) □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검사(GC) □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검사(IBC) □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검사(BCH) □ 위험물운송적합검사(CDG) □ 국제만재흘수선검사(ILL) □ 그 밖의 검사( )			
소유자	② 성명(대표자명)			
	③ 주소	(전화:)		
	④ 상호	(전송:) (전자우편:)		
⑤ 선명			⑥ 선박번호	
⑦ 수검요청일자			⑧ 수검장소	
⑨ 비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⑩ 선적항		⑪ 선종	기선 범선 부선 기타
⑫ 선질	강 목 FRP 기타	⑬ 용도	
⑭ 총톤수	톤	⑮ 선박길이	미터
⑯ 추진기관	[kW] [PS] 대 [kW] [PS] 대	⑰ 무선설비	
⑱ 항해구역	구역		
⑲ 최대승선인원	명(여객 : 명, 선원 : 명, 임시승선자 : 명)		
구비서류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면제증서 또는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의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신청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때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선박검사증 등 재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2)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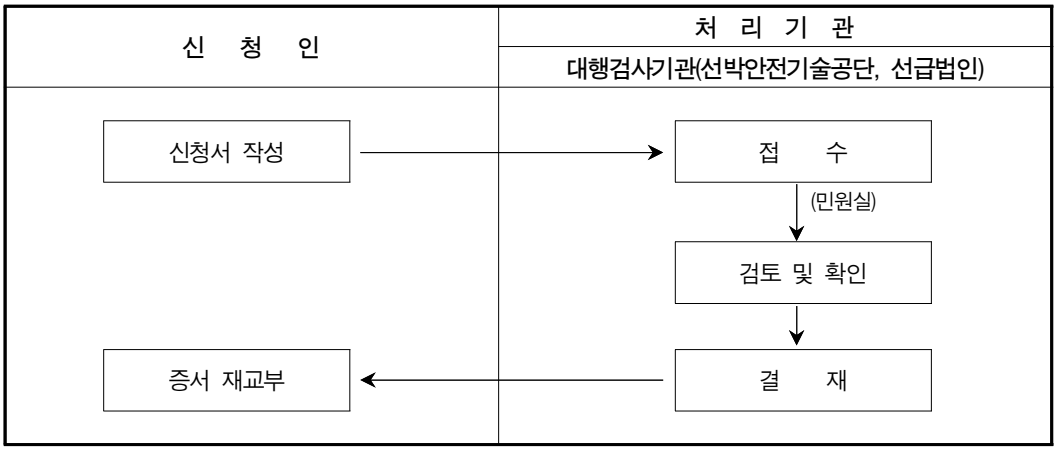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증서재발급신청서
  2.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3. 해당 증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4.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함)
- 수 수 료 : 대행검사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재발급 사유가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 별지 제77호서식

증서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일

※ □는 해당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① 성 명 (대표자명)			
	② 주 소			
	③ 상 호	(전화 :)		
④ 재발급 받으려는 증서의 종류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국제협약검사증서 □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형식승인증서 □형식승인변경승인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지정시험기관지정서 □승인서 □검정증서 □지정사업장지정서 □확인서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 □예비검사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승인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컨테이너검정증서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 □제한하중등확인서 □하역설비검사기록부 □예인선항해검사증서		
선 박	⑤ 선 명		⑥ 선 박 번 호 또는 제조번호	
	⑦ 선 적 항		⑧ 총 톤 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⑨ 품 명		⑩ 규 격 · 형 식	
	⑪ 제조번호		⑫ 검 사 번 호	
⑬ 신 청 사 유				
⑭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증서 3.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2)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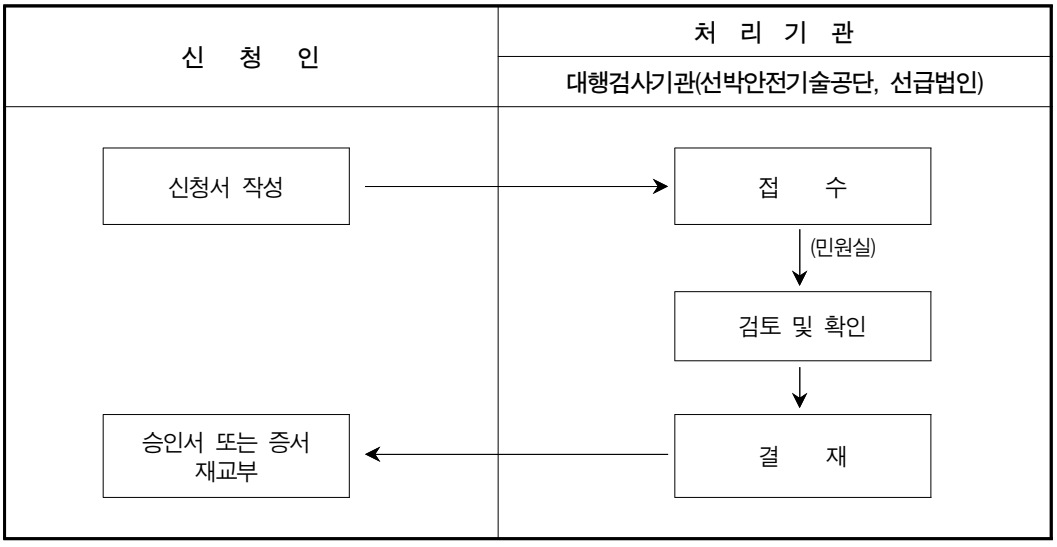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
2. 해당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현재 비치하고 있는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또는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경우에 한함)

- 수 수 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기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효기간연장횟수는 1회로 한정
-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검사 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처음으로 도착하는 항구까지의 항해거리가 1천 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항해)에 사용되는 경우(국제협약검사증서로 한정) : 1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

소유자	① 성명(대표자명)			
	② 주 소			
	③ 상 호	(전화:)		
④ 선 명			⑤ 선 박 번 호	
⑥ 증 서 유 효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 연 장 사 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해당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현재 비치하고 있는 국제협약검사증서

210㎜×297㎜[일반용지

선박용물건 예비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8)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2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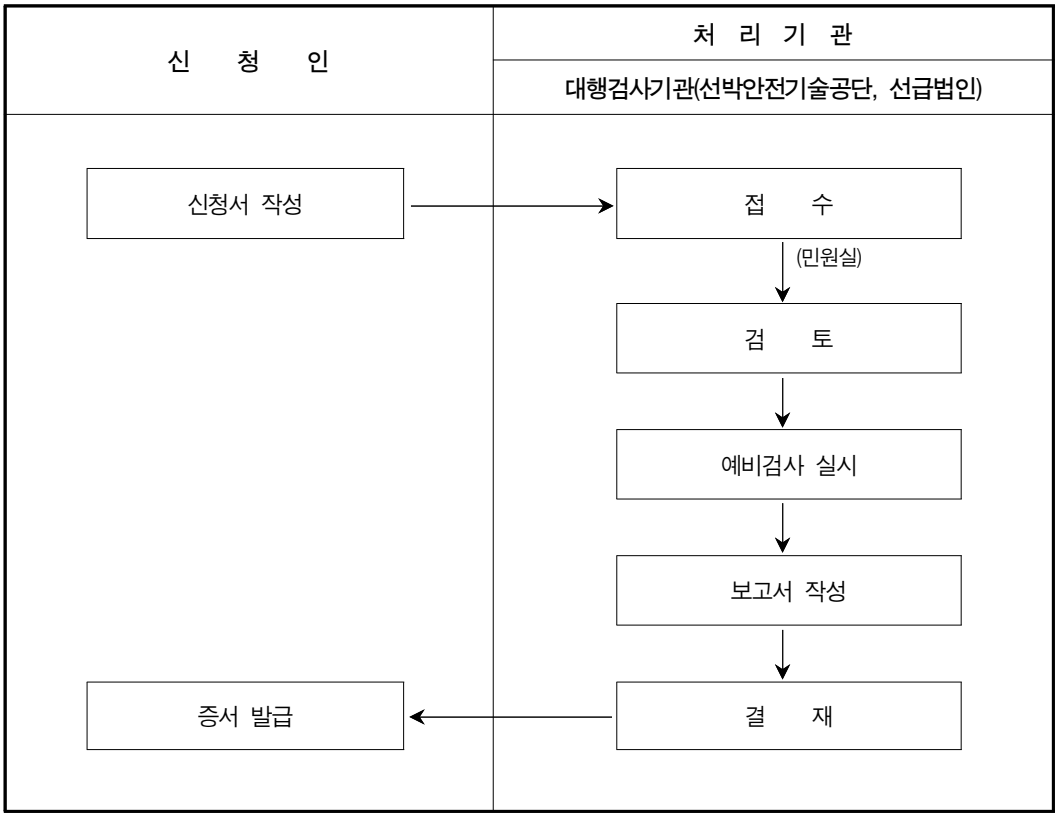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예비검사신청서
  2.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한 승인받은 도면
- 수 수 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기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시설기준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 해당 선박용물건이 선박시설기준에 규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산업규격(KS), 국제표준규격(ISO) 또는 협약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

::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예 비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 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전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⑤ 품 명	⑥ 규 격	⑦ 형 식	⑧ 수량	⑨ 제 조 번 호	⑩ 비 고

⑪ 수검요청일자	년 월 일	⑫ 수검장소	
⑬ 신 청 구 분	▫ 제 조 ▫ 개 조 ▫ 수리·정비 ▫ 수 입		
⑭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승인 받은 도면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건조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2)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 건조기간 + 2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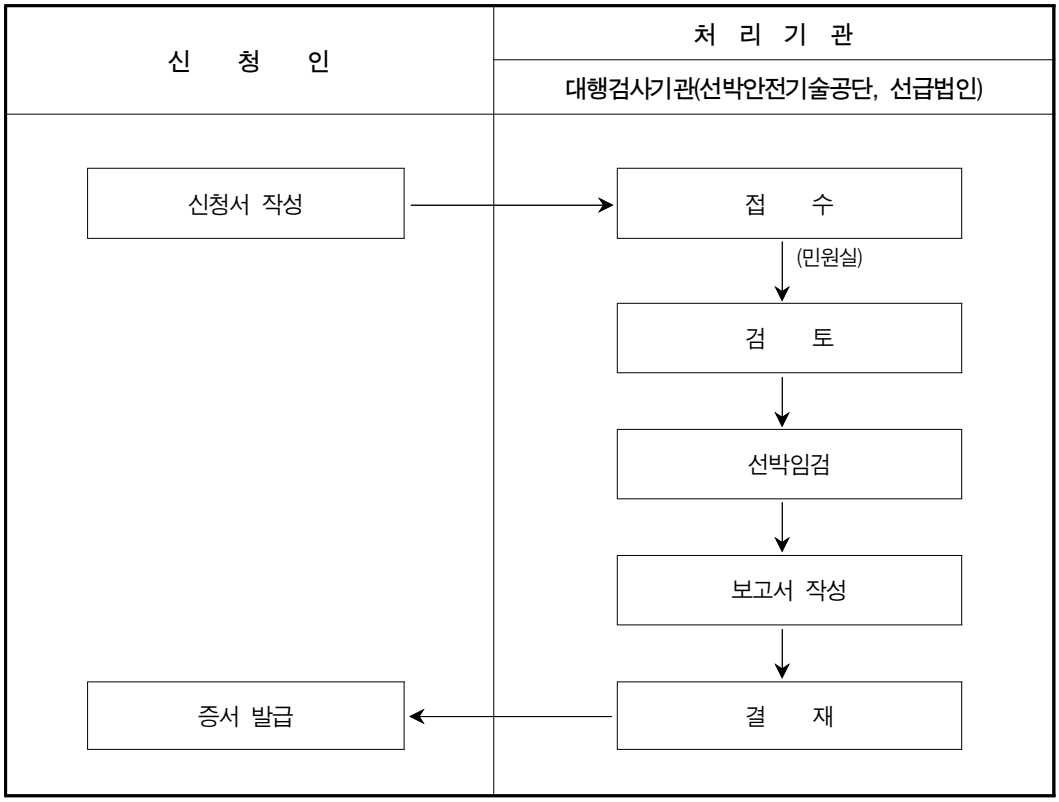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건조(별도건조)검사신청서
  2. 해당 선박의 승인받은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건조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3.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확인서, 예비검사증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수 수 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안전법 및 선박안전법 관련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적합 여부 확인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건 조(별 도 건 조)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조자	①성명(대표자명)	
	②주 소	
	③상 호	(전화 :)
소유자	④성명(대표자명)	
	⑤주 소	
	⑥상 호	(전화 :)

⑦건 조 번 호		⑧선 적 항	
⑨선 종	□기선 □범선 □부선 □기타	⑩선 질	강 목 FRP 기타
⑪용 도		⑫총 톤 수	톤
⑬선 박 길 이	미터	⑭추 진 기 관	[kW] [PS] 대 [kW] [PS] 대
⑮항 해 구 역	구역	⑯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⑰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⑱수검요청일자	년 월 일
⑲수 검 장 소			
⑳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건조(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건조검사 제출서류 가.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나. 검정증서·확인서 또는 합격증서·예비검사증서 2. 별도건조검사 제출서류 별도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검사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2)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 2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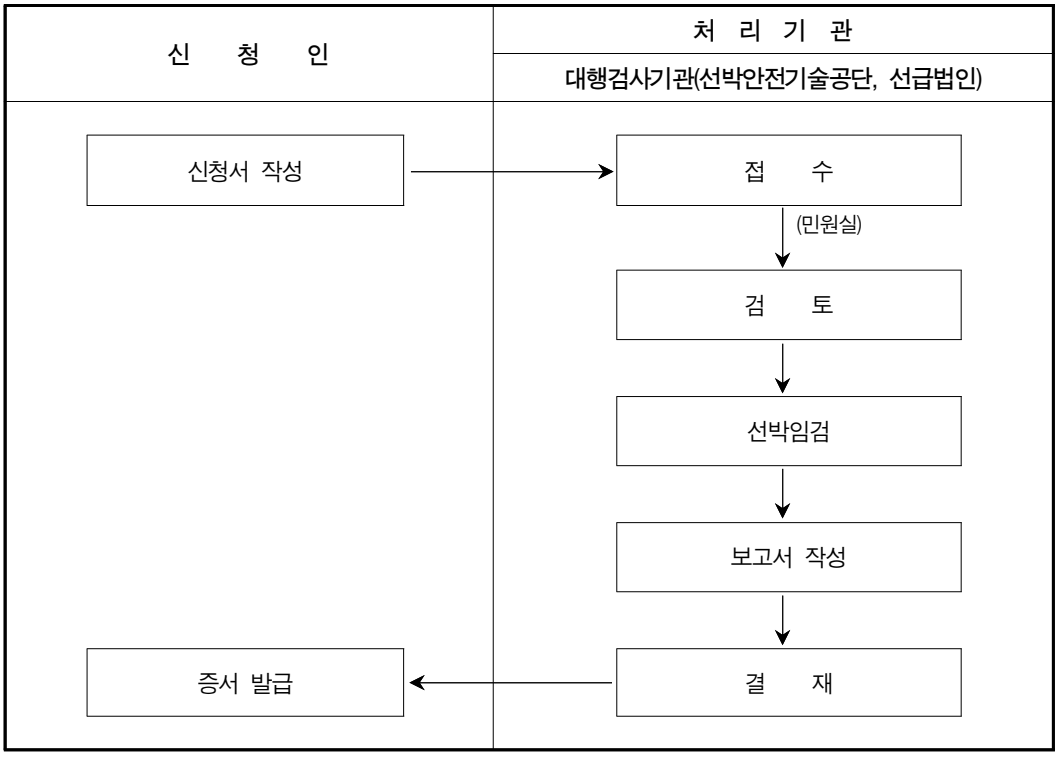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검사신청서
  2. 선박검사증서(증서를 최초로 발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3.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확인서, 예비검사증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해당 선박의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선박검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5. 선박의 운항계획서(임시항해검사만 해당)
  6.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특별검사만 해당)
- 수수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안전법 및 선박안전법 관련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적합 여부 확인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선 박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검 사 종 류		□최초의 정기검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제2종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특별검사		
소유자	②성 명 (대표자명)			
	③주 소	(전화 :)		
	④상 호	(전송 :) (전자우편 :)		
⑤선 명			⑥선 박 번 호	
⑦수검요청일자			⑧수 검 장 소	
⑨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주) 1. 임시검사 신청 시에는 그 이유 및 변경사항을 ⑨비고란에 적으십시오.
2.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 시에는 다음의 해당사항을 추가로 적으십시오.

⑩선 적 항		⑪선 종	□기선 □범선 □부선 □기타
⑫선 질	□강 □목 □FRP □기타	⑬용 도	
⑭총 톤 수	톤	⑮선 박 길 이	미터
⑯추 진 기 관	[kW] [PS] 대 [kW] [PS] 대	⑰무 선 설 비	
⑱항 해 구 역	구역		
⑲최대승선인원	명(여객 : 명, 선원 : 명, 임시승선자 : 명)		
⑳하 역 장 치	제한하중 : 제한각도 : 제한반경 :		
구 비 서 류	1.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2. 선박검사증서(최초의 정기검사시는 제외한다) 3. 해당 선박검사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4. 검정증서·확인서·예비검사증서 또는 하역설비검사기록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선박의 운항계획서(임시항해검사로 한정한다) 6.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특별검사로 한정한다)		

210㎜ ×297㎜[일반용지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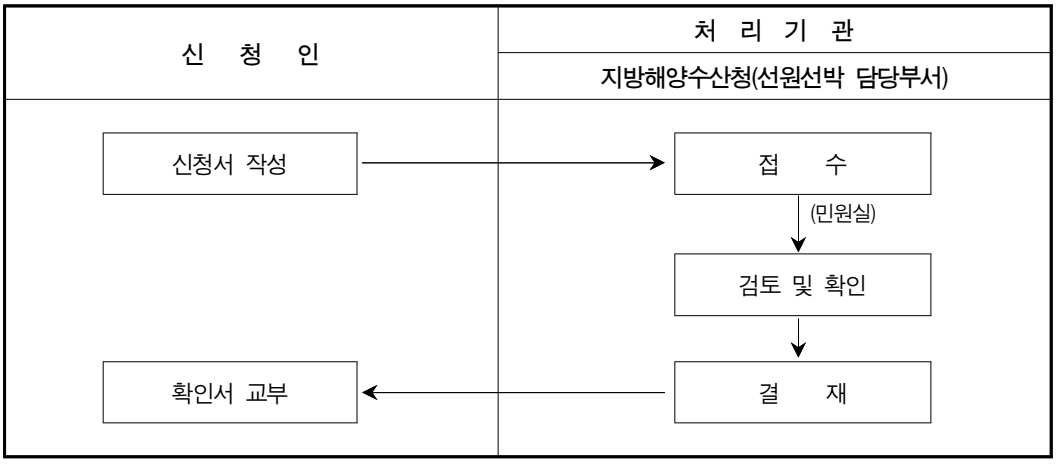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 확인신청서
2. 시설 내용서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4 제2호 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 별지 제54호서식

(앞 쪽)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신청서

사업자	①상 호	
	②성 명 (대 표 자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⑤시 설 의 소 재 지		
⑥시 설 면 적 (㎡)		
⑦인 원		정비기술자 : 명, 작업원 : 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팽창식구명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시설내용서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8)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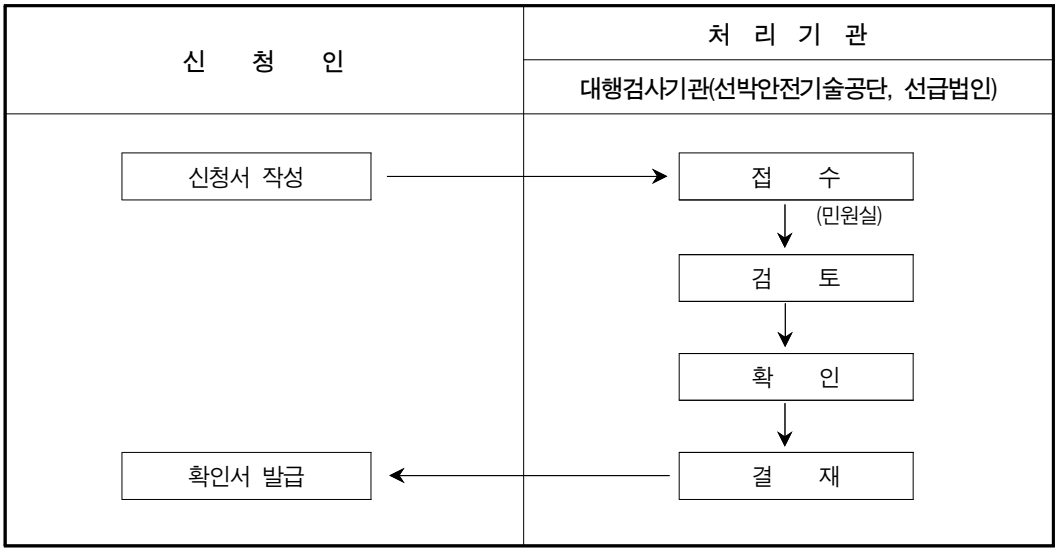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확인 신청서
- 수 수 료 :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 지정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제조 또는 정비일자
  -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 확인

::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확 인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⑤ 사업장 주소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⑥ 형식승인증서 번호	⑦ 품 명	⑧ 규격	⑨ 형식	⑩ 수량	⑪ 제조 (정비)번호	⑫ 제조 (정비)일자

⑬ 확인요청일자	년 월 일	⑭ 확인장소	
⑮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 제조 □ 정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정사업장 지정(변경)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제20조의1항,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 물건등에 관한 기준 제3조
-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25일, 변경의 경우 1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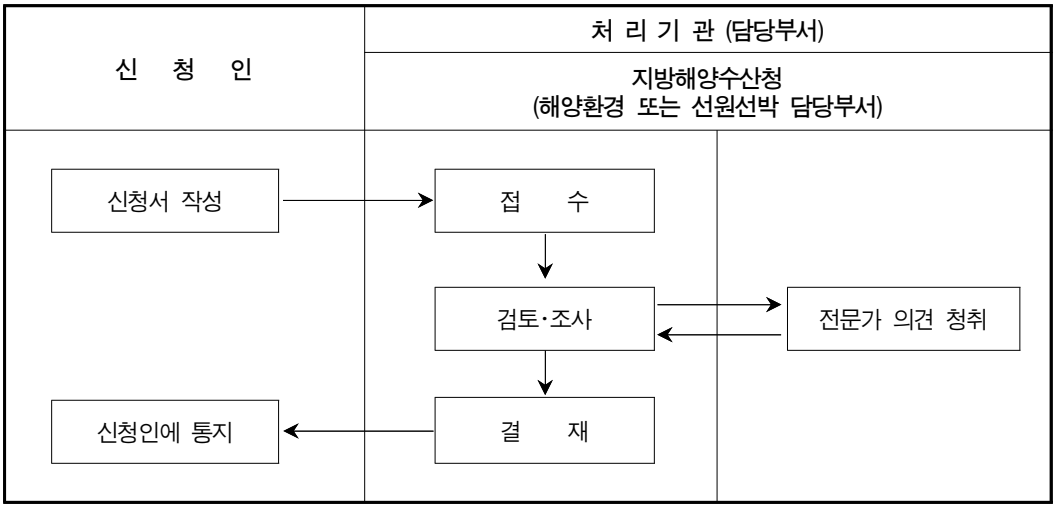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지정사업장지정(변경) 신청서
   나.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지정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마.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지정정비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가. 지정사업장지정(변경) 신청서
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 수수료
- 지정사업장의 최초 지정 시 : 100,000원, 1품목 추가 시 30,000원
- 지정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당 30,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설비, 제조·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지정사업자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 지정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가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정비 및 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상 호	국문		전화	) -
		영문		팩스	) -
	② 대 표 자	국문		홈페이지	
		영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국문			
		영문			
⑤사업장 주소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⑥ 형식승인증서 번호	⑦ 품 명	⑧ 규 격	⑨ 형 식

⑩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제조, □정비)사업장의 지정(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지정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라.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마.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210㎜ × 297㎜ [일반용지]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재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4조의4)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정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1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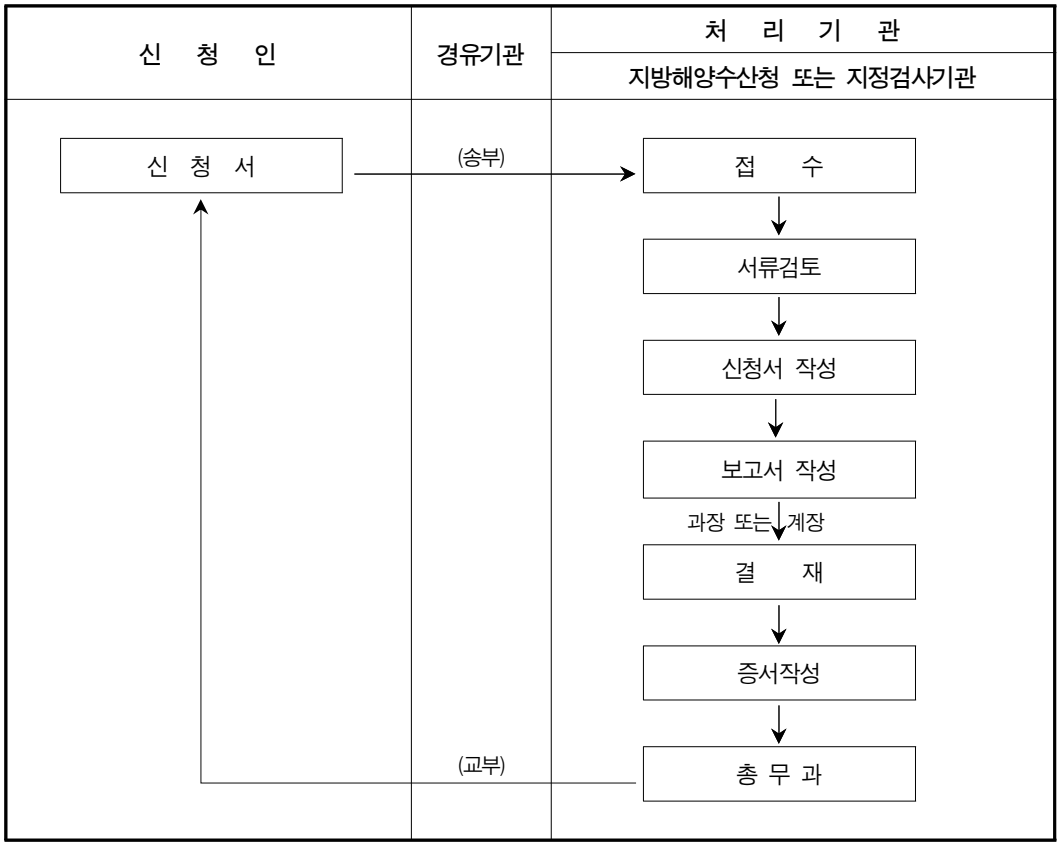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위험물운송적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및 변경교부에 한한다)
  2. 변경사유서(변경교부에 한한다)
  3. 분실사유서(분실된 경우에 한한다)
- 수 수 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2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화재탐지 및 소화장치 등의 각종설비와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 위험물 선박운송 저장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3〉

위험물운송적합증 [ ] 발 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발급: 3일 재 발 급: 즉시

선박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박번호
	위험물운송적합증 번호 (변경발급 및 재발급 시 기재)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연월일 (변경발급 및 재발급 시 기재)	
	신청사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4조의4)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위험물운송적합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및 변경발급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위험물적재 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4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정검사기관(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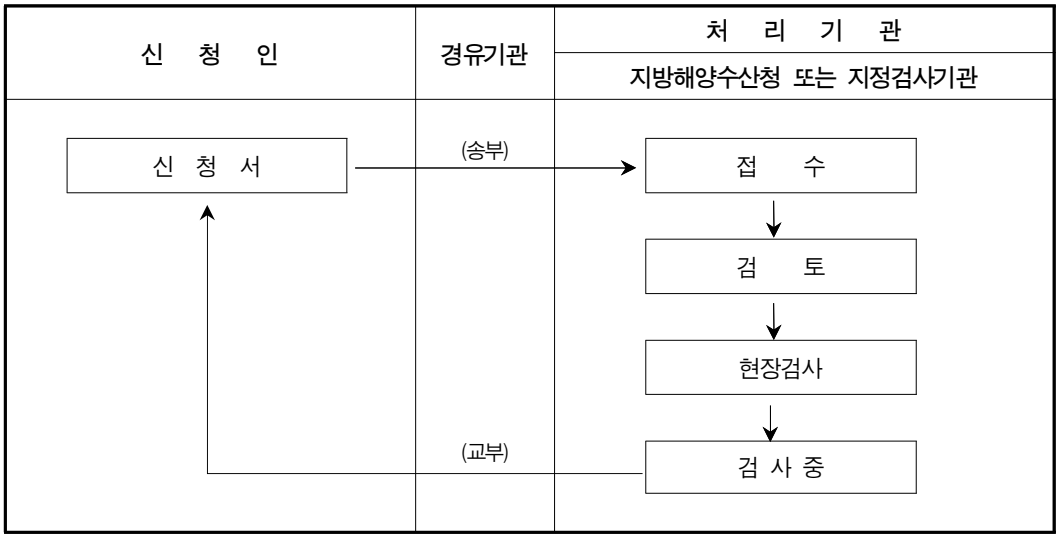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포장명세서 1부
  2. 화물송장 1부
- 수 수 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4조 위험물의 적재방법, 당해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포장의 사용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여부

:: 위험물 선박운송 저장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Certificate No.

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

Stowage Certificate of Dangerous Goods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선 박 Ship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Shipowner's Name & Address				1
	선박명차 Ship's Name and Voyage No.	2	선적항 및 선박국적 Port of Registry & Nationality		3
	선박번호 Official No.	4	항행구역 Navigation Area		5
	총톤수 Gross Tonnage	6	선박의 용도 Kind of Ship		7
	적재항 및 출항예정일 Port of Loading & Sailing on/about	8	양하항 및 도착예정일 Port of Discharging & Arrival on/about		9
위험물 Dangerous Goods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 유엔번호 및 분류 Number, Kind and Quantity of Packages, Proper Shipping Name, UN No. & Class/Division		10	적재장소 Location of Loading	11
검사받을	장 소		일 시		
	성명 또는 명칭				
신청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검사담당자		전화번호		

위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포장명세서 1부 2. 화물송장 1부	수수료 없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4조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Dangerous Goods have passed our stowage inspection under the provision of the Paragraph 1, Article 204 of the Regulation for the Carriage and Storage of Dangerous Goods by Ships,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한글 및 영문)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위험물컨테이너수납 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정검사기관(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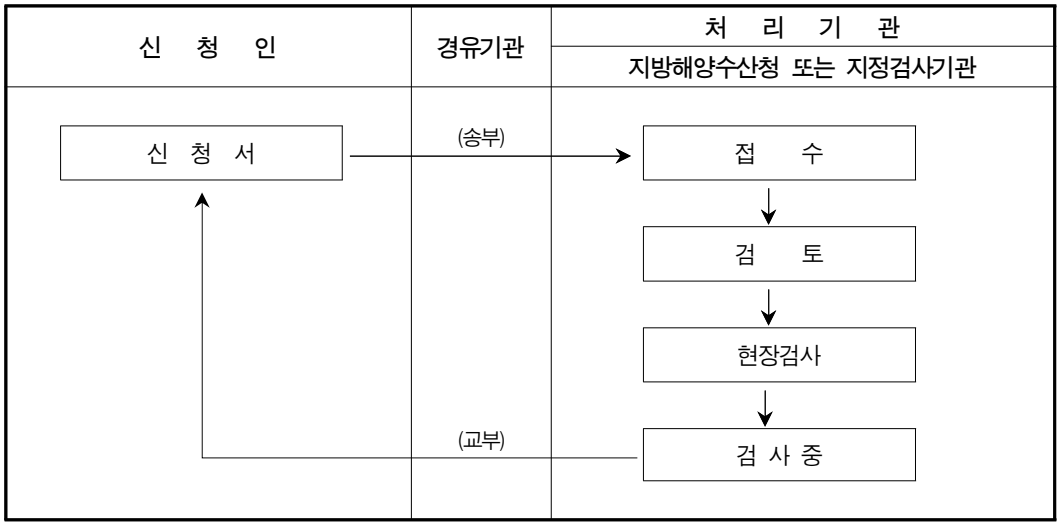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포장명세서 1부
  2. 화물송장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 컨테이너 수납방법, 당해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포장의 사용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여부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3.10.〉

제 호
Certificate No.

위험물컨테이너(자동차) 수납검사증(신청서)

Container (Vehicle) Packing Certificate of Dangerous Goods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송하인 Shipper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Shipper's Name & Address					1
수하인 Consignee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Consignee's Name & Address					2
컨테이너(자동차) Container (Vehicle)	컨테이너번호(자동차번호) Container(Vehicle) No.	3	총중량 Total Weight of Container(Vehicle)			4
	크기 및 종류 Size & Type of Container (Vehicle)	5	혼적화물의 품명 및 수량 Description & Q'ty other than Dangerous Goods			6
선박 Ship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Shipowner's Name & Address	7	선박명 및 항차 Ship's Name and Voyage No.			8
	적재항 및 출항예정일 Port of Loading & Sailing on/about	9	양하항 및 도착예정일 Port of Discharge & Arrival on/about			10
위험물 Dangerous Goods	화물표시 Marks & Nos.	11	포장의 수 및 종류와 위험물의 명세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Dangerous Goods	12	총중량/순중량/용적 Gross Wt/Net Wt/㎥	13
	비고 Additional Information					14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처 Emergency Communication					15

검사받을	장소		일시	
	성명 또는 명칭			
신청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검사담당자		전화번호	

위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제1항(제27조제6항)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포장명세서 1부 2. 화물송장 1부	수수료 없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제1항(제27조제6항)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Dangerous Goods in the said container(vehicle) have passed our inspection under the provision of the Paragraph 6, Article 27, Paragraph 1 Article 205, or Paragraph 9 Article 205 of the Regulation for the Carriage and Storage of Dangerous Goods by Ships and provisions of IMDG Co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한글 및 영문)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위험물용기 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정검사기관(선급법인)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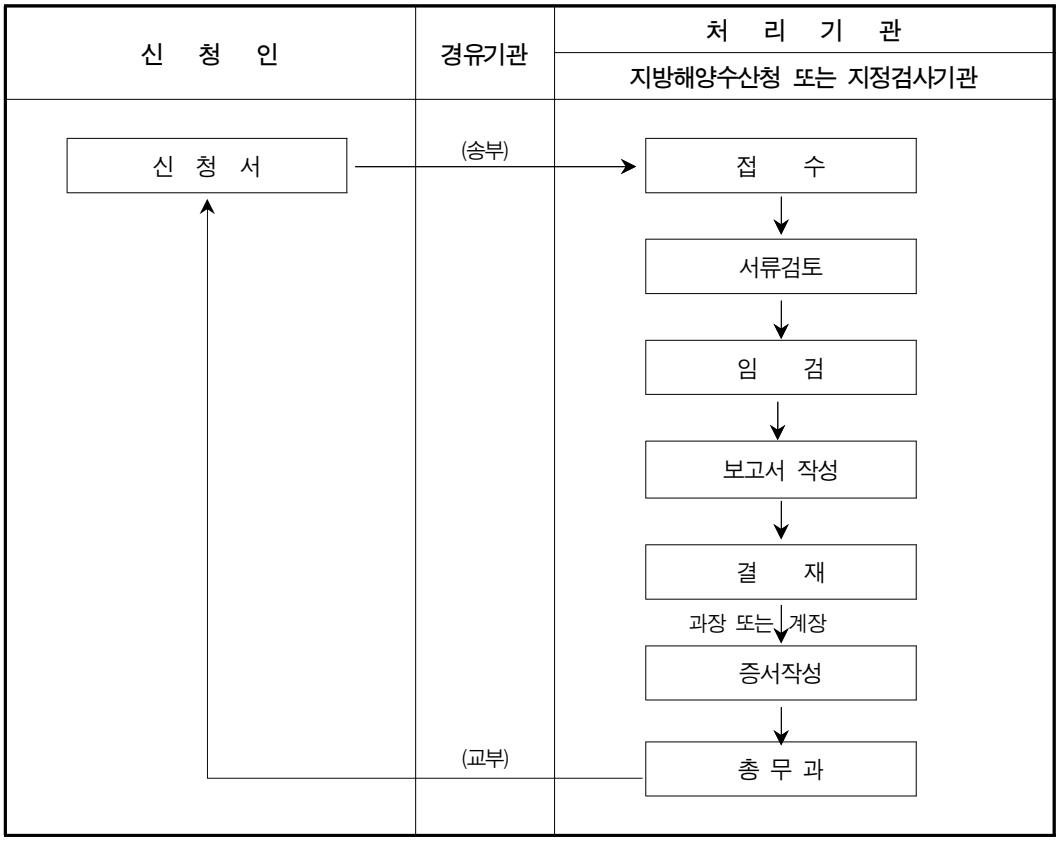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2.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 기준 적합여부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2조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

:: 위험물 선박운송 저장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3.3.24〉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험물용기	종 류	
	재 질	
제조번호		수 량
형 식		
표 시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		
제조자	명 칭	
	주 소	

위험물 운송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2.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6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7)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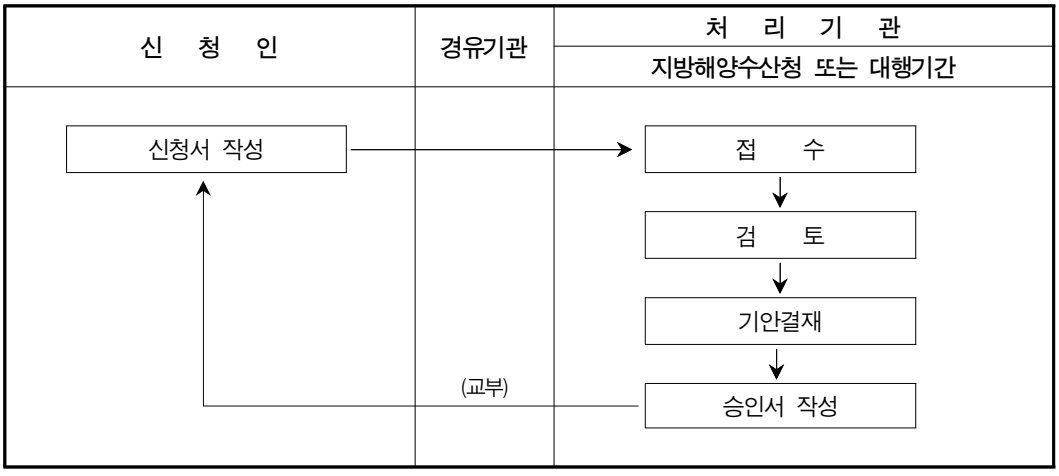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화물적재고박지침서 2부
- 수 수 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4 적부 및 고박 기준 적합 여부
-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일반요건 적합 여부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2.10.〉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선박제원	선박이름		선박종류	
	선박번호		총톤수	
	용도			

「선박안전법」 제39조제1항 및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2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승인서 작성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검사대행 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검사대행 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검사대행 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검사대행 기관	

53337-41311민
96.3.30 제정 (신문용지54g/㎡)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6제4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7)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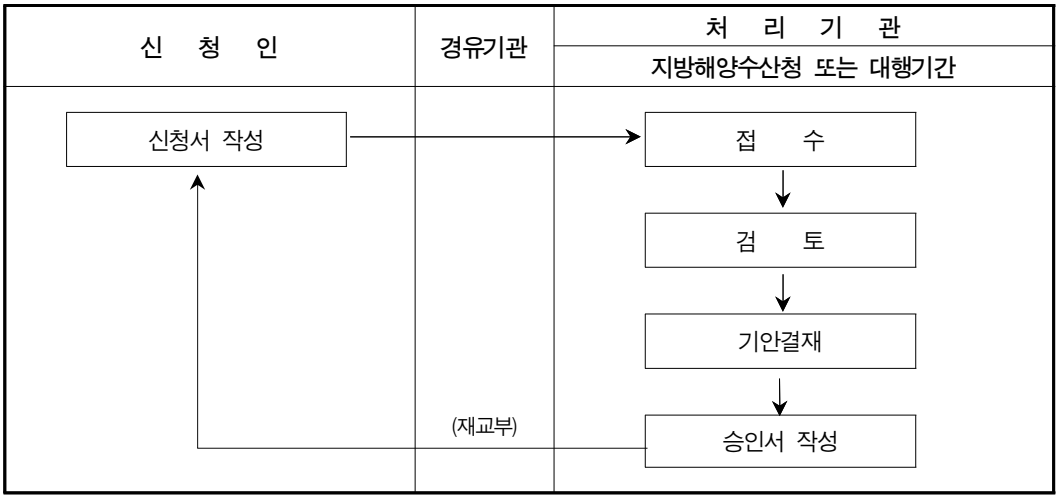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
- 수 수 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6 제5항 당초 승인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

::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1.2.10.〉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선박 제원	선박 이름		선박 종류	
	선박번호		총톤수	
	용도			
지침서	승인번호		발급연월일	
	재발급 신청 사유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재발급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승인서 작성	재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검사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검사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검사대행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검사대행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 곡류적재자료 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7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7)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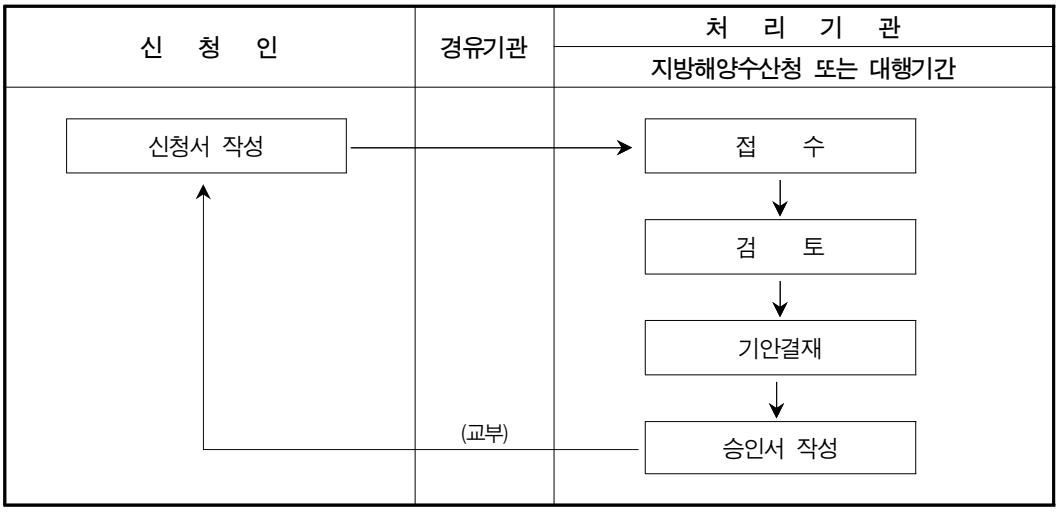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곡류적재자료 2부
- 수 수 료 : 1,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7조제2항 곡류적재시의 복원성 기준 등 적합여부

::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1.2.10.〉

곡류적재자료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선박 제원	선박 이름		선박 종류	
	선박번호		총톤수	
	용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곡류적재자료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곡류적재자료 2부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승인서 작성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 곡류적재도 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8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7)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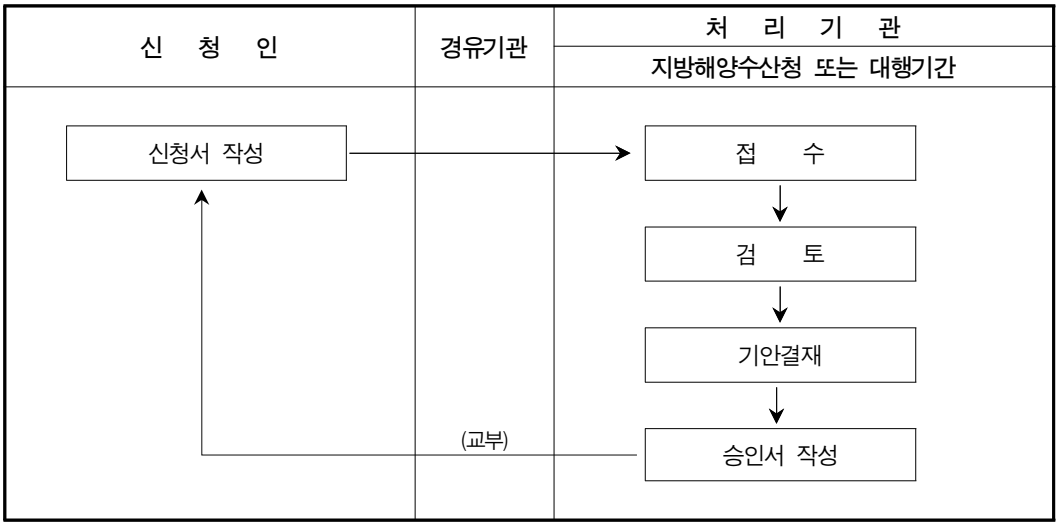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곡류적재도 2부
2.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복원성 계산서 1부

- 수수료 : 1,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8조제3항 및 제9조 곡류의 횡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 기준 및 복원성 요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2.10.〉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선박제원	선박 이름		선박 종류	
	선박번호		총톤수	
	용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곡류적재도 2부 2.「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9조 각 호에 적합한 복원성 계산서 1부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승인서 작성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존선 곡류적재도 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부칙 제4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7)
- 접수 및 처리기관 : 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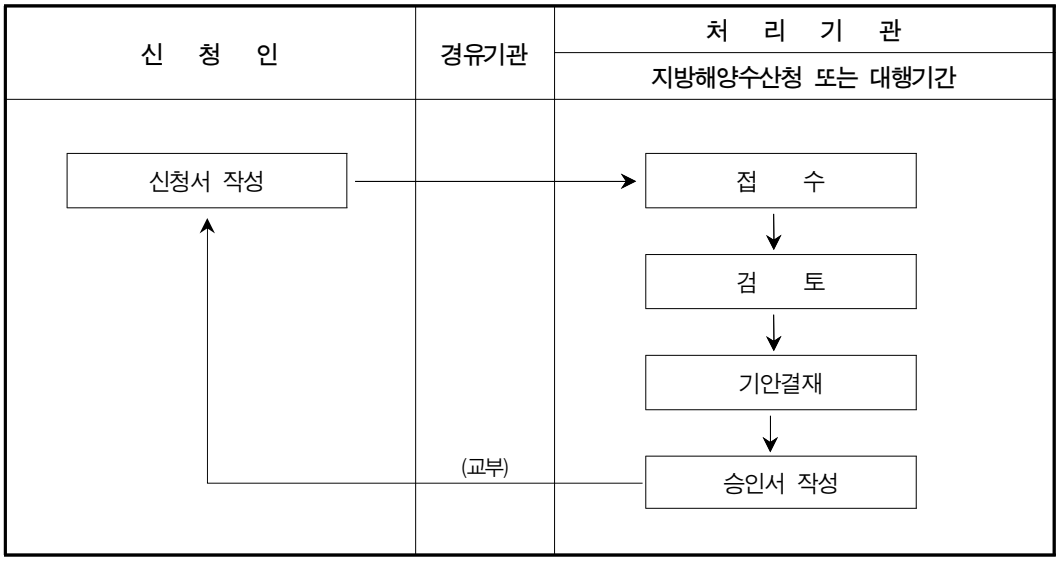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현존선의 곡류적재도 2부
2. 곡류적재에 따른 선박의 중심계산서 1부(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부칙 제4조제5항의 제1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산적곡류의 중심위치 및 횡경사모멘트를 나타내는 도면 1부(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부칙 제4조제5항제2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4. 선박의 복원성이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부칙 제4조제4항제2호라목에 적합한 계산서 1부(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부칙 제4조제4항제2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1,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부칙 제4조 곡류의 횡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 및 기준의 적합 여부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2.10.〉

현존선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선박제원	선박 이름		선박 종류	
	선박번호		총톤수	
곡류	종류			
	적재율			

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존선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존선의 곡류적재도 2부 2. 곡류적재에 따른 선박의 중심계산서 1부(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5항제1호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적곡류의 중심위치 및 횡경사모멘트를 나타내는 도면 1부(「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5항제2호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선박의 복원성이 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제2호라목에 적합한 계산서 1부(교통부령 제747호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중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제2호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승인서 작성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9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 (처리기간 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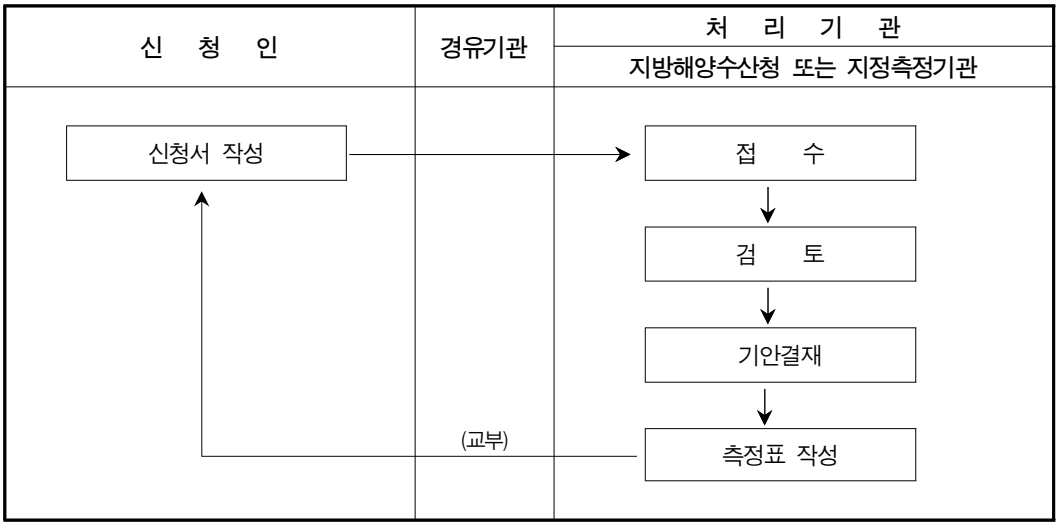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300톤 이하 : 2,000원
  - 300톤 초과 : 2,000원에 초과 매 20톤(20톤 미만은 20톤으로 본다)마다 200원을 더한 금액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제8호 액상화물질이 선박운송에 따른 동요 등으로 인하여 액상화 되지 아니하는 수분의 최대치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2.10.〉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액상화물질	종류		
	조성, 성분 및 입자의 크기		
	채취 연월일		
	제조지		
제조자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 소재지)		전화번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를 측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측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300톤 이하 : 2,000원 - 300톤 초과 : 2,000원에 초과 매 20톤(20톤 미만은 20톤으로 본다)마다 200원을 더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측정표 작성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9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 (처리기간 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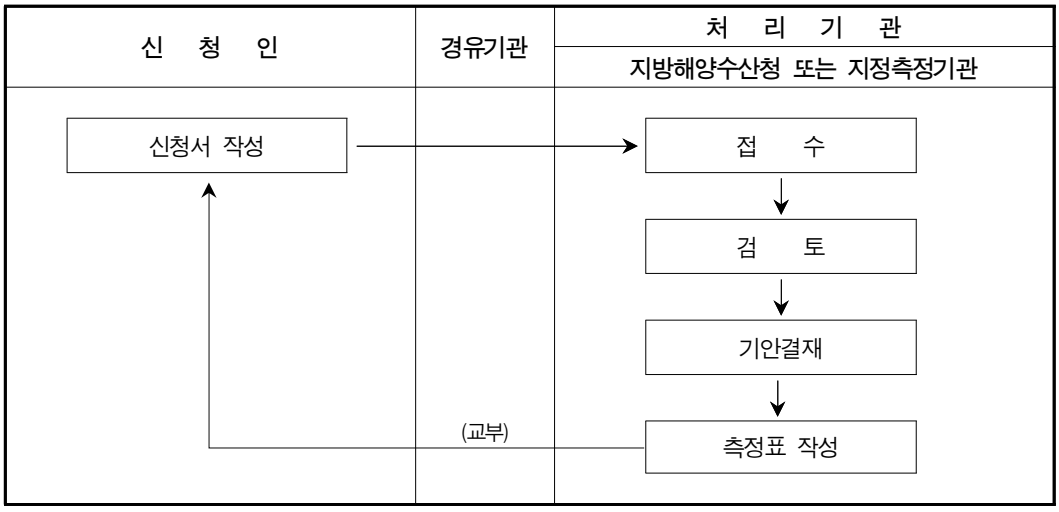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300톤 이하 : 2,000원
  - 300톤 초과 : 2,000원에 초과 매 20톤(20톤 미만은 20톤으로 본다)마다 200원을 더한 금액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제7호 및 별표1 항해중에 액상화 할 우려가 있는 미세한 입상물질의 수분 측정량

::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1.2.10.〉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선박 제원	선박 이름		선박 종류	
	선박번호		총톤수	
	용도		적재예정일	
액상화물질	종류			
	집적 장소			
	집적 구분의 명칭			
	집적구 분마다의 질량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액상화물질의 수분함량을 측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측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300톤 이하 : 2,000원 - 300톤 초과 : 2,000원에 300톤을 넘는 20톤(20톤 미만은 20톤으로 본다)마다 200원을 더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측정표 작성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정측정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9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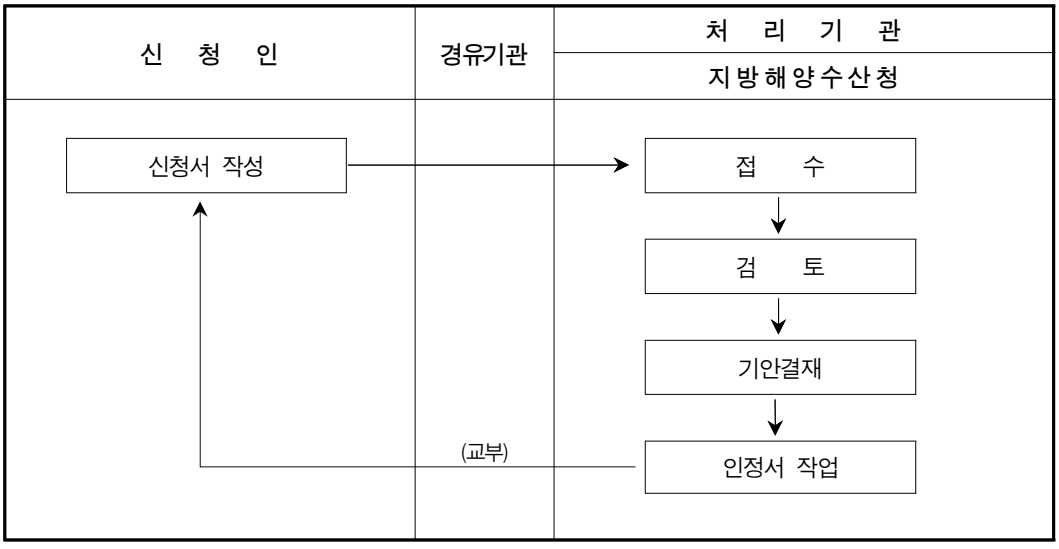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일반배치도 1부
  2. 선체중앙횡단면도 1부
  3. 선창내의 종통격벽구조도 1부

4. 밸러스트탱크에의 주배수계통도 1부
5.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현을 계산한 서류 1부
6. 밸러스트탱크를 사용하여 행하는 선박의 횡경사의 복원에 관한 계산서 1부

- 수수료 : 6,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9조제1항 함수액상화물질운반선인정기준 적합 여부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2.10.〉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선박제원	선박 이름		선박 종류	
	선박번호		총톤수	
	용도			

함수액상화물질을 적재하는 화물창		
유지해야 할 건현		
횡경사의 복원에 사용되는 선박평형수 펌프	명칭	
	능력	톤/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배치도 1부 2. 선체 중앙 횡단면도 1부 3. 화물창 안의 종통격벽 구조도 1부 4. 선박평형수 탱크 내부에의 주배수 계통도 1부 5. 건현을 계산한 서류 1부 6. 선박평형수 탱크를 사용하여 하는 선박의 횡경사 복원에 관한 계산서 1부	수수료 6,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인정서 작성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9조제8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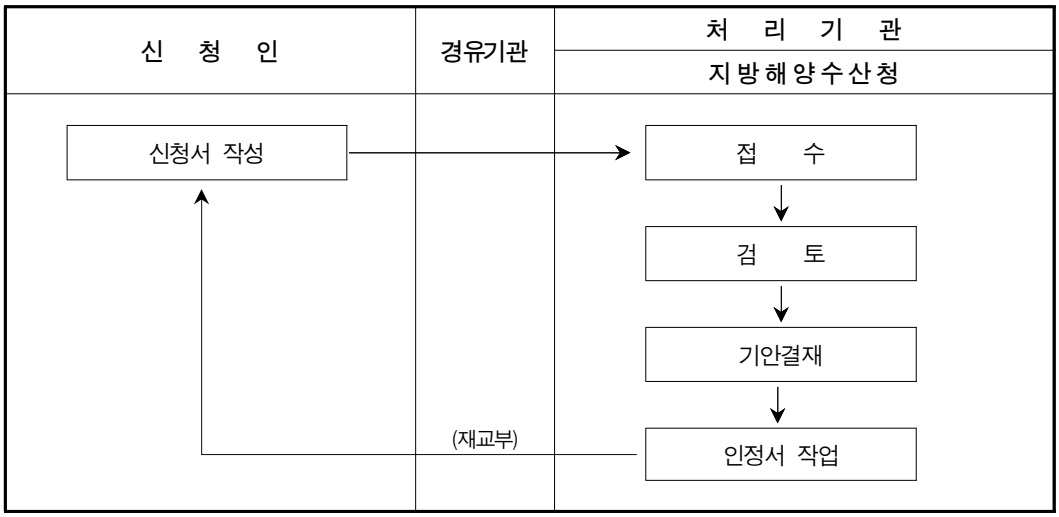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5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9조제8항 인정서 멸실 또는 훼손 여부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2.10.〉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선박제원	선박 이름		선박 종류	
	선박번호		총톤수	
	용도			
인정서	번호			
	발급 연월일			
	재발급 신청 사유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5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인정서 작성	재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27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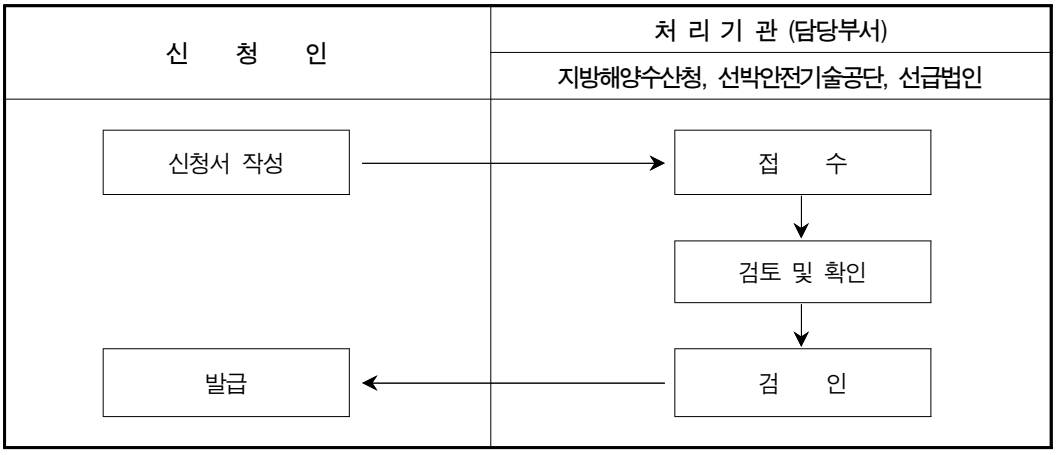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1부
- 수수료 : 3,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양환경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검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선박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총톤수		
	IMO 번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1부	3,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의2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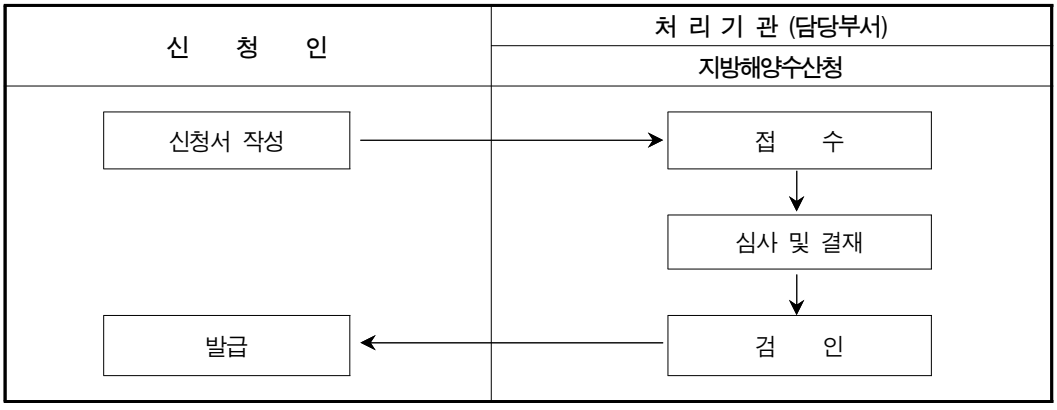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2부
- 수수료 : 3,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름화물이송 작업방법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6의2에 정하는 사항

::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소	(전화:)		
선박	③ 선명		④ 선박번호	
	⑤ 총톤수		⑥ 국적(선적)	
	⑦ 선박의 종류		⑧ 재화중량톤수	
	⑨ 주요항로		⑩ 건조연월일	
⑪ 비고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의2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2부	수수료
	3,000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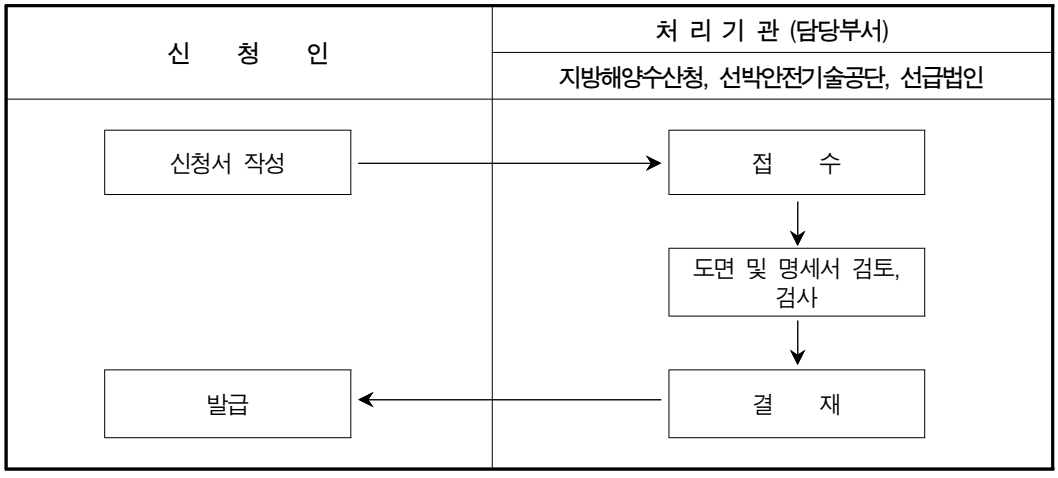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전체 명세서 1부
2. 처리용량의 정성적 분석서(최대처리용량과 터미널 네트워크 상의 최대 수용량, 비정상 상태의 경보 및 자동제어기능, 손상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등 포함

3. 전체 배치도
4. 제관 계통도(재질 및 치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중요부품 상세도
6. 전기 계통도
7. 제어 계통도
8. 안전 및 보호장치
9. 성능시험 계획서

- 수수료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35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할 경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6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항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⑤ 사업장 주소		(전화:)		
⑥ 대상물질				
⑦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시설명	형식	처리용량
⑧ 비고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전체 명세서 2. 처리용량의 정성적 분석서(최대처리용량과 터미널 네트워크 상의 최대 수용량, 비정상 상태의 경보 및 자동제어기능, 손상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전체 배치도 4. 제관 계통도(재질 및 치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중요부품 상세도 6. 전기 계통도 7. 제어 계통도 8. 안전 및 보호장치 9. 성능시험 계획서	별표 35에 따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의2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의2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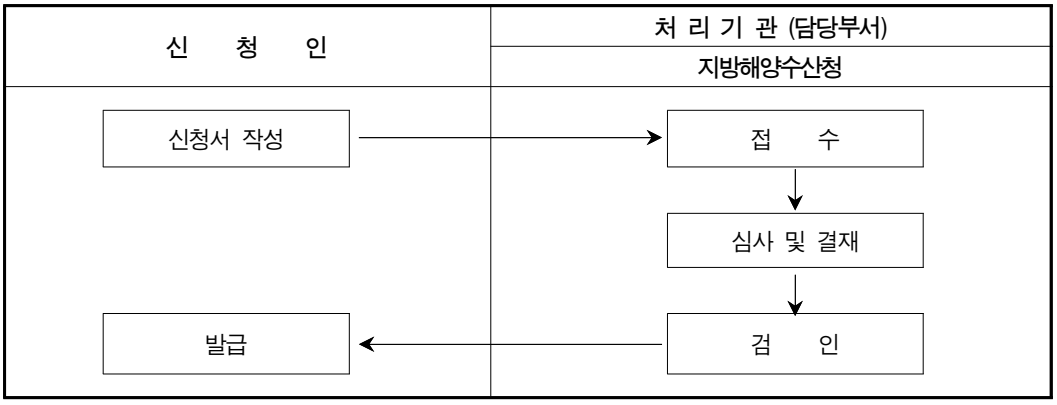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2부
- 수수료 : 3,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양환경관리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7에 대한 사항

:: 별지 제7호의2서식

<table>
<tr><td colspan="4">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td><td>처리기간
7일</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td><td colspan="3"></td></tr>
<tr><td>② 주소</td><td colspan="3">(전화:)</td></tr>
<tr><td rowspan="5">선박</td><td>③ 선명</td><td></td><td>④ 선박번호</td><td></td></tr>
<tr><td>⑤ 총톤수</td><td></td><td>⑥ 국적(선적)</td><td></td></tr>
<tr><td>⑦ 선박의 종류</td><td></td><td>⑧ 재화중량톤수</td><td></td></tr>
<tr><td>⑨ 주요항로</td><td></td><td>⑩ 건조연월일</td><td></td></tr>
<tr><td>⑪ 비고</td><td colspan="3"></td></tr>
</table>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2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2부	수수료
	3,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제1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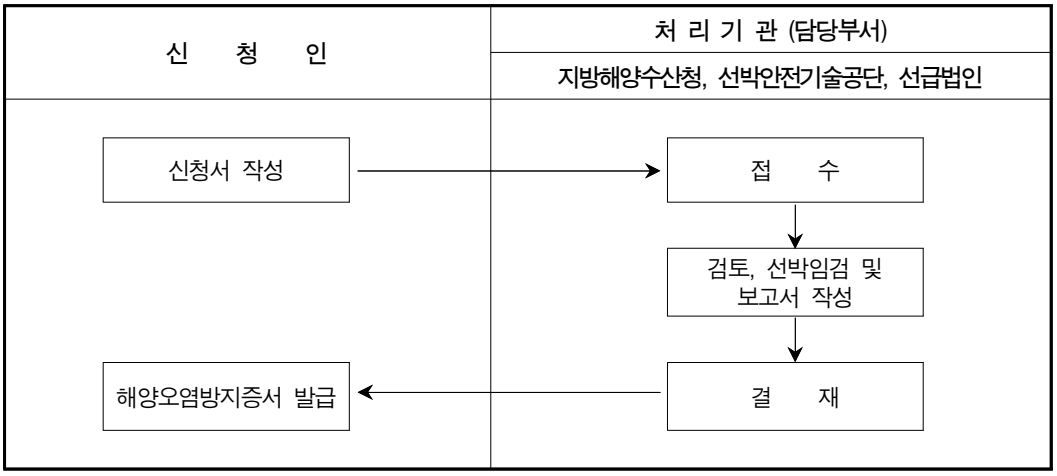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최초의 정기검사신청의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의 서류로 한정합니다)

가.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각 1부

나.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도면 각 1부

다.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의 검정합격증명서 및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

라. 선박의 구조도면 1부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바. 분리평형수탱크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사. 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아. 화물을 적재할 때의 복원성 및 선박이 손상될 때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 운반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자.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 1부

2. 최초의 정기검사 외의 정기검사·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신청의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1부

나.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와 구조 및 배치도면(해양오염방지설비가 신설 또는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다.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의 검정합격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양오염방지설비가 신설 또는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라.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해양오염방지설비가 신설 또는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35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제1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여부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선박소유자	① 명칭 또는 성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선박		⑤ 용도			
⑥ 선적항		⑦ 선박번호			
⑧ 총톤수		⑨ 재화중량톤수			
⑩ 선박의 길이		⑪ 항행구역			
⑫ 검사 희망일자		⑬ 발급 받고자 하는 증서명			
⑭ 검사 희망장소					
⑮ 비고					

위 선박에 대하여 (정기 · 제1종중간 · 제2종중간 · 임시)검사를 받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 ·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최초의 정기검사신청의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의 서류로 한정합니다) 가.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각 1부 나.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도면 각 1부 다.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의 검정합격증명서 및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 라. 선박의 구조도면 1부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바. 분리평형수탱크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별표 35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임시항해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52조제1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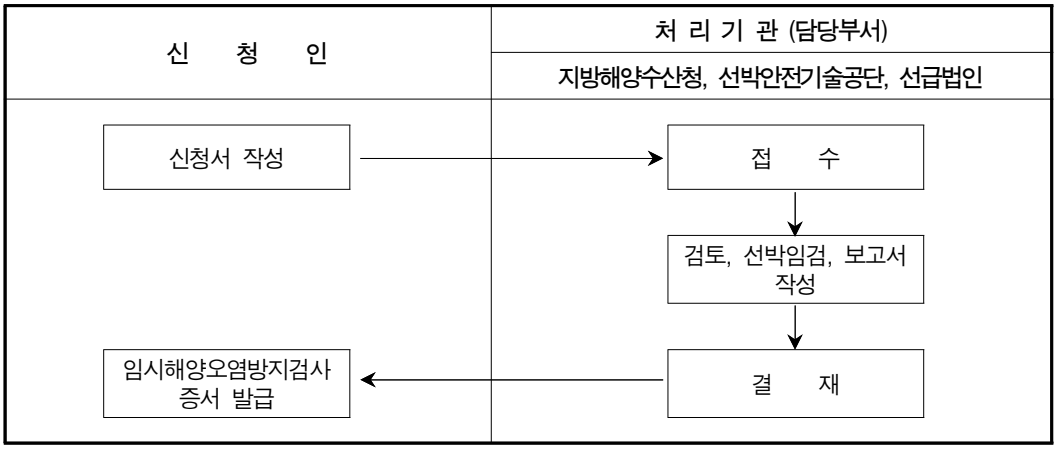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1부
- 수수료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5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유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8.〉

(앞쪽)

임시항해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일

선박소유자	① 명칭 또는 성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선명		⑤ 총톤수		
⑥ 선박번호		⑦ 선박의 길이		
⑧ 임시항해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짜				
⑨ 임시항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				
⑩ 임시항해를 하고자 하는 기간, 항로 및 이유				
⑪ 최근 1년 동안에 임시항해검사를 받고 임시항해한 일수				
⑫ 비고				

위 선박에 대하여 임시항해검사를 받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구비서류: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1부	수수료
	별표 35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방오시스템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53조제1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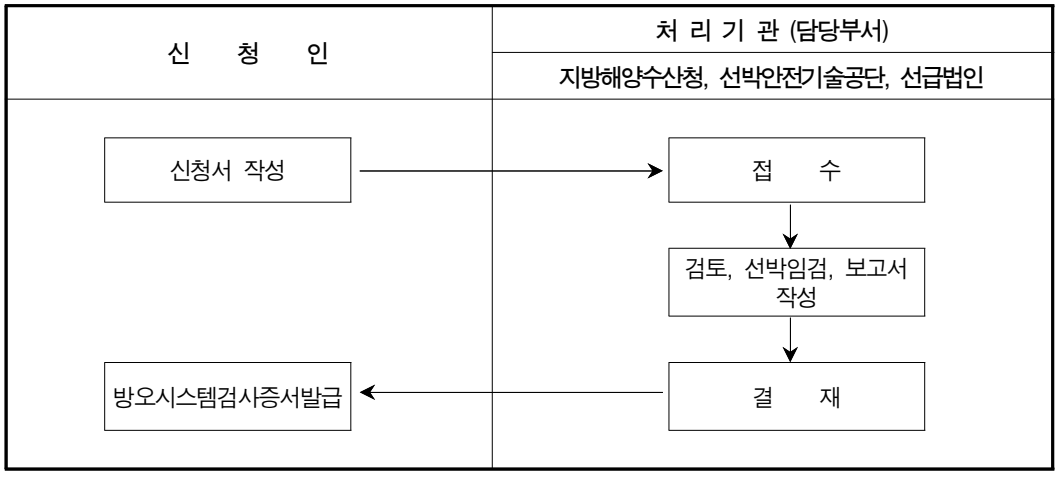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2.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료

3.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CAS No.)
4. 방오시스템 검사증서(임시방오시스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5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별표 27 & 28에 대한 사항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방오시스템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선박소유자	① 명칭 또는 성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선박		⑤ 용도		
⑥ 선적항		⑦ 선박번호		
⑧ 총톤수		⑨ 재화중량톤수		
⑩ 선박의 길이		⑪ 항행구역		
⑫ 수검 희망일자				
⑭ 수검 희망장소				
⑮ 비고				

위 선박에 대하여 (방오시스템 · 임시방오시스템)검사를 받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방오시스템 형식승인증서
2. 방오시스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료
3. 방오시스템의 구성성분과 액체화학품분류번호(CAS No.)
4. 방오시스템 검사증서(임시방오시스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별표 35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54조제1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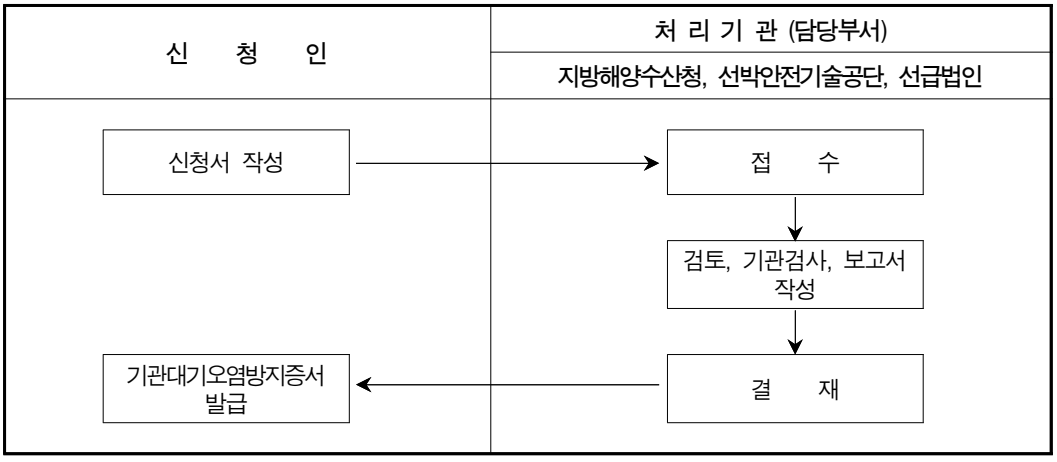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명세서 1부
2.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도면 1부
3. 표본기관(질소산화물배출기관의 표본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이 적용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범위 및 선정기준 각 1부

4.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 1부
5.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 및 검사증서(수입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검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35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별표 20 제1호 기술기준 적합 검사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품명				
⑤ 형식				
⑥ 영업소의 주소 및 명칭				
⑦ 제작 · 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질소산화물배출방지 검사를 받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54조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명세서 1부 2.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도면 1부 3. 표본기관(질소산화물배출기관의 표본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이 적용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범위 및 선정기준 각 1부 4.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 1부 5.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 및 검사증서(수입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검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표 35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에너지효율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54조의2제1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건조기간(개조기간) + 2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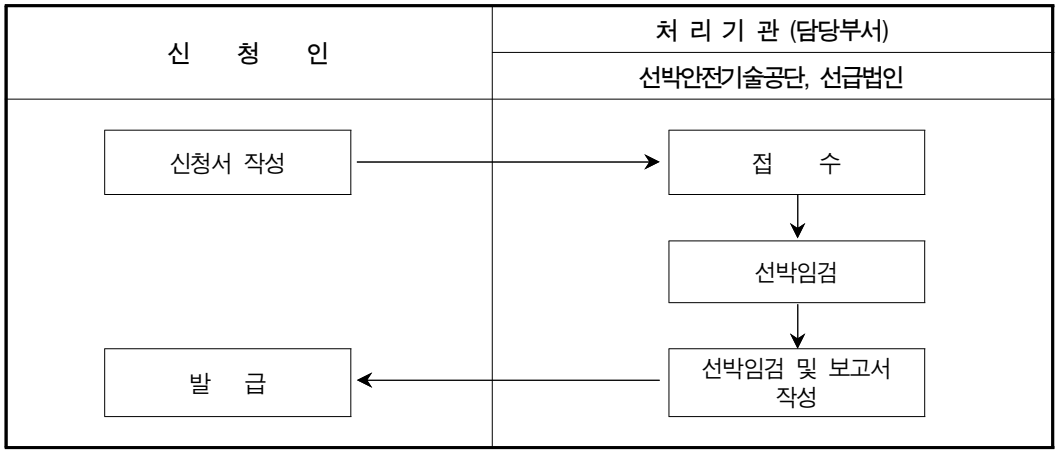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가.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록부 1부
   나. 에너지효율검사증서(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만 해당합니다)
2. 제1호 외의 선박: 없음(신청서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대행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사항

:: 별지 제21호의2서식

에너지효율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건조기간(개조기간)+ 25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송 :)	(전화번호))(전자우편 :)	
선 박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항해구역	
	선박의 종류		
	총톤수 톤	재화중량톤수	톤
	선박의 길이 미터	추진기관	[kW] [PS] [대]
	수검요청일자	수검장소	
비 고			

위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고자 「해양환경관리법」 제54조의2제1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주) 신청사유(건조, 개조 등)를 '비고' 란에 적으십시오.

첨부서류	1.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가. 선박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록부 1부 나. 에너지효율검사증서(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만 해당합니다) ※ 구비서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28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제1호 외의 선박: 없음(신청서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한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박임검	→ 선박임검 및 보고서 작성	→ 발급
신청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210mm×297mm[백상지 80g/㎡]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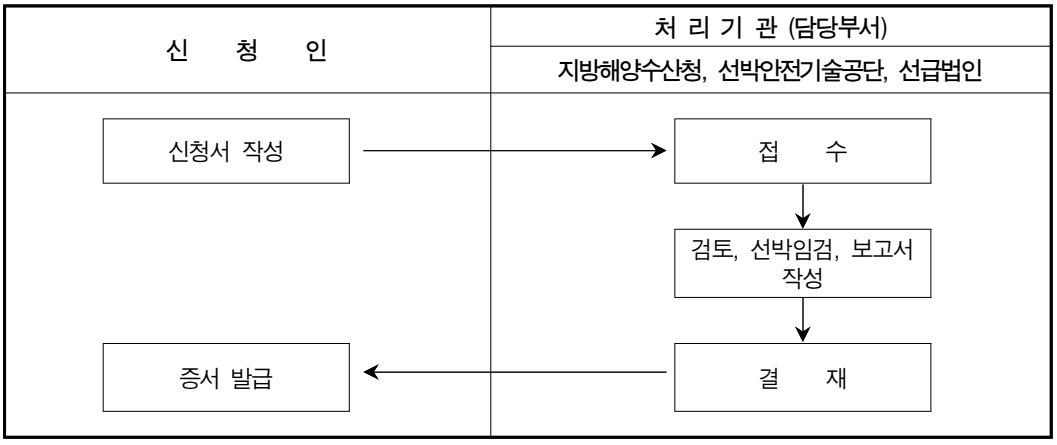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

::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일
선박소유자	① 명칭 또는 성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선명			⑤ 용도		
⑥ 총톤수			⑦ 선박번호		
⑧ 증서의 종류 및 증서번호					
⑨ 증서의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⑩ 운항예정일					
⑪ 비고					

위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협약검사증서)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구비서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 형식승인 면제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 및 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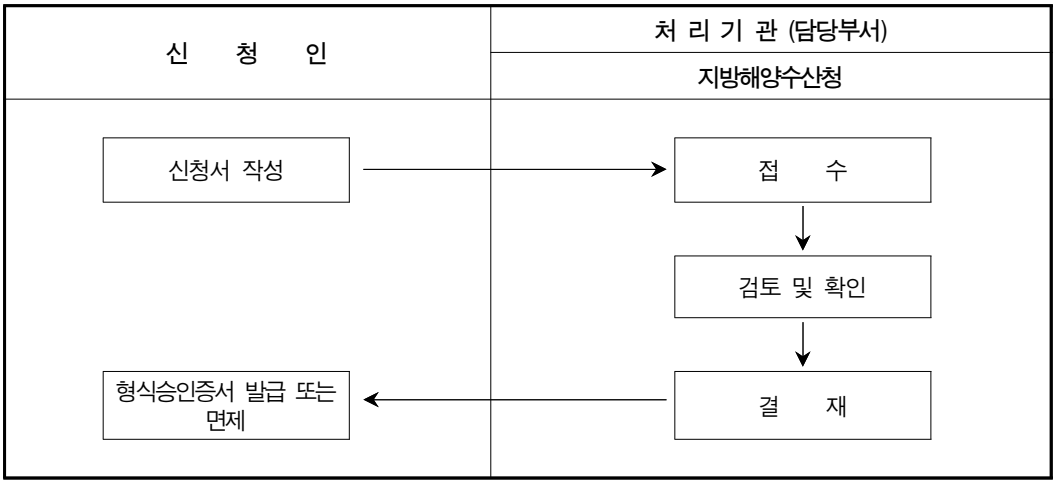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나.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1부

다.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형식승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나.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시험·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 수수료 : 3,000원(형식승인신청에만 한함)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

:: 별지 제32호서식

형식승인[ ] 형식승인면제[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한글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		전화번호

품명	한글	영문
형식		
영업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제작 · 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 ] 형식승인면제[ ]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나. 설비 제조시설의 제조명세서 1부 다.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형식승인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나. 설비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시험 · 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수수료 3,000원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5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2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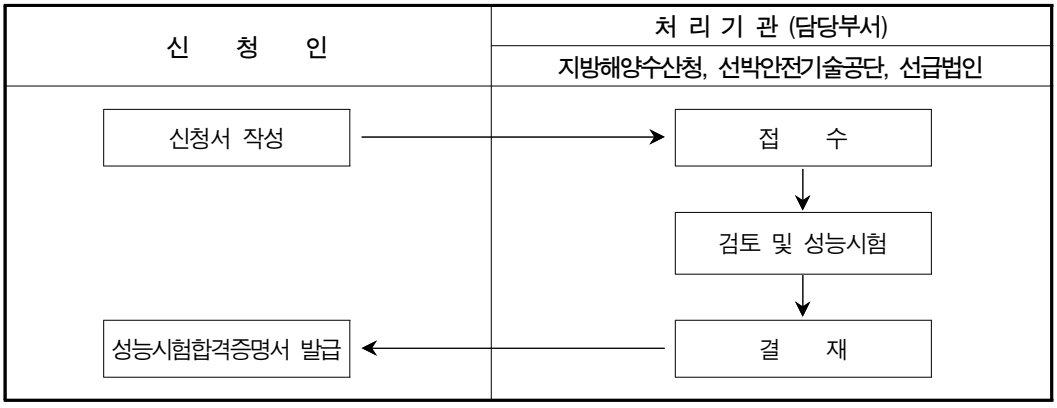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설비의 명세서·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 각 1부
- 수수료 : 별표 35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의 적합 여부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1.8.〉

성능시험신청서	처리기간
	25일

① 품명	
② 형식	
③ 제작 · 제조소의 위치 및 명칭	
④ 제작 · 제조연월일	
⑤ 제작 · 제조번호	
⑥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장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5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구비서류: 설비의 명세서 · 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 각 1부	수수료
	별표 35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6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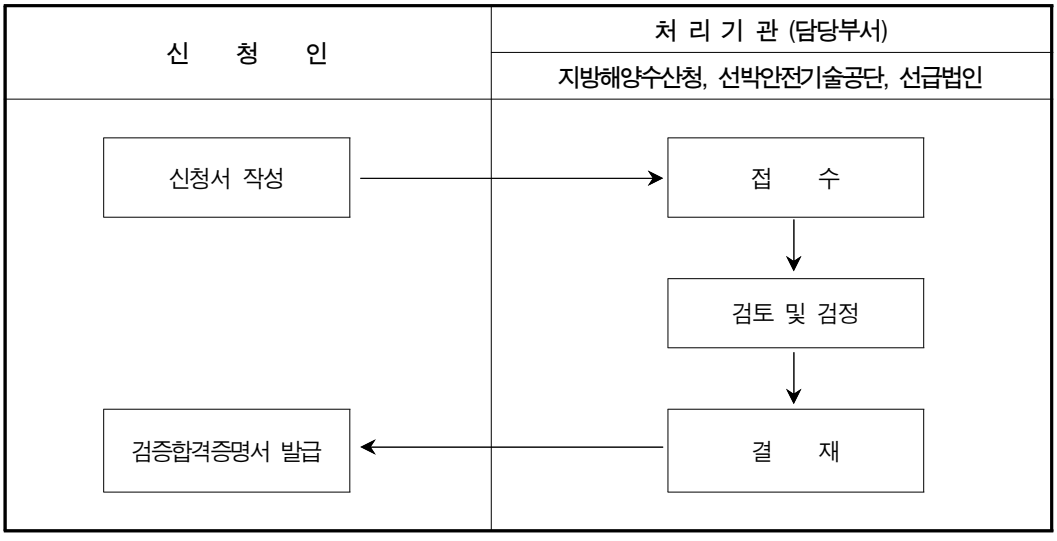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없음
- 수수료 : 별표 35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른 사항

::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검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품명				② 형식승인번호	
신청인	③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④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형식 및 규격 · 용량			⑦ 수량		
⑧ 제작 · 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⑨ 제작 · 제조연월일					
⑩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장소 및 일자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6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별표 35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인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1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12개월)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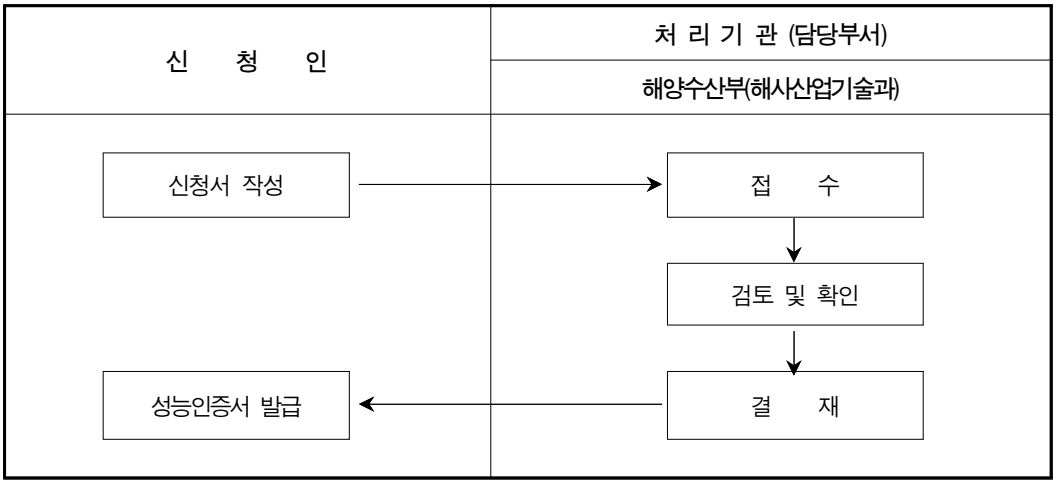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성능인증을 위한 시험계획서 1부
2. 제조명세서 1부
3. 구조도면 1부

4. 작동설명서 및 정비지침서 각 1부
5.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 별표 35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의 성능시험 기준에 대한 심사 결과

:: 별지 제37호의2서식

성능인증신청서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①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한글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품명		한글		영문	
⑤ 형식					
⑥ 영업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⑦ 제작 · 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제1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성능인증을 위한 시험계획서 1부 2. 제조명세서 1부 3. 구조도면 1부 4. 작동설명서 및 정비지침서 각 1부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별표 35에 따름

210㎜×297㎜(신문용지 54g/㎡)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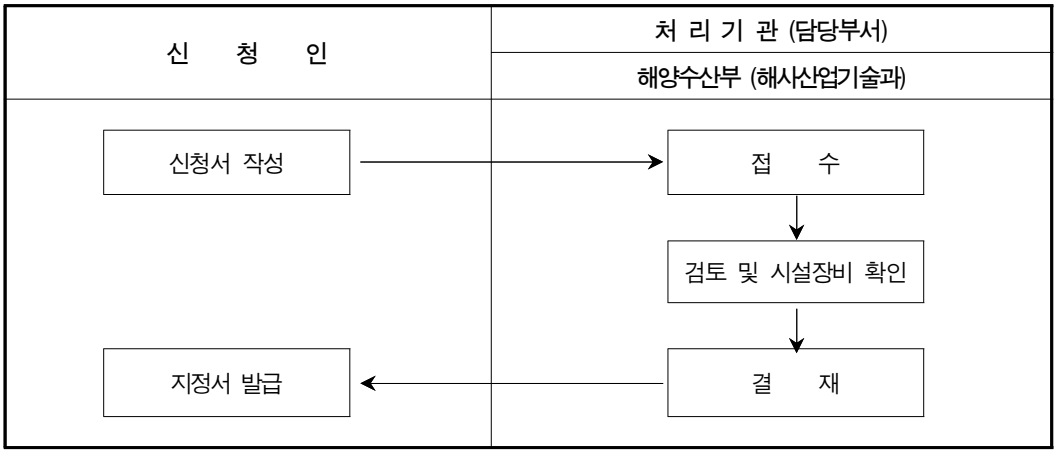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2.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소재지 1부

4. 대행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체기준 1부
5. 수수료 기준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요건

:: 별지 제38호서식

성능시험 · 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명칭(상호)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사업장)			
⑤ 성능시험 및 검정을 대행하고자 하는 방지 설비의 종류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 ·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대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2.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 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 소재지 1부 4. 대행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체기준 1부 5. 수수료 기준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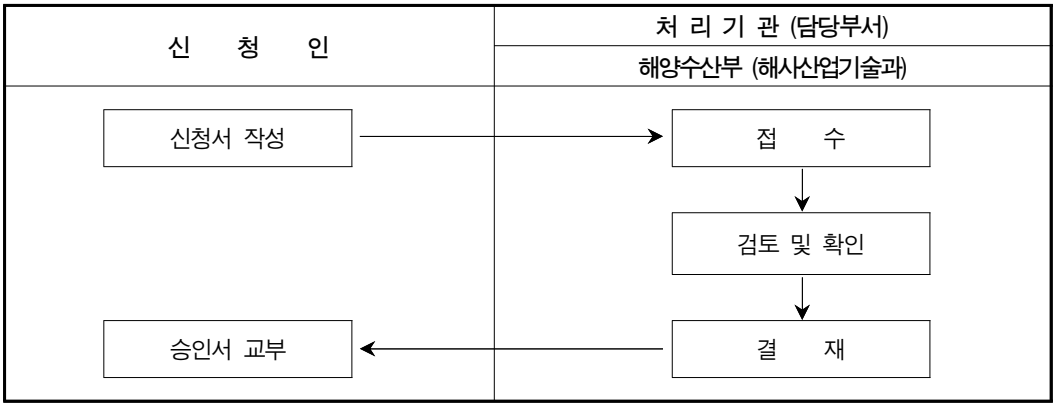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의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별지 제1호서식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신청내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용기술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승 인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해사기술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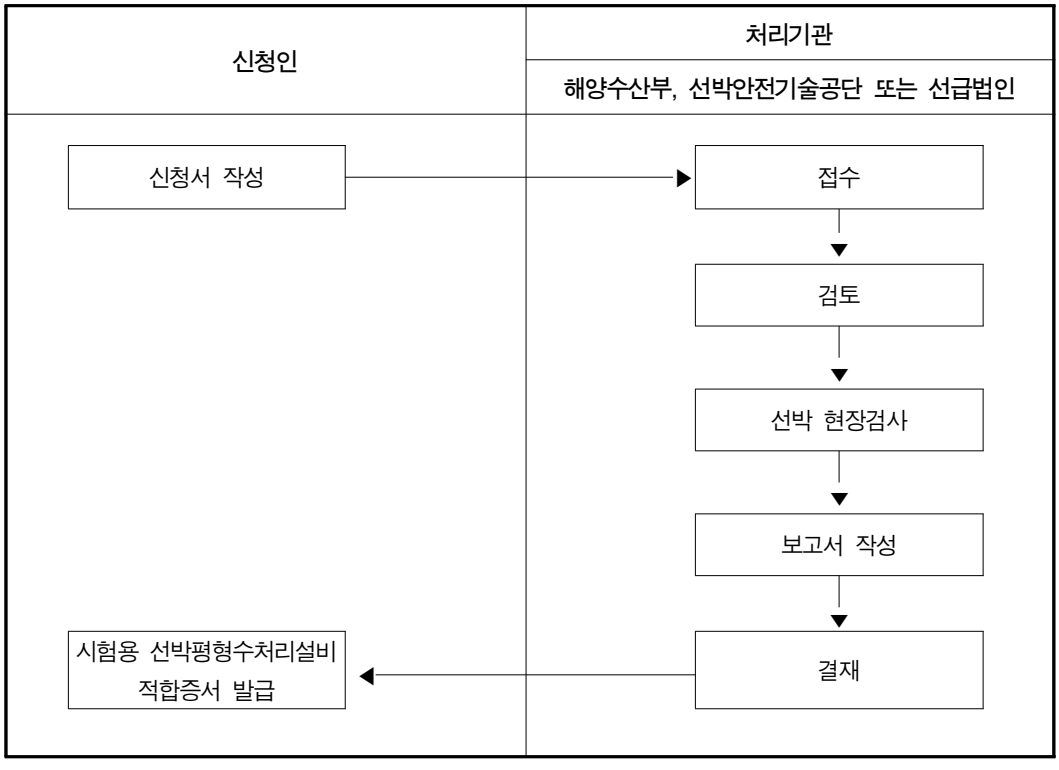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별지 제2호서식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설치선박	선명	선박번호
	총톤수	국적(선적)
	선박의 종류	선박평형수용량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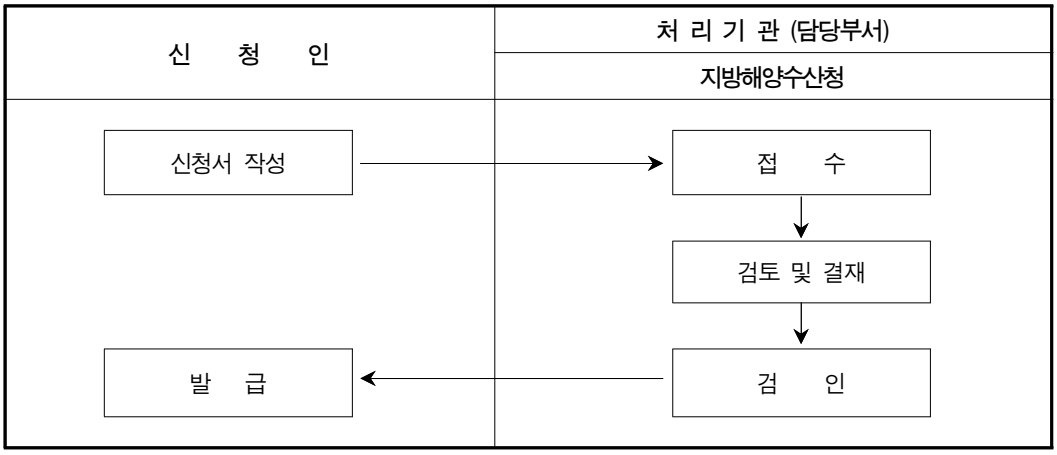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

- 수수료 : 3,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고시 별표 3의 작성방법 적합 여부

:: 별지 제5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선박	선박명	선박번호
	총톤수	국적(선적)
	용도	재화 중량 톤수
	주요 항로	건조 연월일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 재발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	수수료 3천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검 인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지방해양수산청(선박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도면승인(변경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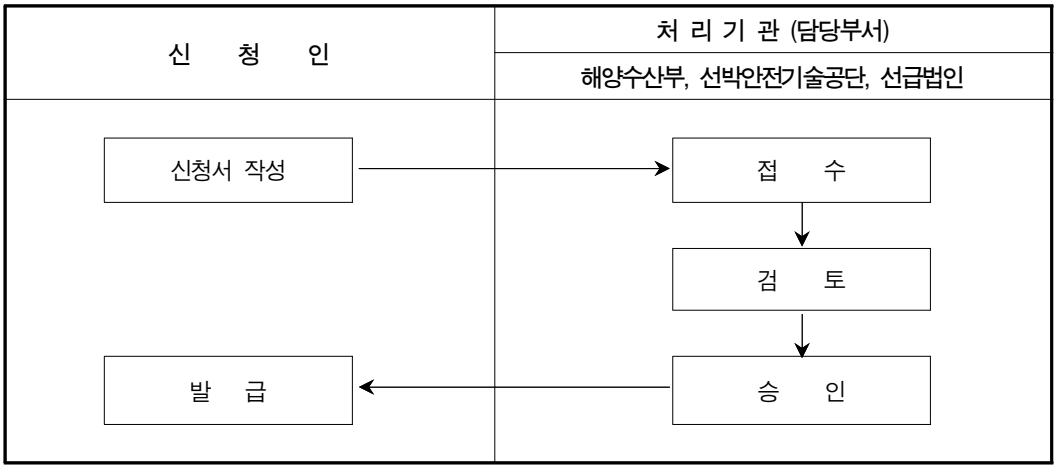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2. 선박평형수 용적도
3.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합니다)
4.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5.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6.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도면
7.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 수수료 : 별표 16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선박의 도면 여부

:: 별지 제7호서식

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설치선박	선박명	선박번호 또는 건조번호
	총톤수	국적(선적)
	용도	선박평형수용량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면의 승인[ ] 변경승인[ ]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첨부서류	1.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2. 선박평형수 용적도 3.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합니다) 4.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5.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6.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도면 7.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수수료 별표 16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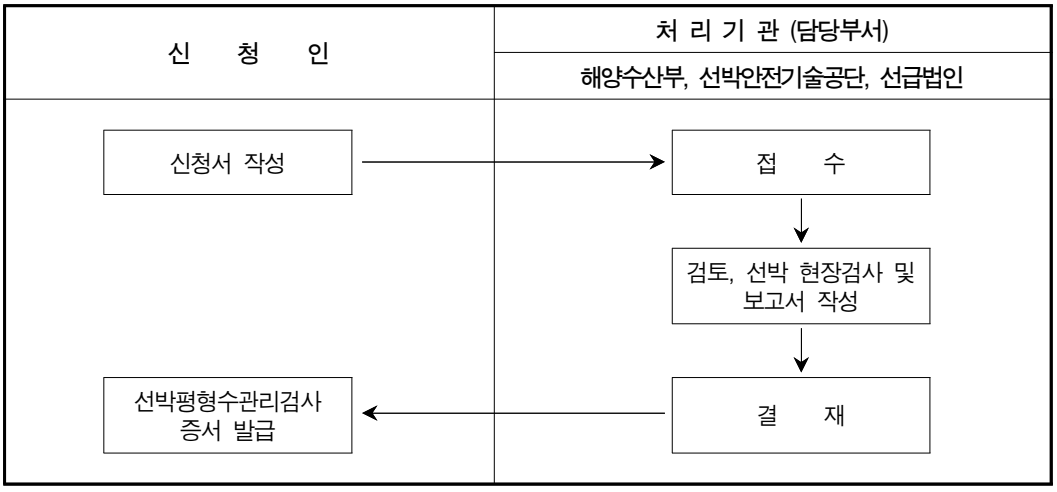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나. 선박평형수 용적도

다.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합니다)

라.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마.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사.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아.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2. 최초의 정기검사 외의 정기검사·중간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임시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 수수료 : 별표 16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준비사항 및 기준 적합 여부

:: 별지 제8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설치 선박	선박명	선박번호
	총톤수	국적(선적)
	선박의 종류	선박평형수용량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2조제1항 · 제13조제1항 ·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제22조제2항 · 제23조제1항 ·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 ] 제1종 중간검사[ ] 제2종 중간검사[ ] 임시검사[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첨부서류	1.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나. 선박평형수 용적도 다.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합니다) 라.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마.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바. 선박평형수관리설비 도면 사.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아.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2. 최초의 정기검사 외의 정기검사 · 중간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선박평형수관리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임시검사 신청의 경우 가.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나.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수수료 별표 16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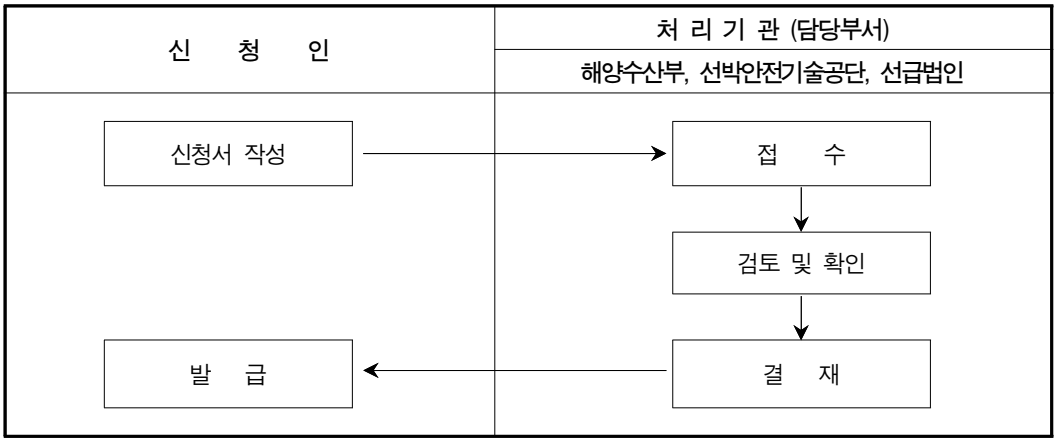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합니다)에 사용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유

:: 별지 제10호서식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선박	선박명	선박번호
증서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 사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첨부서류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 회항 시 거리가 1,0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합니다)에 사용되는 경우: 운항계획서 및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형식승인시험기관 (처리기간 12개월)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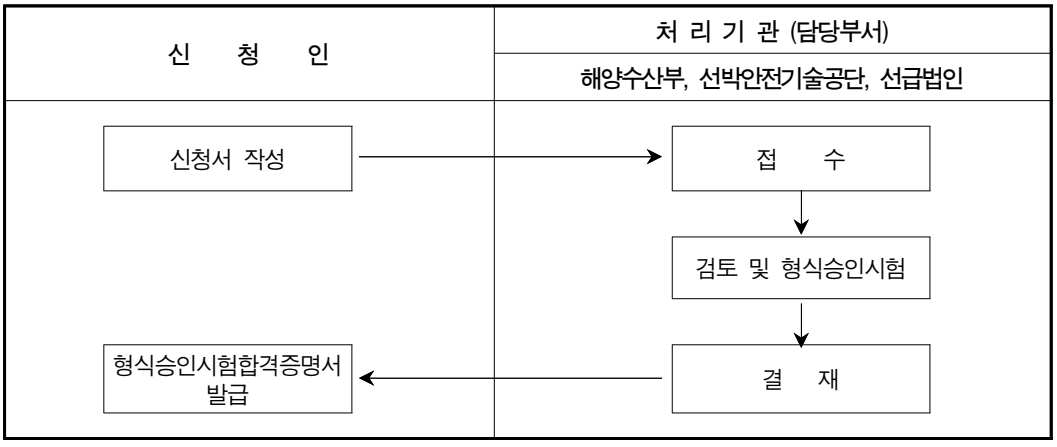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형식승인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
2. 형식승인사항을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 :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호의 서류 중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정한 수수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등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성 및 성능 검토

:: 별지 제12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개월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제조자 (수입하는 경우)	상호
	주소

형식 및 모델	
정격처리 용량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장소 및 날짜	
받으려는 시험의 종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형식승인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 2. 형식승인사항을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의 경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호의 서류 중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정한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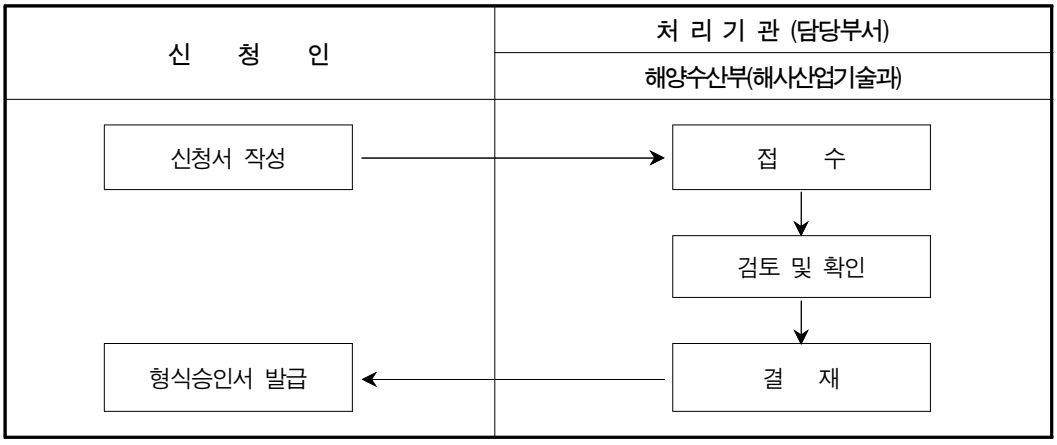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3,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별지 제14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		전화번호

품명	한글	영문
형식 및 모델		
영업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제작 · 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3,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형식승인서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해사기술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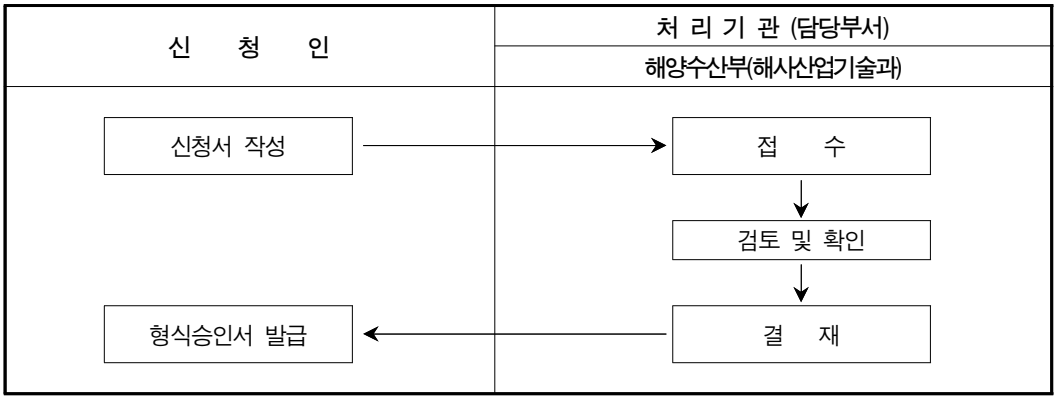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
  2.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없음
- 수수료 : 3,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별지 제15호서식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		전화번호

품명	한글	영문
형식 및 모델		
영업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제작 · 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 2.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없음	수수료 3,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형식승인서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해사기술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기간 6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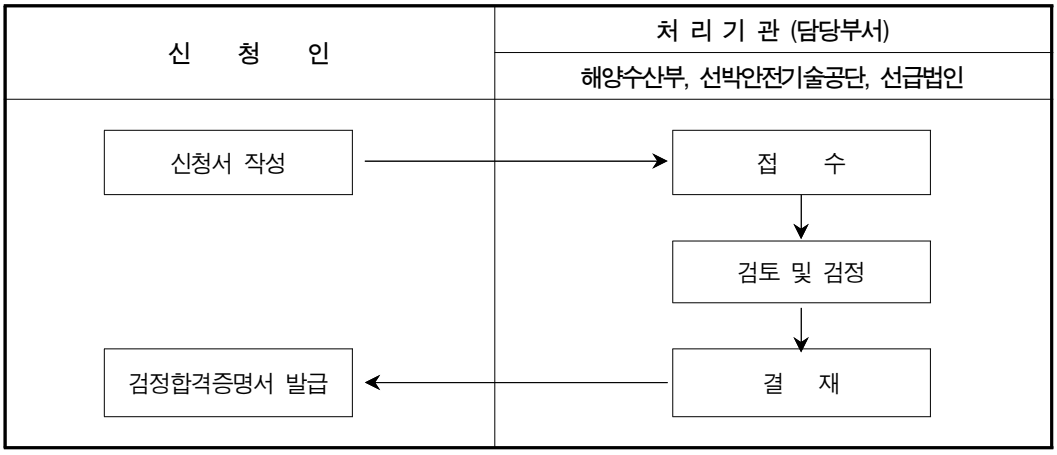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배치도·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4. 운전 및 정비 설명서
5. 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 수수료 : 별표 16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별지 제16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명		형식승인번호
형식 및 모델		
정격처리 용량		수량
제작 · 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검정을 받으려는 장소 및 날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기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선급법인의 장

첨부서류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도 · 배치도 · 전기회로도 및 배관도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주요 구성품의 장치 설명서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기술적인 상세 설명서 4. 운전 및 정비 설명서 5. 설비 오작동에 대비한 보완 절차서	수수료 별표 16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갱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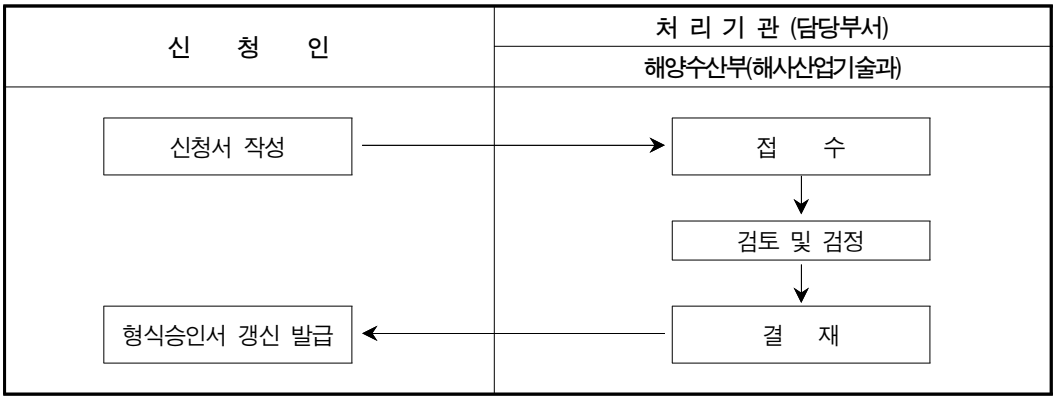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형식승인서
  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에 따른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별지 제17호의2서식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		전화번호

품명	한글	영문
형식 및 모델		
영업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제작·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형식승인서 증서번호		발급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형식승인서 2.「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에 따른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형식승인서 갱신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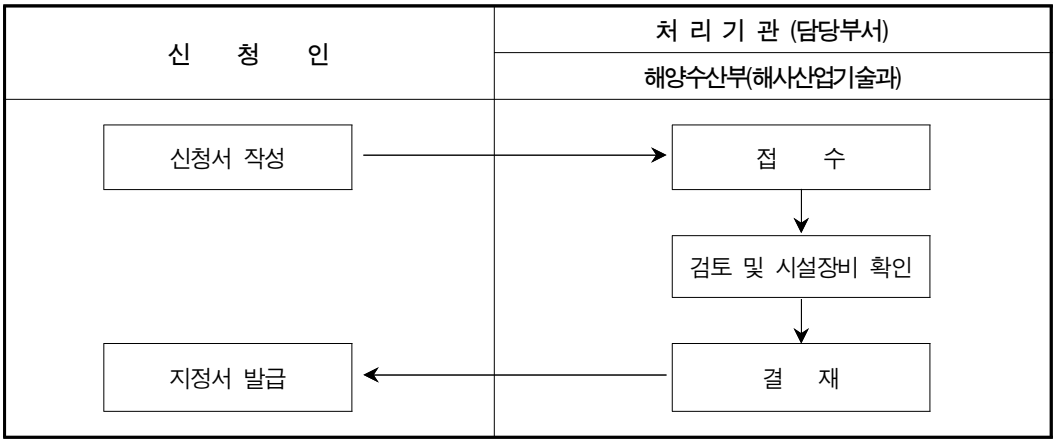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3.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4. 품질관리체제 인정서
5.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별지 제18호서식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상호)	한글	
		영문	
	성명(대표자)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주소(사업장)	한글	
		영문	

지정받으려는 형식승인시험의 종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 3.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현황 4. 품질관리체제 인정서 5. 시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시설장비 확인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제4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30일, 변경(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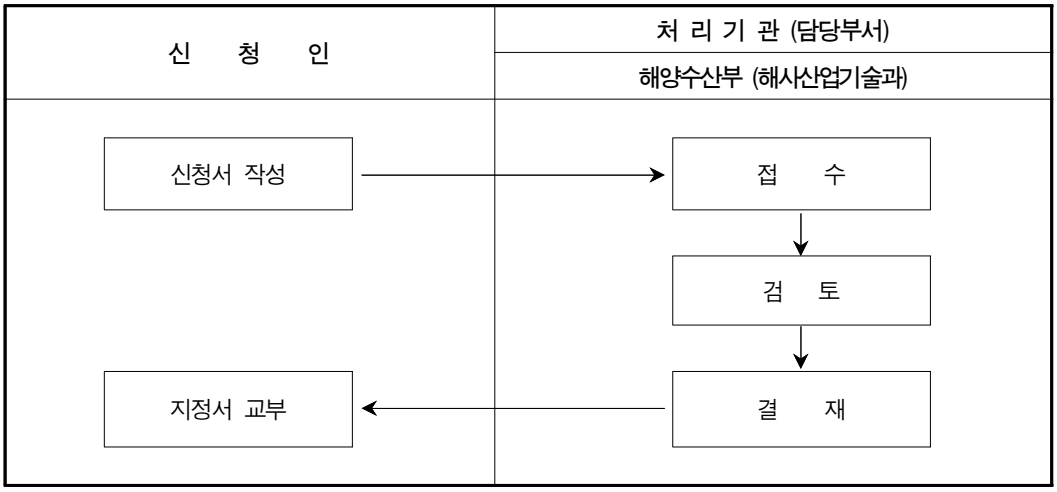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독립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나.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독립시험기관 변경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독립시험기관 [ ]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정신청 30일 변경신청 7일

신청인	명칭(상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대표자 성명)	

변경 사항	변경하려는 사항[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및 대행업무의 내용]
	변경 사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1항 ·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독립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나.「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독립시험기관 변경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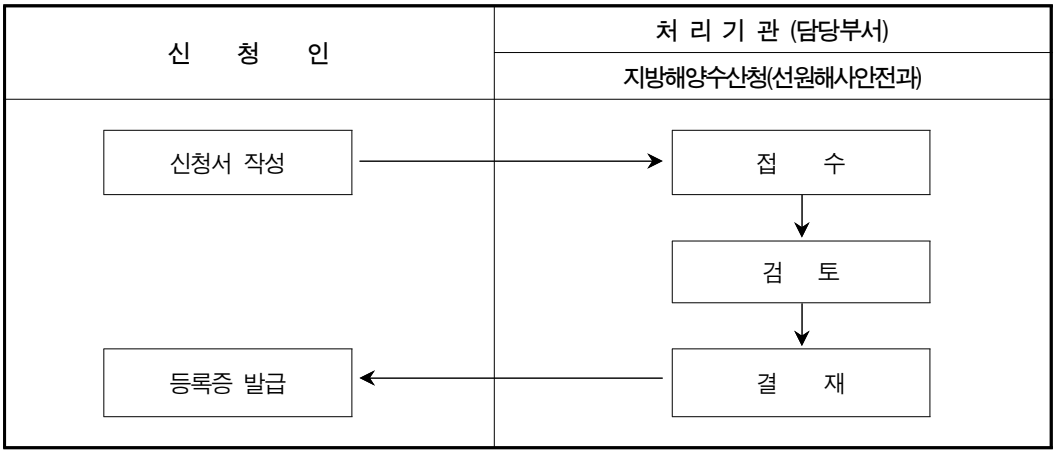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사업계획서 1부
  3. 저장·처리 설비 및 시설의 명세서와 그 도면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별지 제20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칭(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자본금		
선박평형수 저장 · 처리 설비 및 시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사업계획서 1부 3. 저장 · 처리 설비 및 시설의 명세서와 그 도면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수집 · 운반 · 저장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 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6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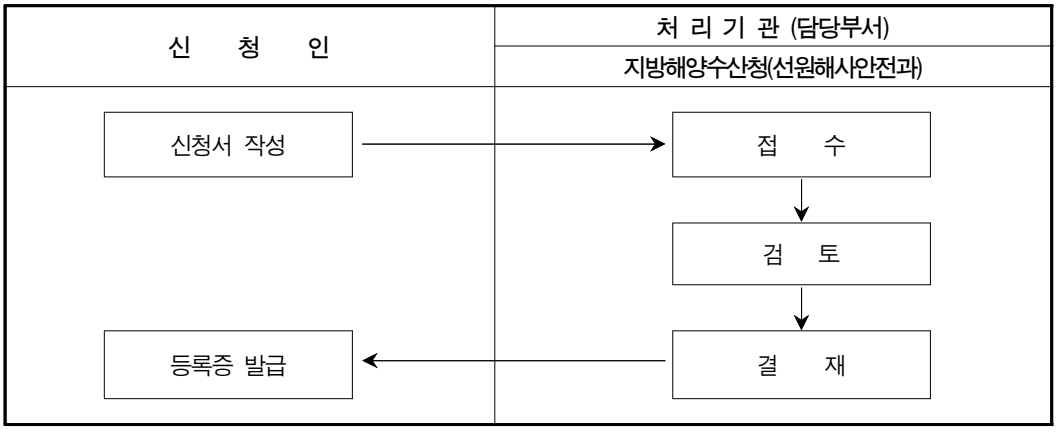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수수료
  1.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6항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별지 제22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칭(상호)	팩스번호/전자우편
변경 내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6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 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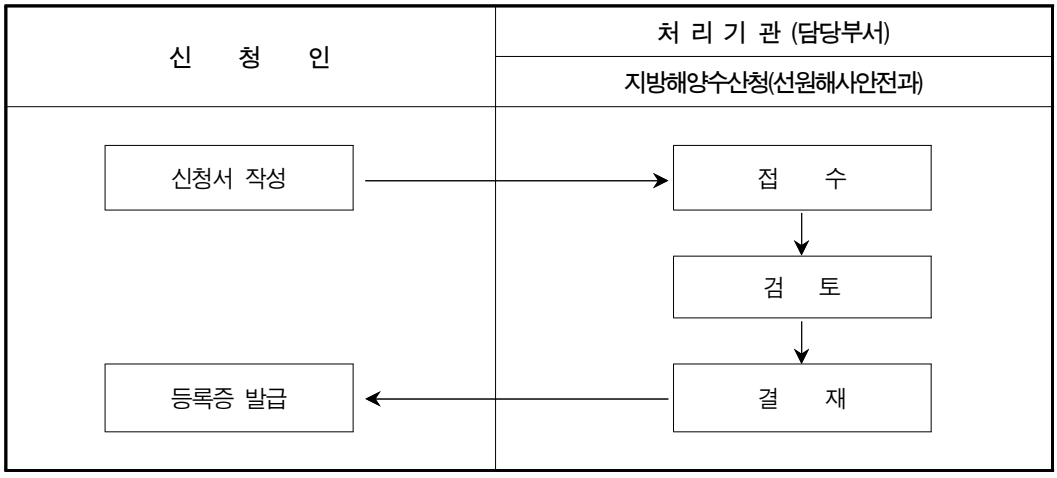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수수료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별지 제26호서식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 · 의무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명칭(상호)	

양도인 · 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	
	명칭(상호)	
권리 · 의무 승계일(합병일)		
권리 · 의무 승계(합병)의 사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권리 · 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 · 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대행기관 협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영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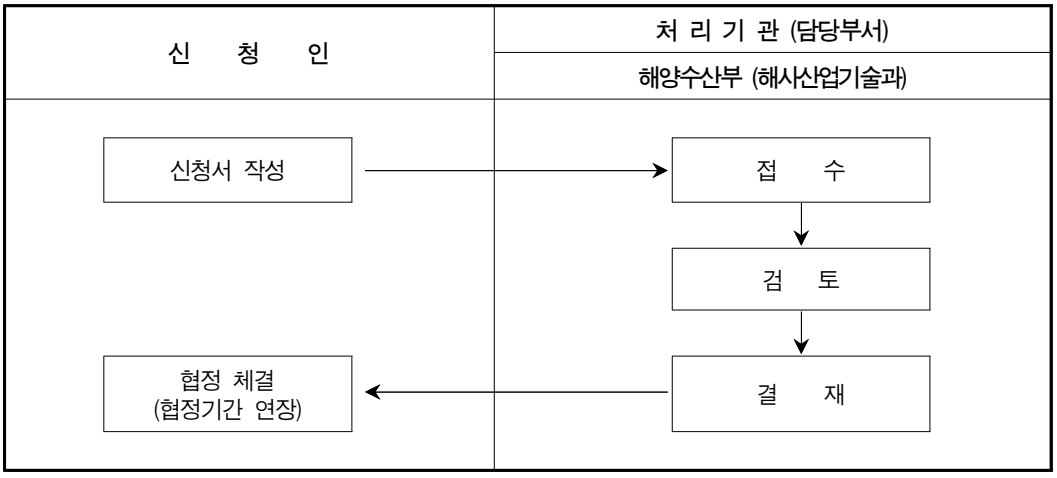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영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별지 제27호서식

대행기관 협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한글	전화
		영문	전송
	대표자	한글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한글	
		영문	

대행 받으려는 업무의 범위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0조제1항 · 제2항, 영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제49조에 따라 검사 등의 대행을 위한 협정 체결[ ] 협정기간 연장[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1항·제4항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연락처 : 044-200-583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30일, 변경(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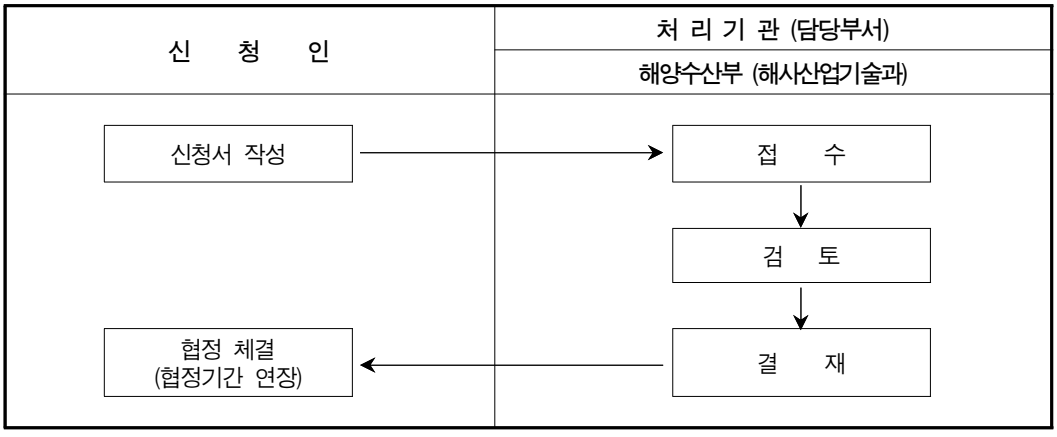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지정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가. 해당 기관의 연혁·조직 및 운영계획서

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의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정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시

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1항·제4항에 따른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지정교육기관 [ ]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정신청 30일 변경신청 7일

신청인	명칭(상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대표자 성명)	

변경 사항	변경하려는 사항[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교육요원 및 교육장비, 지정교육의 내용]
	변경사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1항 ·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정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가. 해당 기관의 연혁 · 조직 및 운영계획서 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의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정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시 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14일(변경의 경우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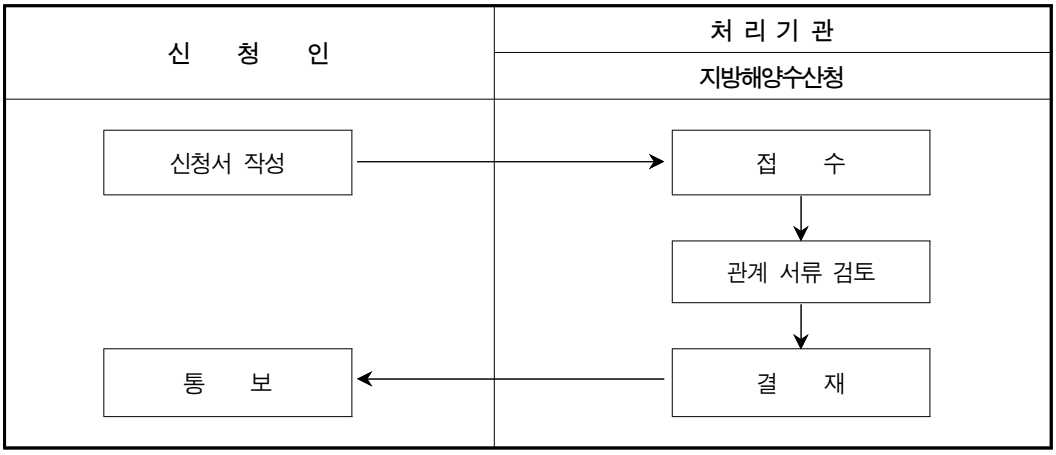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 선박보안계획서 2부, 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
- 수수료 :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별표 7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세부내용 충족여부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선박보안계획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변경의 경우 7일)
신청인	① 사업장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팩스번호	
선박	⑥ 선 명		⑦ 총 톤 수	
	⑧ 선박번호		⑨ 용 도	
	⑩ 선박식별번호 (IMO번호)		⑪ 선 적 항	
⑫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귀하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나.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별표 7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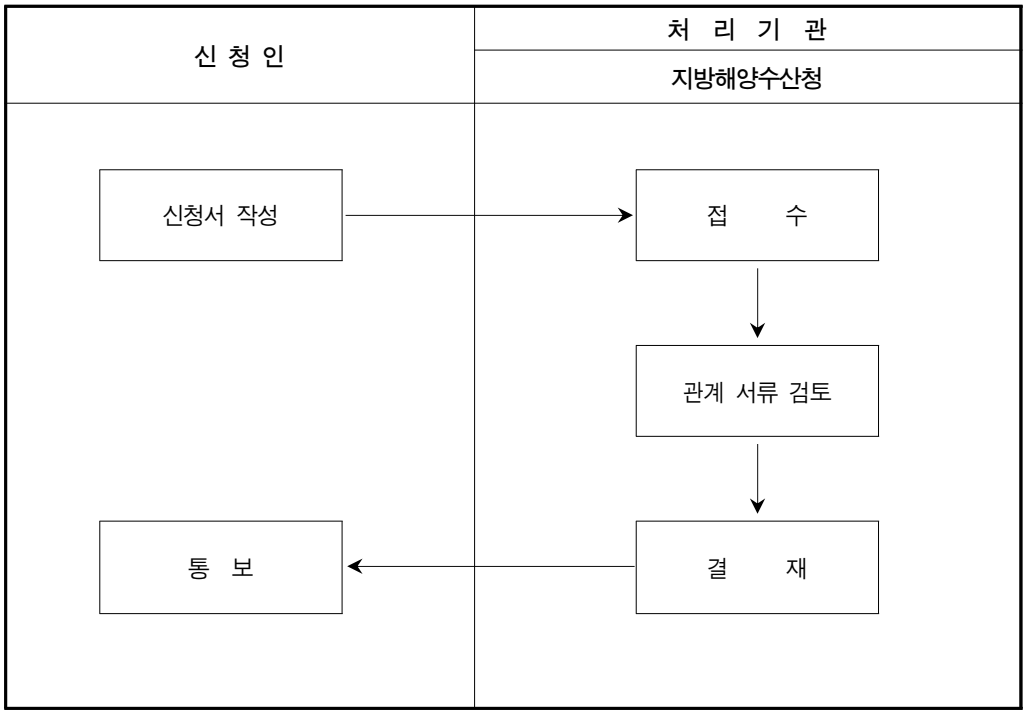

선박보안심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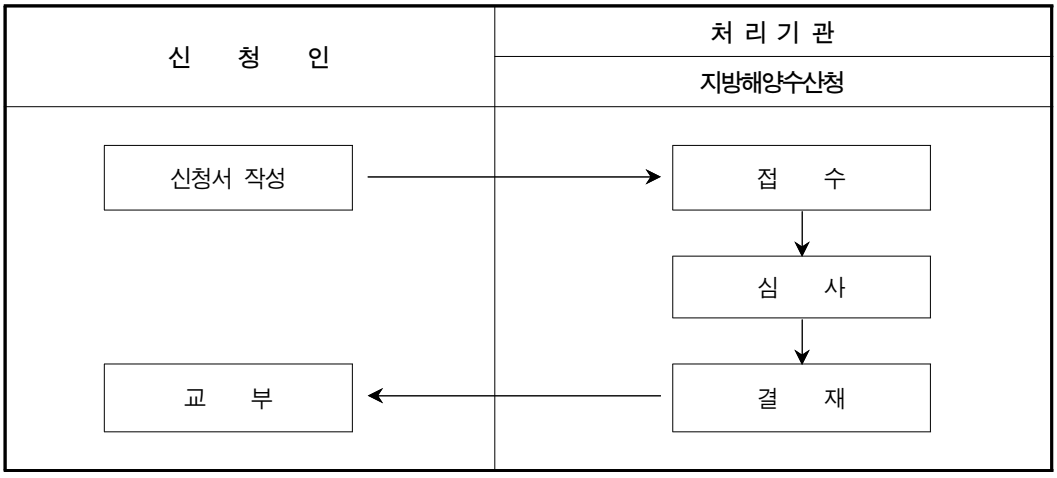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최초보안심사 :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3. 임시보안심사 :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신청 증명서류
- 수수료 :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별표 7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별표 3(보안심사 세부내용) 충족여부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6.26.〉

(앞쪽)

☐ 최초 ☐ 갱신 ☐ 중간 ☐ 임시선박	보안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소			
	④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⑤ 전화번호		⑥ 팩스번호	

선박[선박 식별번호(IMO No.)]:)

⑦ 선명	⑧ 총톤수	⑨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⑩ 국제선박보안 증서유효기간	⑪ 보안심사 종류	⑫ 보안심사를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위 선박에 대하여 최초(갱신 · 중간 · 임시) 선박보안심사를 받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갱신 · 중간 · 임시) 선박보안심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최초보안심사: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 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3. 임시보안심사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 나.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7에 따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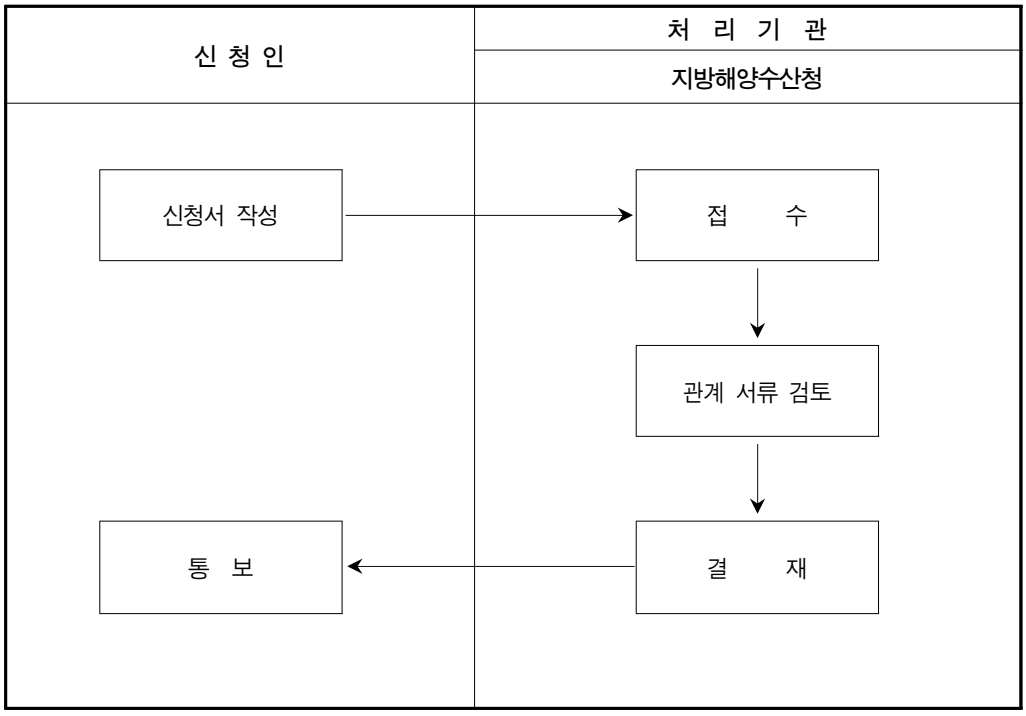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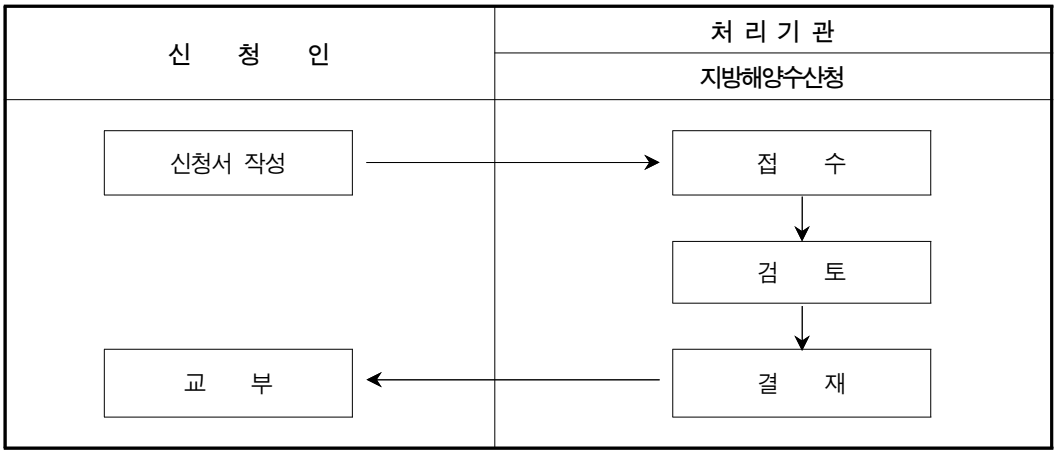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붙임의 별지 제7호서식 참고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여부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6.26.〉

(앞쪽)

☐ 국제선박보안증서 ☐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신청인	① 회사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소				
	④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⑤ 전화번호		⑥ 팩스번호		
선박	⑦ 선명		⑧ 총톤수		
	⑨ 선박번호		⑩ 용도		
	⑪ 선박 식별번호 (IMO No.)		⑫ 선적항		

신청하려는 증서의 종류

⑬ 증서의 종류	⑭ 기존 증서번호	⑮ 재발급 신청 사유	⑯ 비고

위 증서를 재교부받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재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1.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가.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유서

 나. 훼손된 경우 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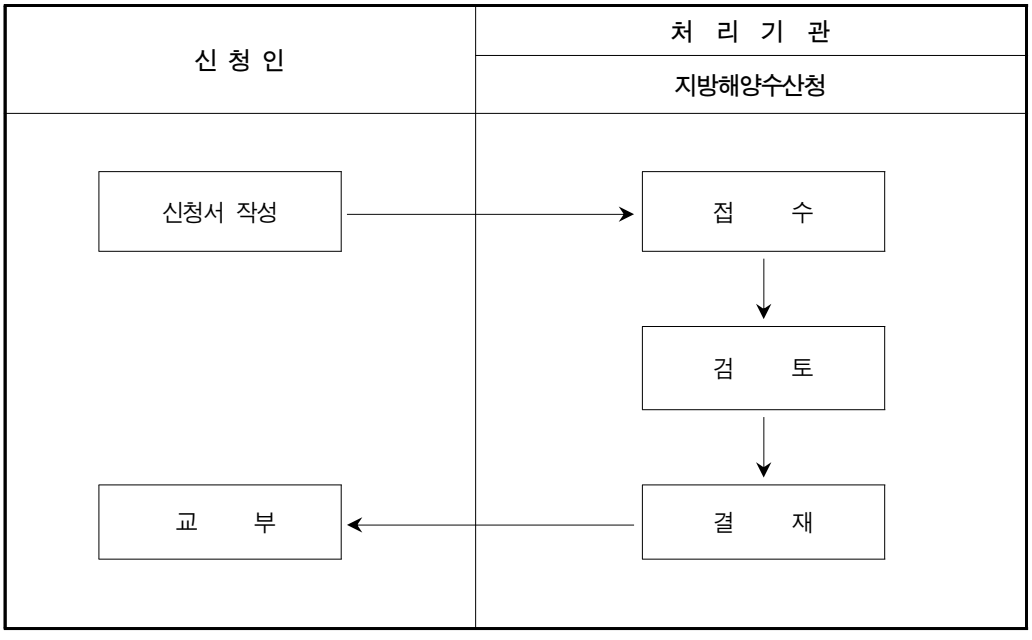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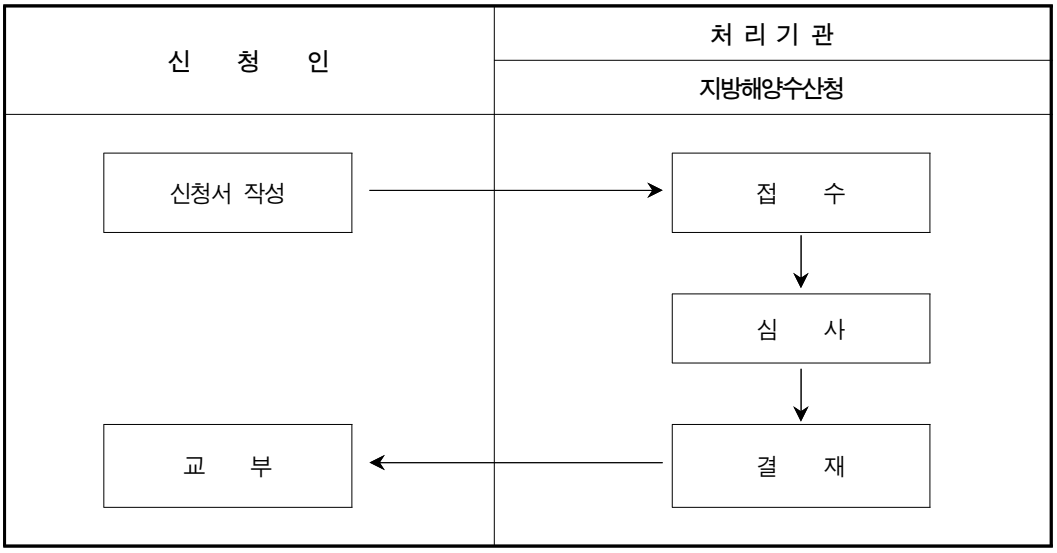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또는 사본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연장 필요성 인정여부)

  1.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선박보안심사가 예정된 항만에 기항할 수 없는 경우
  2. 갱신심사를 마쳤으나 운항일정 등으로 새로운 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6.26.〉

(앞쪽)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사업장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소			
	④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⑤ 전화번호		⑥ 팩스번호	

선 박[선박 식별번호(IMO No.]:)

⑦ 선명	⑧ 총톤수	⑨ 선박의 용도 (항행 구역)	⑩ 국제선박 보안 증서 유효기간	⑪ 연장신청기간	⑫ 사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또는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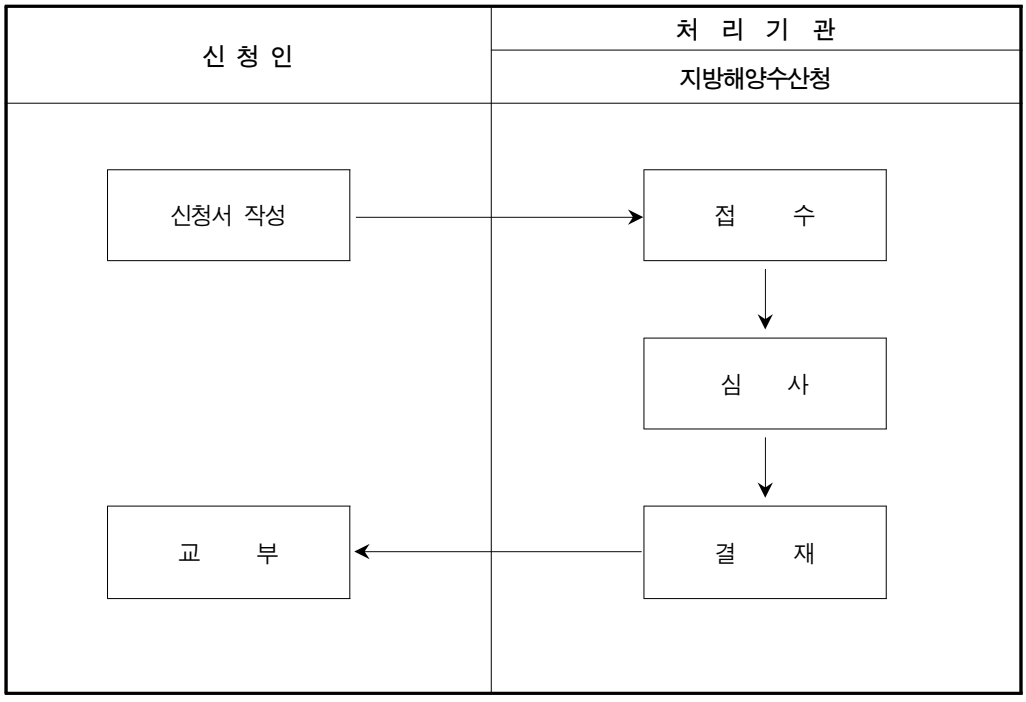

선박이력기록부 교부(재교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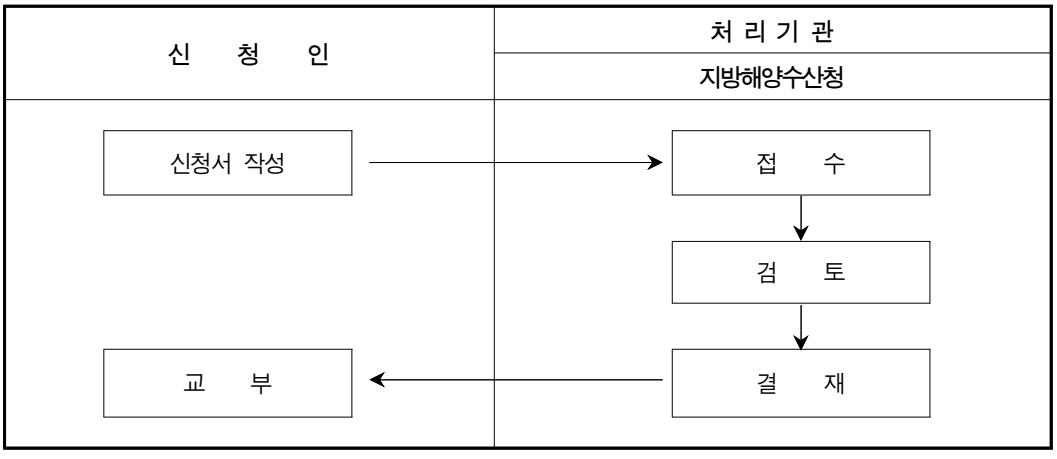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붙임의 별지 제10호서식 참고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여부 및 내용확인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선박이력기록부 □ 발급 □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회사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팩스번호		
선박	⑥ 선박명		⑦ 총톤수		
	⑧ 선박번호		⑨ 선박 식별번호 (IMO No.)		
	⑩ 선박회사 식별번호				
	⑪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⑫ 이전 국적 (국적 변경 시)		
⑬ 변경 내용					
⑭ 변경 사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이력기록부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확인사항
구비서류	1. 발급신청의 경우 가.「선박법」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사본 ※ 신청인이 앞쪽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선박법」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다.「해사안전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마. 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본(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재교부신청의 경우 가.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2) 선박이력기록부가 훼손된 경우 훼손된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1)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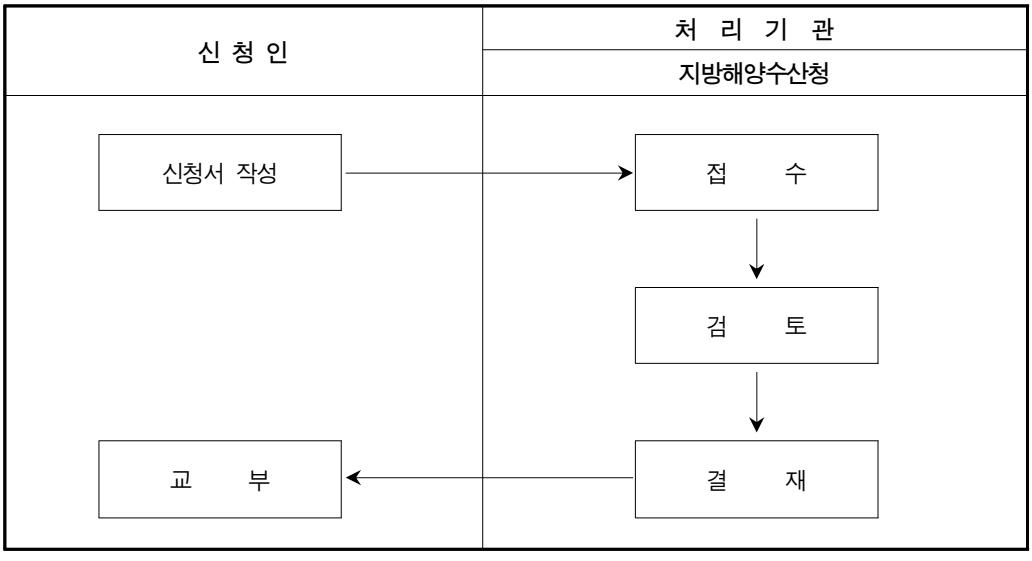

선박보안심사 재심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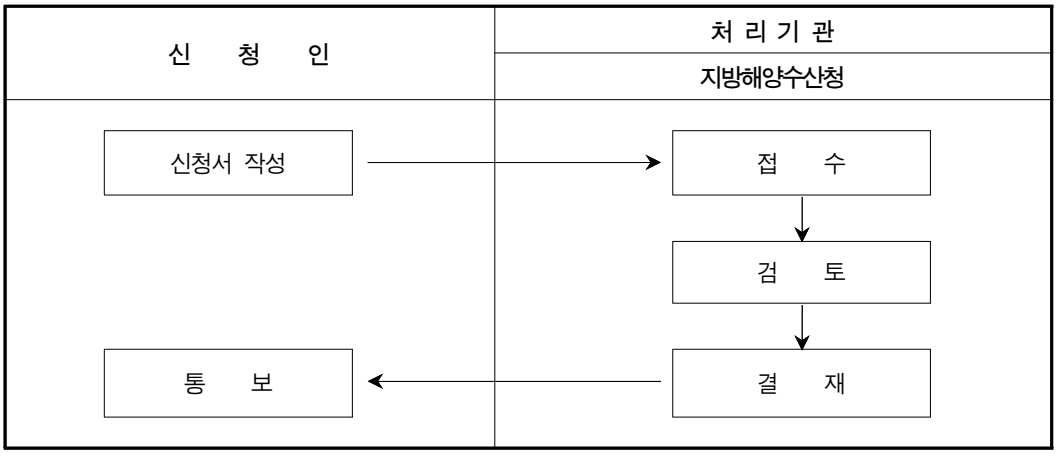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유서

- 수수료 :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별표 7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별표 3(보안심사 세부내용) 충족여부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3.14.〉

(앞쪽)

재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주 소			
	③ 성명(대표자)		④ 연 락 처 (전화 · 팩스 번호)	
⑤ 보안심사/특별점검 시행 기관명			⑥ 보안심사/특별점검 시행일	
신청선박	⑦ 선 박 명		⑧ 총 톤 수	
	⑨ 선박의 용도		⑩ 보안심사/특별점검종류	
	⑪ 신청사유			
⑫ 비 고				

위 선박에 대한 보안심사 또는 특별점검에 대하여 보안심사 또는 특별점검을 다시 받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사유서	수수료
	별표 7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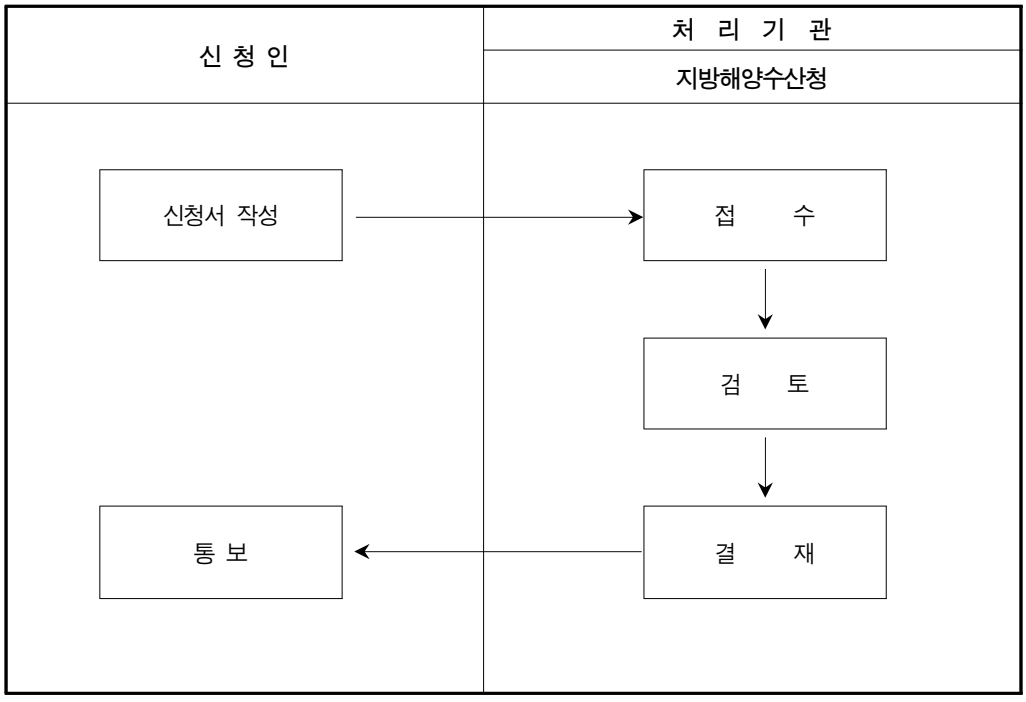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2)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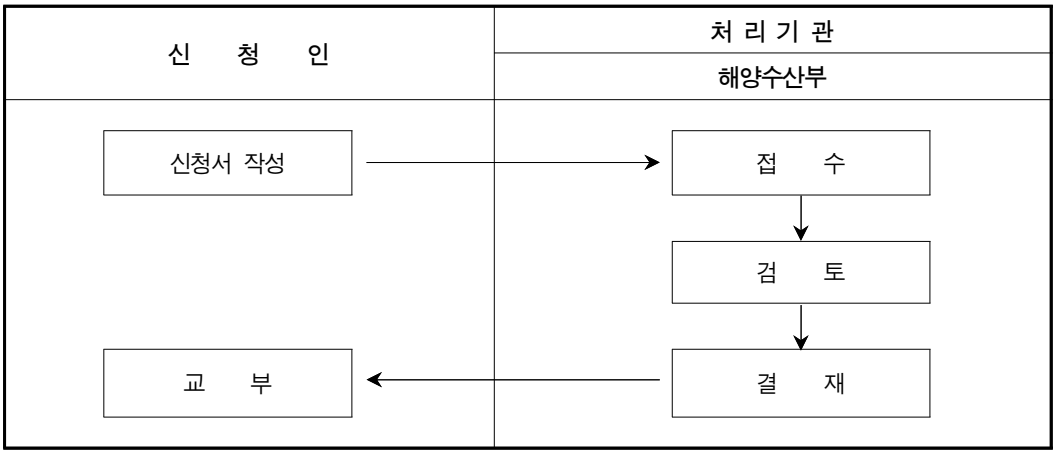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붙임의 별지 제24호서식 참고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여부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명 칭(상호)		
	② 대표자의 성명		
	③ 주 소		
④ 대행업무의 범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	수수료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보안심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보안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규정 4. 보안심사 기준 5.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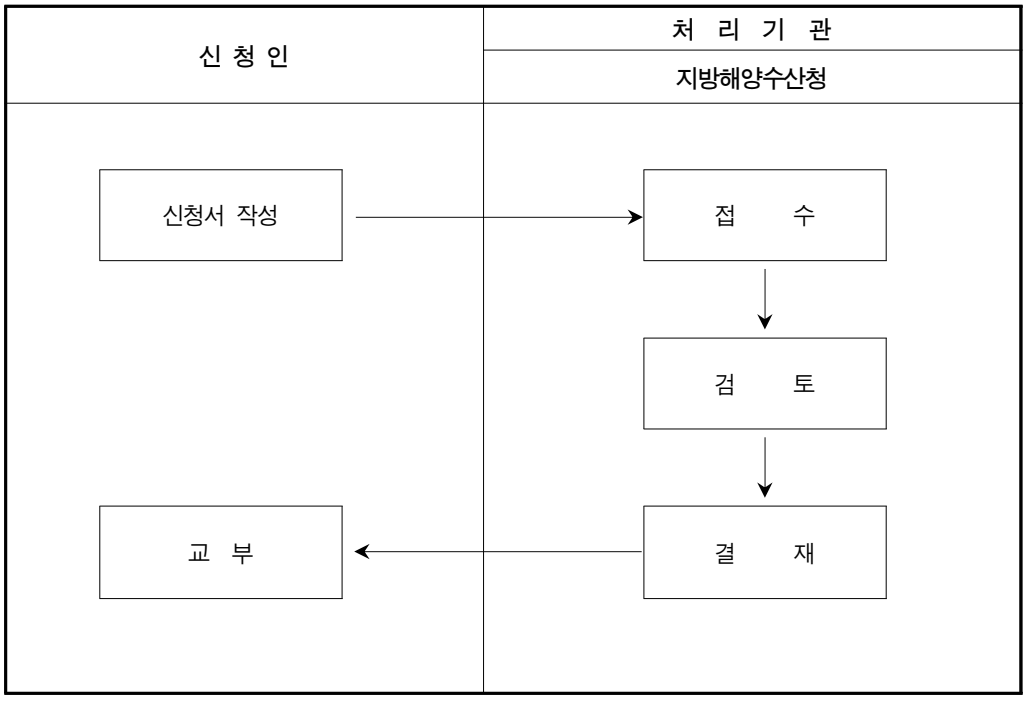

보안교육기관 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2)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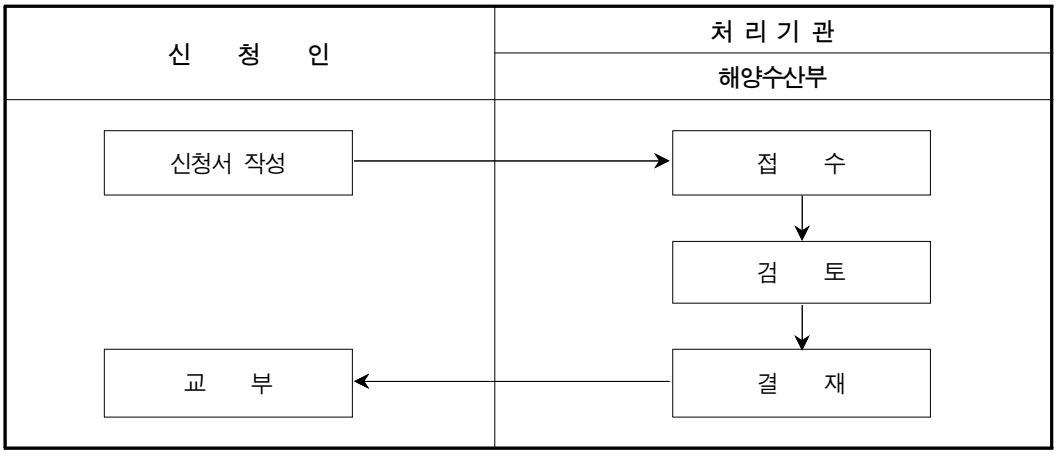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붙임의 별지 제26호서식 참고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명 칭(상호)		
	② 대표자의 성명		
	③ 주 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	수수료
	1.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빙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영 제14조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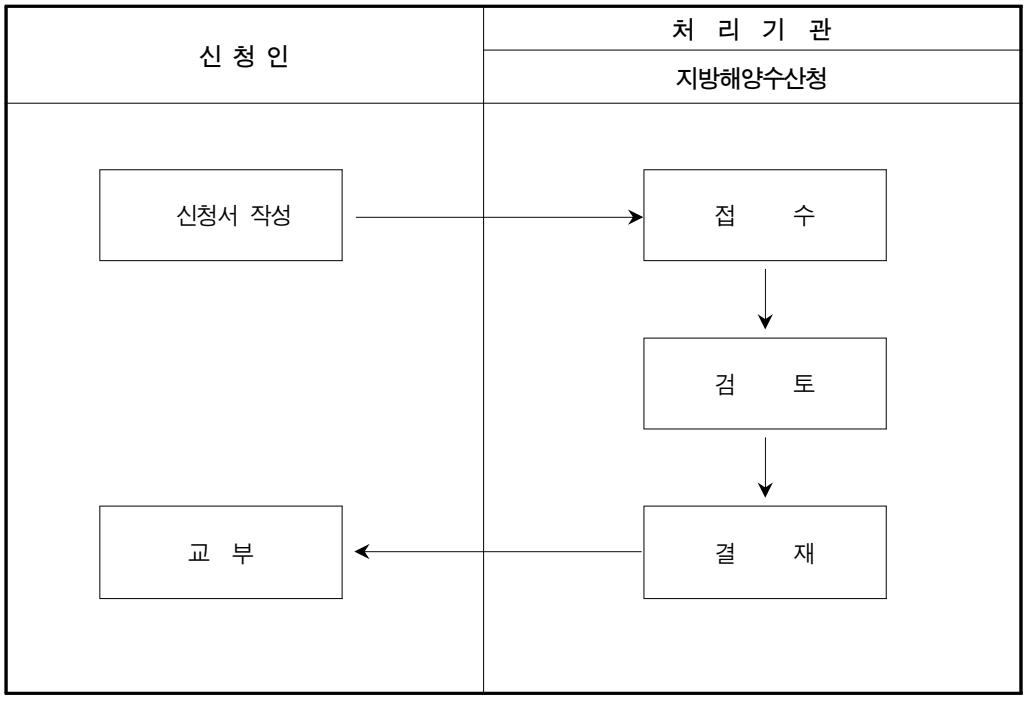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6조제1항)
- 담당부서 : 항로표지과(연락처 : 044-200-5875)
- 접수처리(1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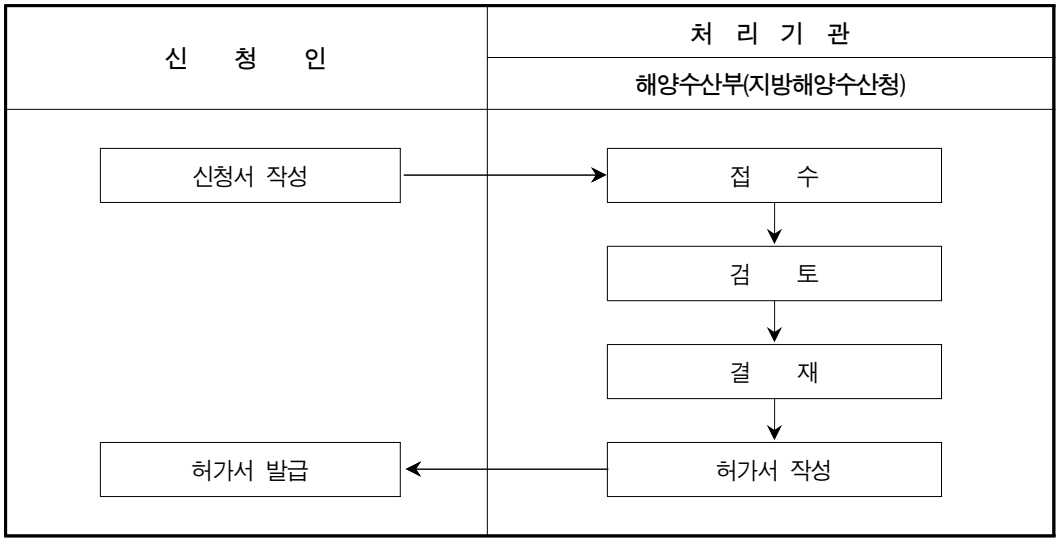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신청서

2. 항로표지 현황조서
3.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4.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설 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 ]설치 [ ]현황변경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 치 (현황변경) 사 유		
설치장소		
관리계획	[ ] 직접관리 [ ] 위탁관리 [ ] 국가대행관리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설항로표지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 나.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다.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2.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허가서 작성	허가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담당부서 : 항로표지과(연락처 : 044-200-5875)
- 접수처리(1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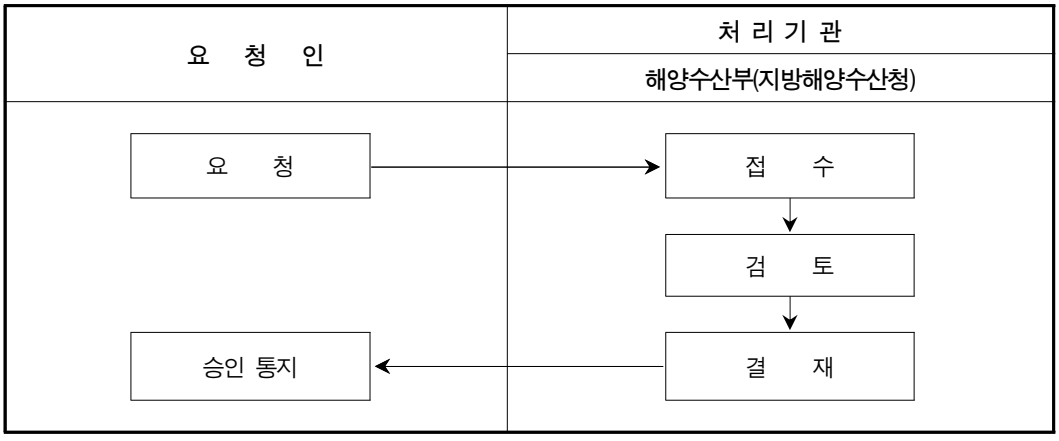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별지 제5호서식의 침선표지 설치·관리 대행요청서
  2.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 위치도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로표지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5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침선표지 설치·관리 대행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사유		
관리계획	[ ] 직접관리 [ ] 위탁관리 [ ] 국가대행관리	

「항로표지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침선표지의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위치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요청	접수	검토	결재	통지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담당부서 : 항로표지과(연락처 : 044-200-5875)
- 접수처리(12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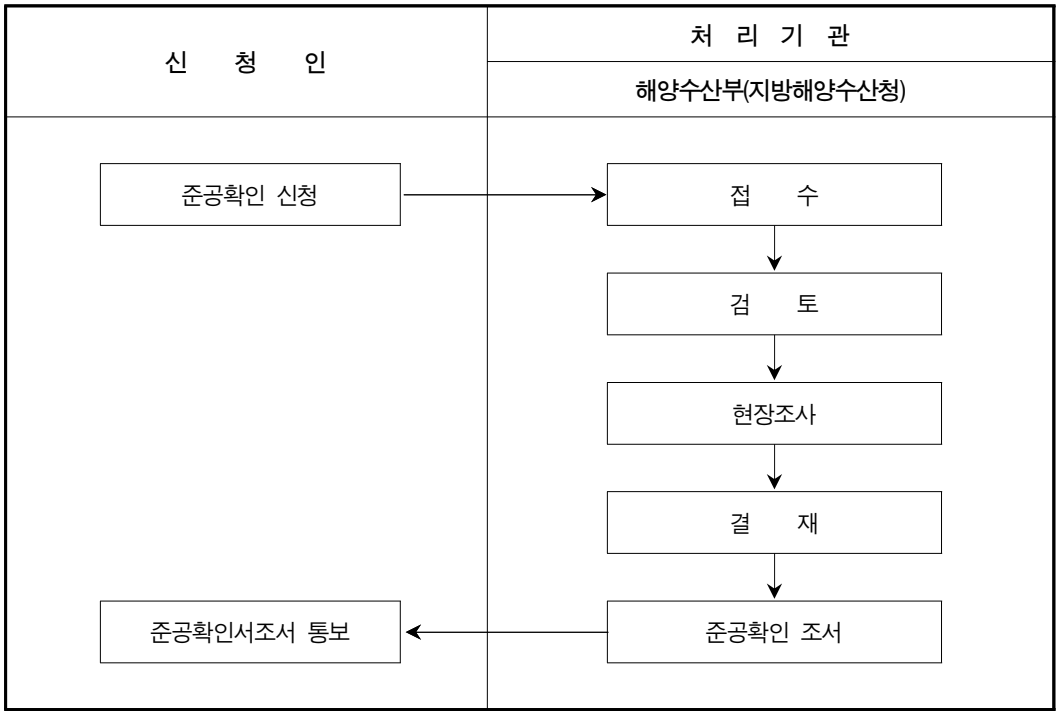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
  2.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하여는 광도산출서를 포함한다)
  3. 측량성과표
  4.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
  5. 준공 전·후 사진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로표지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일

공 사 명	
공사위치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위 공사는 설계도서 및 사설항로표지 허가서의 내용대로 준공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결과서(같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하며, 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산출서를 포함합니다) 2. 측량 성과표 3.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용품 현황 4. 준공 전 및 준공 후의 사진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담당부서 : 항로표지과(연락처 : 044-200-5877)
- 접수처리(25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검사대행기관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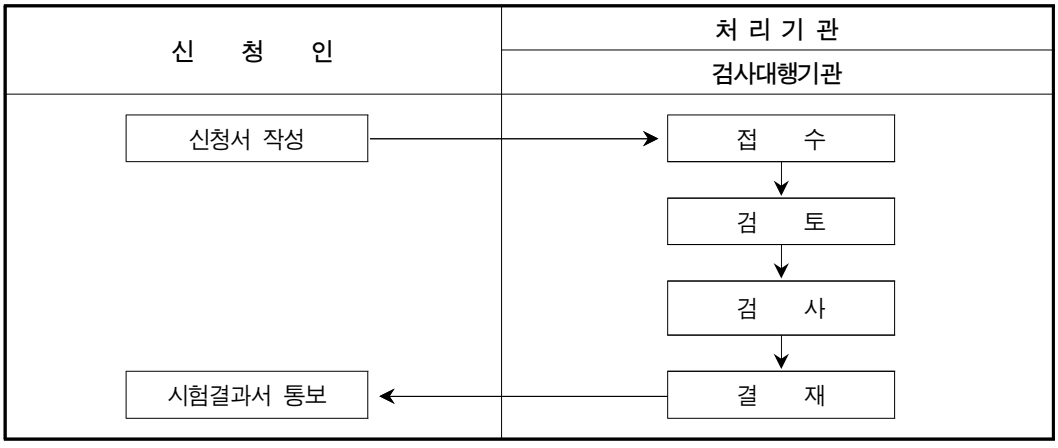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신청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로표지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용품 합격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21호 서식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장비·용품명		번호(수량)
규 격		
검사장소 (위치)		
제조·수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전회 검사일	년 월 일	
검사결과		

위 항로표지 장비·용품에 대하여 「항로표지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전·정기·변경)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검사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검사	→	결재	→	검사결과서 발급
신청인		검사대행기관		검사대행기관		검사대행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대행기관지정 (재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4항)
- 담당부서 : 항로표지과(연락처 : 044-200-5877)
- 접수처리 : 지정(30일), 재지정(2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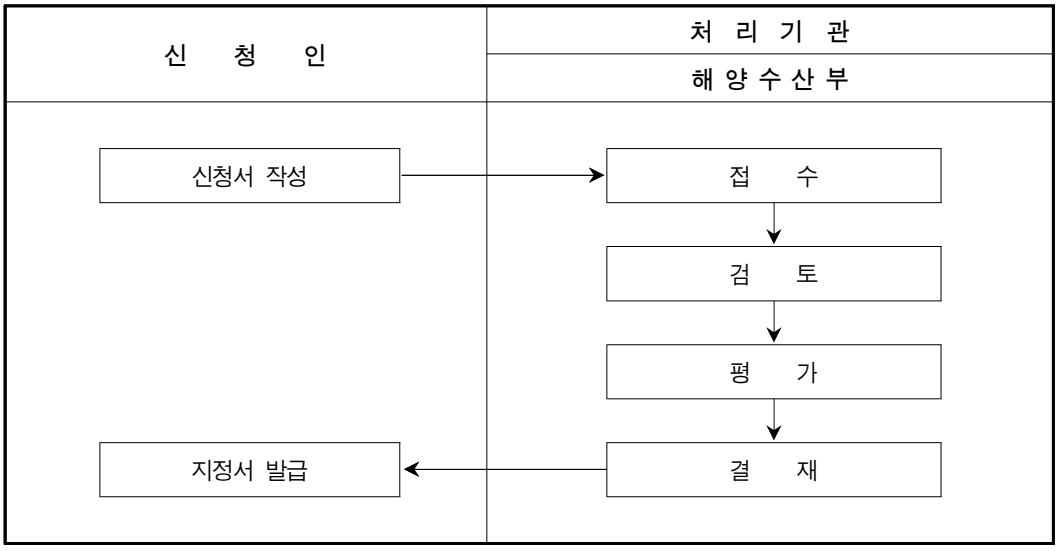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4. 검사원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로표지법 항로표지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4항) 에 따른 대행기관 저징(재지정) 허가 기준의 적합 여부

:: 별지 제23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지 정) 20일(재지정)

신청인	기관명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항로표지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4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재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수수료 없음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 중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인(검사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평가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담당부서 : 항로표지과(연락처 : 044-200-5875)
- 접수처리(2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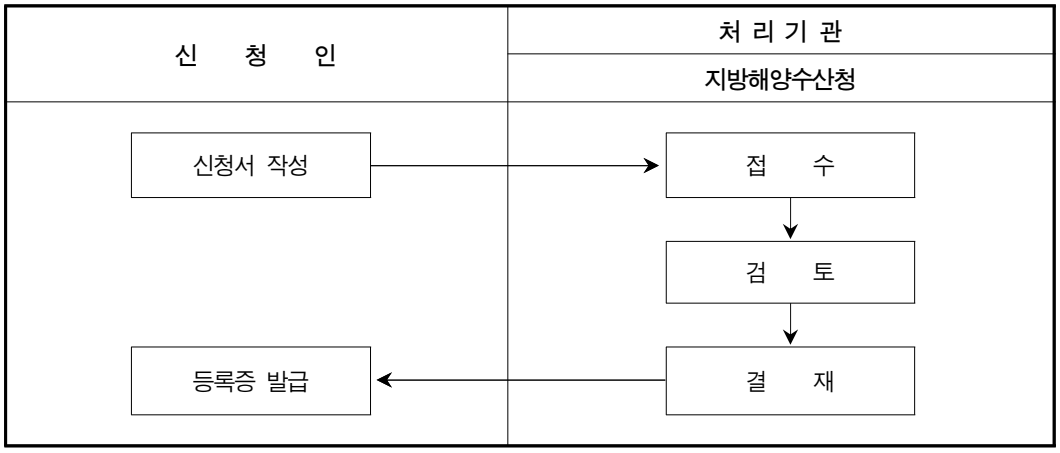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로표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허가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10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명칭(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사항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자격 및 인원	
	자본금 및 재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	

「항로표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4. 보유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수수료 없음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3.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신청인의 「항로표지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중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자(사설항로표지관리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담당부서 : 항로표지과(연락처 : 044-200-5875)
- 접수처리(2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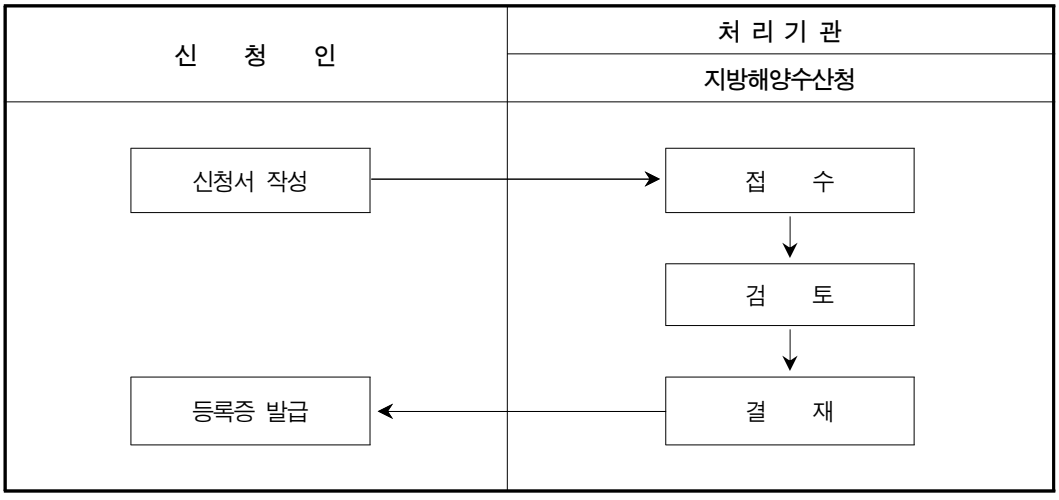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2. 영업장소·상호 또는 대표자(법인)의 변경(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성명(법인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시설 및 장비의 변경
   1)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2)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항로표지관리원의 변경
   - 새로이 임명하려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로표지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13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명칭(상호)	등록번호	등록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항로표지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없음	수수료 없음
	성명(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없음	
	시설 및 장비의 변경	1.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2.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변경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성명(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시설 및 장비의 변경	없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변경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및 결격사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중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인(사설항로표지관리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1조
- 담당부서 : 항로표지과(연락처 : 044-200-5875)
- 접수처리(1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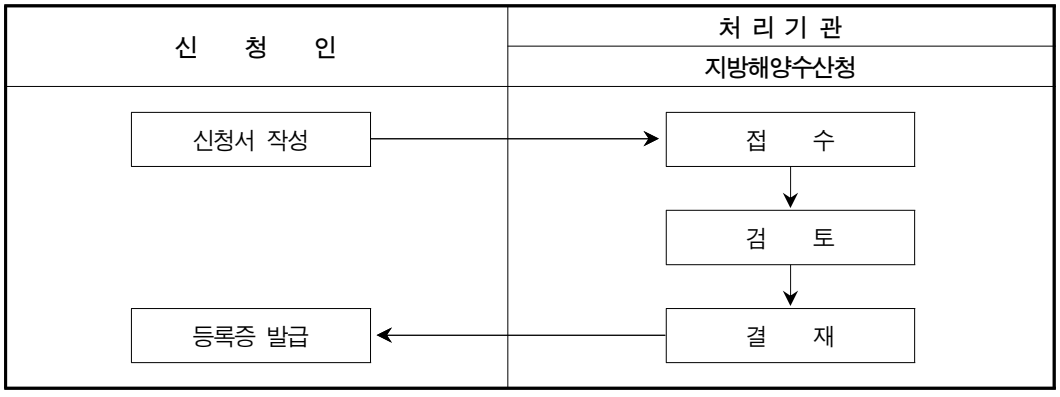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훼손된 등록증(훼손 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1조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14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명칭(상호)	등록번호	등록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재발급 사유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훼손된 등록증(등록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상속인 사업승계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1호
- 담당부서 : 항로표지과(연락처 : 044-200-5875)
- 접수처리(3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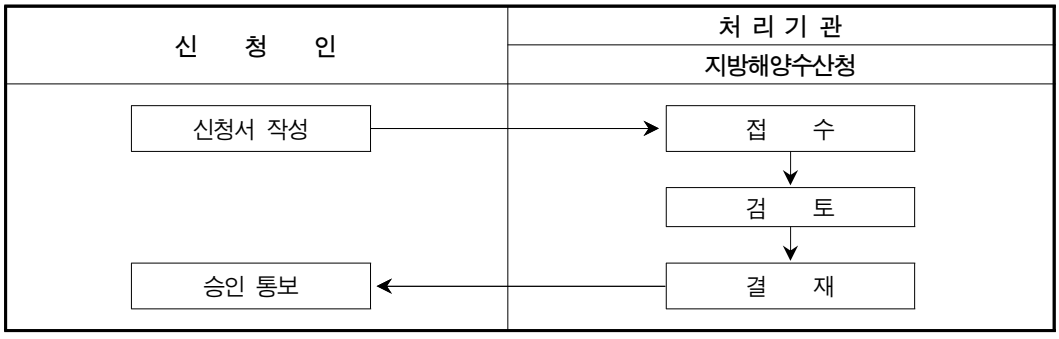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2. 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로표지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상속인 사업승계 허가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15호서식

상 속 인 사 업 승 계 신 고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 일

상속인	상호(명칭)	설립연월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계사업의 종류	

피상속인의 성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신고인 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항로표지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mm×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양수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
- 담당부서 : 항로표지과(연락처 : 044-200-5875)
- 접수처리(6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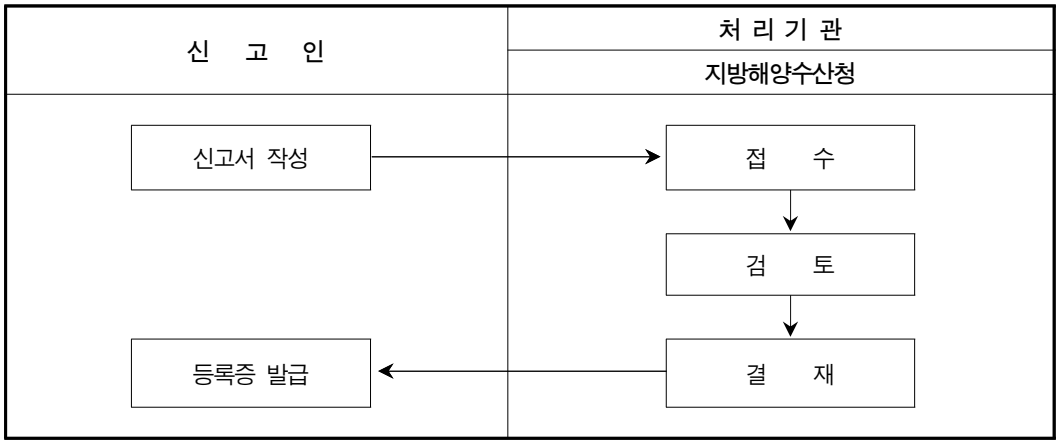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수신고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
  3.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로표지법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양수신고 허가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16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 수 신 고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 일

양도인	상호(명칭)	설립연월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상호(명칭)	설립연월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내용의 표 시	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양도·양수 가격	
	양도·양수 사유	

「항로표지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양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mm×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 합병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3호
- 담당부서 : 항로표지과(연락처 : 044-200-5875)
- 접수처리(3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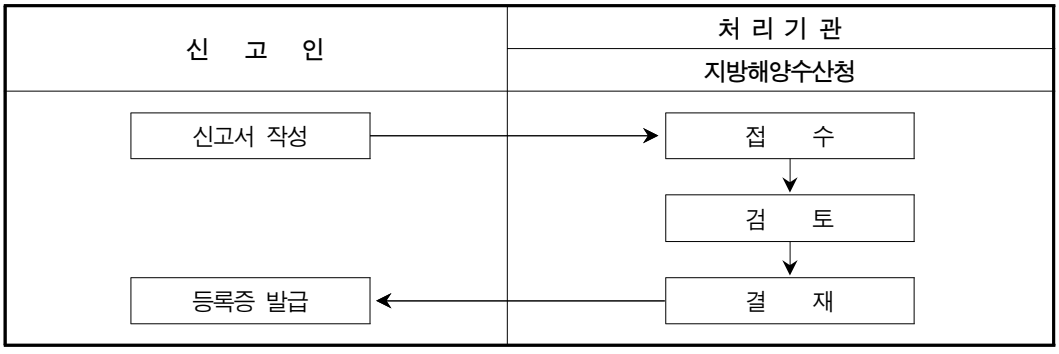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별지 제17호서식의 합병신고서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로표지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 기준 적합여부

:: 별지 제17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 병 신 고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 일

합병되는 법 인	상호(명칭)	설립연월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상호(명칭)	설립연월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합병의 방법과 조건	
	합병일	
	사 유	

「항로표지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수수료 없음
지방해양수산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통보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로표지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담당부서 : 항로표지과(연락처 : 044-200-5875)
- 접수처리(즉시)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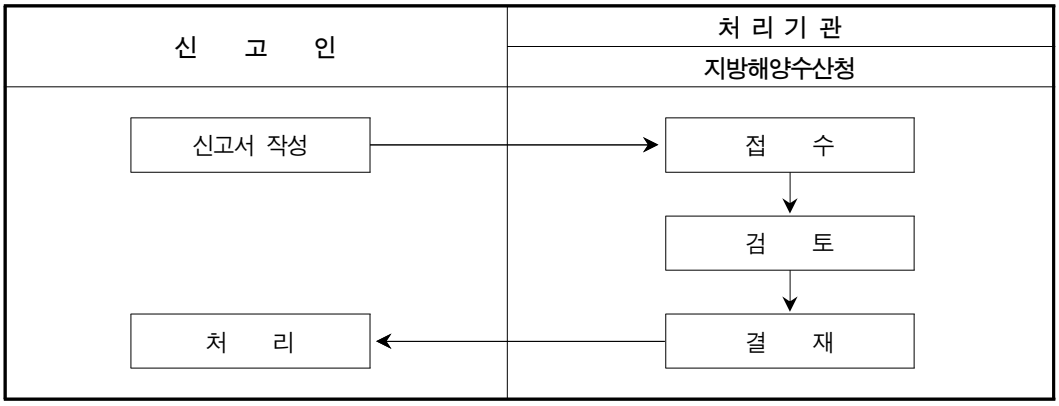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로표지법 항로표지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 개시·휴지·재개·폐지 신고 적합여부

:: 별지 제1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폐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설립연월일
	성 명	생년월일
	위탁관리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개시, 재개 또는 폐지 연월일

영업휴업의 경우 그 기간

영업휴업 또는 폐지의 이유

「항로표지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관리업의 개시·휴업·재개·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해양사고 서류 및 증거물 열람 등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73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제106조
- 담당부서 : 심판관실 (연락처 : 044-200-61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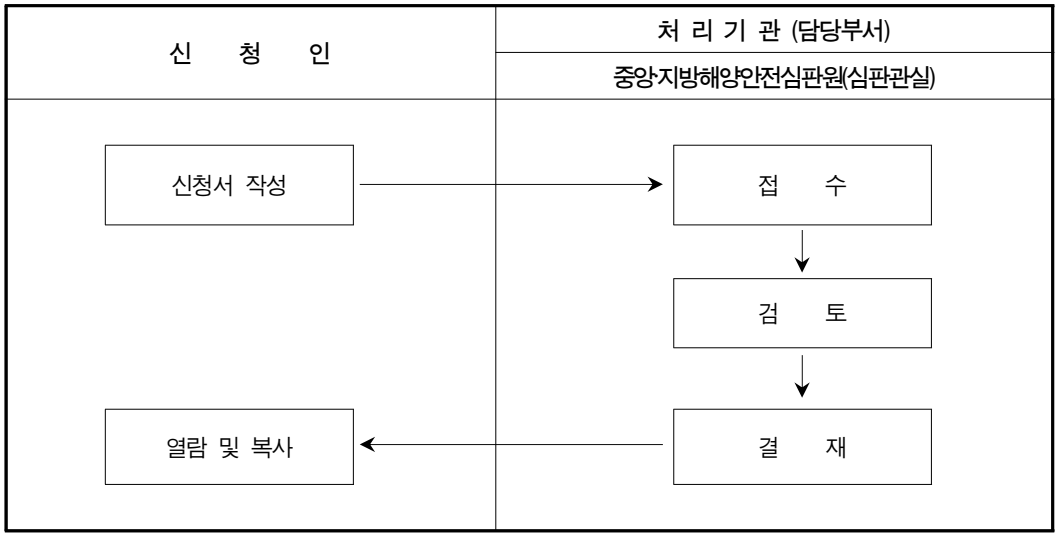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서류 및 증거물 열람 등 신청서
- 수수료 : 1매당 1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73조에 의한 신청인(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심판변론인) 적격여부
- 증거보전을 위한 열람 제한여부

:: 별지 제61호서식(제106조제1항 관련)

서류및증거물의열람등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④사건진행번호				
⑤사 건 명				
⑥구 분	열람. 복사. 속기사 사용			
⑦범위(구체적)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등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장 귀 하

위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 불허가)함.

(1) 허가하지 않는 경우의 사유

(2) 허가시 제한 사항

수 수 료
· 1매마다 : 100원 · 21매이상 소요될 때에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 100원

년 월 일

○○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

심판관 ㊞

해양안전심판 재결서 등본 발급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
- 담당부서 : 심판관실 (연락처 : 044-200-61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처리기간 1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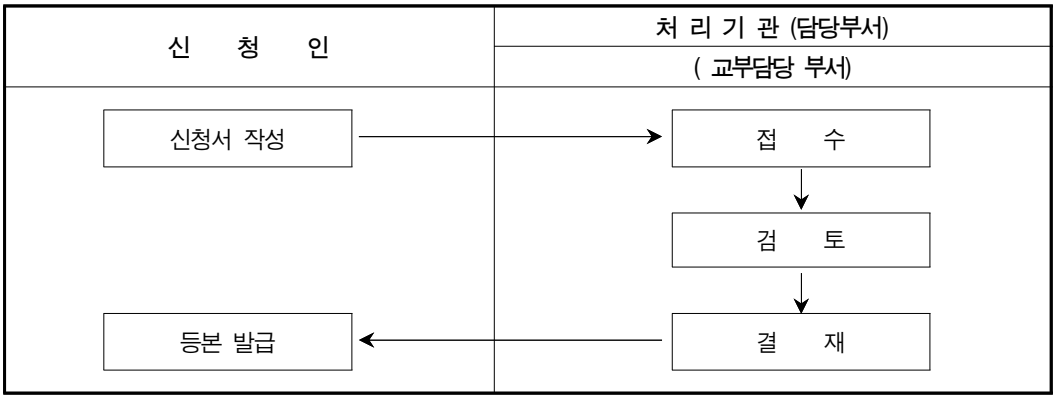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해양안전심판 재결서 등본교부신청서
- 수수료 : 1매당 1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신청인(해양사고 관련자, 이해관계인, 심판변론인) 적격여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재결서 등본 발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 결 번 호	○○ 해심 제 - 호
사 건 명	
재결년월일	
청 구 사 유	
통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재결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

문의처: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수수료 1매당 100원 본란이 부족시는 뒷면에 첨부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청구인		처리기관 (관할 지방해양 안전심판원)		처리기관 (관할 지방해양 안전심판원)		처리기관 (관할 지방해양 안전심판원)		처리기관 (관할 지방해양 안전심판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심판변론인 등록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담당부서 : 심판관실 (연락처 : 044-200-61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처리기간 2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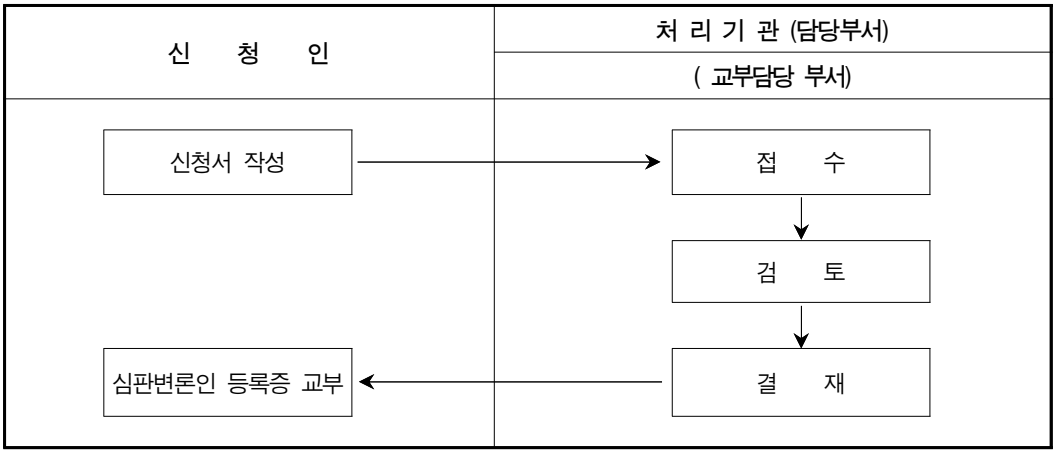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1부
2. 자격증명서 1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반명함판 사진 2매

- 수수료 : 1,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자격요건
-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
- 증거보전을 위한 열람 제한여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무소의 소재지		
자격취득 근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 )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귀하

첨부서류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2장	수입인지(1천원) (이 난이 부족할 때에는 뒷면에 붙여 주십시오)

문의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044-200-6116)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선람 및 검토	결재	통보
신청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신청인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담당부서 : 심판관실 (연락처 : 044-200-61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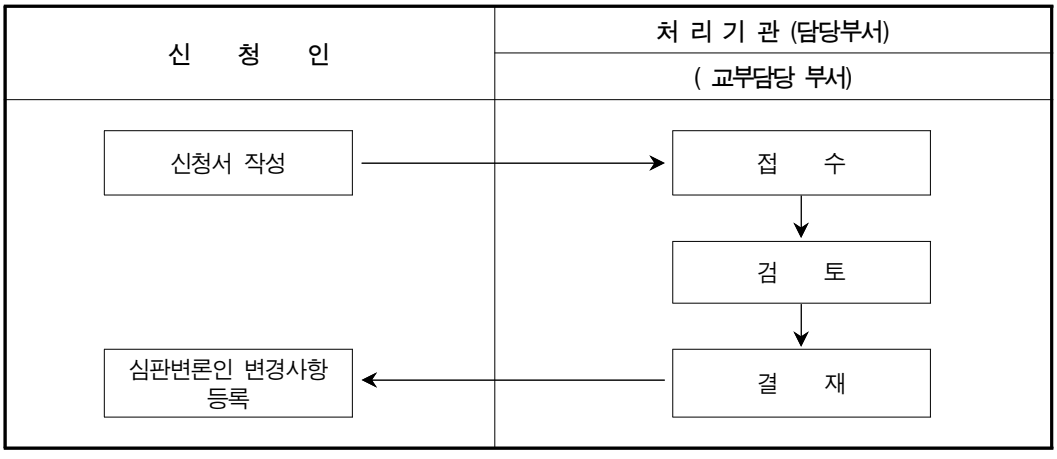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심판변론인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 확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등록번호	제 호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귀하

문의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044-200-6116)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및 검토	→ 심판변론인 등록부상 변경사항 기재
신고인	처리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처리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처리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8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연락처 : 044-200-582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일)

2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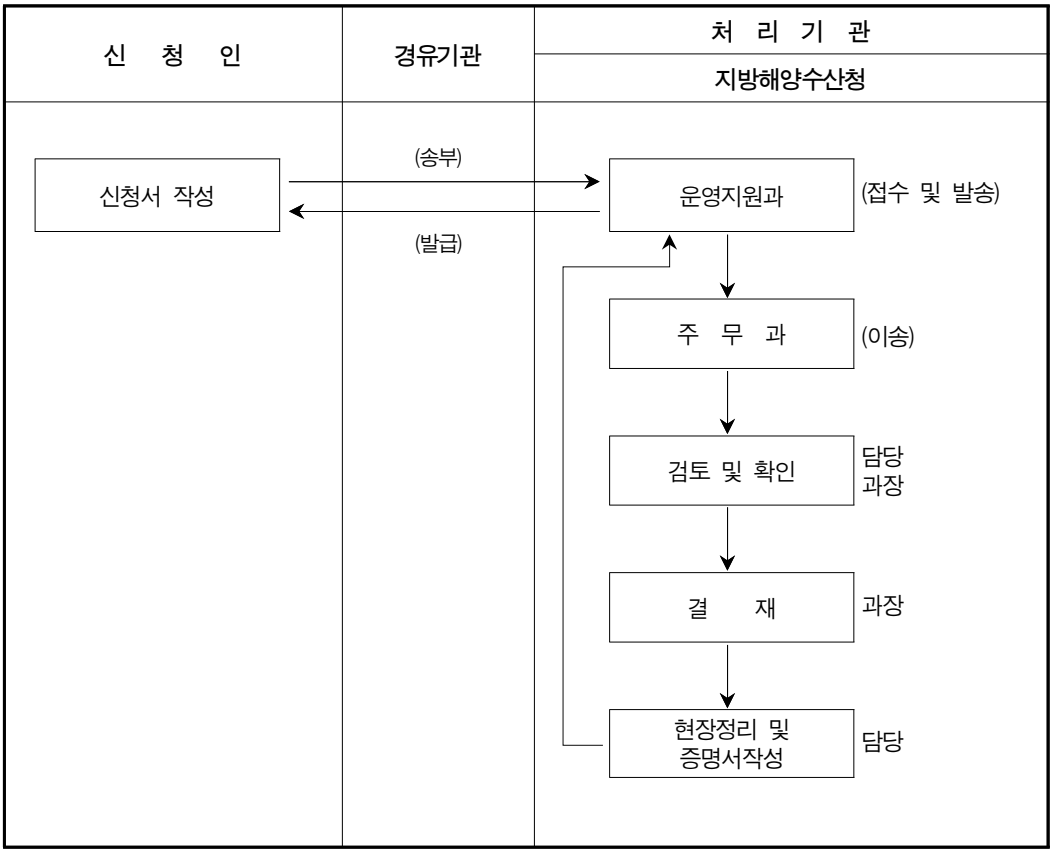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
- 수 수 료 : 2,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한도액 이상을 담보하고 있는 지 여부
-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인지 여부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와 계약체결 여부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14〉

(앞면)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선박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한글 : 영문 :			
	주 소				
선박의 명세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선 적 항	용 도
	한 글				
	영 문				
		항해구역	진 수 일	총 톤 수	재화중량톤수
	한 글			G/T	DWT
	영 문				
보증의 종류		한글 : 영문 :			
보증기간 (보증금액)		( )			
재발급 사유					
보험자 또는 보증인	성 명 (명 칭)	한글 :			
		영문 :			
	주 소	한글 :			
		영문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 재발급)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첨부서류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재발급의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2천원

53318-06711민
92.12.16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연락처 : 044-200-582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일)

2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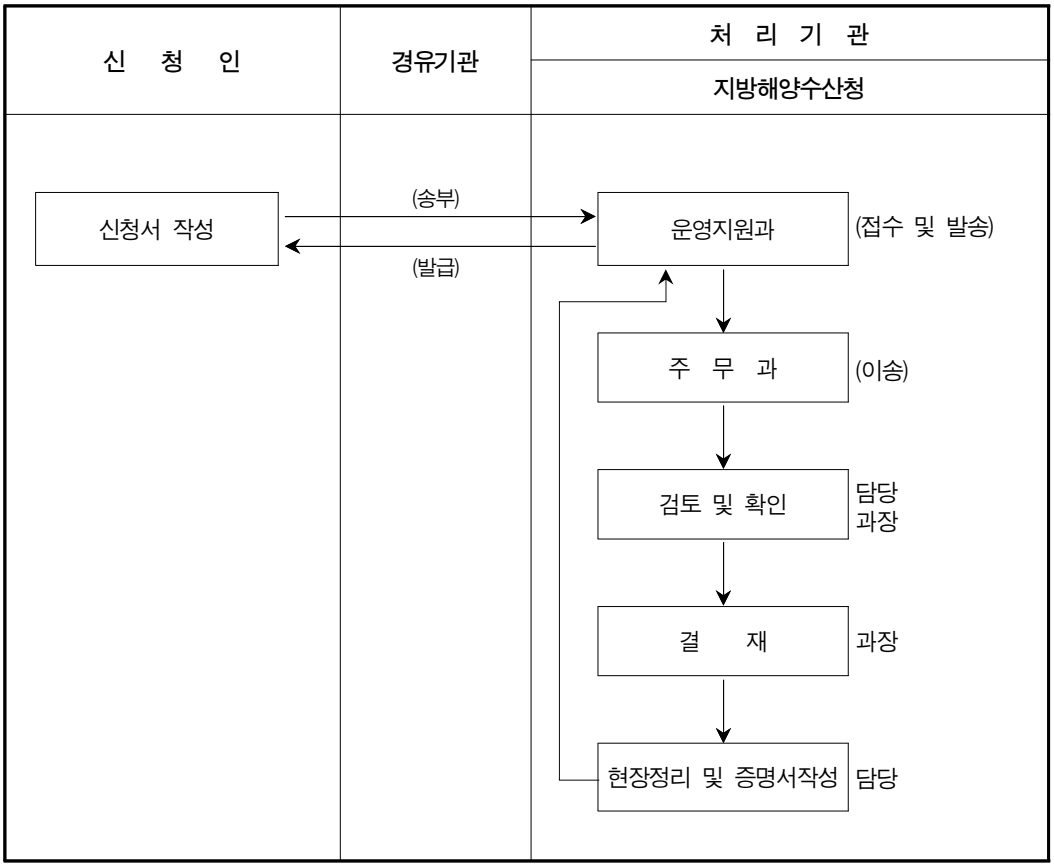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 수수료 : 2,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사항 발생 여부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14〉

(앞면)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선박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명칭)				
	주 소				
선박의명세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총 톤 수	선 적 항	
	재화중량톤수	증명서 번호	증명서 발급연월일	증명서 유효기간	
보장계약증명서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수수료 2천원

53318-06811민
92.12.16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9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연락처 : 044-200-582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일)

2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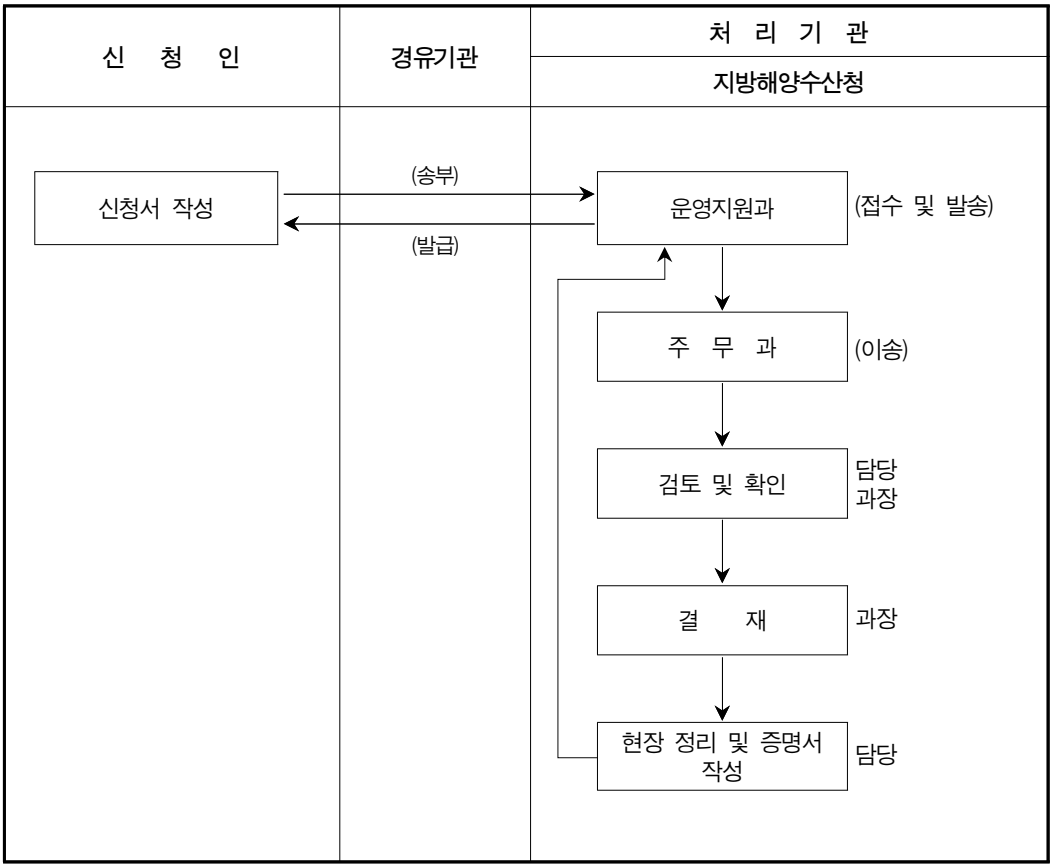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
- 수 수 료 : 2,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한도액 이상을 담보하고 있는 지 여부
- 일반선박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인지 여부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와 계약체결 여부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3.14〉

(앞면)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선박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한글 : 영문 :			
	주 소				
선박의 명세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IMO 번호	선 적 항
	한 글				
	영 문				
		선박의 종류	항해구역	총 톤 수	재화중량톤수
	한 글			G/T	DWT
	영 문				
보증의 종류		한글 : 영문 :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 )			
재발급 사유					
보험자 또는 보증인	성 명 (명 칭)	한글 : 영문 :			
	주 소	한글 : 영문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선박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첨부서류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재발급의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2천원

53318-06711민
92.12.16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9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연락처 : 044-200-582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일)

2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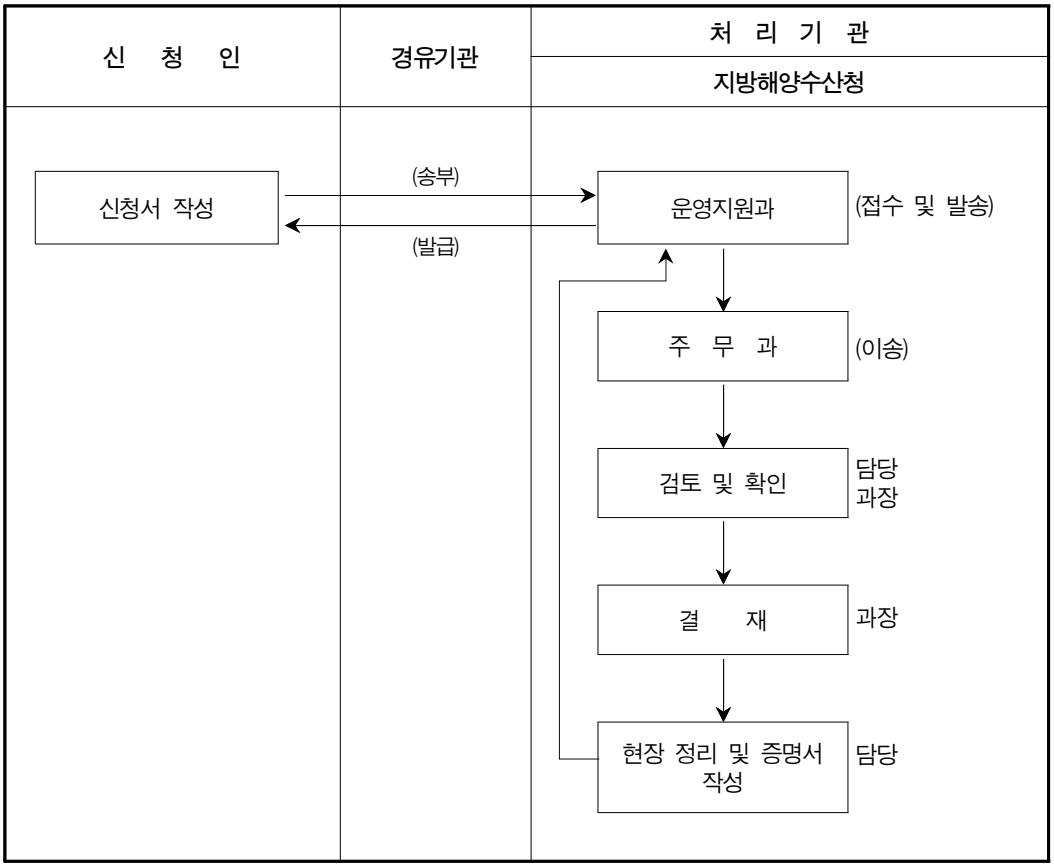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
- 수 수 료 : 2,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한도액 이상을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
-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인지 여부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와 계약체결 여부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3.14〉

(앞면)

<table>
<tr><td colspan="6">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td><td>처리기간
3일</td></tr>
<tr><td rowspan="2">선 박
소유자</td><td colspan="2">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td><td colspan="4">한글 :
영문 :</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선박의
명세</td><td></td><td>선박의 명칭</td><td>선박번호</td><td>총 톤 수</td><td colspan="2">저 장 능 력</td></tr>
<tr><td>한 글</td><td></td><td></td><td rowspan="2">G/T</td><td colspan="2" rowspan="2">M/T</td></tr>
<tr><td>영 문</td><td></td><td></td></tr>
<tr><td colspan="5">설 치 장 소</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2">보증의 종류</td><td colspan="5">한글 :
영문 :</td></tr>
<tr><td colspan="2">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td><td colspan="5">( )</td></tr>
<tr><td colspan="2">재발급 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보험자
또는
보증인</td><td rowspan="2">성 명
(명 칭)</td><td colspan="5">한글 :</td></tr>
<tr><td colspan="5">영문 :</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5">한글 :</td></tr>
<tr><td colspan="5">영문 :</td></tr>
</table>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선박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첨부서류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재발급의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2천원

53318-06711민
92.12.16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9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연락처 : 044-200-582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일)

2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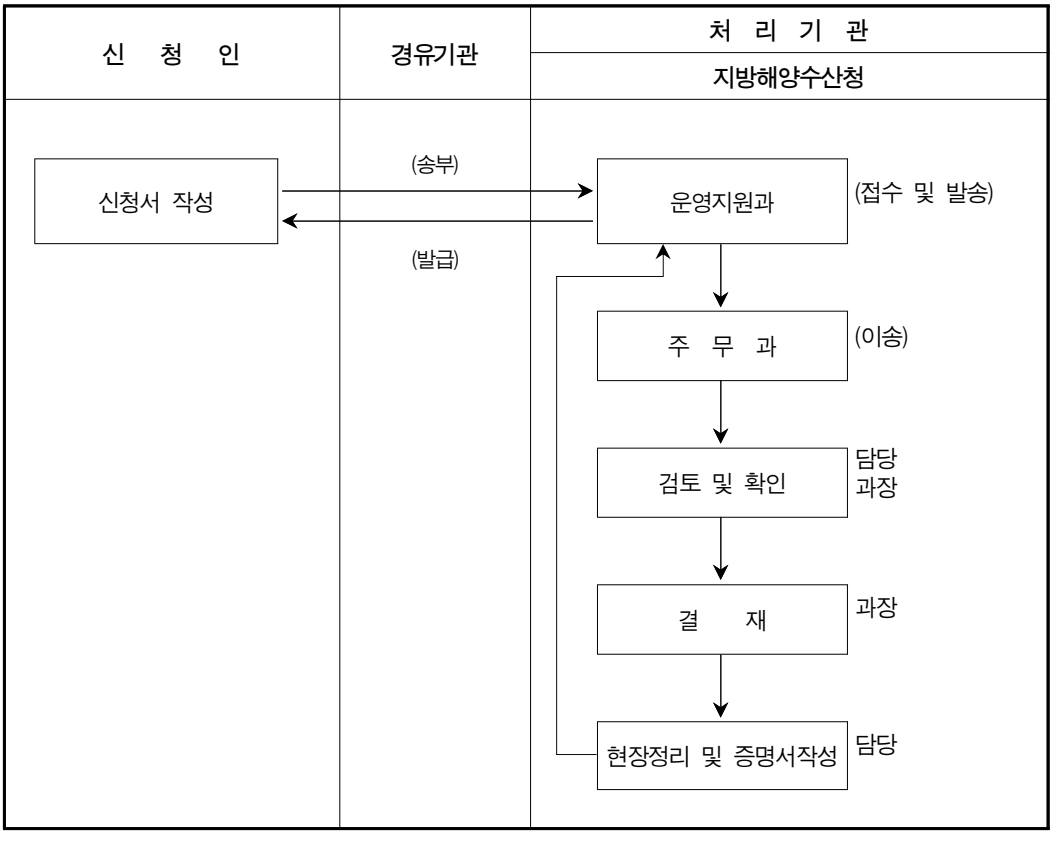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 수수료 : 2,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사항 발생 여부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8.3.14〉

(앞면)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선박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명칭)				
	주 소				
선박의명세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IMO 번호	선 적 항	용 도
	총 톤 수	재화중량톤수	증명서 번호	증명서 발급연월일	증명서 유효기간
	G/T	DWT			
보장계약증명서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수수료 2천원

53318-06811민
92.12.16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9조
-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연락처 : 044-200-582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3일)

2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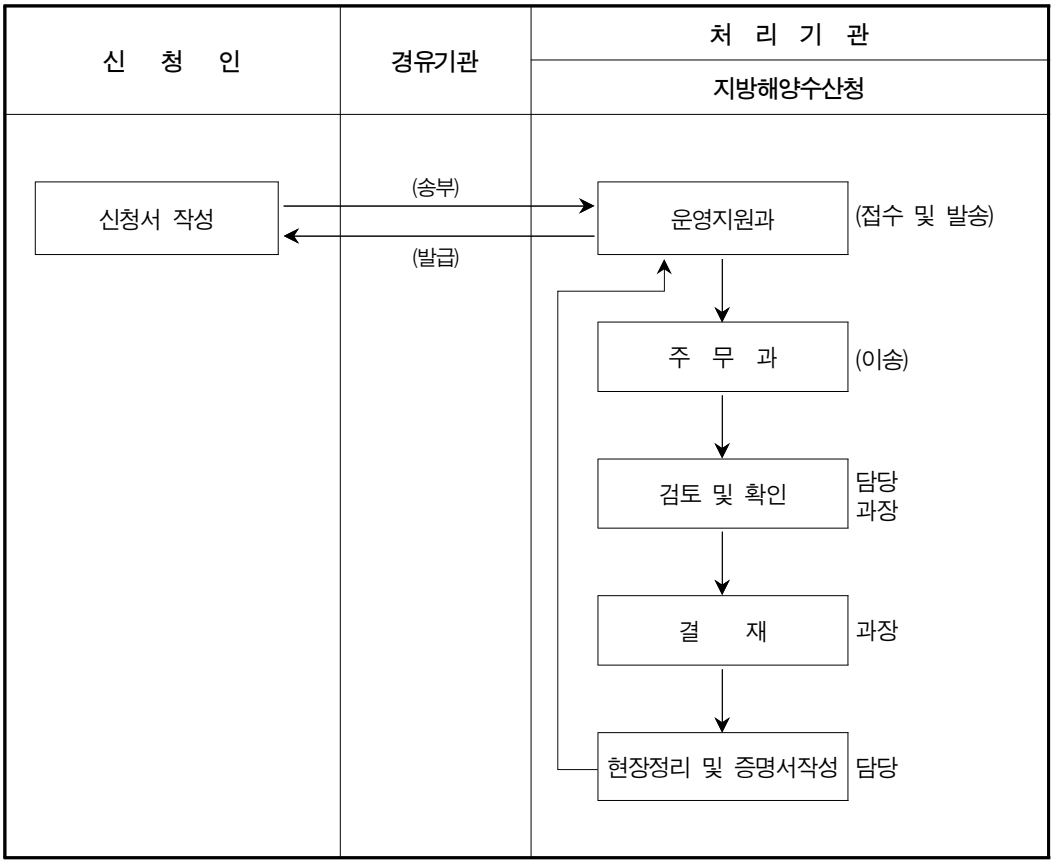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 수수료 : 2,0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사항 발생 여부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3.14〉

(앞면)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선박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명칭)				
	주 소				
선박의명세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총 톤 수		저장능력
			G/T		M/T
	설치장소	증명서 번호	증명서 발급연월일		증명서 유효기간
보장계약증명서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수수료 2천원

53318-06811민
92.12.16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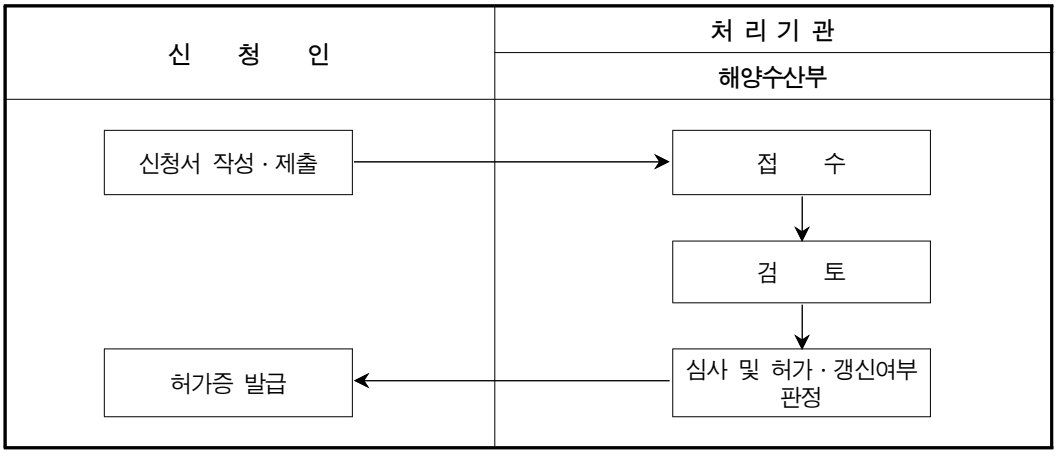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붙임의 별지 제3호서식 참고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상특수경비업 [ ] 허가 [ ] 갱신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대표자 성명)	조직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무의 범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 1부 2. 갱신허가 신청시 가. 허가증 원본 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정관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검토	→	심사 및 허가 · 갱신여부 판정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재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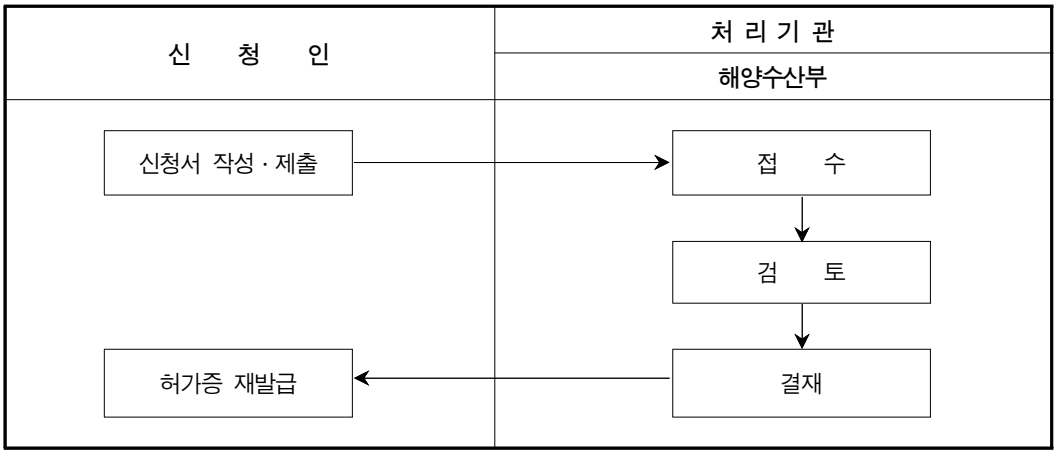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붙임의 별지 제5호서식 참고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여부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법인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신청 사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가.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1부 나. 허가증이 못 쓰게 된 경우: 그 허가증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

해상특수경비업 영업개시(폐업)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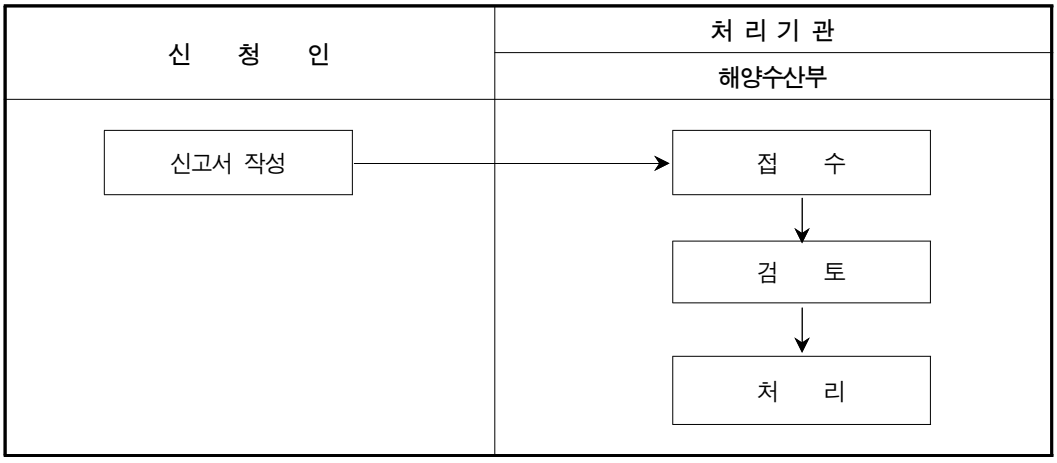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붙임의 별지 제6호서식 참고

- 수수료 : 없음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해상특수경비업 [ ] 영업개시 [ ] 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지	
해상특수 경비업무 수행시설	시설명	
	주소지	
도급내역	도급기간	도급액
	경비원의 수	
해상특수 경비업의 영업 기간	개시일 년 월 일	
	종료일 년 월 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및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폐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

신고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 × 297㎜[백상지 80g/㎡]

해상특수경비업 휴업·재개업·휴업기간 연장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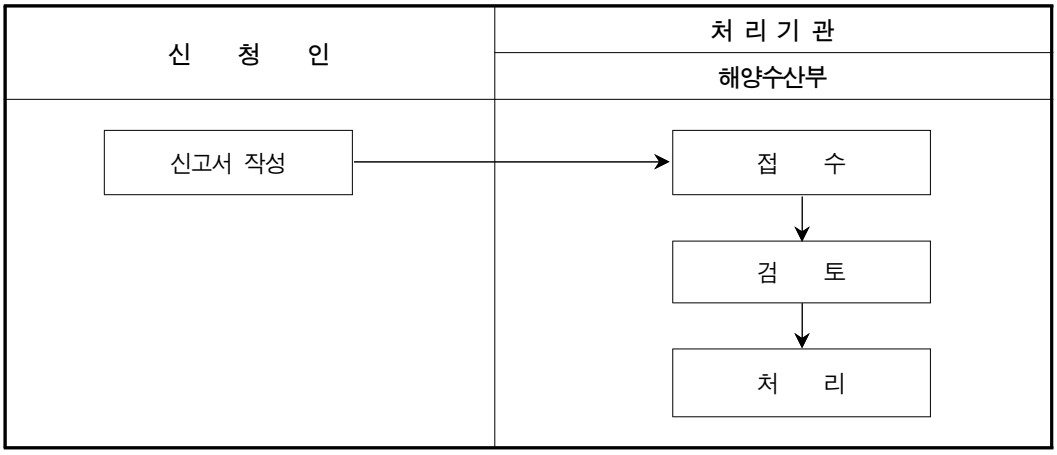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해상특수경비업 [ ] 휴업 [ ] 재개업 [ ] 휴업기간연장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지	
신고 내용	주소 (전화번호:)	
	폐업 또는 휴업 연월일	
	영업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연월일	
사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 ]휴업
[ ]재개업 을 신고합니다.
[ ]휴업기간연장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

신고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297㎜[백상지 80g/㎡]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1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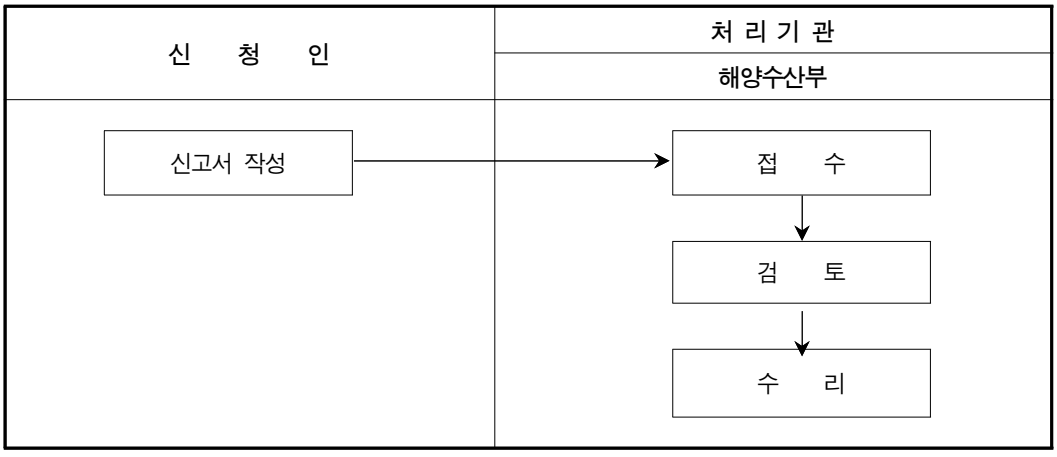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붙임의 별지 제8호서식 참고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허가요건 충족여부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법인명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신고 내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법인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2. 법인의 대표자 · 임원을 변경한 경우 가. 허가증 나. 대표자 · 임원의 이력서 1부 3. 법인의 주사무소, 출장소 또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신설 · 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허가증 4.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 × 297㎜[백상지 80g/㎡]

적경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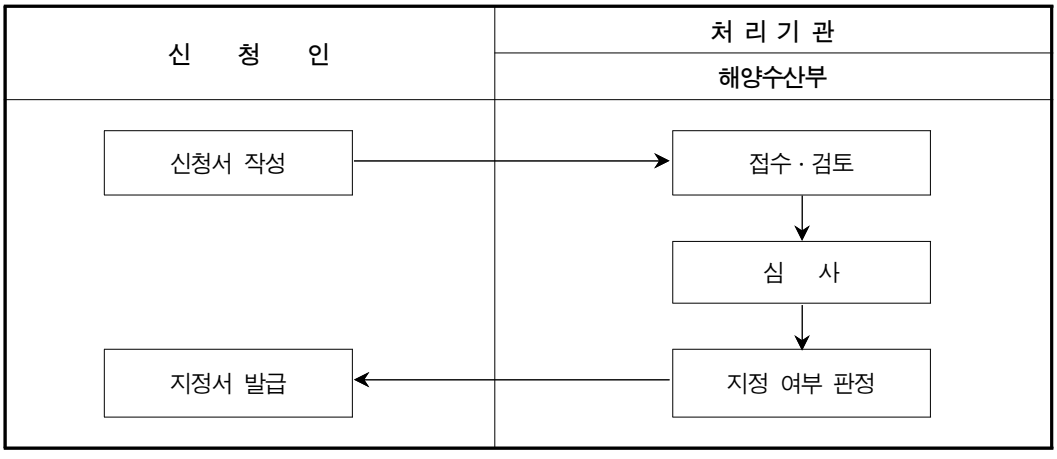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붙임의 별지 제9호서식 참고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여부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성명)	조직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행업무의 범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격성심사에 대한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적격성심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적격성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사	→	지정 여부 판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

무기 구입·교체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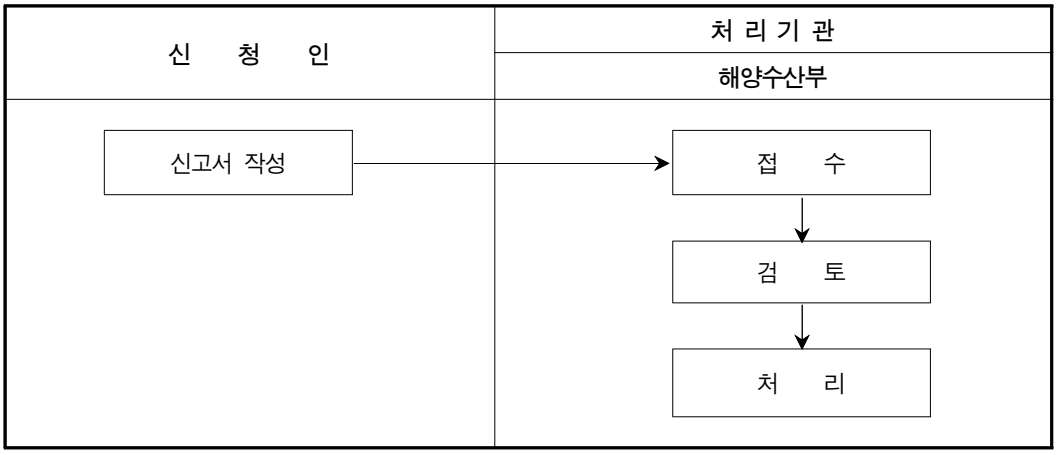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무기 구입 · 교체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무기의 명칭		
	무기의 수량		
	탄약의 수량		
	변경 사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기의 구입 · 교체에 따른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

신고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 × 297㎜ [백상지 80g/㎡(재활용품)]

무기 도난·분실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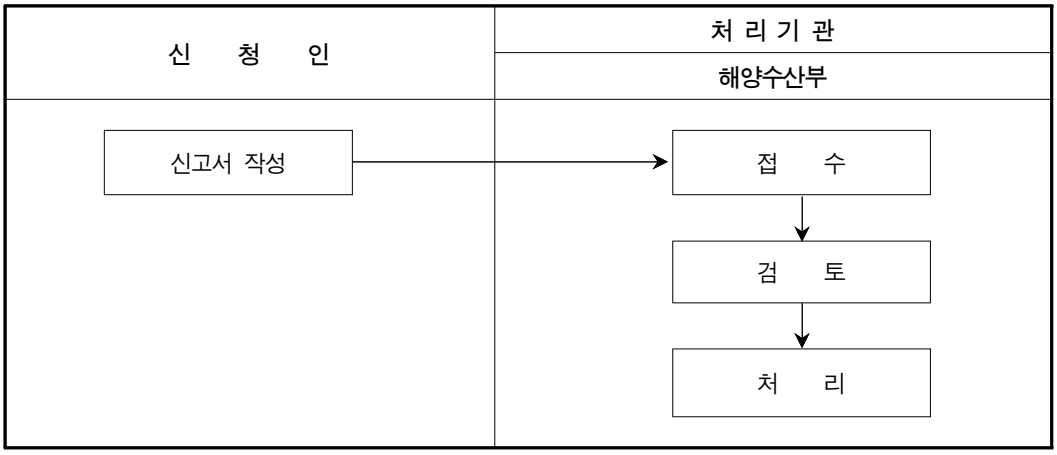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무기 도난 · 분실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무기의 도난 분실 내역	비고
신고 내용	품명	
	형식	
	수량	
	구경	
	제조번호	
	도난 · 분실 장소	
	도난 · 분실 사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기의 도난 · 분실에 따른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처리

신고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 ×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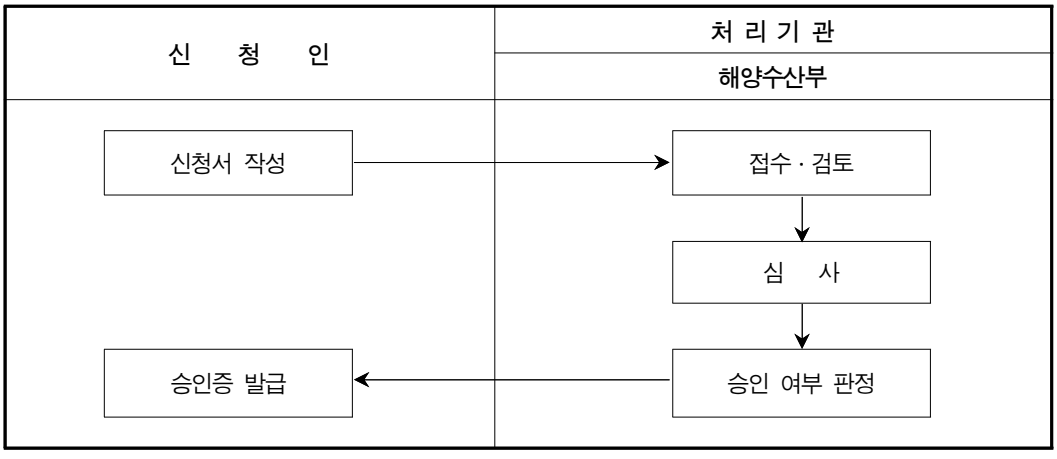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붙임의 별지 제18호서식 참고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여부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무의 범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자국에서 발급받은 인가 · 허가 등의 증명서 사본 1부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사	→	승인 여부 판정	→	승인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

국내 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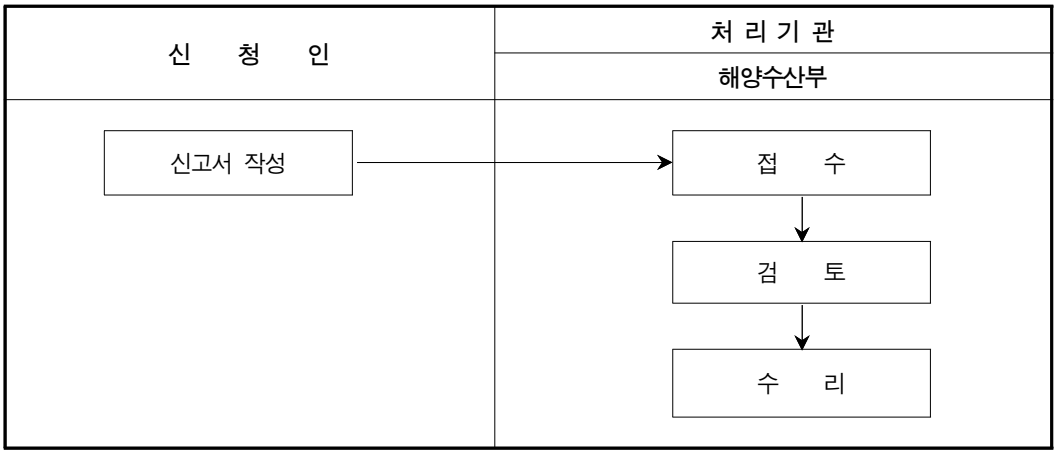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붙임의 별지 제20호서식 참고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여부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국내 [ ] 지사 [ ] 분사무소 [ ] 설치 [ ]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사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지사 [ ] 분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업무범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설치 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 검토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 수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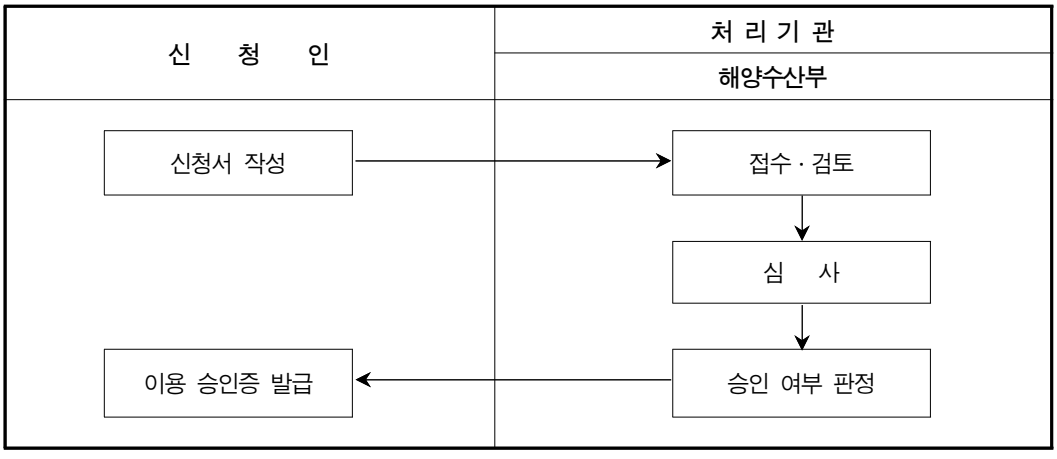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붙임의 별지 제21호서식 참고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여부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외국 해상 특수경비업자 이용	사유	
	선박	
	해역	
	기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화물운송 계약서 사본 1부 2.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4. 해상특수경비원 사용계획서 5. 무기 사용과 관련한 선박소유자등, 화주 및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서류 1부 6.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에 승선하는 선원 · 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사	→	승인 여부 판정	→	이용 승인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

기록 보고(무기 반·출입 또는 사용)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담당부서 : 해사안전관리과 (연락처 : 044-200-5854)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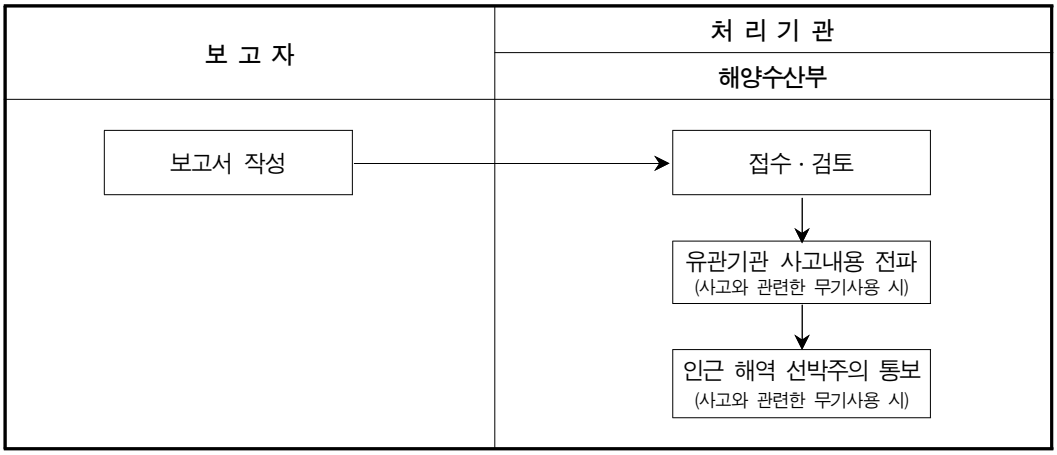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기록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보고인	법인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무기의 종류	수 량	반입 · 반출 장소	비 고
무기 반입 · 반출 시				

	사고 시간 및 위치	피해 사항	사고 내용	비 고
무기 사용 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무기의 반입 · 반출 또는 사용 사실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유관기관 사고내용 전파 (사고와 관련한 무기 사용 시)	→	인근 해역 선박 주의 통보 (사고와 관련한 무기 사용 시)
보고자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

PART

05

항 만

해양수산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1. 항만법(제16조)
  2.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제13조)
  3.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제5조제1항및[별지3])
-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연락처 : 044-200-5921)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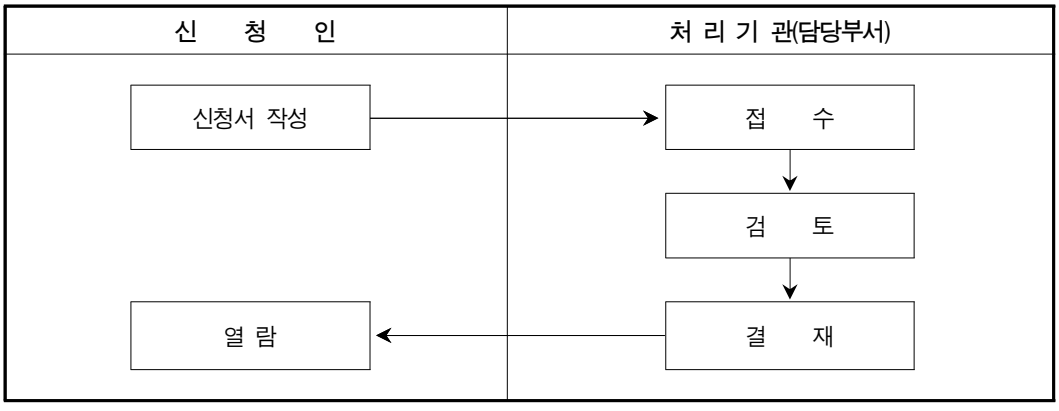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신청서
- 수수료 : 5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23〉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번호 제 호
	열람의 목적
	기타사항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5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1. 항만법(제16조) 2.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제21조)
  3.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제8조및[별지4])
-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연락처 : 044-200-5921)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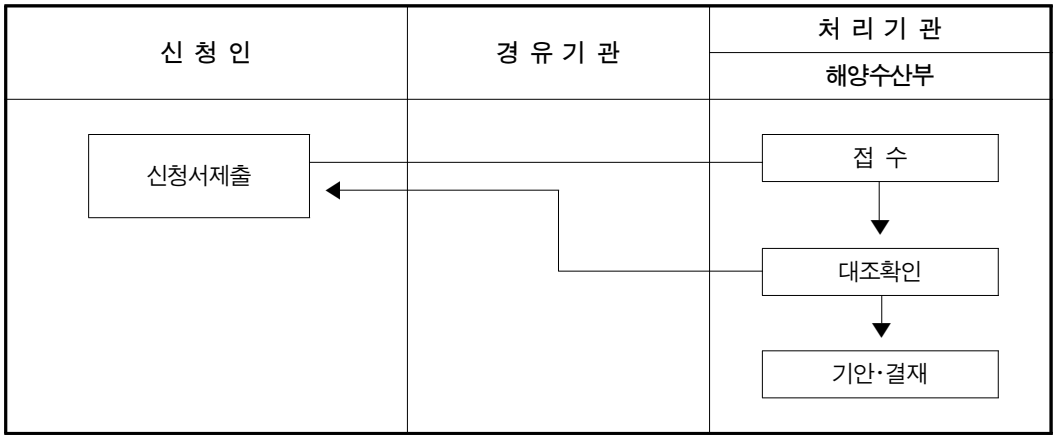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록필증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 5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23〉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항만시설 관리권의 표시	항만시설의 종류	
	항만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항만시설의 신축·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등록의 목적		
특 약		
기 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8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록증명서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정하는 서류	수수료 500원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등록필 통지	기타 통지

---------- 절 --------- 취 ---------- 선 ----------

등록번호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해양수산부장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항만시설관리권 등본(초본) 발급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1. 항만법(제16조) 2.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제13조)
  3.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제5조제1항및[별지2])
-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연락처 : 044-200-5921)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처리기간 0일)

2 업무 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 수	→	대조확인	→	기안·결재	→	교부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100원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23〉

항만시설관리권 [ ] 등본 [ ] 초본 교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번호 제 호
	청구구분
	용 도
	기타사항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3조에 따라 위의 ([ ] 등본 [ ] 초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100원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신항만건설 촉진법(제13조 제4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 및 별표9)
- 담당부서 : 항만개발과(연락처 : 044-200-593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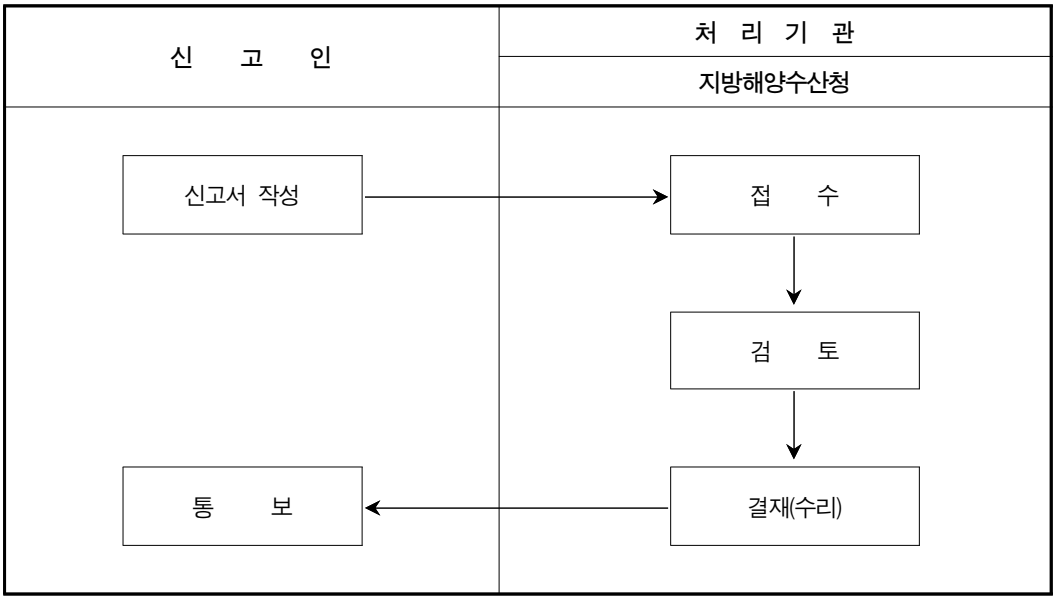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준공전사용신고서 1부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1부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당해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준수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건설사업 규정 이행 여부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6.23〉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승인일
	위치	준공예정일
	신고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 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수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신항만건설 촉진법(제7조제2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제9조),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5조및[별지3])
- 담당부서 : 항만개발과(연락처 : 044-200-5932)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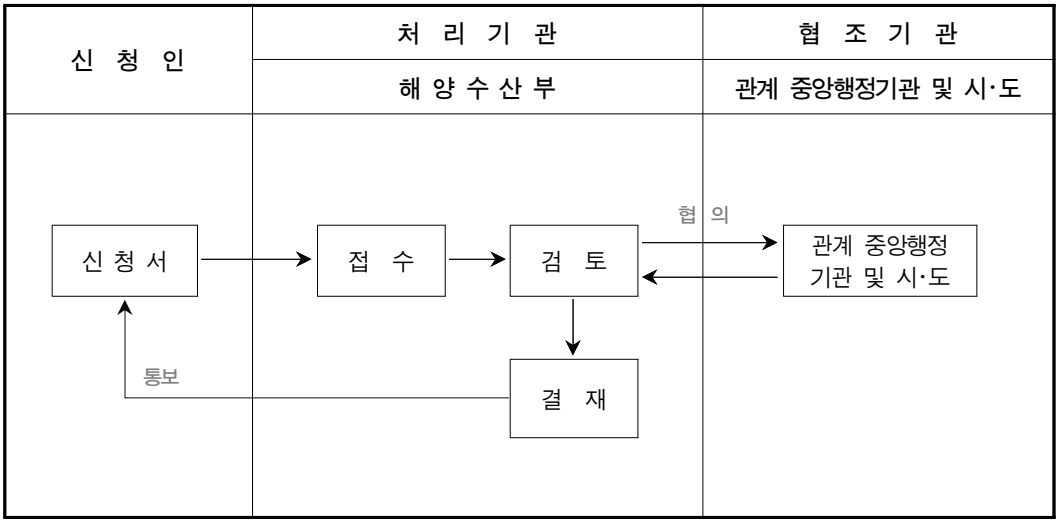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1부
3. 사업계획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신항만건설기본 계획 적합 여부
- 사업시행자로 지정에 대한 적합 여부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23〉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의 목적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사업내용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자금조달 계획	내자	자기자금	
				융자금	
	시행방법			기타	
				소계	
	시행기간		외자	차관	
				기타	
				소계	
			합계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적은 도면 2. 사업계획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신항만건설 촉진법(제13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및 [별지7])
- 담당부서 : 항만개발과(연락처 : 044-200-5932)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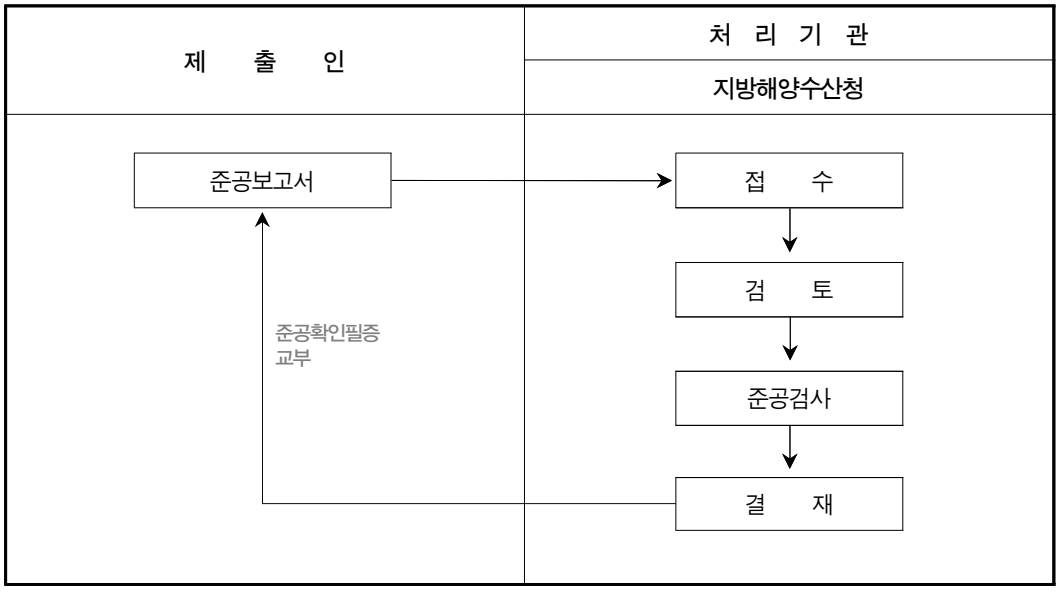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공사준공보고서 1부

2. 준공조서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1부
3. 공사 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 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1부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총공사비 명세서 1부
6.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준수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건설사업 규정 이행 여부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6.23〉

공사 준공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승인일
위치		
시설규모 또는 면적		
총공사비	천원	공사기간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확인을 받고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준공보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준공검사	→	결 재	→	준공확인필증 교부
제출인		처 리 기 관 :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신항만건설 촉진법(제8조제5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3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및 [별지6])
- 담당부서 : 항만개발과(연락처 : 044-200-5932)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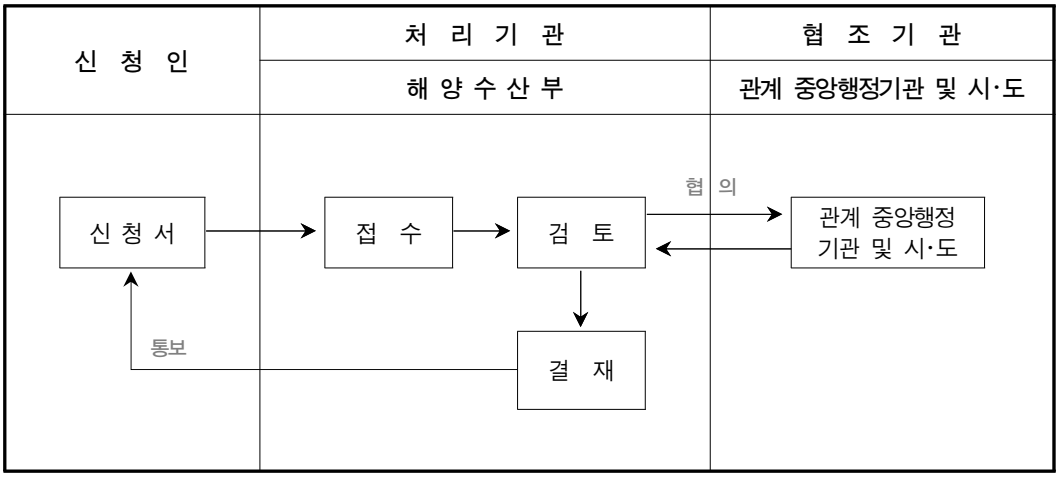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폐지)승인신청서 1부
  2.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실시계획 변경(폐지) 사유의 적정성
- 신항만건설기본계획과의 적합 여부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23〉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업명칭
사업위치
변경(폐지) 개요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폐지)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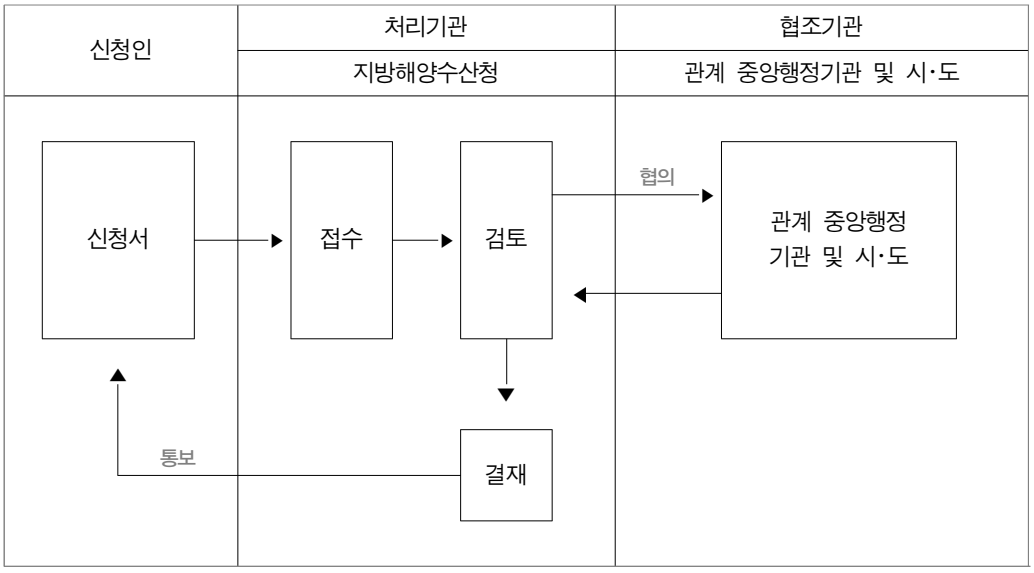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신항만건설 촉진법(제8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및 [별지 5])
- 담당부서 : 항만개발과(연락처 : 044-200-5932)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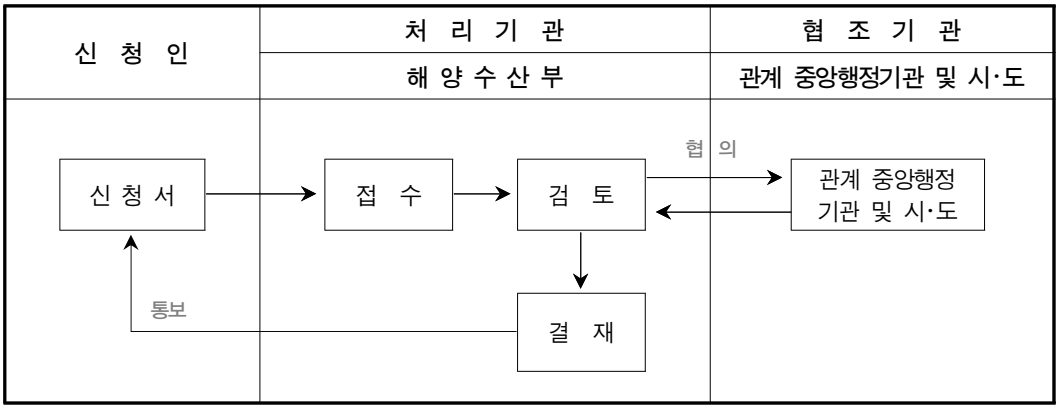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2.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1부
3. 공사세부시행계획(공정계획 포함) 1부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등에 관한 계획 포함) 1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지적도,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부
6.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1부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1부
8.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계획 1부
9.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1부
10.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1부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서 1부
12.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부
13.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부
14.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부
1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실시계획의 신항만건설기본 계획 적합 여부
-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사전조치사항 이행여부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23〉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내용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자금조달 계획	내자	자기자금	
				융자금	
				기타	
				소계	
	사업시행 방법		외자	차관	
				기타	
				소계	
			합계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2. 공사세부시행계획 3.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합니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6.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7.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계획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9.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제22조(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서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1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1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적도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지방해양수산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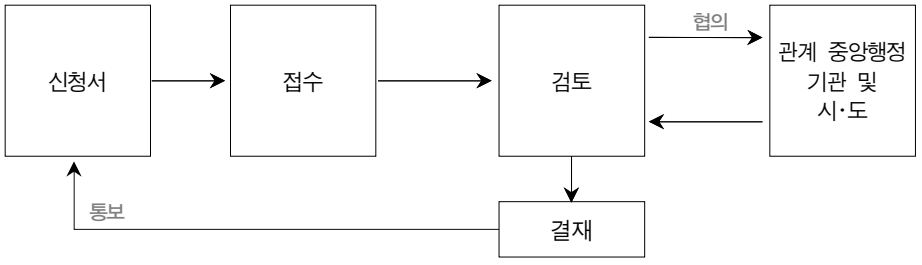

항만시설 장비 설치(철거)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24조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2조
- 담당부서 : 항만개발과(연락처 : 044-200-5949)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가관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연안항 또는 지방관리항(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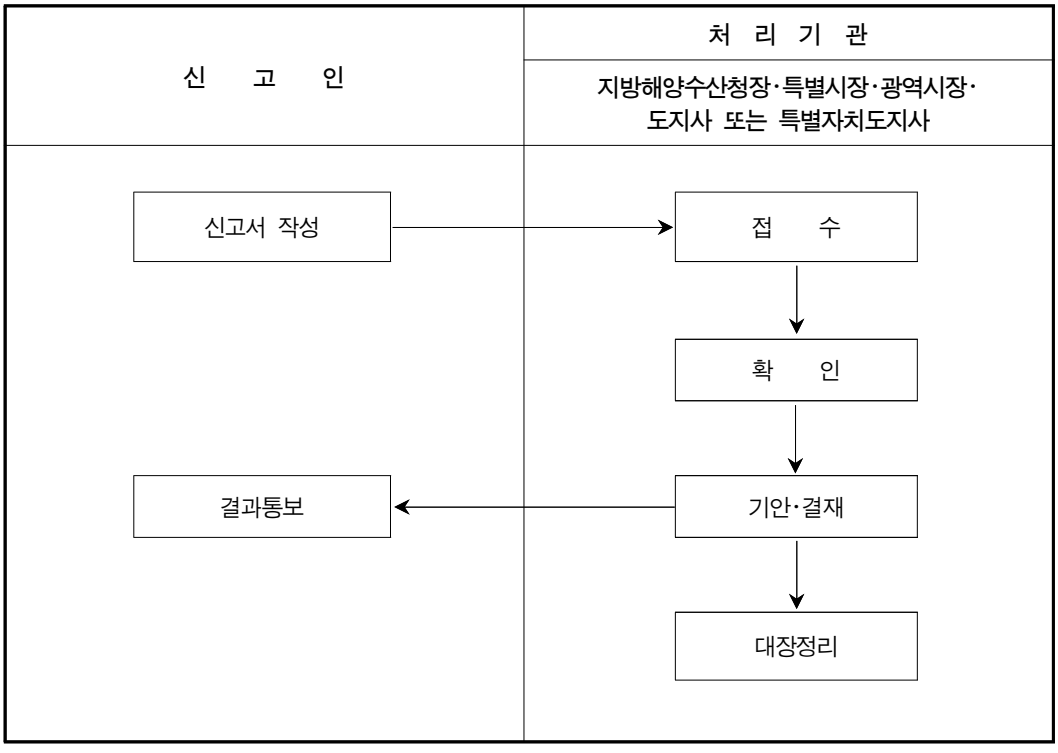

3 신고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가. 설치시(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제1항)

설치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신고서를 작성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장비의 설치 시작일 3일 전까지 처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은 그 합격증의 발급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 따른 책임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조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말함]

나. 철거시(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제1항)

철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 철거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시설장비의 철거 시작일 3일 전까지 처리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없음.

다. 변경시(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제3항)

시설장비관리자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시설장비의 신고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설치된 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첨부 확인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23〉

시설장비 [ ] 설치 [ ] 철거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업체명	
	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시설장비명
	관리번호
	설치일(철거일)
	철거사유

「항만법」 제24조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따른 책임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조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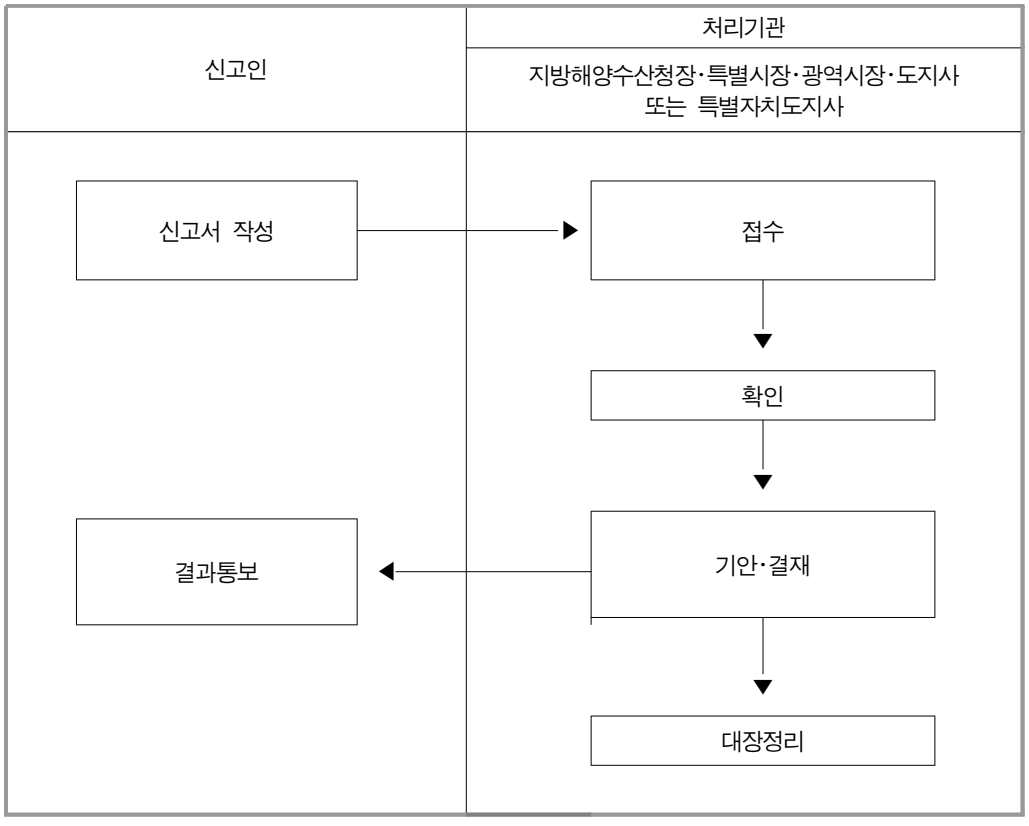

항만시설 장비 검사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26조제1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5조제1항
- 담당부서 : 항만개발과(연락처 : 044-200-5949)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가관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연안항 또는 지방관리항(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검사대행기관, (처리기간 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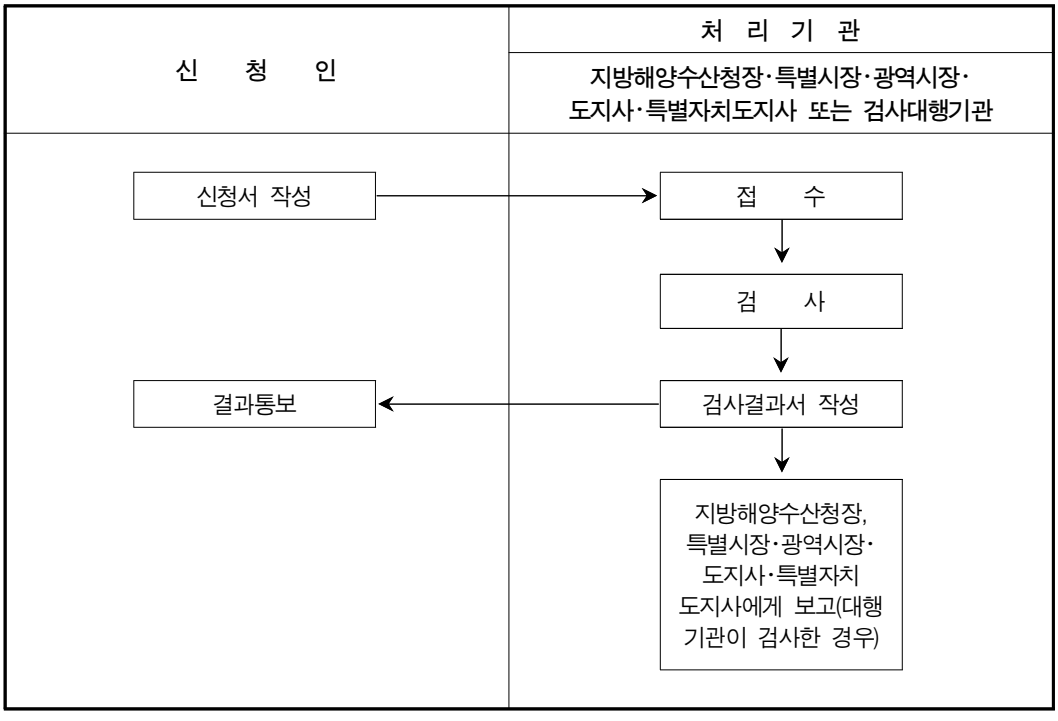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가. 제조검사 :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신청서를 해당 시설장비를 제조하기 30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용량계산서 및 강도계산서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설계·제작·설치 등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경우로서 30일 내에 도면, 용량계산서 및 강도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설명서만 우선 제출할 수 있음

나. 설치검사 :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신청서를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 정기검사 :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신청서를 해당 시설장비의 정기검사 주기가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처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라. 수시검사 : 고정식 시설장비의 이설(移設) 또는 시설장비의 주요 구조 변경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신청서를 처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시설장비의 주요 구조 변경시는 설계 설명서, 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검사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합니다.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23〉

시설장비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검사종류	[ ] 제조검사 [ ] 설치검사 [ ] 정기검사 [ ] 수시검사	
신청인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팩스)	
신청내용	시설장비명	
	관리번호	
	검사희망 기간	검사 장소
	제조자의 상호	
	검사요구 내용	

「항만법」 제26조제1항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검사대행기관의 장

첨부서류	1. 제조검사 : 설계 설명서, 도면, 용량계산서 및 강도계산서 2. 설치검사 : 설계 설명서, 도면 및 시험성적서 3. 수시검사 : 설계 설명서, 도면 및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	검사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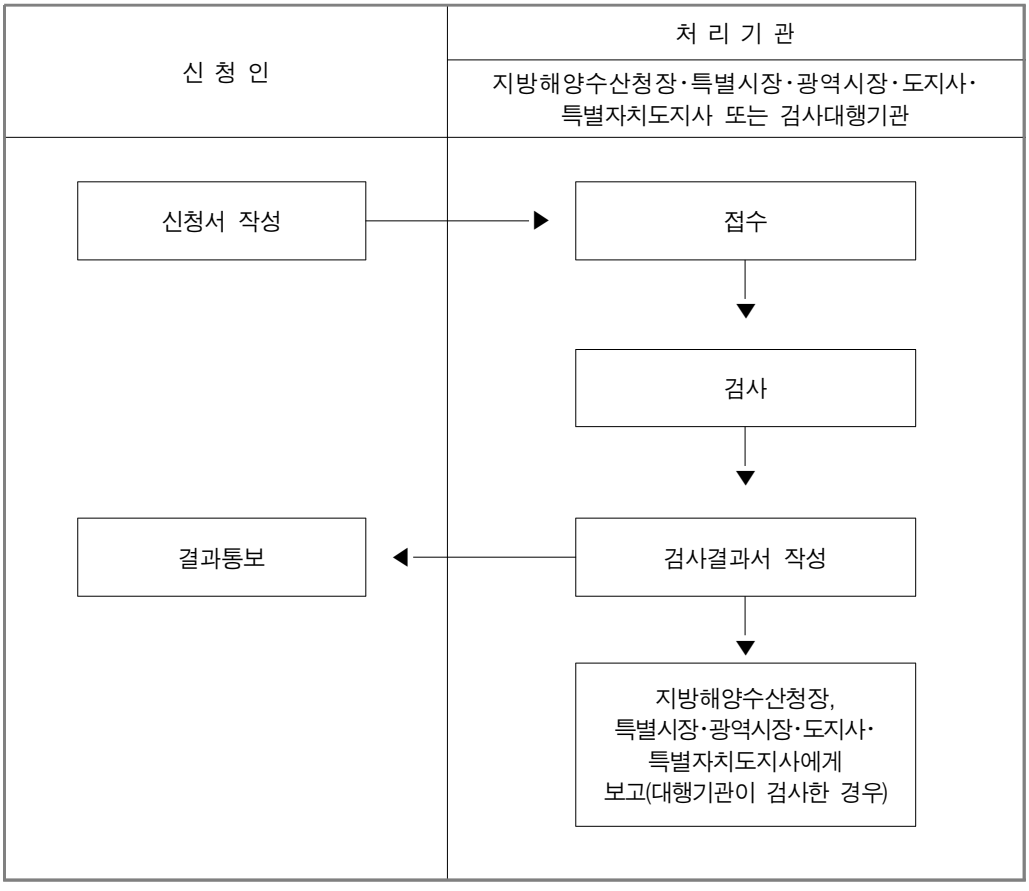

항만시설 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12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 담당부서 : 항만개발과(연락처 : 044-200-5949)
- 접수 및 처리기관 : 국가관리항(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항(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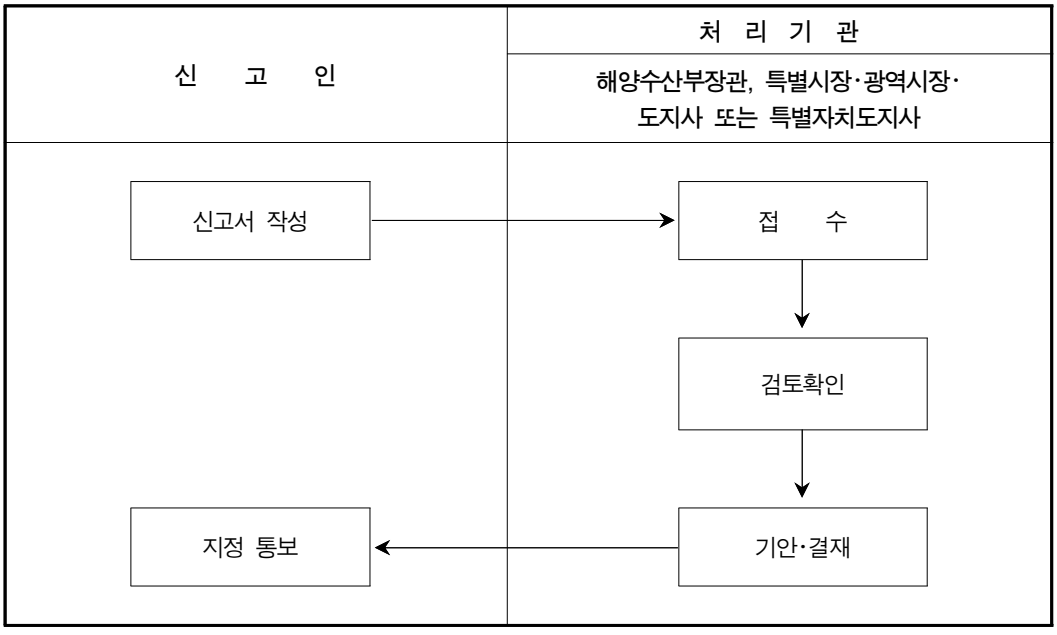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증
2.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3. 기술자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다만, 처리기관이「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제외)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기관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별표4의 기술인력과 시설의 보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6.23〉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증 2.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3. 기술자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기안·결재	→	지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항만공사 준공 전 사용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12조 제5항 단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 담당부서 : 항만투자협력과(연락처 : 044-200-596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처리기간 즉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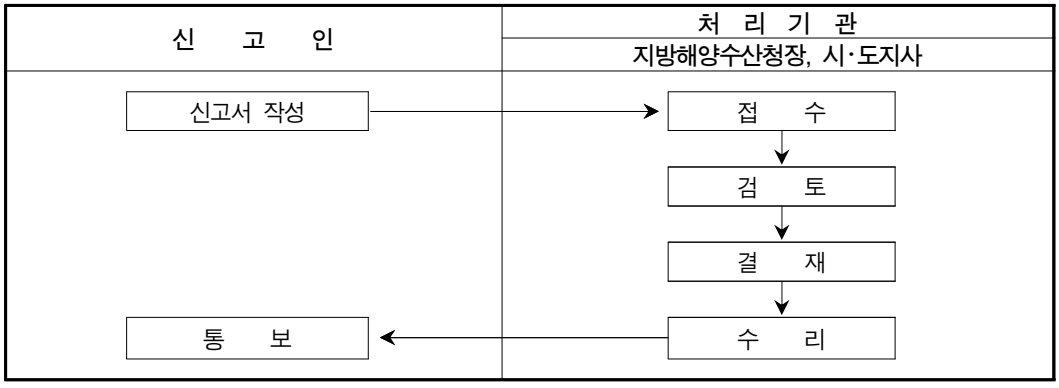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당 토지 및 시설의 공정현황,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 준공확인 전의 사용신고 내용의 적합 여부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6.23〉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승인(신고)일
	위치
	준공예정일
	사용시설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사용목적

「항만법」 제1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 도면 및 사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토	→ 결재	→ 수리	→ 통지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1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담당부서 : 항만투자협력과(연락처 : 044-200-596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처리기간 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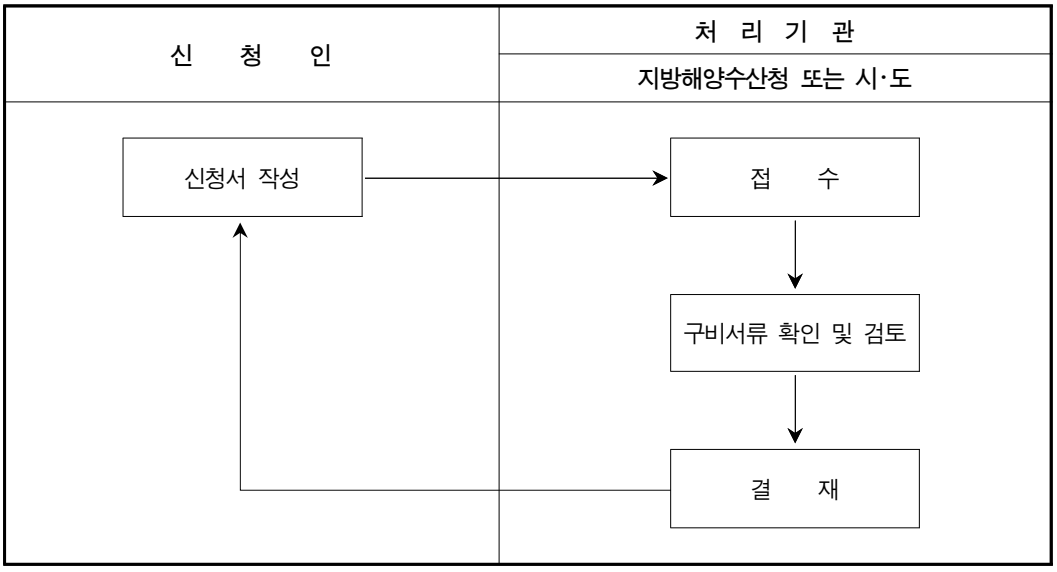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법 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 부합 여부

- 항만공사 실시계획이 항만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 공사 실시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23〉

항만공사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주 소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명						
	공사의 종류						
	항만공사						
	공사장소						
	공사목적						
	공사규모	시설					
		규모					
	시설이용계획						
	공사기간	~ (일간)					
	공사방법						
	그 밖의 사항						
항만시설 사용	사용 시설	명칭					
		수량					
		위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 (일간)					

「항만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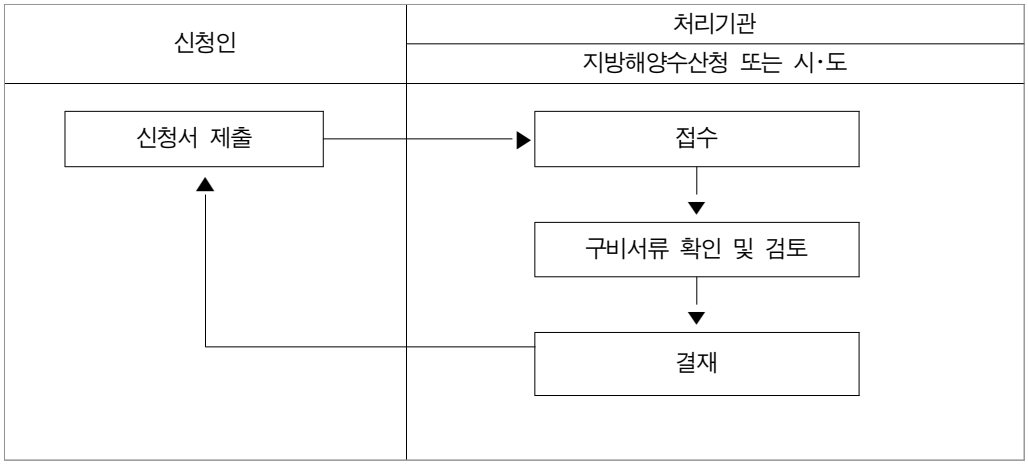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10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담당부서 : 항만투자협력과(연락처 : 044-200-596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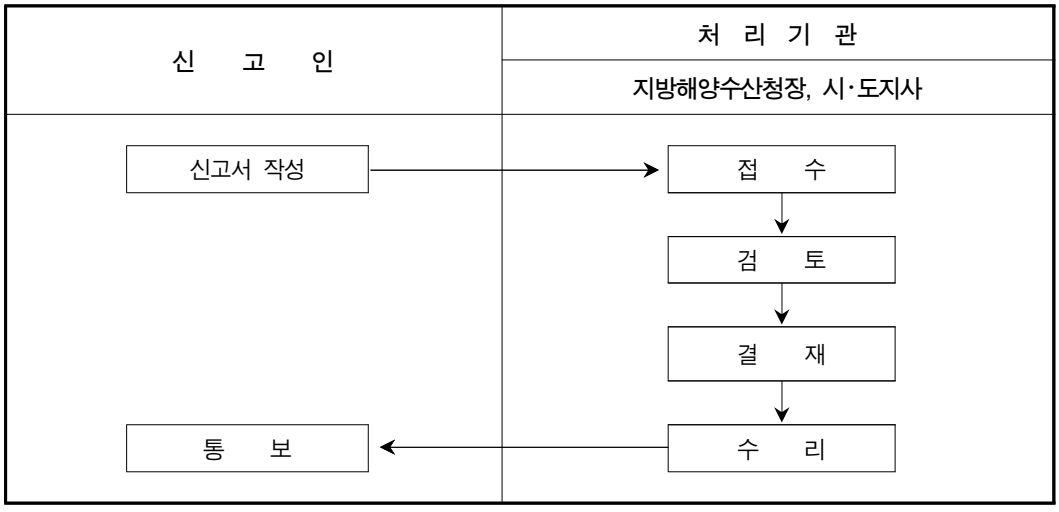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 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법 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부합 여부 및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23〉

항만공사실시계획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명						
	공사의 종류						
	항만공사						
	공사장소						
	공사목적						
	공사규모	시설					
		규모					
	시설이용계획						
	공사기간	~ (일간)					
	공사방법						
	그 밖의 사항						
항만시설 사용	사용 시설	명칭					
		수량					
		위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 (일간)					

「항만법」 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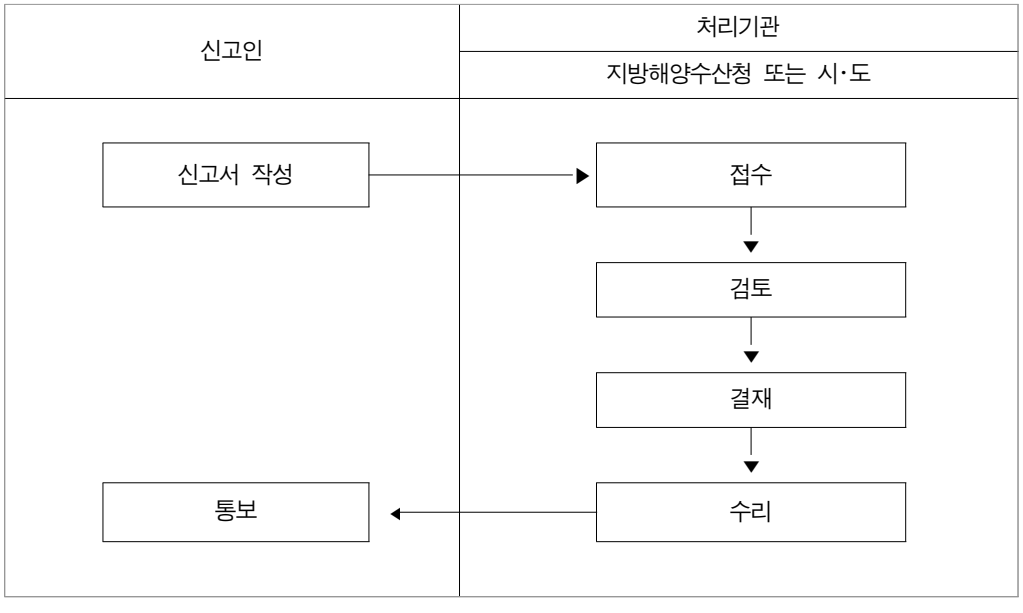

항만공사 준공 보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12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담당부서 : 항만투자협력과(연락처 : 044-200-596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처리기간 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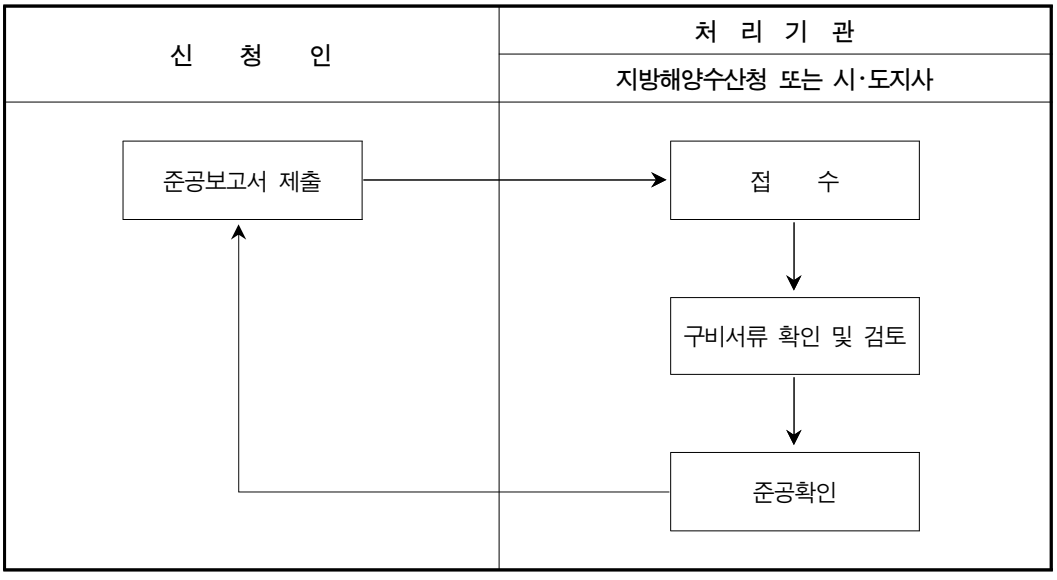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6.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와 제72조를 준용합니다)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법 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항만공사 시행 허가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23〉

항만공사 준공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주 소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명	
	공사의 종류	
	공사장소	
	공사규모	
	공사목적	
	총공사비	
	공사기간	착공 . . . (일간) 준공 . . .
	귀속시설명세	
	그 밖의 사항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공사 준공확인을 받기 위하여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6.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와 제72조를 준용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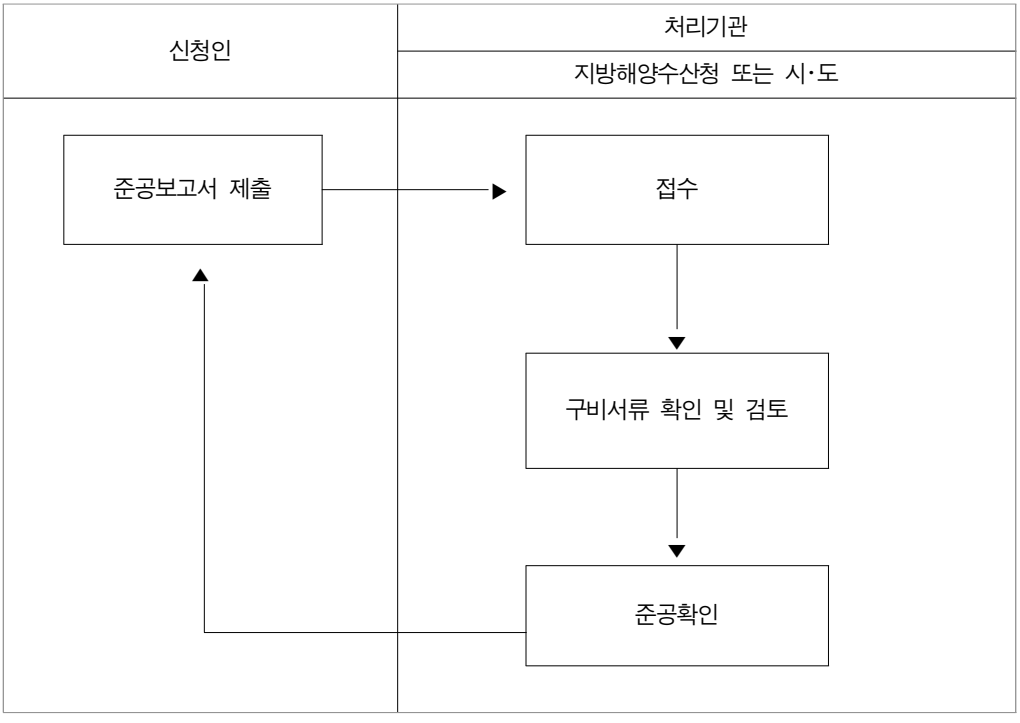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시행 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담당부서 : 항만투자협력과(연락처 : 044-200-596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처리기간 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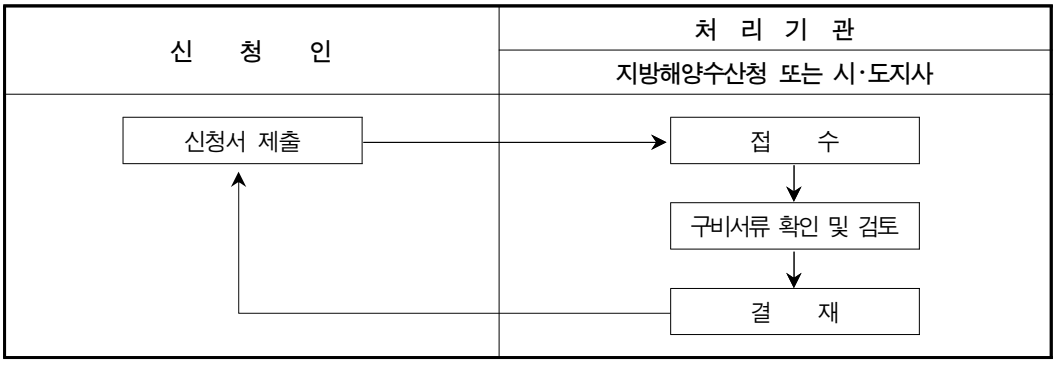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평면도

- 수수료 : 5,000원(서면) 4,000원(전자문서)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법 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항만시설의 유지·보수공사의 목적·사유 등 적정 여부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0〉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사항	항만명	
	공사종류	
	공사목적 및 사유	
	유지·보수 구간	
	공사규모	
	공사기간	~ (일간)
	그 밖의 사항	

「항만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평면도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5,000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4,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항만공사 시행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담당부서 : 항만투자협력과(연락처 : 044-200-596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처리기간 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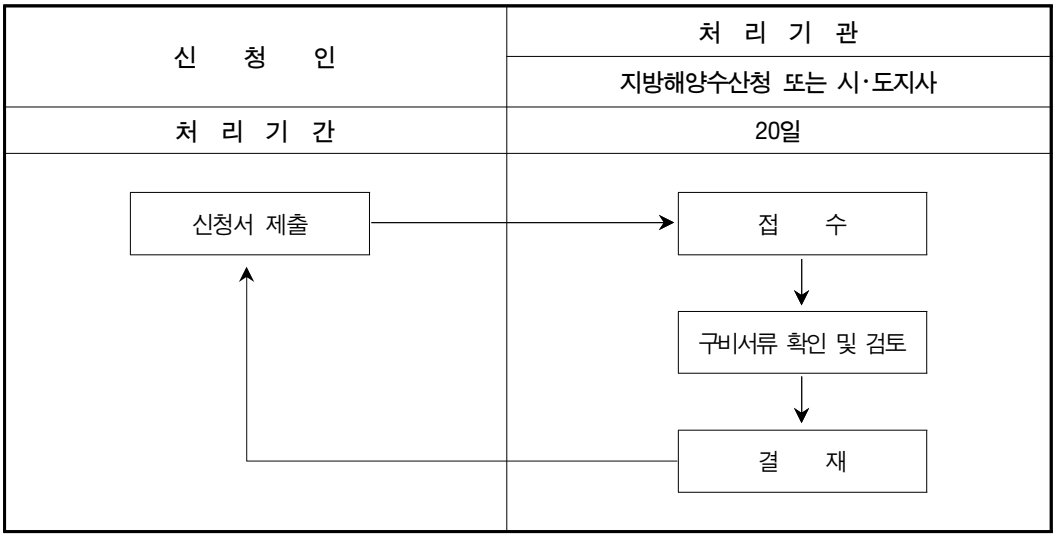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단면도

라.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 수수료 : 5,000원(서면), 4.000원(전자문서)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계획이 항만기본계획, 항만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30〉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사항	항만명	
	공사종류	
	공사목적	
	공사장소	
	공사규모	
	시설이용계획	
	공사기간	~ (일간)
	공사방법	
	그 밖의 사항	

「항만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단면도 라.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2.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000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권리·의무 이전인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8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 담당부서 : 항만투자협력과(연락처 : 044-200-5965~6)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처리기간 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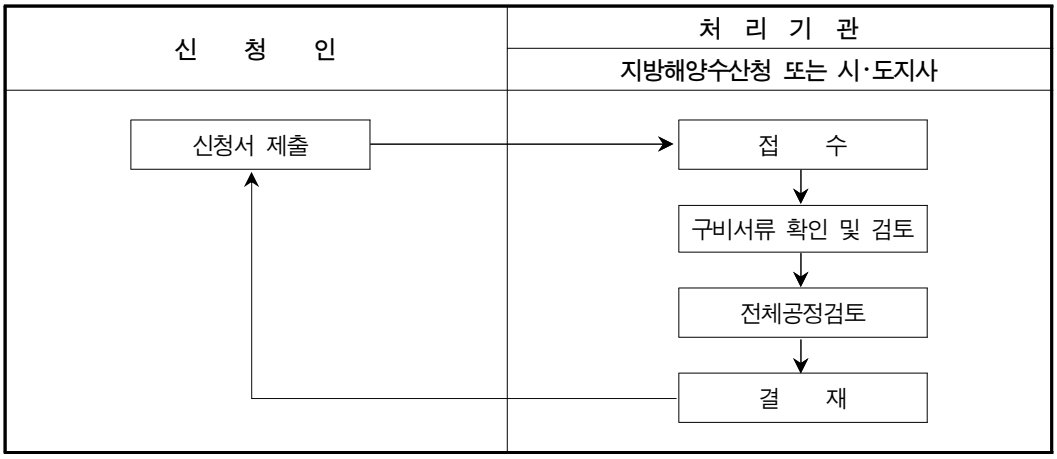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법 제8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권리·의무이전 적정 여부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6.23〉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내용	허가(승인)일 및 근거
	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준공기간
	공사공정률
	양도 사유

「항만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전체공정 검토	→	결재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시설장비 설치(철거)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제24조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2조제1항
- 담당부서 : 항만기술안전과 (연락처 : 044-200-595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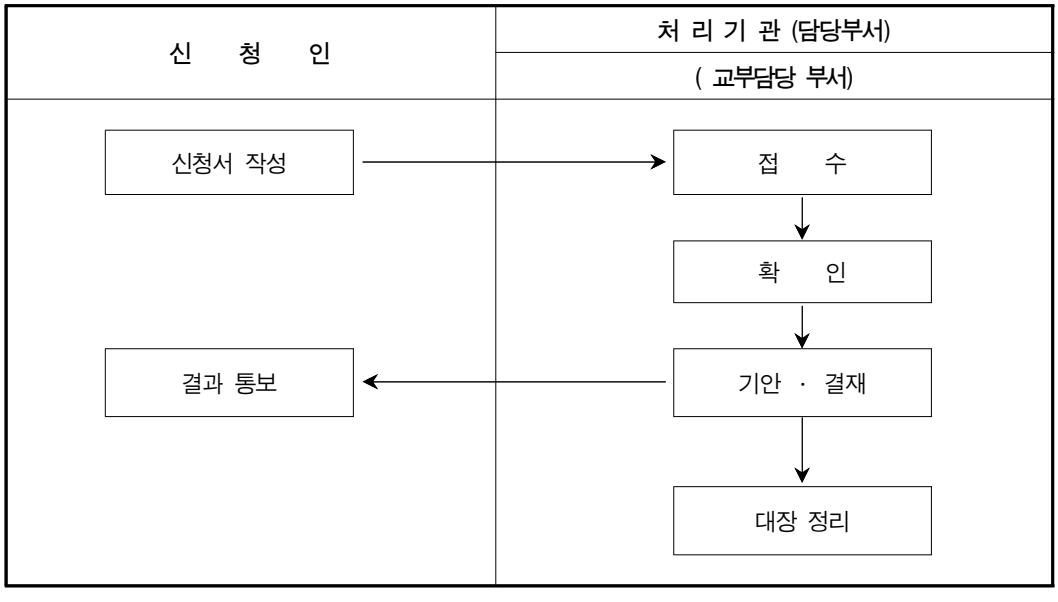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설치신고 경우에만 제출)

1.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책임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조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말한다.)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검사대행기관의 검사합격증, 책임감리의 준공조서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23〉

시설장비 [ ] 설치 [ ] 철거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업체명	
	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시설장비명
	관리번호
	설치일(철거일)
	철거사유

「항만법」 제24조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따른 책임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조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23〉

(앞쪽)

항만시설장비 대장

시설장비명	관리번호
설치항만	부두
용도(취급 화물)	소유자
제조 · 설치검사일	관리자
검사합격번호	제작자
검사기관	가격/대당 백만원
주요제원	
하역능력(운반능력) ( )톤/(개/시간)	자중 톤
정격하중 톤	최대바퀴하중 톤/개 (접지하중) (톤/제곱미터)
레일간격 미터	정격마력 마력
길이×너비×높이 제곱미터	처리(적재)능력 단 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시설장비 검사란

일련번호	검사 구분	검사 일자	유효 기간	관리청	담당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설장비 일반도

시설장비 설치 변경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제24조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2조제3항
- 담당부서 : 항만기술안전과 (연락처 : 044-200-595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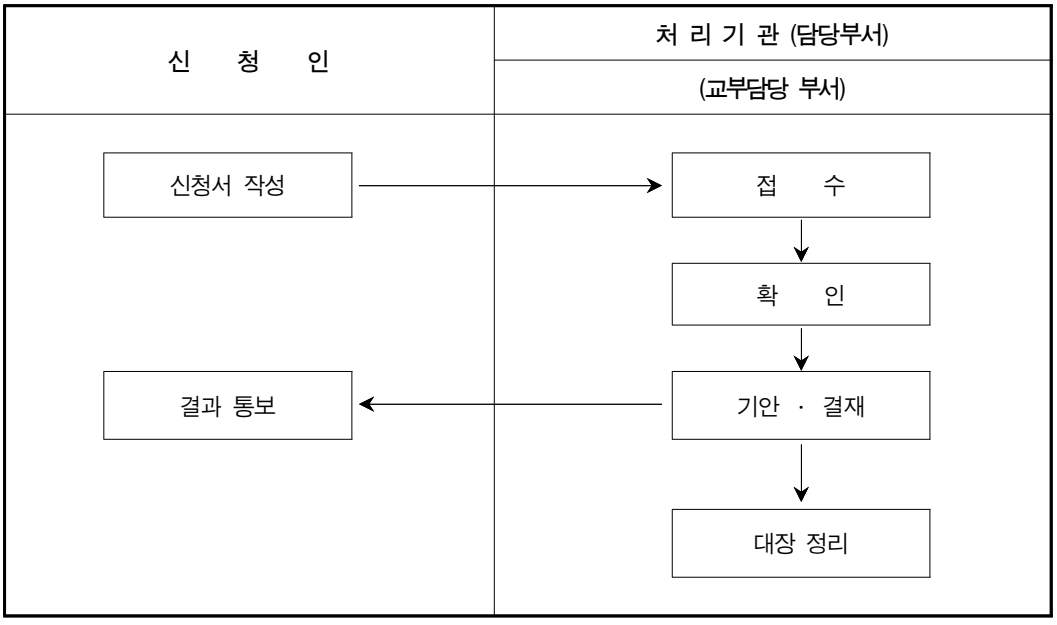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설치신고 경우에만 제출)
  1.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검사대행기관의 수시 검사합격증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23〉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당초	
		변경	
	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설장비명		
관리번호		
설치항만 및 부두	당초	
	변경	
설치일		
변동사유		

「항만법」 제24조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시설장비 검사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제26조제1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5조제1항
- 담당부서 : 항만기술안전과 (연락처 : 044-200-595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검사대행기관의 장 (처리기간 검사완료시)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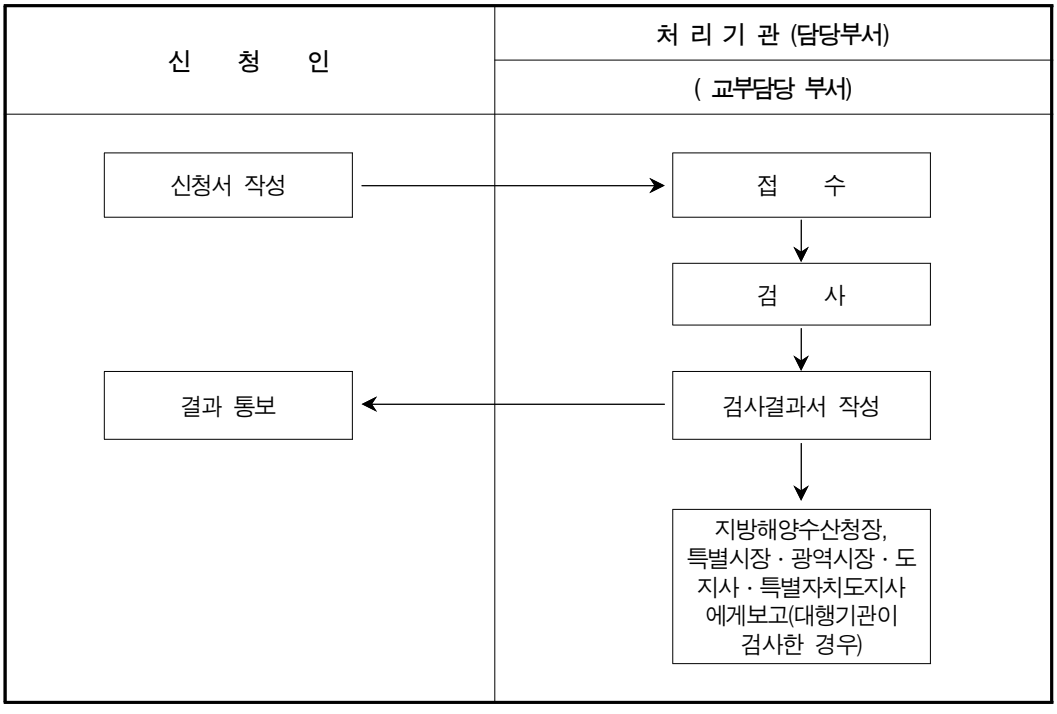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제조검사 : 설계설명서, 도면, 용량계산서 및 강도 계산서
  2. 설치검사 : 설계설명서, 도면 및 시험성적서
  3. 수시검사 : 설계설명서, 도면 및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
-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다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름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항만시설검사기준(해양수산부고시 2016-37호 '16.3.17)에 따름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23〉

시설장비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검사완료시까지

검사종류	[ ] 제조검사 [ ] 설치검사 [ ] 정기검사 [ ] 수시검사

신청인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팩스)	
신청내용	시설장비명	
	관리번호	
	검사희망 기간	검사 장소
	제조자의 상호	
	검사요구 내용	

「항만법」 제26조제1항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검사대행기관의 장

첨부서류	1. 제조검사: 설계 설명서, 도면, 용량계산서 및 강도계산서 2. 설치검사: 설계 설명서, 도면 및 시험성적서 3. 수시검사: 설계 설명서, 도면 및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계산서	검사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5조제2항
- 담당부서 : 항만기술안전과 (연락처 : 044-200-5957)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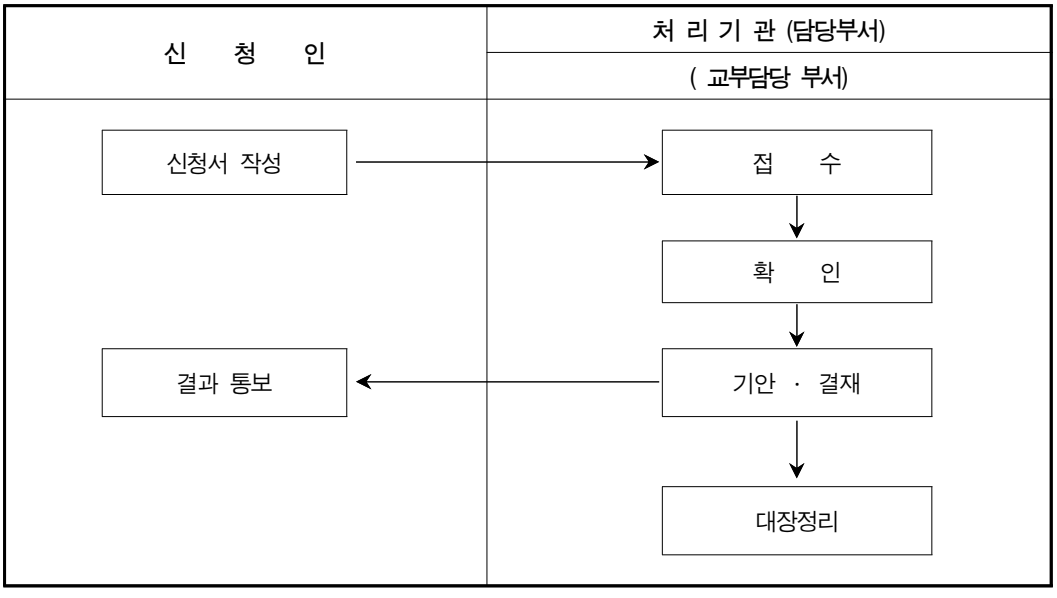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연기사유 타당성(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5조2항)에 따름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23〉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시설장비명	관리번호
	설치 위치	사용용도
	검사 유효기간	
	검사 연기사유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제12조제1항
- 담당부서 : 항만기술안전과 (연락처 : 044-200-5957)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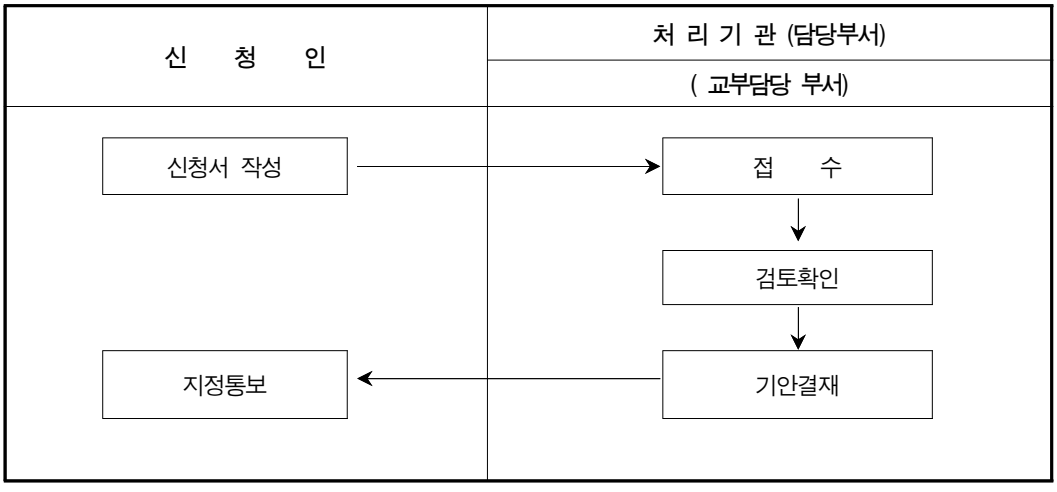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증
2.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3. 기술자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6.23〉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항만법」 제28조제2항 및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증 2.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3. 기술자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기안 · 결재	→	지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61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담당부서 : 항만지역발전과 (연락처 : 044-200-598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간 3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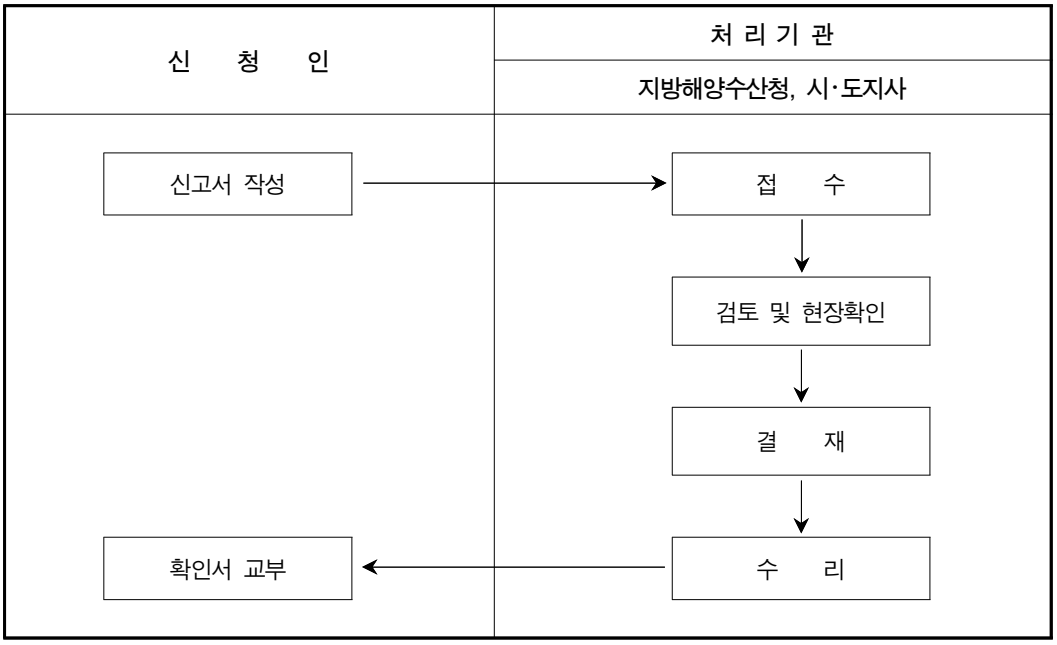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해당 토지 및 시설의 공정현황,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 준공확인 전의 사용신고 내용의 적합 여부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6.27〉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소 재 지		
사업의 내용	허가 연월일	년 월 일
	사업 내용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		
준공 전 사용사유		
준공 전 사용기간		
전체공사의 준공예정일		

「항만법」 제61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수리 처분	→	통지
신고인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 · 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담당부서 : 항만지역발전과 (연락처 : 044-200-598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간 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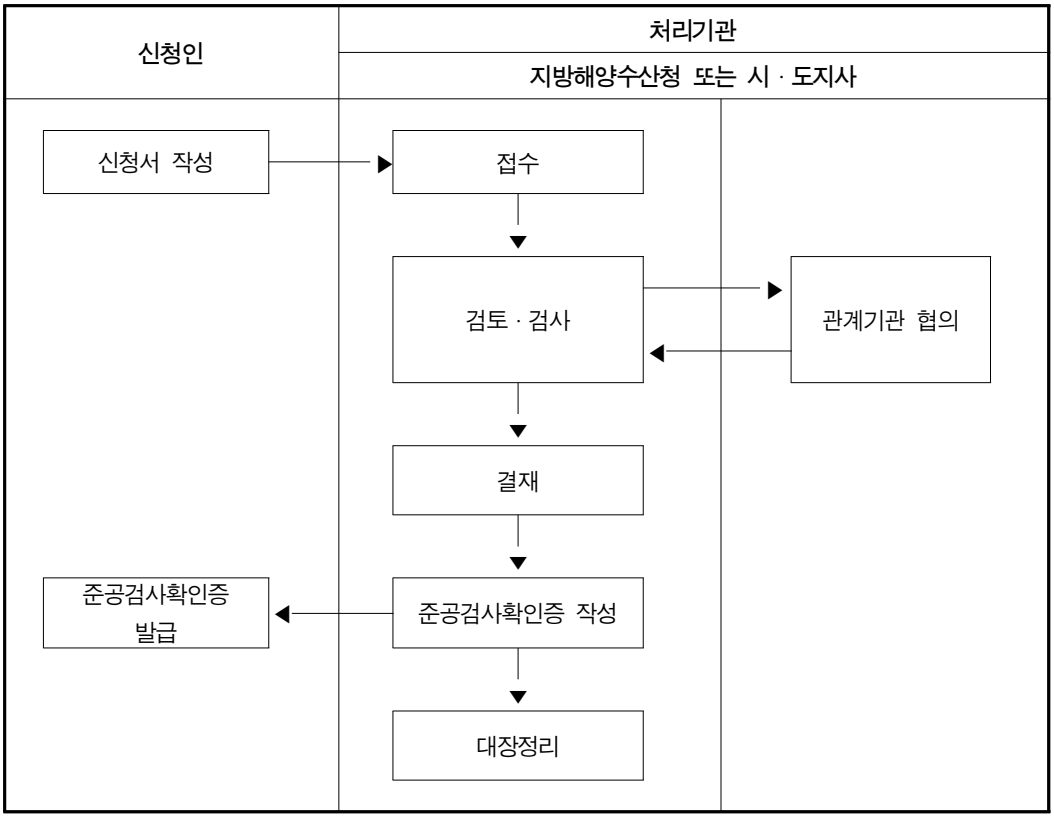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성 및 항만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6.27〉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승인일
	사업구역의 위치 및 준공 면적	
	시설의 개요	
	총사업비 천원	시행기간

「항만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받고자 준공검사를 받고자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 · 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수수료 없 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 · 도지사 확인사항	지적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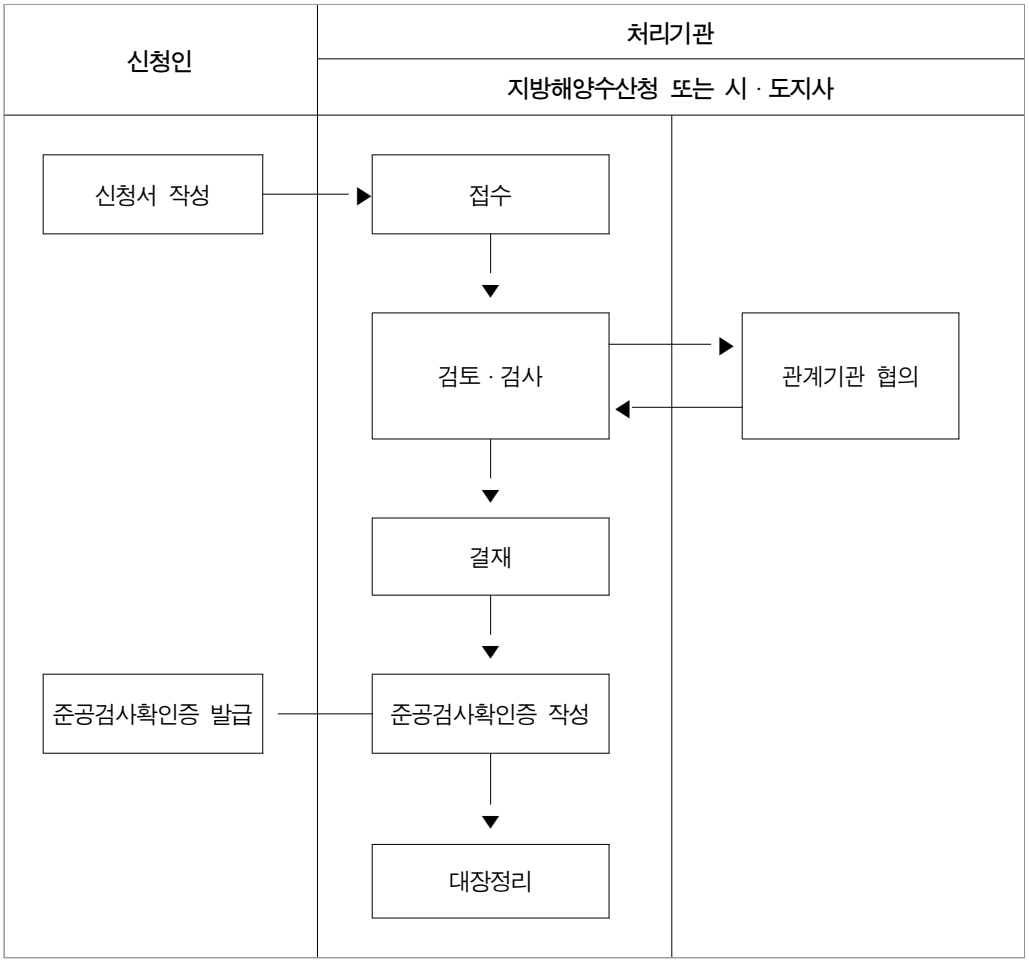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담당부서 : 항만지역발전과 (연락처 : 044-200-5988)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6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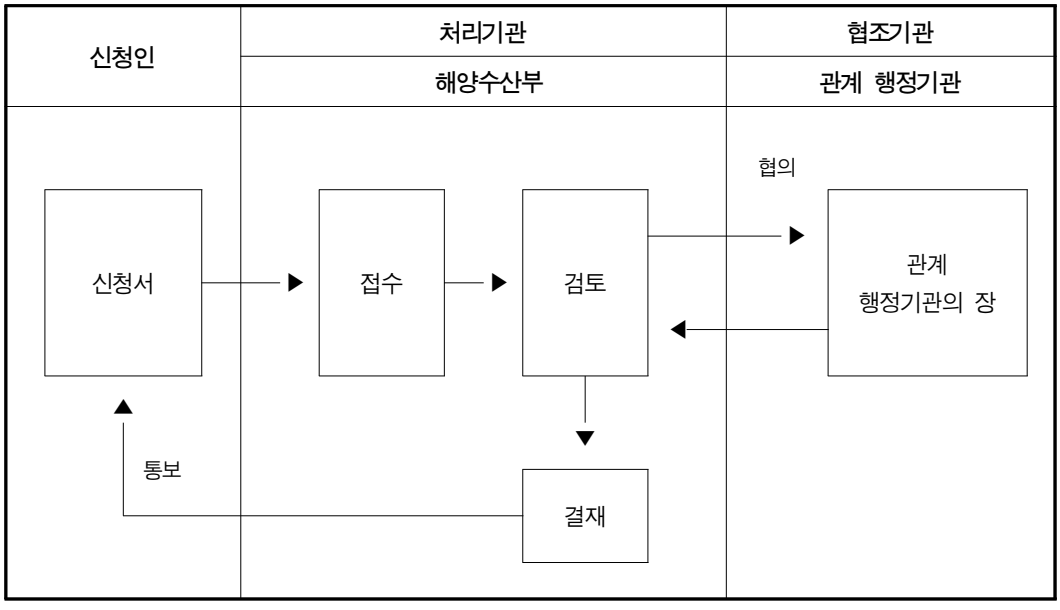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5.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8.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9.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성, 항만법 제51조의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4조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여부, 항만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의견 적정 반영 여부 등 검토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6.23〉

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		
사업목적								
시행방법				사업기간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							
자금조달계획	내자	자기자금	융자금	소계	외자	차관	기타	소계
주요변경사항								

「항만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5.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 수익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이전 · 철거 · 귀속 · 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8.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9.「항만법」제8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 조사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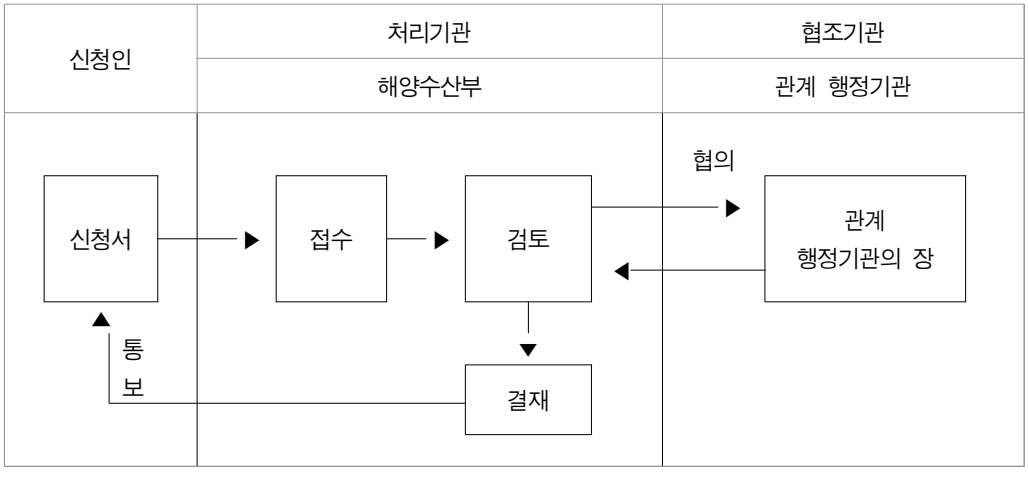

(항만재개발사업)공사 등의 착수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항만법 제8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담당부서 : 항만지역발전과 (연락처 : 044-200-5988)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간 15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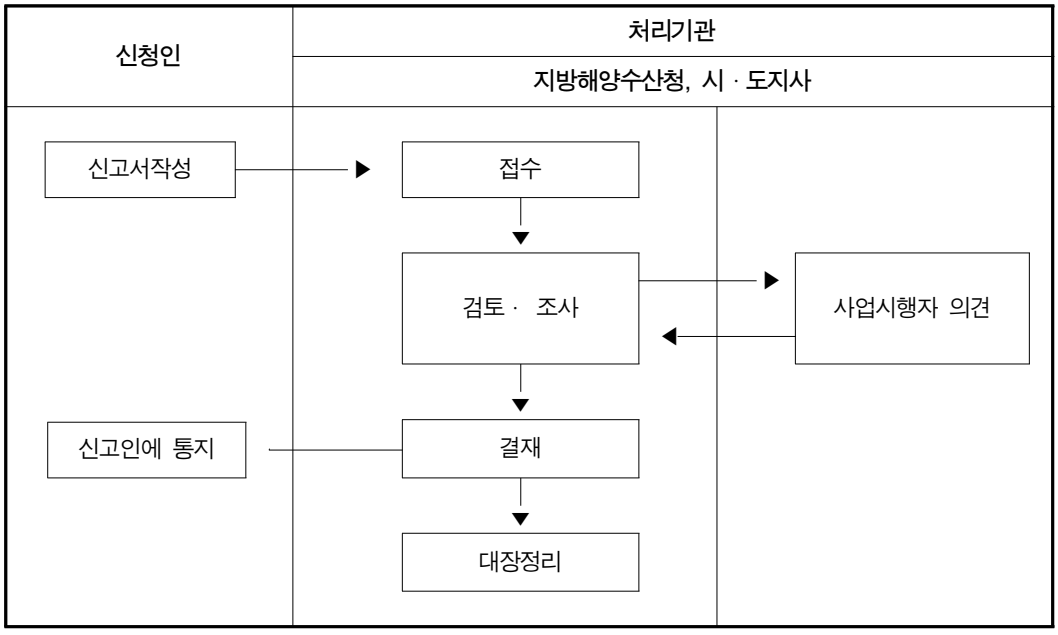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시행계획서 1부

2. 사업진행사항(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재개발 사업자 신청시) 항만법 제51조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같은 법 제54조의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및 같은 법 제60조의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

  (기타 사업자 신청시) 항만재개발사업의 저촉 여부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6.23〉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행위허가(신고)내용	[ ] 건축물의 건축 [ ] 인공구조물의 설치 [ ] 토지의 형질변경 [ ] 토석 · 자갈 · 모래의 채취 [ ] 수산동식물의 포획 · 채취 또는 양식 [ ] 토지분할 [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위 치			
면적(㎡)			
근거법령			
허가일자	년 월 일	허 가 권 자	
공사(사업) 진행사항	공사(사업) 진척도 %		

「항만법」 제8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시행계획서 1부 2. 사업진행사항(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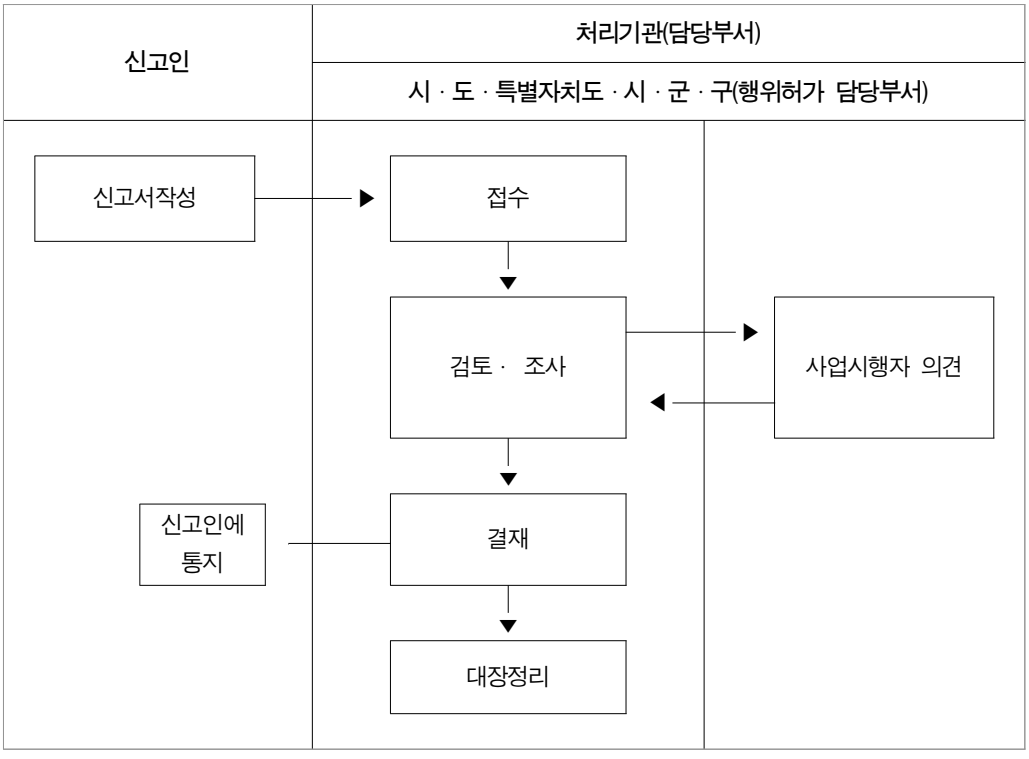

PART

06

기 타

해양수산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담당부서 : 각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연락처 : 044-200-516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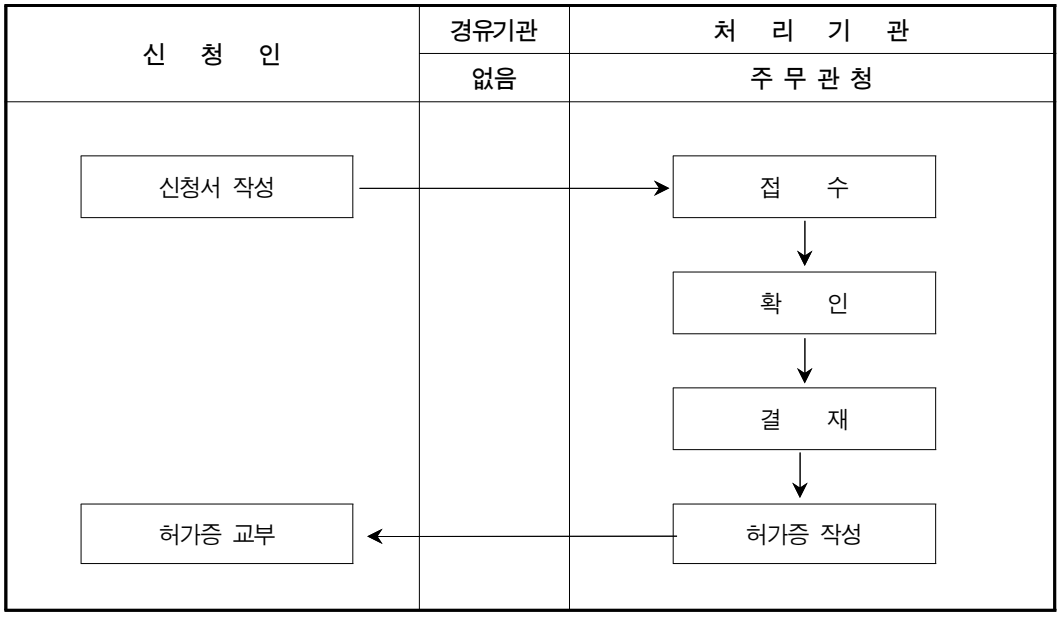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9.〉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민법 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
  -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담당부서 : 각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연락처 : 044-200-516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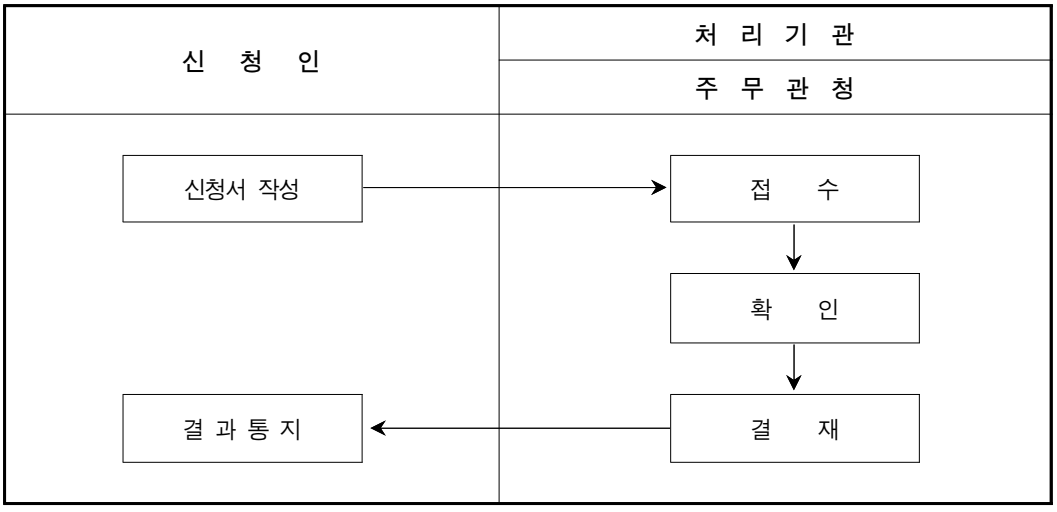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정관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비영리법인의 본질에의 부합 여부 등 설립허가시의 정관심사에 준함
- 재단법인의 경우 민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19.〉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 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민법 제86조
  -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 담당부서 : 각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연락처 : 044-200-516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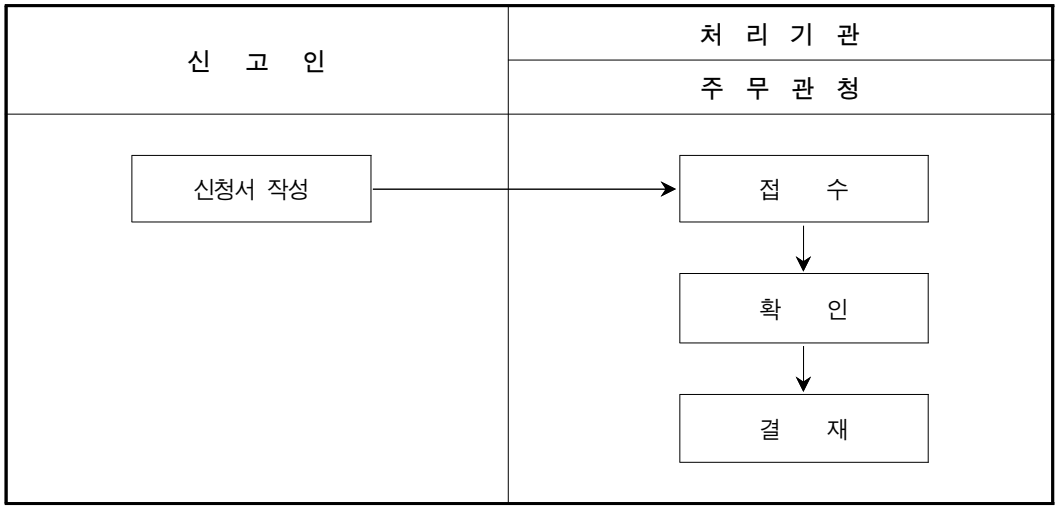

3 신고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 수수료 : 없음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1.19.〉

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민법 제80조제2항
  -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 담당부서 : 각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연락처 : 044-200-516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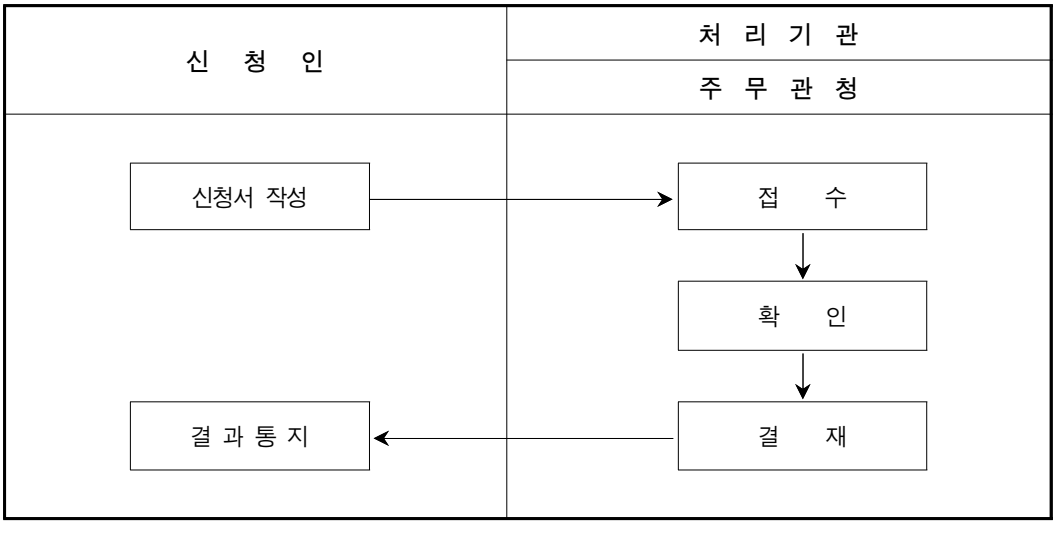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할 때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할 때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법 제80조제2항의 요건 충족여부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1.19.〉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 담당부서 : 각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연락처 : 044-200-5165)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처리기간 20일(변경시 1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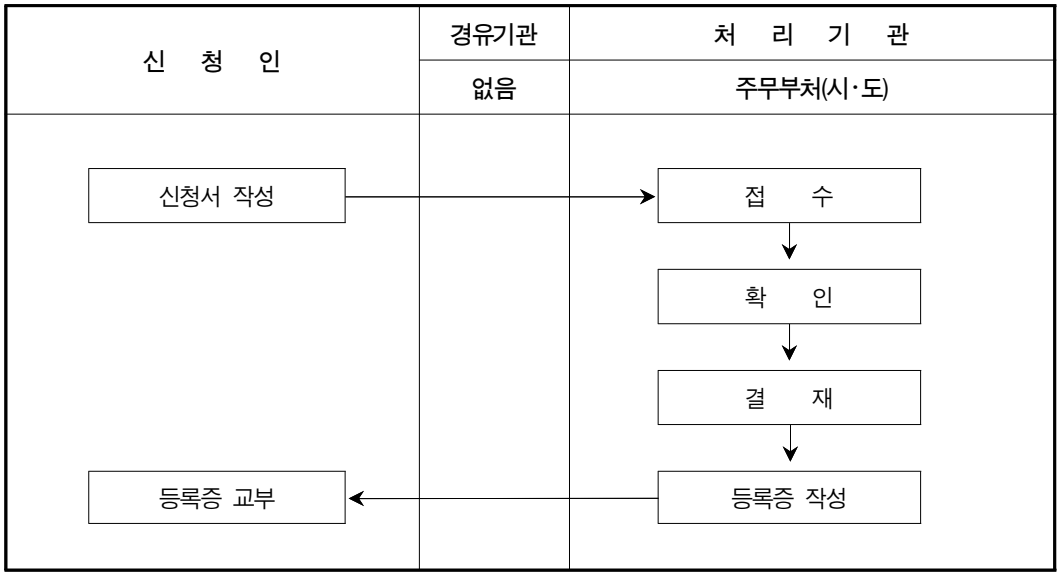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4. 전년도 결산서 1부
5.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
6.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변경등록신청시 구비서류

1. 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이 해양수산부 소관이어야 하고,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1.20〉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변경 시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단체	명칭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연락처
	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등록변경 신청 시〉 1. 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35조 또는 제36조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연락처 : 044-200-5096)
- 접수처리(2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각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시·도지사(시·군·구)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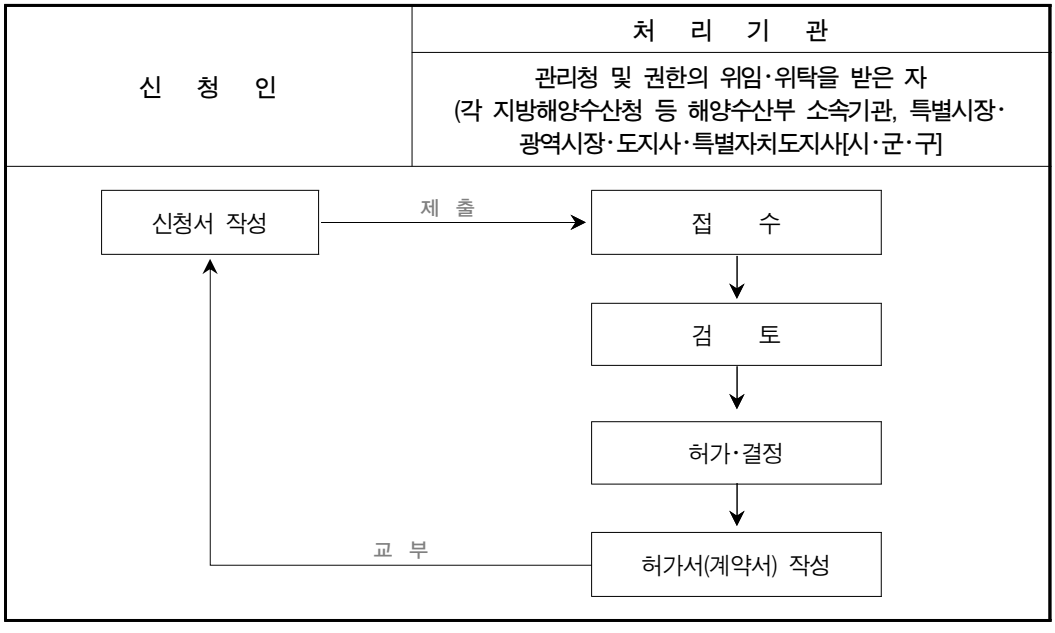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6.24〉

국유재산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결정	→	허가서 교부
신청인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유재산사용분할납부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9조제4항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연락처 : 044-200-5096)
- 접수처리(2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각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시·도지사(시·군·구)

2 업무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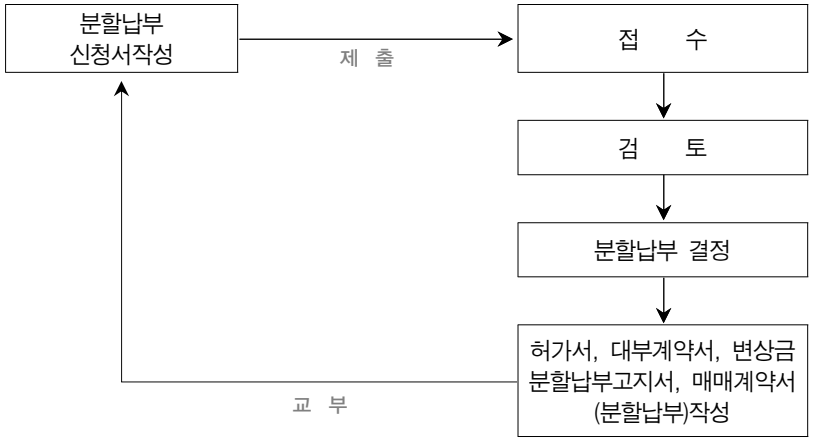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1조 준용규정에 의해 제30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없음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6.24〉

국유재산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①	②	③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방법	비고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1년에 (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 )년에 ( )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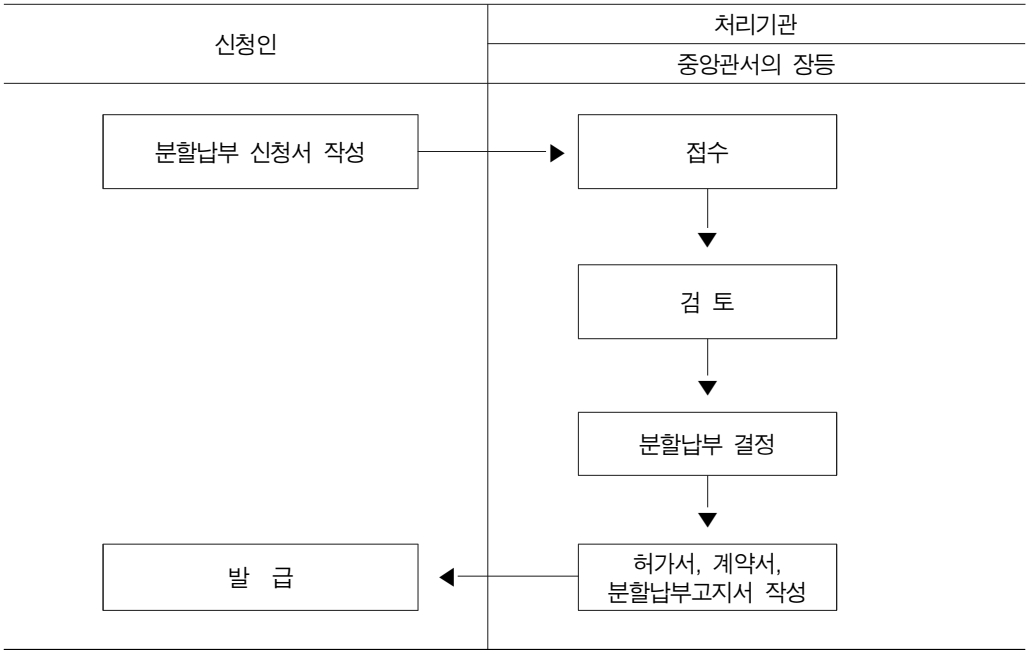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9조제4항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연락처 : 044-200-5096)
- 접수처리(20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각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시·도지사(시·군·구)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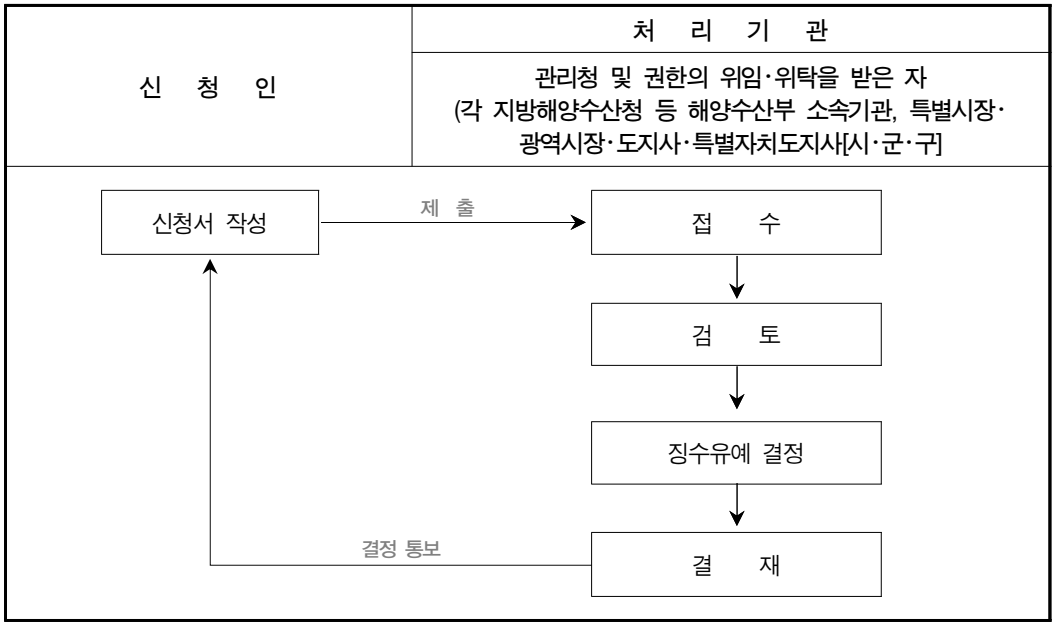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6.2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부과대상	변상금(원)	유예신청금액(원)	징수유예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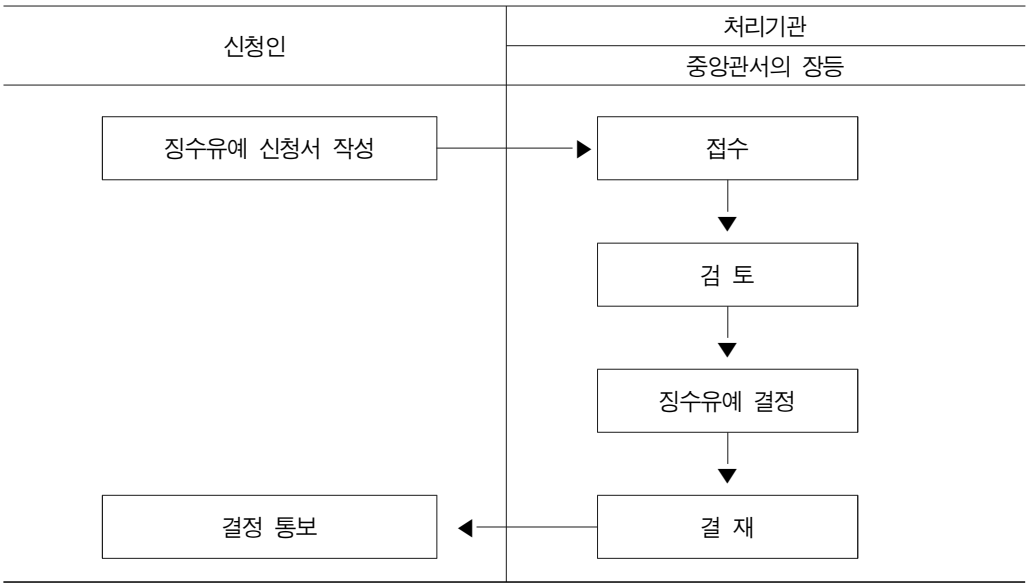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단체 신고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허베이호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담당부서 : 지원총괄팀(연락처 : 044-200-6022)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처리기간 : 7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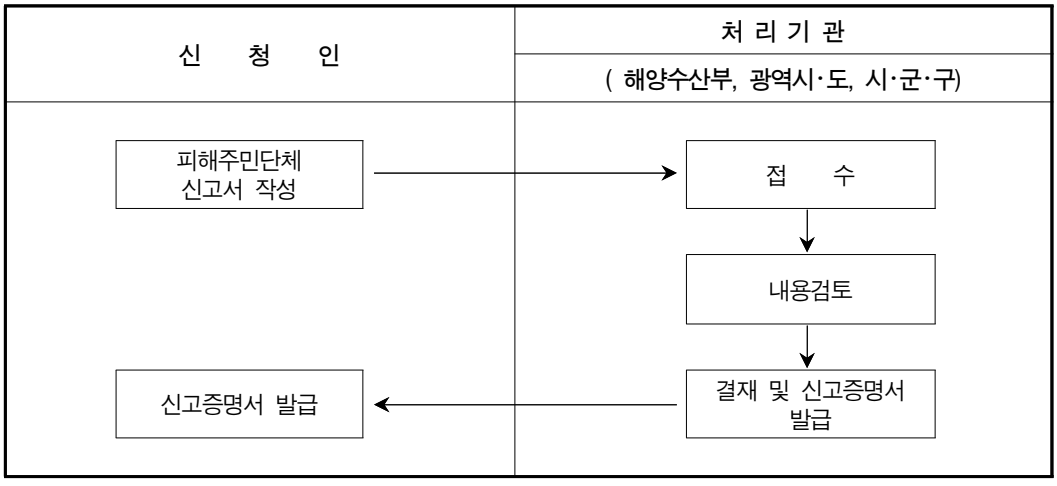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구성원 명부
  3. 운영규정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구비서류 완비 여부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피해주민단체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 않아도 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피해주민단체의 명칭		구성원의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세7조세1항에 따라 피해주민난체를 구성하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수수료
	1.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구성원 명부 3. 운영규정	없음

처리절차

피해주민단체 신고서 작성	→ 접 수	→ 내용검토	→ 결 재	→ 피해주민단체 신고 대장 등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허베이호법 제11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담당부서 : 지원총괄팀(연락처 : 044-200-6022)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처리기간 :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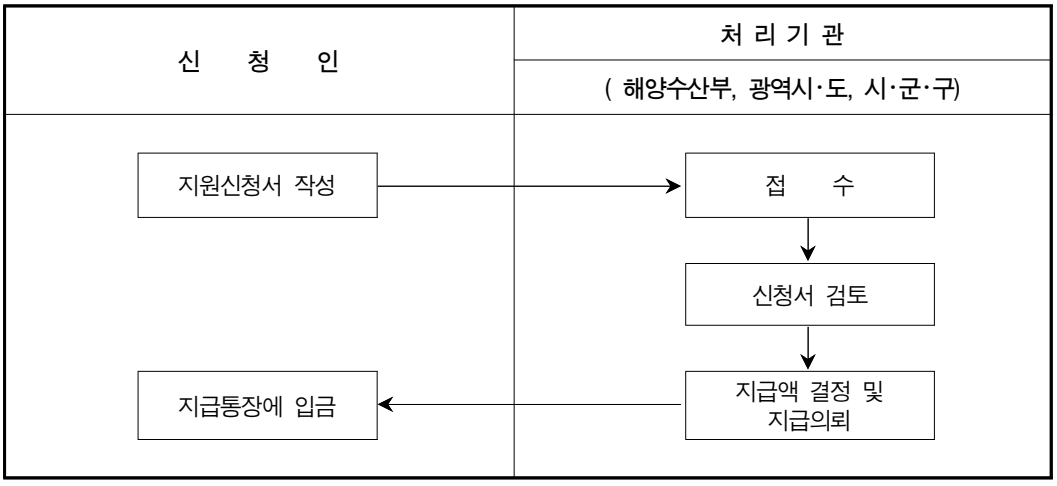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국제기금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2. 국제기금등이 통보한 손해액의 사정 결과에 관한 자료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구비서류 완비 여부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피해주민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 않아도 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업종 및 피해내용	
국제기금등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청구 금액	
국제기금등의 손해사정액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국제기금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2. 국제기금등이 통보한 손해액의 사정 결과에 관한 자료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 검토	→ 지원액 결정 및 지급의뢰	→ 지원금 지급	→ 지급통장에 입금
신청인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금융기관	금융기관

↓ 통 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유류오염사고 손해 지원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허베이호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
- 담당부서 : 지원총괄팀(연락처 : 044-200-6022)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처리기간 : 30일)

2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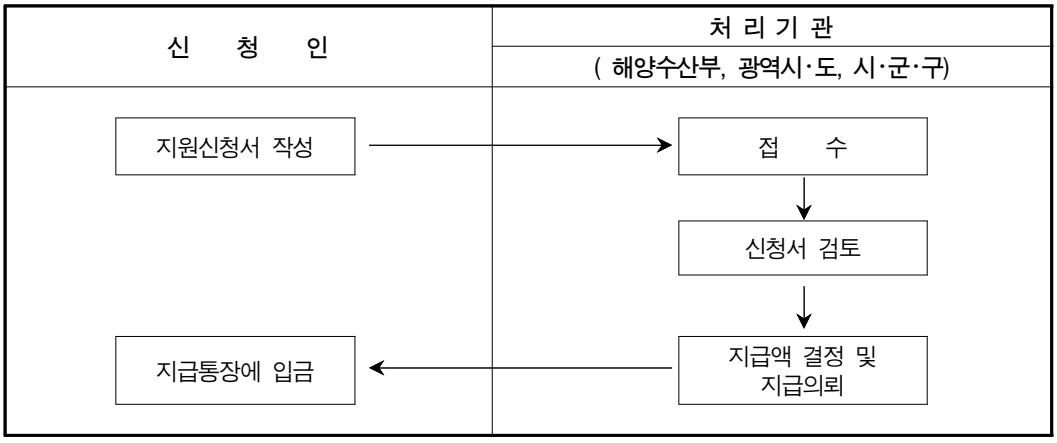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내역에 관한 서류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그 밖에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규정에 따름(구비서류 완비 여부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3.3.23〉

손해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어업현황	면허번호 (허가·신고번호)	어업의 종류
	유효기간	면허일자 (허가·신고일자)
어업제한 등의 기간		
국제기금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지급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보상내용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광 역 시 장 · 도 지 사 귀하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첨부서류	1.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내역에 관한 서류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그 밖에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 검토	→ 지원액 결정 및 지급의뢰	→ 지원금 지급	→ 지급통장에 입금
신청인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금융기관	금융기관
			통 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 보상금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허베이호 법 제8조 제1항, 제9조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 담당부서 : 보상협력팀(연락처 : 044-200-6033)
- 접수 및 처리기관 : 해당 시·군 및 해양수산부 (처리기간 14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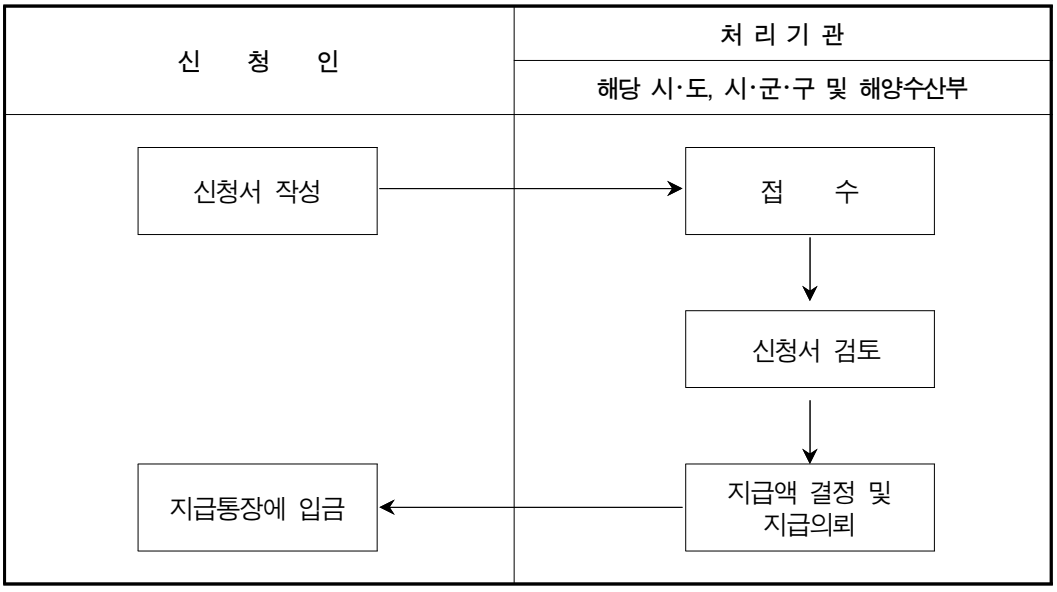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대지급금 지급신청서
2.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3. 허베이 스리피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화해권고 결정문(판결시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5. 소송접수증명원
6. 정보공개동의서

※ 본인이 아닌 자가 대지급금 지급 신청시 추가·변경할 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때 >

1. 상속을 포기한 가족의 확인서 원본
2. 1호 확인서상의 각 서명인 인감증명서 원본
2. 가족관계 증명서
3. 상속자 통장 사본

< 대지급금 신청·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때 >

1. 보상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별 위임장 원본
2. 권한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수령한 대지급금의 구체적 사용 계획서
4. 소송대리인 사업자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 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영 제8조 등에 따른 신청서류 구비 여부 및 권리제한사유의 해당 여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 ]대지급금
[ ]한도초과 보상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 않아도 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국제기금등의 손해사정액	신청금액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 받은 금액 (대부가 있는 경우만 해당)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금액 (지급받은 경우만 해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2.「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대지급금, 한도초과 보상금 지급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 검토	→ 지금액 결정 및 지급의뢰	→ 대지급금 등 지급	→ 지금통장에 입금
신청인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광역시·도, 시·군·구	금융기관	금융기관
			통 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적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①항
- 담당부서 : 보상운영과 (연락처 : 044-200-627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보상 지원단), (처리기간 1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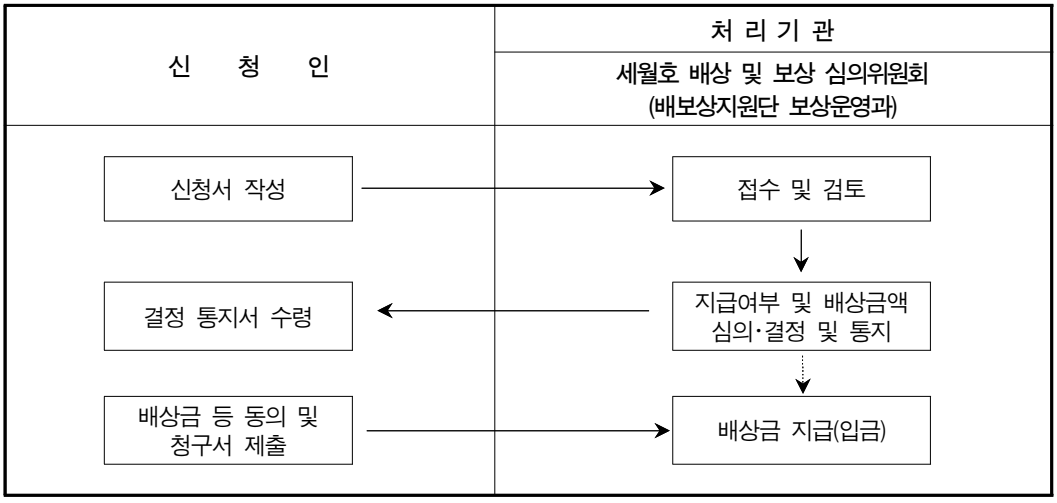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인대표자선정서, 위임장 등 권리 입증 서류
2. 소득입증자료(근로소득자-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등,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 증명원 등), 후유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등 손해 입증 서류

- 접수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인적피해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①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승선자와의 관계: 의		
	※ 신청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③ 승선자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직업:

④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신청액	금액 : 원정(₩)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관련법 및 지급항목: 금액 원정(₩)	

본인은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유류오염손해 배상금 지급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③항
- 담당부서 : 보상운영과 (연락처 : 044-200-627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보상 지원단),(처리기간 1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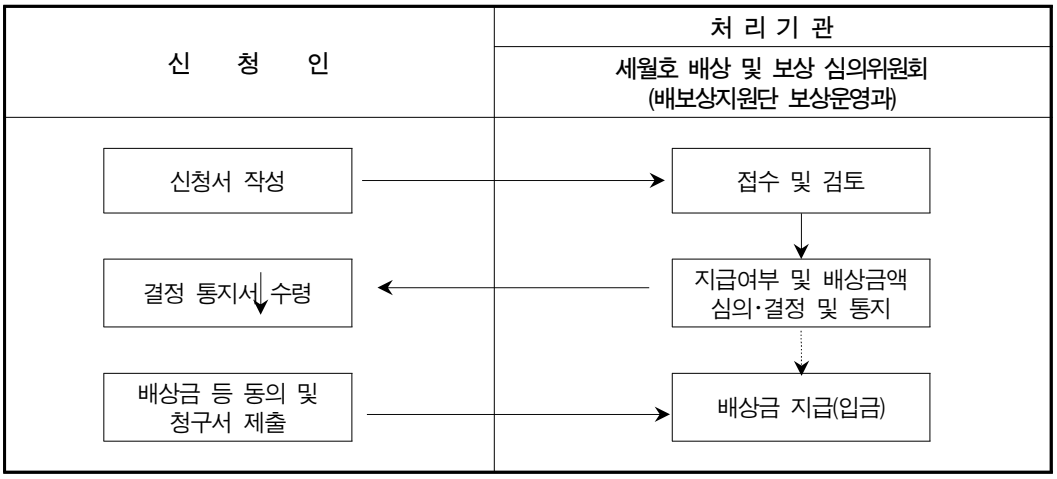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등 증명서류,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유류오염손해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위임장 등
- 접수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류오염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① 신청인 (피해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② 업종 및 면적	면허번호 (허가, 신고)		어업의 종 류		면 적 (어업권)	
③ 피해 발생장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④ 피해 발생일			
⑤ 피해내용	○ 피해내용 및 산출근거: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액(원)					
⑥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본인은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화물손해 배상금 지급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⑤항
- 담당부서 : 보상운영과 (연락처 : 044-200-627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보상 지원단),(처리기간 1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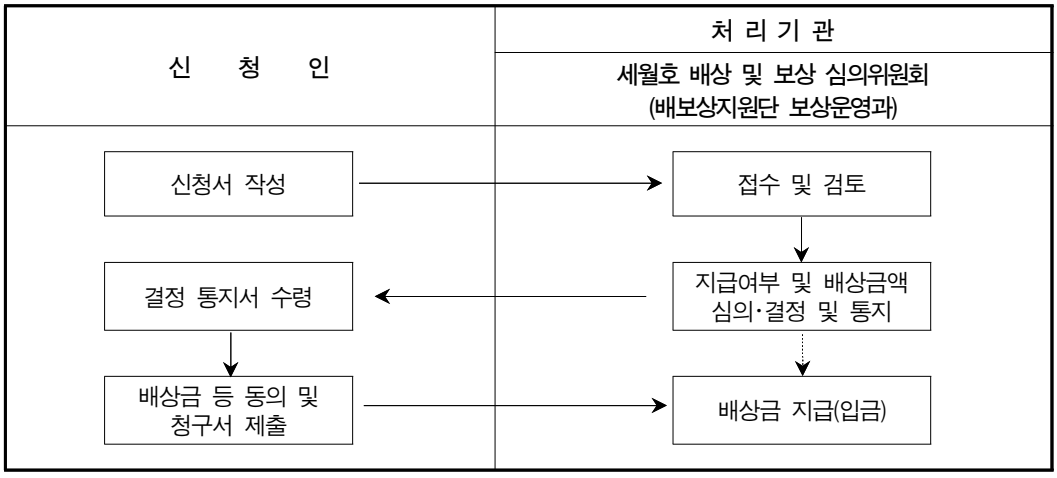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화물피해명세서,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차량승선권, 위임장, 화물손해배상청구권 증명 자료 등
- 접수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화물피해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① 신청인 (피해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③ 신청액	재산손해:	휴업손해:
		합 계:

④ 화물 보험 가입 사항	보험종목:	보험회사:	보험금 수령여부:
	계약일:	보험계약자:	보험금 수령액:

본인은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위로지원금 지급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담당부서 : 보상운영과 (연락처 : 044-200-627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보상 지원단),(처리기간 1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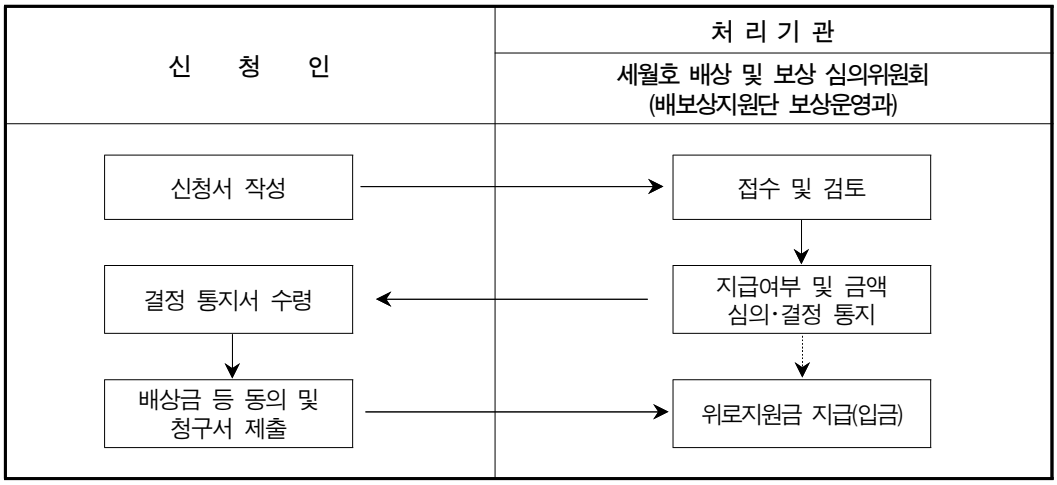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인대표자선정서, 위임장,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과 희생자와의 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접수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피해정도, 양육 및 부양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결정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①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승선자와의 관계 : 의		
	※ 신청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를 사용하여 적습니다.		
③ 승선자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④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로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손실보상금 지급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담당부서 : 보상운영과 (연락처 : 044-200-627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보상 지원단),(처리기간 12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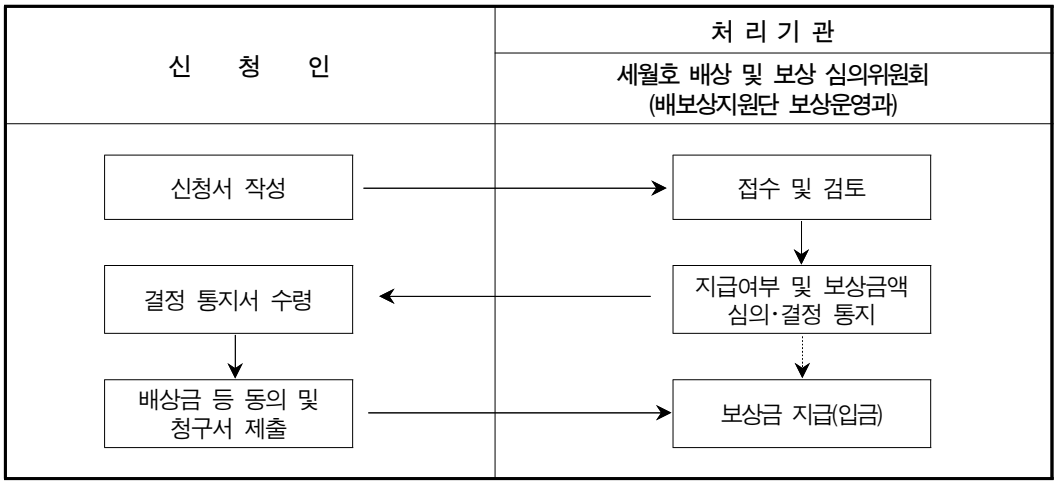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등 증명서류,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피해내용 증명 자료, 수색활동참여확인서, 위임장, 손실보상청구권 증명 자료
- 접수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피해정도 및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업종 및 면적	면허번호 (허가, 신고)		어업 종류		면적 (어업권)	

③ 피해 발생장소 (구체적 작성)		④ 피해 발생일	

⑤ 피해내용	○ 피해명세 및 산출근거: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액(원)	

⑥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담당부서 : 보상운영과 (연락처 : 044-200-627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보상 지원단),(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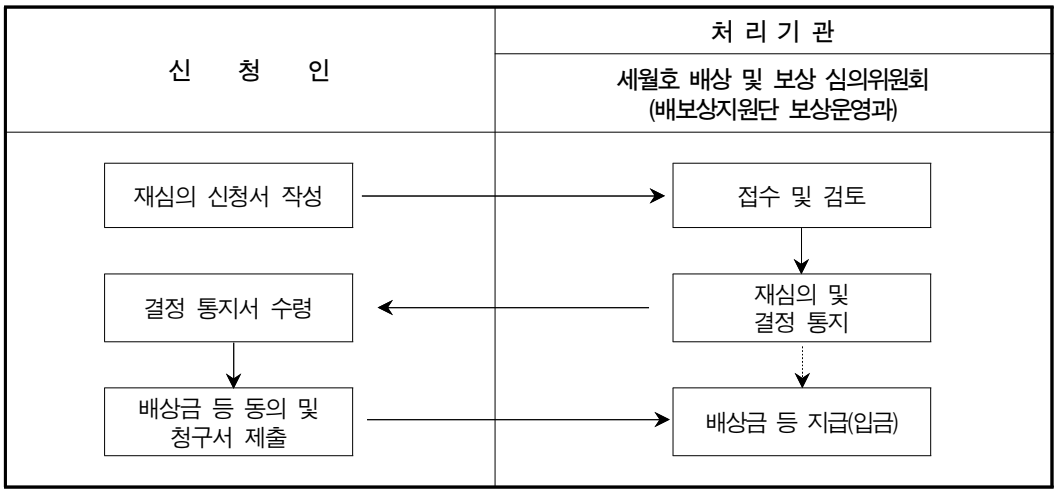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 접수기간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재심의 신청 사유 및 증거자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결정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승선자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 * 해당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승선자와의 관계 : 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적습니다.	
신청사유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 · 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결정번호 제 호, 년 월 일자)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배상금 임시지급 신청

구술민원 신청가능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담당부서 : 보상운영과 (연락처 : 044-200-6271~6)
- 접수 및 처리기관 :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보상 지원단),(처리기간 30일)

2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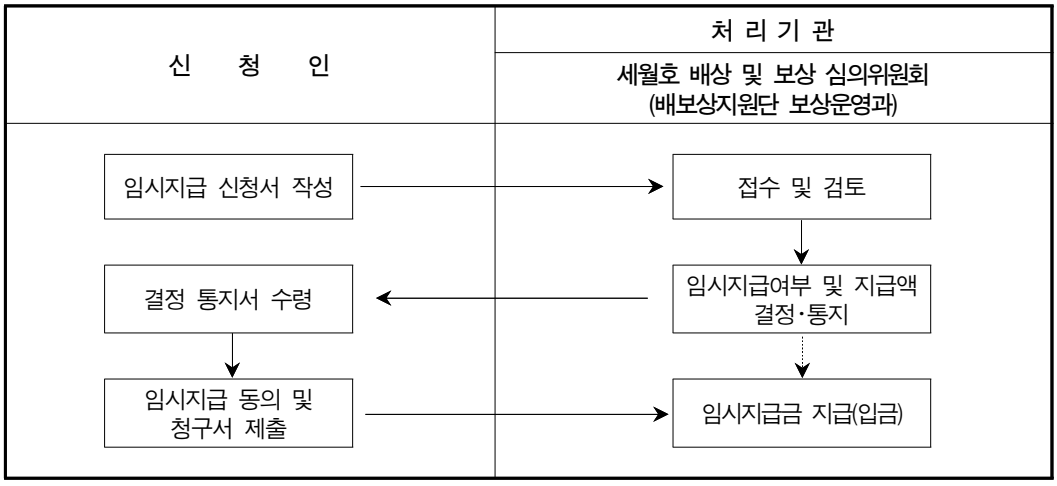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배상금 임시지급 신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 접수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수수료 : 없음)

4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임시지급 신청 사유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결정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6호서식]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승선자와의 관계: 의		
	※ 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적습니다.		
③ 승선자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직업:
④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임시지급 신청액	금액: 원정(₩)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

본인은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Index

ㄱ

강제도선 면제 607
검사증명서 (분할·합병·정정) 신청 326
검수사 등 등록 587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 신청 314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578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변경) 신고 283
공사 등의 허가 561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 39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점용·사용) 21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신고 13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10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 18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15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 6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33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30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27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36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 42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승인) 23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원상회복 의무면제 45
공유수면매립보상 재결신청 48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변경신청 242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259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수산용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423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420
국가출하승인동물용의약품 출하승인(재)신청 416
국가필수국제선박지정신청 451
국내 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967
국외 개별 취업 출국 확인 및 선원수첩공인 506
국유재산사용분할납부 1082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1080
국제선박 변경등록 변경신청 449
국제선박등록신청 446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874
국제선박보안증서(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발급 871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 214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변경발급) 신청 636
권리·의무 이전인가 1029
기록 보고(무기 반 · 출입 또는 사용) 971

ㄴ

낚시어선업 신고 137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34
낚시어선업 폐업신고 129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신청 483
내항선 입출항신고 546
내항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475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 479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허가 신청 481

ㄷ

당직부원 자격 증명 497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 보상금 신청 1098
도면승인(변경승인) 823

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변경신고) 600
도선사 면허 612
도선사 정년연장 605
도선사면허증 재발급 609
도선수습생 실무수습완료증명 603
동물용의약품 재심사 394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 379
동물용의약품(자가치료,시험,견본,무환)수입 400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신고 388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385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관리자승인 397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허가사항 변경 410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변경허가 407
동물용의약품등 허가 (등록·신고·품목허가)증 재교부 413
동물용의약품등의 조건부 제조업 및 제조품목 조건이행신고 391
동물용의약품외품 제조업신고 382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485

ㅁ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253
무기 구입 · 교체 신고 961
무기 도난 · 분실 신고 963

ㅂ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3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신청 371
방오시스템검사 791
배상금 임시지급 신청 1114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 1112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 1086
보안교육기관 지정 887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884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934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931
부유물에 대한 허가 565
불개항장 등 기항허가 신청 65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 107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1065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 1074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1068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1071

ㅅ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 890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896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468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672
선박 곡류적재도 승인 759
선박 곡류적재자료 승인 757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제조(정비) 확인 735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검정 694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697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 (시험품목 추가지정 등) 685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669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 666
선박·사업장인증심사 이의신청 664
선박건조검사 726
선박검사 신청 729
선박검사증 등 재교부 717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720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559
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 489
선박구조 등 변경 허가 708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교부 640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 205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검인 779
선박등록 647
선박말소등록 642
선박멸실 등 신고 629
선박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864
선박보안심사 재심사 881
선박보안심사 867
선박수리의 허가 등 553
선박안전관리증서 유효기간 연장 675
선박용물건 예비검사 723
선박원부 등·초본발급(열람) 639
선박원부변경등록 645
선박의 계선신고 등 557
선박이력기록부 교부(재교부) 878
선박재검사 688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 허가 514
선박총톤수측정 649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 821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 826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829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 839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대행기관 협정 858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 847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835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사항 변경 837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갱신 84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83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844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855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850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853
선용품공급업 신고 584
선원 수첩교부(재교부) 538
선원(선박, 선원 및 선박) 관리신고 507
선원수첩 기재사항 정정 535
선원취업규칙(변경)신고 487
소금제조업 허가 123
소금품질검사기관의 지정 115
손실보상금 지급신청 1110
손실보상지급신청 453
수로기준점 이전신청 77
수로도서지 복제·유사제작물 발행 승인 92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지정 89
수로사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 69
수로사업등록신청 63
수로사업변경등록신청 66
수로조사 신고 80
수로조사성과 사본발급 75
수로조사성과 심사 신청 83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변경신고 338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신청 335
수산물·수산가공품 (재)검사 신청 317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 신청 320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연장) 신청 348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서 재교부 341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 발급 신청 323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 375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435
수산용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수입자 확인 429
수산용수 분석 365
수산자원 이식승인 367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35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재교부 344
수산제품 및 용수의 세균분석 359
수산제품의 이화학적 분석 358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235
수입(재)검역 신청 302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 311
수출 수산용동물용의약품등 영문증명 432
수출(재)검역 신청 305
승무경력증명 529
승무원명부 훼손·멸실에 따른 공인(확인) 532

승무정원 완화허가 530
승선공인 544
승선선원 변경공인 491
시설장비 검사 신청 1039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 신청 1045
시설장비 설치 변경 신고 1036
시설장비 설치(철거) 신고 1031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 1042
시험어업 신청 173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816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818
신항만건설사업 공사준공보고 988
신항만건설사업 준공전사용신고 982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 985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폐지)승인 991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995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929
심판변론인 등록신청 926

안전관리대행업 양수신고 659
안전관리대행업 합병신고 657
안전관리대행업 휴(폐업) 신고 655
안전관리대행업(신규·변경) 등록신청 661
액상화물질 수분측정 768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 765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 189
어구자재의 성능 측정 354
어선 개조(발주) 허가 229
어선 건조(발주) 허가 232
어선 건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226
어선 증서 등의 재발급 220
어선 총톤수(측정, 개측) 신청 217
어선등록 말소 223
어선등록 210
어선등록사항 변경등록 207
어선원부의 열람 및 발급 204
어업 변경허가신청 177
어업개시 신고 169
어업권 등 보상청구 250
어업권 변경인가 263
어업권 분할인가 266
어업권 포기신고 272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269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교부 246
어업면허 신청기간 연장 278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280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274
어업면허 휴업신고 257
어업면허 276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244
어업신고 166
어업재개신고 255
어업폐업 신고 164
어업허가 신청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181
어업허가 유예신청 179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85
어업허가증(신고증명) 재발급 신청 158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140
어업휴업 신고 187
어업휴업(휴업연장) 신고 240
어업휴업연장 신고 171
어장구역 등 재결 247
어장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연장)승인 238
어장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286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 사용신고 296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 준공전 사용허가 293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 299
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 291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288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94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 191
어획물운반업 폐지신고 196
어획물운반업 휴업기간 중의 재개신고 202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 200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 198
에너지효율검사 797
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477
염전개발 허가 126
염전개발·소금제조업 변경 허가 119
염전개발·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 118
예선업 등록 617
예선업등록사항변경 615
왕돌초 주변해역에서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 154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965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 969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변경) 신고 457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 455
외국인선원 고용 신고 493
외항 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 466
외항선 입출항 신고 548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04
원양어업허가유예 신청 107
원양어업(해외합작원양어업) 폐업 등 신고 95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변경신고) 97
원양어업허가 99
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02
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 신청 110
위로지원금 지급신청 1108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신고 332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신청 329
위험물용기 검사 750
위험물운송적합증 교부(재교부) 741
위험물적재 검사 744
위험물컨테이너수납 검사 747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자격증 교부 503
유류오염사고 손해 지원 신청 1095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신청 1092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단체 신고 1089
유류오염손해 배상금 지급신청 1104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946
유류저장부선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940
유어장(변경)지정 131
유증기배출제어장치 검사 781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 776
의료관리자 자격증 교부 500
의료관리자시험 응시 495
인적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 1101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943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937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 679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631
임시항해검사 789

ㅈ

자가백신제조신고 426
자동화선박의 종류별(변경) 인정 522
재해보상심사(조정) 청구 537
재화중량톤수측정 633
적경성심사 대행기관 지정 959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설치통지 162
제조·수입 관리자·관리약사 변경 403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 861
지정사업장 지정(변경) 738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사항 변경 677

지정제조(정비)사업장 지정사항 변경 682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검사 794

ㅊ

측량기준점표지 이전신청 72
침선표지 설치·관리대행 요청 893

ㅋ

컨테이너 검정 700
컨테이너 정기(계속)점검방법 승인 691
컨테이너 형식승인 703

ㅌ

타항만 일시적 영업행위신고 592
퇴적오염물질 수거업 57

ㅍ

파견검역 요청 308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 732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변경) 53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160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346

ㅎ

하선·승선 취소공인 542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 146
한시어업허가 신청 150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 771
함수액상화물질 운반선 인정서 재교부 774
항계내 위험물반입신고 555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개시·휴업·재개· 폐지 신고 919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904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907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910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 합병신고 917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상속인 사업승계 신고 912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양수신고 914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대행기관지정 (재지정) 901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899
항만공사 시행허가 1026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012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1016
항만공사 준공 보고 1020
항만공사 준공 전 사용 신고 1010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 627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시행 허가 1024
항만시설 장비 검사 신청 1003
항만시설 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 신청 1007
항만시설 장비 설치(철거)신고 999
항만시설(최초·갱신·중간) 보안심사 570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 975
항만시설관리권 등본(초본) 발급 980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 977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572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581
항만시설사용신고 622
항만시설사용허가 620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567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 575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594
항만운송사업 등록 597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 1048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 신청 1051
항만하역운임 및 요금 인가(변경인가) 신청 590
항행통보 신청 87
해기사교육기관 지정(변경) 517
해기사국가시험 합격증명 교부 509
해기사면허증 갱신 511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정정) 신청 520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524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464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 470
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 폐업)신고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 473
해상특수경비업 영업개시(폐업) 신고 953
해상특수경비업 허가(갱신) 949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 신고 957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증 재발급 951
해상특수경비업 휴업 · 재개업 · 휴업기간
연장 신고 955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459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563
해양사고 서류 및 증거물 열람 등 신청 921
해양시설 (변경)신고 50
해양안전심판 재결서 등본 발급신청 924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유효기간연장 800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정 807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형식승인, 형식승인
면제 802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 813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시험 805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인증 810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786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 등록) 60
해운중개업등 등록사항 변경신청 444
해운중개업등 등록신청 441
해저 퇴적물 분석 363
현존선 곡류적재도 승인 762
협약증서 교부 등 714
협약증서 유효기간 연장 등 711
화물손해 배상금 지급신청 1106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 753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교부 755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 검인 784

기타

(운항계획, 협약)신고 (변경신고) 462
(항만)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1055
(항만재개발사업)공사 등의 착수신고 1059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156

민 원 편 람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2018

발 행 일 : 2018년 7월

발 행 처 : 해양수산부

집필·편집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Tel. (044)200-5082

인 쇄 처 :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세종인쇄정보
Tel. (044)868-8878

이 책의 저작권은 해양수산부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